연구보고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김영지
공동연구원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이민희(평택대학교·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청소년교육과 교수)
▸ 연구보조원 : 김수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6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사항들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진전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세 차례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네 번째 국가보고서인 제5·6차 통합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1년에 받은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성과를 국가보고서에 담아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진전정도를 파악하여 아동인권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도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 여가시간 부족, 체벌 경험, 시민으로서의 인정 미흡, 저소득층 자녀의 낮은 인권수준 등 밝지 않은 지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단순한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책 우선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고려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발달과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마지막 해 연구이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8개 지표항목 중 60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88개는 행정문서와 기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지표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 지침에 따라 지표체계를 재정비한 2013년도의 틀을 유지하고 매년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6개년 연구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2017년 6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로서, 인권현황 추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여 정책과제 제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6년간의

통계표 검토 및 오류 정비 및 설문문항 변경내역 종합 정리, 주요 지표결과의 연도별 추이표 자료화 작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본보고서이다.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관련 정책현황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심화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학교의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방점을 두면서 지난 6년간 인권실태 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연 구 요 약

-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6차년도 연구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6년은, 2017년 6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어, 인권지표체계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5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 58/Rev.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개 대분류로 구성한 틀을 유지하여 정책기여도를 높이고자 함. 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를,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논문을 담은 것임.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함.
-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함.

2. 연구내용

- 지표결과 생산 : 설문조사 및 행정통계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점검 및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 6개년 연구자료 종합 정리 및 DB 구축 정비작업

3. 연구결과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두 개의 중분류에 총 12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의 법·제도 발전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법 개정사항을 통해 아동학대, 안전문제, 근로청소년 보호, 사법과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강화 내용을 살펴봄.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중요한 성과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2012년 3.1%,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9% 등으로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4.4%, 7.7%, 15.5%로 중요한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는 가정(94.3%), 지역(90.0%), 학교(88.5%), 사이버공간(79.6%), 우리나라 전체(7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인권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83.8%)와 청소년 자치조직(81.2%) 의의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의견표명권(94.7%), 차별금지(95.9%), 성평등(93.9%)에 대해 90%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인권교육 경험률은 70.0%로, 2015년 65.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는 72.4%로 전년(70.6%) 대비 소폭 증가함. 일 년에 1회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1.3%), 성차별(21.2%), 연령차별(20.1%)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대비 성차별과 연령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을, 학업성적과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차별받은 경험률도 유사하게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25.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 차별(21.7%), 성차별(21.5%), 연령차별(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경험률은 2015년 대비 증가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의 24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진로 및 직업결정(91.1%), 상급학교 진학(89.3%), 집안의 중대사(85.8%), 공부시간이나 방법(84.7%) 등 80~90% 내외로 나타남. 학생회 자율권 보장 정도는 낮은 편이었음(예산·장소·시간 보장 29.5%, 학생회 의견존중 34.6%, 자치권 확보 18.2%). 학급회의 운영율은 67.6%였으며,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19.7%,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는 67.9%로 나타났음. 절반 정도(49.7%)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1%, 참여기구 활동경험은 2.9%로 나타남. 투표연령을 현재 만19세보다 낮추자는 의견은 24.7%였으며, 참여권 보장 수준은 54.2%로 나타남.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37.8%)'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사상의 자유는 학교(78.3%)와 사회(63.9%)에서 60~70% 선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종교 대체프로그램 없이 학교의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26.7%로 나타남.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5.4%,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7.3%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훈계나 징계 등은 3.8%가 경험함. 용모(51.4%), 복장(47.6%), 소지품(21.2%) 검사 경험은 줄어들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함.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하루 평균 2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시간 5분이었으며(타 행정통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자(65.5%) 중에서 휴대폰과 케이블TV를 통한 접촉이 많았음.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3.8%), 청소년정책 홍보자료(21.0%),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6.4%),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1%) 등의 제공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폭력 및 학대」의 대분류 지표 영역은 총 11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음. 먼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인한 정서적 학대에 전체 응답 학생의 30.4%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18.7%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서적 학대의 연도별 추이는 대체로 가정과 학교에서 감소 추세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응답학생과 가까운 선배나 친구로부터의 폭력에 있어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13.4%, 폭행이나 구타가

5.6%, 따돌림 피해경험이 4.7%, 성희롱이나 추행이 2.9%로 나타났음. 폭력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도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이버 공간에서 응답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은 정서적 학대가 14%, 성희롱이 2.5%, 사생활 무단 공개 5.0%, 따돌림 1.6%로 나타났음. 연도별 추이에서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학생의 체벌 경험률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의 체벌 피해경험이 24.1%, 학교 교사로부터는 16.2%로 조사되었음.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체벌과 같은 폭력이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많게 나타나 학교폭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정서적 학대나 체벌도 연도별 추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바람직함. 아동학대의 신고건수는 조사결과 2015년 총 19,214건으로 나타났는데 3년간 증가율이 73%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아동학대의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하여 29.4%, 비신고의무자로부터 70.6%가 신고 되어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높이도록 대책이 필요함. 중복학대는 2년 동안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아동학대 중 중복학대 비율은 2015년 현재 45.6%에 달하고 있음. 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제일 많았음. 학생의 방임 경험에 있어서는 밤늦게 홀로 집을 본 경험이 65.7%, 질병 시 내버려진 경험이 7.4%, 결식 시 무관심이 8.7%, 결석 시 무관심이 2.2%로 조사되었음.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6.8%가 증가해 11,715건으로 조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06년 이래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고작 12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1인당 아동학대 수행 총 업무량은 1년에 227일로 실질 연간 근무시간과 대비해서 74일이나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2011년의 6.8%에서 2015년 10.5%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 가지 중분류 지표들로 구분됨.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2014년에 조사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대화시간은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많아졌으나,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주1회 이상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나누는 대화주제는 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50.8%였고, 정치와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15.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보육시설은 2015년에 42,517개소로 2014년에 비해 1,225개소 축소되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확대됨에 따라 이용 아동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2009년 9.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5년에는 4.5명임.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는 전년도에 비해 2015년 57.2%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보다 증가한 4,102개소에 이용 아동 수도 2015년에는 109,6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5년 244개소로 확대 설치되어, 연인원도 2백2십만명으로 늘어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영역별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음. 국내·외 입양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3년에는 국내·외 입양이 모두 급감하였음. 2015년에 국내입양은 683명(64.6%) 국외입양은 374명(35.4%)이었음.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는데,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32.6%, '잘 모르겠다'는 30.2%로 나타나 입양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음.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은 2015년 전체 4,503명으로 전년도 대비 491명이 감소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로서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일반인 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2013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음. 가출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의 주된 원인은 부모와의 문제(60.7%)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함(12.8%), 학업 부담(12.4%) 등의 순이었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중분류로써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와 더불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무직률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35%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0세에서 24세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0세에서 19세의 사고사망률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함. 사망의 원인으로 10세에서 19세의 경우 자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운수 사고임.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2014년 총 90,568건으로,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함. 청소년들의 66.5%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함. 2015년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전체적으로 62.9%수준이며,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어 학교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7.8%, 16.7%로,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흡연예방교육 과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아동·청소년의 83.5%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한다는 응답은 30.6%였음.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은 20.5%였으며, 아침 결식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면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15분이었으며, 54.1%가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그 이유로는 채팅/문자메시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세를 보임. 자아존중감은 평균 3점(4점 만점), 우울감은 1.95점(4점 만점)이었고, 전체 83.7%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은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28.6%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0.7%로 가장 높았음.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OECD 데이터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0-2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도 전년도 대비 2015년 524,20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대분류 영역에 있어서는 총 21개의 관련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음. 학생 취학률, 학생 진학률은 OECD 소속 국가들에 비해 높았으나, 구매력지수(ppp)에 따른 1인당 GDP는 세계 30위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음.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학업중단율은 2015년 전체의 0.8%로 나타났고, 그 중 고등학교가 1.3%로 가장 높았음. 2015년 학업중단자는 47,07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지금까지 누계가 30만명이 넘아 학업중단 현상은 이제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학업포기 충동의 비율은 25.1%로 전체 학생 4명 중 1명이 해당되며, 학업포기 첫째 이유로는 학업부담이 41%에 달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부정적 실태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상태가 학업포기의 이유로 16.9%나 되고 있고, 이 또한 학업중단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친구로부터의 존중도는 91.4%로 높으나, 선생님으로부터의 공정 대우는20.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학교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7%였으며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여 고무적인 상황으로 나타남. 대안학교는 전체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으나 정부가 민간위탁형 대안공립학교를 증설하려는 계획아래에 있고, 혁신학교는 2016년 1,006개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2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학교보다는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가 더 필요함.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80.4%였고,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생각에는 23.7%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에는 전체의 83.3%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응답학생의 청소년시설의 이용도가 전체의 43.3%에 미쳐 2명 중 1명도 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 여가와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에 있어서는 휴식활동, 관광활동, 스포츠관련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률은 16.4%에 불과했으나,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73.6%가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학생들의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안 되는 비율이 54.3%로 나타났고, 반면에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이 넘는 학생의 비율이 49.4%에 달해 지나치게 학습시간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게 여가시간 부족과 학습시간 과다의 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학입학의 학업부담이 문제임이 드러났음.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는 90.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도는 69.7%이었고, 학교의 지지도는 78%로 나타났음.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이러한 지지도는 연도별 추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운영, 경제적 착취, 성적 특별보호조치로 구성됨.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총 5,711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105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음. 탈북자 수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8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1.0%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중,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평균수용기간은 5.17개월에서 7.30개월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대다수가 2014년까지는 1개월 미만인 8호 처분이었으며, 2014년에는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체계는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소년사법 프로그램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적 조사가 필요함.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건수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청원과 고소·고발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증가폭은 전체 상승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므로,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5년 총 11,708명이

었으며, 연도별 성적피해 경험률도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피해의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회복적 처벌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로 심리·정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4. 정책제언

- 2017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므로 지표영역별 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작업과 함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청소년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 및 의견조사 분석 등을 통해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인권영역별로 총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등을 제안하였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폭력 및 학대」: 아동·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 신혼부부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 기능 및 홍보 강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예산 확대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정책 개발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혁신학교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조례 제정의 전국 확대
- 「특별보호조치」: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준비과정 확대 운영,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Ⅱ.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인권동향 ····· 17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 19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 : 2011~2015 인권지표 결과 ····· 27
3.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동향 ····· 64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7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79
1) 인권일반 ····· 79
2) 일반원칙 ····· 113
3) 소결 ····· 145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46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46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82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91
4) 사생활의 보호 ····· 197
5) 정보접근권 ····· 208
6) 소결 ····· 220
3. 폭력 및 학대 ····· 223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223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244
3) 소결 ····· 25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61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261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27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293
4) 소결 ····· 298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301
1) 장애 ····· 301
2) 생존 및 발달 ····· 303
3) 보건서비스 ····· 314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 327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378
6) 소결 ····· 38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393
1) 교육에의 권리 ····· 393
2) 교육의 목표 ····· 418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429
4) 소결 ····· 450
7. 특별보호조치 ····· 452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452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 464
3) 경제적 착취 ····· 473

4) 성적 착취 ····· 499
5) 소결 ····· 512

Ⅳ. 정책제언 ····· 521
1. 논의 ····· 523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43

참고문헌 ····· 583

부 록 ····· 601
부록 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자료원 ····· 603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 643
부록 3.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648
부록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연도별 추이(2011~2016) ····· 678
부록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논의자료 ····· 710
부록 6.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 736
부록 7.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741

Abstract ····· 752

표 목 차

〈표 Ⅰ-2-1〉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 9
〈표 Ⅰ-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10
〈표 Ⅰ-2-3〉 2016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 현황 ····· 11
〈표 Ⅰ-2-4〉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11
〈표 Ⅰ-2-5〉 2016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 12
〈표 Ⅱ-1-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0
〈표 Ⅱ-1-2〉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3
〈표 Ⅱ-3-1〉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 65
〈표 Ⅱ-3-2〉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추진 지방자치단체 현황 ····· 65
〈표 Ⅱ-3-3〉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및 정책 ····· 68
〈표 Ⅱ-3-4〉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동향 ····· 69
〈표 Ⅱ-3-5〉 인권조례상 인권기본계획 수립 대상별 영역 ····· 69
〈표 Ⅱ-3-6〉 지역별 인권기본계획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사업 내용 ····· 70
〈표 Ⅱ-3-7〉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 71
〈표 Ⅱ-3-8〉 학생인권조례 조항 분석 ····· 72
〈표 Ⅱ-3-9〉 광주교육청 민주인권친화지표 ····· 74
〈표 Ⅲ-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6) ····· 82
〈표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 83
〈표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85
〈표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87
〈표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89
〈표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91
〈표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 92

〈표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 ····· 94
〈표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95
〈표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97
〈표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 98
〈표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00
〈표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02
〈표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 103
〈표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04
〈표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06
〈표 Ⅲ-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 108
〈표 Ⅲ-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 109
〈표 Ⅲ-1-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111
〈표 Ⅲ-1-20〉 차별해 본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 113
〈표 Ⅲ-1-21〉 차별해 본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 114
〈표 Ⅲ-1-22〉 차별해 본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116
〈표 Ⅲ-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 117
〈표 Ⅲ-1-24〉 차별해 본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 119

〈표 Ⅲ-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 120
〈표 Ⅲ-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 122
〈표 Ⅲ-1-27〉 차별해 본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 123
〈표 Ⅲ-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 125
〈표 Ⅲ-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126
〈표 Ⅲ-1-30〉 차별받은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 128
〈표 Ⅲ-1-31〉 차별받은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 129
〈표 Ⅲ-1-32〉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131
〈표 Ⅲ-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 132
〈표 Ⅲ-1-34〉 차별받은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 134
〈표 Ⅲ-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 135
〈표 Ⅲ-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 137
〈표 Ⅲ-1-37〉 차별받은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 138
〈표 Ⅲ-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 140
〈표 Ⅲ-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141
〈표 Ⅲ-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 143
〈표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146
〈표 Ⅲ-2-2〉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 148
〈표 Ⅲ-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 150
〈표 Ⅲ-2-4〉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152

〈표 Ⅲ-2-5〉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자녀 존중정도 ····· 153
〈표 Ⅲ-2-6〉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154
〈표 Ⅲ-2-7〉 학생회 활동_1)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 154
〈표 Ⅲ-2-8〉 학생회 활동_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56
〈표 Ⅲ-2-9〉 학생회 활동_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 158
〈표 Ⅲ-2-10〉 학생회 활동_4)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 159
〈표 Ⅲ-2-11〉 학급회의 운영여부 ····· 161
〈표 Ⅲ-2-12〉 학급회의 참여정도 ····· 162
〈표 Ⅲ-2-1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64
〈표 Ⅲ-2-14〉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 166
〈표 Ⅲ-2-15〉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168
〈표 Ⅲ-2-1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08~2015) ····· 169
〈표 Ⅲ-2-17〉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15) ····· 169
〈표 Ⅲ-2-18〉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5) ····· 170
〈표 Ⅲ-2-1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172
〈표 Ⅲ-2-20〉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 175
〈표 Ⅲ-2-21〉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178
〈표 Ⅲ-2-22〉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180
〈표 Ⅲ-2-23〉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학교, 사회) ····· 182

〈표 Ⅲ-2-24〉 사상의 자유 보장_1)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3
〈표 Ⅲ-2-25〉 사상의 자유 보장_2)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4
〈표 Ⅲ-2-26〉 사상의 자유 보장_3)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6
〈표 Ⅲ-2-27〉 종교재단 학교 여부 ····· 187
〈표 Ⅲ-2-28〉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 188
〈표 Ⅲ-2-29〉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 190
〈표 Ⅲ-2-3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 192
〈표 Ⅲ-2-3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 193
〈표 Ⅲ-2-32〉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 195
〈표 Ⅲ-2-33〉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1) 용모 검사 ····· 198
〈표 Ⅲ-2-3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2) 복장 검사 ····· 199
〈표 Ⅲ-2-3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3) 소지품 검사 ····· 201
〈표 Ⅲ-2-36〉 개인의 정보 보호_1)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 203
〈표 Ⅲ-2-37〉 개인의 정보 보호_2)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 205
〈표 Ⅲ-2-38〉 개인의 정보 보호_3)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 207
〈표 Ⅲ-2-39〉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208
〈표 Ⅲ-2-40〉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 209
〈표 Ⅲ-2-41〉 청소년(12~19세)1) 스마트폰 이용 현황 ····· 210
〈표 Ⅲ-2-42〉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 210

〈표 Ⅲ-2-43〉 연간 독서율 ····· 211
〈표 Ⅲ-2-44〉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경험 ····· 212
〈표 Ⅲ-2-45〉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 213
〈표 Ⅲ-2-4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213
〈표 Ⅲ-2-47〉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214
〈표 Ⅲ-2-48〉 정보제공_1)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 및 자료 제공 ····· 216
〈표 Ⅲ-2-49〉 정보제공_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인권정보 제공 ····· 217
〈표 Ⅲ-2-50〉 정보제공_3)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 정보 제공 ····· 219
〈표 Ⅲ-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24
〈표 Ⅲ-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26
〈표 Ⅲ-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1) 심한 욕설이나 모욕 ····· 228
〈표 Ⅲ-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2) 폭행이나 구타 ····· 229
〈표 Ⅲ-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3) 따돌림 ····· 231
〈표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4)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232
〈표 Ⅲ-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여부 ····· 234
〈표 Ⅲ-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1) 욕설이나 모욕 ····· 234
〈표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2) 성희롱(놀림) ····· 236
〈표 Ⅲ-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3)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 238
〈표 Ⅲ-3-11〉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4) 따돌림 ····· 239
〈표 Ⅲ-3-12〉 체벌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 241

〈표 Ⅲ-3-13〉 체벌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242
〈표 Ⅲ-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45
〈표 Ⅲ-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2013년~2015년 성별, 연령별 비교 ····· 247
〈표 Ⅲ-3-16〉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48
〈표 Ⅲ-3-17〉 재학대사례: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 249
〈표 Ⅲ-3-18〉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 250
〈표 Ⅲ-3-19〉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2)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252
〈표 Ⅲ-3-20〉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3)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54
〈표 Ⅲ-3-21〉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4)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55
〈표 Ⅲ-3-22〉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6년~2015년) ····· 256
〈표 Ⅲ-3-2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257
〈표 Ⅲ-3-2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258
〈표 Ⅲ-3-2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259
〈표 Ⅲ-4-1〉 부모와의 대화시간(2011년, 2014년) ····· 262
〈표 Ⅲ-4-2〉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2011년, 2014년) ····· 264
〈표 Ⅲ-4-3〉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2011년, 2014년) ····· 265
〈표 Ⅲ-4-4〉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04-2015년) ····· 266

〈표 Ⅲ-4-5〉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 2015년) ····· 267
〈표 Ⅲ-4-6〉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4년, 2015년) ····· 268
〈표 Ⅲ-4-7〉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2014년, 2015년) ····· 269
〈표 Ⅲ-4-8〉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7-2015년) ····· 269
〈표 Ⅲ-4-9〉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2015년) ····· 271
〈표 Ⅲ-4-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2015년) ····· 271
〈표 Ⅲ-4-11〉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04-2015년) ····· 272
〈표 Ⅲ-4-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2015년) ····· 273
〈표 Ⅲ-4-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2010-2015년) ····· 275
〈표 Ⅲ-4-14〉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277
〈표 Ⅲ-4-15〉 입양에 대한 견해(2012년, 2014년) ····· 277
〈표 Ⅲ-4-16〉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8-2014년) ····· 278
〈표 Ⅲ-4-17〉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 279
〈표 Ⅲ-4-18〉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06-2015년) ····· 281
〈표 Ⅲ-4-19〉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2006-2015년) ····· 281
〈표 Ⅲ-4-20〉 가출인 발생 현황(2009-2013년) ····· 283
〈표 Ⅲ-4-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5년) ····· 284
〈표 Ⅲ-4-22〉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 285
〈표 Ⅲ-4-23〉 가출한 주된 이유 ····· 287
〈표 Ⅲ-4-24〉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 290
〈표 Ⅲ-4-25〉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292
〈표 Ⅲ-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2013년, 2016년 비교) ····· 294

〈표 Ⅲ-4-27〉 아동복지시설 평가영역별 배점(2013년, 2016년 비교) ····· 295
〈표 Ⅲ-4-28〉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16년) ····· 296
〈표 Ⅲ-4-29〉 아동복지시설 최종 평가결과 현황 ····· 297
〈표 Ⅲ-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302
〈표 Ⅲ-5-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302
〈표 Ⅲ-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303
〈표 Ⅲ-5-4〉 0세의 기대여명 ····· 304
〈표 Ⅲ-5-5〉 연도별 영아사망률 ····· 305
〈표 Ⅲ-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305
〈표 Ⅲ-5-7〉 사고 사망률 ····· 306
〈표 Ⅲ-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306
〈표 Ⅲ-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308
〈표 Ⅲ-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 309
〈표 Ⅲ-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310
〈표 Ⅲ-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312
〈표 Ⅲ-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 313
〈표 Ⅲ-5-14〉 2015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 314
〈표 Ⅲ-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315
〈표 Ⅲ-5-16〉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315
〈표 Ⅲ-5-17〉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316
〈표 Ⅲ-5-18〉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317

〈표 Ⅲ-5-19〉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318
〈표 Ⅲ-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320
〈표 Ⅲ-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321
〈표 Ⅲ-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322
〈표 Ⅲ-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323
〈표 Ⅲ-5-24〉 현재 흡연율 추이 ····· 324
〈표 Ⅲ-5-25〉 현재 음주율 추이 ····· 324
〈표 Ⅲ-5-26〉 평생 약물 경험률 ····· 325
〈표 Ⅲ-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326
〈표 Ⅲ-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326
〈표 Ⅲ-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327
〈표 Ⅲ-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329
〈표 Ⅲ-5-31〉 아침식사 여부 ····· 331
〈표 Ⅲ-5-3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 333
〈표 Ⅲ-5-33〉 (평균)수면 시간 ····· 335
〈표 Ⅲ-5-34〉 수면 부족여부 ····· 337
〈표 Ⅲ-5-35〉 수면부족 이유(1+2+3순위) ····· 340
〈표 Ⅲ-5-36〉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 343
〈표 Ⅲ-5-37〉 자아존중감_1)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 345
〈표 Ⅲ-5-38〉 자아존중감_2)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46
〈표 Ⅲ-5-39〉 자아존중감_3)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 347
〈표 Ⅲ-5-40〉 자아존중감_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348

〈표 Ⅲ-5-41〉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 349
〈표 Ⅲ-5-42〉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349
〈표 Ⅲ-5-43〉 우울증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 351
〈표 Ⅲ-5-44〉 우울증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 있다 ····· 353
〈표 Ⅲ-5-45〉 우울증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 있다 ····· 355
〈표 Ⅲ-5-46〉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 356
〈표 Ⅲ-5-47〉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 357
〈표 Ⅲ-5-48〉 스트레스 인지율 ····· 358
〈표 Ⅲ-5-49〉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학교유형별) ····· 359
〈표 Ⅲ-5-50〉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 362
〈표 Ⅲ-5-51〉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증 차이 ····· 363
〈표 Ⅲ-5-52〉 현재 행복 정도 ····· 364
〈표 Ⅲ-5-53〉 행복하지 않은 이유 ····· 366
〈표 Ⅲ-5-54〉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 367
〈표 Ⅲ-5-55〉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 368
〈표 Ⅲ-5-5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370
〈표 Ⅲ-5-57〉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 372
〈표 Ⅲ-5-58〉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 374
〈표 Ⅲ-5-59〉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 375
〈표 Ⅲ-5-60〉 고민을 나눌 지인 ····· 375
〈표 Ⅲ-5-61〉 아동빈곤율 ····· 378
〈표 Ⅲ-5-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382

〈표 Ⅲ-5-63〉 한부모가구 비율 ····· 383
〈표 Ⅲ-5-6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384
〈표 Ⅲ-5-6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385
〈표 Ⅲ-5-66〉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386
〈표 Ⅲ-5-67〉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 386
〈표 Ⅲ-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10~2016) ····· 393
〈표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0~2015) ····· 395
〈표 Ⅲ-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2000, 2007~2012) ····· 396
〈표 Ⅲ-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10~2016) ····· 398
〈표 Ⅲ-6-5〉 학급당 학생 수(2010~2016) ····· 399
〈표 Ⅲ-6-6〉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0~2015) ····· 400
〈표 Ⅲ-6-7〉 자퇴 충동여부 ····· 402
〈표 Ⅲ-6-8〉 자퇴 충동여부 연도별 추이 ····· 403
〈표 Ⅲ-6-9〉 자퇴 충동이유(1순위) ····· 404
〈표 Ⅲ-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 407
〈표 Ⅲ-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2)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 409
〈표 Ⅲ-6-12〉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411
〈표 Ⅲ-6-13〉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5개 권역 ····· 413
〈표 Ⅲ-6-14〉 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2016년 6월 기준) ····· 413
〈표 Ⅲ-6-15〉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 415
〈표 Ⅲ-6-16〉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 417
〈표 Ⅲ-6-17〉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418

〈표 Ⅲ-6-18〉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 420
〈표 Ⅲ-6-19〉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 422
〈표 Ⅲ-6-20〉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 423
〈표 Ⅲ-6-21〉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수(2016년 기준) ····· 426
〈표 Ⅲ-6-22〉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교과과정 평가 비교 ····· 428
〈표 Ⅲ-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429
〈표 Ⅲ-6-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 430
〈표 Ⅲ-6-2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31
〈표 Ⅲ-6-26〉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32
〈표 Ⅲ-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 433
〈표 Ⅲ-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 434
〈표 Ⅲ-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체육시설 ····· 435
〈표 Ⅲ-6-3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4) 문화 예술 공간 ····· 436
〈표 Ⅲ-6-31〉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 437
〈표 Ⅲ-6-32〉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 438
〈표 Ⅲ-6-33〉 동아리 활동여부 ····· 440
〈표 Ⅲ-6-34〉 평일 여가 시간 ····· 442
〈표 Ⅲ-6-35〉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 444
〈표 Ⅲ-6-36〉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 446
〈표 Ⅲ-6-37〉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 447
〈표 Ⅲ-6-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 449
〈표 Ⅲ-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454

〈표 Ⅲ-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455
〈표 Ⅲ-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455
〈표 Ⅲ-7-4〉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456
〈표 Ⅲ-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 457
〈표 Ⅲ-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457
〈표 Ⅲ-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 458
〈표 Ⅲ-7-8〉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458
〈표 Ⅲ-7-9〉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5.4) ····· 459
〈표 Ⅲ-7-10〉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5.4) ····· 459
〈표 Ⅲ-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459
〈표 Ⅲ-7-1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5. 3) ····· 461
〈표 Ⅲ-7-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462
〈표 Ⅲ-7-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463
〈표 Ⅲ-7-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464
〈표 Ⅲ-7-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 464
〈표 Ⅲ-7-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465
〈표 Ⅲ-7-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467
〈표 Ⅲ-7-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469
〈표 Ⅲ-7-20〉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470
〈표 Ⅲ-7-2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470
〈표 Ⅲ-7-2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471
〈표 Ⅲ-7-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472
〈표 Ⅲ-7-2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473
〈표 Ⅲ-7-25〉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474

〈표 Ⅲ-7-26〉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476
〈표 Ⅲ-7-2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477
〈표 Ⅲ-7-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479
〈표 Ⅲ-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 481
〈표 Ⅲ-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483
〈표 Ⅲ-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485
〈표 Ⅲ-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487
〈표 Ⅲ-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489
〈표 Ⅲ-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491
〈표 Ⅲ-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 493
〈표 Ⅲ-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495
〈표 Ⅲ-7-37〉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497
〈표 Ⅲ-7-38〉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498
〈표 Ⅲ-7-39〉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499
〈표 Ⅲ-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499
〈표 Ⅲ-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500
〈표 Ⅲ-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 500
〈표 Ⅲ-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501
〈표 Ⅲ-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501
〈표 Ⅲ-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502
〈표 Ⅲ-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503

〈표 Ⅲ-7-4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 505
〈표 Ⅲ-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507
〈표 Ⅲ-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508
〈표 Ⅲ-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09
〈표 Ⅲ-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 510
〈표 Ⅲ-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511
〈표 Ⅲ-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511
〈표 Ⅲ-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512
〈표 Ⅳ-2-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544

그 림 목 차

【그림 Ⅰ-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 5
【그림 Ⅲ-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 84
【그림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86
【그림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88
【그림 Ⅲ-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 89
【그림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90
【그림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92
【그림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 93
【그림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 94
【그림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96
【그림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98
【그림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 99
【그림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01
【그림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02
【그림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 104
【그림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05
【그림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07

【그림 Ⅲ-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 108
【그림 Ⅲ-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 110
【그림 Ⅲ-1-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112
【그림 Ⅲ-1-20】 차별해 본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 114
【그림 Ⅲ-1-21】 차별해 본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 115
【그림 Ⅲ-1-22】 차별해 본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117
【그림 Ⅲ-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 118
【그림 Ⅲ-1-24】 차별해 본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 120
【그림 Ⅲ-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 121
【그림 Ⅲ-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 123
【그림 Ⅲ-1-27】 차별해 본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 124
【그림 Ⅲ-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 126
【그림 Ⅲ-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127
【그림 Ⅲ-1-30】 차별받은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 129
【그림 Ⅲ-1-31】 차별받은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 130
【그림 Ⅲ-1-32】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132
【그림 Ⅲ-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 133
【그림 Ⅲ-1-34】 차별받은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 135
【그림 Ⅲ-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 136
【그림 Ⅲ-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 138
【그림 Ⅲ-1-37】 차별받은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 139
【그림 Ⅲ-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 141
【그림 Ⅲ-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142
【그림 Ⅲ-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일 년에 1회 이상) ····· 143

【그림 Ⅲ-1-4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한 달에 1회 이상) ····· 144
【그림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148
【그림 Ⅲ-2-2】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 150
【그림 Ⅲ-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 151
【그림 Ⅲ-2-4】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153
【그림 Ⅲ-2-5】 학생회 활동_1)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 155
【그림 Ⅲ-2-6】 학생회 활동_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 157
【그림 Ⅲ-2-7】 학생회 활동_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 158
【그림 Ⅲ-2-8】 학생회 활동_4)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 160
【그림 Ⅲ-2-9】 학급회의 운영여부 ····· 162
【그림 Ⅲ-2-10】 학급회의 참여정도 ····· 163
【그림 Ⅲ-2-11】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65
【그림 Ⅲ-2-12】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 ····· 167
【그림 Ⅲ-2-13】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08~2015) ····· 169
【그림 Ⅲ-2-1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 173
【그림 Ⅲ-2-15】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 174
【그림 Ⅲ-2-16】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 176

【그림 Ⅲ-2-17】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 177
【그림 Ⅲ-2-18】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179
【그림 Ⅲ-2-19】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181
【그림 Ⅲ-2-20】 사상의 자유 보장_1)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4
【그림 Ⅲ-2-21】 사상의 자유 보장_2)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5
【그림 Ⅲ-2-22】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_3)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87
【그림 Ⅲ-2-23】 학교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 189
【그림 Ⅲ-2-24】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 191
【그림 Ⅲ-2-2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 193
【그림 Ⅲ-2-26】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194
【그림 Ⅲ-2-2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 196
【그림 Ⅲ-2-2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 197
【그림 Ⅲ-2-2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1) 용모 검사 ····· 199
【그림 Ⅲ-2-3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2) 복장 검사 ····· 200
【그림 Ⅲ-2-3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3) 소지품 검사 ····· 202
【그림 Ⅲ-2-32】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 202
【그림 Ⅲ-2-33】 개인의 정보 보호_1)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 204
【그림 Ⅲ-2-34】 개인의 정보 보호_2)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 206

【그림 Ⅲ-2-35】 개인의 정보 보호_3)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 207
【그림 Ⅲ-2-36】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215
【그림 Ⅲ-2-37】 정보제공_1)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 및 자료 제공 · 216
【그림 Ⅲ-2-38】 정보제공_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인권정보 제공 ····· 218
【그림 Ⅲ-2-39】 정보제공_3)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 기관 정보 제공 ····· 219
【그림 Ⅲ-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 (욕설) ····· 224
【그림 Ⅲ-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 (욕설) ····· 227
【그림 Ⅲ-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1) 심한 욕설이나 모욕 ····· 228
【그림 Ⅲ-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2) 폭행이나 구타 ····· 230
【그림 Ⅲ-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3) 따돌림 ····· 232
【그림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4)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233
【그림 Ⅲ-3-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1) 욕설이나 모욕 ····· 235
【그림 Ⅲ-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2) 성희롱(놀림) ····· 237
【그림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3)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 238
【그림 Ⅲ-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4) 따돌림 ····· 240
【그림 Ⅲ-3-11】 체벌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 241
【그림 Ⅲ-3-12】 체벌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243
【그림 Ⅲ-3-13】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45
【그림 Ⅲ-3-1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246

【그림 Ⅲ-3-15】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 251
【그림 Ⅲ-3-16】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2)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253
【그림 Ⅲ-3-17】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3)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55
【그림 Ⅲ-4-1】 부모님과 주중 대화시간 ····· 262
【그림 Ⅲ-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273
【그림 Ⅲ-4-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 274
【그림 Ⅲ-4-4】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276
【그림 Ⅲ-4-5】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282
【그림 Ⅲ-4-6】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
(5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285
【그림 Ⅲ-4-7】 가출을 한 주된 이유
(5개년 추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289
【그림 Ⅲ-4-8】 가출 시 이용 기관 및 서비스
(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 291
【그림 Ⅲ-4-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3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 293
【그림 Ⅲ-4-10】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297
【그림 Ⅲ-5-1】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 309
【그림 Ⅲ-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 311
【그림 Ⅲ-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 312
【그림 Ⅲ-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 314

【그림 Ⅲ-5-5】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328
【그림 Ⅲ-5-6】 운동실천율 ····· 330
【그림 Ⅲ-5-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332
【그림 Ⅲ-5-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 334
【그림 Ⅲ-5-9】 수면시간 ····· 336
【그림 Ⅲ-5-10】 수면 부족여부 ····· 338
【그림 Ⅲ-5-11】 수면 부족이유(1+2+3순위) ····· 341
【그림 Ⅲ-5-12】 비만율 추이(2011년~2015년) ····· 342
【그림 Ⅲ-5-13】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 344
【그림 Ⅲ-5-14】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 350
【그림 Ⅲ-5-15】 자신에 대한 생각_1) 외로운 적 있다 ····· 352
【그림 Ⅲ-5-16】 자신에 대한 생각_2) 불안한 적 있다 ····· 354
【그림 Ⅲ-5-1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1) 학업문제 ····· 355
【그림 Ⅲ-5-18】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 358
【그림 Ⅲ-5-19】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 360
【그림 Ⅲ-5-20】 현재 행복 정도 ····· 365
【그림 Ⅲ-5-21】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 369
【그림 Ⅲ-5-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371
【그림 Ⅲ-5-2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 373
【그림 Ⅲ-5-24】 고민을 나눌 지인 ····· 376
【그림 Ⅲ-5-25】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 380
【그림 Ⅲ-5-26】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 380
【그림 Ⅲ-5-27】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2009, 2011) ····· 381

【그림 Ⅲ-5-28】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 387
【그림 Ⅲ-6-1】 유·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연도별 추이(2010~2016) ····· 394
【그림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 ····· 395
【그림 Ⅲ-6-3】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2010~2016) ····· 398
【그림 Ⅲ-6-4】 학급당 학생 수 추이(2010~2016) ····· 399
【그림 Ⅲ-6-5】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0~2015) ····· 401
【그림 Ⅲ-6-6】 자퇴충동이유(1순위) ····· 406
【그림 Ⅲ-6-7】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 408
【그림 Ⅲ-6-8】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2)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 410
【그림 Ⅲ-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412
【그림 Ⅲ-6-10】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419
【그림 Ⅲ-6-11】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 421
【그림 Ⅲ-6-12】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 423
【그림 Ⅲ-6-13】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 424
【그림 Ⅲ-6-14】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절차 ····· 427
【그림 Ⅲ-6-15】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 431
【그림 Ⅲ-6-16】 최근 1년간 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 ····· 439
【그림 Ⅲ-6-17】 동아리 활동여부 ····· 441
【그림 Ⅲ-6-18】 평일 여가 시간(3시간 이상) ····· 443
【그림 Ⅲ-6-19】 정규 수업시간 제외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 445
【그림 Ⅲ-6-20】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 448

【그림 Ⅲ-6-21】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 450
【그림 Ⅲ-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468
【그림 Ⅲ-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475
【그림 Ⅲ-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9/2014) ····· 476
【그림 Ⅲ-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 478
【그림 Ⅲ-7-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 480
【그림 Ⅲ-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 ····· 482
【그림 Ⅲ-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84
【그림 Ⅲ-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한 해고 ····· 486
【그림 Ⅲ-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 ····· 488
【그림 Ⅲ-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 ····· 490
【그림 Ⅲ-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 ····· 492
【그림 Ⅲ-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 경험 여부 ····· 494
【그림 Ⅲ-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 ····· 496
【그림 Ⅲ-7-14】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504
【그림 Ⅲ-7-15】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506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Ⅰ 장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상황을 반복 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협약 전반을 아우르는 인권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두 단계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Ⅵ)'가 그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를 통해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발전시켜 왔고 2013년도에는 현재의 조사시스템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결과를 매년 생산하여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3).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Ⅵ)'의 마지막 해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도 인권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3명 정도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가장 큰 원인이 학업성적(43.6%)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하지 않은 경우 가장 큰 이유도 학업부담(31.0%)이었다. 10명 중 2~3명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생활환경(교통사고, 범죄 등)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58.1%에 불과했고 절반 정도의 청소년은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은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하루 3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이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고 폭력과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에 도움을 주는 여가시간은 불충분한 상황인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시스템이나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세부 집단별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가출, 폭력, 장애, 입양, 저소득층, 난민 등) 더욱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사항으로 권고받은 과제들의 이행 노력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2.70점(5점 만점)을 부여하고 있듯이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김영지, 김희진, 2015: 10).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기반한 개선 방향과 인권정책과제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및 추이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하고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4).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며 이러한 현황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2016년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Ⅵ)' 마지막 해 연구로서, 6년간 생산된 주요 자료들(조사도구 변화추이, 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발표되며,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생산된 실태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진전상황을 담아야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먼저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내용 정리를 위해 1기(2006~2010)와 2기(2011~2016)를 포함한 인권실태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과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 (2006 ~ 2010)	1차년도 (2006년)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I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안) 개발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 등 5개 영역 152개 지표)
	2차년도 (2007년)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II → 1차년도에 개발한 지표항목별 조사도구 개발
	3차년도 (2008년)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III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인권실태 국제비교
	4차년도 (2009년)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IV → 2개 영역(생존권·보호권) 1차년도 조사 ※ 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1호(2009. 6.24. 고시)
	5차년도 (2010년)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2개 영역(발달권·참여권) 1차년도 조사
2기 (2011 ~ 2016)	1차년도 (2011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I → 2개 영역(생존권·보호권) 2차년도 조사 ※ 보고서 집필목차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5개 영역으로 체계 재구성, 136개 지표
	2차년도 (2012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II → 2개 영역(발달권·참여권) 2차년도 조사
	3차년도 (2013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III : 인권실태 통합조사** 1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체계에 기초한 도구 개발 및 조사 ② 2009년 이후 조사된 지표 중 일치하는 문항과 비교·분석 ③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데이터분석보고서 작성 •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 요인 ※ 지표체계 체계화 및 이론적 토대 마련 : 6개 영역 130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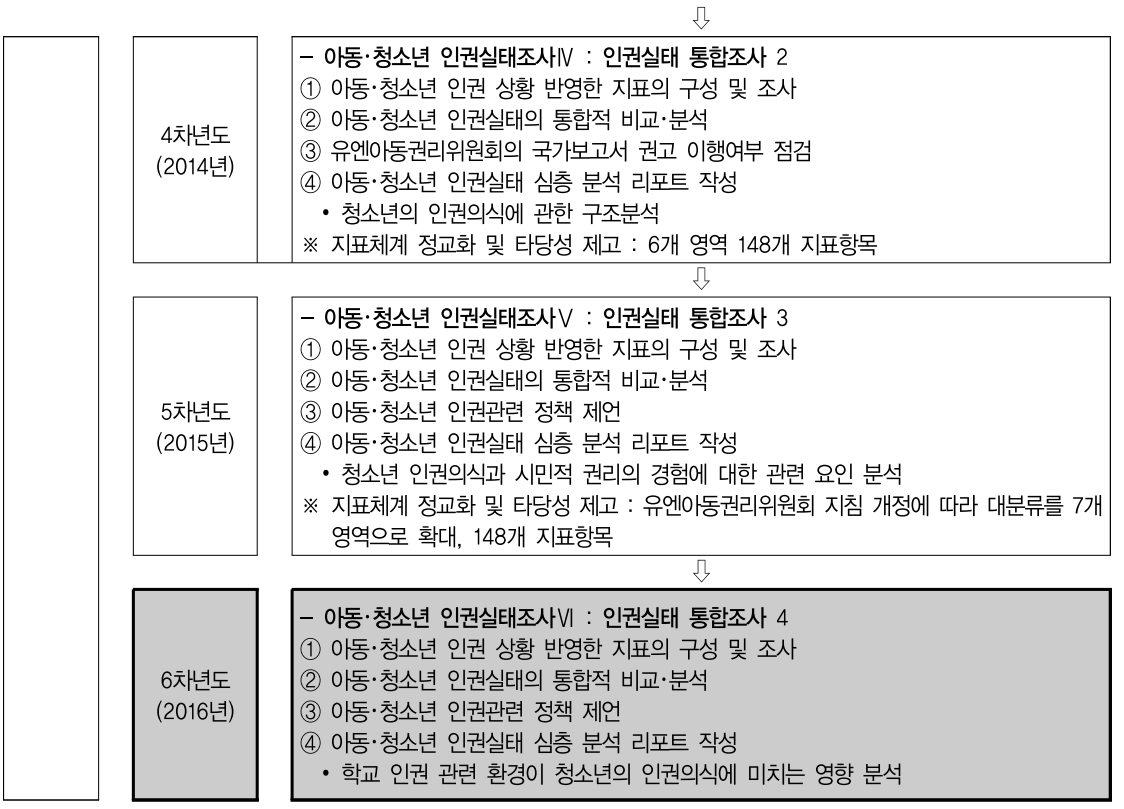

【그림 Ⅰ-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조사도구 검토·보완

2015년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체계 보완 작업을 통해 지표 영역을 2014년도 6개에서 7개로 변경하고 지표항목 재구성 및 보완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16년에도 지표체계와 조사도구 검토 작업을 실시한 결과, 큰 틀의 지표체계(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7개 소분류(지표) - 148개 지표항목)는 유지하기로 하고 지표항목별 통계자료원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문항 일부를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보완사항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의 선택지 보완,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 추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추가(초등용) 등이다.

(2) 지표결과 생산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영역에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60개 지표항목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나머지 88개는 행정통계 및 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도 결과를 분석하고 2013년 이후 인권실태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타분야 조사통계로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의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3)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더불어 협약이행 국제적 모니터링을 앞두고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아이템을 검토하여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틀을 정비한 2013년도 이래 인권지표 대분류 영역별로 1~3개 정도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절차, 관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개의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매년 중복되지 않은 과제 아이템을 제안해야 하므로 정책 중요도 고려와 중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 과제 설정 및 점검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2013년도부터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를 보강하고자 데이터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론적·학술적 의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논문을 통해 심층적인 인권실태 분석(영향요인, 인과관계 등)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자들의 인권실태 데이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7). 인권실태 조사도구는 최초 개발 당시 기초실태 파악용으로 설계되어 심층 분석을 위한 문항이 부족함에

따라 2013년도에 심층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일부 보완하여 매년 1~2건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분석함으로써 인권관련 분석 주제를 발굴하는 의미도 있었다. 2016년도에는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연구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국제문서,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과 이슈 관련 보도자료 및 연구 발간물,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법령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추진 방향 및 세부 연구문제와 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설문조사 도구 보완, 통계청 승인통계 관리 및 발전 방안,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인권영역별 사회적 동향과 이슈 등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 추진에 참고하였다.

(3) 설문조사

조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60개 지표항목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9,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5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추출하며,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하였다(표본설계 등 설문조사 관련 세부내용은 별권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16-R11-2)' 보고서 참고).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추이 비교를 위해 매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9,500명(초등학교: 3,100명, 중학교: 3,200명, 고등학교: 3,200명)을 목표 표본수로 결정하였다.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이다. 본 조사의 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 크기와 목표표본 크기는 <표 I -2-1>과 같다.

본 인권실태조사는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지역별, 교급별 할당에 따라 특정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변형비례방식을 적용하였다. 변형비례배분은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 × 학교급 = 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하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9,500명을 넘도록 하였다.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을 보면 <표 I -2-2>와 같다.

표 I -2-1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100 (32.6%)		3,120 (32.2%)	
		5	449,931						
		6	468,076						
중학교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200 (33.7%)		3,276 (33.8%)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1,775,690 (37.9%)	2,267 (23.9%)	3,200 (33.7%)	2,139 (22.1%)	3,282 (33.9%)
		2	416,588						
		3	431,421						
	자율고	1	46,937	139,604 (3.0%)		252 (2.6%)		465 (4.8%)	
		2	46,001						
		3	46,666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629 (6.6%)		546 (5.6%)	
		2	115,439						
		3	118,187						
	특수 목적고	1	10,121	29,022 (0.6%)		52 (0.6%)		132 (1.4%)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500 (100.0%)		9,678 (100.0%)	

* 출처: 이 표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한 과제들에 공통으로 수록함.

표 Ⅰ-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80	546	279	93	156	132	24(8)	21(7)	9(3)	3(1)	6(2)	6(2)
경기	780	858	558	93	78		39(13)	33(11)	18(6)	3(1)	3(1)	
인천	180	156	93				9(3)	6(2)	3(1)			
강원	120	78	93	93	78		6(2)	3(1)	3(1)	3(1)	3(1)	
충북	120	78	93				6(2)	3(1)	3(1)			
충남	120	156	93				6(2)	6(2)	3(1)			
대전	120	78	93				6(2)	3(1)	3(1)			
경북	120	156	93	93	156		6(2)	6(2)	3(1)	3(1)	6(2)	
경남	240	234	93				12(4)	9(3)	3(1)			
부산	180	234	93				9(3)	9(3)	3(1)			
대구	180	156	93				9(3)	6(2)	3(1)			
울산	60	78	93				3(1)	3(1)	3(1)			
전북	120	156	93	93	78		6(2)	6(2)	3(1)	3(1)	3(1)	
전남	120	156	93				6(2)	6(2)	3(1)			
광주	120	78	93				6(2)	3(1)	3(1)			
제주	60	78	93				3(1)	3(1)	3(1)			
합계	3,120	3,276	2,139	465	546	132	156(52)	126(42)	69(23)	15(5)	21(7)	6(2)

* 주: 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2) 학생수 총계: 9,678명. 학교수 총계: 393(131)개

* 출처: 이 표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한 과제들에 공통으로 수록함.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고는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자율고는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가사·공업·농림업·상업·실업·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포함되며,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 시에는 고등학교 유형을 크게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통계표에도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로 지칭하였는데, '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개념을 담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특성화계고'는 본 표본설계 상 '특성화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 체육,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를 포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더 큰 개념의 포괄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수는 <표 Ⅰ-2-3>과 같다. 표본 설계 시 예상했던 것보다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어 조사완료된 표본 수가 할당 표본 수보다 약간 많게 나타났다.

표 Ⅰ-2-3 2016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대상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학생	자율고 학생	특성화고 학생	특수목적고 학생	계
할당 표본 수	3,120	3,276	2,139	465	546	132	9,678
조사완료 표본 수	3,170	3,741	2,990	333	830	68	11,132

최종적으로 총 11,132명의 학생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남학생이 5,793명(52.0%), 여학생이 5,339명(48.0%)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170명(28.5%), 중학생이 3,741명(33.6%), 일반계고(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3,391명(30.5%), 특성화계고 학생이 830명(7.5%)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학생이 4,473명(40.2%), 중·소도시지역 학생이 5,295명(47.6%), 읍·면지역 학생이 1,364명(12.3%)이었다. 가족유형은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9,988명(89.7%),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821명(7.4%), 조손가정의 학생이 108명(1.0%)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87명(32.4%),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731명(42.7%),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769명(25.0%)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5,768명(52.1%), '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3,973명(35.9%),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340명(12.1%)이었다.

표 Ⅰ-2-4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1,132	100.0
성별	남자	5,793	52.0
	여자	5,339	48.0
학교유형	초등학교	3,170	28.5
	중학교	3,741	33.6
	일반계고	3,391	30.5
	특성화계고	830	7.5
지역규모	대도시	4,473	40.2
	중소도시	5,295	47.6
	읍면지역	1,364	12.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988	89.7
	한부모가정	821	7.4
	조손가정	108	1.0
	기타	216	1.9
학업성적	상	3,587	32.4
	중	4,731	42.7
	하	2,769	25.0
경제적 수준	상	5,768	52.1
	중	3,973	35.9
	하	1,340	12.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항목은 <표 Ⅰ-2-5>와 같다. 148개 인권지표항목 중 60개 항목에 대해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학교 포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문항의 선택지 보완, 체벌 경험에 학원 체벌 추가, 초등학생의 참여기구 인지도 및 경험 추가 등의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조사도구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종으로 개발하였다.

표 Ⅰ-2-5 2016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 항목

조사 내용			문항 번호 (신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33(1~3)	41(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41(1~5)	43(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35(1) 35(2) – 35(3) – 35(4) 35(5)	44(1) 44(2) 44(3) 44(4) 44(5) 44(6) 44(7)
		인권교육 경험	16	17
		인권교육 받은 기관	16-1	17-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6-2	17-2
	일반원칙	차별 가해 경험	36(1~10)	45(1~10)
		차별 피해 경험	37(1~10)	46(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7(1~4)	18(1~4)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30(1-4)
		학급회의 운영 여부	30	32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30-1	32-1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1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8(1)	33(1)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초등)	29	35 *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37
		참여권 보장 수준	31	38
		참여 장애 이유	32	3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38(2~4)	40(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34,34-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38(1)	40(1)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신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36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36–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29(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33(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8(2)	33(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8(3)	33(4)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8(4)	33(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4(1~3)	42(1~3)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0(2,4,6)	21(2,4,6)
		폭력피해 경험	21(1~7)	22(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2(1~5)	23(1~5)
		체벌 경험률 * ('16년 학원체벌 추가)	20(1,3,5)	21(1,3,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18(1~5)	19(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9	20
		가출 이유	19–1	20–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20–2,20–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4 40(1~3)	4 49(1~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6	6
		운동 실천율	5	5
		아침식사 결식률	3	3
		아침식사 결식이유	3–1	3–1
		수면시간	1	1
		수면부족여부	2	2
		수면부족 이유	2–1	2–1
		자살에 대한 생각	–	8
		자살 생각 이유	–	8–1
		우울감	9(1~3)	10(1~3)
		자아존중감	9(4~7)	10(4~7)
		스트레스 인지율	7(1~6)	7(1~6)
		행복도	10	1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0–1	11–1
		삶의 수준	11	12
		고민거리 대화상대	8	9
6.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13	14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신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업포기 생각 이유 * (선택지 보완)	13-1	14-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14(1~4)	15(1~4)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15(1~4)	16(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3	24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25	26
		동아리활동 참가율	26	27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25
		하루평균학습시간	12	13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3-1	24-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27	28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47,47-1(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9	48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39-1	48-1

(4) 정책개발 관련 청소년 및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로 한국정부의 이행여부와 이행중요도 등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학계 20명, 현장 13명 등 총 33명).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로 부처별 이행실적 자료를 제시하고 권고사항 이행정도와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이행정도(0~5점)에 대해서는 평균 2.56점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중요도(1~5점)는 평균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103개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이행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인권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는 9월 중 1차 개발된 정책과제풀에 대해 여성가족부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원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기재하고 추가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여 총 14명의 응답을 취합하였고, 정책과제 발굴 시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

(5)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발전,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현장 동향 파악 및 인권이슈 논의, 아동·청소년 자치모임 운영 현황 파악, 인권정책 개발 아이디어 논의 등을 위해 청소년, 학계, 현장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실태 분석 워크숍(6.27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아동의 삶의 질 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체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등 공유 및 논의), 인권 동향 파악 워크숍(7.26일, 지역교육청 인권사업(서울, 경기, 광주), 자치단체 인권사업(서울시), 한국인권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청소년 워크숍(8.11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참여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9.22일, 학계 및 현장전문가 5인) 등을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관련 부처의 정책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Ⅱ 장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인권동향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 :
   2011~2015 인권지표 결과
3.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동향

제 II 장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인권동향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3년에 지표체계 전면 보완작업을 수행하면서 정리한 이론적 기반의 후속 작업 성격으로 2013년도의 지표영역별 이론적 논의의 흐름을 공유한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30). 이 연구는 6개년 연속과제의 마지막 해 연구로서 특히 2013년도부터 인권지표체계와 조사체계를 정비한 후 그 틀을 매년 유지하여 추이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지표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지표항목 설명은 중복하여 소개하지 않는다(2013년과 2015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Ⅱ장 참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을 고려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을 중요한 지표틀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 결과 그 성과와 진전상황을 담는 것이므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사실상 인권실태 점검을 위한 기준이자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 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김영지 외, 2015: 2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주요 기반이 되는 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3개 선택의정서[3)],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호~20호, 유니세프 등 국제 민간단체의 협약 해설서,

---

2) 이 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3)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the involvement of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1996, 2005, 2010, 2015) 등이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67). 특히 그 중에 정책기여도를 고려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CRC/C/58/Rev.3)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로 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구성내용과 인권지표체계 구성표는 <표 Ⅱ-1-1>과 같다. 협약 영역 중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등은 다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약의 기본 원칙으로서 다른 모든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되는 조항으로서 인권지표체계에서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로 구성하였고, 다른 영역들은 각각 하나의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로 매치된다. 협약조항 하단의 일반논평이나 결의안 등은 해당 영역을 이행하고 이행성과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Ⅱ-1-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4]의 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협약 4, 42, 44(6)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 (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 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CP)

4)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2015.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5년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Ⅱ-1-2>와 같다. 2016년도 인권지표는 '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7개 소분류(지표) - 148개 지표항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는 1영역 인권일반 12개,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개, 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6개, 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32개,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21개, 7영역 특별보호조치 32개 등이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63).

표 Ⅱ-1-2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발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1-2-1-2. 차별받은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 등)
			3-1-1-2. 폭력피해 경험*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3-2-1-4. 방임유형 및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수준(2015추가문항)*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2015 신규추가) ※ 2013년도 조사문항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혁신학교 운영수
			6-2-2-2. 혁신학교 운영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	7-3-1.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경제적 착취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 : 2011~2015 인권지표 결과[5)]

이 절에서는 2016년도 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11년(일부 지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흐름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추이 결과에 따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5)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유설희 전문연구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김진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내용을, 유설희 전문연구원은 '대분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을, 그리고 이민희 교수는'대분류 3. 폭력 및 학대'와'대분류 6.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관련 내용을, 김진호 교수는'대분류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대분류 7. 특별보호조치'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도와 인권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을 위한 기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전담팀과 전담 소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발전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평가를 담당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2012년 3.1%,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9%로 최근 소폭 감소하였다.

'인권에 대한 인지도'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인권의식 및 태도'의 3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여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2013년 13.1%에서 2014년 15.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4.4%로 다시 감소하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 16.5%, 2014년 13.0%, 2015년 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또한 2013년 17.6%, 2014년 17.3%, 2015년 1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었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는 가정, 학교,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2013년 90.1%, 2014년 92.9%, 2015년 94.5%로,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에서의 비율도 2013년 81.1%, 2014년 86.3%, 2015년 89.1%로, 우리나라 전체의 비율도 2013년 67.6%, 2014년 70.8%, 2015년 74.2%로, 사이버공간의 비율도 2014년 76.2%, 2015년 79.3%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은 가정이고 그 다음으로 지역, 학교, 사이버공간, 우리나라 전체의 순이었다.

'인권의식 및 태도'는 6가지 인권 상황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먼저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의 응답률은 2013년 31.7%, 2014년 30.2%, 2015년 32.2%로 감소했다가 소폭 증가하였고,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의 응답률은 2013년

80.1%, 2014년 83.3%, 2015년 82.8%로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다섯 가지 항목은 모두 지속적으로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 65.5%, 2014년 76.9%, 2015년 80.1%로,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응답률은 2013년 90.8%, 2014년 93.4%, 2015년 94.0%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응답률은 2013년 92.6%, 2014년 95.0%, 2015년 95.5%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응답률은 2013년 91.7%, 2014년 93.5%, 2015년 93.9%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의 응답률은 2013년 85.7%, 2014년 89.9%, 2015년 90.3%로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인권교육' 지표는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받은 기관',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의 3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교육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1회~5회 이상)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4.4%, 2014년 64.4%, 2015년 6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학교 정규 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등 4개의 항목 중에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정규 교과시간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 정규 교과시간은 2013년 59.6%, 2014년 59.7%, 2015년 62.8%로 증가하였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3년 37.5%에서 2014년 35.6%로 감소했다가 2015년 36.5%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2013년 19.0%, 2014년 17.3%, 2015년 15.6%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그 교육에 대해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71.1%에서 2014년 71.8%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5년 70.6%로 감소하였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더 높은 만족도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이고 질높은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일반원칙

'차별 경험률'지표는 '차별해 본 경험', '차별받은 경험'의 2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차별해 본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에 따른 차별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하고 1년에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가해경험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이 2014년에는 학업성적(28.4%), 2015년에는 성별(21.5%)이었고,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모든 조항의 응답률이 감소하였다.

'차별받은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하고 1년에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피해경험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학업성적인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35.0% → 30.5% → 24.1%). 종교와 가족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수치가 2013년 이후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지표는 네 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즉,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는지를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 가지 경우 모두의 수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참여도가 가장 높았는데 2012년 83.1%에서 2015년 90.6%까지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지표는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의 5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는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해 주는지,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주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가 3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해 준다(28.3%),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25.7%),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18.8%)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의 수치가 지속적인 감소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항목인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의 경우 2012년 22.1%에서 2013년 14.5%로 감소, 2014년 20.4%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18.8%로 다시 감소하였다.

'학급회의 운영 여부'는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는데 2014년 56.1%, 2015년 61.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는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는데 2014년 84.2%에서 2015년 82.6%로 감소하였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참여가능하고 발언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는데 2012년 16.1%에서 2013년 18.1%, 2014년 19.6%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8.8%로 감소하였다.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는데 2012년 47.2%에서 2015년 6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지표는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의 4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 등으로 산출되었다. 청소년 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은 2011년 87.8%에서 2012년 91.0%, 2013년 96.5%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0.3%로 다시 감소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1년 175개에서 2012년 186개, 2013년 189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1년 286개에서 2012년 305개로 증가한 이후 2015년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다'와 '잘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다'의 응답을 합산하여 인지도를 산출하였다.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2012년 17.2%에서 2013년 9.3%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6%, 2015년 12.6%로 증가하였다. 참여기구 활동경험은 2012년 4.1%에서 2013년 2.1%로, 2014년 1.8%로 감소했다가 2015년 2.4%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수치는 여전히 아주 낮은 수치이다.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은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네 가지 응답 중에 선택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33.0%에서 2015년 24.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45.3%에서 2013년 53.0%로 증가, 2014년 53.0% 동일, 2015년 52.4%로 소폭 감소하였다.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6.2%에서 2013년 6.7%, 2014년 6.6%, 2015년 7.9%로 증가하였다.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관련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51.6%에서 2014년 58.7%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58.1%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참여 장애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시간부족(35.2%)이었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1.3%),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15.8%), 참여할만한 기회나 방법의 부재(14.0%), 부모님의 반대(2.2%), 학교의 반대(1.5%)의 순이었다. 시간부족의 경우 2013년 31.5%에서 2014년 32.0%, 2015년 3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은 2013년 35.7%에서 2014년 34.2%, 2015년 3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의 응답과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세 영역들 중에 가정(87.3%)에서의 보장정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78.1%),

사회(62.9%) 순이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보장정도 모두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지표는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의 2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종교재단인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28.6%에서 2015년 46.1%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는 종교재단인 학교의 표본수가 많지가 않아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74.2%에서 2015년에 75.2%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지표는 '결사·집회 경험률',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의 2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사·집회 경험률'은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가끔 있다와 자주있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비율은 2012년 19.6%에서 2013년 20.1%로 증가했다가 2014년 16.3%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5년에 17.0%로 소폭 증가하였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비율은 2012년 10.8%에서 2013년 8.1%, 2014년 7.2%, 2015년 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4) 사생활의 보호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하고 1년에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용모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5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복장 검사가 43.6%, 소지품 검사가 17.8%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용모 검사는 2013년 56.1%에서 2014년 57.9%로 증가했다가

2015년 50.7%로 감소하였고, 복장 검사는 2013년 52.5%에서 2014년 53.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6%로 감소하였으며, 소지품 검사는 2013년 17.0%에서 2014년 23.2%로 증가했다가 2015년 17.8%로 감소하였다.

'학생 정보 보호정도' 지표는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의 3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는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0.1%에서 2013년 18.1%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 1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는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7.1%에서 2013년 31.5%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 26.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는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0.5%에서 2013년 29.1%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 23.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5) 정보접근권

'매체 접근율'지표는 '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이용률',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의 3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매체 이용률'은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SNS 이용률, 스마트폰 이용 현황,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독서율 등의 통계 수치를 통해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 10대 청소년은 2011년 1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4.5시간에 이르렀다. SNS 이용률은 블로그,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블로그 등의 이용에 대해 복수응답을 한 수치로서, 6-19세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은 2013년 20.4%, 2014년 19.8%, 2015년 20.1%로 나타났고, 프로필 기반 서비스(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는 2013년 93.7%, 2014년 94.2%, 2015년 87.9%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현황은 2011년(38.2%)과 2012년(36.7%)에는 문자메시지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3년(86.8%)과 2014년(85.6%)에는 채팅과 메신저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12~19세)의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1년 2시간 7분에서 2014년 3시간 5분으로 증가하였

고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2014년 기준 55.4%로 가장 높았다. 독서율은 성인의 경우 2011년 66.8에서 2013년 71.4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65.3으로 감소하였는데 학생의 경우 2011년 83.8에서 2013년 96.0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94.9로 감소하였다.

'유해매체 이용률'은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과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로 산출하였다. 2014년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우는 65.5%였다. 성인용 간행물('11년 41.1% → '14년 34.1%)과 컴퓨터 성인물('11년 37.3% → 26.0%) 이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케이블TV('11년 14.8% → '14년 42.7%)와 휴대폰 성인물('11년 12.3% → '14년 52.6%) 이용률은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은 총 신간 발행 부수에서 아동 신간 발행 부수가 차지하는 점유율, 2011년 34.42%에서 2012년 30.5%, 2013년 28.74%, 2014년 27.79%, 2015년 19.8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정도'지표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의 2개의 세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는 설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5.0%에서 2013년 79.7%, 2014년 80.8%, 2015년 83.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는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라는 세 가지 설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22.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청소년 인권정보(15.1%)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제공 정도는 2012년 22.1%에서 2013년 23.6%, 2014년 24.2%로 증가했다가 2015년 22.4%로 감소하였고, 아동·청소년 인권정보제공 정도는 2012년 9.3%에서 2013년 13.3%, 2014년 17.1%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1%로 감소하였으며, 상담·구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는 2012년 34.5%에서 2013년 34.7%로 증가했다가 2014년 27.8%, 2015년 25.5%로 감소하였다.

3) 폭력 및 학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지표인 '폭력 및 학대'는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제39조)의 두 가지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된다. 두 지표들은 다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먼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중분류 지표는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의 두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중분류 지표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두 소분류 지표들이 채택되었다. 아래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폭력 및 학대 지표의 각 중·소분류 지표들에 따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중심으로 2011~2015년간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폭력 경험률' 지표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모욕적인 말, 욕설 등)',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의 세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학대 경험률은 부모님, 학교 교사, 선후배와 친구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하여 얻은 수치들로 지표 변화의 추이가 작성되었다.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2011년 응답학생의 38.4%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29.8%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로부터의 같은 내용의 경험도 2011년 30%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5년에는 18.4%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모욕적 언사 경험도 마찬가지로 2011년 21%에서 2015년 14.3%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노력들과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의 결과로 이루어진 변화로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폭력피해 경험은 주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의 갈취, 협박, 강제적 심부름,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경험을 설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2011년 이후 학교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은 2011년 3.3%, 2013년 3.5%, 2014년 2.7%, 2015년 3.3%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데 이는 정부가 학교폭력을 우리 사회의 '4대악' 중

하나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추방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성교육의 미흡과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로부터의 선정적인 동영상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불온한 성적 자극을 많이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경험률의 세부지표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 중에서 욕설이나 모욕의 경험과 따돌림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학교에서의 폭력 추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1년 43.6%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5년에는 15.8%로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경험도 2013년 3.4%에서 2015년 1.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노출의 피해 경험은 2011년 4.9%, 2013년 4.4%, 2014년 6.6%, 2015년 5.0%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데, 독일의 2014년도 JIM[6]-Studie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전체 청소년 중에서 17%가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4%는 자신들의 모욕적이고 불쾌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본인들의 허락 없이 사이버 상에 유포되는 피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의 12%에서 증가된 수치여서 독일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노출의 폭력 피해 경험이 심각한 상황이다(MPFS, 2014: 40). 특히,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은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폭력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도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분류 지표 '체벌 경험률'은 같은 이름의 '체벌 경험률' 하나가 세부지표로 속해있는데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응답학생들이 연 1회 부모님과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 여부를 묻고 있다. 응답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은 2011년 39.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24.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로부터의 체벌도 2011년 38.4%에서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18.5%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체벌이 학교에서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8항(학생의 징계 등)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6)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 청소년, 정보, (멀티)미디어의 약칭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체벌이 학교에 실재하고 있는 상황은 보수적 성향의 교육청들이 아직도 체벌금지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용의 촉구와 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의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소분류 인권지표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유형 및 정도'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건수로 지표를 측정하였다. 이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0,146건에서 점차 증가되어 2014년에는 17,782건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대의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방임도 학대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체적 학대는 2012년 28.8%에서 점차 증가되어 2014년에 36.9%로, 정서적 학대는 30.9%에서 40.0%로, 성적 학대와 방임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여 각각 4.5%에서 2.9%, 28.7%에서 20.3%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 학대와 방임에 관한 측정결과가 감소세로 나타난 것은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후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방임사례의 감소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결과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경각심의 확산으로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학대가 점차 밖으로 드러나는 추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와 학대 피해경험 아동에게 반복해서 가해지는 재학대 경험률에 있어서는 2013년과 2014년 통계에서 중복학대는 43.0%에서 48%로 증가했으나, 재학대 발생률은 14.4%에서 10.2%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복학대가 증가한 추이는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

고 있고, 재학대 발생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1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그 간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들을 통해 국민인식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신고의무자 직군을 24개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장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아동학대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에 대한 방임유형 및 정도는 연1회 이상 밤늦게 홀로 집을 보는 경험, 불결한 옷과 이부자리 사용 경험, 질병발생 시 부모의 방치 경험, 결식 시 부모의 무관심 경험, 학교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경험 비율을 통해 측정되었다. 밤늦게 홀로 집을 보는 경험은 2011년 49.3%에서 2015년 66.4%로, 옷이나 이부자리 불결 경험은 2011년 5.5%에서 2015년 15.4%로, 결식 시 부모의 무관심 경험은 5.5%에서 9.0%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 발생 시 부모로부터 방치된 경험은 2011년 8.9%에서 2015년 7.4%로,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경험은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1.7%로 각각 근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사회적으로 부모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아동들에 대한 방임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나마 의료보험체계가 잘되어 있고, 최근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결석 관리가 철저해짐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 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6,05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11년 44개소에서 2014년 51개소로 7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됨으로 피해아동의 보호건수가 3년 동안 6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응한 관련 시설의 증가는 3년간 고작 7개 아동보호기관이 증가하여 1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피해에 따른 시설 확보에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늘려가고, 민간기관의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실태에 시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향후 아동학대를 상담하는 인력의 양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세부지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2011년 평균 36.8건에서 2014년에는 66.5건으로 3년간 80%나 증가하여 아동보호인력의 확보도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정부가 힘써야 할 사항이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세부지표 중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에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건수와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로 지표가 측정되었다. 먼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건수는 2011년 393,623건에서 2014년에는 488,401건으로 24%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어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에서는 원가정 보호와 분리보호, 사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복귀만 2011년 6.8%에서 2014년 7.3%로 다소 증가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3년간 변동이 거의 없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조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와 민간 모두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및 학대 영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 대분류로 지정함에 2015년도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분류에 있어서도 '폭력 및 학대'라는 지표명이 새롭게 대분류로 지정되었다. 이는 국내외적인 동향에 비추어보아 매우 시의 적절한 지표의 분류이자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이미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그의 심각성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아동학대 또한 그동안 가려져 있던 폭력의 사각지대였던 영역이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이 수면으로 떠올라 사회적 이슈로 점차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의 2011~2014년간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간략히 평가하자면 먼저 '폭력'은 주로 청소년들의 폭력 경험률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률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청소년폭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4대악' 중 하나로 근절대상으로 규정되어 정부와 민간이 다각도로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간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근본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폭력에 관한 통제를 피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추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대'에 있어서는 주로 아동에 관한 학대 및 방임이 지표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전반적으로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정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견주어 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고 최근 아동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와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지표들도 체계화되고 실천 현장에서도 관련 실태가 정밀하게 조사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들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 평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와 민간이 분주하기는 하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열악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빈곤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지표인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 가지 중분류 지표들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중분류 지표는 다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 지표는 '부모와의 관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분류 지표와 관련해서는 '입양률', '대안양육 비율', '가출청소년 서비스 이용율'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었고, 중분류 지표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는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이라는 단일 소분류 지표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지표의 각 중·소분류 지표들에 따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중심으로 2011~2015년간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부모와의 관계' 지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 및 '부모와의 관계의 질'의 두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부모와 주중에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2011년 조사결과인 34.6%에 비해 2014년에는 42.5%로 상승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고등학생이 자신의 삶에 더 만족감을 느끼며(장혜주, 임지영, 2013),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소희, 2013)는 연구결과를 볼 때, 최근 경제적 어려움, 실업,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및 가정 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보다 학교와 학원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의 증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부모의 공감이 증가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느낀다(채경선, 황현주, 2014)는 연구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질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시간의 양을 늘이기 보다는 다양한 대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분류 지표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는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세부지표들의 최근 4년 간 지표 추이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보호자가 집에 없는 비율이 2011년 조사결과 42.8%보다 2014년에 35.2%로 감소하여,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수준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 수는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도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약 4만 3천여 명이 감소하였다('14년 1,496,671명 → '15년 1,452,813명). 또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11년 7.5명 → '15년 4.5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 보육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에 보육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와 원장 간 역할 명확화를 통해 업무 집중 문제 해소, 부모 참여 및 협조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하였다(서울시, 2015.7.16.).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교사는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입양률'은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와 '입양에 대한 의식',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로 구성되었다. 먼저 국내외 입양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464명에서 2013년 9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1,17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 간 출생 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3년에 시행되면서 입양을 신청하는 양친부모의 자격이 강화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진 점이 국내외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녀출산이 어렵거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입양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2012년 42.5%에서 37.2%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입양 가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안양육 비율'은 '요보호아동 현황'및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의 세부지표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을 말한다. 이러한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483명에서 2015년 4,50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아동 수도 감소('11년 15,486명 → '15년 13,728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안양육이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는 바람직하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또한 가정위탁을 수행하는 보호자 및 위탁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

소분류 지표인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율'은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와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가출시 서비스 이용'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13,210명에서 2013년 11,279명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의 최근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가출경험율이 점차 감소('11년 5.5% → '15년 3.5%)하는 경향을 비교해 볼 때, 전체 가출청소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출시 관련 기관의 서비스 이용율은 2011년 10.8%에서 2013년과 2014년 6.3%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11.1%로 다시 상승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이 보호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출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가 요구되며, 가출청소년이 안전한 보호체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경향신문, 2015.9.27.).

(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지표는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보호·양육시설 예산'및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의 세 가지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표에 대한 수치비교는 불가능하나 평가영역의 내용에 대해 비교해볼 수 있다. 2013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6년에 진행될 평가에서는 대부분 2013년도 평가지표를 유지하지만 일부 지표들이 수정되거나 추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보호·양육시설의 예산의 경우, 2011년 81,759백만 원에서 2015년 120,823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 및 양육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연도별 지표값 추이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대안양육 비율,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된

지표값은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입양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음을 보였다. 가정은 아동·청소년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 및 양육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나 제도, 지원 등은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양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요구된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지표인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는 '장애'(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보건서비스'(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의 다섯 개의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된다. 다섯 개의 지표들은 다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먼저 '장애' 중분류 지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이라는 하나의 소분류 지표를 채택하고 있고, '생존 및 발달' 중분류 지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의 두 가지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보건서비스' 중분류 지표는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과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등 3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중분류 지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3가지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 지표는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이라는 두 개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부분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소분류 지표들 중에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중심으로 2011~2015년간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지표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특수학교 재학생 비율은 2011년에 29.9%에서 2012년에는 29.3%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로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년대비 특수학교 재학생 비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일반학교 재학생 비율은 2011년에 70.1%에서 2012년에는 70.7%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년대비 일반학교 재학생 비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82,665명)부터 2014년(87,278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수도 2011년 155개에서 2014년 166개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수학급수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수도 2011년 15,934명에서 2014년 17,92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고등학교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은 2011년 29.9%에서 2014년 54.8%로 증가하였으며, 특수학교의 고등학교과정 졸업생의 취업률 역시 2011년 14.7%에서 2014년 2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존 및 발달

'사망률' 지표는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 사망률'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81.20세에서 2013년 81.94세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011년 77.65세에서 2013년 78.51세로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2011년 84.45세에서 20913년 85.06세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을 살펴보면, 영아사망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 3.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 평균수치인 4.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2011년 3.4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2011년 2.7명에서 2013년 2.9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부터 24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의 경우 0세의 사망률과 15세~19세 청소년의 사망률에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고사망률'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0세와 20~29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세의 경우에는 2012년에 소폭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2014년까지 꾸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0~19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사망률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인구10만명당 10~19세 청소년의 자살사망자수는 2011년의 경우 5.5명에서 2014년의 경우 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률' 지표는 '범죄 피해율', '안전에 대한 인식률' 등 두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범죄피해율'을 살펴보면, 인구 1천명당 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은 2011년에 11.0명에서 2012년에 19.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17.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은 청소년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1년에 78.9%에서 2013년에 89.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범죄와 교통사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에 63.7%에서 2012년에 56.8%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에 55.7%에서 2012년 52.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서비스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 지표는 '보건교사 배치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비율',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학교 수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 65.4%에서 2014년 67.6%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은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2011년~2015년까지의 추세를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등으로 구분해서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비율보다는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수'로 지표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천식에 초점을 두어서 추세를 분석하였다. 우선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의 경우에는 2011년에 9.7%에서 2013년 10.0%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천식유병률은 1~11세의 경우 2011년에 8.3%에서 2013년 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18세의 경우에는 2011년 3.3%에서 2.13년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지표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선 1~18세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의 경우에는 2011년에 45.2%에서 2013년에 4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세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1년에 7.2%에서 2013년에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8세 아동·청소년의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2011년에 19.3%에서 2013년에 1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세 아동·청소년의 2주간 약국 이용률은 2011년에 27.1%에서 2013년에 25.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지표는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율',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등 네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1년에 12.1%에서 2014년 9.1%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율'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음주율은 2011년 20.6%에서 2014년 16.4%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 약물 사용율'을 살펴보면 평생약물 경험률은 2011년에 0.7%에서 2014년 0.5%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2011년 54.1%에서 2014년 57.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소폭 상승의 추세를 보였다. 반면,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2011년 35.2%에서 2014년 34.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46.0%에서 2014년 42.0%로 소폭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24.5%에서 2014년 24.8%로 미세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건강에 대한 인식' 지표는 '주관적 건강 평가'하는 하나의 세부지표만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측정되었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건강한 편 또는 매우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에 83.6%였으나, 2014년에는 84.7%로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지표는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비만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에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 21.3%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평균수면시간은 2013년에 7시간 6분에서 2015년에 7시간 17분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소폭 증가의 현상은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만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 14.3%에서 2014년 15.0%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지표는 '자아존중감', '우울증',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삶의 수준',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 '고민거리 대화상태' 등 일곱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4점만점에 3.25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역시 4점 만점에 1.90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관련해서 학업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2013년 69.3%에서 2015년 66.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에 81.1%에서 2015년 84.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75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인 6.10점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36.9%에서 2015년 2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40.4%에서 2015년 4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거리 대화상대'와 관련하여 고민을 함께 나눌 대상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에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지표는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와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등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빈곤율과 빈곤율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최근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2012년 OECD자료에는 한국아동의 빈곤율이 제시되지 않아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도의 자료에 기초해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와 관련하여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0.9%로 2009년도의 0.8%에 비해 0.1%p의 증가율을 보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지표는 '취약계층 아동현황',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등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24세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1년 407,415명에서 2014년 315,60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부모가구 비율의 경우에는 2011년 9.3%에서 2014년 9.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수준'을 살펴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수는 2011년 1,356개소에서 2014년 1,828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수 역시 2011년 1,086천명에서 2014년 1,256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액은 2011년 1,566억원에서 2014년 1,40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은 2011년 372억원에서 2014년 63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수는 2011년 44,451명에서 2014년 107,1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드람스타트 이용 가구수 역시 2011년 29,332가구에서 2014년 66,551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역시 2011년에는 41,703명에서 2013년 51,67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1년 3,260개소에서 2015년 4,113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대상 국비지원예산 역시 2011년 963억원에서 2015년 1,36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지표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표'(제29조),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의 세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중분류 지표들은 다시 각각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먼저 '교육에의 권리' 중분류 지표에는 '교육기회 보장 정도', '학교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목표' 중분류 지표에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목표 달성율'의 두 지표들이 소분류 지표로 선택되었다. 끝으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들에는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의 소분류 지표들이 속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지표의 각 중·소분류 지표들에 따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중심으로 2011~2015년간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에의 권리

'교육기회 보장 정도'의 소분류 지표는 '학생취학률', '학생진학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와 같은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각각 연도별 추이를 2011년을 기점으로 말하자면 먼저 대한민국의 각급 학교 취학률은 매년 상승세에 있는데 특히, 초·중·고 학교의 취학률은 2014년에 95%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취학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1년 40.9%였는데 2015년도에는 49.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은 점차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1년에는 71%에서 2014년에는 68.2%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취학률의 상승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초·중등학교의 취학률이 97% 정도의 높은 취학률은 의무교육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 감소추이는 비싼 등록금과 청년실업의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학생 진학률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으로의 진학이 100%로 보이고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99.7%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대체로 감소추이에 있어 2014년에는 70.9%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수치는 우리사회가

학벌사회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은 특성화고가 2011년 61%에서 2014년에 37.9%를, 전문계고가 2011년 63.7%에서 2013년 46.8%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문계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해도 학교가 부족해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매년 6~7만 명으로 양산되고 있는 심각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속히 취업을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등교육 기관의 수를 늘려서 현장에서의 교육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인권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기회 여건을 알아보는 세부지표로 먼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유·초·중·고 학생 수의 경우만 보았을 때에 2011년 16명에서 2015년에는 13.95명으로 소폭 줄었고, 고등교육기관도 2011년 45.5명에서 2014년에는 41.6명을 보여 교육의 기회 여건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출산률이 세계 최저의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결과의 영향도 있어 정부의 노력보다는 자연감소로 인해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이제 교육의 기회에서 양보다는 질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소분류 지표 '학교 부적응율'은 '학업중단율',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매년 6~7만 명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서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에서는 그 추이가 변동없이 0.6%정도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2011년에 각각 0.9%와 1.9%를, 2013년에는 각각 0.8%와 1.6%를 보이고 있어 그 변화 추이는 미세하게나마 감소 추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벌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도 사회진입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장차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앙적 현상이라 이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학업중단숙려제 정도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대학입학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않아도 사회에 잘 진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진로 및 직업 체계의 마련과 함께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의 갭을 줄이는 고용과 노동의 정책 및 교육혁신을 조속히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율의 원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세부지표인 '학업포기 결심 여부와 이유'에서는

학생들의 자퇴충동 여부에 관하여 설문하였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았을 때에 2012년에 자퇴충동의 경험이 22.2%에서 2015년에는 3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퇴충동은 대학입학 경쟁이 가장 극심한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에서 2015년 근 4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경쟁이 학생들을 학업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세부지표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를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2013년도 71.1%에서 2015년에 76.5%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자퇴충동의 경우와는 다른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추이는 전체 학교급에서 나타났는데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퇴의 충동을 가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해 주고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그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추이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노력과 체벌의 금지 등으로 친구관계가 개선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다 존중해주는 학교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학교부적응을 알아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대안교육 참여율인데 이를 위해 마련된 세부지표들에는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이 선정되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자세한 통계수치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특성화하여 설립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매년 1~2개에 불과하고, 민간차원에서는 대안학교의 성격이 불분명한 형태의 학교들이 설립되고 폐교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추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초기와는 달리 대안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이 미진한 것은 실제로 대안교육이 제대로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대안학교들은 또 다른 형태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다수의 대안학교들도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의 소분류 지표에서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세부지표로 하여 학교가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 지에 대하여 설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학교가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초·중·고 전체적으로 2013년에는 66.5%에서 2015년에는 76.3%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긍정적 생각의 추이도 2013년에는 66.7%였는데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74.5%로 답하여 학교가 학생 자신들을 위하여 긍정적인 교육목표를 달성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학업중단 현상과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라 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심리에는 과도한 상급학교 입학의 경쟁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가정과 학교로부터 받고 있지만 그나마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이 자신들에게는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자신들에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인 학교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중학교 졸업생들이 일찍부터 진로를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해도 입학성적이 미달이라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면서 학업수준의 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두 번 낙담하는 결과로 학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인 것이다.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율을 알아보는 세부지표 항목들로는 현행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의 새로운 교수 내용과 방법으로 학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운영 수와 운영 현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고 초기단계라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2014년도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초·중·고 혁신학교 수가 628개에서 2015년에는 801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학교의 운영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의 소분류 지표는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2011~2014년도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총 2,072개소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519개로 4년 간 2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결과라 평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011년 738개소에서 2014년에 787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예술 공간 등의 이용비율은 2013년도 자료의 수치와 2015년도 자료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여 정부가 이렇게 매년 여가, 문화, 예술의 활동기반 시설수를 늘려가도 이용자들의 관심은 제자리 수라는 것이 시설 증가 요구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의 부담으로 문화예술 활동 시간이 부족하고, 청소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분류 지표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동아리활동 참가율',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활동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의 2011~201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는 2015년도 12.4%로 나타나있고 이전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 참여율을 보면 2011년 10%였던 것이 매년 점차 감소해 2015년에는 8.2%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아리활동에의 참여율은 2011년에 53.2%였던 것이 2014년도에 74.6%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5년에 다소 감소되어 72.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청소년들의 활동 추이는 점차 동아리 형태의 활동에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자리를 잡으면서 동아리활동이 하나의 제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특정한 청소년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세부지표 중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 문화 향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평일 여가시간의 중간치라 할 수 있는 3~4시간의 여가를 하는 응답학생들의 비율은 2012년에 10.9%에서 2013년 8.5%, 2014년 13.7%, 2015년 12.7%로 나타났다. 2013년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된 것과 자연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의 기회가 더 늘어남에 따른 반향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활동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된 조사결과와는 상반된 이율배반적 결과는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실태이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 세부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비율을 조사했을 때에 2012년 29.5%, 2013년 33.3%, 2014년 46.4%, 2015년 46.8%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두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하면 최근 몇 년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도 증가했고, 하루 평균 학습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두 실태조사 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같은 시간 내에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 폭과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증가 폭을 비교했을 때에 학습시간이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은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보장은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소분류 지표인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는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2013~2015년도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85.4%, 2014년 87.7%, 2015년 89.1%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청소년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을 지향하며 시설의 질정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평할 수 있다. 최근 신설되는 청소년시설들은 시설의 규모나 내부 시설 및 설비의 충실도가 높아져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들이 매년 꾸준히 배출되어 고객들인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에 대한 측정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가에 대한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2013년, 2014년, 2015년 가정의 지지수준 비율은 각 60.1%, 64.2%, 67.1%를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의 지지수준은 같은 기간에 각 69.5%, 72.8%, 75.9%로 가정과 학교 모두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지지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및 학교의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수준 향상은 전반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여가·놀이·문화 향수의 권리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 인권 차원의 지속적인 계몽과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젊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연유한 결과라 평할 수 있겠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대분류 지표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9조, 31조와 관련된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그리고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세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교육에의 권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국력의 상승에 따른 교육 여건은 취학률, 진학률, 1인당 연간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기회의 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율이나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은 세부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태는 결코 교육에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에의 권리에 있어서 교육의 양적인 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이 없다. 이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잘못된 심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함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즐거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과 자퇴충동 지표가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가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당국은 조속히 청년실업의 현 사회 문제에 직면하여 대학진학의 길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폭 늘려 직업 및 취업 교육에 더욱 길을 넓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대학교 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당면한 과제를 조속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가·문화·예술 활동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 등의 인프라들의 양적, 질적 향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긍정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 및 놀이, 문화 향수의 권리와 만족도,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에 한국의 상급학교 입학에 대한 부담이 결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향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관련 법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활성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이 자유롭고 학업과 생활이 즐겁도록 교육 및 여가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알아가고 각기 타고난 능력을 창의적으로 배양하여, 각자 미래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개선과 인권적 차원의 계몽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특별보호조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지표인 '특별보호조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법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네 개의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된다. 네 개의 지표들은 다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등 3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소년사법아동'은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등 3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착취'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정도'등 3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적착취'는 '청소년 성폭력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등 4개의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특별보호조치' 영역 지표 중에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중심으로 2011~2015년간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지표는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율' 등 세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 신청자수는 2011년 29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2011년 7명에서 2014년 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도적 체류는 2011년 7명에서 2014년 44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불인정은 2011년 8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철회는 2011년 3명에서 2013년 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북 난민 아동수'를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 입국자수는 2011년 501명에서 2012년 25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407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1.1%가 인권침해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지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이라는 두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장 학생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15년 82,53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12년 40,040명에서 2015년 68,09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수 역시 2011년 4,288명에서 2015년 6,2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녀 다문화가장 학생수도 2011년 2,626명에서 2015년 8,17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수 중에서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0.55%에서 2015년 1.21%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재학생 중 탈북자 수 역시 2011년에는 1,417명에서 2014년에는 2,02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1.0%로 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2011년에 4.7%에서 2014년 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율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지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를 살펴보면, 레인보우스쿨에 참가한 청소년의 수는 2012년 839명에서 2014년 9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거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2,632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27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780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 4,733명에서 2013년 4,784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사법아동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지표는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와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라는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를 살펴보면,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수는 2011년 2,559명에서 2013년 2,867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기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7호(의료)의 경우 2011년에는 69명에서 2013년 10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8호(1개월)의 경우 2011년에 1,329명에서 2013년 1,31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9호(단기)의 경우 2011년 644명에서 2013년 93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0호(장기)의 경우 2011년 517명에서 2012년 65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50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를 살펴보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죄자는 2011년 114명에서 2012년 1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52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지표는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3년 경찰신청 승인건수는 3,127건이며, 원스톱센터 신청 승인건수는 4,418건, 상담소 신청 승인건수는 91건, 검사지정 승인 건수는 4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단계는 신입자 교육, 제2단계는 기본교육, 제3단계는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청원건수는 2011년 1,313건에서 2013년 1,07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행정심판 건수는 2011년 235건에서 2013년 45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건수는 2011년 75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74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박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지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소년보호관찰인원은 2011년 46,336명에서 2013년 45,04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보호관찰자 중에서 소년보호관찰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8.2%에서 2013년 4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의 경우에는 2011년 8,346명에서 2013년 8,957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2011년

10,135명에서 2013년 7,86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5%에서 2013년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자수는 2011년 4,950명에서 2013년 4,49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착취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지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이라는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172.6시간에서 2013년 165.6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2011년 187.9시간에서 2013년 176.3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1,267천원에서 2013년 1,398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세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도 2011년 1,575천원에서 2013년 1,672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1년 5,942원에서 2012년 7,006원, 2013년 10,583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지표는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등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살펴보면,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1년 13.7%에서 2015년 12.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중 부당처우 피해 경험률은 2011년 17.2%에서 2015년 17.1%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초과근무 경험률은 2011년 17.3%에서 2015년 1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률은 2011년 83.3%에서 2015년 71.4%로 감소하였으며, 부당해고 경험률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9%로 소폭 상승하였다. 작업환경 불결 경험률은 2011년 11.7%에서 2015년 10.3%로 감소하였으며, 폭력 등 인격모독 경험률은 2011년 10.2%에서 2015년 11.8%로 소폭 상승하였다. 구타/폭행 경험률은 2011년 1.3%에서 2015년 2.5%로 증가하였으며, 아르바이트중 성적피해 경험률은 2011년 1.0%에서 2015년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경험률은 2011년 22.0%에서 2015년 2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정도’지표는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와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등 두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를 살펴보면,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 적발건수는 2011년 2,384건에서 2013년 8,39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율’은 2011년 33.1%에서 2014년 4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적 착취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지표는 ‘성폭력 전문강사 양성인원수’와 ‘신상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라는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성폭역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역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는 2011년 334명에서 2015년 72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2011년 66.15%에서 2014년 71.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를 살펴보면,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는 2011년 1,261명에서 2013년 4,1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지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률’,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등 세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14,513명에서 2013년 10,86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2011년 3.4%에서 2015년 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하여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가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지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등 두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접수자 처리비율은 2011년 98.6%에서 2012년 98.4%로 경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지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정러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등 세 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17명에서 2014년 2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을 살펴보면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수는 2011년 33명에서 2012년 35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78명, 2014년 25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9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 대상 재활서비스 수혜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1,274명인데 비해 2014년에는 56,96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동향[7)]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사회적 동향

(1) 아동·청소년 인권사업 수행기관의 동향

국가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한 핵심축으로서 민간단체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대체로 민간단체의 아동청소년 인권사업은 취약계층 인권보호사업과 인권친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농어촌 놀이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기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학대아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취약계층 인권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업과 아동의 생명권과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아동인권정책의 향상을 추동하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국제적 표준에 의거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의 실태를 지역별로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이 단체는 2018년에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분석결과를 해외 30여개국과 비교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로 2016년 10월 현재 서울의 성북구와 전라북도의 완주군,

7) 이 절은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부산의 금정구가 심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증사업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인권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상호연대 그리고 아동인권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시와 오산시를 포함하여 총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표 II-3-1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삶의 질 지수 종합	106.31	107.86	123.23	105.41	104.09	106.69	110.52	97.12
순위	5	3	1	6	7	4	2	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삶의 질 지수 종합	96.21	89.24	92.69	83.71	88.24	94.73	94.15	99.81
순위	10	14	13	16	15	11	12	8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외(2016).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p.11

표 II-3-2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추진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증	성북구	금정구	-	-	-	-	-	-	-	-	-	완주군			-	-
인증추진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 성동구 송파구 종로구	-	중구	서구	북구 서구	유성구	-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강원도 (광역)	음성군 충주시	당진시 아산시	군산시 전주시	광양시 순천시	구미시 영주시	-	-

* 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내용을 표로 재구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 map/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이외에도 아동단체협의회의 아동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총회 개최, 인권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 실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아동총회는 아동의 권리옹호와 참여권 실현을 위해 아동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기획하여 2004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2회의 아동총회를 개최하였

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로 참여를 원하는 아동의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아동인권과 관련된 최대 현안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그리고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총 7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2. 아동관련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처벌을 줄이는 것을 없애 주세요
3. 아동의 놀권리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아동전용 복합문화시설을 잘 만들고 관리해 주세요
4.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담배 진열대를 없애 주세요
5. 아동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세요
6. 아동을 위한 직업체험박람회를 지자체별로 개최·홍보하여 지역격차를 줄여주세요
7. 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삶 속에서 교과의 의미를 탐구하고 적용하는 교과연계 동아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

다음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인권단체들이 통합하여 인권현장과 '긴밀히 결합된 인권교육'을 표방한 인권교육센터를 창립하였다. 통합단체들로는 그동안 유사한 인권교육을 실천하던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등의 단체이고 이들 단체들은 2016년에만 아동인권 관련 교육출판사업,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교사 대상 인권직무연수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와 안심알바신고센터운영 등 현장지원 활동, 그리고 청소년 인권단체와 연계한 인권조례제정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센터들의 인권교육사업은 기존의 교재 중심의 형식적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인권교육과 함께 방문형 인권교육을 통한 실천형 인권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아동인권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아동인권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에도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동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에 이어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의 제정으로 특별히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2012년 9월에 제정하였고,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모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기본조례는 법적용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도 인권취약계층이나 인권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개발이나 계획의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기본계획에서는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아동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8] 이 조례에서는 인권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을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별금지의 원칙과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그리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동조례의 제정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를 차별금지, 건강,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권,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등 8가지로 구체화하고 인권침해시 구제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와의 제도적 연계를 갖추고 있다.

8)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목적 : ① 가정과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청소년의 기준 확인, ②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등 향후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③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 인권보장 추진체계 구축, ④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 ⑤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 및 구제기능 강화(서울시 홈페이지 2016 여성·보육·가족·외국인 주민 자료)

표 II-3-3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및 정책

구분	입법목적	지방자치단체 장 책무	주요내용
인권기본조례	·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보장책임 · 인권도시 조성	· 인권증진조직, 체계 구축 · 인권교육제도화 · 인권정책 발굴 및 추진	· 인권기본계획 수립 · 인권실태조사 · 인권교육체계 구축 · 인권위원회의 구성 · 권리구제절차와 방법 ·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아동인권조례	· 아동 인권보장 기본적 사항 규정 ·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 정책수립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관계기관의 인권준수협약 마련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인권보장 예산지원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실시 ·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 인권센터 설치
청소년노동 인권조례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보장	· 청소년의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 청소년 노동상담 및 구제 · 청소년직업훈련, 취업준비 지원 · 청소년 작업장 육성 · 청소년 공공형 일자리 창출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아동친화도시	· 아동청소년의 즐거운 일상생활 보장, 행복한 삶 향유 ·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도모	·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 · 아동청소년 차별금지 노력 · 아동청소년 권익 최우선 준수 · 청소년 보호지원 및 역량개발 보장 · 청소년 의견존중 및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성장 보장 ·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 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 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동향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인권기본조례가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제정되었고, 서울은 인권기본조례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동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 경기, 전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영역 중 노동에 관한 권리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광주, 세종 등의 지역은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인권조례나 아동노동인권조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아동인권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한 아동인권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인권기본조례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정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주요 골자로 제시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인권정책의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3-4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동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권기본조례	● (2012)	● (2012)	● (2014)		● (2017)	● (2012)	● (2012)	● (2014)	● (2013)	● (2013)	● (2013)	● (2012)	● (2010)	● (2012)	● (2013)	● (2010)	● (2015)
아동인권조례	● (2012)																
아동노동인권					● (2015)				● (2016)					● (2015)			
아동친화도시		● (2016)			● (2015)			● (2016)									

* 주: 괄호안은 제정연도를 의미함

표 II-3-5 인권조례상 인권기본계획 수립 대상별 영역

구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다문화	재외동포	난민	노동자	농업인 어업인	새터민	병력자성 소수자	범죄피해자	문화소외시민	일반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광주	●	●	●	●	●			●		●				
충남	●	●	●	●	●				●					●

* 출처: 강성권, 김형균, 임호(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pp.14-21. 표로 재구성.
김재철, 김기곤, 민현정(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안). p78. 표로 재구성.
서울특별시(201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pp.14-15. 표로 재구성.
성태규, 이인희, 고승희, 이수철, 김용현, 박경철 외(2015).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p.302. 표로 재구성.

결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여 아동의 취약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인권보장의 방법으로 아동인권조례나 아동노동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권기본계획의 세부 정책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인권정책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표 II-3-6 지역별 인권기본계획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사업 내용

지역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사업 내용	· 아동복지시설 운영개선협의체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 점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학생인권조례 모니터링 · 학업중단 숙려제도 점검 · 청소년 가출팸 해결 · 학교밖 청소년 원인별 대책마련 · 노동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 근로청소년 안심사업장 등록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이주민자녀 취학장려 대책마련 · 이주민자녀 방과후program정착 · 무국적 아동 사회적 관심유도 · 무국적 아동 등록 행정절차지원 · 유학생 광주생활적응 지원 · 유학생 헬프데스크 센터 운영 · 유학생 학업환경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기초조사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주변환경 및 관리 프로그램 조사 ·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 교육청 연계 인권교육 ·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구성 ·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운영 · 아동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5년) ·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 학교밖 청소년 상담 및 멘토 · 특별활동 청소년의견반영체계구축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실시 · 아동청소년 인권안내 홍보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 출처: 강성권, 김형균, 임호(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pp.207-219. 표로 재구성.
김재철, 김기곤, 민현정(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안). pp.88-89. 표로 재구성.
성태규, 이인희, 고승희, 이수철, 김용현, 박경철 외(2015).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pp.105-108. 표로 재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한 다수지역에서 수립하였다. 이중에서 청소년인권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 혹은 소수자 인권분야에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대한 인권교육과 종사자 인권 교육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고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아동 그리고 근로청소년과 이주민 자녀, 무국적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

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주요 인권사업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광주광역시만큼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아동인권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과 참여권 그리고 권리 모니터링 등 보편적 사업을 계획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부산광역시와 유사하게 아동 전반에 대한 인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이나 근로 청소년에 대해서만 특별한 보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3) 학생인권 조례 정책 동향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귀속적 지위에 따른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신분적 지위에 따른 특수한 인권정책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생이라고 하는 성취적 지위에 따른 인권정책은 학교내에서 교사나 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발달단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특수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으로 공포 및 시행된 이후, 2011년에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2013년도에 전라북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II-3-7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교육청	공포일	시행일	조례명
경기도	2010. 10. 05	2010. 10. 05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2011. 10. 28	2012. 01. 01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2. 01. 26	2012. 01. 26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2013. 07. 12	2013. 07. 12	학생인권조례

* 출처: 김형욱(2016).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개요. p.50
전라북도교육청 웹사이트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76320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조례의 시행내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정희진, 2015).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교육청별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가령, 학생인권의 영역 중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광주인권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와 서울, 전북 등의 지역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도 경기, 서울, 전북의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광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도 경기도를 제외하나 나머지 세 개의 지역교육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도 광주와 서울은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전북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표 II-3-8 학생인권조례 조항 분석

구분	규정	경기	광주	서울	전북
학생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조	20조	5조	5조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6조, 7조	19조	6조,7조	6조, 7조
	신체의 자유	–	11조	–	–
	교육에 관한 권리	8조, 9조, 10조	10조, 18조	8조, 9조, 10조	8조, 9조, 10조
	사생활 비밀, 정보에 대한 권리	11조, 12조, 13조, 14조	12조	12조, 13조, 14조, 15조	11조, 12조, 13조, 14조
	양심,종교, 표현의 자유	15조, 16조	13조, 14조	16조, 17조	15조, 16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17조, 18조, 19조	15조	18조, 19조, 20조	17조, 18조, 19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20조~24조	17조~19조	21조~24조	20조~24조
	징계 등 절차에 관한 권리	25조	16조	25조	25조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6조	22조	26조, 27조	26조, 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27조	21조	28조	27조
학생인권 증진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28조~32조	8조, 34조~37조	29조~32조	29조~33조
	학생인권종합계획	22조~38조	4조~7조	44조~46조	35조~40조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35조, 36조	23조~33조	33조~37조	41조~42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39조~42조	–	38조~40조	43조~47조
	학생인권교육센터	–	38조, 39조	42조	34조
	학생인권영향평가	–	27조	43조	–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	45조	41조	48조	50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49조	

* 출처: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pp.305-307.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으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을 3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은

지역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각각 1명의 학생인권옹호관과 행정직 주무관,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들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016). 최근 경기도의 학생인권 상담은 체벌이나 폭력, 부당징계 등의 문제에만 집중되지 않고, 학생의 참여와 자치,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의미있는 상담들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형욱, 2016)

서울시는 학생인권 권리구제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그리고 학생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리구제 활동을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 한해에만 약 4,049건의 인권상담을 실시하였고, 713건은 간이조치, 3,063건은 안내후 종결 등으로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교육청(2016)에 따르면 학생인권 상담의 주된 유형으로는 체벌(243건), 언어폭력(204건), 징계절차(118건) 등이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주된 업무로서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제방안의 심의와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학생참여단 그리고 시민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 평가 및 개선권고,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6).

또한,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학생인권영향평가와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례나 정책의 입안 시 학생인권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도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 방향, 인권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 및 연구, 교육실시방안 등을 담아 매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지 않고 민주인권교육센터 내 학생인권구제 전담팀을 두어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제도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의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사 1명,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중 학생인권구제는 조사구제팀장 1명과 전문상담사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주민주교육인권센터는 2015년 한해에만 총 410건의 인권상담을 통해 학생의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업무를

추진하였다. 광주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의 특이점은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를 측정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 2회에 걸쳐 측정된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는 크게 학생 민주인권친화지표와 교직원 민주인권친화지표로 구성하여 각각 총 30여개의 지표별로 학생과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표 II-3-9 광주교육청 민주인권친화지표

	학생(총 27개 지표)	교직원(총 20개 지표)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학교	· 체벌 존재 여부 · 폭력 존재 여부 · 성폭력 존재 여부 · 대응체계 마련	· 강압적 지시 존재 여부 · 성폭력 존재여부 · 대응체계 마련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	· 각종 차별존재 여부 · 소수자에 대한 교육	· 각종 차별 존재 여부 · 소수자에 대한 교육
자유의 향유와 행사가 보장되는 학교	· 강제노동 금지 · 사상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용모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 · 사생활의 보호 · 개인정보의 보호 · 정보 접근권의 보장	· 사상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용모의 자유 · 언론과 결사의 자유 · 사생활의 보호
건강과 복지, 문화가 숨쉬는 학교	· 휴식을 가질 권리 · 쾌적한 환경 · 문화 향유 및 참여 · 안전교육	· 휴식을 가질 권리 · 쾌적한 환경 · 휴가사용 및 휴게 시설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 교육선택권(방과후 자율학습) · 수업참여 · 수업권 · 교육환경 · 인권교육	· 업무경감 노력 정도 · 연구활동의 보장 · 인권교육
적법한 징계와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학교	· 적법한 규정과 및 징계 · 적법한 절차와 교육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체계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체계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참여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학교	· 자치활동 보장 · 정책 참여	· 노조활동 보장 · 정책 참여

* 출처: 유양식, 김정현, 강석, 김경희, 김태연, 나판수 외(2015). 2015년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pp.11-13.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계에서 처음으로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라는 이름으로 인권지표를 제작하였다. 뒤의 표에서 보듯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발한 학생인권지표는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 자유의 향유와 행사가 보장되는 학교, 건강과 복지, 문화가 숨 쉬는 학교,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적법한 징계와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학교,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참여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유양식, 김정현 외, 2015; 조금주, 2016). 인권지수는 영역별 결과를 5단계로 평정한 후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교육청도 인간존엄 및 발달권, 안전권, 자유권, 참여 및 자치권, 평등권, 사회권, 지속가능한 인권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학교인권실태를 측정하고 있다(조금주, 2016). 이 같은 학교 인권지표는 학교의 인권상황에 대한 측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의 주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정책적 함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은 흐름은 크게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전환되고 있고,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실천적 인권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네 가지 인권사업은 중앙단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함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인권정책의 방향에 맞춰 보다 실천적인 인권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인 인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인권기본조례를 대부분의 지역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차원의 인권정책의 방향과 세부전략과제를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도 소수자 인권의 핵심 분야로 설정되어 모든 기본계획에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인권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인권정책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 깊숙이까지 밀착된 인권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기초한 특화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양대축으로 인권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인 학교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역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다.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침해시 구제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인권보호를 선도하고 있다. 교권과의 관계에서 여러 쟁점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신분적 지위에서 누려야 할 권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보장 수단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의 신장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담론을 아동권리협약의 인권철학에 기초하여 보다 세밀하게 공론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견제하고 정책의 이행단계를 모니터하는데 사업의 방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인권단체들간의 연대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체험형 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와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규범화 단계와 제도화 단계를 거쳐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인권감수성 형성이라고 하는 인권문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와 시민의 다양한 참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의 인권이 지역사회에서 공고히 뿌리내리는 건강한 인권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Ⅲ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제 III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9)10)]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발전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개정 2016.5.29., 시행 2016.11.30)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피해아동 고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체계를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6.5.29., 시행 2016.11.30)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청

9)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유설희 전문연구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김진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유설희 전문연구원은 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을, 이민희 교수는 3절 폭력 및 학대와 6절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절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7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집필하였다.

10) Ⅲ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활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된다. 본 과제는 인권실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속과제이므로 2011년부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본문의 출처는 각 연도별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은 전년도 대비 추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교차분석표는 주로 주요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6-R11-2)에서 참고할 수 있다. 통계표에서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Ⅰ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시에는 고등학교 유형을 크게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통계표에도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로 지칭하였다.'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개념을 담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특성화계고'는 본 표본설계 상 '특성화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 체육,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를 포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더 큰 개념의 포괄적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16.3.22., 시행 2016.9.23.)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원칙과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아동종합실태조사 근거규정 정비,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2019.3) 근거 마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청소년기본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16.3.2)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권리교육과 상담 실시와 근로청소년 보호정책 홍보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개정 2016.3.2., 시행 2016.9.3.)을 통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수련시설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련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개정 2016.5.29., 시행 2016.11.30.)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개정 2016.10.18., 시행 2017.3.1.)을 통해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절차를 제도화하였다.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입학 연기/취학 유예·면제 등을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하는 등 취학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의 보호기능을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사례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가 있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로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발하였다. 조례는 부천시의 정책 수립·집행 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부천시, 2016).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한 약속으로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된 것도 살펴볼 사례이다.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2016년 5월 2일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었다. 헌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 실현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생명권,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아홉 가지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5. 2.). 헌장이 일회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헌장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으로는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이 수립되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종합대책은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다섯 개 정책영역별로 28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16. 4. 21.).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와 조직과 관련 변화로 2015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조직인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된 점(2014.8.27.)과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과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2016년도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 전담 소위원회가 신설된 점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독립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68-470). 전담 위원회 구성 전에는 인권 침해사건 심의·의결을 위한 4개의 소위원회 중에서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인권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촉구된 사항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이 위원장을 맡고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만 18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관련 아동인권 증진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5. 2. 보도자료).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대상의 범위와 정책·사업의 범위 설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매년의 '나라살림 예산'에 나타난 일반회계 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소년사법 예산, 아동복지 서비스 예산, 보육 예산, 아동폭력예방 예산, 청소년 예산 등의 합산으로 아동·청소년 예산 규모를 산출하였다. 정책분야 기준으로 보면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유사영역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나라살림 예산'이 정책 담당부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위해 '나라살림 예산' 상의 구분을 유지하였다.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을 보면, 2012년 3.1%,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9%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III-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6)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국가예산(A)		223,138,337,514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아동·청소년 예산 (천원)	유아·초중등교육	38,804,797,542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소년사법	8,887,000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아동복지	208,479,000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보육	3,028,568,000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아동폭력예방	3,192,000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청소년	47,435,000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계(B)		42,101,358,542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B)/(A)*100(%)		18.9	19.5	19.0	17.3	17.6
아동청소년 인구(명)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1인당 지출비용		4,343	4,872	5,118	4,999	5,353
GDP		1,377.5조원	1,429.4조원	1,486.1조원	1,558.6조원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3.1	3.2	3.2	2.9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2). 2012 나라살림 예산. pp.3, 109, 151, 241, 240, 245–246, 277–278, 280.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3, 116, 167, 271–272, 278, 277, 315, 317–318.
기획재정부(2014). 2014 나라살림 예산. pp.3, 134, 175, 263–264, 269, 268, 302–305.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pp.3, 129, 164, 168, 255–256, 261, 260, 294, 296–297.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7, 171, 252–253, 258, 257, 291, 293.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137항 여성아동인권증진+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1000항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 + (아동폭력예방 예산: 4131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4132항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 (청소년 예산: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항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인구 출처(~18세 미만):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SubCont 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2) 인권에 대한 인지도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담은 조약으로, 전세계 196개국이라는 최다 국가가 비준하였다. 한국정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6·7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사회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76).

표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9.2	46.4	14.4	100.0(11,113)	–
성별	남자		41.7	43.5	14.8	100.0(5,782)	40.667***
	여자		36.6	49.5	14.0	100.0(5,3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2	42.3	13.5	100.0(3,161)	79.489***
	중학교		34.5	48.7	16.7	100.0(3,734)	
	고등학교	전체	39.6	47.3	13.0	100.0(4,218)	
		일반계고	40.2	46.5	13.4	100.0(3,388)	
		특성화계고	37.6	50.9	11.5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6.3	47.6	16.2	100.0(4,466)	43.347***
	중소도시		40.5	46.5	13.0	100.0(5,284)	
	읍면지역		43.9	42.2	13.9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8	46.5	14.7	100.0(9,975)	13.319*
	한부모가정		41.4	46.3	12.2	100.0(818)	
	조손가정		43.5	43.1	13.4	100.0(108)	
	기타		46.6	44.3	9.1	100.0(212)	
학업 성적	상		36.0	45.8	18.2	100.0(3,583)	71.770***
	중		40.5	46.5	13.1	100.0(4,720)	
	하		41.3	47.0	11.7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37.8	44.8	17.4	100.0(5,759)	86.805***
	중		40.7	48.3	11.0	100.0(3,967)	
	하		41.0	47.4	11.6	100.0(1,339)	

*p<.05, ***p<.00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설문 조항에,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9.2%였고, '이름만 들어봤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6.4%였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14.4%였다. 협약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협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85.6%나 된다는 것은 협약의 당사자들인 아동·청소년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협약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41.7%)이 여학생(36.6%)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44.2%), 일반계고(40.2%), 특성화계고(37.6%), 중학교(34.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43.9%), 중소도시(40.5%), 대도시(36.3%) 순으로 '모른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46.6%), 조손가정(43.5%), 한부모가정(41.4%), 양부모가정(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모른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왔고(상 36.0%, 중 40.5%, 하 41.3%),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41.0%), 중(40.7%), 상(37.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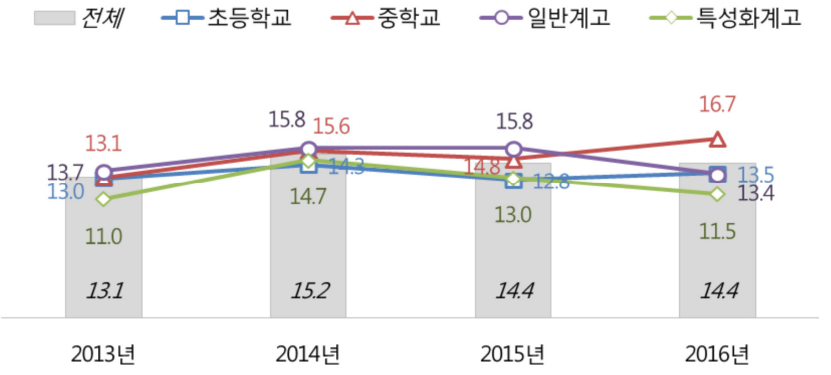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에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5년도에 소폭 하락하여 2016년도에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전체값 '13년 13.1%, '14년 15.2%, '15년 14.4%, '16년 14.4%). 2015년 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13.4%)와 특성화계고(11.5%)는 오히려 수치가 낮아졌지만 중학교(16.7%)와 초등학교(13.5%)는 수치가 높아졌다. 특히 중학교는 2015년 14.8%에서 2016년 16.7%로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한 자치법규로 보장받아야할 학생인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학생인권 모니터링 및 구제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규라 할 수 있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78).

표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51.8	40.4	7.7	100.0(11,107)	–
성별	남자		53.8	38.4	7.7	100.0(5,781)	21.271***
	여자		49.7	42.6	7.8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4	35.7	4.9	100.0(3,158)	316.664***
	중학교		56.3	38.0	5.7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42.2	46.1	11.6	100.0(4,214)	
		일반계고	40.9	45.9	13.2	100.0(3,385)	
		특성화계고	47.5	47.2	5.2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53.5	39.4	7.1	100.0(4,465)	30.415***
	중소도시		49.4	42.0	8.6	100.0(5,280)	
	읍면지역		55.9	37.5	6.6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1.5	40.6	7.9	100.0(9,968)	15.289*
	한부모가정		52.8	41.2	6.0	100.0(818)	
	조손가정		56.9	36.1	7.0	100.0(108)	
	기타		62.6	31.0	6.4	100.0(214)	
학업 성적	상		48.6	41.4	10.0	100.0(3,582)	55.635***
	중		51.9	41.2	6.8	100.0(4,719)	
	하		55.7	37.9	6.4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50.9	40.2	8.9	100.0(5,756)	24.984***
	중		53.3	40.4	6.3	100.0(3,964)	
	하		51.3	41.8	6.8	100.0(1,338)	

*p<.05, ***p<.001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 조항에, '모른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1.8%였고, '이름만 들어봤다'에 응답한 비율은 40.4%,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7.7%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아동·청소년들이 92.2%로 10명중 9명이 넘는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여자(49.7%)에 비해 남자(53.8%)가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59.4%), 중학교(56.3%), 특성화계고(47.5%), 일반계고(4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55.9%, 대도시는 53.5%,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은 49.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56.9%), 한부모가정(52.8%), 양부모가정(51.5%) 순으로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하(55.7%), 중(51.9%), 상(48.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53.3%)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하(51.3%), 상(50.9%)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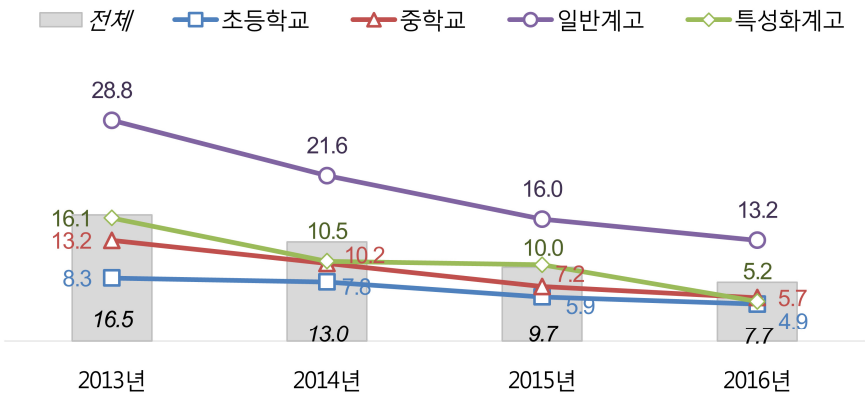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6.5%였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6년에는 7.7%까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에서 모두 인지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특성화계고의 인지도는 2015년 10.0%에서 2016년 5.2%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자가 경기도(2010. 10), 광주광역시(2012. 1), 서울특별시(2012. 1), 전라북도(2013. 6) 등 모두 2010년 초반이었고 이 당시 사회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었으나 이후 조례 제정 담론이 정체되면서 인지도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로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80).

표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0.6	53.9	15.5	100.0(11,107)	–
성별	남자		33.9	51.0	15.1	100.0(5,781)	62.088***
	여자		27.0	57.0	16.0	100.0(5,3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8.0	51.1	10.8	100.0(3,159)	156.725***
	중학교		29.3	53.5	17.3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26.3	56.3	17.5	100.0(4,213)	
		일반계고	24.9	55.6	19.5	100.0(3,383)	
		특성화계고	31.9	59.0	9.1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9.1	53.1	17.8	100.0(4,464)	46.855***
	중소도시		30.9	55.6	13.5	100.0(5,281)	
	읍면지역		34.6	49.8	15.7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	53.9	16.0	100.0(9,968)	29.926***
	한부모가정		33.4	54.7	11.9	100.0(820)	
	조손가정		35.2	55.3	9.6	100.0(108)	
	기타		42.2	47.4	10.4	100.0(212)	
학업 성적	상		26.8	54.4	18.8	100.0(3,580)	70.945***
	중		31.7	53.7	14.7	100.0(4,720)	
	하		33.7	53.7	12.6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29.5	53.5	17.0	100.0(5,755)	27.133***
	중		32.1	54.6	13.3	100.0(3,964)	
	하		31.3	53.7	15.0	100.0(1,340)	

***$p<.00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설문 조항에, '모른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30.6%였고 '이름만 들어봤다'는 53.9%이었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15.5%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73.7%인 바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27.0%)보다는 남자(33.9%)가 더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38.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계고(31.9%), 중학교(29.3%), 일반계고(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봤을 때는 읍면지역(34.6%)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30.9%), 대도시(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기타(42.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35.2%), 한부모가정(33.4%), 양부모가정(3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33.7%, 중 31.7%, 상 26.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중(32.1%)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31.3%), 상(29.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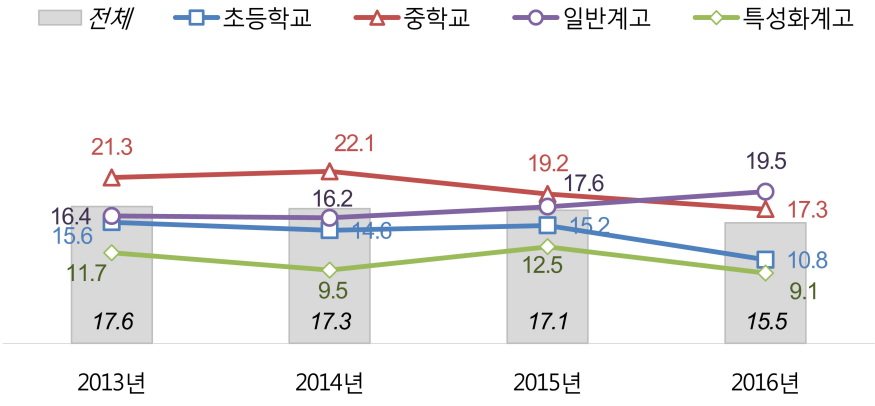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 하향 추세(17.6% → 17.3% → 17.1%)를 보이다가 2016년 15.5%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교급별로 보면 일반계고(19.5%)만 2015년 대비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계고의 인지도는 모두 낮아져서 전체 인지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인지도가 2015년 15.2%에서 2016년 10.8%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가정, 학교,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비교해 보면, 가정(94.3%), 지역(90.0%), 학교(88.5%), 사이버공간(79.6%), 우리나라 전체(76.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는 비교적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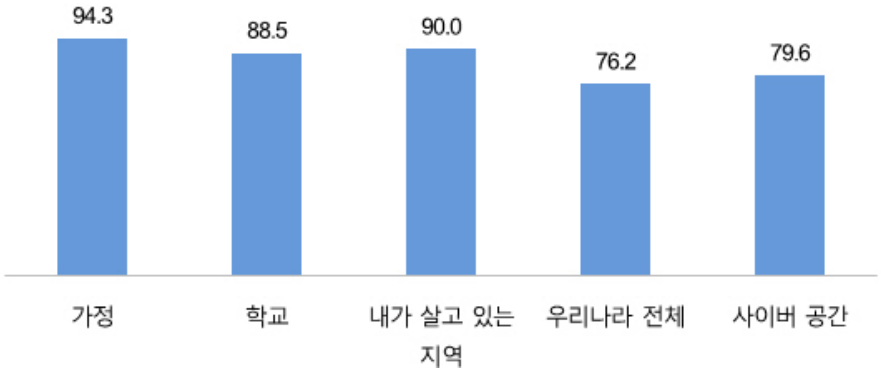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표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41(0.64)	1.4	4.4	46.4	47.9	100.0(11,109)	–
성별	남자		3.40(0.66)	1.8	4.3	46.7	47.3	100.0(5,776)	16.034**
	여자		3.42(0.62)	0.9	4.5	46.1	48.4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1(0.63)	1.3	3.4	38.2	57.0	100.0(3,157)	156.142***
	중학교		3.37(0.65)	1.6	4.8	48.5	45.2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3.36(0.63)	1.2	4.8	50.7	43.4	100.0(4,219)	
		일반계고	3.39(0.63)	1.3	4.1	48.6	46.0	100.0(3,390)	
		특성화계고	3.23(0.62)	1.0	7.6	59.0	32.5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42(0.66)	1.9	4.1	43.8	50.2	100.0(4,461)	35.111***
	중소도시		3.40(0.63)	1.0	4.5	48.0	46.4	100.0(5,287)	
	읍면지역		3.39(0.63)	1.0	4.8	48.5	45.6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3(0.63)	1.1	4.2	45.6	49.0	100.0(9,969)	121.825***
	한부모가정		3.25(0.69)	2.4	6.9	53.6	37.1	100.0(820)	
	조손가정		3.29(0.69)	3.7	2.0	56.0	38.3	100.0(107)	
	기타		3.19(0.83)	7.2	5.0	49.2	38.5	100.0(21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54(0.60)	0.9	3.1	37.4	58.6	100.0(3,579)	327.650***
	중	3.39(0.63)	1.3	4.0	48.7	46.0	100.0(4,722)	
	하	3.26(0.67)	2.1	6.8	54.0	37.1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50(0.61)	1.0	3.1	41.1	54.8	100.0(5,756)	355.943***
	중	3.36(0.63)	1.3	4.5	51.2	43.0	100.0(3,965)	
	하	3.17(0.72)	3.0	9.6	54.9	32.4	100.0(1,34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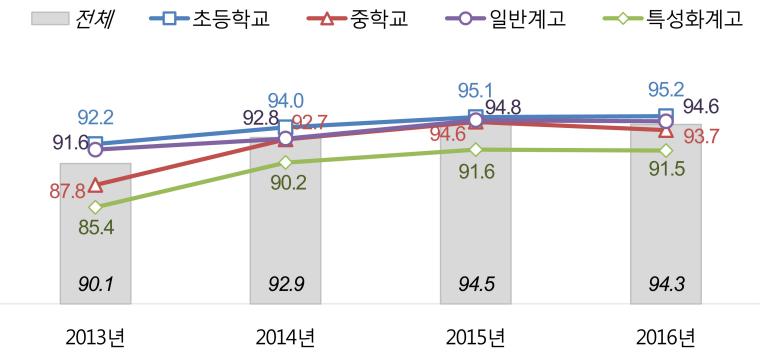

【그림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묻는 설문 조항에 전체 아동·청소년 중의 94.3%가 가정에서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5.8%의 인원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의 존중정도는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94.0%)보다는 여학생(94.5%)이 가정에서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95.2%)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존중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94.6%), 중학교(93.7%), 특성화계고(91.5%)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4.4%)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94.1%), 대도시(9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4.6%)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조손가정(94.3%), 한부모가정(90.7%), 기타(87.7%)에 속한 아동·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학업성적(상96.0%, 중94.7%, 하91.1%)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95.9%, 중94.2%, 하87.3%)이 높을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가

2016년에 소폭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전체값 '13년 90.1% → '14년 92.9% →'15년 94.5% →'16년 94.3%).

표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2(0.67)	2.6	8.9	61.9	26.6	100.0(11,109)	–
성별	남자		3.13(0.69)	3.0	8.7	60.2	28.1	100.0(5,777)	27.995***
	여자		3.12(0.64)	2.1	9.3	63.8	24.9	100.0(5,3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2(0.64)	1.4	5.5	52.5	40.6	100.0(3,155)	580.964***
	중학교		3.13(0.65)	2.4	8.2	63.6	25.8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2.97(0.66)	3.6	12.2	67.5	16.7	100.0(4,219)	
		일반계고	3.00(0.66)	3.4	11.3	66.8	18.5	100.0(3,390)	
		특성화계고	2.85(0.64)	4.4	15.5	70.4	9.6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17(0.67)	2.5	7.8	59.5	30.2	100.0(4,462)	61.275***
	중소도시		3.10(0.66)	2.5	9.4	63.4	24.7	100.0(5,285)	
	읍면지역		3.05(0.67)	3.1	10.9	63.9	22.1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0.66)	2.5	8.8	61.5	27.3	100.0(9,969)	38.974***
	한부모가정		3.02(0.64)	2.9	11.1	67.4	18.6	100.0(820)	
	조손가정		3.11(0.70)	3.9	7.1	62.7	26.3	100.0(106)	
	기타		3.04(0.74)	4.9	10.6	60.0	24.5	100.0(214)	
학업 성적	상		3.26(0.66)	2.0	5.8	56.3	35.8	100.0(3,579)	389.585***
	중		3.13(0.64)	2.0	8.9	63.4	25.7	100.0(4,723)	
	하		2.95(0.68)	4.3	12.9	66.6	16.2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21(0.67)	2.2	7.3	57.8	32.6	100.0(5,755)	311.705***
	중		3.08(0.65)	2.7	9.1	65.7	22.4	100.0(3,967)	
	하		2.91(0.65)	3.7	15.2	67.9	13.2	100.0(1,339)	

***$p<.001$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묻는 설문 조항에 전체 아동·청소년 중의 88.5%가 존중받고 있다(존중받는 편 + 매우 존중받음)고 응답하였으며 11.5%의 아동·청소년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존중받지 못하는 편 + 전혀 존중받지 못함)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88.7%)가 남자(88.3%)보다 학교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93.1%), 중학교(89.4%), 일반계고(85.3%), 특성화계고(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9.7%), 중소도시(88.1%), 읍면지역(8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89.0%), 양부모가정(88.8%), 한부모가정(86.0%), 기타(8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92.1%, 중89.1%, 하82.8%),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상90.4%, 중88.1%, 하81.1%)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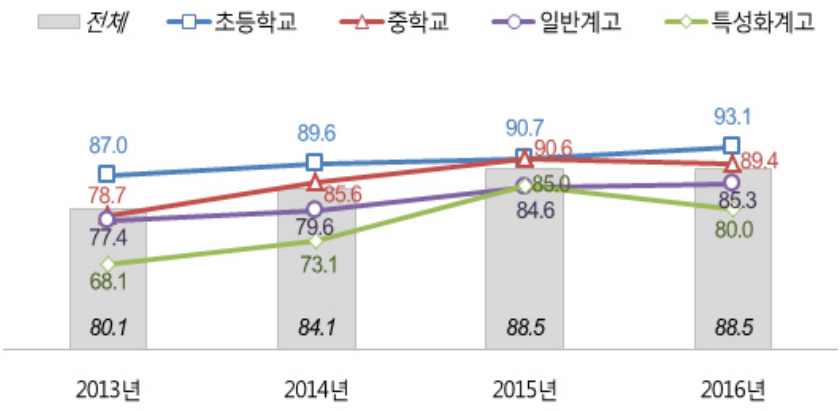

【그림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정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2016년에는 2015년과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전체값 '13년 80.1% → '14년 84.1% → '15년 88.5% → '16년 88.5%). 2015년 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93.1%)와 일반계고(85.3%)는 소폭 올랐으나 중학교(89.4%)과 특성화계고(80.0%)는 소폭 하락하였다.

표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4(0.63)	1.9	8.1	64.2	25.8	100.0(11,105)	-
성별	남자		3.15(0.66)	2.5	8.2	61.3	28.1	100.0(5,774)	58.394***
	여자		3.13(0.59)	1.4	8.1	67.3	23.3	100.0(5,3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5(0.70)	2.1	8.9	50.9	38.1	100.0(3,156)	450.688***
	중학교		3.13(0.63)	2.1	7.7	65.3	25.0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3.06(0.56)	1.7	7.9	73.1	17.3	100.0(4,219)	
		일반계고	3.08(0.57)	1.8	7.1	72.6	18.6	100.0(3,389)	
		특성화계고	2.97(0.55)	1.7	11.2	75.1	12.0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17(0.66)	2.2	7.9	60.2	29.7	100.0(4,462)	67.244***
	중소도시		3.11(0.61)	1.7	8.2	67.2	22.9	100.0(5,285)	
	읍면지역		3.12(0.62)	1.9	8.6	65.4	24.1	100.0(1,3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5(0.62)	1.8	7.8	64.0	26.4	100.0(9,966)	79.619***
	한부모가정		3.03(0.62)	2.2	11.2	67.6	18.9	100.0(820)	
	조손가정		3.11(0.67)	4.2	4.9	66.7	24.2	100.0(106)	
	기타		2.95(0.81)	8.1	11.2	58.5	22.2	100.0(21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24(0.64)	1.6	6.4	58.7	33.3	100.0(3,577)	246.853***
	중	3.14(0.62)	1.7	8.0	64.8	25.5	100.0(4,720)	
	하	3.00(0.62)	2.8	10.5	69.9	16.7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22(0.63)	1.6	6.4	60.0	32.0	100.0(5,752)	314.610***
	중	3.08(0.61)	2.0	8.8	68.0	21.2	100.0(3,966)	
	하	2.93(0.63)	3.4	13.2	70.2	13.2	100.0(1,33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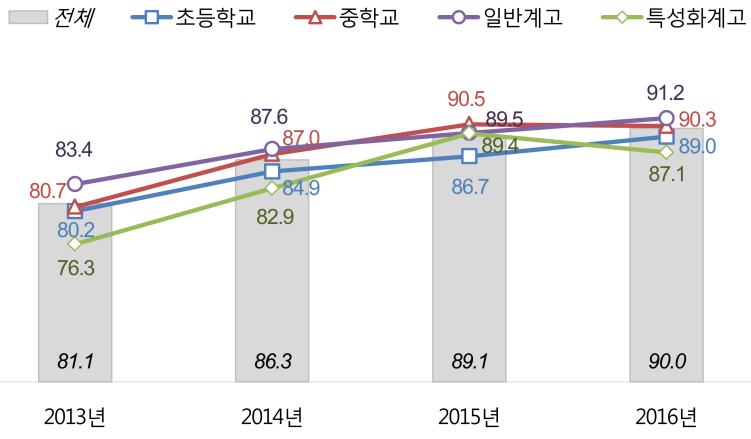

【그림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설문 조항에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0.0%이며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10.0%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자(90.6%)가 남자(89.4%)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91.2%), 중학교(90.3%), 초등학교(89.0%), 특성화계고(8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0.1%), 대도시(89.9%), 읍면지역(89.5%)의 순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90.9%), 양부모가정(90.4%), 한부모가정(86.5%), 기타(80.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92.0%, 중90.3%, 하86.6%)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92.0%, 중89.2%, 하83.4%)이 높을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81.1%, 2014년 86.3%, 2015년 89.1%, 2016년 90.0%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상승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지 않다.

표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0(0.77)	5.5	18.4	56.8	19.4	100.0(11,093)	–
성별	남자		2.89(0.81)	6.9	17.9	54.2	21.1	100.0(5,768)	77.587***
	여자		2.91(0.72)	4.0	19.0	59.6	17.5	100.0(5,3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4(0.84)	6.0	15.2	48.0	30.8	100.0(3,144)	490.982***
	중학교		2.92(0.75)	5.2	16.5	59.2	19.2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78(0.71)	5.3	22.5	61.2	11.0	100.0(4,216)	
		일반계고	2.79(0.71)	5.0	22.5	60.9	11.6	100.0(3,386)	
		특성화계고	2.74(0.71)	6.4	22.3	62.6	8.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94(0.79)	5.6	17.5	54.2	22.7	100.0(4,455)	55.241***
	중소도시		2.87(0.75)	5.3	19.1	58.6	17.1	100.0(5,279)	
	읍면지역		2.87(0.76)	5.9	18.7	58.1	17.3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1(0.76)	5.2	18.3	56.6	19.9	100.0(9,955)	44.314***
	한부모가정		2.79(0.74)	6.5	20.2	60.8	12.5	100.0(819)	
	조손가정		2.85(0.85)	8.9	17.5	53.4	20.2	100.0(106)	
	기타		2.80(0.88)	11.2	16.7	52.8	19.2	100.0(212)	
학업 성적	상		3.01(0.77)	4.6	15.2	54.7	25.5	100.0(3,576)	206.039***
	중		2.90(0.76)	5.3	18.6	57.2	18.9	100.0(4,712)	
	하		2.76(0.75)	7.0	22.2	58.6	12.2	100.0(2,763)	
경제적 수준	상		2.99(0.77)	4.7	16.0	55.3	24.0	100.0(5,748)	286.324***
	중		2.86(0.74)	5.5	18.6	59.9	16.0	100.0(3,960)	
	하		2.64(0.77)	8.8	28.1	53.6	9.5	100.0(1,33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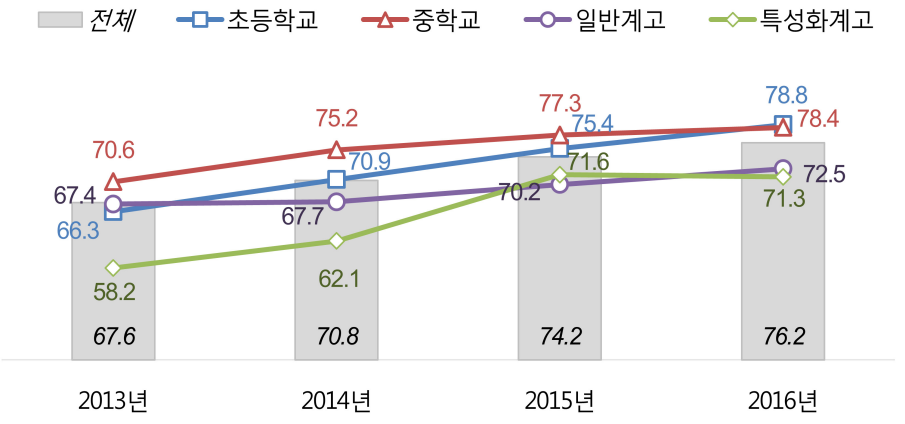

【그림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설문 조항에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6.2%였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9%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자(77.1%)가 남자(75.3%)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78.8%), 중학교(78.4%), 일반계고(72.5%), 특성화계고(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6.9%), 중소도시(75.7%), 읍면지역(75.4%)의 순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76.5%), 조손가정(73.6%), 한부모가정(73.3%), 기타(72.0%)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80.2%, 중76.1%, 하70.8%)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79.3%, 중75.9%, 하63.1%)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년 67.6%, '14년 70.8%, '15년 74.2%, '16년 76.2%). 그러나 가정, 학교,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III-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5(0.77)	6.1	14.3	58.3	21.3	100.0(11,067)	-
성별	남자		2.90(0.83)	8.1	15.4	54.5	22.0	100.0(5,755)	118.263***
	여자		3.00(0.70)	3.9	13.2	62.3	20.6	100.0(5,31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7(0.84)	6.5	12.5	48.8	32.3	100.0(3,118)	409.255***
	중학교		2.98(0.73)	4.8	13.7	60.3	21.2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83(0.74)	7.0	16.3	63.4	13.3	100.0(4,216)	
		일반계고	2.84(0.74)	7.0	16.1	63.0	13.9	100.0(3,388)	
		특성화계고	2.80(0.72)	7.1	16.9	65.2	10.7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2.99(0.79)	6.3	12.6	56.7	24.4	100.0(4,442)	56.000***
	중소도시		2.91(0.76)	5.9	15.9	59.2	19.0	100.0(5,271)	
	읍면지역		2.94(0.76)	6.0	14.1	59.7	20.2	100.0(1,3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77)	6.0	14.3	57.7	21.9	100.0(9,931)	43.265***
	한부모가정		2.88(0.72)	5.9	14.9	64.8	14.4	100.0(818)	
	조손가정		2.90(0.73)	5.6	15.4	62.7	16.3	100.0(105)	
	기타		2.85(0.90)	12.2	12.0	54.5	21.4	100.0(212)	
학업 성적	상		3.03(0.79)	5.7	12.6	54.7	27.0	100.0(3,561)	146.528***
	중		2.95(0.77)	5.9	14.4	58.7	21.0	100.0(4,700)	
	하		2.84(0.75)	6.9	16.3	62.2	14.6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3.02(0.78)	5.5	12.7	55.8	26.0	100.0(5,727)	204.278***
	중		2.91(0.75)	6.0	14.7	61.7	17.5	100.0(3,957)	
	하		2.75(0.79)	8.9	19.8	58.5	12.8	100.0(1,33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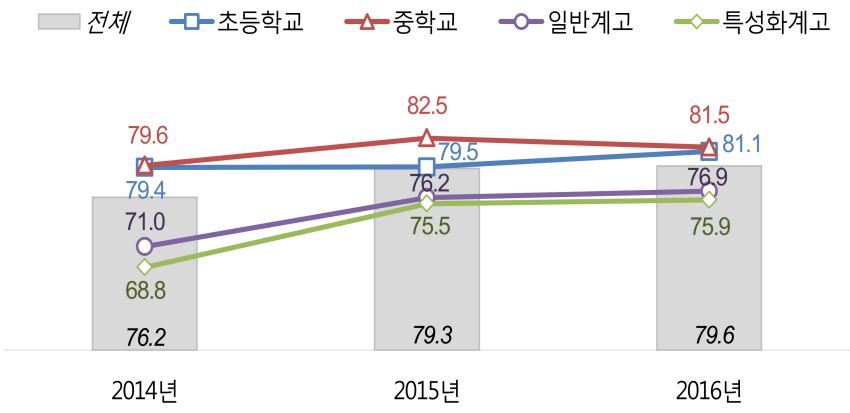

【그림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설문 조항에 아동·청소년 중의 79.6%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4%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나타난 차이를 보면 남자(76.5%)보다는 여자(82.9%)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81.5%가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81.1%), 일반계고(76.9%), 특성화계고(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1.1%), 읍면지역(79.9%), 중소도시(78.2%)의 순으로,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가정(79.6%), 한부모가정(79.2%), 조손가정(79.0%), 기타(75.9%)의 순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상81.7%, 중79.7%, 하76.8%)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81.8%, 중79.2%, 하71.3%)이 높을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전체값 '14년 76.2%, '15년 79.3%, '16년 79.6%)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가분에 비해 2015년 대비 2016년의 증가분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설문조항에 대해 청소년들의 29.6%(그런 편이다 25.8%, 매우 그렇다 3.8%)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70.4%(전혀 그렇지 않다 2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8%)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6(0.83)	27.6	42.8	25.8	3.8	100.0(11,113)	–
성별	남자		2.08(0.86)	28.3	39.7	27.4	4.7	100.0(5,778)	68.152***
	여자		2.03(0.79)	26.9	46.3	24.0	2.8	100.0(5,334)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0(0.92)	22.9	33.5	35.0	8.7	100.0(3,161)	570.215***
	중학교		1.99(0.78)	28.8	45.7	23.4	2.2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1.94(0.75)	30.2	47.3	21.0	1.4	100.0(4,217)	
		일반계고	1.92(0.75)	30.7	47.7	20.3	1.3	100.0(3,388)	
		특성화계고	1.99(0.77)	28.6	45.7	23.9	1.8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06(0.84)	28.6	41.3	25.9	4.2	100.0(4,463)	18.144**
	중소도시		2.04(0.81)	27.3	44.3	25.2	3.2	100.0(5,287)	
	읍면지역		2.10(0.84)	26.1	41.9	27.8	4.2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6(0.82)	27.6	42.9	25.9	3.6	100.0(9,971)	61.594***
	한부모가정		1.98(0.80)	30.3	44.5	22.2	3.0	100.0(820)	
	조손가정		2.23(0.96)	25.9	36.2	26.9	11.0	100.0(108)	
	기타		2.31(0.94)	22.4	35.3	31.5	10.8	100.0(214)	
학업 성적	상		2.04(0.85)	29.7	40.9	25.0	4.5	100.0(3,583)	43.662***
	중		2.10(0.82)	25.3	43.6	27.3	3.8	100.0(4,722)	
	하		2.00(0.80)	29.2	44.0	24.1	2.7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2.09(0.85)	27.4	41.1	26.9	4.6	100.0(5,758)	55.797***
	중		2.04(0.79)	26.7	45.1	25.4	2.8	100.0(3,967)	
	하		1.95(0.80)	31.9	43.6	22.0	2.5	100.0(1,340)	

**$p<.01$, ***$p<.001$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26.8%)보다 남학생(32.1%)이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43.7%로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25.7%), 중학교(25.6%), 일반계고(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2.0%), 대도시(30.1%), 중소도시(28.4%)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으로는 기타(42.3%), 조손가정(37.9%), 양부모가정(29.5%), 한부모가정(25.2%)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중(31.1%)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29.5%), 하(26.8%)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상31.5%, 중28.2%, 하24.5%)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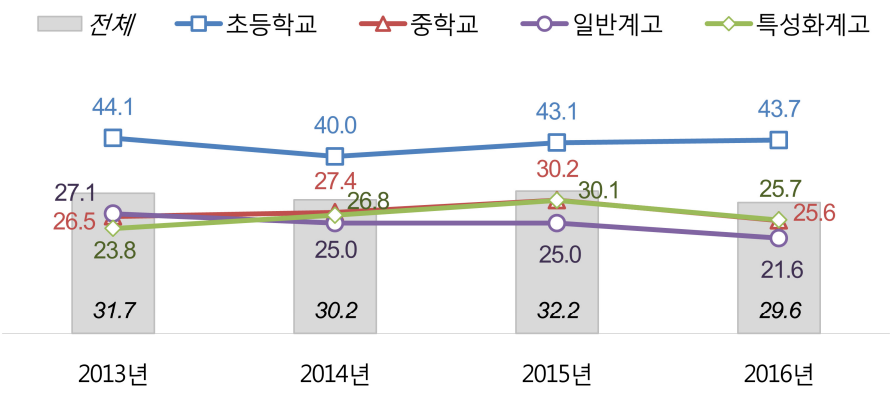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에 '그렇다'라고 한 응답률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 다시 소폭 증가, 그리고 2016년 다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13년 31.7%, '14년 30.2%, '15년 32.2%, '16년 29.6%). 2015년 대비 2016년에 '그렇다'의 응답률이 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나머지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7(0.74)	4.0	12.2	57.0	26.8	100.0(11,106)	–
성별	남자		3.00(0.79)	5.6	14.5	54.6	25.3	100.0(5,775)	148.165***
	여자		3.14(0.67)	2.3	9.7	59.7	28.4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5(0.83)	5.9	14.5	48.8	30.8	100.0(3,157)	188.781***
	중학교		3.01(0.72)	4.0	13.5	59.7	22.9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3.13(0.67)	2.6	9.3	60.9	27.2	100.0(4,216)	
		일반계고	3.18(0.66)	2.1	7.9	60.2	29.8	100.0(3,387)	
		특성화계고	2.92(0.71)	4.6	15.0	63.7	16.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10(0.76)	4.4	11.3	53.8	30.4	100.0(4,459)	73.505***
	중소도시		3.05(0.71)	3.5	12.1	60.0	24.3	100.0(5,284)	
	읍면지역		3.00(0.76)	4.5	15.2	56.0	24.3	100.0(1,36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8(0.73)	3.8	11.7	57.1	27.3	100.0(9,966)	62.430***
	한부모가정	2.99(0.74)	4.0	15.8	57.6	22.6	100.0(819)	
	조손가정	2.75(0.88)	12.8	14.9	56.3	16.0	100.0(107)	
	기타	2.90(0.86)	8.4	17.2	50.4	24.0	100.0(214)	
학업 성적	상	3.18(0.72)	3.2	8.9	54.1	33.8	100.0(3,580)	198.150***
	중	3.05(0.73)	3.9	12.7	58.3	25.1	100.0(4,719)	
	하	2.94(0.75)	5.2	15.7	58.7	20.4	100.0(2,765)	
경제적 수준	상	3.10(0.74)	3.9	11.4	55.4	29.4	100.0(5,752)	48.676***
	중	3.02(0.73)	4.1	13.2	59.5	23.1	100.0(3,967)	
	하	3.05(0.75)	4.2	12.5	56.9	26.4	100.0(1,33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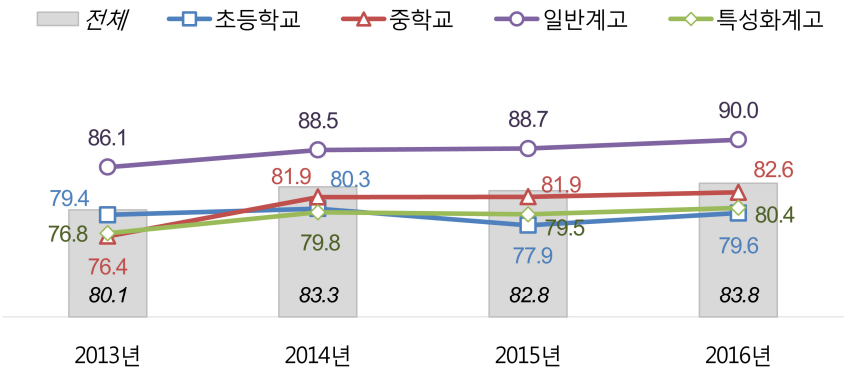

【그림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문조항에 대해 83.8%(그런 편이다 57.0%, 매우 그렇다 26.8%)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6.2%(전혀 그렇지 않다 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2%)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88.1%)이 남학생(79.9%)보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90.0%)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82.6%), 특성화계고(80.4%), 초등학교(7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4.3%), 대도시(84.2%), 읍면지역(80.3%) 순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가정(84.4%), 한부모가정(80.2%), 기타(74.4%), 조손가정(72.3%)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상87.9%, 중83.4%, 하79.1%)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84.8%, 중83.3%, 하82.6%)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2013년 80.1%, 2014년 83.3%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 82.8%로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모든 교급이 증가세를 보였다.

표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70)	4.5	14.3	64.0	17.2	100.0(7,949)	-
성별	남자		2.87(0.75)	6.4	15.8	61.7	16.1	100.0(4,141)	95.153***
	여자		3.01(0.64)	2.4	12.7	66.4	18.4	100.0(3,808)	
학교 유형	중학교		2.96(0.70)	4.2	13.7	64.1	18.0	100.0(3,732)	6.065
	고등학교	전체	2.92(0.71)	4.8	14.9	63.8	16.5	100.0(4,217)	
		일반계고	2.95(0.70)	4.3	14.5	63.1	18.1	100.0(3,387)	
		특성화계고	2.80(0.70)	6.7	16.5	66.7	10.1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95(0.73)	5.1	14.3	61.4	19.2	100.0(3,125)	22.789***
	중소도시		2.93(0.68)	4.0	14.4	65.8	15.8	100.0(3,886)	
	읍면지역		2.92(0.70)	4.7	14.2	65.2	15.9	100.0(9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0.70)	4.3	14.1	64.3	17.3	100.0(7,102)	15.539
	한부모가정		2.87(0.73)	5.8	16.3	62.8	15.0	100.0(671)	
	조손가정		2.95(0.75)	4.9	15.6	58.7	20.8	100.0(57)	
	기타		2.89(0.82)	7.2	18.2	53.2	21.4	100.0(119)	
학업 성적	상		3.00(0.71)	4.2	12.8	62.2	20.8	100.0(2,127)	79.249***
	중		2.97(0.68)	3.7	13.3	65.0	18.0	100.0(3,298)	
	하		2.84(0.71)	5.9	17.1	64.2	12.9	100.0(2,489)	
경제적 수준	상		2.98(0.71)	4.3	13.4	62.5	19.8	100.0(3,668)	38.729***
	중		2.91(0.68)	4.3	15.2	65.5	15.0	100.0(3,036)	
	하		2.88(0.72)	5.9	14.7	64.6	14.8	100.0(1,206)	

***$p<.001$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설문조항에 대해 81.2%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64.0%, 매우 그렇다 17.2%)고 응답하였고 18.8%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3%)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77.8%)보다 여학생(84.8%)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1.6%), 읍면지역(81.1%), 대도시(80.6%)의 순으로 '그렇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상83.0%, 중83.0%, 하77.1%)과 경제적 수준(상82.3%, 중80.5%, 하79.4%)이 높을수록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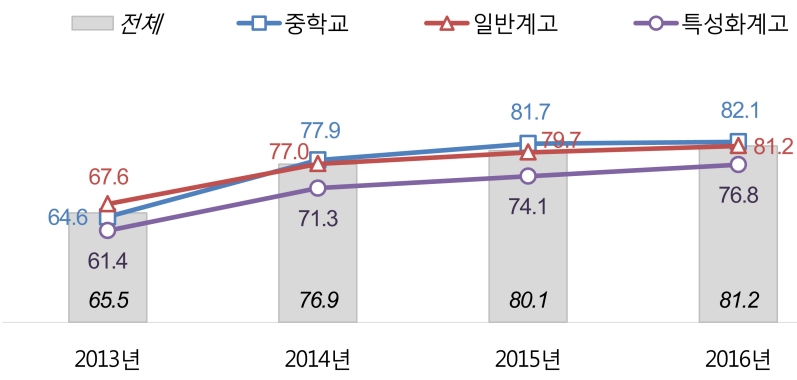

【그림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매년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13년 65.5% → '14년 76.9% → '15년 80.1%→ '16년 81.2%) 전년대비 상승폭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설문조항에 대해 94.7%(그런 편이다 44.8%, 매우 그렇다49.9%)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4%(전혀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2.6%)보다는 여학생(96.9%)이,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96.6%), 특성화계고(94.8%), 중학교(94.4%), 초등학교(92.9%)의 순으로, 지역규모 별로는 중소도시(95.4%), 대도시(94.3%), 읍면지역(92.9%)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5.1%), 한부모가정(93.2%), 조손가정(89.7%), 기타(85.6%)의 순으로,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상96.5%, 중94.4%, 하92.7%) 경제적 수준(상94.8%, 중94.6%, 하94.5%)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3년 90.8% → '14년 93.4% → '15년 94.0% → '16년 94.7%). 2015년 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급에서 모두 수치가 상승하였다.

표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3(0.66)	2.0	3.4	44.8	49.9	100.0(11,098)	–
성별	남자		3.36(0.70)	2.8	4.6	46.8	45.8	100.0(5,771)	150.737***
	여자		3.50(0.59)	1.1	2.0	42.6	54.3	100.0(5,3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8(0.72)	3.1	4.0	34.6	58.3	100.0(3,146)	214.159***
	중학교		3.37(0.65)	2.0	3.6	49.5	44.9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3.43(0.61)	1.1	2.6	48.2	48.0	100.0(4,217)	
		일반계고	3.46(0.60)	1.1	2.4	46.2	50.4	100.0(3,387)	
		특성화계고	3.32(0.62)	1.5	3.6	56.3	38.5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45(0.68)	2.5	3.2	41.4	52.9	100.0(4,458)	55.956***
	중소도시		3.42(0.63)	1.5	3.1	47.5	47.9	100.0(5,279)	
	읍면지역		3.38(0.69)	2.4	4.7	45.5	47.4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4(0.65)	1.9	3.1	44.6	50.5	100.0(9,958)	73.737***
	한부모가정		3.37(0.66)	1.6	5.1	47.9	45.3	100.0(819)	
	조손가정		3.20(0.83)	7.8	2.5	51.4	38.3	100.0(107)	
	기타		3.27(0.82)	4.6	9.8	39.6	46.0	100.0(214)	
학업 성적	상		3.55(0.61)	1.2	2.3	37.2	59.3	100.0(3,578)	230.897***
	중		3.40(0.66)	2.2	3.4	46.4	48.0	100.0(4,712)	
	하		3.31(0.68)	2.7	4.6	51.7	41.0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3.46(0.66)	2.0	3.2	41.5	53.3	100.0(5,748)	61.215***
	중		3.38(0.65)	1.9	3.5	49.1	45.5	100.0(3,964)	
	하		3.41(0.66)	2.0	3.5	46.1	48.4	100.0(1,33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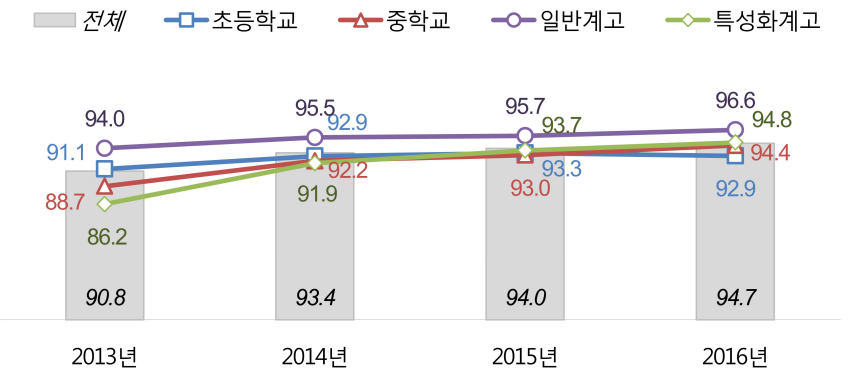

【그림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표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8(0.63)	1.7	2.3	32.7	63.2	100.0(7,948)	–
성별	남자		3.49(0.69)	2.7	3.3	35.9	58.1	100.0(4,140)	146.578***
	여자		3.66(0.54)	0.6	1.3	29.3	68.8	100.0(3,809)	
학교 유형	중학교		3.54(0.66)	2.2	3.0	33.7	61.1	100.0(3,734)	30.035***
	고등학교	전체	3.61(0.59)	1.3	1.7	31.9	65.1	100.0(4,215)	
		일반계고	3.63(0.58)	1.2	1.5	30.1	67.2	100.0(3,385)	
		특성화계고	3.51(0.64)	1.8	2.6	39.0	56.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58(0.65)	2.4	2.1	30.4	65.2	100.0(3,125)	34.563***
	중소도시		3.56(0.61)	1.2	2.6	35.1	61.2	100.0(3,886)	
	읍면지역		3.60(0.62)	1.8	2.1	30.9	65.2	100.0(9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8(0.62)	1.7	2.1	32.7	63.5	100.0(7,102)	41.770***
	한부모가정		3.59(0.62)	1.3	3.2	31.1	64.4	100.0(671)	
	조손가정		3.33(0.76)	3.6	6.8	42.3	47.4	100.0(57)	
	기타		3.34(0.81)	4.4	8.1	36.4	51.0	100.0(119)	
학업 성적	상		3.63(0.60)	1.5	1.8	29.2	67.5	100.0(2,126)	35.357***
	중		3.57(0.61)	1.5	2.0	34.0	62.5	100.0(3,296)	
	하		3.53(0.66)	2.1	3.2	34.1	60.6	100.0(2,491)	
경제적 수준	상		3.56(0.65)	2.0	2.6	32.5	62.8	100.0(3,668)	18.653**
	중		3.57(0.61)	1.5	2.2	34.3	62.0	100.0(3,037)	
	하		3.63(0.60)	1.5	1.5	29.3	67.6	100.0(1,205)	

**$p<.01$, ***$p<.001$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문조항에 '그렇다'(그런 편이다 32.7%, 매우 그렇다 63.2%)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5.9%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4.0%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4.0%)보다는 여학생(98.1%)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97.3%), 특성화계고(95.7%), 중학교(94.8%)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6.3%), 읍면지역(96.1%), 대도시(95.6%) 순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6.2%), 한부모가정(95.5%), 조손가정(89.7%), 기타(87.4%)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상(96.7%), 중(96.5%), 하(94.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경제적 수준이 하(96.9%)일 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상(95.3%)과 중(96.3%)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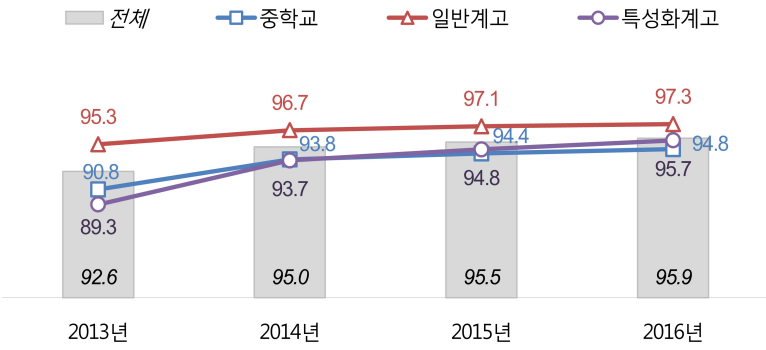

【그림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3년 92.6% → '14년 95.0% → '15년 95.5% → '16년 95.9%) 교급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3(0.68)	2.3	3.8	32.3	61.6	100.0(11,095)	–
성별	남자		3.45(0.74)	3.3	5.1	35.3	56.3	100.0(5,766)	197.277***
	여자		3.63(0.59)	1.2	2.4	29.0	67.4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6(0.73)	3.6	3.3	26.7	66.4	100.0(3,151)	100.819***
	중학교		3.53(0.66)	1.9	3.6	33.6	60.8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3.51(0.66)	1.6	4.3	35.3	58.7	100.0(4,214)	
		일반계고	3.53(0.66)	1.6	4.5	33.5	60.4	100.0(3,384)	
		특성화계고	3.45(0.66)	1.9	3.4	42.7	52.0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54(0.70)	2.7	3.9	29.8	63.6	100.0(4,456)	30.819***
	중소도시		3.54(0.66)	1.8	3.6	33.8	60.8	100.0(5,279)	
	읍면지역		3.48(0.71)	2.8	4.3	34.4	58.5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4(0.67)	2.2	3.6	32.1	62.1	100.0(9,955)	43.237***
	한부모가정		3.51(0.68)	1.7	5.3	33.5	59.5	100.0(820)	
	조손가정		3.29(0.91)	7.6	7.9	32.7	51.7	100.0(107)	
	기타		3.36(0.83)	5.4	7.0	34.2	53.4	100.0(214)	
학업 성적	상		3.62(0.63)	1.8	3.1	26.5	68.7	100.0(3,579)	136.480***
	중		3.52(0.69)	2.4	3.7	33.6	60.2	100.0(4,714)	
	하		3.44(0.72)	2.8	4.8	37.6	54.8	100.0(2,76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3.55(0.68)	2.3	3.7	30.3	63.7	100.0(5,749)	25.588***
	중	3.51(0.67)	2.2	3.7	34.7	59.5	100.0(3,962)	
	하	3.50(0.70)	2.6	4.5	33.7	59.3	100.0(1,337)	

***$p<.001$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설문조항에 93.9%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2.3%, 매우 그렇다 61.6%)라고 응답하였고, 6.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3%, 그렇지 않다 3.8%)라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1.6%)보다는 여학생(96.4%)이,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94.7%), 중학교(94.4%), 일반계고(93.9%), 초등학교(93.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4.6%), 대도시(93.4%), 읍면지역(92.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4.2%), 한부모가정(93.0%), 기타(87.6%), 조손가정(84.4%)의 순으로, 그리고 학업성적(상95.2%, 중93.8%, 하92.4%)이 높을수록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94.2%), 상(94.0%), 하(93.0%)의 순으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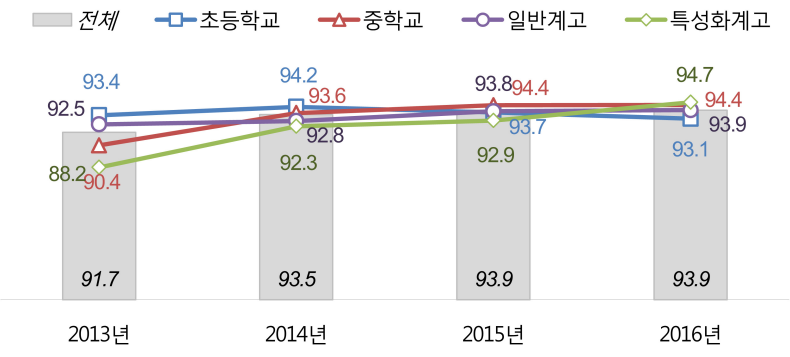

【그림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정체를 보였다('13년 91.7% → '14년 93.5% → '15년 93.9%→ '16년 93.9%). 2015년 대비 2016년에 다른 교급들은 소폭 하락하거나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특성화계고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7(0.75)	3.5	6.1	39.8	50.5	100.0(11,078)	-
성별	남자		3.30(0.80)	5.0	6.9	41.1	47.0	100.0(5,760)	121.542***
	여자		3.45(0.68)	1.9	5.2	38.4	54.4	100.0(5,31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5(0.83)	5.2	7.2	34.9	52.7	100.0(3,138)	80.711***
	중학교		3.39(0.73)	3.1	5.3	41.1	50.5	100.0(3,727)	
	고등학교	전체	3.38(0.71)	2.6	6.0	42.4	49.0	100.0(4,212)	
		일반계고	3.41(0.70)	2.4	5.5	40.9	51.3	100.0(3,383)	
		특성화계고	3.25(0.74)	3.4	8.1	48.7	39.8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38(0.78)	4.2	6.2	37.0	52.6	100.0(4,445)	35.373***
	중소도시		3.37(0.73)	2.9	5.8	42.2	49.1	100.0(5,275)	
	읍면지역		3.35(0.76)	3.6	6.8	40.2	49.4	100.0(1,3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9(0.74)	3.3	5.9	39.8	51.1	100.0(9,941)	63.653***
	한부모가정		3.32(0.77)	3.7	7.7	41.8	46.8	100.0(819)	
	조손가정		3.03(0.98)	12.3	8.8	42.5	36.3	100.0(106)	
	기타		3.20(0.93)	8.2	10.8	34.0	47.0	100.0(213)	
학업 성적	상		3.47(0.72)	3.1	4.3	34.7	57.9	100.0(3,568)	146.522***
	중		3.36(0.75)	3.5	6.7	40.7	49.2	100.0(4,706)	
	하		3.28(0.77)	4.1	7.5	45.1	43.3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3.40(0.76)	3.7	5.7	38.0	52.6	100.0(5,736)	26.709***
	중		3.36(0.74)	3.2	6.3	41.9	48.6	100.0(3,956)	
	하		3.33(0.76)	3.5	7.3	41.5	47.7	100.0(1,338)	

***$p<.001$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설문조항에 90.3%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50.5%)라고 응답하였으며 9.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1%)라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88.1%)보다는 여자(9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92.2%), 중학교(91.6%), 특성화계고(88.5%), 초등학교(87.6%)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1.3%)가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89.6%)와 읍면지역(89.6%)의 비율은 동일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0.9%), 한부모가정(88.6%), 기타(81.0%), 조손가정(78.8%)의 순으로, 그리고 성적(상92.6%, 중89.9%, 하88.4%)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90.6%, 중90.5%, 하89.2%)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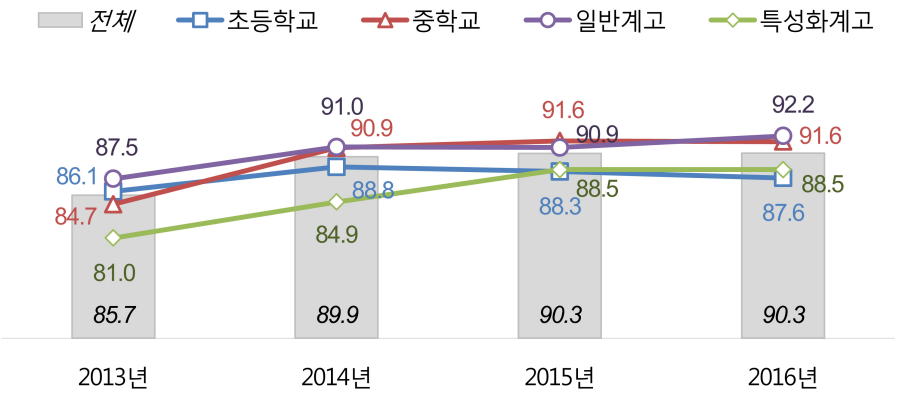

【그림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13년 85.7% → '14년 89.9% → '15년 90.3%→ '16년 90.3%).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70.0%로 나타났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은 30.0%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경험은 남자(67.3%)보다 여자(72.9%)가 비율이 더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78.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72.6%), 일반계고(62.1%), 특성화계고(5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3.0%), 중소도시(68.7%), 읍면지역(65.2%)의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72.2%), 양부모가정(70.2%), 한부모가정(68.3%), 기타(64.9%)의 순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성적(상74.4%, 중69.8%, 하64.6%)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71.7%, 중68.6%, 하66.8%)이 높을수록 경험비율이 높았다.

표 Ⅲ-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4.1	19.9	16.2	5.2	14.6	30.0	100.0(11,021)	–
성별	남자		13.6	19.1	16.0	4.7	13.9	32.7	100.0(5,742)	44.922***
	여자		14.6	20.9	16.4	5.7	15.4	27.1	100.0(5,27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2	18.0	18.6	9.9	22.8	21.6	100.0(3,105)	775.328***
	중학교		14.2	22.6	16.6	4.1	15.1	27.4	100.0(3,722)	
	고등학교	전체	17.6	19.0	14.1	2.6	8.2	38.5	100.0(4,194)	
		일반계고	18.0	18.7	14.2	2.6	8.7	37.9	100.0(3,372)	
		특성화계고	15.8	20.0	14.1	2.5	6.3	41.4	100.0(822)	
지역 규모	대도시		14.3	17.9	16.7	5.6	18.5	27.0	100.0(4,426)	145.868***
	중소도시		14.4	22.2	15.8	4.6	11.6	31.3	100.0(5,246)	
	읍면지역		11.9	17.6	16.3	5.7	13.7	34.8	100.0(1,3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9	20.3	16.0	5.2	14.8	29.8	100.0(9,891)	34.830**
	한부모가정		16.9	17.0	19.1	4.2	11.2	31.7	100.0(815)	
	조손가정		19.8	18.2	15.4	2.8	16.1	27.8	100.0(105)	
	기타		10.1	15.9	15.4	5.9	17.6	35.1	100.0(210)	
학업 성적	상		13.4	19.9	16.4	6.5	18.2	25.6	100.0(3,550)	147.840***
	중		14.3	19.2	17.1	5.2	14.0	30.2	100.0(4,686)	
	하		14.4	21.4	14.3	3.4	11.0	35.4	100.0(2,741)	
경제적 수준	상		12.8	19.9	16.7	6.1	16.2	28.3	100.0(5,709)	84.105***
	중		14.6	20.4	15.9	4.3	13.4	31.4	100.0(3,936)	
	하		18.2	18.7	15.0	3.6	11.3	33.2	100.0(1,33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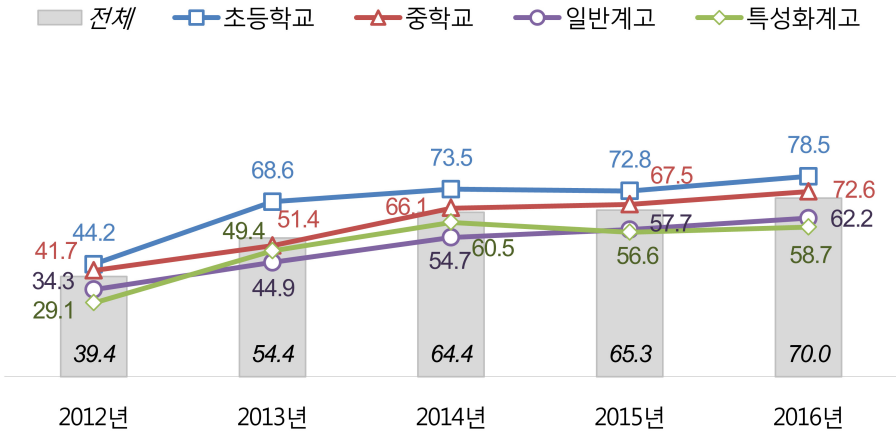

* 주: '교육받은 적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

【그림 Ⅲ-1-17】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 전체값을 보면 2012년(39.4%)에서 2013년(54.4%)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2014년(64.4%)과 2015년(65.3%)에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2016년에는 70.0%로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에서 상승을 보였고 특히 초등학교('15년 72.8%→ '16년 78.5%)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고 전 해에 걸쳐 모든 교급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② 인권교육 받은 기관

표 Ⅲ-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단위 : %)

구분			학교 정규 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65.3	39.7	16.0	2.8	100.0(7,549)
성별	남자		64.6	38.4	16.3	2.2	100.0(3,777)
	여자		66.1	40.9	15.7	3.4	100.0(3,772)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4	40.1	23.8	5.5	100.0(2,367)
	중학교		73.8	31.7	14.2	1.6	100.0(2,647)
	고등학교	전체	56.4	47.5	10.6	1.5	100.0(2,535)
		일반계고	53.5	51.5	11.0	1.5	100.0(2,065)
		특성화계고	69.5	30.0	9.0	1.4	100.0(470)
지역 규모	대도시		65.6	40.6	16.8	3.8	100.0(3,171)
	중소도시		67.2	37.8	14.8	1.9	100.0(3,512)
	읍면지역		56.9	43.7	18.0	2.8	100.0(8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0	40.0	16.0	2.9	100.0(6,797)
	한부모가정		68.8	35.2	14.8	1.7	100.0(546)
	조손가정		65.7	38.9	20.1	3.1	100.0(75)
	기타		68.8	39.1	16.4	4.0	100.0(131)
학업 성적	상		65.0	42.9	17.8	3.5	100.0(2,591)
	중		65.3	39.6	15.3	2.8	100.0(3,200)
	하		65.7	34.9	14.7	1.9	100.0(1,727)
경제적 수준	상		66.1	39.8	18.1	3.4	100.0(4,007)
	중		64.8	39.5	13.6	2.1	100.0(2,641)
	하		62.9	39.7	13.8	1.9	100.0(86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 정규교과시간은 65.3%,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39.7%,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16.0%, 기타는 2.8%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이 순서(학교 정규 교과시간 >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 기타)는 모든 변인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교급은 초등학교(23.8%)이고 가장 낮은 교급은 특성화계고(9.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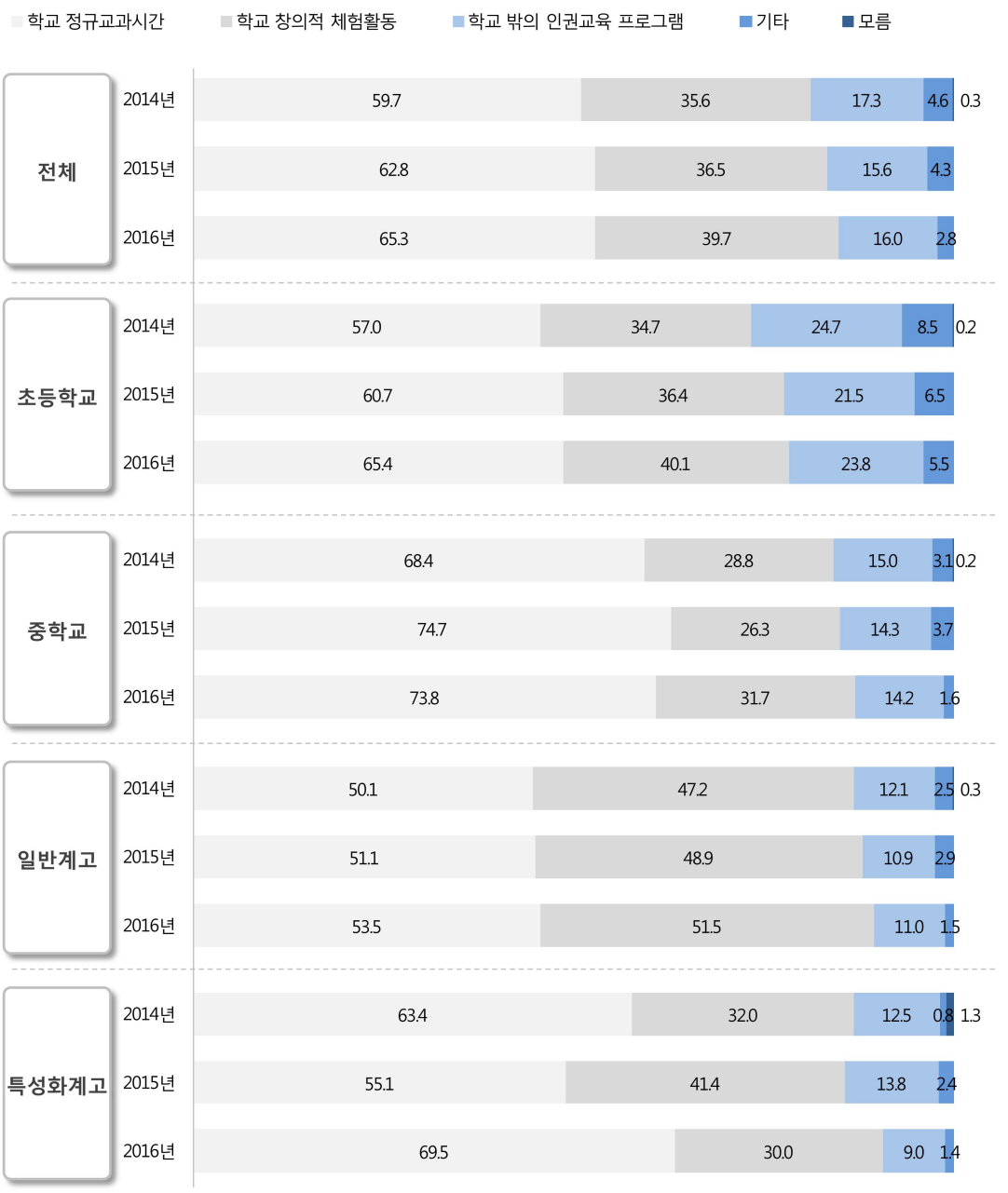

【그림 Ⅲ-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14년 59.7% → '15년 62.8% → '16년 65.3%), 초등학교와 일반계고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반면, 중학교('14년 68.4% → '15년 74.7% → '16년 73.8%)는 2016년에 소폭 감소하였고 특성화계고('14년 63.4% → '15년 55.1% → '16년 69.5%)는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14년 35.6% → '15년 36.5% → '16년 39.7%)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받은 경우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14년 17.3% → '15년 15.6% → '16년 16.0%).

③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의 도움정도를 묻는 설문조항에 '도움이 된다'(도움이 되는 편이다 61.3%, 매우 도움이 된다 11.1%)로 응답한 비율은 72.4%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0%,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21.6%)로 응답한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남학생(70.2%)보다는 여학생(74.7%)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89.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70.1%), 특성화계고(64.5%), 일반계고(5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75.9%), 대도시(74.3%), 중소도시(69.9%)의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82.6%), 기타(76.9%), 양부모가정(72.7%), 한부모가정(66.3%)의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성적(상76.1%, 중74.9%, 하62.4%)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75.7%, 중71.8%, 하59.3%)이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I-1-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전체			2.78(0.72)	6.0	21.6	61.3	11.1	100.0(7,181)	–
성별	남자		2.73(0.75)	7.8	22.1	59.4	10.8	100.0(3,591)	44.845***
	여자		2.82(0.68)	4.2	21.1	63.2	11.5	100.0(3,5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2(0.62)	1.6	9.2	65.0	24.2	100.0(2,280)	965.634***
	중학교		2.71(0.66)	5.4	24.5	63.9	6.2	100.0(2,531)	
	고등학교	전체	2.52(0.74)	10.8	30.3	54.9	3.9	100.0(2,371)	
		일반계고	2.50(0.75)	11.8	30.7	53.6	4.0	100.0(1,939)	
		특성화계고	2.61(0.66)	6.6	28.9	61.1	3.4	100.0(43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2.82(0.73)	5.8	19.8	61.0	13.3	100.0(3,037)	50.543***
	중소도시	2.72(0.71)	6.3	23.8	61.2	8.7	100.0(3,319)	
	읍면지역	2.84(0.71)	5.3	18.8	62.9	13.0	100.0(82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8(0.71)	5.8	21.5	61.5	11.2	100.0(6,471)	21.599*
	한부모가정	2.67(0.75)	8.4	25.2	57.6	8.7	100.0(522)	
	조손가정	2.93(0.66)	4.1	13.4	68.5	14.1	100.0(71)	
	기타	2.83(0.77)	8.1	14.9	62.3	14.6	100.0(116)	
학업 성적	상	2.86(0.73)	5.2	18.7	60.7	15.4	100.0(2,499)	177.811***
	중	2.80(0.69)	5.2	19.8	64.3	10.6	100.0(3,025)	
	하	2.60(0.72)	8.4	29.2	56.9	5.5	100.0(1,633)	
경제적 수준	상	2.84(0.73)	5.6	18.6	61.7	14.0	100.0(3,826)	150.268***
	중	2.75(0.69)	5.8	22.4	62.9	8.9	100.0(2,495)	
	하	2.56(0.71)	8.1	32.7	54.6	4.7	100.0(835)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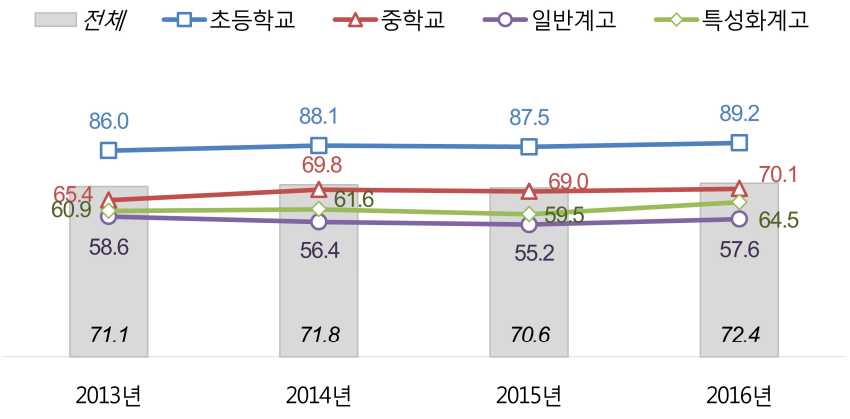

* 주: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4년 71.8% → '15년 70.6% → '16년 72.4%).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에서 수치가 상승하였다.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① 차별해 본 경험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성차별 가해 경험 비율은 21.2%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수치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19.9%)보다는 여학생(22.6%)의 성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높았고,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25.0%), 중학교(22.9%), 일반계고(21.9%), 초등학교(17.3%)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4.9%), 기타(23.6%), 양부모가정(20.8%), 조손가정(16.4%)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하24.9%, 중20.2%, 상19.3%)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하 22.8%, 중22.1%, 상 20.0%)이 낮을수록 성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0 차별해 본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9	15.3	4.1	1.2	0.6	21.2	100.0(11,105)	-
성별	남자		80.2	13.6	4.2	1.3	0.8	19.9	100.0(5,773)	35.198***
	여자		77.4	17.1	4.0	1.1	0.4	22.6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7	12.1	3.4	1.2	0.6	17.3	100.0(3,161)	54.020***
	중학교		77.1	16.2	4.7	1.5	0.5	22.9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77.5	16.9	4.1	0.9	0.6	22.5	100.0(4,213)	
		일반계고	78.1	16.8	3.7	0.8	0.6	21.9	100.0(3,383)	
		특성화계고	74.9	17.3	5.7	1.3	0.7	25.0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79.7	15.1	3.6	1.0	0.6	20.3	100.0(4,460)	13.673
	중소도시		78.7	15.3	4.4	1.1	0.5	21.3	100.0(5,284)	
	읍면지역		76.7	16.0	4.8	1.8	0.6	23.2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2	15.2	4.0	1.1	0.5	20.8	100.0(9,964)	-
	한부모가정		75.1	17.5	4.5	1.9	1.0	24.9	100.0(820)	
	조손가정		83.7	12.3	2.2	1.9	0.0	16.4	100.0(108)	
	기타		76.3	13.2	7.3	2.4	0.7	23.6	100.0(214)	
학업 성적	상		80.6	14.1	3.6	1.0	0.6	19.3	100.0(3,583)	38.673***
	중		79.8	14.9	3.9	1.0	0.4	20.2	100.0(4,716)	
	하		75.1	17.5	4.9	1.7	0.8	24.9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79.9	14.7	3.6	1.1	0.6	20.0	100.0(5,759)	20.621**
	중		77.9	15.7	4.8	1.2	0.4	22.1	100.0(3,958)	
	하		77.2	16.6	4.0	1.2	1.0	22.8	100.0(1,34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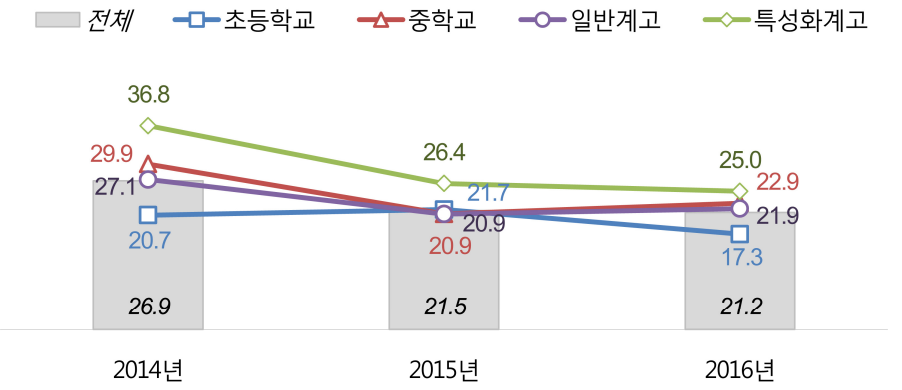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0】 차별해 본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성차별을 해본 경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14년 26.9% → '15년 21.5% → '16년 21.2%)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는 수치가 소폭 상승하였다.

최근 1년간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조항에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가해경험 비율은 여타 다른 이유로 차별한 경우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20.6%)보다는 남학생(23.9%)들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28.5%), 특성화계고(26.8%), 중학교(24.5%), 초등학교(1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5.3%), 양부모가정(22.1%), 기타(21.9%), 조손가정(16.4%)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28.3%, 중20.6%, 상19.7%), 경제적 수준(하29.6%, 중21.7%, 상20.8%)이 낮을수록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1 차별해 본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7.7	14.0	5.6	1.8	0.8	22.2	100.0(11,113)	-
성별	남자	76.2	14.1	6.3	2.4	1.1	23.9	100.0(5,780)	44.460***
	여자	79.4	14.0	4.8	1.3	0.5	20.6	100.0(5,333)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2	8.7	2.0	0.7	0.4	11.8	100.0(3,163)	306.682***
	중학교		75.5	14.7	6.6	2.2	1.0	24.5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71.9	17.4	7.3	2.4	1.0	28.1	100.0(4,217)	
		일반계고	71.6	17.5	7.6	2.3	1.1	28.5	100.0(3,387)	
		특성화계고	73.2	17.3	6.0	2.7	0.8	26.8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77.5	13.7	5.7	2.0	1.0	22.4	100.0(4,463)	11.033
	중소도시		77.8	14.5	5.5	1.5	0.7	22.2	100.0(5,287)	
	읍면지역		78.4	13.2	5.2	2.4	0.8	21.6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7.9	14.1	5.4	1.8	0.8	22.1	100.0(9,971)	-
	한부모가정		74.8	14.3	7.5	2.2	1.3	25.3	100.0(820)	
	조손가정		83.6	13.0	1.2	0.7	1.5	16.4	100.0(108)	
	기타		78.1	11.3	5.4	5.2	0.0	21.9	100.0(214)	
학업 성적	상		80.3	12.7	5.1	1.2	0.7	19.7	100.0(3,583)	113.232***
	중		79.4	13.3	5.3	1.4	0.6	20.6	100.0(4,723)	
	하		71.8	16.9	6.5	3.4	1.5	28.3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79.2	13.0	5.4	1.5	0.9	20.8	100.0(5,762)	60.890***
	중		78.3	13.9	5.2	2.0	0.6	21.7	100.0(3,963)	
	하		70.3	18.5	7.0	3.0	1.1	29.6	100.0(1,34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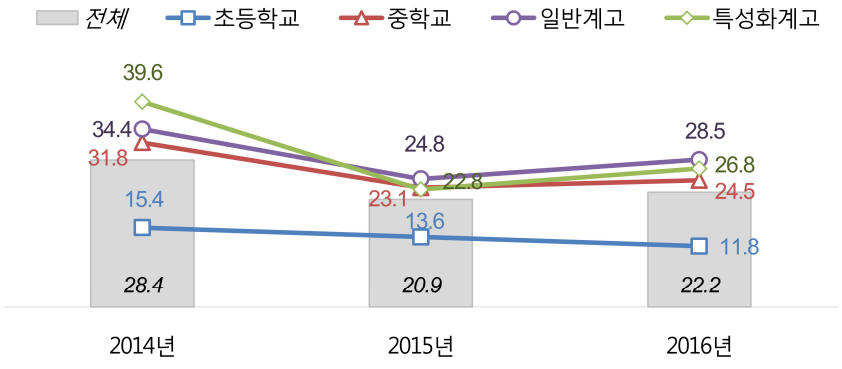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1】 차별해 본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 비율은 2015년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14년 28.4% → '15년 20.9% → '16년 22.2%). 전년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만 수치가 감소하였고 다른 교급들은 모두 상승하였다.

표 Ⅲ-1-22 차별해 본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9.9	13.8	4.4	1.3	0.6	20.1	100.0(11,106)	-
성별	남자		80.8	12.2	4.8	1.5	0.8	19.3	100.0(5,775)	35.749***
	여자		79.0	15.5	3.9	1.2	0.4	21.0	100.0(5,3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1	9.4	2.5	0.5	0.4	12.8	100.0(3,162)	158.873***
	중학교		77.3	15.0	5.0	2.1	0.7	22.8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76.9	16.0	5.2	1.3	0.6	23.1	100.0(4,212)	
		일반계고	77.0	16.2	4.7	1.5	0.7	23.1	100.0(3,384)	
		특성화계고	76.5	15.4	7.4	0.5	0.3	23.6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79.9	13.6	4.6	1.4	0.6	20.2	100.0(4,459)	5.297
	중소도시		79.7	14.3	4.2	1.2	0.6	20.3	100.0(5,285)	
	읍면지역		80.9	12.8	4.1	1.7	0.6	19.2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0.2	13.8	4.1	1.3	0.6	19.8	100.0(9,966)	31.421**
	한부모가정		76.3	15.0	6.8	1.2	0.7	23.7	100.0(818)	
	조손가정		84.3	10.1	4.4	0.5	0.7	15.7	100.0(108)	
	기타		78.5	10.5	6.4	3.6	1.0	21.5	100.0(214)	
학업 성적	상		80.8	13.7	4.1	1.0	0.5	19.3	100.0(3,580)	35.324***
	중		81.1	13.2	4.1	1.1	0.5	18.9	100.0(4,721)	
	하		76.9	15.0	5.1	2.1	0.9	23.1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80.5	13.7	4.0	1.2	0.6	19.5	100.0(5,760)	14.577
	중		79.8	13.8	4.4	1.4	0.5	20.1	100.0(3,962)	
	하		77.3	14.4	5.9	1.7	0.7	22.7	100.0(1,336)	

**$p<.01$, ***$p<.00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가해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1년 동안 차별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로 나타났고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19.3%)보다는 여자(21.0%)가 차별한 경험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23.6%), 일반계고(23.1%), 중학교(22.8%), 초등학교(12.8%)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3.7%), 기타(21.5%), 양부모가정(19.8%), 조손가정(15.7%)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별로는 하(23.1%), 상(19.3%), 중(18.9%)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22.7%), 중(20.1%), 상(19.5%)의 순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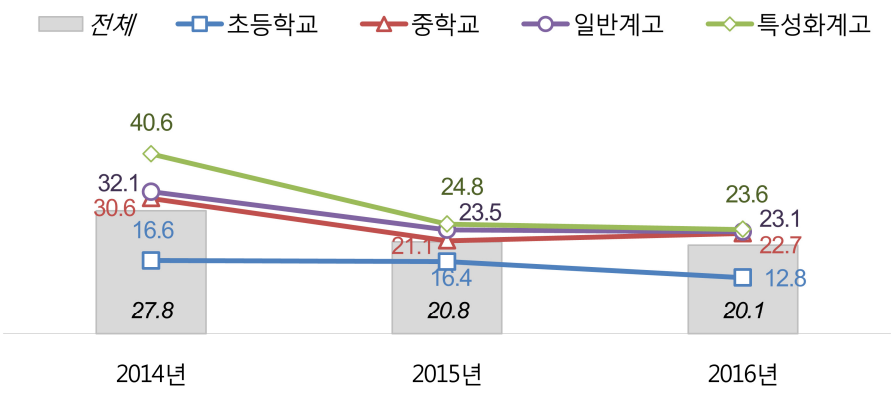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2】 차별해 본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 비율은 2015년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16년 소폭 감소하였다('14년 27.8% → '15년 20.8% → '16년 20.1%). 2016년 중학교만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교급들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5	2.2	0.8	0.3	0.2	3.5	100.0(11,108)	–
성별	남자		95.7	2.5	1.0	0.4	0.3	4.2	100.0(5,779)	29.308***
	여자		97.4	1.8	0.6	0.2	0.1	2.7	100.0(5,3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9	1.4	0.4	0.1	0.1	2.0	100.0(3,161)	28.579***
	중학교		95.8	2.6	1.1	0.4	0.2	4.3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96.1	2.4	0.9	0.3	0.3	3.9	100.0(4,216)	
		일반계고	96.4	2.3	0.7	0.4	0.3	3.7	100.0(3,386)	
		특성화계고	95.0	2.8	1.8	0.3	0.1	5.0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5.7	2.6	1.0	0.4	0.3	4.3	100.0(4,461)	18.110*
	중소도시		97.0	1.9	0.7	0.3	0.1	3.0	100.0(5,286)	
	읍면지역		97.3	1.9	0.6	0.1	0.2	2.8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8	2.0	0.8	0.2	0.2	3.2	100.0(9,967)	–
	한부모가정		95.0	3.7	0.5	0.7	0.1	5.0	100.0(820)	
	조손가정		91.0	4.6	0.7	1.5	2.2	9.0	100.0(108)	
	기타		94.5	2.7	0.3	2.5	0.0	5.5	100.0(214)	
학업 성적	상		96.3	2.3	0.8	0.4	0.2	3.7	100.0(3,581)	20.672**
	중		97.2	1.7	0.8	0.2	0.1	2.8	100.0(4,722)	
	하		95.7	2.7	0.7	0.5	0.3	4.2	100.0(2,763)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6.6	2.1	0.7	0.3	0.3	3.4	100.0(5,759)	28.430***
	중	97.2	1.7	0.8	0.2	0.1	2.8	100.0(3,961)	
	하	94.4	3.7	1.1	0.4	0.3	5.5	100.0(1,340)	

*p<.05, **p<.01, ***p<.001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해본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으로 가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비율은 96.5%였고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7%)보다 남학생(4.2%)의 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계고(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4.3%), 일반계고(3.7%), 초등학교(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4.3%), 중소도시(3.0%), 읍면지역(2.8%)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9.0%), 기타(5.5%), 한부모가정(5.0%), 양부모가정(3.2%)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4.2%)에 속한 응답자가 상위권(3.7%), 중위권(2.8%)에 비해 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권(5.5%)에 속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3.4%), 중(2.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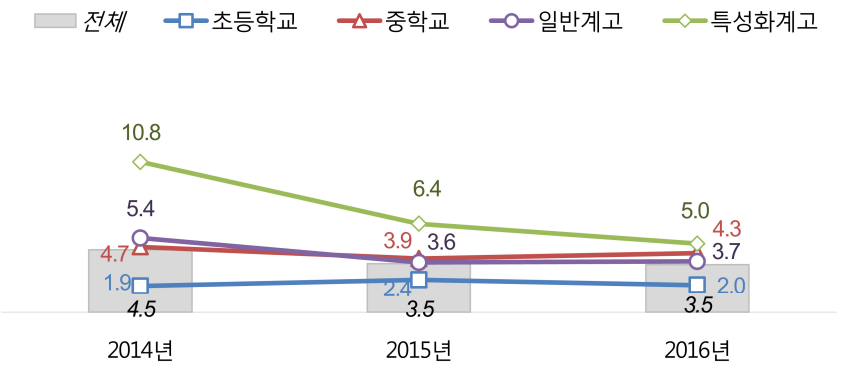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14년 4.5% → '15년 3.5% → '16년 3.5%).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는 소폭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와 특성화계고는 감소하였다. 특히 특성화계고는 2014년 10.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 6.4%로, 그리고 2016년 5.0%로 감소했는데 다른 교급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표 Ⅲ-1-24 차별해 본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5.8	2.6	0.9	0.5	0.3	4.3	100.0(11,105)	-
성별	남자		94.6	2.8	1.4	0.7	0.6	5.5	100.0(5,774)	66.801***
	여자		97.0	2.3	0.4	0.3	0.1	3.1	100.0(5,3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7	0.8	0.3	0.1	0.1	1.3	100.0(3,161)	131.295***
	중학교		96.0	2.5	0.9	0.4	0.3	4.1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93.4	3.9	1.3	0.8	0.6	6.6	100.0(4,214)	
		일반계고	93.5	3.7	1.2	0.9	0.7	6.5	100.0(3,384)	
		특성화계고	92.7	5.0	1.5	0.4	0.4	7.3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6.2	2.3	0.8	0.4	0.4	3.9	100.0(4,459)	16.924*
	중소도시		95.4	2.8	1.1	0.5	0.2	4.6	100.0(5,286)	
	읍면지역		95.6	2.4	0.6	0.7	0.6	4.3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1	2.3	0.9	0.4	0.3	3.9	100.0(9,965)	-
	한부모가정		93.3	4.3	1.0	0.6	0.6	6.5	100.0(818)	
	조손가정		92.9	4.9	0.0	2.2	0.0	7.1	100.0(108)	
	기타		92.3	4.7	0.5	1.8	0.7	7.7	100.0(214)	
학업 성적	상		95.7	2.4	0.9	0.6	0.4	4.3	100.0(3,579)	18.916*
	중		96.4	2.2	0.9	0.3	0.2	3.6	100.0(4,721)	
	하		94.6	3.4	0.9	0.6	0.4	5.3	100.0(2,763)	
경제적 수준	상		95.9	2.5	0.8	0.5	0.4	4.2	100.0(5,755)	10.496
	중		95.9	2.4	1.0	0.5	0.2	4.1	100.0(3,962)	
	하		94.7	3.4	0.9	0.4	0.6	5.3	100.0(1,340)	

*p<.05, ***p<.001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최근 1년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먼저 여학생(3.1%)보다 남학생(5.5%)이 차별을 한 경험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7.3%)와 일반계고(6.5%)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4.1%), 초등학교(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4.6%), 읍면지역(4.3%), 대도시(3.9%)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7.7%), 조손가정(7.1%), 한부모가

정(6.5%), 양부모가정(3.9%)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5.3%)에 속한 응답자들이 상(4.3%), 중(3.6%)에 속한 아동·청소년보다 더 높은 가해 비율을 나타냈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5.3%)가 상(4.2%), 중(4.1%)보다 지역차별을 한 경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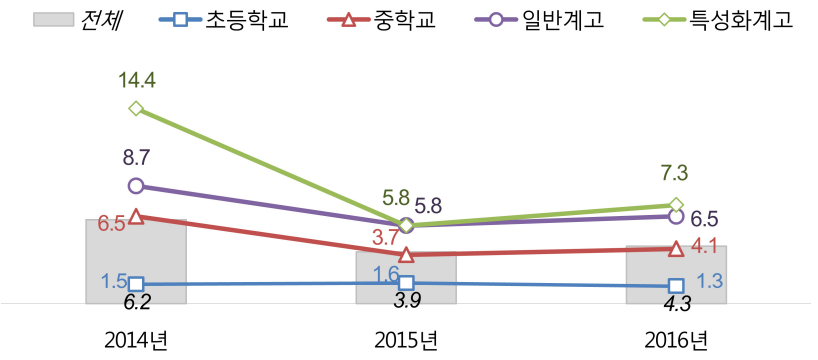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4】 차별해 본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연도별 추이)(%)

'고향과 지역을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14년 6.2% → '15년 3.9% → '16년 4.3%). 전년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특히 특성화계고는 2014년 14.4%라는 높은 수치에서 2015년 5.8%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7.3%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Ⅲ-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7	13.6	4.9	1.7	1.1	21.3	100.0(11,098)	-
성별	남자		77.0	13.5	5.8	2.2	1.5	23.0	100.0(5,770)	59.350***
	여자		80.5	13.8	3.9	1.3	0.6	19.6	100.0(5,3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2	9.3	2.8	1.0	0.7	13.8	100.0(3,160)	163.792***
	중학교		76.6	14.5	5.8	2.2	1.0	23.5	100.0(3,729)	
	고등학교	전체	74.8	16.1	5.6	1.9	1.6	25.2	100.0(4,209)	
		일반계고	75.0	15.8	5.7	1.9	1.6	25.0	100.0(3,381)	
		특성화계고	74.0	17.4	5.3	1.9	1.5	26.1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78.5	13.4	5.0	1.9	1.2	21.5	100.0(4,458)	3.656
	중소도시		78.6	14.0	4.8	1.6	1.0	21.4	100.0(5,277)	
	읍면지역		79.7	12.9	4.6	1.6	1.2	20.3	100.0(1,363)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9	13.6	4.7	1.7	1.1	21.1	100.0(9,956)	-
	한부모가정	74.8	15.5	7.0	1.3	1.4	25.2	100.0(820)	
	조손가정	88.1	7.1	2.5	0.0	2.2	11.8	100.0(108)	
	기타	77.6	12.3	4.3	5.7	0.0	22.3	100.0(214)	
학업 성적	상	78.7	13.7	5.2	1.5	0.8	21.2	100.0(3,580)	66.522***
	중	81.4	11.9	4.2	1.6	0.9	18.6	100.0(4,714)	
	하	74.0	16.4	5.6	2.2	1.8	26.0	100.0(2,760)	
경제적 수준	상	79.3	13.4	4.5	1.7	1.1	20.7	100.0(5,758)	49.555***
	중	79.9	12.7	5.0	1.7	0.8	20.2	100.0(3,958)	
	하	72.2	17.2	6.2	2.2	2.2	27.8	100.0(1,333)	

***$p<.001$

최근 1년 동안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의 합계는 21.3%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23.0%가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차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그보다 낮은 19.6%가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26.1%)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5.0%), 중학교(23.5%), 초등학교(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5.2%), 기타(22.3%), 양부모가정(21.1%), 조손가정(11.8%)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응답자(26.0%)가 상(21.2%), 중(18.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27.8%), 상(20.7%), 중(20.2%) 순으로 외모, 신체조건에 대해 차별을 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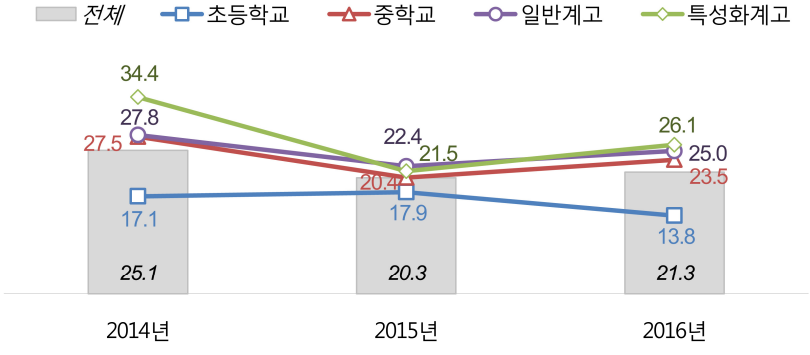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연도별 추이)(%)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전체값 '14년 25.1% → '15년 20.3% → '16년 21.3%). 2016년 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교급들의 수치는 조금씩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급들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15년 17.9% → '16년 13.8%).

표 Ⅲ-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5	2.2	0.9	0.2	0.2	3.5	100.0(11,100)	-
성별	남자		95.7	2.6	1.2	0.2	0.3	4.3	100.0(5,773)	29.596***
	여자		97.4	1.8	0.5	0.2	0.1	2.6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2	1.8	0.5	0.2	0.2	2.7	100.0(3,158)	29.168***
	중학교		97.2	1.6	0.9	0.1	0.1	2.7	100.0(3,726)	
	고등학교	전체	95.4	3.0	1.1	0.3	0.2	4.6	100.0(4,216)	
		일반계고	95.4	2.8	1.3	0.3	0.2	4.6	100.0(3,387)	
		특성화계고	95.3	3.8	0.6	0.1	0.2	4.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96.4	2.3	0.9	0.2	0.2	3.6	100.0(4,455)	4.528
	중소도시		96.5	2.2	0.9	0.2	0.1	3.4	100.0(5,284)	
	읍면지역		97.1	1.9	0.6	0.3	0.2	3.0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8	2.0	0.9	0.2	0.2	3.3	100.0(9,959)	-
	한부모가정		94.9	3.7	1.0	0.2	0.1	5.0	100.0(820)	
	조손가정		94.2	4.5	1.4	0.0	0.0	5.9	100.0(107)	
	기타		91.7	5.8	0.7	1.8	0.0	8.3	100.0(214)	
학업 성적	상		96.8	2.1	0.8	0.3	0.1	3.3	100.0(3,577)	18.818*
	중		96.8	2.1	0.9	0.2	0.1	3.3	100.0(4,721)	
	하		95.8	2.5	1.0	0.2	0.4	4.1	100.0(2,760)	
경제적 수준	상		96.8	2.0	0.9	0.2	0.2	3.3	100.0(5,753)	22.124**
	중		96.8	2.0	0.8	0.3	0.1	3.2	100.0(3,960)	
	하		94.6	3.5	1.3	0.2	0.4	5.4	100.0(1,339)	

*p<.05, **p<.01, ***p<.001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이다. 여학생(2.6%)에 비해 남학생(4.3%)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4.6%)와 특성화계고(4.7%)가 중학교(2.7%)와 초등학교(2.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8.3%), 조손가정(5.9%), 한부모가정(5.0%), 양부모가정(3.3%)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응답자(하 4.1%)가 상(3.3%), 중(3.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5.4%), 상(3.3%), 중(3.2%) 순으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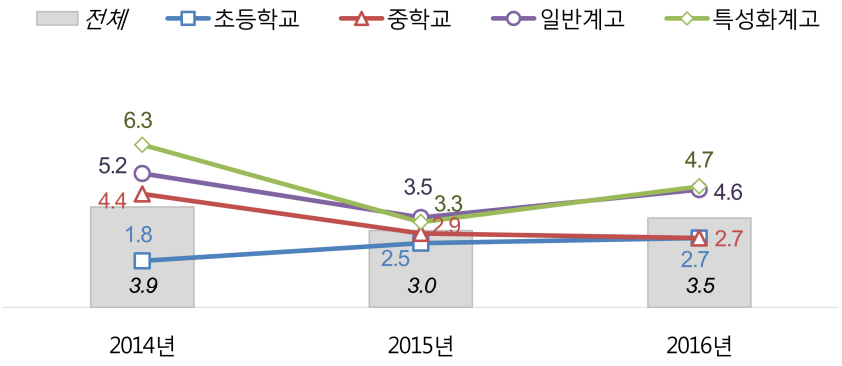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전체값 '14년 3.9% → '15년 3.0% → '16년 3.5%). 특성화계고는 2014년 6.3%에서 2015년 3.3%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4.7%로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2016년 모든 교급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1-27 차별해 본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4	1.5	0.6	0.3	0.2	2.6	100.0(11,112)	–
성별	남자		96.4	2.0	0.9	0.4	0.3	3.6	100.0(5,779)	–
	여자		98.5	1.0	0.3	0.2	0.0	1.5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4	1.1	0.4	0.2	0.1	1.8	100.0(3,163)	29.416***
	중학교		96.4	2.0	0.9	0.4	0.3	3.6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97.6	1.3	0.5	0.4	0.2	2.4	100.0(4,217)	
		일반계고	97.8	1.1	0.4	0.5	0.2	2.2	100.0(3,387)	
		특성화계고	96.5	2.2	0.9	0.1	0.2	3.4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7.3	1.5	0.7	0.3	0.2	2.7	100.0(4,462)	8.438
	중소도시		97.5	1.5	0.5	0.3	0.2	2.5	100.0(5,287)	
	읍면지역		97.3	1.5	0.5	0.6	0.1	2.7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7	1.4	0.5	0.3	0.2	2.4	100.0(9,970)	–
	한부모가정		95.0	2.5	1.4	0.8	0.3	5.0	100.0(820)	
	조손가정		96.4	2.8	0.0	0.0	0.7	3.5	100.0(108)	
	기타		94.4	2.9	0.9	1.8	0.0	5.6	100.0(214)	
학업 성적	상		97.8	1.3	0.5	0.3	0.1	2.2	100.0(3,583)	–
	중		97.4	1.4	0.7	0.4	0.0	2.5	100.0(4,723)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하	96.9	1.9	0.5	0.3	0.4	3.1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97.5	1.5	0.4	0.4	0.2	2.5	100.0(5,762)	18.033*
	중	97.5	1.3	0.8	0.3	0.1	2.5	100.0(3,962)	
	하	96.5	2.3	0.8	0.1	0.3	3.5	100.0(1,340)	

*p<.05, ***p<.001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차별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남학생(3.6%)은 여학생(1.5%)보다 차별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에서는 중학교(3.6%), 특성화계고(3.4%), 일반계고(2.2%), 초등학교(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5.6%), 한부모가정(5.0%), 조손가정(3.5%), 양부모가정(2.4%)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3.1%), 중(2.5%), 상(2.2%) 순으로 높은 가해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3.5%)가 상(2.5%)과 중(2.5%)보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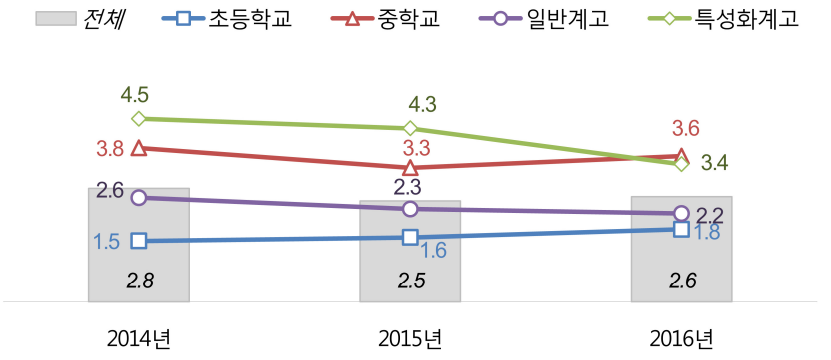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7】 차별해 본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연도별 추이)(%)

'부모님이 안계신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전체값 '14년 2.8% → '15년 2.5% → '16년 2.6%). 2016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감소하였다. 특히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4년 4.5%로 가장 높은 수치였으나 2016년 3.4%로 감소함으로써 중학교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1.9	5.8	1.4	0.5	0.3	8.0	100.0(11,111)	-
성별	남자		91.5	5.7	1.8	0.6	0.5	8.6	100.0(5,779)	18.870***
	여자		92.4	5.9	1.0	0.4	0.2	7.5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5	4.6	1.0	0.5	0.3	6.4	100.0(3,163)	-
	중학교		90.4	6.9	1.8	0.4	0.4	9.5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92.0	5.6	1.4	0.6	0.4	8.0	100.0(4,217)	
		일반계고	91.8	5.8	1.3	0.7	0.3	8.1	100.0(3,387)	
		특성화계고	92.9	4.9	1.7	0.0	0.5	7.1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1.5	6.1	1.5	0.5	0.5	8.6	100.0(4,462)	11.025
	중소도시		92.3	5.6	1.4	0.5	0.2	7.7	100.0(5,287)	
	읍면지역		92.0	5.3	1.4	0.7	0.6	8.0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9	5.9	1.4	0.5	0.3	8.1	100.0(9,970)	-
	한부모가정		91.6	5.1	2.5	0.2	0.6	8.4	100.0(819)	
	조손가정		96.1	3.2	0.7	0.0	0.0	3.9	100.0(108)	
	기타		92.8	4.6	0.4	1.8	0.5	7.3	100.0(214)	
학업 성적	상		90.8	6.6	1.7	0.5	0.4	9.2	100.0(3,583)	15.715*
	중		92.7	5.1	1.5	0.5	0.3	7.4	100.0(4,722)	
	하		92.1	5.9	1.1	0.5	0.4	7.9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92.2	5.4	1.4	0.6	0.4	7.8	100.0(5,762)	12.547
	중		91.8	6.2	1.4	0.5	0.2	8.3	100.0(3,962)	
	하		91.0	6.5	1.8	0.3	0.4	9.0	100.0(1,339)	

*p<.05, ***p<.001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해본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5%)보다 남학생(8.6%)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중학교(9.5%), 일반계고(8.1%), 특성화계고(7.1%), 초등학교(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8.4%), 양부모가정(8.1%), 기타(7.3%), 조손가정(3.9%)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9.2%), 하(7.9%), 중(7.4%) 순으로 높은 가해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9.0%, 중8.3%, 상7.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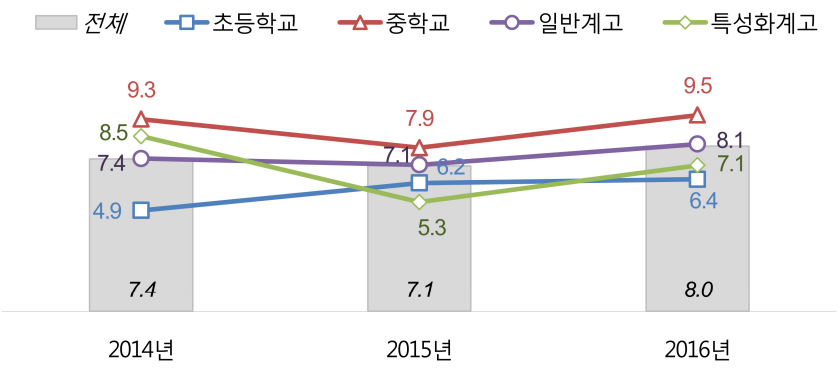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5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상승하였다('14년 7.4% → '15년 7.1% → '16년 8.0%).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수치가 상승하였는데 특히 중학교의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14년 9.3% → '15년 7.9% → '16년 9.5%) 3년 내내 중학교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8	1.2	0.6	0.2	0.2	2.2	100.0(11,110)	–
성별	남자		97.2	1.3	0.9	0.3	0.3	2.8	100.0(5,778)	–
	여자		98.4	1.1	0.3	0.2	0.0	1.6	100.0(5,3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7	0.7	0.3	0.2	0.1	1.3	100.0(3,162)	–
	중학교		96.8	1.9	0.9	0.2	0.1	3.1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98.0	1.0	0.5	0.2	0.2	1.9	100.0(4,216)	
		일반계고	98.1	1.0	0.4	0.3	0.3	2.0	100.0(3,386)	
		특성화계고	97.8	1.1	1.0	0.1	0.0	2.2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7.3	1.6	0.8	0.1	0.3	2.8	100.0(4,462)	20.385**
	중소도시		98.0	1.1	0.5	0.3	0.1	2.0	100.0(5,287)	
	읍면지역		98.6	0.7	0.3	0.2	0.2	1.4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9	1.2	0.6	0.2	0.2	2.2	100.0(9,969)	–
	한부모가정		97.6	0.9	1.0	0.2	0.4	2.5	100.0(820)	
	조손가정		96.2	3.1	0.0	0.7	0.0	3.8	100.0(108)	
	기타		95.0	2.4	0.7	1.8	0.0	4.9	100.0(214)	
학업 성적	상		97.9	1.2	0.5	0.3	0.2	2.2	100.0(3,582)	3.808
	중		97.8	1.3	0.7	0.2	0.1	2.3	100.0(4,722)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하	97.7	1.3	0.5	0.2	0.2	2.2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97.9	1.2	0.5	0.2	0.2	2.1	100.0(5,760)	-
	중	97.8	1.2	0.7	0.3	0.0	2.2	100.0(3,962)	
	하	97.6	1.5	0.5	0.1	0.2	2.3	100.0(1,340)	

**$p<.01$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1.6%)보다 남학생(2.8%)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중학교(3.1%), 특성화계고(2.2%), 일반계고(2.0%), 초등학교(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2.8%), 중소도시(2.0%), 읍면지역(1.4%)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4.9%), 조손가정(3.8%), 한부모가정(2.5%), 양부모가정(2.2%)의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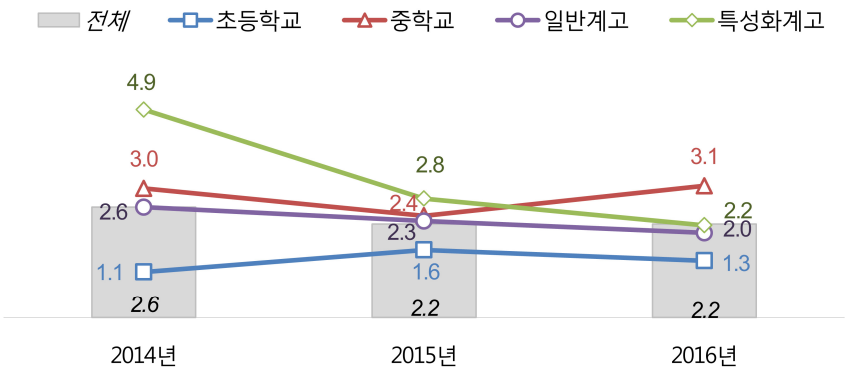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감소했다가(2.6% → 2.2%) 2016년에는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차별한 경험률이 감소하였는데(중학생은 2.4% → 3.1%로 증가)고 특히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4년 4.9%에서 2016년 2.2%로 차별경험률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② 차별받은 경험

표 Ⅲ-1-30 차별받은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6	14.1	4.7	1.7	1.0	21.5	100.0(11,080)	–
성별	남자		84.0	8.7	4.4	1.8	1.2	16.1	100.0(5,756)	306.066***
	여자		72.7	20.0	5.0	1.6	0.7	27.3	100.0(5,3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9	10.9	3.6	1.6	1.0	17.1	100.0(3,163)	65.169***
	중학교		77.4	14.3	5.5	1.9	0.9	22.6	100.0(3,724)	
	고등학교	전체	76.3	16.5	4.7	1.6	0.9	23.7	100.0(4,192)	
		일반계고	76.6	16.5	4.3	1.7	1.0	23.5	100.0(3,369)	
		특성화계고	75.2	16.2	6.7	1.2	0.7	24.8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78.6	14.8	4.0	1.7	0.9	21.4	100.0(4,446)	16.355*
	중소도시		78.1	14.0	5.3	1.6	0.9	21.8	100.0(5,273)	
	읍면지역		80.0	12.4	4.3	2.0	1.3	20.0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8	14.0	4.6	1.6	1.0	21.2	100.0(9,946)	13.582
	한부모가정		75.3	16.8	4.9	2.2	0.9	24.8	100.0(816)	
	조손가정		81.8	8.7	6.0	2.7	0.7	18.1	100.0(107)	
	기타		80.6	12.6	5.4	0.7	0.7	19.4	100.0(211)	
학업 성적	상		78.8	14.3	4.4	1.6	0.9	21.2	100.0(3,576)	40.973***
	중		80.4	13.0	4.6	1.3	0.8	19.7	100.0(4,707)	
	하		75.1	16.0	5.1	2.5	1.4	25.0	100.0(2,754)	
경제적 수준	상		79.8	13.1	4.5	1.5	1.1	20.2	100.0(5,747)	52.180***
	중		79.1	14.0	4.4	1.8	0.7	20.9	100.0(3,951)	
	하		71.4	18.9	6.2	2.4	1.2	28.7	100.0(1,334)	

*p<.05, ***p<.001

최근 1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로 나타났고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8.6%로 나타났다. 성차별을 당한 경험은 남학생(16.1%)보다 여학생(27.3%)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3.5%), 중학교(22.6%), 초등학교(17.1%)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21.8%), 대도시(21.4%), 읍면지역(20.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별로는 하(25.0%),상(21.2%), 중(19.7%) 순으로 높은 가해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하28.7%, 중20.9%, 상20.2%)이 낮을수록 성차별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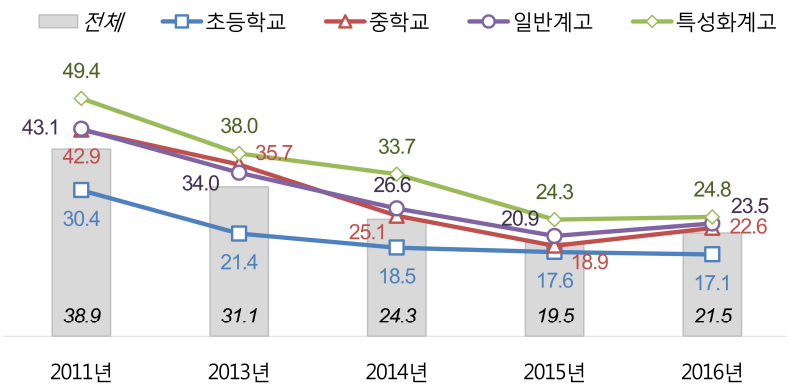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0】 차별받은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11년 38.9% → '13년 31.1% → '14년 24.3% → '15년 19.5% → '16년 21.5%).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다시 상승하였다. 초등학교의 수치는 모든 교급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2013년 38.0%에서 2016년 24.8%로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1-31 차별받은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4.2	15.2	7.1	2.3	1.2	25.8	100.0(11,071)	–
성별	남자		78.1	11.9	6.3	2.1	1.6	21.9	100.0(5,749)	132.868***
	여자		70.0	18.8	7.8	2.5	0.9	30.0	100.0(5,3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9.8	7.0	2.1	0.8	0.3	10.2	100.0(3,163)	662.424***
	중학교		72.8	15.2	7.7	2.7	1.6	27.2	100.0(3,720)	
	고등학교	전체	63.6	21.4	10.2	3.1	1.6	36.3	100.0(4,189)	
		일반계고	62.1	21.8	11.0	3.2	1.8	37.8	100.0(3,366)	
		특성화계고	69.9	19.9	6.6	2.7	0.9	30.1	100.0(822)	
지역 규모	대도시		74.7	14.6	6.9	2.5	1.2	25.2	100.0(4,440)	15.194
	중소도시		73.2	16.0	7.6	2.0	1.2	26.8	100.0(5,270)	
	읍면지역		76.0	14.2	5.7	2.7	1.3	23.9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5	15.0	7.0	2.3	1.2	25.5	100.0(9,941)	–
	한부모가정		69.2	18.9	8.1	2.0	1.7	30.7	100.0(814)	
	조손가정		79.1	7.8	8.6	0.0	4.4	20.8	100.0(107)	
	기타		77.2	13.5	5.7	3.6	0.0	22.8	100.0(209)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87.6	8.1	2.9	1.1	0.3	12.4	100.0(3,575)	839.084***
	중	74.4	15.8	7.0	1.9	0.9	25.6	100.0(4,704)	
	하	56.4	23.5	12.5	4.8	2.9	43.7	100.0(2,750)	
경제적 수준	상	77.8	13.4	5.6	1.9	1.2	22.1	100.0(5,743)	189.159***
	중	73.5	15.8	7.2	2.5	0.9	26.4	100.0(3,949)	
	하	60.7	20.8	12.7	3.5	2.4	39.4	100.0(1,331)	

***$p<.001$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로 나타났다. 여학생(30.0%)이 남학생(21.9%)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 (30.1%), 중학교(27.2%), 초등학교(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30.7%로 양부모가정(25.5%), 조손가정(20.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43.7%, 중25.6%, 상12.4%),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39.4%, 중26.4%, 상22.1%)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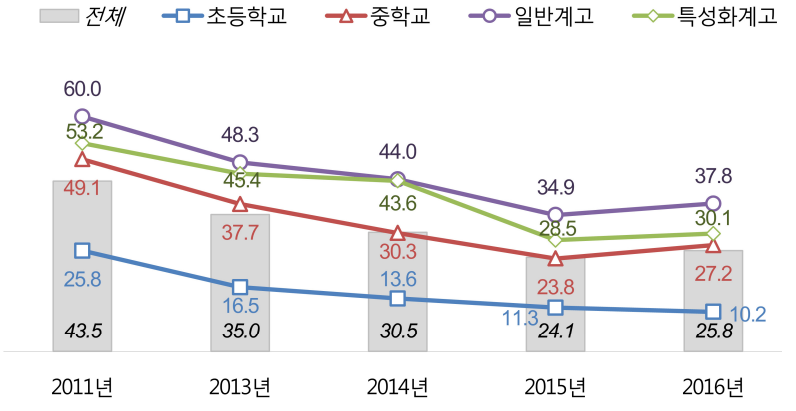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1】 차별받은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도별 추이(연도별 추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11년 43.5% → '13년 35.0% → '14년 30.5% → '15년 24.1% → '16년 25.8%).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초등학교의 수치는

10.2%로서 모든 교급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반계고의 수치는 2013년 48.3%에서 많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7.8%로서 교급들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1-32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7	14.5	4.7	1.5	0.7	21.4	100.0(11,071)	-
성별	남자		84.1	9.7	3.9	1.3	1.0	15.9	100.0(5,752)	261.451***
	여자		72.8	19.7	5.5	1.6	0.4	27.2	100.0(5,3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4	8.9	2.4	0.7	0.5	12.5	100.0(3,162)	217.089***
	중학교		76.2	15.6	5.2	2.1	0.9	23.8	100.0(3,720)	
	고등학교	전체	74.2	17.7	5.9	1.5	0.7	25.8	100.0(4,189)	
		일반계고	74.3	17.6	5.8	1.3	0.9	25.6	100.0(3,365)	
		특성화계고	73.7	17.9	6.2	2.1	0.1	26.3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78.6	13.8	5.2	1.7	0.8	21.5	100.0(4,442)	28.720***
	중소도시		77.8	15.9	4.3	1.2	0.7	22.1	100.0(5,269)	
	읍면지역		82.2	11.4	4.4	1.4	0.5	17.7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1	14.2	4.6	1.4	0.7	20.9	100.0(9,939)	-
	한부모가정		72.8	18.3	5.0	2.5	1.4	27.2	100.0(815)	
	조손가정		79.8	13.0	5.1	1.4	0.7	20.2	100.0(107)	
	기타		79.6	12.4	6.7	1.3	0.0	20.4	100.0(211)	
학업 성적	상		79.8	14.1	4.4	1.1	0.5	20.1	100.0(3,576)	56.054***
	중		80.2	13.6	4.3	1.4	0.5	19.8	100.0(4,704)	
	하		74.4	16.6	5.6	2.1	1.3	25.6	100.0(2,749)	
경제적 수준	상		81.2	12.8	4.1	1.2	0.7	18.8	100.0(5,743)	97.974***
	중		77.9	15.4	4.7	1.5	0.6	22.2	100.0(3,948)	
	하		69.6	19.4	7.4	2.5	1.2	30.5	100.0(1,332)	

***p<.00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27.2%)이 남학생(15.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26.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5.6%), 중학교(23.8%), 초등학교(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22.1%)가 대도시(21.5%), 읍면지역(17.7%)보다 비율이 높았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27.2%로 양부모가정(20.9%), 조손가정(20.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학업성적별로는 하(25.6%), 상(20.1%), 중(19.8%)의 순으로 차별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하30.5%, 중22.2%, 상18.8%)이 낮을수록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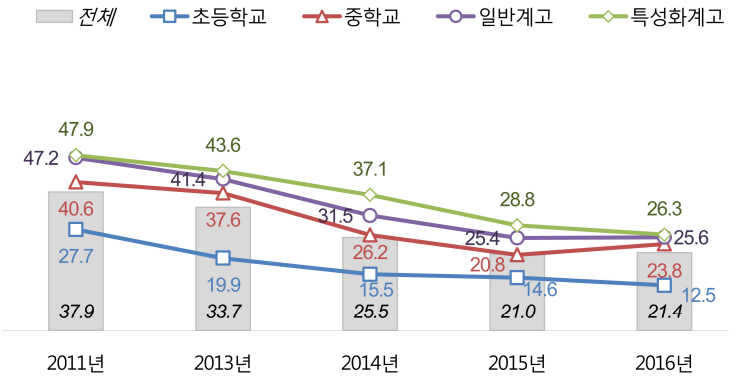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2】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11년 37.9% → '13년 33.7% → '14년 25.5% → '15년 21% → '16년 21.4%). 전년대비 2016년 초등학교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증가하였다.

표 Ⅲ-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6	1.4	0.6	0.3	0.1	2.4	100.0(11,069)	–
성별	남자		97.3	1.3	0.7	0.5	0.2	2.7	100.0(5,750)	25.235***
	여자		98.0	1.5	0.3	0.1	0.1	2.0	100.0(5,3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0	0.5	0.3	0.2	0.0	1.0	100.0(3,162)	–
	중학교		97.5	1.4	0.5	0.4	0.2	2.5	100.0(3,717)	
	고등학교	전체	96.7	2.1	0.8	0.3	0.1	3.3	100.0(4,190)	
		일반계고	97.2	1.7	0.5	0.4	0.2	2.8	100.0(3,366)	
		특성화계고	94.7	3.4	1.8	0.1	0.0	5.3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97.6	1.4	0.5	0.4	0.2	2.5	100.0(4,442)	15.929*
	중소도시		97.7	1.4	0.6	0.2	0.1	2.3	100.0(5,267)	
	읍면지역		97.6	1.3	0.3	0.8	0.1	2.5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1	1.1	0.4	0.3	0.1	1.9	100.0(9,937)	–
	한부모가정		92.8	4.3	1.8	0.7	0.3	7.1	100.0(815)	
	조손가정		93.9	2.8	1.9	0.7	0.7	6.1	100.0(107)	
	기타		94.8	3.0	1.5	0.0	0.7	5.2	100.0(210)	
학업 성적	상		98.6	0.8	0.3	0.3	0.0	1.4	100.0(3,574)	–
	중		97.8	1.3	0.6	0.3	0.0	2.2	100.0(4,704)	
	하		96.0	2.4	0.8	0.4	0.3	3.9	100.0(2,748)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9.0	0.4	0.1	0.4	0.1	1.0	100.0(5,743)	367.449***
	중	97.9	1.2	0.7	0.2	0.1	2.2	100.0(3,946)	
	하	90.8	6.3	2.1	0.4	0.4	9.2	100.0(1,331)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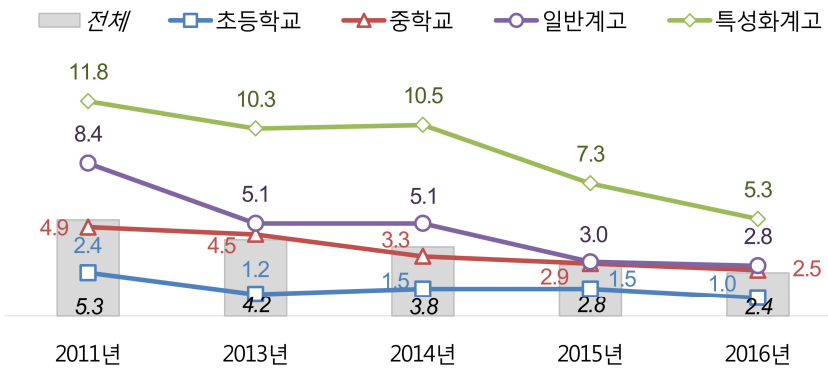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2.0%)보다 남학생(2.7%)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5.3%로서 일반계고(2.8%), 중학교(2.5%), 초등학교(1.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2.5%)와 읍면지역(2.5%)이 중소도시(2.3%)보다 비율이 높았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7.1%)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6.1%), 양부모가정(1.9%)의 순으로 차별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하3.9%, 중2.2%, 상1.4%)과 경제적 수준(하9.2%, 중2.2%, 상1.0%)이 낮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받은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11년 5.3% → '13년 4.2% → '14년 3.8% → '15년 2.8% → '16년 2.4%)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수치가 감소하였다. 특히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교급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1-34 차별받은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1	2.5	0.8	0.4	0.3	4.0	100.0(11,070)	–
성별	남자		95.7	2.2	1.1	0.6	0.4	4.3	100.0(5,750)	46.210***
	여자		96.5	2.9	0.5	0.1	0.1	3.6	100.0(5,3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5	1.0	0.2	0.2	0.1	1.5	100.0(3,163)	86.972***
	중학교		96.0	2.5	0.9	0.3	0.2	3.9	100.0(3,718)	
	고등학교	전체	94.3	3.6	1.1	0.6	0.4	5.7	100.0(4,189)	
		일반계고	94.3	3.5	1.2	0.6	0.4	5.7	100.0(3,365)	
		특성화계고	94.2	4.3	0.5	0.4	0.6	5.8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96.9	2.0	0.7	0.2	0.1	3.0	100.0(4,441)	38.757***
	중소도시		95.6	3.1	0.7	0.3	0.3	4.4	100.0(5,269)	
	읍면지역		95.3	2.0	1.2	1.0	0.5	4.7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2	2.4	0.8	0.4	0.2	3.8	100.0(9,937)	–
	한부모가정		94.9	3.1	1.0	0.3	0.6	5.0	100.0(815)	
	조손가정		92.8	3.6	0.6	0.7	2.2	7.1	100.0(107)	
	기타		96.2	2.8	0.0	1.0	0.0	3.8	100.0(211)	
학업 성적	상		96.7	2.2	0.5	0.3	0.3	3.3	100.0(3,575)	29.602***
	중		96.4	2.2	0.9	0.4	0.1	3.6	100.0(4,703)	
	하		94.7	3.3	1.0	0.4	0.5	5.2	100.0(2,749)	
경제적 수준	상		97.0	1.9	0.5	0.4	0.2	3.0	100.0(5,746)	42.238***
	중		95.5	2.7	1.1	0.3	0.3	4.4	100.0(3,943)	
	하		93.7	4.3	1.1	0.6	0.2	6.2	100.0(1,332)	

***p<.001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여학생(3.6%)보다 남학생(4.3%)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5.8%), 일반계고(5.7%), 중학교(3.9%), 초등학교(1.5%)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4.7%로 중소도시(4.4%), 대도시(3.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7.1%)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5.0%), 양부모가정(3.8%)의 순으로 차별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하 5.2%, 중3.6%, 상3.3%)과 경제적 수준(하6.2%, 중4.4%, 상3.0%)이 낮을수록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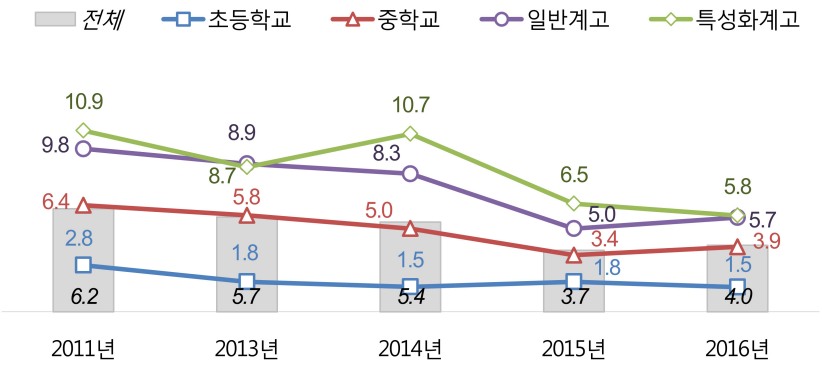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4】 차별받은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연도별 추이)(%)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11년 6.2% → '13년 5.7% → '14년 5.4% → '15년 3.7% → '16년 4.0%). 전년대비 2016년 초등학교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Ⅲ-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4	12.7	5.4	2.3	1.3	21.7	100.0(11,072)	-
성별	남자		80.3	10.4	5.5	2.3	1.6	19.8	100.0(5,750)	62.417***
	여자		76.4	15.2	5.2	2.3	0.9	23.6	100.0(5,3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6	9.1	3.8	1.7	0.8	15.4	100.0(3,163)	120.298***
	중학교		76.3	13.0	6.4	3.0	1.3	23.7	100.0(3,720)	
	고등학교	전체	75.5	15.2	5.6	2.1	1.6	24.5	100.0(4,188)	
		일반계고	76.1	14.7	5.6	2.2	1.3	23.8	100.0(3,365)	
		특성화계고	73.2	17.1	5.3	1.7	2.8	26.9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79.0	12.0	5.2	2.6	1.2	21.0	100.0(4,442)	27.362***
	중소도시		77.8	13.4	5.9	1.8	1.1	22.2	100.0(5,269)	
	읍면지역		78.8	12.3	4.1	3.0	1.9	21.3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5	12.7	5.4	2.2	1.3	21.6	100.0(9,939)	-
	한부모가정		74.4	15.5	5.9	3.0	1.3	25.7	100.0(815)	
	조손가정		85.3	8.0	0.9	2.8	3.0	14.7	100.0(107)	
	기타		86.1	7.4	3.3	3.3	0.0	14.0	100.0(211)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80.3	11.3	5.4	2.1	0.9	19.7	100.0(3,576)	82.206***
	중	80.0	12.6	4.1	2.1	1.2	20.0	100.0(4,703)	
	하	72.9	14.9	7.4	2.8	1.9	27.0	100.0(2,750)	
경제적 수준	상	81.1	10.7	4.7	2.3	1.3	19.0	100.0(5,746)	165.044***
	중	78.7	13.3	5.2	1.9	1.0	21.4	100.0(3,946)	
	하	65.6	19.9	8.9	3.3	2.2	34.3	100.0(1,332)	

***$p<.001$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남학생(19.8%)보다 여학생(23.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비율 또한 여학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26.9%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3.8%), 중학교(23.7%), 초등학교(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22.2%로 읍면지역(21.3%)과 대도시(21.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25.7%로서 양부모가정(21.6%), 조손가정(14.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하27.0%, 중20.0%, 상19.7%),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34.3%, 중21.4%, 상19.0%)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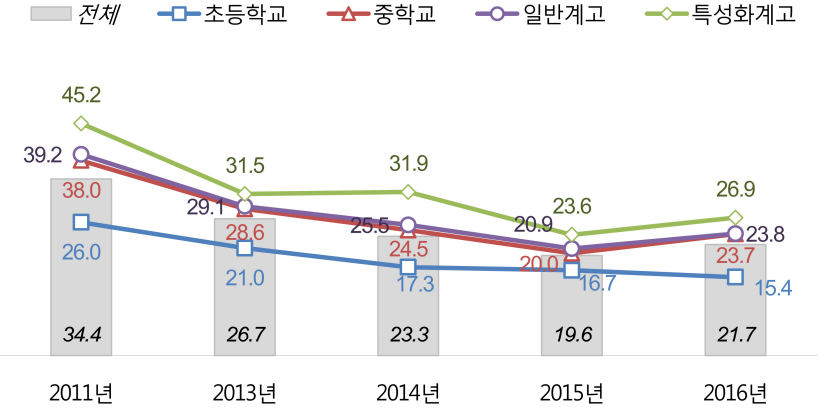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연도별 추이)(%)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11년 34.4% → '13년 26.7% → '14년 23.3% → '15년 19.6% → '16년 21.7%). 전년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다시 상승하였는데 그 상승폭이 모두 3% 내외를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9	2.1	0.6	0.2	0.1	3.0	100.0(11,066)	-
성별	남자		96.6	2.2	0.7	0.3	0.2	3.4	100.0(5,748)	9.003
	여자		97.3	2.0	0.5	0.1	0.1	2.7	100.0(5,3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6	1.7	0.3	0.2	0.1	2.3	100.0(3,160)	-
	중학교		96.8	2.1	0.7	0.2	0.1	3.1	100.0(3,719)	
	고등학교	전체	96.5	2.4	0.8	0.2	0.2	3.6	100.0(4,186)	
		일반계고	96.3	2.5	0.8	0.2	0.2	3.7	100.0(3,366)	
		특성화계고	97.2	2.0	0.7	0.0	0.1	2.8	100.0(820)	
지역 규모	대도시		96.5	2.3	0.8	0.2	0.2	3.5	100.0(4,441)	12.751
	중소도시		96.9	2.1	0.6	0.2	0.1	3.0	100.0(5,266)	
	읍면지역		98.2	1.4	0.2	0.2	0.1	1.9	100.0(1,3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9	2.1	0.6	0.2	0.2	3.1	100.0(9,934)	-
	한부모가정		96.4	2.8	0.7	0.1	0.0	3.6	100.0(813)	
	조손가정		95.3	3.2	0.0	0.7	0.7	4.6	100.0(107)	
	기타		98.0	2.0	0.0	0.0	0.0	2.0	100.0(211)	
학업 성적	상		97.1	2.0	0.6	0.3	0.1	3.0	100.0(3,572)	11.174
	중		97.2	1.9	0.6	0.1	0.2	2.8	100.0(4,702)	
	하		96.2	2.6	0.7	0.2	0.2	3.7	100.0(2,749)	
경제적 수준	상		97.3	1.8	0.5	0.3	0.2	2.8	100.0(5,741)	-
	중		97.3	2.0	0.6	0.1	0.0	2.7	100.0(3,946)	
	하		94.5	3.9	1.2	0.2	0.3	5.6	100.0(1,330)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3.7%), 중학교(3.1%), 특성화계고(2.8%), 초등학교(2.3%)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5.6%), 상(2.8%), 중(2.7%)의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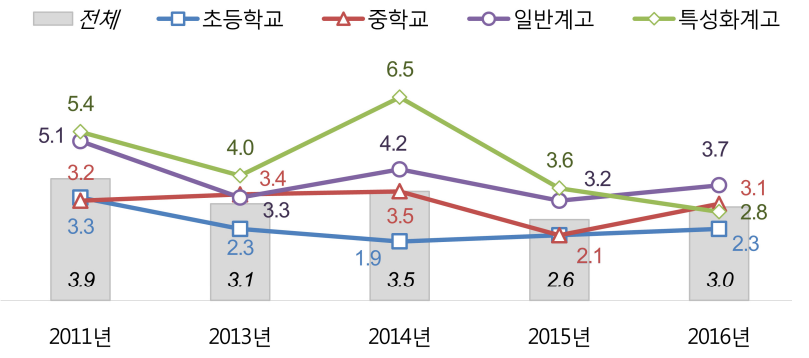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5년 감소했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는데('11년 3.9% → '13년 3.1% → '14년 3.5% → '15년 2.6% → '16년 3.0%) 전년대비 2016년에 특성화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였다. 특성화계고는 2014년 6.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016년 2.8%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37 차별받은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8.9	0.6	0.3	0.1	0.1	1.1	100.0(10,982)	-
성별	남자		98.8	0.6	0.3	0.1	0.1	1.1	100.0(5,682)	-
	여자		99.0	0.7	0.2	0.1	0.0	1.0	100.0(5,3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4	0.4	0.2	0.1	0.0	0.7	100.0(3,146)	-
	중학교		98.7	0.7	0.2	0.2	0.2	1.3	100.0(3,680)	
	고등학교	전체	98.8	0.8	0.3	0.1	0.0	1.2	100.0(4,157)	
		일반계고	99.1	0.6	0.3	0.0	0.0	0.9	100.0(3,341)	
		특성화계고	97.6	1.5	0.4	0.4	0.0	2.3	100.0(815)	
지역 규모	대도시		98.9	0.5	0.4	0.1	0.1	1.1	100.0(4,402)	-
	중소도시		98.9	0.7	0.1	0.1	0.1	1.0	100.0(5,231)	
	읍면지역		98.7	0.8	0.2	0.3	0.0	1.3	100.0(1,3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9	0.1	0.0	0.0	0.0	0.1	100.0(9,851)	-
	한부모가정		89.1	6.2	2.6	1.6	0.5	10.9	100.0(813)	
	조손가정		91.0	2.2	3.3	0.0	3.4	8.9	100.0(107)	
	기타		96.6	3.4	0.0	0.0	0.0	3.4	100.0(211)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9.4	0.3	0.1	0.1	0.1	0.6	100.0(3,556)	-
	중	99.0	0.5	0.3	0.1	0.0	0.9	100.0(4,664)	
	하	98.1	1.3	0.3	0.1	0.1	1.8	100.0(2,720)	
경제적 수준	상	99.5	0.2	0.2	0.1	0.1	0.6	100.0(5,701)	-
	중	99.1	0.5	0.3	0.1	0.0	0.9	100.0(3,916)	
	하	96.1	2.8	0.6	0.3	0.2	3.9	100.0(1,316)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특성화계고가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1.3%), 일반계고(0.9%), 초등학교(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3%로서 대도시(1.1%)와 중소도시(1.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10.9%)이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8.9%), 양부모가정(0.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3.9%, 중0.9%, 상0.1%) 가족유형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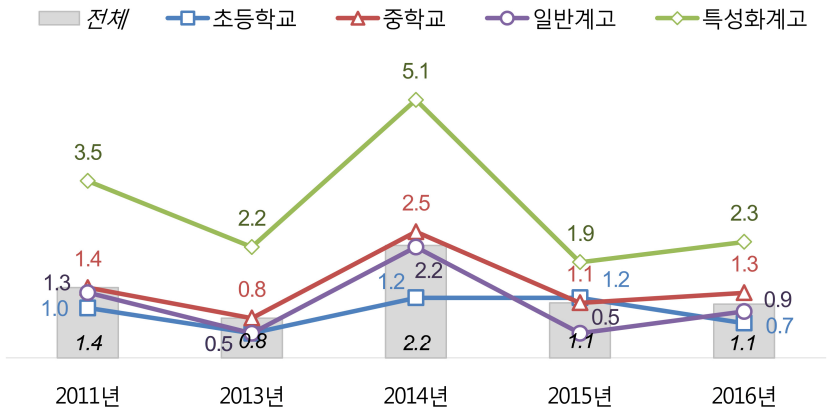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7】 차별받은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부모님이 안계신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4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11년 1.4% → '13년 0.8% → '14년 2.2%

→ '15년 1.1% → '16년 1.1%). 전년대비 2016년에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Ⅲ-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9.0	0.5	0.3	0.1	0.1	1.0	100.0(11,074)	-
성별	남자		98.5	0.7	0.5	0.1	0.2	1.5	100.0(5,752)	34.743***
	여자		99.5	0.3	0.1	0.1	0.0	0.5	100.0(5,3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4	0.1	0.1	0.1	0.7	100.0(3,163)	-
	중학교		98.5	0.8	0.4	0.1	0.1	1.4	100.0(3,721)	
	고등학교	전체	99.1	0.3	0.4	0.1	0.1	0.9	100.0(4,190)	
		일반계고	99.1	0.3	0.4	0.1	0.1	0.9	100.0(3,366)	
		특성화계고	99.3	0.3	0.4	0.0	0.0	0.7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99.0	0.5	0.3	0.1	0.1	1.0	100.0(4,443)	14.341
	중소도시		98.9	0.6	0.3	0.1	0.1	1.1	100.0(5,270)	
	읍면지역		99.0	0.1	0.6	0.2	0.1	1.0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0	0.4	0.3	0.1	0.1	0.9	100.0(9,942)	-
	한부모가정		98.2	1.5	0.4	0.0	0.0	1.9	100.0(815)	
	조손가정		96.8	2.4	0.0	0.0	0.7	3.1	100.0(107)	
	기타		99.1	0.9	0.0	0.0	0.0	0.9	100.0(211)	
학업 성적	상		99.3	0.2	0.3	0.1	0.0	0.6	100.0(3,576)	-
	중		98.9	0.6	0.4	0.1	0.0	1.1	100.0(4,705)	
	하		98.6	0.8	0.2	0.2	0.2	1.4	100.0(2,751)	
경제적 수준	상		99.1	0.4	0.2	0.1	0.1	0.8	100.0(5,746)	-
	중		98.8	0.6	0.4	0.1	0.0	1.1	100.0(3,948)	
	하		98.7	0.6	0.4	0.1	0.2	1.3	100.0(1,332)	

***$p<.001$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5%로 이는 여학생(0.5%)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1.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0.9%), 특성화계고(0.7%), 초등학교(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으로는 조손가정이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1.9%), 양부모가정(0.9%)의 순으로 차별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1.4%, 중1.1%, 상0.6%) 장애를 이유로 차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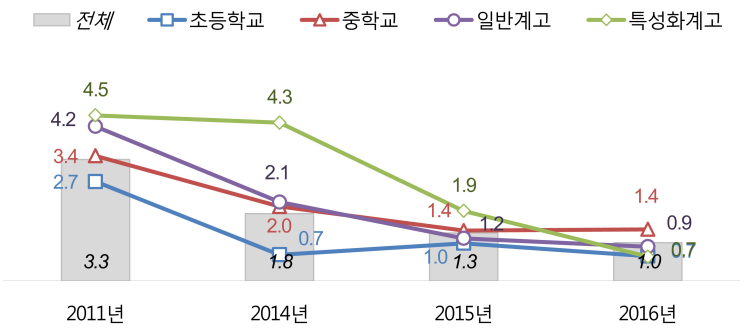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률'은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11년 3.3% → '14년 1.8% → '15년 1.3% → '16년 1.0%).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는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교급들은 모두 수치가 감소하였다. 특히 특성화계고는 2014년 4.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에 0.7%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9.0	0.6	0.2	0.1	0.1	1.0	100.0(11,071)	-
성별	남자		98.5	0.8	0.4	0.2	0.1	1.5	100.0(5,749)	-
	여자		99.5	0.3	0.1	0.1	0.0	0.5	100.0(5,3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4	0.1	0.2	0.0	0.7	100.0(3,163)	-
	중학교		98.4	1.1	0.4	0.1	0.1	1.7	100.0(3,720)	
	고등학교	전체	99.3	0.4	0.2	0.0	0.1	0.7	100.0(4,188)	
		일반계고	99.4	0.2	0.3	0.0	0.1	0.6	100.0(3,364)	
		특성화계고	98.9	0.9	0.1	0.1	0.0	1.1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98.9	0.7	0.3	0.1	0.0	1.1	100.0(4,442)	-
	중소도시		99.0	0.6	0.2	0.1	0.1	1.0	100.0(5,269)	
	읍면지역		99.5	0.3	0.2	0.1	0.0	0.6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1	0.6	0.2	0.1	0.1	1.0	100.0(9,938)	-
	한부모가정		98.1	0.8	0.9	0.2	0.0	1.9	100.0(815)	
	조손가정		97.5	1.7	0.7	0.0	0.0	2.4	100.0(107)	
	기타		98.9	1.1	0.0	0.0	0.0	1.1	100.0(211)	
학업 성적	상		99.2	0.5	0.1	0.1	0.0	0.7	100.0(3,572)	-
	중		99.0	0.6	0.4	0.1	0.0	1.1	100.0(4,705)	
	하		98.8	0.8	0.2	0.1	0.2	1.3	100.0(2,751)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9.2	0.5	0.1	0.1	0.1	0.8	100.0(5,743)	–
	중	98.9	0.6	0.4	0.1	0.0	1.1	100.0(3,947)	
	하	98.5	1.0	0.2	0.3	0.1	1.6	100.0(1,332)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5%로 여학생(0.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1.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1.1%), 초등학교(0.7%),일반계고(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으로는 조손가정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1.9%), 양부모가정(1.0%)의 순으로 차별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1.6%, 중1.1%, 상0.8%)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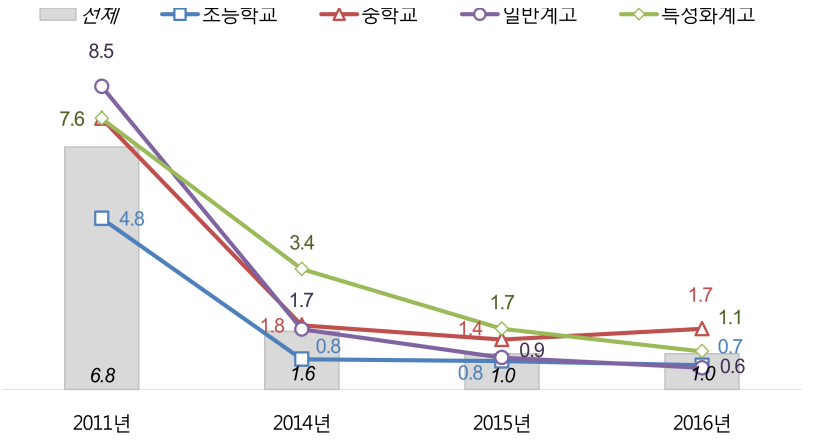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연도별 추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4년 큰 폭으로 줄어든 이후 미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1년 6.8% → '14년 1.6% → '15년 1.0% → '16년 1.0%).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감소하였다.

표 Ⅲ-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단위 : %(명))

구분	차별한 경험		차별받은 경험	
	1년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 성차별	21.2	5.9	21.5	7.4
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2.2	8.2	25.8	10.6
3) 연령차별	20.1	6.3	21.4	6.9
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3.5	1.3	2.4	1.0
5) 지역차별	4.3	1.7	4.0	1.5
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1.3	7.7	21.7	9.0
7) 종교차별	3.5	1.3	3.0	0.9
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2.6	1.1	1.1	0.5
9) 장애에 따른 차별	8.0	2.2	1.0	0.5
10) 다문화가정 차별	2.2	1.0	1.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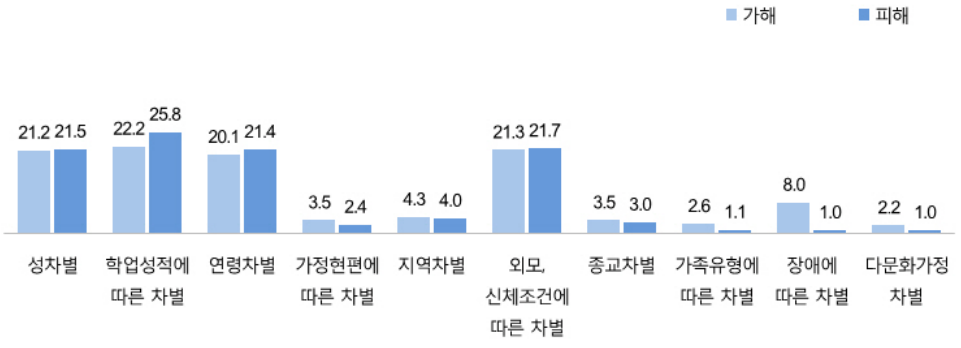

* 주: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 경험'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일 년에 1회 이상)

차별 경험 전체를 보면,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2.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 차별(21.3%), 성차별(21.2%), 연령차별(20.1%) 순으로, 1년에 1회 이상 차별 피해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5.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 차별(21.7%), 성차별(21.5%), 연령차별(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차별 가해 경험과 차별 피해 경험 순위가 동일하고 가장 높은 1, 2 순위가 학업성적 차별과 외모·신체조건 차별인 것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들 중 중요한 것이 학업과 외모문제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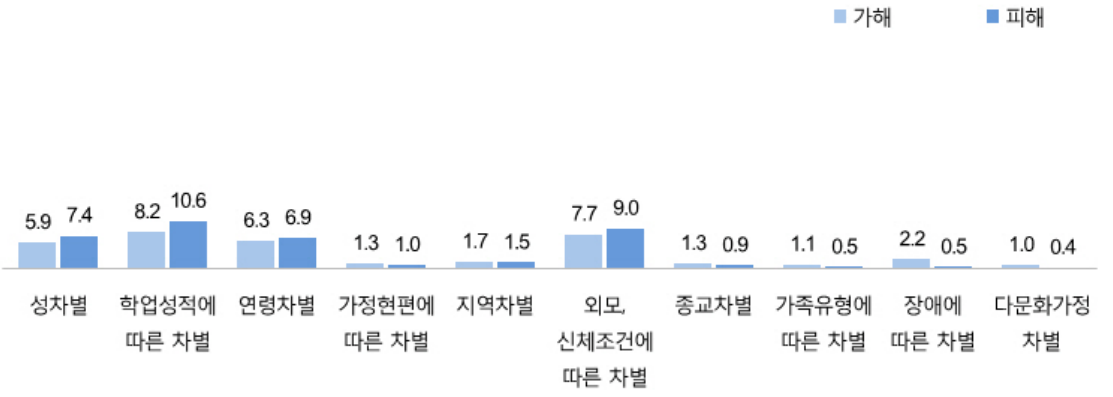

* 주: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 경험'의 합계(단위 : %)

【그림 Ⅲ-1-4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한 달에 1회 이상)

한편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8.2%), 외모·신체조건 차별(7.7%), 연령차별(6.3%), 성차별(5.9%) 순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 피해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10.6%), 외모·신체조건 차별(9.0%), 성차별(7.4%), 연령차별(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행 시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의 하나로 하나의 지표로 살펴보기에는 방대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원칙을 제도화한 아동영향평가제도 시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5년도 지표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모두에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시범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전북 군산시 등도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조항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22일 아동복지법 개정 당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시행일은 2019년 3월이다.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아동복지법 2016년 3월 22일 개정안).[11]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두 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인권일반'은 인권인프라, 인권에 대한 인지도, 인권교육 등 3개의 지표로, '일반원칙'은 차별 경험률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등 2개의 지표로 구성되고 지표의 각 하위에는 2~3개씩의 지표항목이 있어 총 12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의 법·제도 발전사항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2016년도 개정사항을 통해 아동학대, 안전문제, 근로청소년 보호, 사법과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강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 성과를 살펴보았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2012년 3.1%,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9% 등으로 최근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인권 인지도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4%, 7.7%, 15.5%로 중요한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인지도는 예년과 같은 수치였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는 가정(94.3%), 지역(90.0%), 학교(88.5%), 사이버공간(79.6%), 우리나라 전체(7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83.8%)와 청소년 자치조직(81.2%) 의의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의견표명권(94.7%), 차별금지(95.9%), 성평등(93.9%)에 대해 90%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1)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70.0%로 2015년 65.3%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경험률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는 72.4%로 전년(70.6%)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일 년에 1회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1.3%), 성차별(21.2%), 연령차별(20.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성차별과 연령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을, 학업성적과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률도 차별한 경험과 같은 순위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25.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 차별(21.7%), 성차별(21.5%), 연령차별(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률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표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1)	2.3	11.9	53.6	32.2	100.0(10,882)	-
성별	남자		3.14(0.73)	3.0	12.1	53.2	31.7	100.0(5,659)	24.689***
	여자		3.18(0.69)	1.6	11.7	54.1	32.7	100.0(5,2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2(0.72)	2.1	8.8	44.2	44.9	100.0(3,018)	345.090***
	중학교		3.14(0.71)	2.3	12.2	55.1	30.4	100.0(3,692)	
	고등학교	전체	3.06(0.69)	2.4	13.8	59.1	24.6	100.0(4,172)	
		일반계고	3.08(0.70)	2.4	13.6	57.5	26.5	100.0(3,357)	
		특성화계고	2.97(0.65)	2.6	14.7	65.6	17.1	100.0(81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17(0.73)	2.7	11.6	51.6	34.1	100.0(4,360)	25.460***
	중소도시	3.14(0.69)	1.9	12.1	55.7	30.3	100.0(5,182)	
	읍면지역	3.16(0.72)	2.4	12.0	52.3	33.3	100.0(1,3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70)	2.0	11.6	53.4	33.0	100.0(9,759)	74.025***
	한부모가정	2.98(0.75)	4.5	15.8	56.8	22.9	100.0(810)	
	조손가정	3.09(0.85)	7.4	9.8	49.2	33.7	100.0(106)	
	기타	3.09(0.77)	4.5	12.0	53.7	29.8	100.0(207)	
학업 성적	상	3.28(0.69)	1.4	9.4	49.0	40.1	100.0(3,484)	263.430***
	중	3.16(0.70)	2.2	11.1	54.7	32.0	100.0(4,625)	
	하	2.99(0.73)	3.6	16.1	57.7	22.6	100.0(2,729)	
경제적 수준	상	3.27(0.69)	1.8	8.9	49.9	39.4	100.0(5,603)	423.698***
	중	3.10(0.69)	2.1	13.1	57.8	26.9	100.0(3,895)	
	하	2.87(0.76)	5.2	20.3	56.8	17.7	100.0(1,334)	

***p<.00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3.6%, 매우 그렇다 32.2%)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5.8%로 10명 중 8~9명은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86.8%로 남학생(84.9%)보다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89.1%)가 가장 높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85.5%), 일반계고(84.0%), 특성화계고(8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86.0%), 대도시(85.7%), 읍면지역(85.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86.4%로 조손가정(82.9%), 한부모가정(79.7%)보다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89.1%, 중86.7%, 하80.3%),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89.3%, 중84.7%, 하74.5%)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님께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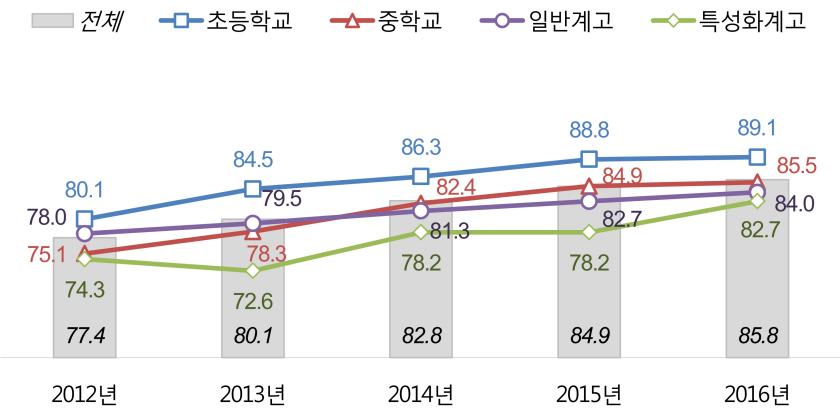

【그림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연도별 추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치를 보면 2012년에 77.4%에서 2016년도에는 85.8%까지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수치가 상승하였는데 특성화계고의 경우 모든 교급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표 Ⅲ-2-2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6(0.70)	1.9	8.8	50.6	38.7	100.0(10,876)	–
성별	남자		3.22(0.71)	2.4	9.6	51.6	36.4	100.0(5,654)	38.695***
	여자		3.30(0.68)	1.4	8.0	49.5	41.1	100.0(5,2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5(0.71)	2.2	7.1	44.0	46.7	100.0(3,010)	134.339***
	중학교		3.25(0.68)	1.6	9.1	51.6	37.6	100.0(3,690)	
	고등학교	전체	3.20(0.69)	2.0	9.8	54.4	33.8	100.0(4,175)	
		일반계고	3.20(0.71)	2.3	10.1	52.6	35.0	100.0(3,358)	
		특성화계고	3.19(0.62)	1.0	8.5	61.5	29.0	100.0(817)	
지역 규모	대도시		3.27(0.72)	2.3	8.8	48.1	40.8	100.0(4,358)	29.753***
	중소도시		3.26(0.68)	1.6	8.4	52.3	37.7	100.0(5,178)	
	읍면지역		3.21(0.71)	2.0	10.6	52.0	35.4	100.0(1,34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7(0.69)	1.8	8.5	50.1	39.6	100.0(9,753)	51.431***
	한부모가정	3.11(0.73)	3.1	12.1	54.9	29.9	100.0(810)	
	조손가정	3.18(0.80)	6.1	6.0	51.8	36.1	100.0(106)	
	기타	3.17(0.71)	2.5	10.4	54.2	32.8	100.0(206)	
학업 성적	상	3.39(0.67)	1.3	7.0	43.3	48.5	100.0(3,481)	280.728***
	중	3.25(0.68)	1.7	8.4	53.0	36.9	100.0(4,622)	
	하	3.11(0.73)	3.2	11.8	55.7	29.3	100.0(2,729)	
경제적 수준	상	3.35(0.68)	1.5	7.1	46.5	44.9	100.0(5,597)	254.816***
	중	3.20(0.68)	1.8	9.7	55.5	33.0	100.0(3,893)	
	하	3.07(0.77)	4.4	13.3	52.9	29.4	100.0(1,336)	

***$p<.001$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주신다'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0.6%, 매우 그렇다 38.7%)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9.3%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학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90.6%로 남학생(8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가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계고(90.5%), 중학교(89.2%), 일반계고(87.6%)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0.0%), 대도시(88.9%), 읍면지역(87.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91.8%, 중89.9%, 하85.0%),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91.4%, 중88.5%, 하82.3%)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상급학교 결정 시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에 79.1%에서 2016년에 8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상승하고 일반계고만 소폭 감소함으로써 모든 교급 중에 일반계고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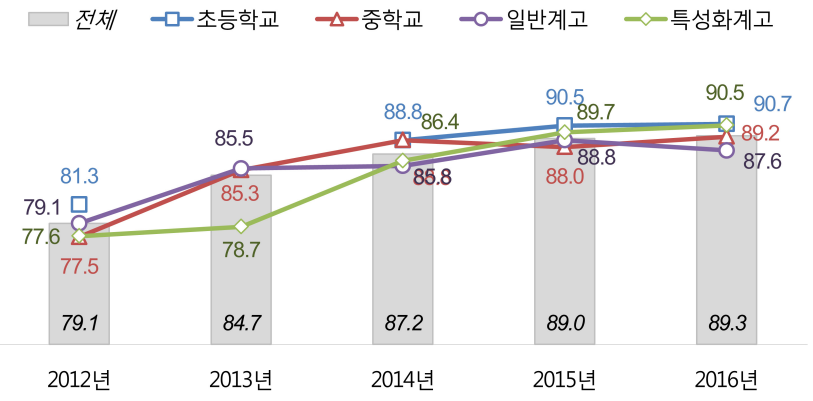

【그림 Ⅲ-2-2】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연도별 추이)(%)

표 Ⅲ-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4(0.69)	1.7	7.2	46.2	44.9	100.0(10,875)	–
성별	남자		3.32(0.69)	2.0	7.1	47.6	43.3	100.0(5,653)	18.999***
	여자		3.37(0.68)	1.3	7.2	44.7	46.7	100.0(5,2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7(0.69)	1.8	5.8	35.5	56.9	100.0(3,015)	274.485***
	중학교		3.30(0.70)	1.7	8.8	47.6	41.9	100.0(3,688)	
	고등학교	전체	3.29(0.66)	1.6	6.7	52.7	39.0	100.0(4,173)	
		일반계고	3.31(0.67)	1.7	6.5	51.3	40.5	100.0(3,356)	
		특성화계고	3.23(0.62)	1.0	7.5	58.8	32.7	100.0(817)	
지역 규모	대도시		3.35(0.70)	2.0	7.0	44.6	46.4	100.0(4,354)	12.613*
	중소도시		3.33(0.68)	1.5	7.3	47.6	43.7	100.0(5,181)	
	읍면지역		3.35(0.68)	1.5	7.3	46.3	44.9	100.0(1,34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6(0.68)	1.5	6.9	45.7	45.9	100.0(9,754)	62.935***
	한부모가정		3.20(0.72)	2.8	9.8	52.2	35.2	100.0(810)	
	조손가정		3.27(0.80)	5.4	5.9	44.7	44.0	100.0(104)	
	기타		3.20(0.74)	2.5	11.7	49.0	36.8	100.0(207)	
학업 성적	상		3.46(0.66)	1.0	6.2	38.7	54.1	100.0(3,480)	240.198***
	중		3.34(0.68)	1.7	6.6	48.1	43.6	100.0(4,626)	
	하		3.21(0.71)	2.5	9.5	52.5	35.5	100.0(2,728)	
경제적 수준	상		3.43(0.67)	1.4	5.8	41.4	51.4	100.0(5,599)	264.524***
	중		3.28(0.67)	1.2	8.3	51.4	39.1	100.0(3,892)	
	하		3.17(0.77)	4.3	9.6	51.0	35.0	100.0(1,336)	

*p<.05, ***p<.001

'부모님은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주신다' 라는 문항에 '그렇다'(그런 편이다 46.2%, 매우 그렇다 44.9%)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91.1%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91.4%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남학생(90.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92.4%)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91.8%), 특성화계고(91.5%), 중학교(89.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1.3%), 읍면지역(91.2%), 대도시(91.0%)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1.6%), 조손가정(88.7%), 한부모가정(87.4%)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92.8%, 중91.7%, 하88.0%),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92.8%, 중90.5%, 하86.0%)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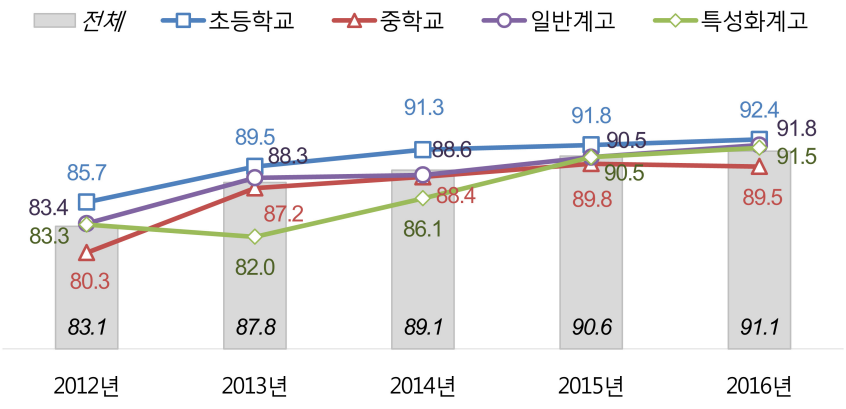

【그림 Ⅲ-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연도별 추이)(%)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중학교의 경우 2012년 80.3%에서 2016년 89.5%로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모든 교급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4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8(0.76)	3.2	12.1	48.3	36.4	100.0(10,866)	–
성별	남자		3.14(0.78)	4.0	12.7	48.7	34.7	100.0(5,647)	36.943***
	여자		3.22(0.74)	2.3	11.5	47.8	38.4	100.0(5,2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4(0.85)	4.9	12.0	37.4	45.7	100.0(3,014)	282.133***
	중학교		3.12(0.77)	3.5	13.5	50.5	32.5	100.0(3,682)	
	고등학교	전체	3.19(0.68)	1.6	10.9	54.2	33.3	100.0(4,170)	
		일반계고	3.21(0.69)	1.6	10.9	52.6	34.9	100.0(3,355)	
		특성화계고	3.13(0.64)	1.3	11.2	60.7	26.9	100.0(815)	
지역 규모	대도시		3.19(0.77)	3.4	11.4	47.6	37.6	100.0(4,352)	9.529
	중소도시		3.17(0.76)	3.0	12.5	49.1	35.4	100.0(5,173)	
	읍면지역		3.18(0.76)	2.8	13.0	47.3	36.9	100.0(1,34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9(0.76)	3.0	11.9	47.9	37.2	100.0(9,746)	50.253***
	한부모가정		3.07(0.76)	3.7	14.5	52.3	29.4	100.0(809)	
	조손가정		2.99(0.94)	11.2	10.3	46.5	32.0	100.0(105)	
	기타		3.06(0.77)	4.0	14.5	52.7	28.8	100.0(207)	
학업 성적	상		3.30(0.76)	2.5	10.6	40.6	46.2	100.0(3,479)	271.844***
	중		3.17(0.75)	3.3	11.4	50.3	35.1	100.0(4,616)	
	하		3.04(0.75)	3.7	15.1	54.6	26.5	100.0(2,727)	
경제적 수준	상		3.26(0.76)	3.0	10.7	44.1	42.2	100.0(5,594)	195.835***
	중		3.13(0.73)	2.9	12.7	53.4	31.0	100.0(3,889)	
	하		3.02(0.80)	5.0	16.2	50.6	28.2	100.0(1,334)	

***$p<.001$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36.4%)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4.7%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86.2%, 남학생은 83.4%로 여학생이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87.6%), 일반계고(87.5%), 초등학교(83.1%), 중학교(8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대도시(85.2%), 중소도시(84.5%), 읍면지역(84.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 가정(85.1%), 한부모가정(81.7%), 조손가정(78.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고(상86.8%, 중85.4%, 하81.1%),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86.3%, 중84.4%, 하78.8%) 부모님께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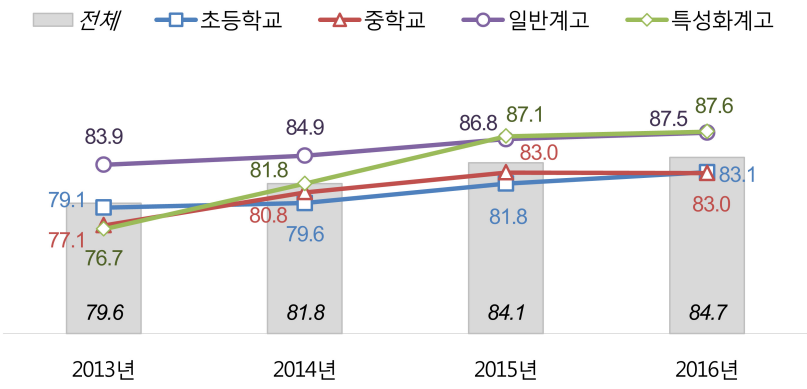

【그림 Ⅲ-2-4】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연도별 추이)(%)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3년 76.7%로 모든 교급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7.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2016년에 83.1%로 상승함으로써 가장 낮은 중학교의 83.0%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2-5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자녀 존중정도 (단위 : %)

내 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 결정 시 내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85.8	14.2
2)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89.3	10.7
3) 부모님은 장래희망 결정 시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을 존중해 주신다	91.1	8.9
4) 부모님은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84.7	15.3

가정에서의 네 가지 의사결정 상황에서 존중받는 정도를 살펴보면, 진로·직업결정(91.1%), 상급학교 진학결정(89.3%),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5.8%), 공부시간·방법 결정(84.7%)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안보다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하는 데 자녀에 대한 의견존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일상적 상황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학생회 운영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는 전체 문항별 응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문항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학생회 운영에 대한 세부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회 임원 후보의 성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23.8%)가 없는 경우(35.3%)보다 적었고,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주고(34.6%), 학생회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29.5%)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학생회 운영 자율권의 중요한 사항인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27.0%)'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자치활동으로서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Ⅲ-2-6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27.0	18.2	54.8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3	23.8	40.8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2.8	29.5	57.8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13.3	34.6	52.0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0%,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학교유형과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2-7 학생회 활동_1)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7.0	18.2	54.8	100.0(7,939)	-
성별	남자		27.1	18.5	54.4	100.0(4,137)	0.531
	여자		26.9	17.9	55.1	100.0(3,803)	
학교 유형	중학교		25.5	20.1	54.5	100.0(3,725)	19.813***
	고등학교	전체	28.4	16.6	55.0	100.0(4,214)	
		일반계고	27.7	16.7	55.6	100.0(3,386)	
		특성화계고	31.2	16.0	52.8	100.0(828)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25.8	17.8	56.4	100.0(3,119)	6.742
	중소도시	27.9	18.3	53.9	100.0(3,882)	
	읍면지역	27.7	19.5	52.8	100.0(9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5	18.2	55.3	100.0(7,094)	11.929
	한부모가정	31.7	18.1	50.3	100.0(670)	
	조손가정	32.4	13.0	54.7	100.0(57)	
	기타	27.0	22.6	50.4	100.0(119)	
학업 성적	상	26.0	18.0	56.0	100.0(2,121)	16.762**
	중	26.1	17.6	56.3	100.0(3,297)	
	하	29.4	19.3	51.3	100.0(2,486)	
경제적 수준	상	27.1	19.8	53.1	100.0(3,661)	20.746***
	중	26.2	16.3	57.4	100.0(3,033)	
	하	29.2	18.2	52.5	100.0(1,206)	

**$p<.01$, ***$p<.001$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형은 중학교(20.1%)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계고(16.7%), 특성화계고(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19.5%), 중소도시(18.3%), 대도시(17.8%)의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19.3%), 높은 경우(18.0%), 중간인 경우(17.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은 상(19.8%), 하(18.2%), 중(16.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학생회 운영 자율성이 있다는 문항에 중간층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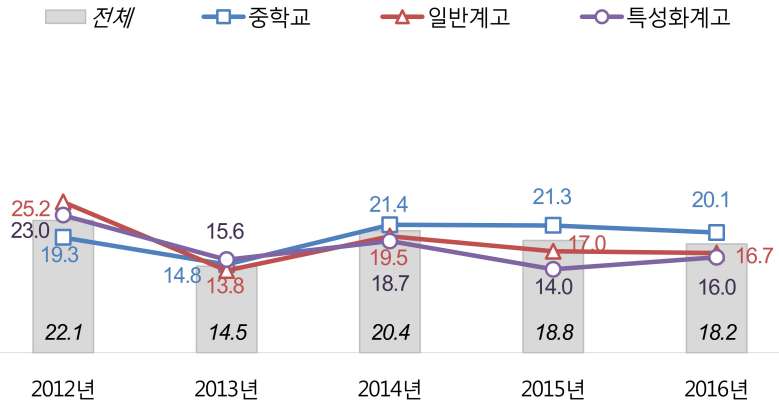

* 주: '그렇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2-5】 학생회 활동_1)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연도별 추이)(%)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12년(22.1%)에서 2013년(14.5%)으로 오면서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일시적으로 증가한(20.4%) 후 2015년(18.8%)과 2016년(18.2%)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상승하였다.

표 Ⅲ-2-8 학생회 활동_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35.3	23.8	40.8	100.0(7,937)	-
성별	남자		36.3	20.6	43.1	100.0(4,134)	51.548***
	여자		34.3	27.4	38.3	100.0(3,803)	
학교 유형	중학교		35.6	24.3	40.1	100.0(3,723)	1.841
	고등학교	전체	35.1	23.4	41.5	100.0(4,214)	
		일반계고	35.3	23.4	41.3	100.0(3,386)	
		특성화계고	34.2	23.4	42.4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34.0	25.5	40.5	100.0(3,116)	18.792***
	중소도시		36.9	21.9	41.2	100.0(3,882)	
	읍면지역		33.4	26.5	40.1	100.0(9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4	23.9	40.7	100.0(7,092)	2.672
	한부모가정		35.2	23.3	41.6	100.0(670)	
	조손가정		25.9	29.1	45.0	100.0(55)	
	기타		34.8	23.8	41.4	100.0(119)	
학업 성적	상		42.4	22.4	35.2	100.0(2,121)	81.365***
	중		34.4	22.5	43.2	100.0(3,296)	
	하		30.8	27.1	42.1	100.0(2,484)	
경제적 수준	상		36.8	24.3	38.8	100.0(3,661)	16.819**
	중		34.1	22.5	43.3	100.0(3,032)	
	하		34.2	25.8	39.9	100.0(1,204)	

**$p<.01$, ***$p<.001$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8%,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로 학생회 임원 후보 기준을 모르는 학생이 많았고, 임원 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학교유형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학생(36.3%)인 경우, 중소도시(36.9%), 대도시(34.0%), 읍면지역(33.4%)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42.4%, 중 34.4%, 하 30.8%), 경제적 수준은 상(36.8%), 하(34.2%), 중(34.1%) 순으로 임원 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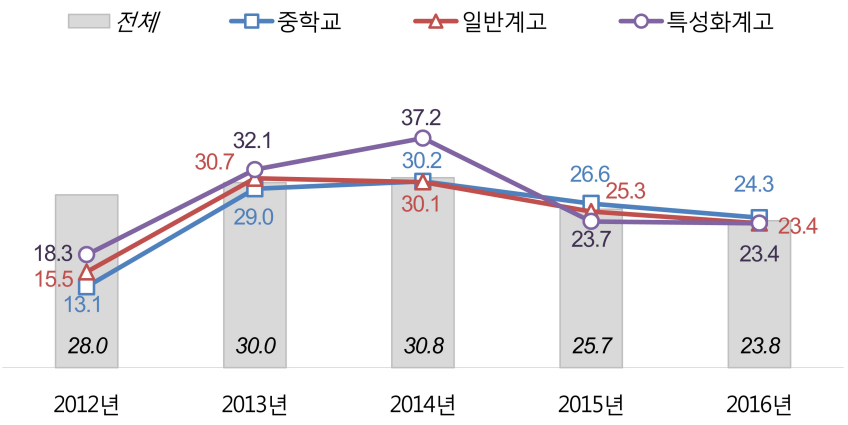

* 주: '그렇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2-6】 학생회 활동_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연도별 추이)(%)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한다'에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까지 상승세에 있다가(2012년 28.0%, 2013년 30.0%, 2014년 30.8%)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2015년 25.7%, 2016년 23.8%)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의 성적제한 규정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감소하였는데 특히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4년 37.2%에서 2016년 23.4%로 크게 감소하여 일반계고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2-9 학생회 활동_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12.8	29.5	57.8	100.0(7,927)	–
성별	남자		14.8	28.3	56.9	100.0(4,128)	32.298***
	여자		10.6	30.7	58.7	100.0(3,798)	
학교 유형	중학교		12.3	31.5	56.2	100.0(3,717)	13.486**
	고등학교	전체	13.2	27.7	59.1	100.0(4,210)	
		일반계고	12.7	28.1	59.2	100.0(3,382)	
		특성화계고	15.0	26.3	58.7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12.3	31.1	56.6	100.0(3,111)	14.112**
	중소도시		13.7	28.0	58.3	100.0(3,878)	
	읍면지역		10.6	30.3	59.2	100.0(9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5	29.4	58.0	100.0(7,082)	18.404**
	한부모가정		13.1	31.6	55.2	100.0(670)	
	조손가정		12.5	23.3	64.3	100.0(56)	
	기타		24.7	23.9	51.4	100.0(119)	
학업 성적	상		12.9	33.2	53.9	100.0(2,117)	28.065***
	중		11.7	28.7	59.6	100.0(3,295)	
	하		14.2	27.6	58.2	100.0(2,478)	
경제적 수준	상		13.3	32.6	54.1	100.0(3,653)	40.300***
	중		11.9	26.7	61.5	100.0(3,032)	
	하		13.5	27.6	58.9	100.0(1,204)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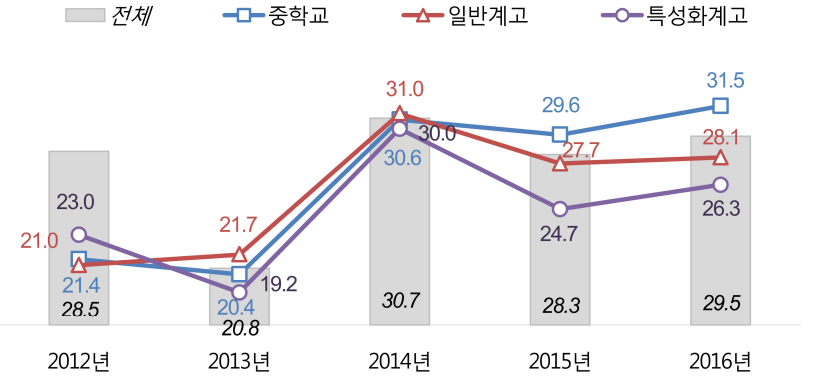

【그림 Ⅲ-2-7】 학생회 활동_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연도별 추이)(%)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8%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5%,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은 57.8%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3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8.1%), 특성화계고(26.3%)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낮을수록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331.1%), 읍면지역(30.3%), 중소도시(28.0%)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3.2%, 중 28.7%, 하 27.6%)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는 응답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28.5%) 이후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데(2013년 20.8%, 2014년 30.7%, 2015년 28.3%, 2016년 29.5%)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표 Ⅲ-2-10 학생회 활동_4)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13.3	34.6	52.0	100.0(7,932)	-
성별	남자		14.2	33.1	52.8	100.0(4,132)	11.804**
	여자		12.4	36.4	51.2	100.0(3,800)	
학교 유형	중학교		11.4	38.9	49.6	100.0(3,721)	63.438***
	고등학교	전체	15.0	30.9	54.1	100.0(4,211)	
		일반계고	14.9	30.6	54.5	100.0(3,383)	
		특성화계고	15.3	32.1	52.6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12.6	35.8	51.5	100.0(3,115)	6.644
	중소도시		14.0	33.4	52.6	100.0(3,880)	
	읍면지역		12.8	35.9	51.3	100.0(9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2	34.7	52.1	100.0(7,089)	2.725
	한부모가정		14.1	34.5	51.4	100.0(668)	
	조손가정		15.0	29.8	55.2	100.0(56)	
	기타		16.6	36.0	47.4	100.0(119)	
학업 성적	상		14.2	36.7	49.1	100.0(2,120)	12.469*
	중		12.4	34.0	53.6	100.0(3,295)	
	하		14.0	33.9	52.2	100.0(2,482)	
경제적 수준	상		14.3	38.0	47.7	100.0(3,656)	51.031***
	중		12.4	32.2	55.4	100.0(3,033)	
	하		13.3	30.6	56.1	100.0(1,205)	

*p<.05, **p<.01, ***p<.001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3%,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4.6%,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가 38.9%로 특성화계고(32.1%), 일반계고(30.6%)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업성적(상 36.7%, 중 34.0%, 하 33.9%)과 경제적 수준(상 38.0%, 중 32.2%, 하 30.6%)이 높을 수록 존중해 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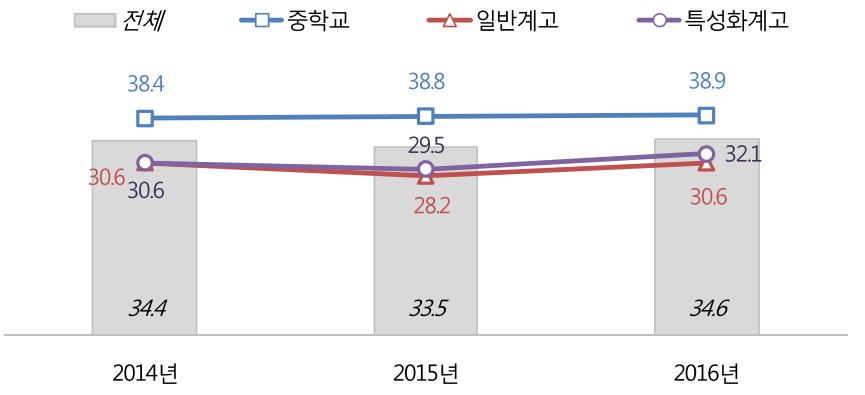

* 주: '그렇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2-8】 학생회 활동_4)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연도별 추이)(%)

'학생회의 의견을 존중해준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4년 34.4%에서 2015년에는 33.5%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에 다시 34.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학교의 응답률은 2014년에 38.4%에서 2016년 3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모든 교급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②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 운영여부에 대해 67.6%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2.4%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률이 초등학교(83.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63.9%), 중학교(61.6%), 특성화계고(50.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2-11 학급회의 운영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χ^2
전체			67.6	32.4	100.0(11,101)	–
성별	남자		64.6	35.4	100.0(5,773)	50.714***
	여자		70.9	29.1	100.0(5,3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4	16.6	100.0(3,161)	498.886***
	중학교		61.6	38.4	100.0(3,725)	
	고등학교	전체	61.2	38.8	100.0(4,215)	
		일반계고	63.9	36.1	100.0(3,387)	
		특성화계고	50.4	49.6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69.2	30.8	100.0(4,462)	12.858**
	중소도시		67.3	32.7	100.0(5,277)	
	읍면지역		64.1	35.9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8	32.2	100.0(9,963)	8.987*
	한부모가정		64.0	36.0	100.0(820)	
	조손가정		75.9	24.1	100.0(106)	
	기타		71.0	29.0	100.0(212)	
학업 성적	상		68.7	31.3	100.0(3,579)	25.009***
	중		69.1	30.9	100.0(4,719)	
	하		63.8	36.2	100.0(2,760)	
경제적 수준	상		70.0	30.0	100.0(5,754)	34.883***
	중		65.8	34.2	100.0(3,962)	
	하		62.8	37.2	100.0(1,336)	

*p<.05, **p<.01, ***p<.001

지역규모가 대도시일수록(대도시 69.2%, 중소도시 67.3%, 읍면지역 64.1%), 학업성적이 중(69.1%), 상(68.7%), 하위권(63.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70.0%, 중 65.8%, 하 62.8%) 학급회의가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56.1%에서 2015년 61.6%, 2016년 6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16년에 특성화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상승하였다. 특성화계고는 2015년 50.9%에서 2016년 50.4%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 수치는 초등학교 83.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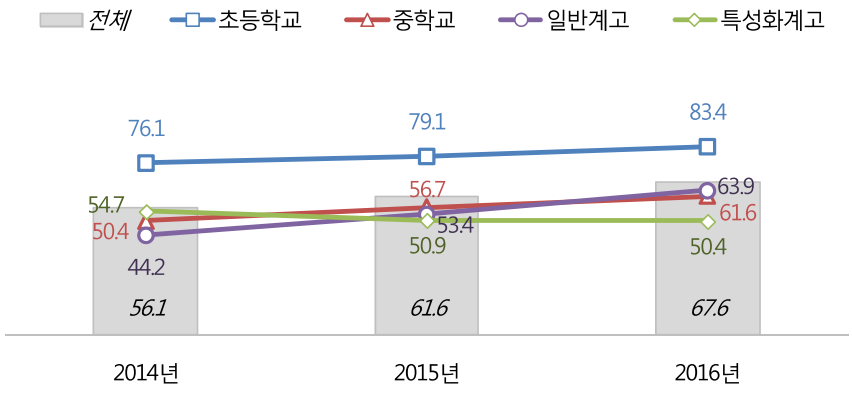

* 주: '운영되고 있다' 응답값(단위 : %)

【그림 Ⅲ-2-9】 학급회의 운영여부(연도별 추이)(%)

③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4.5%, 매우 그렇다 29.7%)라고 응답한 비율이 84.2%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1%)가 15.8%로 나타났다.

표 Ⅲ-2-12 학급회의 참여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0(0.75)	3.7	12.1	54.5	29.7	100.0(7,377)	–
성별	남자		3.07(0.77)	4.5	12.8	53.6	29.0	100.0(3,656)	18.258***
	여자		3.13(0.72)	2.9	11.4	55.3	30.4	100.0(3,7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9(0.77)	3.4	9.4	41.9	45.3	100.0(2,599)	496.028***
	중학교		2.94(0.72)	4.6	15.3	62.0	18.2	100.0(2,244)	
	고등학교	전체	3.05(0.70)	3.3	12.0	60.7	24.0	100.0(2,535)	
		일반계고	3.09(0.70)	3.2	10.8	60.0	26.0	100.0(2,130)	
		특성화계고	2.88(0.67)	3.8	18.4	64.3	13.5	100.0(405)	
지역 규모	대도시		3.15(0.74)	3.5	10.6	53.7	32.3	100.0(3,032)	26.407***
	중소도시		3.08(0.75)	3.7	13.1	54.8	28.5	100.0(3,483)	
	읍면지역		3.03(0.76)	4.7	13.3	56.1	25.8	100.0(8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1(0.74)	3.7	11.7	54.6	30.0	100.0(6,634)	24.222**
	한부모가정		3.00(0.75)	3.8	16.7	55.1	24.4	100.0(514)	
	조손가정		3.15(0.85)	7.4	7.2	48.3	37.0	100.0(80)	
	기타		3.10(0.75)	2.7	15.9	50.6	30.8	100.0(15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27(0.72)	2.7	8.2	48.9	40.2	100.0(2,424)	280.661***
	중	3.08(0.73)	3.3	12.8	56.2	27.7	100.0(3,191)	
	하	2.90(0.76)	6.1	16.3	59.0	18.6	100.0(1,732)	
경제적 수준	상	3.17(0.73)	3.1	10.5	52.8	33.7	100.0(3,963)	90.021***
	중	3.04(0.76)	4.6	13.1	56.4	25.9	100.0(2,557)	
	하	2.97(0.75)	4.1	17.0	56.5	22.4	100.0(823)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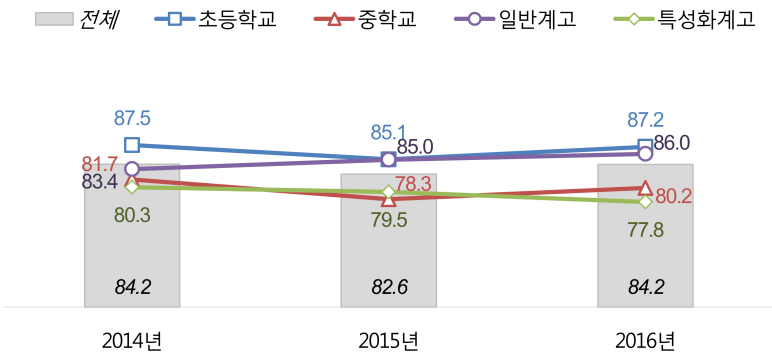

【그림 Ⅲ-2-10】 학급회의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86.0%), 중학교(80.2%), 특성화계고(7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6.0%, 중소도시 83.3%, 읍면지역 81.9%), 학업성적(상 89.1%, 중 83.9%, 하 77.6%)과 경제적 수준(상 86.5%, 중 82.3%, 하 78.9%)이 높을수록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84.2%에서 2015년 82.6%로 낮아졌다가 2016년 다시 84.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특성화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상승하였다. 특성화계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치가 낮아져서 교급들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④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6.7%로 나타났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에 5.8%,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19.7%, '잘 모르겠다'에 67.8%로 응답하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6.7	5.8	19.7	67.8	100.0(7,900)	–
성별	남자		8.2	5.6	16.2	70.1	100.0(4,103)	88.676***
	여자		5.1	5.9	23.6	65.4	100.0(3,797)	
학교 유형	중학교		6.4	5.9	19.0	68.7	100.0(3,695)	4.072
	고등학교	전체	7.0	5.6	20.4	67.0	100.0(4,205)	
		일반계고	6.6	5.3	21.5	66.6	100.0(3,379)	
		특성화계고	8.6	6.8	15.7	68.9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7.5	5.9	19.2	67.4	100.0(3,102)	6.502
	중소도시		6.1	5.8	20.2	68.0	100.0(3,864)	
	읍면지역		6.7	5.3	19.4	68.6	100.0(93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	5.6	19.9	67.8	100.0(7,066)	30.190***
	한부모가정		5.9	7.8	18.5	67.8	100.0(662)	
	조손가정		21.0	1.3	9.7	68.0	100.0(56)	
	기타		6.8	4.3	19.3	69.6	100.0(116)	
학업 성적	상		6.5	5.3	22.4	65.8	100.0(2,114)	44.357***
	중		6.0	5.6	21.1	67.3	100.0(3,282)	
	하		7.8	6.4	15.7	70.1	100.0(2,469)	
경제적 수준	상		6.9	6.5	22.3	64.3	100.0(3,644)	42.186***
	중		6.5	5.0	17.6	70.9	100.0(3,017)	
	하		6.7	5.3	17.4	70.6	100.0(1,201)	

***$p<.001$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가능하고 발언권도 있다는 응답률이 일반계고가 2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19.0%), 특성화계고(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20.2%), 읍면지역(19.4%), 대도시(19.2%) 순으로, 학업성적(상 22.4%, 중 21.1%, 하 15.7%)과 경제적 수준(상 22.3%, 중 17.6%, 하 17.4%)이 높을수록 참여권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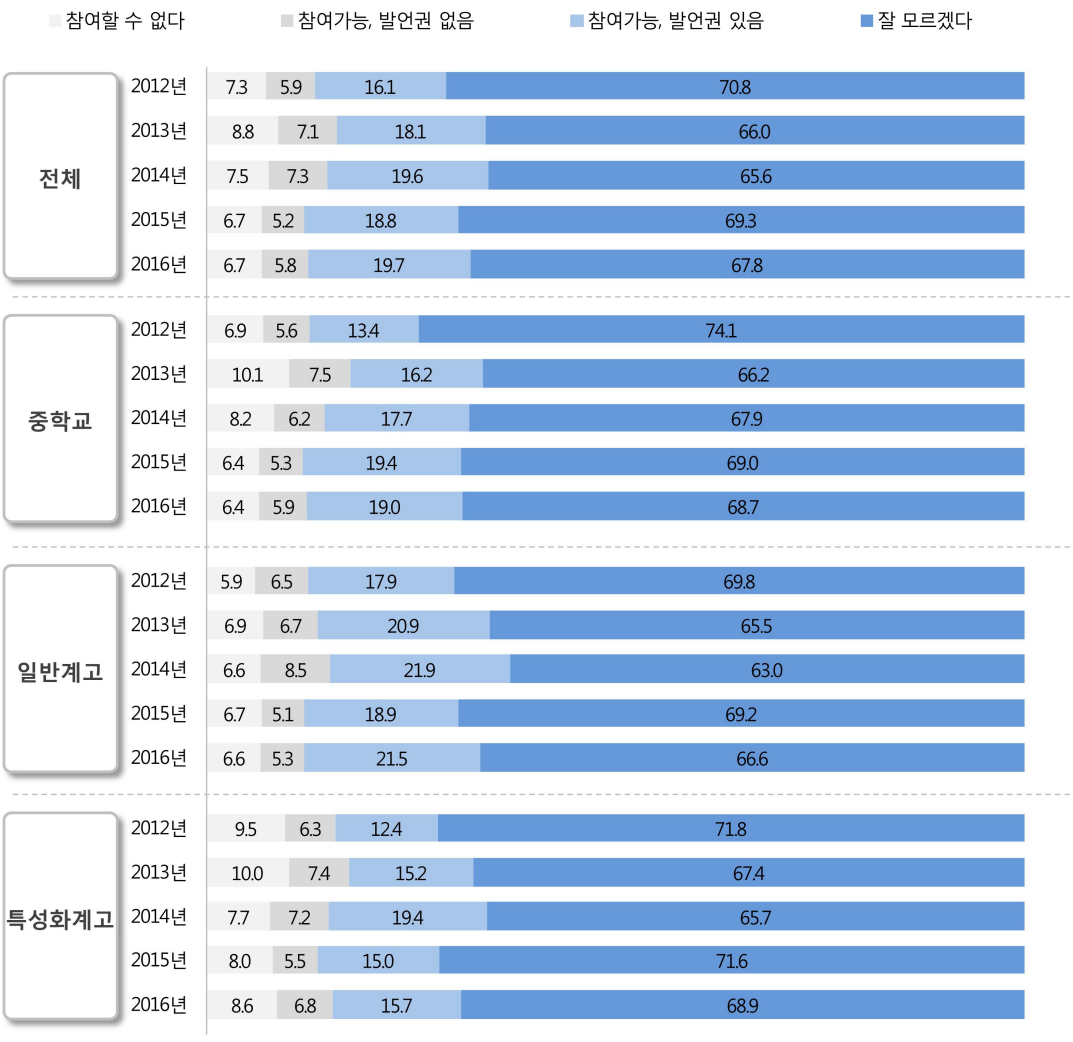

【그림 Ⅲ-2-11】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7%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참여는 가능하나 발언권이 없다'는 응답률은 2012년 5.9%에서 2016년 5.8%로 비슷한 수치이다.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도 낼 수 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6.1%에서 2016년 19.7%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성화계고등학교의 참여도는 매년 다른 교급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2012년 70.8%에서 2016년 67.8%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⑤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9%(그런 편이다 51.3%, 매우 그렇다 16.6%)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전혀 그렇지 않다 1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1%)였다.

표 Ⅲ-2-14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4(0.86)	11.0	21.1	51.3	16.6	100.0(10,952)	–
성별	남자		2.73(0.87)	11.6	20.2	51.5	16.7	100.0(5,689)	9.123*
	여자		2.74(0.85)	10.3	22.1	51.2	16.5	100.0(5,26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6(0.74)	3.4	7.5	48.3	40.8	100.0(3,156)	2370.723***
	중학교		2.65(0.79)	10.6	23.0	56.9	9.5	100.0(3,679)	
	고등학교	전체	2.40(0.82)	17.0	30.0	48.7	4.3	100.0(4,118)	
		일반계고	2.44(0.81)	16.1	28.8	50.3	4.8	100.0(3,308)	
		특성화계고	2.26(0.81)	20.8	34.6	42.0	2.5	100.0(810)	
지역 규모	대도시		2.77(0.88)	10.8	20.4	49.9	18.9	100.0(4,395)	37.393***
	중소도시		2.70(0.85)	11.3	22.2	51.8	14.7	100.0(5,214)	
	읍면지역		2.76(0.84)	10.4	19.3	54.2	16.0	100.0(1,3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4(0.86)	10.8	20.9	51.4	16.9	100.0(9,825)	36.841***
	한부모가정		2.60(0.85)	13.4	24.4	51.3	11.0	100.0(809)	
	조손가정		2.96(0.86)	9.1	11.8	53.2	25.9	100.0(105)	
	기타		2.77(0.89)	10.3	22.5	47.1	20.0	100.0(212)	
학업 성적	상		2.90(0.87)	8.5	18.1	48.7	24.7	100.0(3,556)	427.594***
	중		2.75(0.83)	9.9	20.4	54.2	15.5	100.0(4,649)	
	하		2.49(0.85)	16.0	26.2	50.0	7.7	100.0(2,705)	
경제적 수준	상		2.83(0.88)	9.7	19.0	49.5	21.7	100.0(5,679)	299.865***
	중		2.68(0.83)	10.7	22.7	54.0	12.5	100.0(3,895)	
	하		2.47(0.85)	16.9	25.3	51.4	6.4	100.0(1,330)	

*p<.05, ***p<.001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9.1%로 '그렇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66.4%), 일반계고(55.1%), 특성화계고(44.5%)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70.2%), 대도시(68.8%), 중소도시(66.5%) 순으로, 학업성적(상 73.4%, 중 69.7%, 하 57.7%)과 경제적 수준(상 71.2%, 중 66.5%, 하 57.8%)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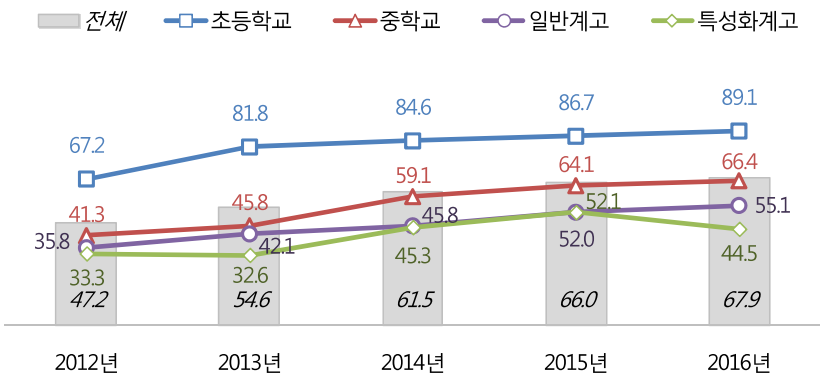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12】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연도별 추이)(%)

교칙 재·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에 47.2%, 2013년에 54.6%, 2014년에 61.5%, 2015년에 66.0%, 2016년에 67.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다시 감소하였고 그 수치 또한 다른 교급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볼 수 있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을 통해 가늠해 보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결정 참여정도에 대한 행정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자료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률이 유일한 자료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년 개최된다(청소년기본법 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표 Ⅲ-2-15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청소년백서. p.90.

2014년에는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에 31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28개가 수용된 결과 90.3%의 정책반영률을 보였다. 이는 2013년 96.5%(29개 과제를 제안하여 28개가 수용됨)의 정책반영률보다 감소한 수치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이후 90% 전후의 높은 의제 수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88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88.7%(344건)의 정책 반영도를 나타냈다(여성가족부, 2015: 90).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자문기구로 2015년 현재 189개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의 청소년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5년 현재 305개가 운영 중이다.

표 Ⅲ-2-1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5)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소년참여위원회	163	175	175	175	186	189	189	189
청소년운영위원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p.87-8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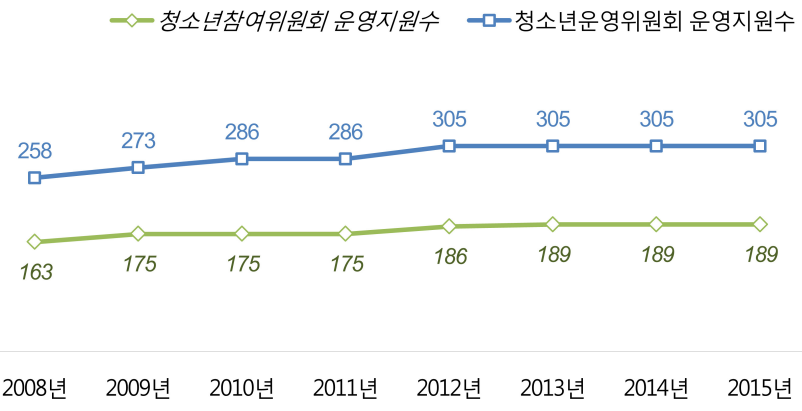

【그림 Ⅲ-2-13】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5)(단위 : 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수는 2008년 163개에서 2013년 189개까지 증가한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189개를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수는 2008년 258개에서 2012년 305개까지 증가한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305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Ⅲ-2-17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5) (단위 : 개)

	계	여성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참여위원회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청소년백서. pp.87-89. 재구성

한편 2016년부터는 기존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중심의 참여기구에서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심체 성격으로 위상을 변모시켰다. 시·도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경력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여(2016년도에는 초·중·고·대학생과 비학생 등 총21명 활동) 전년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과제의 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분야 참여기구로는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동총회'가 있다. 아동총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본대회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 지역대회 활동과 본대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등 정책참여 활동을 실시한다. 정책제안을 담은 결의문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부처별로 전달되어 다음 해 아동총회 때 이행결과를 청취하게 되나 그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제11회 총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에 대한 결의문을 토대로 진선미 국회의원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2015. 8. 4) '어린이 스스로 만든 법률' 제1호가 탄생한 사례가 있다.[12)]

표 III-2-18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5)

구분	주요내용
제1회	• 일시: 2004. 7. 27 ~ 29(2박 3일) • 주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만들기 • 참여인원: 112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2회	• 일시: 2005. 10. 20 ~ 22(2박 3일) • 주제: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480명(지역대회 개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3회	• 일시: 2006. 9. 21 ~ 23(2박 3일) • 주제: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 참여인원: 500명(이주아동 참가, 지역대회 개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4회	• 일시: 2007. 8. 14 ~ 16(2박 3일) • 주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560명(아동권리 수호천사 및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5회	• 일시: 2008. 8. 18 ~ 20(2박 3일) • 주제: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 참여인원: 총 610명(아동 580명, 지도자 30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2) 본 연구 일환으로 개최한 현장관계자 워크숍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과의 회의내용(2016. 7. 27일 개최)

구분	주요내용
제6회	• 일시: 2009. 11. 17 ~ 19(2박 3일) • 주제: 서로 존중해주는 세상을 위하여 • 참여인원: 총 547명(아동 418명, 지도자 129명) – 지역대회: 410명 – 본대회: 137명(지역대회 선발아동,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7회	• 일시: 2010. 8. 24 ~ 26(2박 3일) • 주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 • 참여인원: 총 1,335명(아동 1,040명, 지도자 295명) – 지역대회: 1,182명 – 본대회: 153명(지역대회 선발아동, 이주새터민 의장단 등)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8회	•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 지역대회: 1,583명(아동 1,216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7명) – 본대회: 15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9회	•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 지역대회: 1,663명(아동 1,307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6명) – 본대회: 16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46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0회	• 일시: 2013. 8. 7 ~ 9(2박 3일) • 주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 • 참여인원: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 – 지역대회: 1,046명(아동 7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247명) – 본대회: 128명(아동 9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명) • 주관: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11회	• 일시: 2014. 8. 11 ~ 13(2박 3일) • 주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 • 참여인원: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 – 지역대회: 676명(아동 456명, 지도자 및 실무자 220명) – 본대회: 134명(아동 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2회	• 일시: 2015. 8. 09 ~ 11(2박 3일) • 주제: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 참여인원: 총 1,262명(아동 924명, 지도자 및 실무자 338명) – 지역대회: 1,107명(아동 809명, 지도자 및 실무자 298명) – 본대회: 155명(아동 115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6).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2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인출 재구성(2016년도 결과는 실무자 회의 확인)

②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49.7%,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36.2%,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11.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9%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N)	χ^2
전체			49.7	36.2	11.2	2.9	100.0(11,086)	–
성별	남자		53.3	33.3	10.6	2.8	100.0(5,768)	64.608***
	여자		45.7	39.4	11.9	3.0	100.0(5,3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7.9	40.9	17.0	4.2	100.0(3,150)	342.038***
	중학교		50.8	36.9	9.9	2.4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57.5	32.1	8.0	2.4	100.0(4,205)	
		일반계고	57.8	31.7	8.1	2.4	100.0(3,377)	
		특성화계고	56.2	33.8	7.6	2.4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47.8	37.4	11.9	2.9	100.0(4,450)	19.791**
	중소도시		51.4	35.1	10.8	2.7	100.0(5,273)	
	읍면지역		48.9	36.7	10.5	3.9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9.2	36.5	11.5	2.9	100.0(9,947)	25.249**
	한부모가정		55.1	33.8	8.0	3.1	100.0(818)	
	조손가정		56.0	30.0	11.4	2.5	100.0(108)	
	기타		49.5	37.0	8.0	5.4	100.0(213)	
학업 성적	상		45.2	36.9	14.4	3.6	100.0(3,580)	110.722***
	중		49.4	37.1	10.8	2.7	100.0(4,712)	
	하		55.9	33.8	7.8	2.4	100.0(2,751)	
경제적 수준	상		47.1	36.8	12.7	3.3	100.0(5,753)	62.973***
	중		51.2	36.9	9.6	2.3	100.0(3,951)	
	하		56.2	31.6	9.4	2.8	100.0(1,33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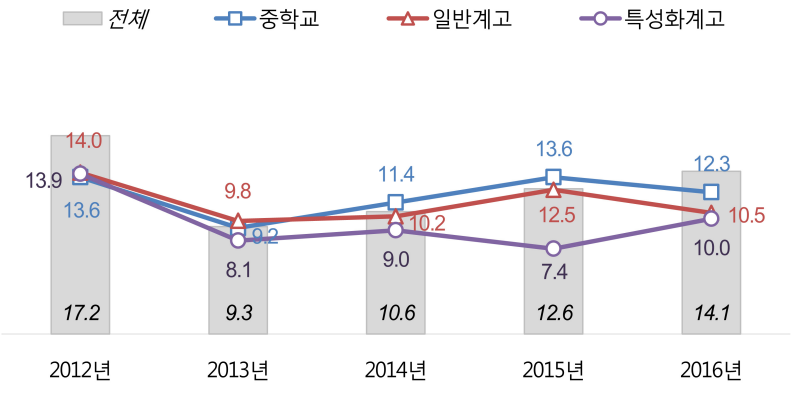

* 주: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다'와 '잘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1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연도별 추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2.8%)보다 여학생(3.0%)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모두 동일하게 2.4%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3.9%로 대도시(2.9%), 중소도시(2.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3.6%, 중2.7%, 하2.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알고 있으나 참여 경험 없음'과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음'), 교급이 낮을수록(초 21.2%, 중 12.3%, 일반계고 10.5%, 특성화계고 10.0%), 대도시(14.8%), 읍면지역(14.4%), 중소도시(13.5%) 순으로, 학업성적(상 18.0%, 중 13.5%, 하 10.2%)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상위권(16.0%), 하위층(12.2%), 중간층(11.9%)의 순으로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알고 있으나 참여 경험 없다'와 '잘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7.2%에서 2013년 9.3%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14.1%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특성화계고의 수치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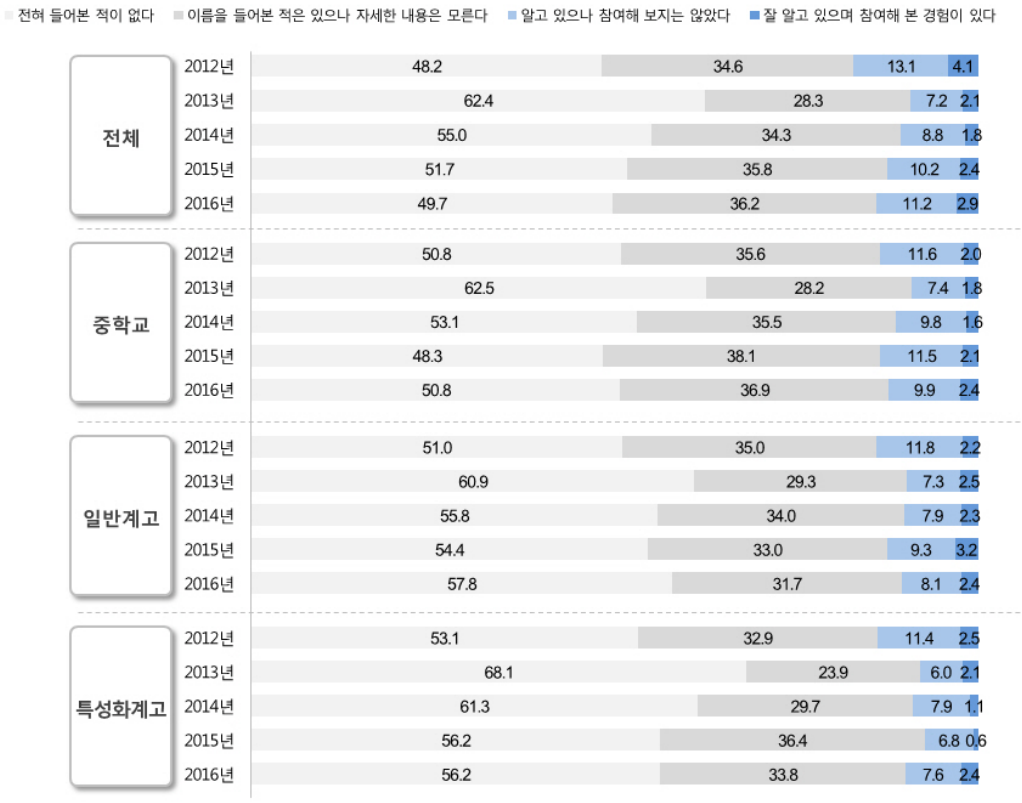

【그림 Ⅲ-2-15】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2012년 48.2%에서 2013년 62.4%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49.7%를 기록하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의 응답률은 2012년 34.6%에서 2013년 28.3%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6.2%를 기록하고 있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의 응답률은 2012년 13.1%에서 2013년 7.2%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1.2%로,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응답률은 2012년 4.1%에서 2013년 2.1%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2.9%를 기록하고 있다.

③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 연령을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현재의 투표연령인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24.7%였고 '현재 연령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3.3%였으며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6.0%,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6.0%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현재의 투표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률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1.8%)보다 남학생(27.2%)의 응답률이 높았고, 학교 유형에서는 일반계고(26.3%), 중학교(24.4%), 특성화계고(1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으로는 양부모 가정(24.8%), 한부모가정(23.3%), 조손가정(20.0%)의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25.3%), 하(24.6%), 중(24.3%)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25.9%), 하(25.4%), 중(22.9%) 순으로 투표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2-20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4.7	53.3	6.0	16.0	100.0(7,955)	–
성별	남자		27.2	47.5	7.2	18.1	100.0(4,144)	123.251***
	여자		21.8	59.7	4.7	13.8	100.0(3,810)	
학교 유형	중학교		24.4	52.3	5.6	17.8	100.0(3,737)	18.253***
	고등학교	전체	24.9	54.3	6.4	14.4	100.0(4,218)	
		일반계고	26.3	54.6	6.7	12.4	100.0(3,390)	
		특성화계고	19.1	52.9	5.4	22.7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24.4	53.7	6.2	15.7	100.0(3,127)	3.395
	중소도시		25.1	52.9	6.1	16.0	100.0(3,888)	
	읍면지역		23.9	53.8	5.1	17.2	100.0(9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8	53.9	5.8	15.6	100.0(7,108)	20.781*
	한부모가정		23.3	49.3	8.3	19.0	100.0(671)	
	조손가정		20.0	49.7	8.0	22.3	100.0(57)	
	기타		26.4	45.6	8.2	19.8	100.0(119)	
학업 성적	상		25.3	56.9	6.5	11.3	100.0(2,127)	64.450***
	중		24.3	53.5	6.0	16.1	100.0(3,304)	
	하		24.6	50.0	5.6	19.9	100.0(2,488)	
경제적 수준	상		25.9	52.0	6.3	15.9	100.0(3,673)	15.855*
	중		22.9	54.9	5.4	16.8	100.0(3,036)	
	하		25.4	53.3	6.8	14.4	100.0(1,206)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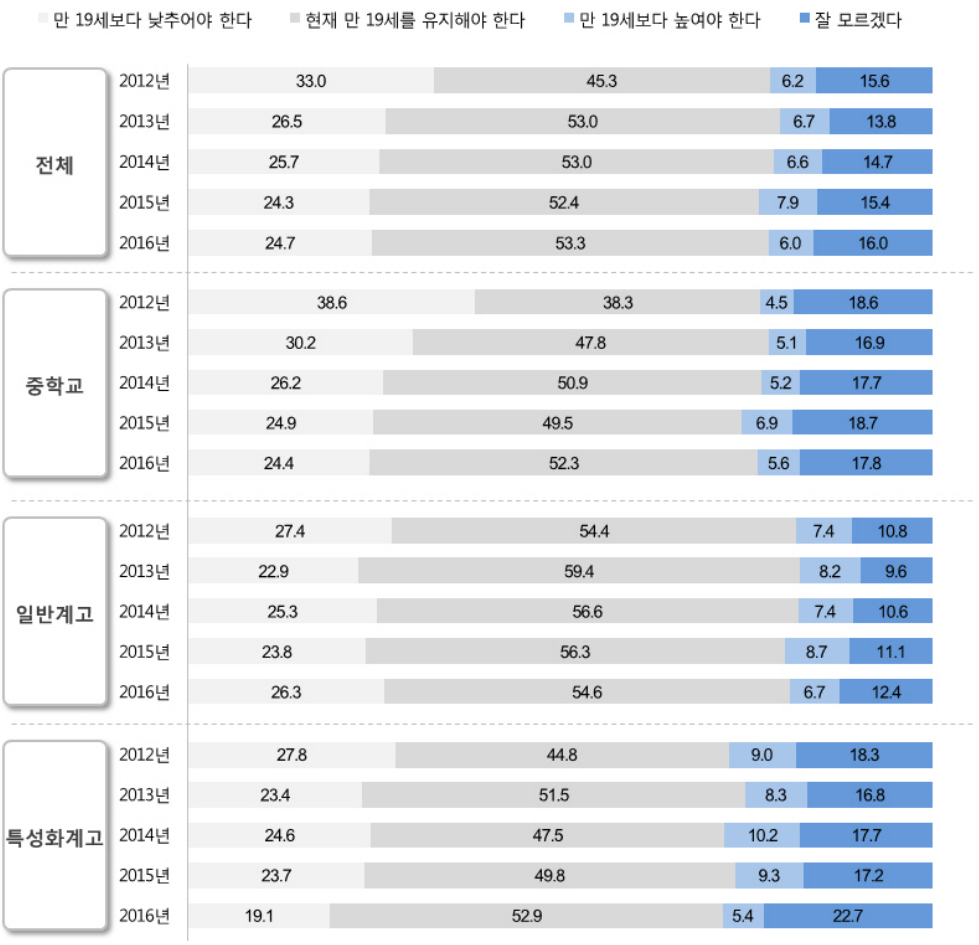

【그림 Ⅲ-2-16】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투표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33.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4.7%로 소폭 증가하였고,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45.3%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53.3%를 기록하였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6.2%에서 증가하다가 2016년 6.0%로 감소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2012년 15.6%에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16.0%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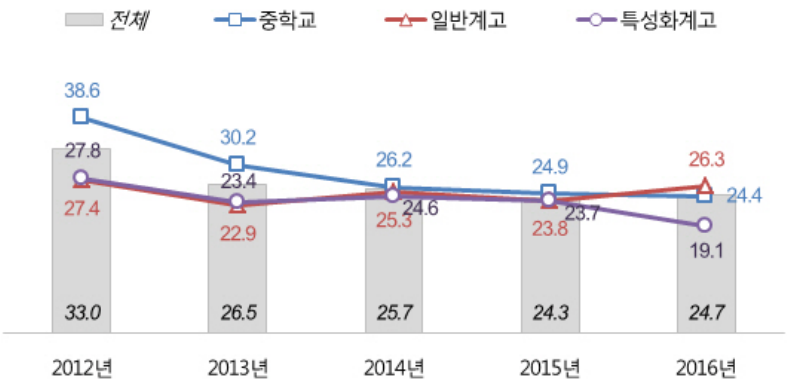

【그림 Ⅲ-2-17】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현재 투표연령보다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12년에 33.0%에서 2015년에 24.3%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2016년 24.7%로 소폭 증가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계고는 2015년 23.8%에서 2016년 26.3%로 증가하였고 특성화계고는 2015년 23.7%에서 2016년 19.1%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④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39.7%, 매우 그렇다 14.5%)라고 응답한 비율은 54.2%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4%)고 응답한 비율은 45.7%로,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률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가. 참여권 보장 수준

표 Ⅲ-2-21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52(0.93)	16.3	29.4	39.7	14.5	100.0(10,871)	-
성별	남자		2.52(0.96)	18.3	26.3	40.2	15.2	100.0(5,652)	68.730***
	여자		2.53(0.90)	14.2	32.7	39.2	13.8	100.0(5,2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7(0.80)	5.4	12.3	52.2	30.1	100.0(2,923)	1789.139***
	중학교		2.49(0.87)	14.6	32.5	42.5	10.4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18(0.90)	25.5	38.5	28.6	7.4	100.0(4,215)	
		일반계고	2.14(0.89)	26.9	39.5	26.5	7.1	100.0(3,386)	
		특성화계고	2.35(0.89)	19.5	34.5	37.6	8.4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55(0.94)	15.8	30.0	38.0	16.2	100.0(4,340)	34.775***
	중소도시		2.50(0.92)	16.7	30.0	40.3	13.0	100.0(5,186)	
	읍면지역		2.57(0.94)	16.4	25.3	43.2	15.1	100.0(1,3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3(0.93)	16.2	29.4	39.9	14.5	100.0(9,755)	15.203
	한부모가정		2.47(0.93)	17.4	31.5	37.8	13.3	100.0(811)	
	조손가정		2.72(1.01)	16.5	18.6	40.9	24.0	100.0(103)	
	기타		2.54(0.95)	17.3	26.6	40.8	15.4	100.0(202)	
학업 성적	상		2.61(0.96)	15.2	28.0	37.5	19.3	100.0(3,475)	152.361***
	중		2.55(0.90)	14.5	29.6	42.1	13.7	100.0(4,608)	
	하		2.38(0.92)	20.6	30.8	38.6	10.0	100.0(2,747)	
경제적 수준	상		2.62(0.94)	14.8	26.4	41.2	17.7	100.0(5,596)	193.916***
	중		2.48(0.90)	16.2	31.2	40.8	11.8	100.0(3,893)	
	하		2.28(0.92)	22.6	36.6	30.9	9.9	100.0(1,336)	

***$p<.001$

'그렇다' 응답률의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5.4%)이 여학생(53.0%)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82.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52.9%), 특성화계고(46.0%), 일반계고(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58.3%), 대도시(54.2%), 중소도시(53.3%)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별로는 상(56.8%), 중(55.8%), 하(48.6%)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58.9%), 중(52.6%), 하(40.8%)의 순으로 청소년참여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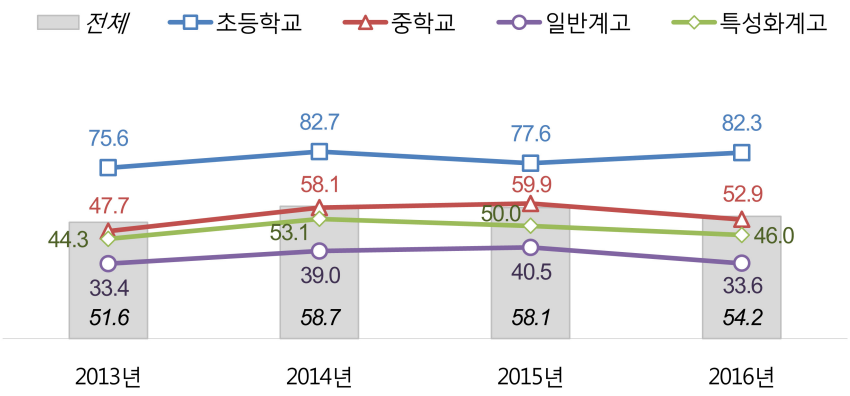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18】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51.6%에서 2014년 58.7%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 58.1%로 그리고 2016년에 다시 54.2%까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33.6%로서 모든 교급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초등학교의 82.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참여의 장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하라는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응답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37.8%)'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28.8%)',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6.5%)',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음(13.1%)',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2.0%)',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1.7%)'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Ⅲ-2-22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구 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 (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7.8	16.5	2.0	1.7	28.8	13.1	100.0(11,039)	–
성별	남자		43.0	15.9	2.3	2.2	25.0	11.7	100.0(5,739)	190.937***
	여자		32.1	17.2	1.8	1.2	33.0	14.7	100.0(5,300)	
학교유형	초등학교		44.0	15.6	4.0	1.3	19.3	15.8	100.0(3,110)	329.900***
	중학교		37.5	17.4	1.8	1.8	30.8	10.6	100.0(3,714)	
	고등학교	전체	33.5	16.3	0.8	1.8	34.1	13.4	100.0(4,214)	
		일반계고	34.2	15.8	0.6	1.8	34.5	13.2	100.0(3,385)	
		특성화계고	30.7	18.7	1.6	2.1	32.7	14.3	100.0(829)	
지역규모	대도시		39.0	15.9	2.0	1.6	28.8	12.6	100.0(4,431)	21.904*
	중소도시		37.2	17.1	2.0	1.5	29.2	13.1	100.0(5,254)	
	읍면지역		36.4	16.0	2.3	2.7	27.6	15.0	100.0(1,35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7.8	16.6	1.9	1.7	28.9	13.1	100.0(9,909)	26.781*
	한부모가정		36.1	16.2	2.4	1.7	30.7	12.9	100.0(816)	
	조손가정		43.9	14.9	2.5	3.0	25.9	9.9	100.0(105)	
	기타		43.3	13.7	5.3	1.0	20.5	16.2	100.0(209)	
학업성적	상		36.9	16.1	1.9	1.3	30.1	13.7	100.0(3,564)	12.990
	중		38.5	16.7	2.1	1.7	28.0	13.0	100.0(4,680)	
	하		37.8	16.6	2.2	2.1	28.7	12.6	100.0(2,753)	
경제적수준	상		40.0	16.2	1.8	1.8	27.1	13.1	100.0(5,710)	53.967***
	중		36.7	16.7	2.5	1.7	29.3	13.2	100.0(3,942)	
	하		31.6	16.9	1.9	1.5	35.1	13.0	100.0(1,339)	

*p<.05, ***p<.001

배경변인별로는 남학생은 '시간 부족'(43.0%)을, 여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3.0%)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44.0%)과 중학교(37.5%)는 '시간부족'을, 일반계고(34.5%)과 특성화계고(32.7%)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상위(40.0%)와 중위(36.7%)인 경우는 '시간부족'을, 하위(35.1%)인 경우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을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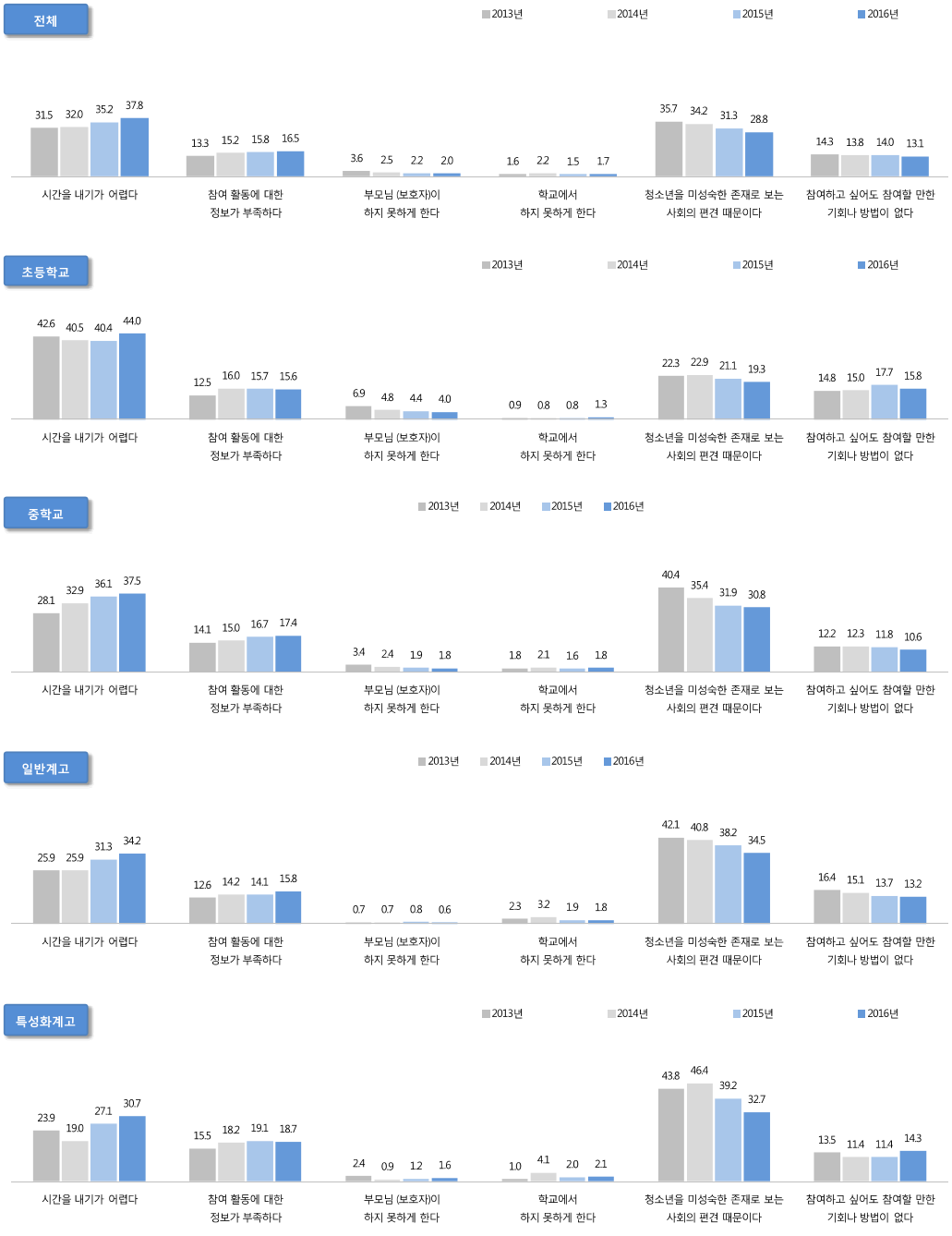

【그림 Ⅲ-2-19】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의 연도별 추이를 보았을 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의 응답률이 2013년 3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7.8%를 기록한 반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의 응답률은 2013년 3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8.8%를 기록하였다.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의 응답률은 2013년 13.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6.5%를 기록하였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의 응답률은 2013년 14.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 13.1%를 기록하였다.

청소년들이 참여 장애요인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때 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정에서 생각의 자유를 존중받고 있는 정도(87.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78.3%), 사회(6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3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학교, 사회) (단위 : %)

내 용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3.24(0.76)	3.8	8.3	48.1	39.8
2)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3.00(0.80)	5.3	16.4	51.2	27.1
3)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2.75(0.90)	9.9	26.2	42.6	21.3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7.9%(그런 편이다 48.1%, 매우 그렇다 39.8%)였고, 12.1%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고 응답했다.

표 Ⅲ-2-24 사상의 자유 보장_1)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4(0.76)	3.8	8.3	48.1	39.8	100.0(11,102)	-
성별	남자		3.18(0.79)	5.0	9.1	48.7	37.2	100.0(5,773)	74.040***
	여자		3.30(0.72)	2.5	7.5	47.4	42.6	100.0(5,3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0(0.84)	5.8	7.3	38.0	48.9	100.0(3,154)	254.115***
	중학교		3.18(0.75)	3.6	9.9	51.2	35.3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3.24(0.70)	2.6	7.6	52.8	37.0	100.0(4,217)	
		일반계고	3.28(0.69)	2.2	7.0	51.6	39.1	100.0(3,388)	
		특성화계고	3.10(0.73)	4.1	10.0	57.7	28.1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27(0.77)	4.0	7.8	45.0	43.2	100.0(4,465)	43.971***
	중소도시		3.22(0.74)	3.5	8.5	50.3	37.8	100.0(5,275)	
	읍면지역		3.18(0.78)	4.4	9.4	49.5	36.6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5(0.75)	3.4	8.4	47.6	40.6	100.0(9,963)	90.973***
	한부모가정		3.16(0.77)	5.1	7.4	54.3	33.2	100.0(820)	
	조손가정		2.93(0.94)	12.0	11.0	48.8	28.2	100.0(106)	
	기타		3.02(0.96)	12.0	8.7	44.1	35.2	100.0(214)	
학업 성적	상		3.38(0.74)	3.0	6.2	40.9	49.9	100.0(3,583)	273.477***
	중		3.21(0.75)	4.0	8.2	50.6	37.2	100.0(4,713)	
	하		3.10(0.77)	4.6	11.3	53.2	30.9	100.0(2,764)	
경제적 수준	상		3.31(0.75)	3.6	6.8	45.1	44.6	100.0(5,752)	136.712***
	중		3.18(0.76)	3.9	9.3	51.3	35.4	100.0(3,962)	
	하		3.11(0.78)	4.6	11.7	51.5	32.1	100.0(1,340)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90.0%)이 남학생(85.9%)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90.7%), 초등학교(86.9%), 중학교(86.5%), 특성화계고(85.8%) 순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대도시 88.2%, 중소도시 88.1%, 읍면지역 86.1%), 학업성적(상 90.8%, 중 87.8%, 하 84.1%)과 경제적 수준(상 89.7%, 중 86.7%, 하 83.6%)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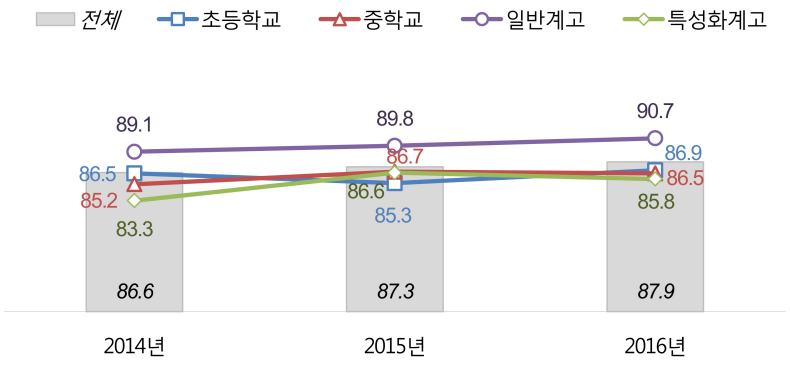

【그림 Ⅲ-2-20】 사상의 자유 보장_1)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6.6%에서 2015년 87.3%, 2016년 87.9%로 조금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특성화계고등학생은 낮은 경향 가운데 올해 응답률은 전년도보다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1.2%, 매우 그렇다 27.1%)라고 응답한 비율은 78.3%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4%)로 응답한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표 Ⅲ-2-25 사상의 자유 보장_2)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0(0.80)	5.3	16.4	51.2	27.1	100.0(11,096)	-
성별	남자		2.97(0.84)	7.0	15.9	50.1	27.0	100.0(5,769)	71.863***
	여자		3.03(0.76)	3.4	17.0	52.3	27.3	100.0(5,3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3(0.86)	6.0	13.3	42.3	38.3	100.0(3,147)	304.705***
	중학교		2.96(0.79)	5.2	17.4	53.6	23.8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2.94(0.77)	4.9	17.8	55.7	21.7	100.0(4,217)	
		일반계고	2.97(0.75)	4.3	17.2	55.8	22.7	100.0(3,388)	
		특성화계고	2.83(0.80)	7.1	20.0	55.0	17.8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3.05(0.82)	5.5	14.7	49.3	30.5	100.0(4,461)	51.889***
	중소도시		2.98(0.79)	5.0	17.5	52.3	25.2	100.0(5,277)	
	읍면지역		2.94(0.80)	5.8	17.7	52.9	23.6	100.0(1,35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80)	5.2	16.1	51.1	27.7	100.0(9,958)	40.953***
	한부모가정	2.89(0.78)	5.1	21.5	52.9	20.5	100.0(818)	
	조손가정	2.92(0.89)	9.9	13.3	51.1	25.6	100.0(106)	
	기타	2.99(0.87)	8.6	12.2	50.5	28.7	100.0(214)	
학업 성적	상	3.13(0.82)	5.0	13.2	45.2	36.6	100.0(3,575)	341.710***
	중	3.00(0.77)	4.8	15.3	55.2	24.7	100.0(4,717)	
	하	2.83(0.80)	6.6	22.6	52.1	18.8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3.07(0.81)	5.0	14.2	49.2	31.7	100.0(5,749)	160.938***
	중	2.94(0.79)	5.4	17.6	54.2	22.8	100.0(3,962)	
	하	2.85(0.81)	6.3	22.5	51.0	20.1	100.0(1,337)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9.6%)이 남학생(77.1%)보다, 초등학교(80.6%), 일반계고(78.5%), 중학교(77.4%), 특성화계고(72.8%) 순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대도시 79.8%, 중소도시 77.5%, 읍면지역 76.5%), 학업성적(상 81.8%, 중 79.9%, 하 70.9%)과 경제적 수준(상 80.9%, 중 77.0%, 하 71.1%)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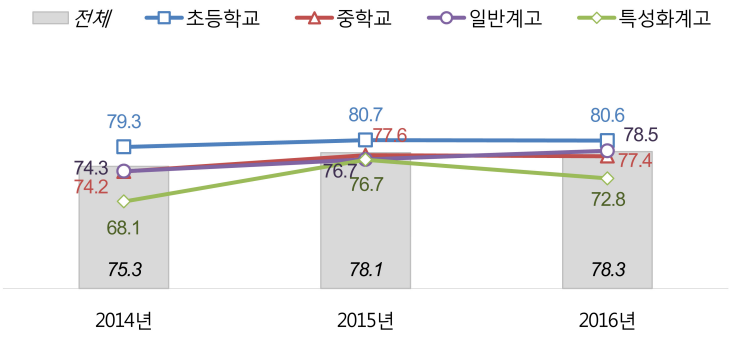

【그림 Ⅲ-2-21】 사상의 자유 보장_2)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75.3%에서 2015년 78.1%, 2016년 78.3%로 가정에서의 생각 표현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만 증가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특성화계고의 감소폭이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6 사상의 자유 보장_3)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5(0.90)	9.9	26.2	42.6	21.3	100.0(11,085)	-
성별	남자		2.74(0.94)	11.8	24.3	41.4	22.4	100.0(5,762)	75.329***
	여자		2.77(0.86)	7.7	28.2	43.9	20.2	100.0(5,3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8(0.94)	8.8	18.4	38.7	34.1	100.0(3,147)	470.669***
	중학교		2.70(0.87)	9.7	28.5	44.0	17.8	100.0(3,725)	
	고등학교	전체	2.63(0.86)	10.8	30.0	44.3	15.0	100.0(4,213)	
		일반계고	2.65(0.86)	10.2	30.1	44.3	15.4	100.0(3,383)	
		특성화계고	2.58(0.88)	12.9	29.7	44.2	13.2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80(0.92)	9.8	24.6	41.4	24.3	100.0(4,458)	45.362***
	중소도시		2.72(0.89)	9.8	27.8	42.9	19.5	100.0(5,270)	
	읍면지역		2.73(0.88)	10.3	25.3	45.5	18.9	100.0(1,3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7(0.90)	9.5	26.1	42.7	21.7	100.0(9,950)	24.194**
	한부모가정		2.63(0.91)	12.7	28.7	42.1	16.5	100.0(817)	
	조손가정		2.69(0.95)	13.2	24.8	41.6	20.4	100.0(104)	
	기타		2.73(0.95)	13.1	22.7	42.6	21.6	100.0(214)	
학업 성적	상		2.87(0.94)	9.3	23.4	38.4	28.9	100.0(3,576)	228.886***
	중		2.75(0.88)	9.4	25.6	45.5	19.5	100.0(4,709)	
	하		2.61(0.87)	11.3	31.1	43.0	14.6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2.86(0.90)	8.6	23.0	42.3	26.1	100.0(5,749)	232.584***
	중		2.68(0.87)	10.3	28.5	44.2	17.0	100.0(3,951)	
	하		2.52(0.90)	14.2	33.6	38.6	13.6	100.0(1,337)	

**$p<.01$, ***$p<.001$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42.6%, 매우 그렇다 21.3%)라고 응답한 비율은 63.9%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2%)는 36.1%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4.1%)이 남학생(63.8%)보다, 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8%, 중학교 61.8%, 일반계고 59.7%, 특성화계고 57.4%), 대도시(65.7%), 읍면지역(64.4%), 중소도시(62.4%) 순으로, 학업성적(상 67.3%, 중 65.0%, 하 57.6%)과 경제적 수준(상 68.4%, 중 61.2%, 하 52.2%)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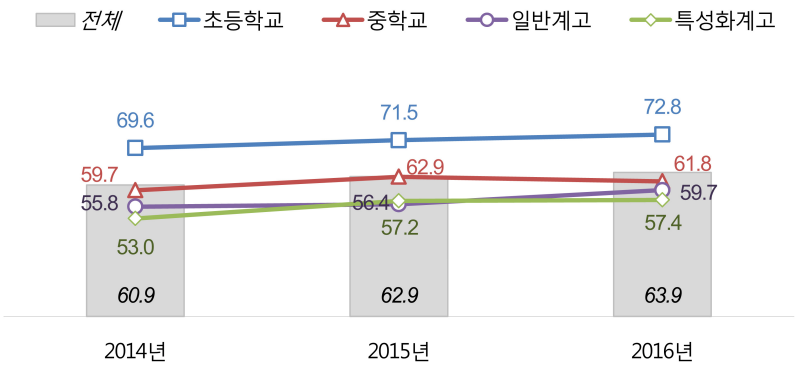

【그림 Ⅲ-2-22】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_3)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60.9%에서 2015년 62.9%, 2016년 63.9%로서 가정, 학교에서 나타난 추이와 비슷하게 수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교급이 낮을수록 보장 수준이 높은 가운데 특성화계고등학생이 꾸준히 낮은 응답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2) 종교 자유 보장정도

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재학 중인 학교가 종교재단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0%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89.0%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7 종교재단 학교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11.0	89.0	100.0(7,962)	-
성별	남자	10.3	89.7	100.0(4,151)	3.537
	여자	11.7	88.3	100.0(3,811)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학교 유형	중학교		4.1	95.9	100.0(3,741)	336.337***
	고등학교	전체	17.0	83.0	100.0(4,221)	
		일반계고	18.9	81.1	100.0(3,391)	
		특성화계고	9.3	90.7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6.0	84.0	100.0(3,132)	168.180***
	중소도시		9.0	91.0	100.0(3,892)	
	읍면지역		2.3	97.7	100.0(9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1	88.9	100.0(7,115)	3.304
	한부모가정		9.0	91.0	100.0(671)	
	조손가정		8.4	91.6	100.0(57)	
	기타		13.0	87.0	100.0(119)	
학업 성적	상		9.2	90.8	100.0(2,129)	12.761**
	중		10.8	89.2	100.0(3,305)	
	하		12.5	87.5	100.0(2,492)	
경제적 수준	상		10.3	89.7	100.0(3,677)	3.006
	중		11.4	88.6	100.0(3,040)	
	하		11.6	88.4	100.0(1,206)	

**p<.01, ***p<.001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그런 편이다 14.7%, 매우 그렇다 12.0%)고 응답한 비율은 26.7%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8%)고 응답한 비율은 73.3%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8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7(1.06)	51.5	21.8	14.7	12.0	100.0(856)	100.0(856)
성별	남자		1.83(1.04)	52.9	22.6	13.2	11.3	100.0(426)	2.176
	여자		1.92(1.08)	50.1	21.0	16.1	12.8	100.0(430)	
학교 유형	중학교		1.74(0.94)	53.5	25.3	14.7	6.5	100.0(154)	6.020
	고등학교	전체	1.90(1.09)	51.1	21.0	14.7	13.3	100.0(702)	
		일반계고	1.96(1.11)	49.4	20.0	16.1	14.5	100.0(626)	
		특성화계고	1.43(0.69)	65.3	29.1	2.8	2.9	100.0(76)	
지역 규모	대도시		1.69(0.92)	55.3	26.7	11.4	6.6	100.0(498)	–
	중소도시		2.17(1.21)	44.8	14.6	19.8	20.8	100.0(338)	
	읍면지역		1.38(0.66)	70.4	20.9	8.7	0.0	100.0(2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0(1.08)	50.9	20.8	15.3	13.0	100.0(777)	–
	한부모가정	1.53(0.69)	58.5	30.4	11.0	0.0	100.0(59)	
	조손가정	2.47(1.48)	33.9	25.5	0.0	40.6	100.0(5)	
	기타	1.43(0.56)	59.1	38.7	2.1	0.0	100.0(15)	
학업 성적	상	1.74(1.06)	59.2	19.8	8.3	12.7	100.0(192)	15.451*
	중	1.98(1.10)	47.2	22.2	16.0	14.6	100.0(348)	
	하	1.84(1.02)	52.0	21.4	17.4	9.1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1.89(1.08)	51.5	21.6	13.7	13.2	100.0(368)	6.468
	중	1.93(1.09)	50.3	19.9	16.8	13.0	100.0(341)	
	하	1.71(0.95)	55.8	24.2	12.8	7.2	100.0(138)	

*$p<.05$

변인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40.6%), 대도시(18.0%), 읍면지역(8.7%) 순으로, 학업성적이 중간인 경우(30.6%), 하위권인 경우(26.5%), 상위권인 경우(21.0%) 순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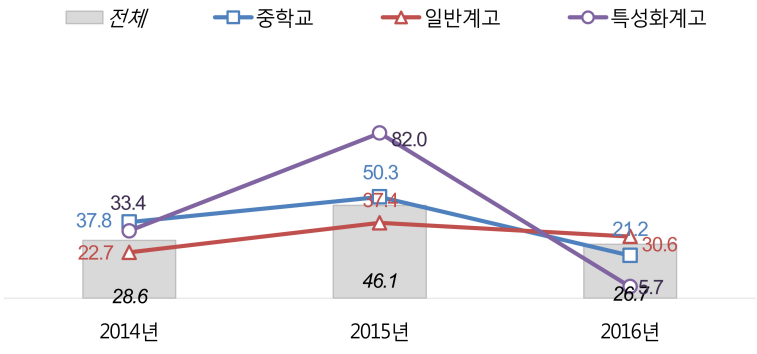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23】 학교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연도별 추이)(%)

종교행사 참여에의 자율성 추이를 보면, 2014년 28.6%에서 2015년 46.1%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 2016년 26.7%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특성화계고등학교 응답값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4년 33.4%, 2015년 82.0%, 2016년 5.7%로 응답값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중학생도 2014년 37.8%, 2015년 50.3%, 2015년

21.2%로 2015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며, 모든 교급이 2016년도에는 응답률이 감소하여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수준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36.4%)라고 응답한 비율은 76.2%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0%)는 23.8%로 나타났다.

표 Ⅲ-2-29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3(0.95)	9.8	14.0	39.8	36.4	100.0(11,093)	–
성별	남자		3.00(0.98)	11.5	13.4	38.5	36.6	100.0(5,768)	43.081***
	여자		3.05(0.91)	8.0	14.7	41.2	36.1	100.0(5,3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7(1.05)	13.9	14.3	32.4	39.4	100.0(3,153)	183.801***
	중학교		2.98(0.93)	9.5	15.7	41.8	33.0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3.11(0.88)	7.1	12.4	43.5	37.1	100.0(4,209)	
		일반계고	3.13(0.87)	6.6	12.5	42.3	38.6	100.0(3,386)	
		특성화계고	3.01(0.89)	8.9	11.9	48.4	30.8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3.07(0.95)	9.4	13.3	37.8	39.4	100.0(4,461)	51.756***
	중소도시		3.02(0.93)	9.4	14.5	41.0	35.2	100.0(5,275)	
	읍면지역		2.90(0.98)	13.0	15.0	41.3	30.8	100.0(1,3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94)	9.5	14.2	39.7	36.6	100.0(9,961)	62.232***
	한부모가정		3.04(0.92)	9.3	12.7	42.6	35.4	100.0(816)	
	조손가정		2.81(1.05)	18.7	9.4	43.9	28.0	100.0(104)	
	기타		2.71(1.15)	23.4	14.3	30.4	31.9	100.0(213)	
학업 성적	상		3.14(0.93)	8.1	13.1	35.2	43.6	100.0(3,577)	126.160***
	중		2.98(0.95)	10.8	14.2	41.6	33.4	100.0(4,713)	
	하		2.96(0.94)	10.4	15.1	42.6	31.9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3.04(0.96)	10.3	13.2	38.3	38.2	100.0(5,748)	31.550***
	중		3.00(0.93)	9.3	15.6	41.3	33.9	100.0(3,964)	
	하		3.04(0.93)	9.4	13.2	41.8	35.6	100.0(1,335)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77.3%)이 남학생(75.1%)보다, 교급이 높을수록(일반계고 80.9%, 특성화계고 79.2%, 중학교 74.8%, 초등학교 71.8%),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77.2%, 중소도시 76.2%, 읍면지역 72.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8.8%, 중 75.0%, 하 74.5%), 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경우(77.4%)가 높거나(76.5%) 중간인 경우(75.2%)보다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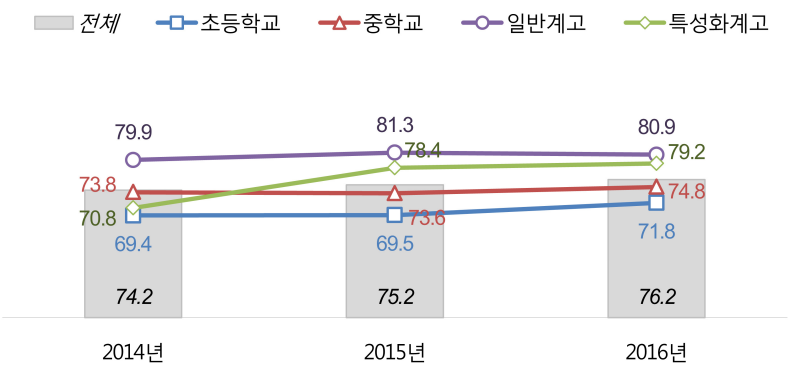

【그림 Ⅲ-2-24】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이 2014년에 74.2%, 2015년에 75.2%, 2016년에 76.2%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증가하였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일환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얼마나 자주 참여활동을 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해 '전혀 없다' 67.3%, '거의 없다' 17.3%, '가끔 있다' 11.8%, '자주 있다' 3.6%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4%로 나타났다.

표 Ⅲ-2-3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N)	χ^2
전체			1.52(0.84)	67.3	17.3	11.8	3.6	100.0(7,942)	–
성별	남자		1.53(0.85)	67.0	16.8	12.4	3.8	100.0(4,138)	4.816
	여자		1.50(0.82)	67.7	17.8	11.2	3.3	100.0(3,804)	
학교 유형	중학교		1.56(0.88)	65.1	18.0	12.3	4.6	100.0(3,724)	28.326***
	고등학교	전체	1.48(0.80)	69.2	16.7	11.4	2.7	100.0(4,218)	
		일반계고	1.48(0.81)	69.4	16.0	11.8	2.8	100.0(3,390)	
		특성화계고	1.46(0.77)	68.3	19.7	9.5	2.5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1.52(0.84)	67.5	16.7	12.4	3.4	100.0(3,126)	15.277*
	중소도시		1.52(0.85)	67.5	17.0	11.5	4.0	100.0(3,879)	
	읍면지역		1.50(0.78)	65.8	20.8	11.0	2.4	100.0(9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2(0.84)	67.5	16.9	11.9	3.6	100.0(7,098)	17.182*
	한부모가정		1.51(0.82)	66.3	19.3	11.2	3.3	100.0(670)	
	조손가정		1.48(0.90)	72.0	15.0	5.8	7.1	100.0(56)	
	기타		1.54(0.76)	59.9	28.0	10.0	2.0	100.0(118)	
학업 성적	상		1.56(0.88)	65.3	17.8	12.3	4.6	100.0(2,123)	21.783**
	중		1.52(0.82)	66.6	18.2	12.2	3.0	100.0(3,298)	
	하		1.48(0.82)	70.1	15.5	10.9	3.5	100.0(2,486)	
경제적 수준	상		1.54(0.86)	66.8	16.3	12.9	4.0	100.0(3,666)	21.340**
	중		1.48(0.80)	68.3	18.5	10.2	3.0	100.0(3,032)	
	하		1.54(0.86)	66.8	16.7	12.5	3.9	100.0(1,206)	

*p<.05, **p<.01, ***p<.001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응답률을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은 16.2%, 여학생은 14.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중학교 16.9%, 일반계고 14.6%, 특성화계고 12.0%) 순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15.8%, 중소도시 15.5%, 읍면지역 13.4%),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6.9% 중 15.2%, 하 14.4%),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16.9%), 하(16.4%), 중(13.2%)의 순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19.6%, 2013년 20.1%, 2014년 16.3%, 2015년 17.0%, 2016년 15.4%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참여활동 경험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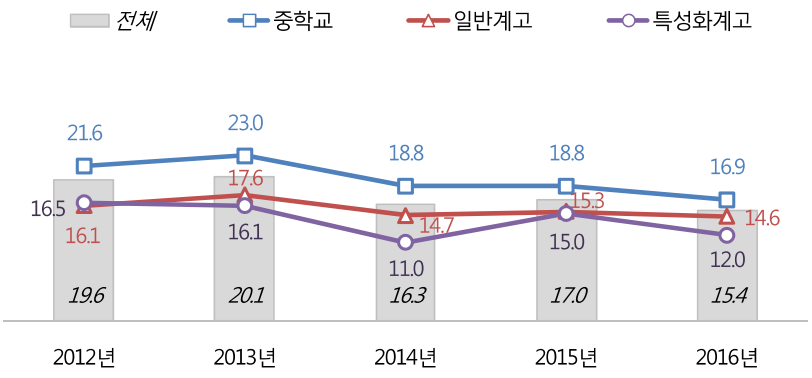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2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연도별 추이)(%)

표 Ⅲ-2-3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N)	χ^2
전체			1.35(0.64)	72.9	19.8	6.5	0.8	100.0(7,939)	–
성별	남자		1.34(0.62)	73.8	19.4	5.9	0.8	100.0(4,135)	5.538
	여자		1.37(0.65)	71.9	20.2	7.0	0.8	100.0(3,804)	
학교 유형	중학교		1.39(0.67)	70.6	21.1	7.2	1.1	100.0(3,728)	23.529***
	고등학교	전체	1.32(0.61)	75.0	18.7	5.8	0.6	100.0(4,211)	
		일반계고	1.32(0.61)	75.1	18.3	6.1	0.6	100.0(3,385)	
		특성화계고	1.31(0.58)	74.6	20.3	4.6	0.5	100.0(825)	
지역 규모	대도시		1.33(0.63)	74.4	18.6	6.1	0.9	100.0(3,122)	15.510*
	중소도시		1.36(0.64)	72.7	19.8	6.7	0.8	100.0(3,880)	
	읍면지역		1.39(0.64)	68.5	24.2	6.6	0.7	100.0(9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5(0.64)	73.1	19.6	6.5	0.8	100.0(7,099)	–
	한부모가정		1.37(0.65)	71.0	21.5	6.8	0.8	100.0(666)	
	조손가정		1.23(0.47)	79.6	18.1	2.3	0.0	100.0(56)	
	기타		1.39(0.64)	67.9	26.2	4.6	1.3	100.0(118)	
학업 성적	상		1.37(0.66)	71.9	20.5	6.3	1.2	100.0(2,120)	20.449**
	중		1.37(0.65)	71.6	20.4	7.1	0.8	100.0(3,300)	
	하		1.31(0.60)	75.6	18.2	5.7	0.5	100.0(2,483)	
경제적 수준	상		1.37(0.66)	72.3	19.8	6.9	1.1	100.0(3,667)	17.679**
	중		1.33(0.60)	73.7	20.4	5.5	0.5	100.0(3,034)	
	하		1.36(0.66)	73.4	18.0	7.7	0.9	100.0(1,199)	

*p<.05, **p<.01, ***p<.001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 72.9%, '거의 없다' 19.8%, '가끔 있다' 6.5%, '자주 있다' 0.8%로 나타나 참여 경험은 7.3%로 나타났다.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 유형별로는 교급이 낮을수록(중학교 8.3%, 일반계고 6.7%, 특성화계고 5.1%),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7.9%), 상위권(7.5%), 하위권(6.2%)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권(8.6%), 상위권(8.0%), 중위권(6.0%) 순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경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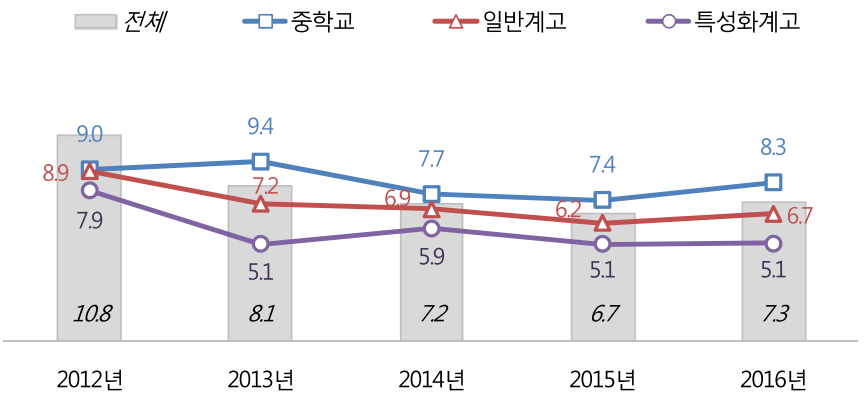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26】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_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연도별 추이)(%)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2012년 10.8%, 2013년 8.1%, 2014년 7.2%, 2015년에 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7.3%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증가하였고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학생,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등학생 순으로 참여 경험이 높은 경향이 매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가 9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고 및 훈계'를 당한 경우가 2.4%,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이 0.9%,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이 0.5%, '기타'에 0.2%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3.8%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으로 학교에서 상담이나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2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선도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기타	전체(N)
전체			96.0	2.4	0.9	0.5	0.2	100(1,382)
성별	남자		96.1	2.1	1.0	0.8	0.0	100(737)
	여자		96.0	2.9	0.7	0.1	0.4	100(645)
학교 유형	중학교		95.8	2.5	1.3	0.2	0.1	100(705)
	고등학교	전체	96.3	2.4	0.4	0.7	0.3	100(677)
		일반계고	95.5	2.9	0.5	0.8	0.3	100(563)
		특성화계고	100.0	0.0	0.0	0.0	0.0	100(114)
지역 규모	대도시		94.1	3.4	1.4	0.8	0.2	100(560)
	중소도시		97.0	2.1	0.7	0.2	0.1	100(674)
	읍면지역		99.1	0.4	0.0	0.0	0.5	100(1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2	2.5	0.8	0.2	0.2	100(1,242)
	한부모가정		93.1	1.9	1.8	3.1	0.0	100(117)
	조손가정		100.0	0.0	0.0	0.0	0.0	100(9)
	기타		100.0	0.0	0.0	0.0	0.0	100(15)
학업 성적	상		97.1	2.2	0.2	0.1	0.3	100(413)
	중		95.1	2.9	1.2	0.8	0.0	100(588)
	하		96.3	2.0	1.1	0.3	0.4	100(375)
경제적 수준	상		95.2	3.3	0.8	0.5	0.1	100(683)
	중		97.6	0.7	1.0	0.6	0.0	100(458)
	하		95.2	3.2	0.9	0.0	0.7	10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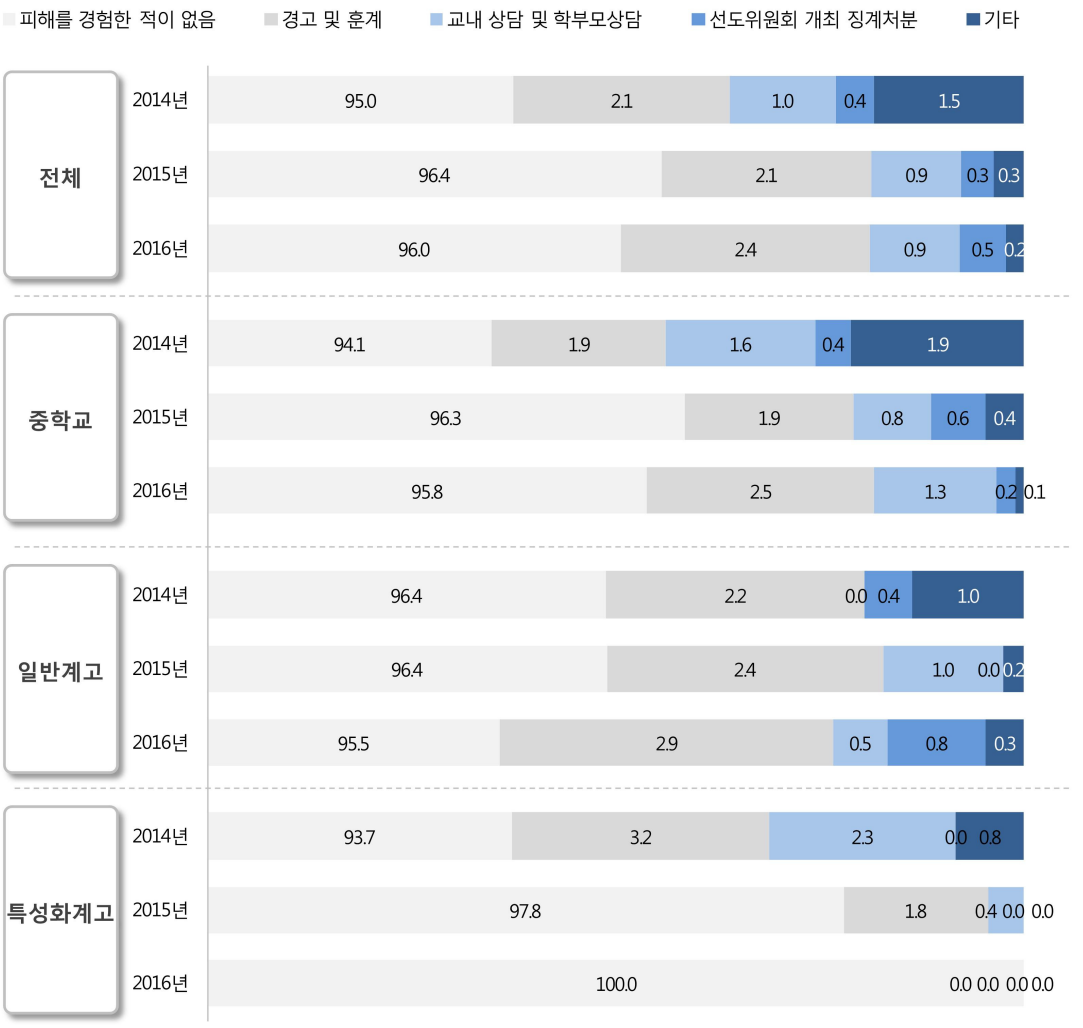

【그림 Ⅲ-2-2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과 '경고 및 훈계'는 2014년 이후로 소폭 증가하였고,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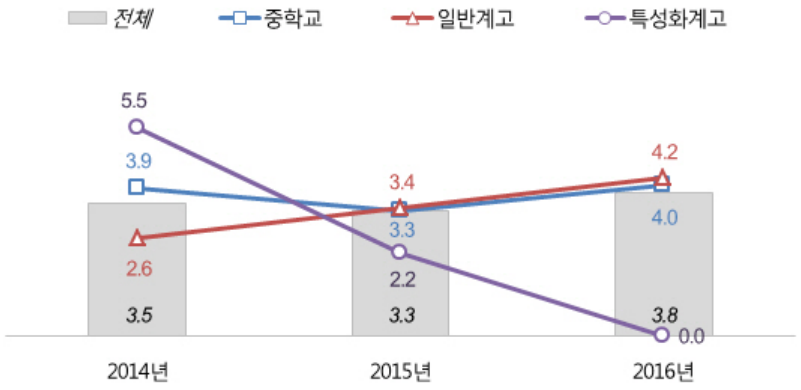

* 주: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징계처분' 등 3개 값 합계(단위 : %)

【그림 Ⅲ-2-2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참여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2014년에 3.5%, 2015년에 3.3%, 2016년에 3.8%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증가한 반면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0%를 기록하여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가. 용모 검사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은 48.6%, '일 년에 1-2회 정도'는 18.2%, '한 달에 1-2회 정도'는 19.4%, '1주일에 1-2회 정도'는 4.9%, '1주일에 3회 이상'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1.4%의 응답자가 일 년에 1회 이상 용모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33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1) 용모 검사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48.6	18.2	19.4	4.9	8.9	51.4	100.0(7,955)	-
성별	남자		60.3	16.5	17.4	2.6	3.2	39.7	100.0(4,146)	686.233***
	여자		35.9	20.0	21.7	7.3	15.2	64.2	100.0(3,809)	
학교 유형	중학교		57.2	15.7	15.1	4.9	7.1	42.8	100.0(3,736)	225.365***
	고등학교	전체	41.0	20.4	23.2	4.9	10.6	59.1	100.0(4,219)	
		일반계고	40.9	20.0	23.8	4.7	10.6	59.1	100.0(3,391)	
		특성화계고	41.3	21.8	21.0	5.5	10.5	58.8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45.9	18.0	22.3	5.2	8.6	54.1	100.0(3,128)	59.961***
	중소도시		49.1	18.3	17.8	4.8	10.0	50.9	100.0(3,888)	
	읍면지역		55.9	18.2	16.7	3.9	5.3	44.1	100.0(9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5	17.9	19.7	4.7	9.2	51.5	100.0(7,108)	27.793**
	한부모가정		49.7	20.9	16.0	6.5	6.9	50.3	100.0(671)	
	조손가정		47.0	21.6	22.2	3.8	5.4	53.0	100.0(57)	
	기타		51.3	15.1	22.6	8.8	2.2	48.7	100.0(119)	
학업 성적	상		50.0	17.3	19.7	3.7	9.3	50.0	100.0(2,126)	13.475
	중		48.8	18.0	19.4	5.1	8.7	51.2	100.0(3,302)	
	하		47.3	19.2	19.0	5.5	9.0	52.7	100.0(2,491)	
경제적 수준	상		50.4	17.3	19.0	4.4	8.9	49.6	100.0(3,673)	18.204*
	중		48.1	18.1	19.7	5.4	8.7	51.9	100.0(3,037)	
	하		44.8	21.1	19.6	4.9	9.6	55.2	100.0(1,206)	

*p<.05, **p<.01, ***p<.001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 년에 1회 이상 용모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들은 39.7%, 여학생은 64.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59.1%로서 특성화계고(58.8%), 중학교(42.8%)보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54.1%, 중소도시 50.9%, 읍면지역 44.1%),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55.2%, 중 51.9%, 상 49.6%) 용모검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용모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68.9%, 2013년에는 56.1%, 2014년에는 57.9%, 2015년에는 50.7%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에 다시 51.4%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증가한 반면 중학교의 수치는 감소하였는데 중학교는 계속해서 전체 교급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일반계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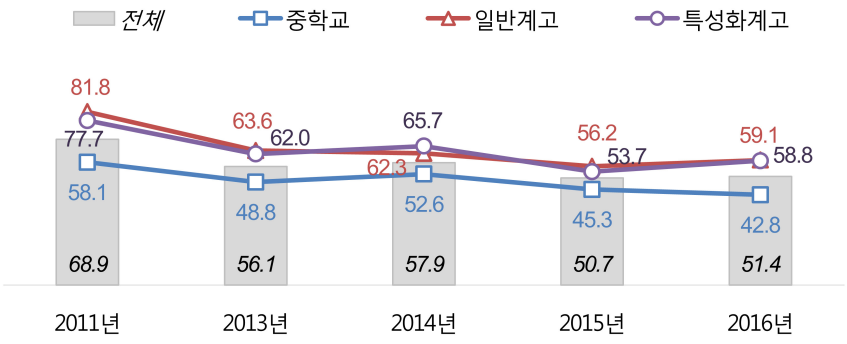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

【그림 Ⅲ-2-2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1) 용모 검사(연도별 추이)(%)

나. 복장 검사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으로 '한 번도 없음' 52.3%, '일 년에 1-2회 정도' 17.4%, '한 달에 1-2회 정도' 16.4%, '1주일에 1-2회 정도' 4.4%, '1주일에 3회 이상'이 9.4%로 나타났다. 일 년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47.6%였다.

표 Ⅲ-2-3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2) 복장 검사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52.3	17.4	16.4	4.4	9.4	47.6	100.0(7,950)	–
성별	남자		65.9	14.8	12.1	2.2	5.0	34.1	100.0(4,144)	717.902***
	여자		37.5	20.3	21.1	6.9	14.3	62.6	100.0(3,805)	
학교 유형	중학교		58.2	17.2	13.8	3.9	7.0	41.9	100.0(3,730)	124.321***
	고등학교	전체	47.1	17.6	18.8	5.0	11.5	52.9	100.0(4,219)	
		일반계고	47.1	17.1	19.5	4.7	11.7	53.0	100.0(3,391)	
		특성화계고	47.0	20.0	15.9	6.1	11.0	53.0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50.8	16.4	18.0	4.4	10.4	49.2	100.0(3,125)	43.953***
	중소도시		52.0	18.6	16.1	4.1	9.3	48.1	100.0(3,886)	
	읍면지역		58.5	16.0	12.7	6.0	6.7	41.4	100.0(9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1	17.3	16.7	4.4	9.6	48.0	100.0(7,104)	18.227
	한부모가정		54.3	20.1	12.7	4.8	8.2	45.8	100.0(670)	
	조손가정		51.2	18.2	20.8	2.5	7.3	48.8	100.0(57)	
	기타		55.9	11.6	18.4	7.1	7.0	44.1	100.0(119)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52.2	17.6	16.5	3.8	9.8	47.7	100.0(2,125)	8.315
	중	51.9	17.0	17.3	4.7	9.1	48.1	100.0(3,301)	
	하	53.0	17.7	15.2	4.6	9.6	47.1	100.0(2,488)	
경제적 수준	상	53.8	17.1	15.8	4.2	9.3	46.4	100.0(3,671)	9.860
	중	51.4	17.1	16.9	4.9	9.8	48.7	100.0(3,034)	
	하	50.3	19.1	17.2	4.2	9.2	49.7	100.0(1,206)	

***$p<.001$

일 년에 1회 이상 복장검사 경험이 있는 비율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34.1%, 여학생은 62.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53.0%)와 특성화계고(53.0%)가 중학교(41.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49.2%, 중소도시48.1%, 읍면지역 41.4%) 복장검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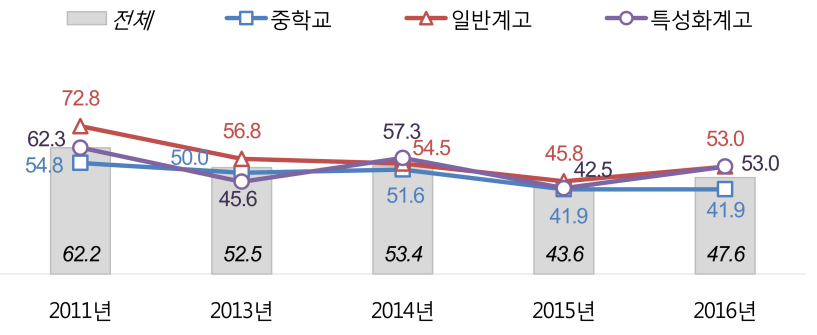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

【그림 Ⅲ-2-3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2) 복장 검사(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복장검사 경험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62.2%에서 2013년에 52.5%, 2014년에 53.4%, 2015년에 43.6%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47.6%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는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2-3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3) 소지품 검사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9	14.2	5.7	0.7	0.6	21.2	100.0(7,941)	-
성별	남자		77.5	15.5	6.1	0.4	0.6	22.6	100.0(4,141)	27.485***
	여자		80.4	12.7	5.2	1.0	0.7	19.6	100.0(3,800)	
학교 유형	중학교		81.4	12.9	4.4	0.8	0.5	18.6	100.0(3,724)	33.255***
	고등학교	전체	76.7	15.3	6.7	0.6	0.7	23.3	100.0(4,217)	
		일반계고	80.3	13.2	5.7	0.2	0.4	19.5	100.0(3,390)	
		특성화계고	61.8	23.5	10.8	2.0	1.9	38.2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78.4	14.5	5.7	0.8	0.7	21.7	100.0(3,122)	141.339***
	중소도시		82.3	12.5	4.1	0.5	0.6	17.7	100.0(3,881)	
	읍면지역		66.7	20.0	12.1	0.7	0.5	33.3	100.0(9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0	14.3	5.5	0.7	0.6	21.1	100.0(7,098)	-
	한부모가정		76.8	14.7	6.6	0.9	1.0	23.2	100.0(668)	
	조손가정		84.7	4.0	8.8	1.3	1.2	15.3	100.0(57)	
	기타		84.8	8.6	6.6	0.0	0.0	15.2	100.0(119)	
학업 성적	상		78.9	15.0	5.1	0.6	0.5	21.2	100.0(2,125)	9.997
	중		79.3	13.4	6.1	0.8	0.5	20.8	100.0(3,296)	
	하		78.2	14.6	5.7	0.6	0.8	21.7	100.0(2,485)	
경제적 수준	상		79.9	13.5	5.3	0.7	0.6	20.1	100.0(3,665)	13.026
	중		78.5	13.9	6.3	0.7	0.7	21.6	100.0(3,032)	
	하		76.5	17.0	5.3	0.7	0.5	23.5	100.0(1,206)	

***$p<.00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으로 '한 번도 없음'은 78.9%, '일 년에 1-2회 정도'는 14.2%, '한 달에 1-2회 정도' 5.7%, '1주일에 1-2회 정도'는 0.7%, '1주일에 3회 이상'은 0.6%로 나타났다. 일 년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합산한 결과 21.2%였다. 일 년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비율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22.6%, 여학생은 19.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38.2%로 일반계고(19.5%)와 중학교(18.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33.3%로 대도시(21.7%)와 중소도시(17.7%)보다 소지품 검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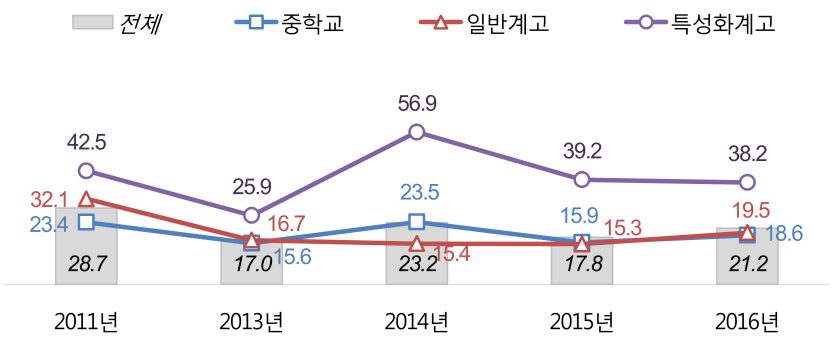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

【그림 Ⅲ-2-3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3) 소지품 검사(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소지품 검사 경험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8.7%, 2013년 17.0%, 2014년 23.2%에서 2015년 17.8%, 2016년 21.2% 등으로 매년 감소와 증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가 증가한 반면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특성화계고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교급들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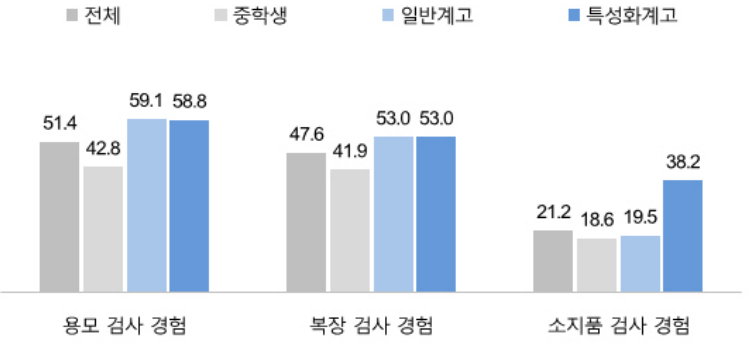

【그림 Ⅲ-2-32】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검사,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경험률 전체값을 살펴 보면, 1년에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용모검사가 51.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복장검사가 47.6%, 소지품검사가 21.2%를 나타내어 절반 정도가 용모와 복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생 정보 보호정도

①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표 Ⅲ-2-36 개인의 정보 보호_1)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48(0.75)	65.2	23.6	9.0	2.2	100.0(7,800)	-
성별	남자		1.52(0.79)	63.5	23.4	10.2	2.8	100.0(4,057)	32.958***
	여자		1.44(0.70)	66.9	23.8	7.8	1.5	100.0(3,743)	
학교 유형	중학교		1.43(0.72)	68.8	21.2	8.2	1.9	100.0(3,677)	40.992***
	고등학교	전체	1.53(0.77)	61.9	25.8	9.8	2.5	100.0(4,123)	
		일반계고	1.46(0.74)	66.3	23.4	8.1	2.2	100.0(3,313)	
		특성화계고	1.80(0.84)	43.8	35.8	16.9	3.5	100.0(810)	
지역 규모	대도시		1.46(0.75)	67.2	21.6	9.0	2.2	100.0(3,057)	55.368***
	중소도시		1.46(0.73)	66.0	23.8	8.3	1.9	100.0(3,819)	
	읍면지역		1.64(0.82)	55.0	29.5	12.1	3.4	100.0(92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7(0.75)	65.8	23.2	8.8	2.2	100.0(6,966)	-
	한부모가정		1.56(0.78)	59.5	27.3	10.7	2.5	100.0(661)	
	조손가정		1.55(0.87)	64.3	21.7	8.6	5.5	100.0(54)	
	기타		1.53(0.70)	58.6	29.7	11.7	0.0	100.0(118)	
학업 성적	상		1.42(0.72)	69.8	20.4	7.7	2.0	100.0(2,099)	48.660***
	중		1.47(0.73)	65.5	23.9	8.8	1.8	100.0(3,236)	
	하		1.56(0.79)	60.6	26.0	10.5	2.9	100.0(2,430)	
경제적 수준	상		1.45(0.75)	68.3	20.3	9.2	2.2	100.0(3,594)	52.206***
	중		1.50(0.75)	63.8	25.1	9.1	2.1	100.0(2,971)	
	하		1.54(0.75)	59.3	29.9	8.6	2.3	100.0(1,197)	

***$p<.001$

'학교에서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그런 편이다 9.0%, 매우 그렇다 2.2%)가 11.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가 88.8%로 나타났다. 교육비 미납 정보를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계고가 20.4%로서 일반계고(10.3%)와 중학교(10.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5.5%로 대도시(11.2%)와 중소도시(10.2%)보다 공개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13.4%, 중 10.6%, 상 9.7%),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11.4%, 중 11.2%, 하 10.9%) 교육비 미납 정보를 공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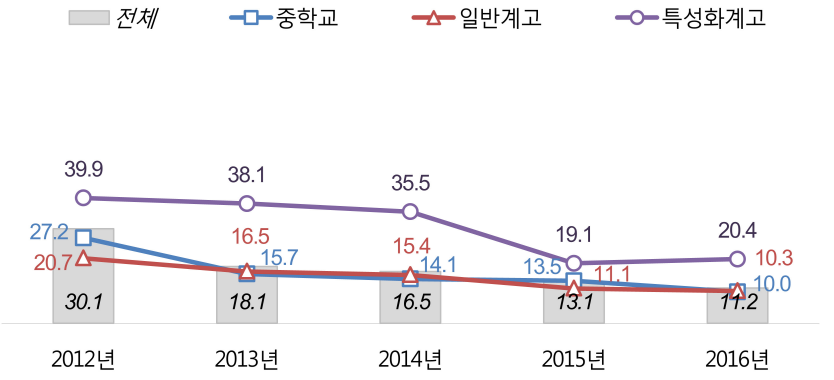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33】 개인의 정보 보호_1)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정보를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비율이 2012년 30.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11.2%를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중학교와 일반계고의 수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특성화계고는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교급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②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표 Ⅲ-2-37 개인의 정보 보호_2)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5(0.89)	37.2	36.4	20.9	5.5	100.0(10,939)	–
성별	남자		1.98(0.92)	36.3	35.6	21.5	6.6	100.0(5,687)	31.296***
	여자		1.91(0.87)	38.2	37.2	20.2	4.3	100.0(5,25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99(0.90)	34.5	38.4	20.7	6.4	100.0(3,145)	201.935***
	중학교		1.79(0.85)	45.6	33.5	17.2	3.7	100.0(3,677)	
	고등학교	전체	2.05(0.90)	31.9	37.4	24.3	6.5	100.0(4,117)	
		일반계고	2.01(0.90)	33.9	36.6	23.8	5.7	100.0(3,307)	
		특성화계고	2.22(0.91)	23.6	40.6	26.3	9.5	100.0(810)	
지역 규모	대도시		1.94(0.89)	37.4	36.1	21.0	5.4	100.0(4,390)	9.890
	중소도시		1.93(0.89)	37.6	36.9	20.1	5.4	100.0(5,206)	
	읍면지역		2.01(0.91)	35.1	35.2	23.4	6.2	100.0(1,3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0.89)	37.5	36.4	20.8	5.3	100.0(9,815)	25.308**
	한부모가정		2.07(0.93)	32.3	36.3	23.8	7.6	100.0(808)	
	조손가정		1.93(0.98)	41.7	33.8	15.0	9.6	100.0(105)	
	기타		1.87(0.91)	42.0	35.1	16.4	6.5	100.0(211)	
학업 성적	상		1.95(0.91)	37.2	36.5	19.9	6.3	100.0(3,551)	10.729
	중		1.95(0.88)	36.7	36.8	21.5	5.0	100.0(4,645)	
	하		1.94(0.89)	37.9	35.6	21.1	5.4	100.0(2,704)	
경제적 수준	상		1.94(0.90)	38.5	35.2	20.5	5.8	100.0(5,672)	22.776***
	중		1.94(0.88)	36.9	37.6	20.6	5.0	100.0(3,894)	
	하		2.03(0.90)	32.6	37.9	23.4	6.1	100.0(1,330)	

**p<.01, ***p<.001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그런 편이다 20.9%, 매우 그렇다 5.5%)에 26.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4%)는 73.6%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계고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9.5%), 초등학교(27.1%), 중학교(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29.5%)가 상위권(26.3%)과 중위권(25.6%)보다 징계내용을 공개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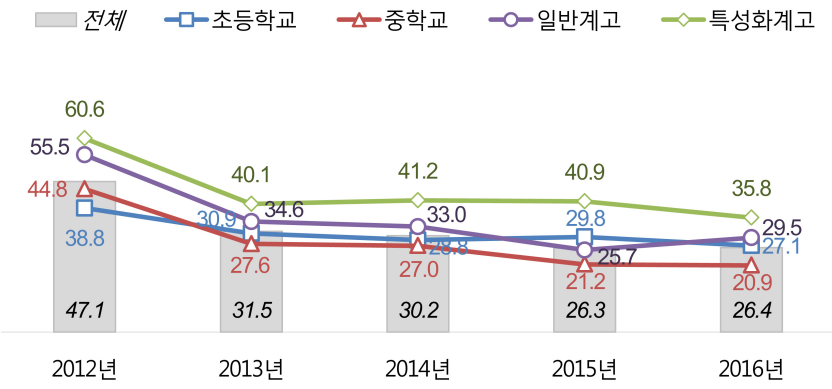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34】 개인의 정보 보호_2)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징계내용 및 이름을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47.1%로 절반에 가까웠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26.3%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26.4%로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특성화계고의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급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③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학교에서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그런 편이다 18.1%, 매우 그렇다 6.2%)가 24.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6%)가 75.7%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학교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계고가 3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34.1%), 중학교(24.2%), 초등학교(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8.7%로 중소도시(23.8%)와 대도시(23.4%)보다 공개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하 28.9%, 중 23.6%, 상 21.8%)과 경제적 수준(하 29.1%, 중 25.2%, 상 22.6%)이 낮을수록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Ⅲ-2-38 개인의 정보 보호_3)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5(0.93)	45.1	30.6	18.1	6.2	100.0(10,922)	–
성별	남자		1.87(0.95)	45.5	29.0	18.4	7.2	100.0(5,669)	29.588***
	여자		1.83(0.90)	44.8	32.3	17.8	5.1	100.0(5,25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8(0.78)	65.7	23.8	6.7	3.7	100.0(3,140)	992.630***
	중학교		1.86(0.90)	43.0	32.8	19.0	5.2	100.0(3,668)	
	고등학교	전체	2.12(0.96)	31.3	33.7	26.0	8.9	100.0(4,114)	
		일반계고	2.10(0.97)	33.0	32.8	24.8	9.3	100.0(3,309)	
		특성화계고	2.21(0.89)	24.4	37.6	30.8	7.2	100.0(805)	
지역 규모	대도시		1.84(0.94)	46.4	30.2	16.4	7.0	100.0(4,378)	43.190***
	중소도시		1.84(0.91)	45.6	30.6	18.3	5.5	100.0(5,207)	
	읍면지역		1.95(0.93)	39.4	31.8	22.7	6.0	100.0(1,3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5(0.93)	45.9	30.0	18.0	6.2	100.0(9,799)	47.033***
	한부모가정		2.00(0.92)	35.5	36.2	21.2	7.1	100.0(808)	
	조손가정		1.69(0.87)	53.1	28.2	14.7	4.0	100.0(104)	
	기타		1.74(0.79)	45.1	38.7	13.5	2.7	100.0(211)	
학업 성적	상		1.78(0.93)	50.6	27.6	15.5	6.3	100.0(3,546)	106.621***
	중		1.84(0.91)	44.9	31.5	18.3	5.3	100.0(4,636)	
	하		1.98(0.95)	38.5	32.6	21.4	7.5	100.0(2,698)	
경제적 수준	상		1.79(0.94)	49.6	27.7	16.1	6.5	100.0(5,662)	132.934***
	중		1.88(0.91)	42.3	32.5	19.6	5.6	100.0(3,888)	
	하		2.01(0.91)	34.6	36.4	22.4	6.7	100.0(1,32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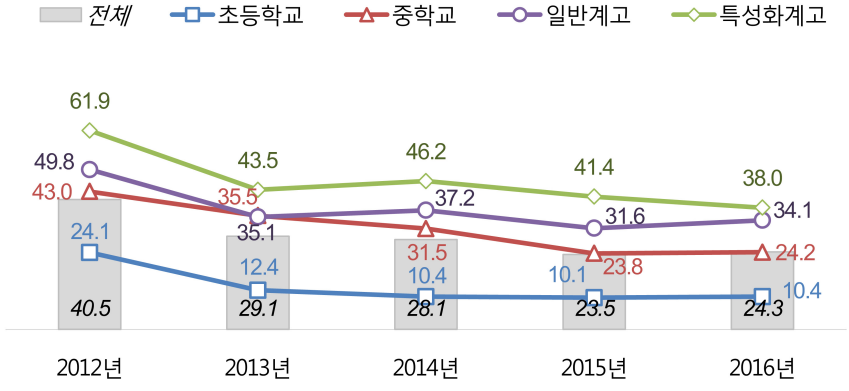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Ⅲ-2-35】 개인의 정보 보호_3)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개인의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40.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3.5%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24.3%로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특성화계고를 제외한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증가하였는데 특성화계고는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교급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아동·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SNS, 스마트폰, 독서에 관한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먼저,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0대 청소년들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에 96.6%가 응답하였고 20대 청소년들은 99.8%가 응답하였다. 거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10대 청소년들은 14.5시간(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20대 청소년들은 21.0시간(하루 평균 3시간)을 사용하였다. 10대 청소년들의 주 평균 이용시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에 10.8시간에서 2015년에 14.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 청소년들의 주 평균 이용시간도 2009년에 18.6시간에서 2015년에 21.0시간으로 늘어났다.

표 Ⅲ-2-39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09	10대	96.7	3.3	–	–	10.8
	20대	91.3	8.7	–	–	18.6
2010	10대	97.3	2.7	–	0.0	12.4
	20대	96.8	3.2	–	–	19.4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2015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6-37.

표 Ⅲ-2-40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단위 : %)

		최근 1년 이내 SNS1) 이용 현황(복수응답)				
		블로그2)	커뮤니티3)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4)	마이크로블로그5)
2011	6-19세	87.8	64.8	82.8	11.7	13.5
	20대	90.6	85.3	85.9	22.7	18.8
2012	6-19세	86.3	63.3	82.1	13.8	14.5
	20대	88.5	83.6	84.5	24.9	19.7
20136)	6-19세	20.4	–	25.6	93.7	23.7
	20대	27.0	–	28.6	95.1	33.7
2014	6-19세	19.8	25.0	14.5	94.2	15.4
	20대	29.5	36.7	16.6	96.6	24.6
2015	6-19세	20.1	32.1	16.2	87.9	9.9
	20대	33.3	47.7	22.3	88.6	16.4

* 주: 1)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등 포함
2)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등)
3)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싸이월드 클럽, 클리앙 등.
4)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카카오 스토리,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5) 한 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류(미투데이, 트위터, 텀블러 등)
6) 2012년까지는 본인과 타인의 SNS 이용률 모두를 응답하게 하였고, 2013년부터는 본인이 가입하여 계정생성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질문함.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6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7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5.

2015년 기준으로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 서비스가 6~19세 사이의 이용자들에게는 87.9%로 20대에게는 88.6%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프로필 기반 SNS 이용률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프로필 기반 서비스 다음으로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마이크로블로그의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높은 SNS 이용률은 스마트폰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41 청소년(12~19세)1) 스마트폰 이용 현황 (단위 : %)

연도	이용률2)	이용 현황								
		음성·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SMS, MMS)	무선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채팅, 메신저	검색	게임	음악 감상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쇼핑
2011	40.0	26.5	38.2	35.3	–	–	–	–	–	–
2012	80.7	29.3	36.7	34.0	–	–	–	–	–	–
2013	97.8	45.2	36.1	–	86.8	33.0	46.7	35.9	13.6	–
2014	99.7	41.8	31.5	–	85.6	31.9	48.8	34.0	22.9	1.1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9, p.52.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2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9, p.51.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0, p.76.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2014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0, p.84.

* 주: 1) 2011~2013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연령 구분을 12~19세(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하)로 하였으나 2014년 자료에서는 10대(만 10세 이상 만19세 이하)로 설정함. 2015년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률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2) 스마트폰 보유·이용률

표 Ⅲ-2-42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년도	(일)평균 이용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011	2시간 7분	100.0	16.0	24.3	18.0	41.7
2012	2시간 6분	100.0	7.7	28.9	27.0	36.4
2013	2시간 36분	100.0	3.5	28.8	30.0	37.7
2014	3시간 5분	100.0	2.3	18.2	24.1	55.4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70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2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74.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4.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2014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p.82.

* 주: 2011~2013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연령 구분을 12~19세(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하)로 하였으나 2014년 자료에서는 10대(만 10세 이상 만19세 이하)라고 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99.7%인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 채팅 및 메신저(85.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게임(48.8%), 음성 및 영상통화(41.8%), 음악감상(34.0%), 검색(31.9%), 문자메시지(31.5%), SNS(22.9%), 인터넷쇼핑(1.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비해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용률은 줄어들고 게임과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채팅과 게임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 현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12~19세)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알아보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011년에 2시간 7분에서 2012년 소폭 줄어들었다가 2013년 2시간 36분, 2014년 3시간 5분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별 비율로 보면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2014년 55.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수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건강이나 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표 III-2-43 연간 독서율

(단위 : %)

구분 \ 년도		2011	2013	2015
성인		66.8	71.4	65.3
학생	소계	83.8	96.0	94.9
	초등학생	93.8	99.4	99.4
	중학생	79.3	96.0	95.0
	고등학생	79.1	92.7	91.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국민독서실태 조사. p.32.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독서실태 조사. p.52.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민독서실태 조사. p.65.
* 주: 연간 독서율은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학생들의 연도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83.8%, 2013년에는 96.0%, 2015년 94.9%로 계속 나타났다. 교급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95.0%, 고등학생 91.3% 순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독서율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해매체 이용률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을 살펴보면 성인물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65.5%(중학생 50.3%, 고등학생 77.1%)로 나타났다. 매체별 이용현황을 보면, 휴대폰 성인물(52.6%), 케이블TV 성인용 영상물(42.7%), 성인용 간행물(34.1%), 성인용 게임(33.1%), 컴퓨터 성인물(26.0%), 지상파TV 성인용 영상물(22.8%) 순의 이용 경험을 나타냈다.

표 Ⅲ-2-44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1)					컴퓨터 성인물2)	휴대폰 성인물3)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비디오·DVD·CD	지상파TV	케이블TV	영화관					
2011	전체	41.1	–	32.0	25.3	14.8	–	37.3	12.3	41.2	47.4	1.5
	중	32.2	–	21.8	15.2	9.5	–	24.5	11.7	34.3	47.7	1.3
	고	50.0	–	42.3	35.5	20.1	–	50.3	13.0	48.1	47.1	1.6
2012	전체	40.0	–	27.5	23.5	26.9	–	45.5	20.5	21.5	32.3	1.8
	중	28.5	–	17.8	13.7	15.4	–	30.3	16.0	17.5	29.7	1.3
	고	51.1	–	36.9	33.1	38.1	–	60.3	24.9	25.4	34.9	2.3
2014	전체	34.1	65.5	3.4	22.8	42.7	5.2	26.0	52.6	13.0	33.1	1.8
	중	26.4	50.3	3.3	22.7	41.8	5.0	24.6	50.1	8.7	29.9	1.3
	고	40.2	77.1	3.4	22.8	43.3	5.3	27.1	54.5	16.3	35.5	2.1

* 출처: 여성가족부(2011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73.
여성가족부(2012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51.
여성가족부(2014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44.

* 주: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년 주기 생산 자료로, 2016년에는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중
1) 2014년의 결과값은 다중응답 빈도 값임.
2) 컴퓨터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 합산값
3) 휴대폰을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 합산값

교급별 현황을 보면, 휴대폰 성인물(중 50.1%, 고 54.5%)과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중 41.8%, 고 43.3%)이 두 교급 모두에서 상위 응답률을 보였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위의 경우 중학생은 성인용 게임(29.9%)과 성인용 간행물(26.4%)이, 고등학생은 성인용 간행물(40.2%)과 성인용 게임(35.5%)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성인물(중 24.6%, 고 27.1%),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중 22.7%, 고 22.8%) 순의 이용률을 보였다. 중학생의 성인용 게임 이용률(29.9%)이 비교적 높은 점, 고등학생의 온라인사행성게임 이용률(16.3%)이 높은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2-45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만화방	전 자 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 DVD방	성인용 주 점	성인용 무도장	멀티방/ 룸카페1)
2011	전체	29.2	47.4	83.8	84.2	11.6	12.0	1.6	–
	중	28.4	43.8	83.8	82.9	10.9	7.8	1.0	–
	고	30.0	51.1	83.8	85.5	12.2	16.3	2.3	–
2012	전체	29.9	60.0	85.8	90.9	12.3	13.8	1.9	24.4
	중	24.4	53.8	81.5	89.1	12.5	8.9	1.0	16.5
	고	35.2	65.9	89.8	92.7	12.1	18.6	2.9	32.1
2014	전체	22.2	48.7	82.9	91.7	12.0	9.7	1.0	25.2
	중	15.3	43.9	77.1	90.3	11.5	5.8	0.4	17.6
	고	27.6	52.4	87.4	92.8	12.4	12.6	1.5	31.0

* 출처: 여성가족부(2011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149.
여성가족부(2012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67.
여성가족부(2014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56.
* 주: 1) '멀티방/룸카페'는 2012년 신규 조사항목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중학생들은 노래방(90.3%), PC방(77.1%), 전자오락실(4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험률을 보면 노래방이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PC방(87.4%), 전자오락실(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C방과 노래방의 이용률은 매년 8,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표 Ⅲ-2-4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총계	44,036	39,767	43,146	47,589	45,213	109,550,227	86,906,643	86,513,472	94,165,930	85,018,354
아동	9,546	7,495	7,424	7,269	5,572	37,705,148	26,537,234	24,862,658	26,166,569	16,837,125
점유율	21.68%	18.9%	17.21%	15.27%	12.32%	34.42%	30.5%	28.74%	27.79%	19.80%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1~2015). 출판통계. p.1. 각년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신간 발행 종수와 발행 부수를 조사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 도서의 신간 발행 종수는 2015년에 5,572였으며 전체 점유율은 12.32%를 차지하였다. 신간 발행 부수는 16,837,125였으며 전체 점유율로는 19.80%를 차지하였다. 아동·청

소년의 지적인 발달과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도서의 기능을 봤을 때 이들을 위한 유익한 도서들은 지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함(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191)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신간 발행 종수와 신간 발행 부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2011년 34.42%에서 2015년 19.80%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 정보제공 정도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4.3%, 매우 그렇다 29.5%)는 83.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1%)는 16.2%로 나타났다.

표 Ⅲ-2-47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7(0.80)	6.1	10.1	54.3	29.5	100.0(10,919)	–
성별	남자		3.02(0.83)	7.7	11.0	53.6	27.8	100.0(5,667)	71.721***
	여자		3.14(0.75)	4.3	9.1	55.2	31.4	100.0(5,25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7(0.77)	4.5	4.7	40.2	50.7	100.0(3,120)	1061.411***
	중학교		3.03(0.78)	6.4	10.4	57.4	25.9	100.0(3,677)	
	고등학교	전체	2.89(0.76)	7.0	13.9	62.4	16.7	100.0(4,122)	
		일반계고	2.91(0.76)	6.7	13.7	61.9	17.7	100.0(3,313)	
		특성화계고	2.81(0.76)	8.5	14.5	64.1	12.9	100.0(809)	
지역 규모	대도시		3.10(0.82)	6.4	10.2	50.9	32.6	100.0(4,383)	43.290***
	중소도시		3.07(0.77)	5.6	9.9	56.8	27.7	100.0(5,197)	
	읍면지역		3.03(0.80)	6.7	10.4	56.1	26.8	100.0(1,3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8(0.79)	6.0	9.8	54.4	29.8	100.0(9,796)	26.525**
	한부모가정		3.03(0.78)	5.2	13.0	55.6	26.2	100.0(808)	
	조손가정		3.05(0.86)	7.2	12.0	48.8	32.0	100.0(105)	
	기타		2.94(0.93)	11.4	12.1	48.0	28.5	100.0(210)	
학업 성적	상		3.19(0.80)	5.0	8.9	48.2	37.9	100.0(3,542)	233.813***
	중		3.07(0.77)	5.4	10.6	56.0	28.0	100.0(4,632)	
	하		2.94(0.81)	8.5	10.7	59.5	21.3	100.0(2,703)	
경제적 수준	상		3.15(0.81)	5.7	9.2	50.0	35.1	100.0(5,658)	191.230***
	중		3.02(0.78)	6.1	11.0	58.1	24.8	100.0(3,888)	
	하		2.94(0.78)	7.4	11.0	61.9	19.7	100.0(1,326)	

**p<.01, ***p<.001

‘그렇다’의 응답률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9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83.3%), 일반계고(79.6%), 특성화계고(77.0%)순으로 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4.5%), 대도시(83.5%), 읍면지역(82.9%) 순으로, 학업성적(상 86.1%, 중 84.0%, 하 80.8%)과 경제적 수준(상 85.1%, 중 82.9%, 하 81.6%)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공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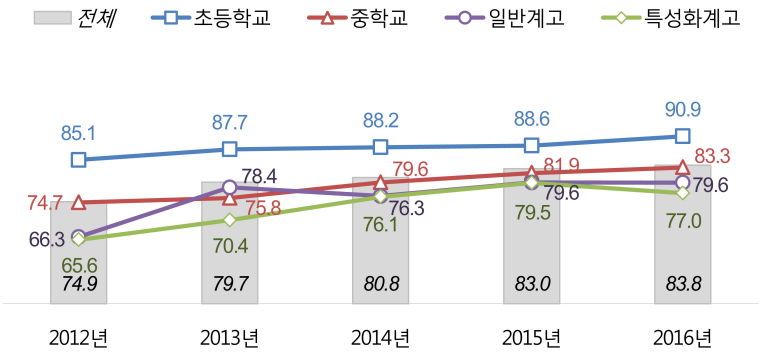

【그림 Ⅲ-2-36】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연도별 추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74.9%, 2013년에 79.7%, 2014년에 80.8%, 2015년에 83%, 2016년 8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가 증가한 반면 일반계고의 수치는 동일하였고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0%로 나타났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0%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21.7%, 여학생은 20.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2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21.1%), 일반계고(17.8%), 특성화계고(16.9%) 순으로 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23.6%, 중소도시 19.4%, 읍면지역 18.2%) 학업성적(상24.1%, 중19.9%, 하18.5%)과 경제적 수준(상22.9%, 중18.8%, 하18.4%)이 높을수록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Ⅲ-2-48 정보제공_1)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 및 자료 제공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9.0	21.0	100.0(11,065)	–
성별	남자		78.3	21.7	100.0(5,751)	4.085*
	여자		79.9	20.1	100.0(5,31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4.7	25.3	100.0(3,134)	65.084***
	중학교		78.9	21.1	100.0(3,719)	
	고등학교	전체	82.4	17.6	100.0(4,212)	
		일반계고	82.2	17.8	100.0(3,385)	
		특성화계고	83.1	16.9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76.4	23.6	100.0(4,441)	32.675***
	중소도시		80.6	19.4	100.0(5,265)	
	읍면지역		81.8	18.2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0	21.0	100.0(9,931)	16.551***
	한부모가정		82.5	17.5	100.0(815)	
	조손가정		71.0	29.0	100.0(108)	
	기타		71.7	28.3	100.0(211)	
학업 성적	상		75.9	24.1	100.0(3,569)	33.910***
	중		80.1	19.9	100.0(4,702)	
	하		81.5	18.5	100.0(2,752)	
경제적 수준	상		77.1	22.9	100.0(5,735)	30.328***
	중		81.2	18.8	100.0(3,948)	
	하		81.6	18.4	100.0(1,333)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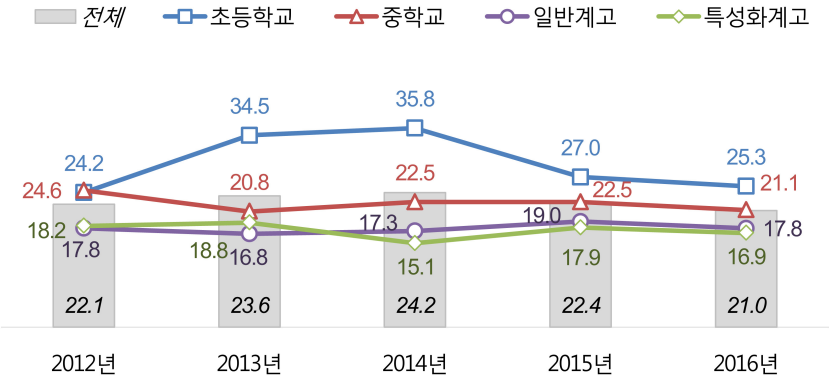

* 주: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값(단위 : %)

【그림 Ⅲ-2-37】 정보제공_1)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 및 자료 제공(연도별 추이)(%)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2년 22.1%, 2013년 23.6%, 2014년 24.2%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22.4%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도 21.0%까지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에 모든 교급의 수치가 소폭 감소하였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던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비교적 컸다.

표 Ⅲ-2-49 정보제공_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인권정보 제공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3.6	16.4	100.0(11,062)	-
성별	남자		83.0	17.0	100.0(5,753)	2.619
	여자		84.2	15.8	100.0(5,308)	
학교 유형	초등학교		77.7	22.3	100.0(3,133)	134.976***
	중학교		83.6	16.4	100.0(3,718)	
	고등학교	전체	87.9	12.1	100.0(4,210)	
		일반계고	87.5	12.5	100.0(3,383)	
		특성화계고	89.4	10.6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80.6	19.4	100.0(4,440)	47.106***
	중소도시		85.7	14.3	100.0(5,263)	
	읍면지역		85.1	14.9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2	16.8	100.0(9,929)	17.754***
	한부모가정		88.6	11.4	100.0(815)	
	조손가정		78.4	21.6	100.0(108)	
	기타		83.0	17.0	100.0(210)	
학업 성적	상		79.3	20.7	100.0(3,570)	83.557***
	중		84.4	15.6	100.0(4,701)	
	하		87.7	12.3	100.0(2,748)	
경제적 수준	상		81.0	19.0	100.0(5,736)	60.419***
	중		86.1	13.9	100.0(3,946)	
	하		87.2	12.8	100.0(1,332)	

***$p<.00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16.4%, '아니다'는 83.6%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17.0%, 여학생은 15.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2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16.4%), 일반계고(12.5%), 특성화계고(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14.9%), 중소도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상20.7%, 중15.6%, 하12.3%)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19.0%, 중13.9%, 하12.8%)이 높을수록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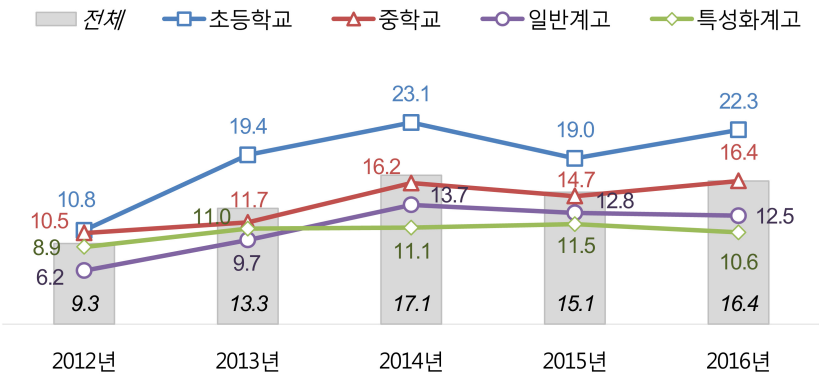

* 주: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값(단위 : %)

【그림 Ⅲ-2-38】 정보제공_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인권정보 제공(연도별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9.3%, 2013년 13.3%, 2014년도 17.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1%로 감소, 2016년 16.4%로 증가 등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2012년 대비 2016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는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고 2013년 이래로 계속 초등학교가 모든 교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26.1%, '아니다'는 73.9%로 나타났다.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24.5%, 여학생은 27.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25.6%), 중학교(20.9%), 특성화계고(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27.9%로 읍면지역(26.9%)과 중소도시(24.3%)보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1.1%)이 양부모가정(26.4%), 한부모가정(22.4%)보다 정보 제공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상33.0%, 중24.8%, 하19.2%)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상(27.9%), 하(24.3%), 중(23.9%)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2-50 정보제공_3)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 정보 제공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3.9	26.1	100.0(11,050)	–
성별	남자		75.5	24.5	100.0(5,746)	15.659***
	여자		72.2	27.8	100.0(5,3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64.9	35.1	100.0(3,132)	192.913***
	중학교		79.1	20.9	100.0(3,714)	
	고등학교	전체	76.1	23.9	100.0(4,204)	
		일반계고	74.4	25.6	100.0(3,377)	
		특성화계고	82.8	17.2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72.1	27.9	100.0(4,435)	17.244***
	중소도시		75.7	24.3	100.0(5,258)	
	읍면지역		73.1	26.9	100.0(1,3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6	26.4	100.0(9,919)	8.302*
	한부모가정		77.6	22.4	100.0(814)	
	조손가정		68.9	31.1	100.0(107)	
	기타		77.1	22.9	100.0(210)	
학업 성적	상		67.0	33.0	100.0(3,569)	161.297***
	중		75.2	24.8	100.0(4,694)	
	하		80.8	19.2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72.1	27.9	100.0(5,728)	21.327***
	중		76.1	23.9	100.0(3,941)	
	하		75.7	24.3	100.0(1,333)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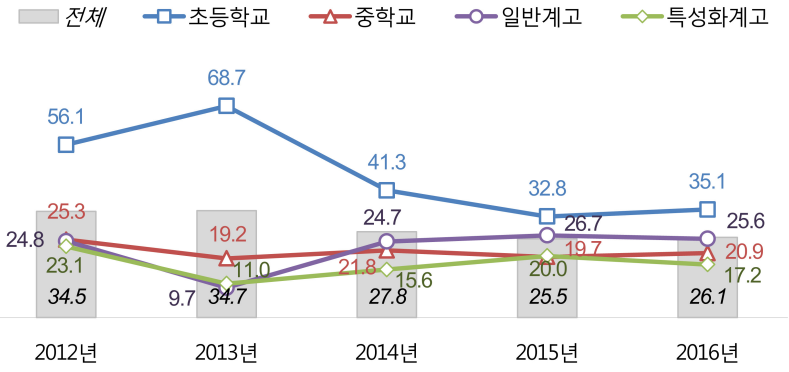

* 주: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값(단위 : %)

【그림 Ⅲ-2-39】 정보제공_3)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 기관 정보 제공(연도별 추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4.5%에서 2013년에 34.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4년에 27.8%, 2015년에 25.5%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 다시 26.1%로 소폭 증가하는 등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대비 2016년도 수치가 8%p 정도 감소하여 인권정보 제공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2016년에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수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치는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수치는 2013년 이래로 계속해서 교급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는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의 중분류에 총 24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의견표명 및 표현의 자유' 중분류는 아동권리협약 상 '참여권'의 내용을 담은 지표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진로 및 직업결정(91.1%), 상급학교 진학(89.3%), 집안의 중대사(85.8%), 공부시간이나 방법(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영역에서 자녀 존중정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는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 등의 현황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50% 선으로 높아 학생들의 자치활동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생회 예산·장소·시간 보장(29.5%) 및 학생회 의견존중(34.6%) 정도에 비해 자치권 확보(18.2%) 정도가 낮고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23.8%나 되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여서 긍정적이나, 학교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권 확보 정도도 줄어들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활동 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이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는 학생이 누려야할 중요한 권리이므로 학급임원의 자격요건은 자치활동의 주체인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로 인해 특정그룹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진정사건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06),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6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

시 정도는 84.2%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잘 모른다 67.8%)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는 67.9%로 나타났으며 2012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초단위 자치활동인 학급회의를 32.4%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이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32.1%나 되는 점, 동법 제59조의4는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19.7%만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권 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는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절반정도(49.7%)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1%에 불과했다(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11.2%, 알고 있고 참여 경험 있음 2.9%). 인지도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2012년 16.1% → 2013년 18.1% → 2014년 19.6% → 2015년 18.8% → 2016년 19.7%),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경험(2.9%)은 2013년 2.1%에서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투표연령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만19세 유지 의견이 53.3%로 많았고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의견(24.7%)은 줄어드는 추세이다가 2016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절반 정도(54.2%)가 우리사회에서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참여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응답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37.8%)'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8.8%)'이 가장 많았는데 시간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추세인 반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다. '정보부족(16.5%)'이라는 응답도 꾸준히 늘고 있다.

두 번째 중분류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관련 현황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와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살펴보았다. 사회, 정치, 인생 등에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정(87.9%), 학교(78.3%), 사회(63.9%) 순으로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은 11.0%였고, 이 중에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경우는 26.7%로 나타나 73.3%가 대체 활동이 없이 의무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2%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 번째 중분류인 결사 및 집회의 자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의 활동을 한 경우는 15.4%('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7.3%로 나타났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회 참여로 경고 및 훈계, 상담, 징계처분 등을 받은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네 번째 중분류인 사생활의 보호 현황으로 먼저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1회 이상 경험률은 용모검사 51.4%, 복장검사 47.6%, 소지품검사 21.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 학생 공개(11.2%)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징계내용 공개(26.4%)와 개인 시험성적 공개(24.3%) 상황은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 번째 중분류인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매체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10대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며, 6-19세 아동·청소년의 87.9%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률은 99.7%였으며 스마트폰 기능으로는 채팅과 메신저(85.6%), 게임(48.8%), 음성 및 영상통화(41.8%)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12-19세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시간 5분이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연간 독서율은 2015년 기준 94.9%였다.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을 살펴보면 성인물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65.5%(중학생 50.3%, 고등학생 77.1%)였으며, 휴대폰(52.6%)과 케이블TV(42.7%)를 통한 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교규칙 공지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83.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자료를 제공받은 경험(21.0%)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6.4%)와 권리 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1%)는 소폭 증가하였다.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정서적 학대 경험률(모욕적인 말·욕설 등)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의 경험들 중에서 정서적 학대 경험은 물리적 폭력에 반하여 주로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이다. 정서적 학대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이상 심리로까지의 발달로 진전되게 하여 청소년의 성격과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유의할 지표이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주로 심한 언어적 강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의 다양한 가학적 행위들을 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13]에서 보면 감금, 협박, 모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폭력 및 학대' 대분류 지표에 해당되는 세부지표인 '정서적 학대 경험률'에서는 모욕적인 말과 욕설 등을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정서적 학대로 간주하여 부모님(보호자), 학교선생님, 학원선생님으로부터의 피해 실태가 조사되었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부모(보호자)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는 다음 <표 Ⅲ-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4%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명 중 3명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매우 높은 수치라 심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6년도만 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21.2%, 중학생 응답자의 35.5%가 보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는 28.3%가 있었으나, 낮은 가정에서는 42%의 높은 정서적 학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Ⅲ-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69.6	16.2	8.1	3.6	2.5	100.0(11,096)	–
성별	남자		70.1	15.7	8.0	3.6	2.6	100.0(5,771)	3.630
	여자		69.1	16.7	8.3	3.6	2.3	100.0(5,3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9	11.7	5.5	2.3	1.7	100.0(3,146)	196.322***
	중학교		64.6	17.9	9.8	4.5	3.3	100.0(3,734)	
	고등학교	전체	67.1	18.1	8.7	3.8	2.3	100.0(4,216)	
		일반계고	65.9	19.2	9.0	3.8	2.2	100.0(3,386)	
		특성화계고	72.2	13.7	7.4	4.0	2.6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8	16.3	8.1	3.5	2.4	100.0(9,957)	17.641
	한부모가정		66.6	16.0	9.7	4.4	3.3	100.0(820)	
	조손가정		75.1	14.1	4.1	3.9	2.8	100.0(106)	
	기타		69.6	14.8	7.6	6.3	1.6	100.0(213)	
학업 성적	상		71.9	16.0	6.6	3.5	2.0	100.0(3,576)	92.369***
	중		71.6	15.2	8.1	3.1	2.0	100.0(4,714)	
	하		63.3	18.1	10.2	4.6	3.8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71.7	15.9	7.5	2.9	2.0	100.0(5,752)	154.568***
	중		70.4	16.0	7.8	3.4	2.4	100.0(3,960)	
	하		58.0	17.9	12.0	7.3	4.8	100.0(1,33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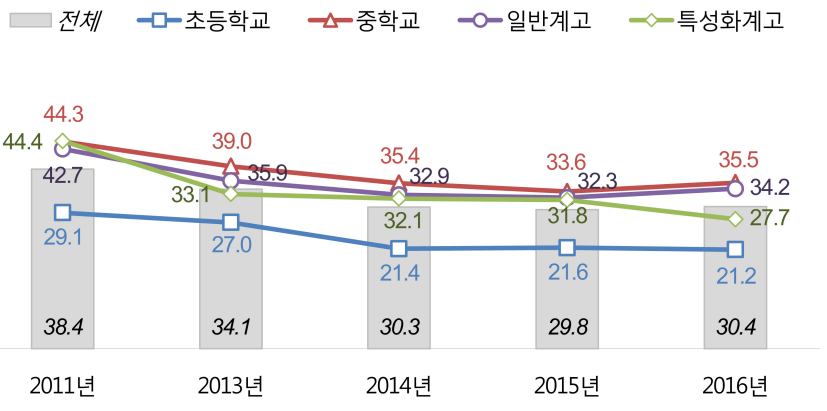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그림 Ⅲ-3-1]에서는 2011년~2016년 5년간의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전인 2011년에 비하여 38.4.%에서 30.4%로 8%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성화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줄어들어 16.7%나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가장 적었고, 중학생에 대한 부모(보호자)들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데에는 중학교 시기가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심한 시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대학입학 수능시험과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학업성적 상승에 대한 요구가 가장 심할 때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이 우선하고 학업이외에 다양한 욕구들이 넘쳐나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이기에 부모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어 질 수 있다.

다음 <표 Ⅲ-3-2>에서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30.4%)보다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응답자의 18.7%만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남학생이(21.2%) 여학생보다(16.1%)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았으며, 초등학교(0.7%), 중학교(21%), 고등학교(25.7%)의 정서적 경험률로 정서적 학대 실태가 학교급 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고(24.6%)보다는 특성화계고(30.5%)에서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경험율은 지역규모나 가족유형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선생님들의 교육에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로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므로 학교선생님들로부터 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학업에 잘 적응하도록 배려를 받아야 할 교육대상임을 교육지침으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81.3	9.7	4.6	2.6	1.9	100.0(11,099)	–
성별	남자		78.8	10.1	5.3	3.2	2.6	100.0(5,773)	74.330***
	여자		83.9	9.2	3.7	2.0	1.1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3	3.5	1.6	1.0	0.6	100.0(3,146)	466.988***
	중학교		79.0	11.9	5.0	2.5	1.6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74.3	12.4	6.3	4.0	3.0	100.0(4,220)	
		일반계고	75.4	12.3	6.3	3.2	2.8	100.0(3,391)	
		특성화계고	69.5	13.2	6.4	7.0	3.9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81.4	9.8	4.8	2.4	1.6	100.0(4,460)	8.558
	중소도시		81.6	9.4	4.3	2.8	1.9	100.0(5,279)	
	읍면지역		79.6	10.4	4.8	2.8	2.4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1.1	9.9	4.5	2.6	1.9	100.0(9,958)	20.058
	한부모가정		80.2	9.2	6.1	3.2	1.3	100.0(820)	
	조손가정		87.8	5.3	1.0	4.0	1.9	100.0(106)	
	기타		87.0	5.4	3.5	3.1	1.0	100.0(215)	
학업 성적	상		84.0	9.1	3.7	1.7	1.6	100.0(3,581)	135.770***
	중		83.2	8.2	4.0	2.8	1.8	100.0(4,713)	
	하		74.2	13.2	6.7	3.6	2.3	100.0(2,760)	
경제적 수준	상		83.1	8.8	4.2	2.4	1.6	100.0(5,753)	78.758***
	중		81.1	9.8	4.9	2.4	1.8	100.0(3,962)	
	하		73.3	13.6	5.4	4.6	3.2	100.0(1,334)	

***$p<.001$

다음 [그림 Ⅲ-3-2]에서 특이한 추이는 전체적으로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가 특성화계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93.3%가 학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아동들에 대한 인권의 신장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초등학교에서의 정서적 학대 경험률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학생들에서 비롯되었는지, 교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정확이 분석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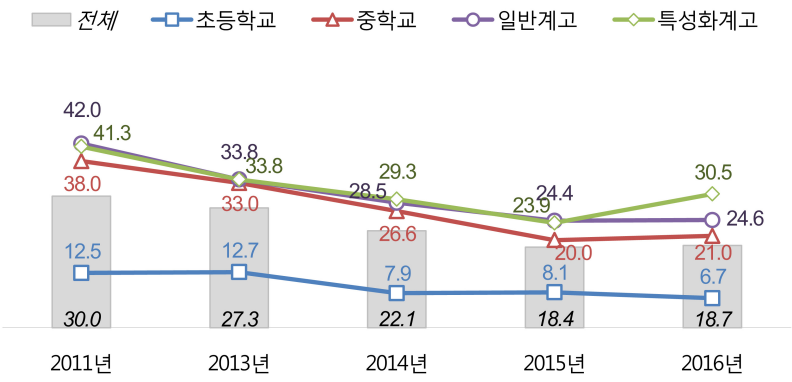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② 폭력피해 경험

아래에서 서술되는 '폭력피해 경험' 지표로부터의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부모(보호자)와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통한 정서적 학대와 같은 내용의 폭력이나 물리적인 직접적 폭행이나 구타,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따돌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피해 조사의 결과이다.

먼저 다음 <표 Ⅲ-3-3>에서는 '폭력피해 경험' 지표 중에서도 앞에서 서술한 '정서적 학대' 지표와 유사한 폭력피해의 내용으로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피해 경험의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학생 11,122명 가운데에 한번도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6.6%으로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정서적 학대인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피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나 학교 선후배는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선생보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 학교의 교사들이 보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차이가 조금 있다면 전체적으로 남학생(16.2%)이 여학생(10.3%)보다, 특성화계 고교생(17.2%)이 일반계 고교생(11.9%)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16.2%)이 높은 학생(12.7%)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19.4%)이 높은 학생(12.6%)보다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폭력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1) 심한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86.6	8.2	2.5	1.3	1.4	100.0(11,122)	–
성별	남자		83.8	9.7	2.7	1.7	2.1	100.0(5,785)	100.898***
	여자		89.7	6.6	2.2	0.8	0.7	100.0(5,337)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8	9.4	2.7	1.2	0.9	100.0(3,167)	31.425***
	중학교		86.7	8.2	2.7	1.0	1.4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87.1	7.3	2.1	1.6	1.9	100.0(4,220)	
		일반계고	88.1	6.6	1.8	1.3	2.0	100.0(3,390)	
		특성화계고	82.8	9.8	3.3	2.8	1.3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86.7	8.3	2.4	1.1	1.4	100.0(4,469)	46.475***
	중소도시		87.1	7.7	2.8	1.4	1.1	100.0(5,290)	
	읍면지역		84.3	9.6	1.6	1.4	3.1	100.0(1,363)	
학업 성적	상		87.3	8.3	2.3	1.0	1.2	100.0(3,583)	33.144***
	중		87.8	7.3	2.3	1.2	1.4	100.0(4,728)	
	하		83.8	9.3	3.1	1.9	1.9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87.4	7.7	2.3	1.3	1.2	100.0(5,764)	68.491***
	중		87.5	7.9	2.0	0.9	1.6	100.0(3,970)	
	하		80.6	10.8	4.8	2.2	1.7	100.0(1,337)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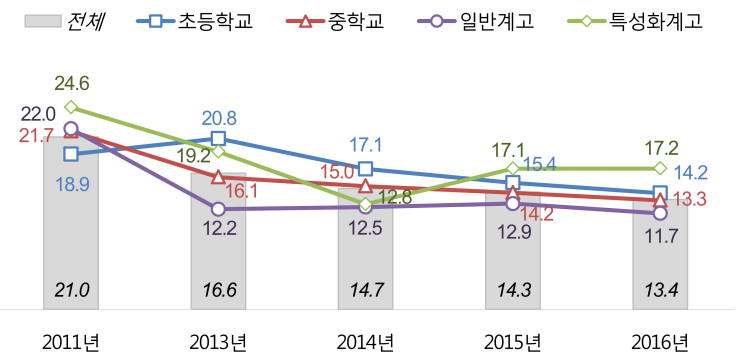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1) 심한 욕설이나 모욕: 연도별 추이

[그림 Ⅲ-3-3]에서 보면 2011년 전체적으로 21%에 달했던 선후배, 친구들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2016년도에는 13.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서서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다른 학년이나,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피해 경험률이 17.1%에서 2016년에는 17.2%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교우 관계나 동아리 및 서클 활동에서의 선후배 관계에 보다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4>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구타의 물리적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위의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보다는 그 정도가 낮아 전체의 5.6% 응답 학생들만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조사년도인 2016년 8월의 교육통계에 의하면(교육부, 2016.8.)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882,790명으로 이중 5.6%는 약 329,436명에 해당되어 비율적로 보아 전국의 약 33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폭행이나 구타의 물리적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간과할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7.8%)가 여자(3.1%)보다 피해가 많고, 무엇보다 초등학생(13%)이 중학생(2.9%)이나 고등학생(2.3%)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아동들이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 초기에 물리적 폭력의 피해경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등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한 조기 교육과 예방적 조처가 매우 필요하고도 심각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는 가정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일찍부터 아동들이 폭력적인 동영상 매체에 노출되는 환경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폭행과 구타의 피해경험은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2) 폭행이나 구타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4.4	3.3	0.9	0.7	0.6	100.0(11,122)	-
성별	남자		92.2	4.7	1.2	1.0	1.0	100.0(5,786)	125.034***
	여자		96.9	1.8	0.6	0.5	0.2	100.0(5,3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0	8.3	2.1	1.4	1.2	100.0(3,168)	490.172***
	중학교		97.1	1.5	0.5	0.5	0.5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97.7	1.1	0.3	0.5	0.3	100.0(4,218)	
		일반계고	98.0	1.0	0.2	0.5	0.3	100.0(3,388)	
		특성화계고	96.8	1.6	0.6	0.7	0.3	100.0(830)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93.8	3.6	1.2	0.8	0.6	100.0(4,470)	11.435
	중소도시	95.0	3.0	0.7	0.7	0.6	100.0(5,288)	
	읍면지역	94.5	3.3	0.7	0.7	0.8	100.0(1,363)	
학업 성적	상	93.9	3.8	1.1	0.7	0.5	100.0(3,582)	20.171**
	중	94.0	3.4	0.9	0.9	0.7	100.0(4,728)	
	하	95.8	2.4	0.6	0.5	0.7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94.0	3.8	0.7	0.9	0.6	100.0(5,764)	16.452*
	중	94.9	2.8	1.1	0.5	0.6	100.0(3,971)	
	하	94.8	2.9	0.9	0.7	0.7	100.0(1,336)	

**p<.01, ***p<.001

다음 [그림 Ⅲ-3-4]에서 이러한 폭행이나 구타에 대한 피해경험의 2011년~2016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미세하게 폭력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감소 추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2015년도에 비해 2016년에 폭행이나 구타의 폭력이 전체적으로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0.2%와 중학교에서 0.5%가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폭행과 구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폭력에 관하여 정부, 민간, 학교, 가정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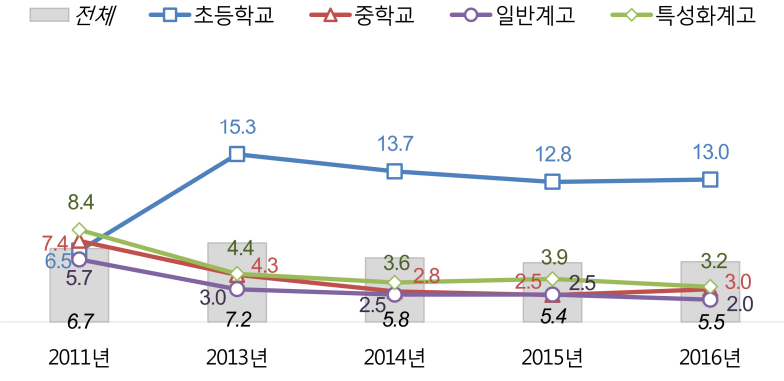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2) 폭행이나 구타: 연도별 추이

<표 Ⅲ-3-5>는 폭력의 유형 중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의 피해를 당한 경험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따돌림은 특히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심지어 자살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폭력의 유형이라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대상이다. 위에서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경험률은 서술한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과 비슷한 수치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의 4.7%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4.3%)와 여자(5.1%) 성별 간 피해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초등학교(7.7%)에서의 피해가 중학교(4.6%), 고등학교(2.5%)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 학생들의 피해(9.6%)가 한부모가정(6.2%)이나 양부모가정(4.4%)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음 [그림 Ⅲ-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따돌림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는 지난 5년 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소의 폭이 매우 작고 2016년도 조사에서 중학교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따돌림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가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Ⅲ-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3) 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5.3	2.9	0.8	0.4	0.6	100.0(11,121)	-
성별	남자		95.7	2.6	0.7	0.4	0.6	100.0(5,785)	8.213
	여자		94.9	3.3	1.0	0.4	0.5	100.0(5,3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2.3	4.9	1.4	0.6	0.7	100.0(3,166)	115.906***
	중학교		95.4	2.8	0.8	0.4	0.6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97.5	1.5	0.4	0.2	0.3	100.0(4,219)	
		일반계고	97.7	1.4	0.5	0.3	0.2	100.0(3,389)	
		특성화계고	96.6	1.9	0.3	0.2	1.0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6	2.8	0.8	0.4	0.5	100.0(9,978)	-
	한부모가정		93.8	3.5	1.1	0.5	1.1	100.0(819)	
	조손가정		90.4	4.3	4.6	0.0	0.7	100.0(108)	
	기타		92.8	4.8	0.7	1.2	0.4	100.0(216)	
학업 성적	상		95.6	2.8	0.9	0.2	0.5	100.0(3,581)	6.794
	중		95.4	2.9	0.8	0.4	0.5	100.0(4,728)	
	하		94.9	2.9	0.9	0.5	0.8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95.2	3.2	0.9	0.4	0.4	100.0(5,763)	26.452***
	중		96.2	2.2	0.7	0.3	0.6	100.0(3,970)	
	하		93.5	3.8	1.1	0.8	0.7	100.0(1,33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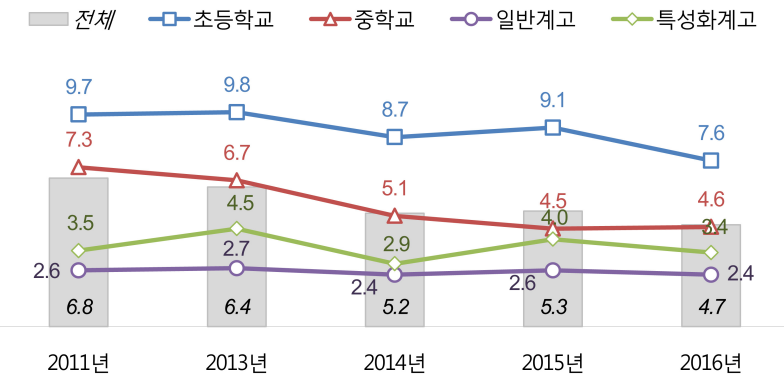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3) 따돌림: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6>에서는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피해 경험 여부에 관한 실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응답결과는 전체의 2.9%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3.5%)와 여자(2.2%)의 성별 피해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도 2% 내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지역규모 간 편차도 미미하고,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에서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4)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7.1	1.4	0.6	0.4	0.5	100.0(11,126)	-
성별	남자		96.5	1.5	0.8	0.6	0.6	100.0(5,790)	26.494***
	여자		97.8	1.3	0.4	0.2	0.3	100.0(5,3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2	0.9	0.4	0.4	0.1	100.0(3,168)	27.817***
	중학교		96.7	1.5	0.7	0.6	0.5	100.0(3,737)	
	고등학교	전체	96.8	1.7	0.6	0.3	0.6	100.0(4,221)	
		일반계고	97.0	1.4	0.6	0.3	0.7	100.0(3,391)	
		특성화계고	95.8	3.0	0.4	0.4	0.5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6.9	1.7	0.4	0.6	0.4	100.0(4,471)	17.895*
	중소도시		97.5	1.1	0.7	0.3	0.4	100.0(5,291)	
	읍면지역		96.8	1.7	0.5	0.2	0.8	100.0(1,363)	
학업 성적	상		97.3	1.1	0.6	0.4	0.6	100.0(3,582)	11.696
	중		97.2	1.4	0.6	0.4	0.3	100.0(4,730)	
	하		96.9	1.9	0.4	0.3	0.5	100.0(2,769)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97.4	1.2	0.5	0.4	0.4	100.0(5,765)	23.833**
	중	97.4	1.3	0.6	0.3	0.4	100.0(3,973)	
	하	95.2	2.7	0.8	0.6	0.7	100.0(1,337)	

*p<.05, **p<.01, ***p<.001

다음 [그림 Ⅲ-3-6]의 그래프에는 2011년~2016년 동안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피해 경험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 경험률이 2011년의 3.3%에서 2016년도에는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감 추이가 매년 들쑥날쑥하여 특이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는 2011년 2.8%로 가장 낮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는데 2015년에는 5.4%로 모든 학교급들 중에서 가장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4.3%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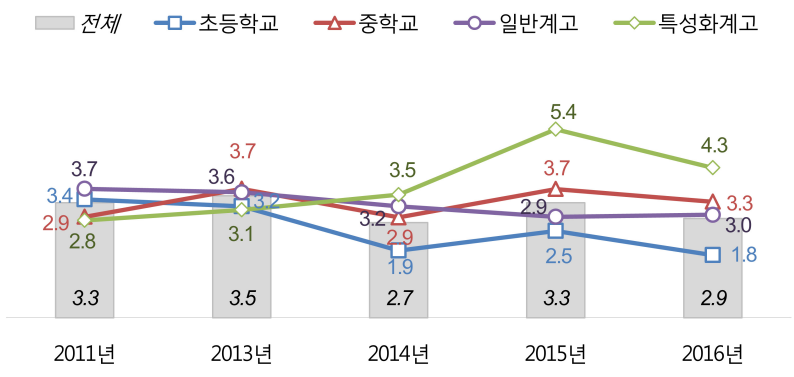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4)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7>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피해 경험들이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1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폭행이나 구타 사례가 5.5%, 따돌림이 5.2%,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3.2%, 협박이 2.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갈취가 1.9%, 강제적인 심부름이 1.6%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여부 (단위 : %(명))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85.6	8.5	2.8	1.5	1.5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94.5	3.0	1.2	0.6	0.6
3) 따돌림을 당함	94.8	3.3	1.0	0.5	0.5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98.1	1.2	0.4	0.1	0.1
5) 협박을 당함	97.8	1.3	0.5	0.3	0.2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96.8	1.4	0.8	0.5	0.6
7) 강제적인 심부름	98.4	0.8	0.4	0.2	0.2

③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청소년들이 폭력에 이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가정, 학교, 학원 등의 생활 거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의 또 하나의 생활 및 소통 공간인 사이버공간도 중요한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다음 <표 Ⅲ-3-8>에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의 폭력을 경험한 여부에 관한 응답 결과가 나타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을 받는 폭력피해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 중 14%가 해당되었다. 남자(17.%)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10.8%)보다 피해가 더 많았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들의 피해 응답 비율은 각각 2.2%와 2.7%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학교 응답자들의 피해 경험률은 7.1%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 중에는 한부모가정(17.8%) 응답자가 조손가정(8.1%) 응답자보다 큰 차이로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정의 가족 구조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모욕적 폭력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서도 이와 같이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1)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86.0	7.8	3.0	1.6	1.7	100.0(11,122)	-
성별	남자	83.0	7.6	4.2	2.3	2.9	100.0(5,786)	216.971***
	여자	89.2	8.0	1.7	0.7	0.4	100.0(5,335)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8	7.6	2.4	1.2	1.0	100.0(3,166)	56.446***
	중학교		82.9	9.1	3.8	1.9	2.3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87.3	6.8	2.8	1.5	1.7	100.0(4,219)	
		일반계고	88.0	6.5	2.8	1.2	1.6	100.0(3,390)	
		특성화계고	84.6	8.2	2.5	2.7	2.1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6.2	7.7	2.9	1.5	1.7	100.0(9,978)	22.594*
	한부모가정		82.2	9.2	4.5	2.4	1.7	100.0(821)	
	조손가정		91.9	4.1	0.9	0.7	2.4	100.0(108)	
	기타		84.1	9.8	2.2	2.5	1.4	100.0(215)	
학업 성적	상		87.2	6.9	2.9	1.1	1.9	100.0(3,583)	50.692***
	중		87.0	7.8	2.5	1.3	1.4	100.0(4,728)	
	하		82.7	8.8	3.9	2.5	2.0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87.1	7.3	2.6	1.5	1.5	100.0(5,763)	44.945***
	중		86.1	7.9	2.9	1.5	1.6	100.0(3,970)	
	하		81.4	8.9	5.2	1.7	2.8	100.0(1,339)	

*p<.05, ***p<.001

다음 [그림 Ⅲ-3-7]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을 통한 폭력의 지난 2013년~2016년까지의 4년간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이 감소추이에 있어 고무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점차 의식화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처벌과 계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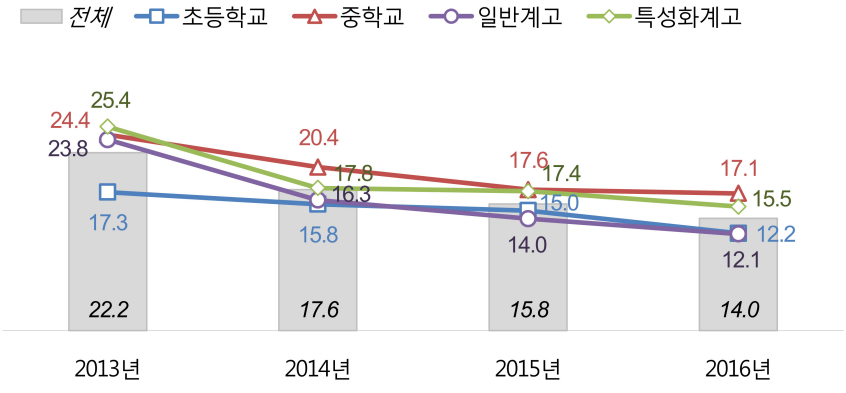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1) 욕설이나 모욕: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9>는 역시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놀림) 폭력피해 경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피해의 경험이 있었던 응답학생들은 2.5%에 해당되었는데, 이는 현실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2.9%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남녀 성별의 피해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각 학교급 별, 지역규모, 학업성적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응답학생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4.6%)이 높은 학생보다(2.0%) 상대적으로 피해가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2) 성희롱(놀림)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7.5	1.4	0.5	0.3	0.3	100.0(11,125)	-
성별	남자		97.2	1.1	0.7	0.4	0.6	100.0(5,789)	35.607***
	여자		97.8	1.6	0.4	0.2	0.1	100.0(5,3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9	1.1	0.4	0.3	0.3	100.0(3,166)	10.029
	중학교		96.9	1.7	0.7	0.3	0.4	100.0(3,738)	
	고등학교	전체	97.7	1.2	0.5	0.3	0.3	100.0(4,221)	
		일반계고	97.8	1.3	0.4	0.3	0.1	100.0(3,391)	
		특성화계고	97.0	0.6	0.8	0.4	1.2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97.0	1.8	0.6	0.3	0.3	100.0(4,470)	18.941*
	중소도시		97.9	1.1	0.4	0.3	0.4	100.0(5,292)	
	읍면지역		97.3	1.0	0.7	0.6	0.4	100.0(1,362)	
학업 성적	상		97.8	1.0	0.7	0.2	0.3	100.0(3,584)	35.501***
	중		97.5	1.6	0.4	0.1	0.3	100.0(4,729)	
	하		97.0	1.3	0.6	0.8	0.4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98.0	1.2	0.4	0.2	0.3	100.0(5,763)	44.640***
	중		97.5	1.3	0.6	0.5	0.2	100.0(3,972)	
	하		95.4	2.2	0.8	0.5	1.0	100.0(1,339)	

*p<.05, **p<.01, ***p<.001

다음 [그림 Ⅲ-3-8]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 연도별(2013년~2016년) 추이가 제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 추이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2013년 피해 경험률이 전체 응답학생의 4.5%였던 것이 2016년에는 2.5%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9.0%에 달해 최고의 피해 경험률을 보였던 특성화계 고등학교 응답학생들이 2016년에는 중학생보다 낮은 3.0%로 대폭 낮아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학교 응답학생들이 피해 경험률은 2014년 3.2%, 2015년 3.2%, 2016년 3.1%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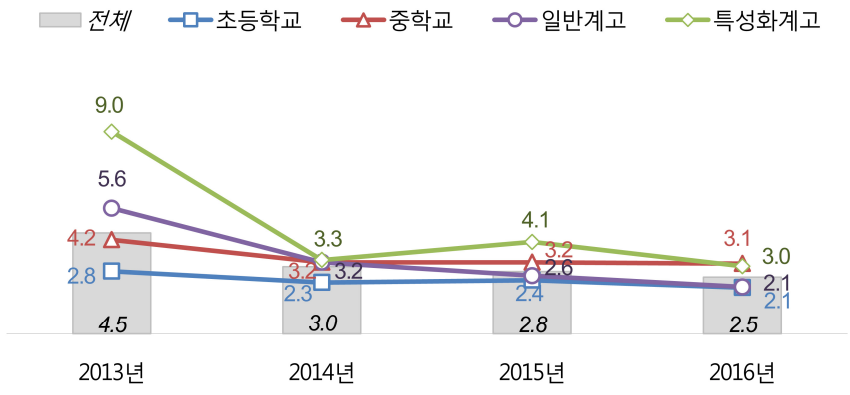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2) 성희롱(놀림):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10>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폭로 피해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11,123명 중에서 5%인 약 5.561 정도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성별 피해 차이는 각각 5.1%와 4.7%로 비슷했으며 학교급별 차이도 초등학교 4%, 중학교 6%, 고등학교 4.7%로 중학교 응답학생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 응답학생들이 0.7%로 피해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이외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폭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피해(6.7%)는 평균 수치인 5%를 넘고 있다.

다음 [그림 Ⅲ-3-9]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현상인 피해자의 사생활 폭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3년~2016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2013년 피해 경험률이 4.4%, 2014년 5.4%, 2015년 5.0%, 2016년 4.9%를 보이고 있어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2014년 이후 차츰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 3.4%, 2014년 4.9%, 2014년 4.9%, 급기야는 2016년에 6.0%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표 Ⅲ-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3)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5.0	3.7	0.7	0.2	0.3	100.0(11,123)	–
성별	남자		94.9	3.6	0.9	0.3	0.4	100.0(5,787)	17.134**
	여자		95.3	3.9	0.6	0.1	0.1	100.0(5,33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6.0	2.8	0.7	0.2	0.3	100.0(3,166)	–
	중학교		94.0	4.5	0.8	0.4	0.3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95.3	3.8	0.7	0.1	0.2	100.0(4,221)	
		일반계고	95.3	3.8	0.7	0.1	0.1	100.0(3,391)	
		특성화계고	95.4	3.7	0.5	0.0	0.4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1	3.7	0.7	0.2	0.3	100.0(9,979)	–
	한부모가정		94.9	3.6	1.0	0.2	0.4	100.0(821)	
	조손가정		99.3	0.0	0.7	0.0	0.0	100.0(108)	
	기타		91.8	6.6	0.4	1.2	0.0	100.0(215)	
학업 성적	상		95.6	3.3	0.6	0.2	0.3	100.0(3,583)	10.860
	중		95.1	3.5	0.8	0.2	0.3	100.0(4,730)	
	하		94.2	4.6	0.8	0.3	0.2	100.0(2,765)	
경제적 수준	상		94.8	3.9	0.7	0.3	0.2	100.0(5,764)	29.688***
	중		96.0	3.1	0.6	0.1	0.2	100.0(3,970)	
	하		93.3	4.9	1.2	0.1	0.6	100.0(1,339)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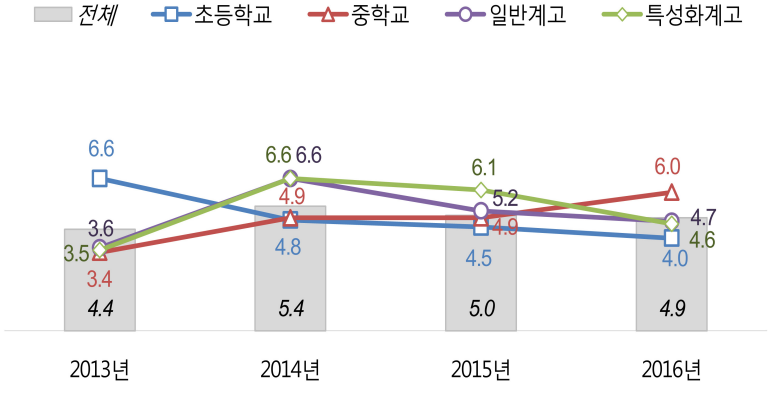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3)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11>은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 피해를 받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현실 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4.7%에 해당하였는데,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아 1.6%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피해 경험률은 1.6%로 같았다. 전체적으로 학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으며 단지 중학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초등학교 1.4%, 고등학교 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아 평균 수치를 웃도는 2.6%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11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4) 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98.4	0.9	0.3	0.2	0.2	100.0(11,127)	–
성별	남자		98.4	0.7	0.3	0.2	0.3	100.0(5,790)	15.535**
	여자		98.4	1.1	0.2	0.1	0.1	100.0(5,337)	
학교유형	초등학교		98.6	0.9	0.3	0.2	0.1	100.0(3,167)	–
	중학교		97.4	1.5	0.5	0.2	0.4	100.0(3,739)	
	고등학교	전체	99.2	0.5	0.1	0.1	0.1	100.0(4,221)	
		일반계고	99.2	0.3	0.1	0.2	0.1	100.0(3,391)	
		특성화계고	98.8	1.1	0.0	0.0	0.1	100.0(830)	
지역규모	대도시		98.0	1.2	0.3	0.2	0.3	100.0(4,470)	–
	중소도시		98.7	0.7	0.3	0.2	0.1	100.0(5,293)	
	읍면지역		98.7	0.9	0.2	0.0	0.2	100.0(1,363)	
학업성적	상		98.7	0.8	0.2	0.1	0.3	100.0(3,584)	12.561
	중		98.4	1.0	0.3	0.2	0.1	100.0(4,730)	
	하		98.1	0.9	0.4	0.2	0.3	100.0(2,768)	
경제적 수준	상		98.4	1.0	0.3	0.2	0.1	100.0(5,765)	19.760*
	중		98.8	0.7	0.3	0.1	0.1	100.0(3,972)	
	하		97.5	1.5	0.2	0.1	0.6	100.0(1,339)	

*p<.05, **p<.01

다음 [그림 Ⅲ-3-10]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폭력 현상의 2013년~2016년 동안 추이가 그래프로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현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이한 실태 결과의 추이를 언급하자면 2013년에는 특성화계 고등학생 간의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따돌림 피해가 4.2%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에는 1.2%로 많이 낮아졌으나, 반면 중학생 간에는 2013년에 피해 경험률이 2.8%였던 것이 2014년 2.0%, 2015년 2.0%, 2016년에는 다시 2.6%로 모든 학교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감소 추세도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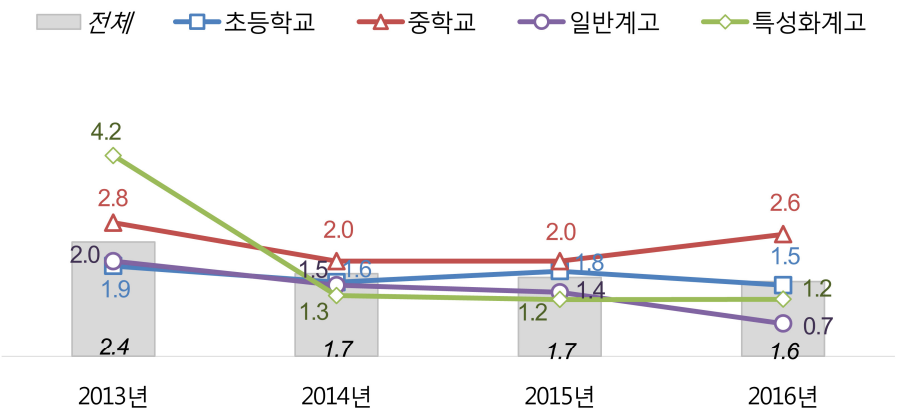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4) 따돌림: 연도별 추이

(2) 체벌 경험률

① 체벌 경험률

다음 <표 Ⅲ-3-12>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 중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체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응답학생 전체의 24.1%가 체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1명 가까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실로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남녀 피해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9.5%로 피해가 가장 높으며, 중학생이 비슷한 피해율로 29.1%로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이 15.5%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신체적으로 제일 취약한 초등학생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체벌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은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심각한 수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 유형별로 체벌 정도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에서의 체벌이 18.5%로 양부모 가정 24.5%, 조손가정 26.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의 피해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25.6%)에 대한 체벌이 낮은 학생(22.9%)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2 체벌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χ^2
전체			75.9	17.2	5.2	1.2	0.5	100.0(11,092)	–
성별	남자		75.9	16.6	5.5	1.3	0.7	100.0(5,771)	13.568**
	여자		76.0	17.8	5.0	1.0	0.3	100.0(5,3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5	19.5	7.5	1.8	0.8	100.0(3,151)	298.155***
	중학교		70.9	21.0	6.2	1.4	0.5	100.0(3,727)	
	고등학교	전체	84.5	12.1	2.6	0.5	0.3	100.0(4,214)	
		일반계고	84.3	12.6	2.4	0.5	0.2	100.0(3,384)	
		특성화계고	85.2	10.2	3.4	0.7	0.5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5.5	17.6	5.3	1.1	0.5	100.0(9,951)	28.950**
	한부모가정		81.5	12.5	4.2	1.4	0.5	100.0(819)	
	조손가정		73.3	17.3	6.8	1.9	0.7	100.0(108)	
	기타		74.8	14.9	6.4	2.7	1.2	100.0(215)	
학업 성적	상		74.4	17.9	5.8	1.4	0.4	100.0(3,577)	11.967
	중		76.3	17.1	5.1	1.0	0.5	100.0(4,718)	
	하		77.1	16.3	4.8	1.2	0.5	100.0(2,752)	
경제적 수준	상		75.4	17.9	5.2	1.0	0.5	100.0(5,757)	27.397***
	중		76.9	16.6	5.2	0.9	0.4	100.0(3,953)	
	하		75.1	16.0	5.7	2.4	0.8	100.0(1,332)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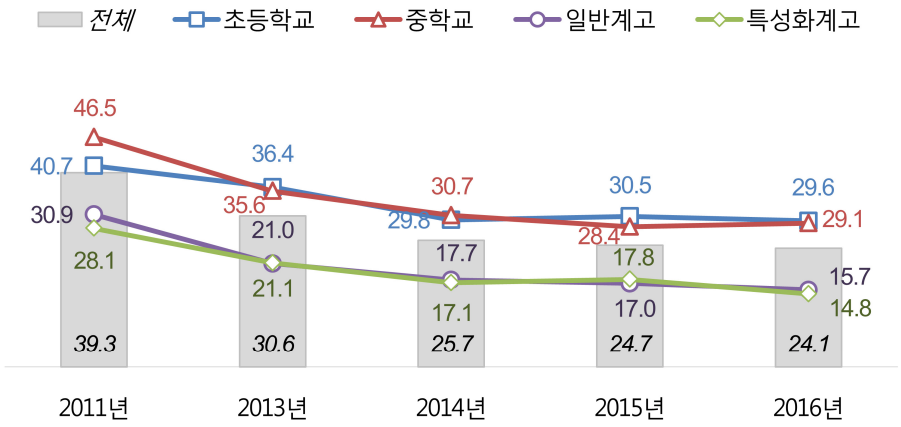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1】 체벌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그림 Ⅲ-3-11]은 2011년~2016년 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인 체벌로부터의 피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39.3%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피해 경험률이 2016년에는 24.1%로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른 연령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가정으로부터의 대표적인 폭력인 체벌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상황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래 그림의 그래프를 보면 2014년 이후로는 체벌 감소의 추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13 체벌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3.8	9.1	4.1	1.9	1.1	100.0(11,100)	-
성별	남자		78.9	10.7	6.0	2.8	1.6	100.0(5,773)	254.287***
	여자		89.1	7.3	2.0	1.0	0.5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1.8	5.0	1.6	1.0	0.6	100.0(3,152)	231.521***
	중학교		81.4	11.0	4.9	1.9	0.8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80.0	10.4	5.2	2.7	1.8	100.0(4,218)	
		일반계고	79.7	10.6	5.3	2.5	1.9	100.0(3,388)	
		특성화계고	81.3	9.5	4.8	3.5	0.9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83.2	9.7	4.1	1.9	1.1	100.0(4,458)	39.894***
	중소도시		85.4	8.1	3.9	1.6	1.0	100.0(5,281)	
	읍면지역		79.7	10.7	4.5	3.4	1.6	100.0(1,361)	
학업 성적	상		86.1	8.4	3.1	1.4	0.9	100.0(3,578)	93.029***
	중		85.0	8.8	3.7	1.6	1.0	100.0(4,718)	
	하		78.7	10.4	6.0	3.2	1.6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84.4	8.6	4.1	1.8	1.1	100.0(5,751)	13.574
	중		83.8	9.3	3.9	1.9	1.0	100.0(3,964)	
	하		81.1	10.1	4.6	2.8	1.3	100.0(1,334)	

***p<.001

<표 Ⅲ-3-13>에서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피해 경험(24.1%)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선생님들로부터의 체벌 피해 경험은 보다 낮은 수치(16.2%)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적 체벌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점차 의식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학생에 대한 체벌(21.1%)이 여학생에 대한 체벌(10.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도 피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체벌

피해는 8.2%로 가장 낮은 반면에 중학생의 피해는 18.6%, 고등학생의 피해는 20%에 달하고 있어 학년이 높을 수록 체벌 피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의 교사로부터의 체벌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교사로부터의 체벌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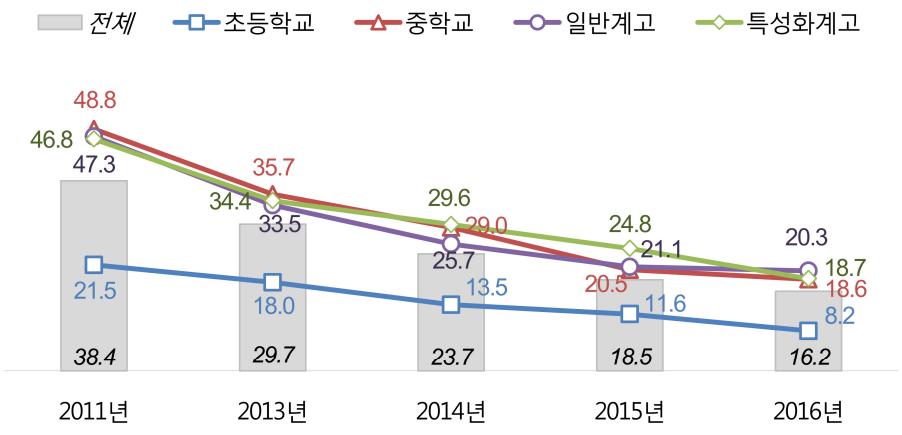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2】 체벌 경험여부_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그림 Ⅲ-3-12]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체벌 피해의 5년 간 추이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교사로부터의 체벌 피해 추이는 감소 추세인데 2011년 피해 경험률이 38.4%였던 것이 2016년에는 16.2%로 대폭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체벌 감소의 폭이 눈에 띠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협약 이행 과제의 실천 결과로 볼 수 있어 향후 전국의 학교에서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차원의 교사체벌 금지가 관철되어야 하겠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속하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소분류 지표는 인권모니터링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의 변경으로 2015년부터 '폭력 및 학대'의 대분류 지표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의 새로운 재분류 과정에서 세부지표인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소분류 지표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로부터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지표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4시간 동안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는 그의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다음 <표 Ⅲ-3-14>와 [그림 Ⅲ-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로 구분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아동이 현장에서 학대로 인해 매우 위급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조사하게 되는 사례를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들 중에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일컫는다. '동일신고'란 최초 신고가 접수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은 아동학대 사례나 의심사례로 보기 어렵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아동의 양육에 관한 상담문의나 시설보호 문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고를 말한다. 해외발생 사례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해외 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접수된 경우를 뜻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도 발행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Ⅲ-3-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9,214건이다. 이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252건으로 전체의 11.7%에 해당되고 있다. 동일 신고가 0.5%로 87건, 일반상담이 2,465건으로 12.8%, 해외발생 사례도 11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a: 54)

표 Ⅲ-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87 (0.5)	2,465 (12.8)	11 (0.1)	19,214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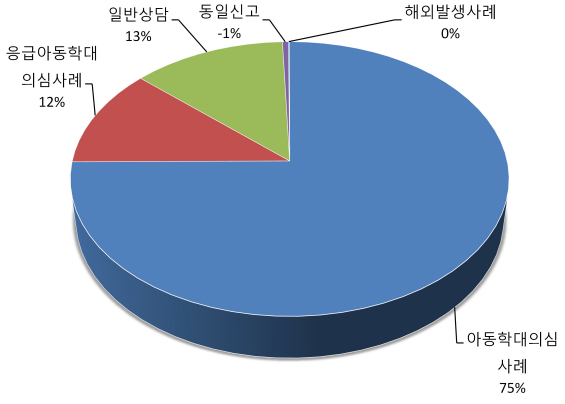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54.

【그림 Ⅲ-3-13】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단위 : %)

아동학대의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초·중·고 교사에서부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학원 선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지도자, 의사, 아이돌보미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24개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비신고의무자는 아동본인이거나, 부모, 형제와 자매, 친인척, 이웃과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등의 사람을 일컫는다. 다음 [그림 Ⅲ-3-14]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 29.4%의 비율보다 비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비율이 훨씬 높아 7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도 발행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총 4,900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초·중·고 교사에 의한 신고가 13%(2,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6%(602건), 보육교사 1.9%(309건)의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 총 11,751건 중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3,590건의 신고로 가장 많아 전체의 21.6%에 해당되었고, 다음으로 부모 3,048건(18.3%), 아동본인 1,500건(9.0%) 순으로 신고를 많이 접수하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아동 본인이 학대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14년 628건에서 2015년 1,5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아동에 의한 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착한신고 캠페인, 아이지킴콜 112 앱 등을 통한 지속적 노력이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a: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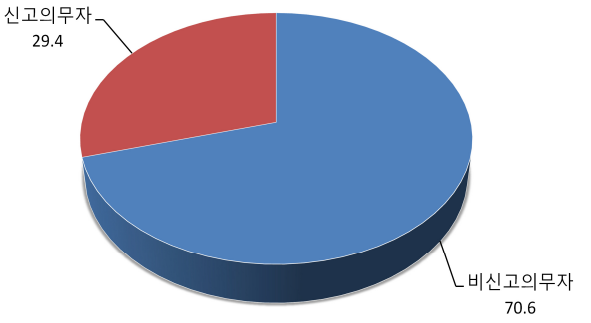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66.

【그림 Ⅲ-3-1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단위 : %)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아동학대는 다음 <표 Ⅲ-3-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보통 유형화된다. 다음 표에서는 지난 2013년~2015년 3년 간 있어왔던 아동학대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사례 통계와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먼저 2013년에 전체 아동학대 사례 수가 10,231건 이었던 것이 2014년에 15,458건, 2015년에는 17,6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년 사이에 증가율이 약 73%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대 유형별로 지난 2년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약 111.8%, 정서학대는 87.3%, 성학대 65.5%, 방임은 11.5%로 각각 증가하여 신체학대의 증가율이 가장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여아(59.8%)에 대한 신체학대가 남아(40.2%)보다 많았는데, 2015년에는 오히려 여아(47.9%)보다 남아(52.1%) 대한 신체학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정서학대에 있어서는 여아와 남아의 학대사례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로 여아에 대한 학대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성학대에 있어서는 지난 3년 간 압도적으로 여아(90.2%)가 남아(9.8%)보다 학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에 있어서는 2013년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례 수를 보이고 있다.

표 III-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2013년~2015년 성별, 연령별 비교 (단위: 건(%))

구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성	2013	남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2014	남	3,039(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2015	남	3,468(52.1)	3,487(48.5)	60(9.5)	1,636(51.5)	8,651(49.0)
		여	3,193(47.9)	3,710(51.5)	569(90.5)	1,539(48.5)	9,011(51.0)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연령	2013	0~9세	1,283(40.7)	1,633(42.5)	68(17.9)	1,724(60.6)	4,708(46.0)
		10~17세	1,877(59.3)	2,210(57.5)	312(82.1)	1,124(39.4)	5,523(54.0)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2014	0~9세	2,255(39.5)	2,669(43.2)	106(23.7)	1,917(61.1)	6,947(54.0)
		10~17세	3,444(60.5)	3,507(56.8)	341(76.3)	1,219(38.9)	8,511(46.0)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2015	0~9세	2,680(40.2)	3,166(44.0)	113(18.0)	1,948(61.4)	7,907(44.8)
		10~17세	3,981(59.8)	4,031(56.0)	516(82.0)	1,227(58.6)	9,755(55.2)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90-91.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4-125 표 재구성

<표 Ⅲ-3-15>에서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을 0~9세 연령층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인 10~17세의 연령층으로 나누어 지난 3년간의 아동학대에 관한 유형별 사례 수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체학대에 있서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10~17세 연령층에 대한 학대가 대체적으로 4:6정도로 학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연령층 사이의 갭이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성학대에 있어서는 10~17세 연령층이 대체로 2:8정도의 비율로 많이 학대를 받고 있는 사례 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방임에 있어서는 오히려 0~9세 사이의 어린 연령층에 대한 학대 사례 수가 대략 6:4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표 Ⅲ-3-16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유형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753(11.1)	1,453(14.5)	1,884(16.1)
정서학대		1,101(16.2)	1,582(15.8)	2,046(17.5)
성학대		242(3.6)	308(3.1)	428(3.7)
방임		1,778(26.2)	1,870(18.6)	2,010(17.2)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3,440(34.3)	4,009(34.2)
	신체학대·성학대	21(0.3)	18(0.2)	20(0.2)
	신체학대·방임	153(2.3)	191(1.9)	167(1.4)
	정서학대·성학대	29(0.4)	39(0.4)	65(0.6)
	정서학대·방임	471(6.9)	513(5.1)	495(4.2)
	성학대·방임	6(0.1)	9(0.1)	8(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51(0.5)	88(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531(5.3)	475(4.1)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2(0.0)	1(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7(0.1)	2(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13(0.1)	17(0.1)
	소 계	2,922 (43.0)	4,814 (48.0)	5,347(45.6)
계		6,796 (100.0)	10,027(100.0)	11,715(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8.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2. 표 재구성

<표 Ⅲ-3-16>은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표로서 <표 Ⅲ-3-15>와는 다른 통계 수치를 볼 수 있다. 중복학대의 통계를 지난 2013년~2015년 3년 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에 2,922건의 중복학대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에는 5,347건의 사례로 늘어나 무려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하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중복학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3년에는 43.0%, 2014년에는 48.0%, 2015년에는 45.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중복학대 사례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데, 2015년에는 전체 중복학대 사례의 75%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17 재학대사례: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단위 : 건(%))

	구분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성	계	980(100.0)	1,027(100.0)	1,240(100.0)
	남	303(30.9)	503(47.0)	617(49.8)
	여	677(69.1)	524(51.0)	623(50.2)
연령	계	980(100.0)	1,027(100.0)	1,240(100.0)
	1세미만	10(1.0)	4(0.4)	14(1.1)
	1~3세	43(4.4)	101(9.8)	102(8.2)
	4~6세	138(14.1)	135(13.1)	173(14.0)
	7~9세	198(20.2)	228(22.2)	277(22.3)
	10~12세	236(24.1)	256(24.9)	281(22.7)
	13~15세	275(28.1)	241(23.5)	279(22.5)
	16~17세	80(8.2)	62(6.0)	114(9.2)
유형	계	1,506(100.0)	1,556(100.0)	1,951(100)
	신체학대	440(29.2)	515(33.1)	676(34.6)
	정서학대	545(36.2)	587(37.7)	785(40.2)
	성학대	81(5.4)	61(3.9)	51(2.6)
	방임	440(29.2)	393(25.3)	439(22.5)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31-132, p.14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88-189, p.207.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79-180, p.194. 표 재구성.

<표 Ⅲ-3-17>은 2013년~2015년 동안의 아동학대의 재학대(중복학대 미분류) 추이를 성별, 연령별,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학대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아동에 관한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3년 30.9%에서 2014년 47.0%, 2015년에는 49.8%를 보인 반면, 여자 아동에 대한 재학대는 2013년 69.1%를 보였는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1.0%와 50.2%를 보이고 있어 남녀가 비슷한 정도까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 대체로 7~15세 연령 사이에 재학대가 20%를 상회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별 재학대 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대체로 정서학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많았다. 2015년에는 전체 재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0.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신체학대가 34.6%, 방임이 22.5%를 차지하였다.

④ 방임유형 및 정도

표 Ⅲ-3-18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4.3	37.7	17.1	6.2	4.6	100.0(11,106)	-
성별	남자		31.8	38.7	18.4	6.4	4.7	100.0(5,776)	37.766***
	여자		37.1	36.6	15.8	6.1	4.5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5	29.6	13.2	5.1	3.6	100.0(3,157)	395.981***
	중학생		29.5	39.7	19.0	6.7	5.1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28.0	42.0	18.4	6.6	4.9	100.0(4,215)	
		일반계고	28.5	43.4	17.7	6.0	4.4	100.0(3,387)	
		특성화계고	26.1	36.1	21.4	9.2	7.3	100.0(8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4	38.6	16.9	5.9	4.1	100.0(9,969)	138.317***
	한부모가정		30.2	30.3	19.6	9.0	11.0	100.0(818)	
	조손가정		44.0	36.8	8.8	9.0	1.4	100.0(107)	
	기타		40.1	25.2	21.1	8.8	4.8	100.0(212)	
학업 성적	상		39.5	36.4	15.1	5.5	3.6	100.0(3,581)	155.510***
	중		34.6	38.2	17.5	5.7	4.0	100.0(4,718)	
	하		26.9	38.8	19.2	8.2	6.9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36.7	37.0	16.7	5.6	4.0	100.0(5,757)	102.677***
	중		33.3	39.1	16.8	6.5	4.3	100.0(3,961)	
	하		26.5	36.8	20.2	8.3	8.2	100.0(1,338)	

***$p<.001$

<표 Ⅲ-3-18>은 2016년 방임 경험을 한 응답학생 11,106명 중 밤늦게까지 홀로 집에 있었던 경험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의 65.7%가 집에서 밤늦게까지 혼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62.9%)보다 남자(68.2%) 응답학생들이 다소 집에 밤늦게 홀로 남아 있는 방임의 경험이 많았으며, 초등학생(51.5%)보다는 중학생(70.5%)과 고등학생(72%)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에 남아 있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임의 실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응답 학생(69.8%)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에 남아있는 방임이 제일 많았으며 조부모

와 함께 있는 응답학생(56%)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73.1%)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73.5%)일수록 방임의 경우가 조사 평균 수치인 65.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Ⅲ-3-15]에서는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보는 방임 경험의 지난 2011년, 2013년~2016년까지의 5년간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1년에 49.3%의 방임율에서 2016년에는 65.6%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만을 볼 때에 특성화계 고등학교 응답학생들의 방임율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응답학생의 방임비율이 51.5%로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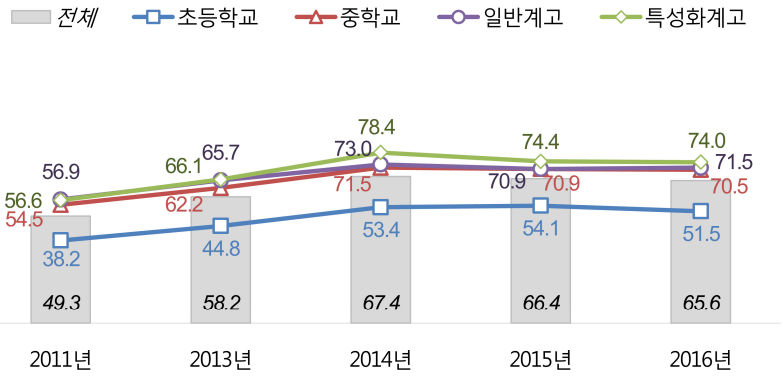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5】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19>는 2016년도 응답학생의 방임 경험 중 아파도 그냥 내버려진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2.6%에 해당되었다. 남녀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생 응답자의 94.7%가 그냥 내버려진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답하였고, 중학생 응답자는 91.8%, 고등학교 응답자는 91.6%가 몸이 아플 때 방임 학대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를 자세히 보면 특성화계 고등학교 응답자들은 13.8%가 방임 학대를 겪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계고 학생은 7.0%만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계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보다 두 배나 방임 학대를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응답학생이 아플 때에 한부모 가정에서의 방임 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아 11.4%로 나타났고, 양부모 가정의 응답학생의 7.1%가 방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늦게까지 홀로 집에 남아 있는 방임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답학생이 아플 때의 방임의 경우에서도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방임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실태결과는 1주일에 3회 이상 아파도 그냥 내버려지는 방임 사례로서 비록 전체응답학생 11,088명의 0.3%에 해당되지만 숫자로는 33명 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Ⅲ-3-19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2)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6	5.1	1.6	0.5	0.3	100.0(11,088)	–
성별	남자		92.5	4.9	1.6	0.7	0.3	100.0(5,762)	8.392
	여자		92.6	5.2	1.6	0.3	0.3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7	3.4	1.2	0.4	0.4	100.0(3,146)	35.935***
	중학생		91.8	5.6	1.8	0.6	0.2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91.6	5.8	1.6	0.5	0.4	100.0(4,212)	
		일반계고	93.0	5.0	1.3	0.4	0.3	100.0(3,382)	
		특성화계고	86.2	9.3	2.9	1.0	0.6	100.0(82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9	1.5	0.4	0.3	100.0(9,948)	–
	한부모가정		88.6	7.2	2.8	1.2	0.2	100.0(820)	
	조손가정		96.2	2.4	0.7	0.7	0.0	100.0(107)	
	기타		89.8	4.9	3.0	2.3	0.0	100.0(213)	
학업 성적	상		94.5	3.6	1.4	0.3	0.3	100.0(3,574)	60.499***
	중		92.8	5.0	1.4	0.5	0.2	100.0(4,710)	
	하		89.5	7.1	2.2	0.8	0.4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94.2	4.0	1.3	0.4	0.2	100.0(5,746)	118.312***
	중		92.4	5.2	1.4	0.5	0.4	100.0(3,958)	
	하		85.7	9.3	3.4	1.1	0.5	100.0(1,333)	

***$p<.001$

다음 [그림 Ⅲ-3-16]은 2011년, 2013년~2016년까지의 5년 동안 응답학생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진 방임 학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 8.9%의 아플 때의 방임 학대 비율이 2016년에는 7.5%로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볼 때에 특성화계 고등학교 응답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플 때 내버려지는 이들의 방임률은 2011년에 12.7%, 2013년 9.2%, 2014년 13.7%, 2015년 13.1%, 2016년 13.8%로 다른 학교유형들에서 한 자리 방임 학대율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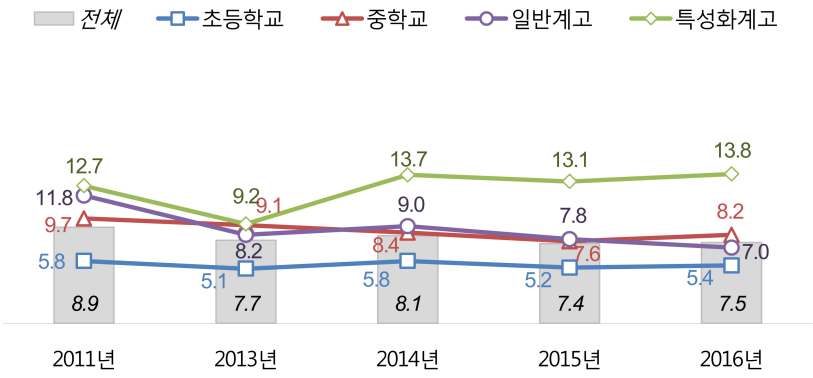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6】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2)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3-20>는 방임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식사에 대하여 성인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이다. 응답학생 총 11,087명 중 8.7%에 해당하는 965명 정도는 식사를 못해도 주변의 성인들이 신경쓰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식사에 대한 방임 정도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 학교유형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다만 특성화계 고등학교 응답학생들의 방임 경험률이 초등학생의 6.2%, 중학생의 8.8%, 일반계 고등학생의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14.4%를 나타내었다. 다른 방임 형태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한부모가정 응답학생들의 식사 방임률이 13.4%에 달해 양부모가정의 8.3%아 조손가정의 1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식사 방임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12.2%와 16.8%로 다른 종류의 방임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1주일에 3회 이상 식사에 대한 방임률이 전체의 0.9%이고 이에 해당되는 응답학생의 수는 100명 가까이 해당되어 주변 성인들의 방임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 수가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 1,334명 중 1주일에 3회 이상 결식하고 있는 방임률은 1.9%에 해당되어 25명이 넘어 전체 1주일에 3회 이상 결식 응답학생 총 100명 중 25%에 달하고 있다.

표 Ⅲ-3-20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3)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1.3	4.7	1.9	1.2	0.9	100.0(11,087)	–
성별	남자		91.2	4.5	2.0	1.2	1.1	100.0(5,761)	7.622
	여자		91.4	5.0	1.8	1.2	0.7	100.0(5,3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8	4.0	1.0	0.5	0.7	100.0(3,147)	58.779***
	중학생		91.2	4.9	1.8	1.3	0.8	100.0(3,727)	
	고등학교	전체	89.5	5.2	2.6	1.6	1.2	100.0(4,213)	
		일반계고	90.4	5.1	2.2	1.3	1.1	100.0(3,385)	
		특성화계고	85.6	5.5	4.3	2.6	1.9	100.0(8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7	4.6	1.8	1.1	0.8	100.0(9,947)	40.991***
	한부모가정		86.6	6.2	3.3	1.8	2.2	100.0(820)	
	조손가정		89.3	5.8	1.2	1.7	2.0	100.0(107)	
	기타		88.9	7.0	1.2	1.8	1.1	100.0(213)	
학업 성적	상		93.5	4.2	1.3	0.6	0.4	100.0(3,574)	84.299***
	중		91.5	4.5	1.9	1.2	0.9	100.0(4,710)	
	하		87.8	5.8	2.7	2.0	1.7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92.9	3.9	1.5	0.8	0.8	100.0(5,745)	145.861***
	중		91.5	4.7	1.9	0.9	0.9	100.0(3,957)	
	하		83.2	8.2	3.5	3.3	1.9	100.0(1,334)	

***p<.001

[그림 Ⅲ-3-17]는 2011년, 2013년~2016년까지의 5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결식 방임 학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1년에 12.1%였던 결식 방임 학대율이 2016년에는 8.7%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볼 때에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른 학교 유형들은 모두 결식 방임 학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5.5%였던 비율이 2016년에는 6.2%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 2011년에 23.6%였던 결식 방임 학대율이 2016년에 14.3%로 대폭 낮아진 것에 비하면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실태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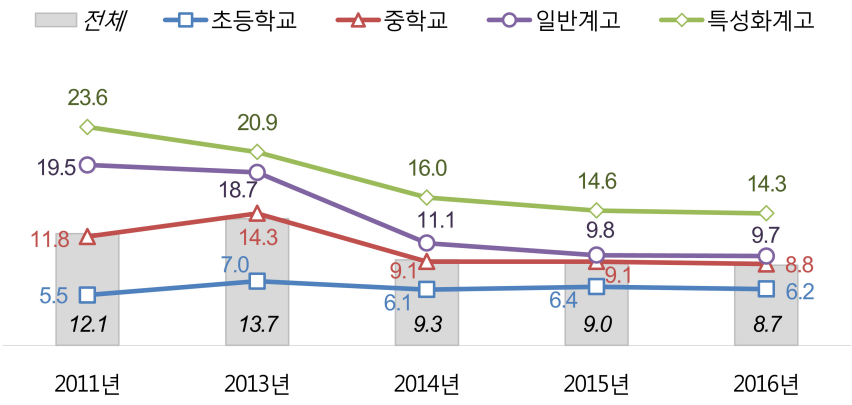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3-17】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3)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연도별 추이

표 Ⅲ-3-21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_4)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7.8	1.1	0.5	0.2	0.3	100.0(11,087)	–
성별	남자		97.4	1.2	0.5	0.3	0.5	100.0(5,763)	17.045**
	여자		98.3	1.0	0.4	0.2	0.1	100.0(5,3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3	0.9	0.3	0.2	0.4	100.0(3,144)	12.103
	중학생		97.9	1.0	0.6	0.2	0.3	100.0(3,728)	
	고등학교	전체	97.5	1.4	0.4	0.3	0.3	100.0(4,214)	
		일반계고	98.0	1.1	0.4	0.2	0.3	100.0(3,384)	
		특성화계고	95.6	2.8	0.5	0.5	0.6	100.0(8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1	1.1	0.3	0.2	0.3	100.0(9,948)	–
	한부모가정		95.8	1.8	1.7	0.2	0.4	100.0(820)	
	조손가정		96.8	0.7	1.2	0.0	1.4	100.0(107)	
	기타		95.2	1.5	0.8	1.6	0.9	100.0(212)	
학업 성적	상		98.6	0.8	0.2	0.2	0.2	100.0(3,573)	48.224***
	중		98.1	1.0	0.3	0.2	0.4	100.0(4,711)	
	하		96.4	1.9	0.9	0.3	0.4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98.4	0.8	0.4	0.1	0.3	100.0(5,745)	62.046***
	중		97.9	1.1	0.4	0.2	0.4	100.0(3,957)	
	하		95.3	2.8	0.7	0.8	0.3	100.0(1,335)	

**p<.01, ***p<.001

<표 Ⅲ-3-21>은 응답학생이 학교에 결석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학대율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응답학생들이 교육적 방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방임 학대에 대하여 남자 응답자(2.6%)가 여자 응답자(1.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편차는 크지 않았지만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방임이 가장 높아 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적 방임은 가족유형에서도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4.2%로 양부모가정 1.9%, 조손가정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역시 다른 유형의 방임에서와 같이 교육적 방임에 있어서도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일에 3회 이상 교육적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응답학생들 중에는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1.4%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들이 손자들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없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표 Ⅲ-3-22>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2006년~2015 사이의 10년간의 실태와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표 Ⅲ-3-22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5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건)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증가율(%)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개소)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증가수(개소)	4	1	–	1	–	–	2	4	1	5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35.

2015년의 11,715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2006년의 5,202 보호 건수의 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된 결과이다. 2015년의 보호 건수는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16.8%가 증가된 수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는 2006년도 42개에서 2015년도 56개로 고작 33%정도 늘어나서 학대피해 건수의 증가율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2011년 4년 간 고작 1개 기관만이 늘어났으니

절대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다음 <표 Ⅲ-3-23>은 2016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14]에서 도출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에 관한 전국 통계 수치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총 업무량은 약 1,315,575 시간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a). 이는 상담원 1인당 약 2,520 시간을 상담한 업무량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1인이 실질적으로 가용된 근무시간은 약 227일로 1,815 시간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가용 근무시간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과 대비하여 74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업무에 배치된 상담원 수는 522명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의 적정한 인원은 평균 710.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2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 시간, 명)

항목 / 지역 및 기관	상담원 수	총업무량 시간	1인당 실질 가용시간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서 울	69	144,796	1,851	78.2
부 산	29	57,362	1,620	34.5
대 구	19	45,015	1,851	24.3
인 천	28	77,987	1,695	44.3
광 주	9	22,478	1,851	12.1
대 전	9	22,602	1,851	12.2
울 산	13	30,880	1,851	16.7
경 기	109	299,702	1,767	166.4
강 원	35	155,638	1,851	30.1
충 북	29	91,218	1,851	49.3
충 남	27	63,830	1,851	34.5
전 북	31	94,429	1,851	51.0
전 남	31	89,779	1,851	48.5
경 북	38	83,935	1,851	45.3
경 남	30	104,366	1,703	58.1
제 주	16	28,319	1,851	15.3
전국기준(2015년)	522	1,315,575	1,815	710.7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24~225 재구성.

14) 연구는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경찰대학교 정웅 연구관에 의해 수행되었음.

③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표 Ⅲ-3-24>는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관련 대상인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건수에 대한 2013년~2015년 3년 간의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들이다. 2013년에 제공된 총 서비스건수는 434,331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766,786건으로 76.5%가 증가되었는데, 앞에서 제시된 <표 Ⅲ-3-25>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72.6%인 것을 감안할 때에 서비스가 크게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학대행위자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건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난 것은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표 Ⅲ-3-2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비스 건수			서비스 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피해아동	311,599	335,424	492,415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를 통한 피해아동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
학대행위자	63,863	73,817	131,836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142,535	
계	434,331	488,401	766,786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0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6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57.

다음 <표 Ⅲ-3-25>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2011년~2015년 5년간의 최종 조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조치의 내용은 원가정 보호에 의한 피해아동 수와 분리 보호되고 있는 피해아동, 사망, 가정으로 복귀된 피해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가정 보호는 주 양육자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졌지만 재학대를 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다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이고, 분리보호는 재학대 가능성이 높거나 주 양육자가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대의 정도와 보호 가능성에 따라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친인척, 장기보호, 연고자, 병원입원, 가정위탁 등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이다. 5년 간의 연도별 최종 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는 대체로 65% 전후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분리 보호의 비율도 2013년 28.6%로 가장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5.4%를 보이고 있다. 사망의 비율도 0.2%로 변함이 없었으나, 대체로 초기 조치결과 후에 있게 되는 가정복귀의 사례는 2011년의 6.8%에서 2015년에 10.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표 Ⅲ-3-2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단위 : 명(%))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2015	11,305(64.0)	4,485(25.4)	5(0.2)	–	1,846(10.5)	17,662(10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6a).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는 p.136, 2012년도는 p.110, 2013년도는 p.108, 2014년도 p.144, 2015년도는 p.139 내용 발췌·정리

3) 소결

2015년부터 새롭게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로 구성된 "폭력 및 학대" 영역에는 지금까지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중분류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역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세부지표 내용들로 구성되었고,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은 주로 아동의 학대에 관련된 내용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폭력과 관련된 세부지표들 중 정서적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 등의 이상심리학적 행위들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매우 주목해야 할 지표이다.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중학생들이 발달심리학적으로 가장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인지라 가정,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와 갈등이 제일 심해 정서적 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학대 경험율은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가 드러났는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낮은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보다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응답 청소년들은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경험이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받은 경험보다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실태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금번 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결과는 초등학생(13%)에 대한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폭행이나 구타 피해가 중학생(2.9%)이나 고등학생(2.3%)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폭력에 대한 조기 교육과 예방적 조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늘어가는 가정폭력과 폭력적 환경에 일찍부터 초등학생들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속히 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중 대분류 영역 "폭력 및 학대"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들도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그 간의 증감을 보면 2013년에 전체 아동학대 사례 수가 10,231건 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7,662건으로 3년 동안에 약 7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29.4%)보다 비신고의무자(70.6%)에 의해 신고접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린 학대 아동 본인이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2014년 628건에서 2015년 1,500건으로 1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동학대와 관련해 초등학생의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에 남아 있거나 질병과 결식에도 방치되는 방임의 학대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요구되는데 2006년도 42개소에서 2015년도 56개소로 10년 동안 12개가 늘어난 정도이어서 학대피해 건수의 증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원 수는 전국에 52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상담원 수는 평균 710.7명으로 조사되어 필요 충분한 상담원의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로, 부모와의 대화시간 정도를 살펴보았다. 만9-24세의 청소년이 주중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2011년과 2014년에 실시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15](여성가족부, 2012a; 2014b)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아버지와 주중에 함께 한 대화시간에서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6.8%에서 2014년 6.7%로 아주 조금 감소하였고, 30분미만으로 대화한다는 비율은 42.1%에서 34.1%로 감소하였으나, 1시간미만('11년 21.7% → '14년 22.4%), 2시간미만('11년 11.3% → '14년 12.9%), 2시간이상('11년 12.6% → '14년 18.9%) 대화한다는 비율은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증가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주중에 가진 대화시간을 2011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011년 2.5%에서 2014년 2.6%로 조금 증가하였고, 30분미만('11년 22.4% → '14년 17.1%), 1시간미만('11년 26.8% → '14년 24.8%)동안 대화한다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2시간미만('11년 18.2% → '14년 18.9%)과 2시간이상('11년 27.0% → '14년 34.2%) 대화한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주중에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30분미만으로 나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11년에는 48.1%, 2014년에는 40.8%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2011년 24.9%, 2014년 19.7%로 나타나,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간의 대화시간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5)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결과 내용은 2015년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할 수밖에 없으나, 표나 그래프의 제시 방법에 차이를 두어 기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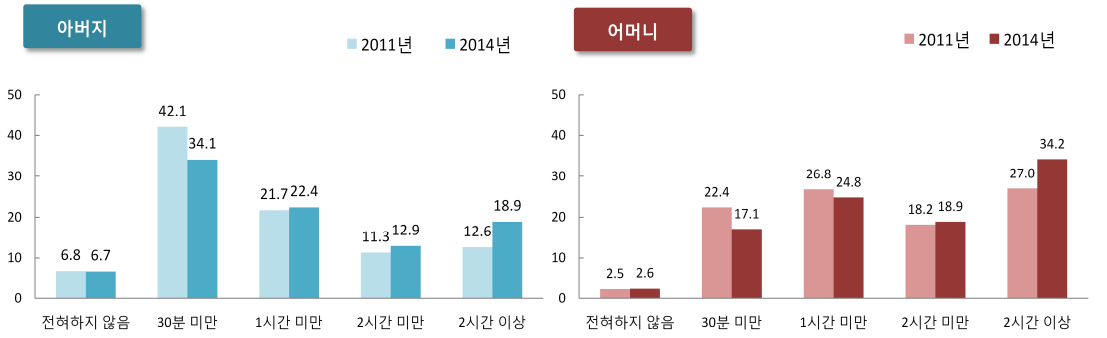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62. 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그림 Ⅲ-4-1】 부모님과 주중 대화시간(단위: %)

표 Ⅲ-4-1 부모와의 대화시간(2011년, 2014년) (단위 : %)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2011년	청소년전체	6.8	42.1	21.7	11.3	12.6	5.5	2.5	22.4	26.8	18.2	27.0	3.1
	만9-12세	5.5	33.7	23.7	13.4	19.5	4.1	3.1	14.0	21.6	19.3	39.1	2.8
	만13-24세	7.2	44.8	21.0	10.7	10.4	5.9	2.3	25.1	28.4	17.9	23.1	3.2
2014년	청소년전체	6.7	34.1	22.4	12.9	18.9	5.0	2.6	17.1	24.8	18.9	34.2	2.4
	만9-12세	3.2	34.1	22.3	14.0	25.7	2.9	1.2	12.9	20.5	17.3	46.3	1.9
	만13-24세	7.6	34.6	22.5	12.6	17.3	5.4	2.9	18.1	25.8	19.3	31.4	2.6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62. 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재구성.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거나 30분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을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만9-12세(아버지: '11년 39.2% → '14년 37.3%, 어머니: '11년 17.1% → '14년 14.1%)에 비해 만13-24세(아버지: '11년 52.0% → '14년 42.2%, 어머니: '11년 27.4% → '14년 21.0%)의 청소년이 부모님과 더 적게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더불어 중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② 부모와의 관계의 질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2011년과 2014년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2a; 2014b)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지와 정도를 보았다(<표 Ⅲ-4-2>).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4년의 조사 결과에서 응답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가장 최신 정보인 2014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c)에 따르면, 만9-24세 전체 청소년이 부모님과 자신의 고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로 가장 많았으며, 월 1-3회(31.2%), 주 1-3회(18.7%), 매일(9.6%), 주 4-6회(5.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간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40.6%)이 여자 청소년(28.2%)에 비해 부모님과 자신의 고민에 관하여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주제로는 전체 청소년이 부모님과 월 1-3회(23.8%), 주 1-3회(23.0%), 매일(19.8%), 주 4-6회(8.8%) 정도 순으로 나눈다고 응답했으며, 13.6%의 청소년은 거의 나누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을 주제로 하여 주 4회 이상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을 남녀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주 4-6회: 10.8%, 매일: 24.0%)이 남자 청소년(주 4-6회: 7.1%, 매일: 14.6%)보다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 평소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해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 TV, 영화 등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대화는 전체 청소년의 30.0%가 월 1-3회, 24.4%는 주 1-3회, 8.6%가 매일, 6.8%는 주 4-6회 정도 나눈다고 답하였고, 거의 안한다는 비율도 2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59.8%가 부모님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부모님과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2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2011년, 2014년) (단위 : %)

구분				거의 안함	월1~3회	주1~3회	주4~6회	매일	해당없음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2011년	전체		34.3	32.8	18.2	4.8	8.0	1.9
		성별	남	38.4	33.5	16.1	3.5	5.9	2.7
			여	30.4	32.1	20.2	6.0	10.0	1.2
		연령	만9-12세	35.0	23.3	16.8	6.8	13.2	4.8
			만13-24세	34.1	35.8	18.6	4.1	6.4	1.0
	2014년	전체		34.7	31.2	18.7	5.5	9.6	0.2
		성별	남	40.6	31.2	17.1	4.0	6.9	0.3
			여	28.2	31.2	20.6	7.2	12.6	0.2
		연령	만9-12세	35.1	25.0	18.1	7.6	14.1	0.1
			만13-24세	34.6	32.7	18.9	5.0	8.5	0.3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1년	전체		13.9	23.7	24.1	8.7	15.6	14.0
		성별	남	16.4	27.0	24.5	6.9	11.9	13.3
			여	11.4	20.7	23.8	10.5	19.0	14.6
		연령	만9-12세	13.3	18.6	24.8	13.3	29.0	0.9
			만13-24세	14.0	25.4	23.9	7.3	11.3	18.1
	2014년	전체		13.6	23.8	23.0	8.8	19.0	11.8
		성별	남	17.1	26.7	23.2	7.1	14.6	11.4
			여	9.8	20.6	22.7	10.8	24.0	12.1
		연령	만9-12세	11.9	21.3	23.7	12.0	30.9	0.1
			만13-24세	14.1	24.4	22.8	8.1	16.2	14.5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1년	전체		31.2	31.6	22.4	7.1	6.4	1.3
		성별	남	35.9	30.0	21.7	5.3	5.6	1.5
			여	26.7	33.2	23.1	8.7	7.2	1.2
		연령	만9-12세	20.3	28.0	27.3	11.5	11.8	1.1
			만13-24세	34.7	32.7	20.9	5.7	4.7	1.4
	2014년	전체		29.8	30.0	24.4	6.8	8.6	0.3
		성별	남	33.5	30.6	22.7	5.9	7.0	0.3
			여	25.7	29.3	26.3	7.9	10.5	0.4
		연령	만9-12세	25.2	26.5	26.4	9.5	12.3	0.1
			만13-24세	30.9	30.8	23.9	6.2	7.8	0.3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1년	전체		49.1	27.7	14.2	3.3	3.0	2.6
		성별	남	52.5	25.9	13.0	3.1	2.7	2.9
			여	45.9	29.5	15.3	3.5	3.3	2.4
		연령	만9-12세	53.5	22.3	11.3	3.2	3.5	6.2
			만13-24세	47.7	29.5	15.1	3.3	2.8	1.5
	2014년	전체		59.8	24.7	9.4	2.4	3.4	0.4
		성별	남	61.1	22.9	10.4	2.5	2.9	0.3
			여	58.3	26.7	8.2	2.3	3.9	0.6
		연령	만9-12세	67.7	20.3	6.5	1.6	3.2	0.5
			만13-24세	57.9	25.7	10.0	2.6	3.4	0.4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60-61. 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p.64-66. 표 재구성.

(2) 보호,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2011년과 2014년에 진행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a; 2014b)에서 평일에 학교를 마친 후, 보호자 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 혼자(또는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1일 이상 혼자 있다는 전체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2011년 42.8%에서 2014년 35.2%로 7.6%p 줄어들었다. 만9-12세 아동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 혼자 있는 정도는 1-2일의 경우 3%p('11년 17.7% → '14년 14.7%), 3-4일은 3.9%p('11년 11.3% → '14년 7.4%), 거의 매일은 4.5%p('11년 15.3% → '14년 10.8%) 감소하여, 방과후에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3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2011년, 2014년) (단위 : %)

구분		2011년				2014년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전 체		57.1	17.8	10.0	15.0	64.8	15.4	8.2	11.6
성별	남자	58.3	17.8	10.4	13.5	65.6	15.3	8.2	10.9
	여자	55.9	17.9	9.8	16.4	64.0	15.5	8.2	12.3
연령	만9-12세	55.7	17.7	11.3	15.3	67.0	14.7	7.4	10.8
	만13-24세	55.9	17.9	9.8	16.4	64.2	15.5	8.5	11.8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68. 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81. 표 재구성

②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해 설립주체별,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 당 아동 수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보육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구축 정도를 알아보고자,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Ⅲ-4-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2004년 26,903개소에서 2013년에는 43,77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43,742개소, 2015년에는 42,517개소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당 보육시설의 재원 아동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과 양육에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유도 및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c).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운영 투명성, 보육의 신뢰도 제고 등의 장점(김미정, 2013)으로 인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4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2015년) (단위 : 개소)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 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 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 출처: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통계. pp.2-3.

나.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정원 및 재원 아동 수과 이용률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재원 아동 비율은 2014년 83.1%에서 2015년 81.1%로 감소하였다(<표 Ⅲ-4-5>). 이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2010년 470.0천 명 → 2012년 484.6천 명), 2013년에는 436.5천 명과 2014년 435.4천 명으로 줄어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아동 수가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공급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4-5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 2015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4년	정원	179,939	137,017	61,483	946,519	419,352	4,682	51,667	1,800,659
	현원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이용률	88.5	76.3	80.0	81.9	87.1	80.6	76.0	83.1
2015년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3, p.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통계. p.5.

다.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지역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개소 수 현황을 보면, 앞서 살펴 본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같은 맥락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모두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대도시: '14년 15,999개소 → '15년 15,695개소, 중소도시: '14년 19,478개소 → '15년 18,606개소, 농어촌: 8,265개소 → 8,216개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립주체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본 결과, 2014년보다 2015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140개소(대도시 95개소, 중소도시 26개소, 농어촌 지역 19개소), 직장어린이집은 93개소(대도시 32개소, 중소도시 35개소, 농어촌 지역 26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6개소(대도시 2개소, 중소도시 1개소, 농어촌 지역 3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Ⅲ-4-6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4년, 2015년) (단위 :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년	전국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대도시	1,226	378	287	5,720	7,985	64	339	15,999
	중소도시	676	288	207	5,858	12,155	61	233	19,478
	농어촌	587	754	358	3,244	3,178	24	120	8,265
2015년	전국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대도시	1,321	377	270	5,619	7,671	66	371	15,695
	중소도시	702	283	201	5,740	11,350	62	268	18,606
	농어촌	606	754	363	3,267	3,053	27	146	8,216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81.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통계. p.82.

라.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와 보육교사 1인 당 돌봄 아동 수를 살펴보았다(<표 Ⅲ-4-7>, <표 Ⅲ-4-8>). 2014년과 비교할 때, 2015년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는 34.4로 동일하여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육교사 한 명 당 돌보는 아동 수는 2014년 4.8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교사 1인 당 돌봄 아동 수가 9.1명인 것에 비하면 2015년에는 돌봄 아동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므로 보육교사가 돌봄 아동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보육교사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아 5명당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아 7명 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 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 당 1명을 배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에 따른 초과보육을 허용함으로써, 교사는 연령대마다 1-3명의 아이를 더 돌보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a). 이러한 정책은 교사 대비 돌봄 아동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여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보육 현장의 업무 수준을 고려하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표 Ⅲ-4-7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14년, 2015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동 수	2014년	64.0	73.6	57.7	52.3	15.7	25.3	56.7	34.2
	2015년	63.0	70.5	56.2	51.1	15.6	26.6	57.0	34.2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2014년	5.5	5.5	5.6	5.5	3.5	4.4	4.2	4.8
	2015년	5.4	5.3	5.4	5.1	3.3	4.3	4.1	4.5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통계. p.5.
* 주: 아동 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

표 Ⅲ-4-8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7-2015년)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육아동 수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보육교직원 수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284,237	301,719	311,817	321,067
교사 1인당 아동 수	9.1	8.2	7.8	7.7	7.5	5.2	4.9	4.8	4.5

* 출처: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통계. pp.4-5. 표 재구성.
* 주: 보육교직원수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

③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학교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 현황 등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규수업 이외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면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맞벌이 가정 등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6c).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한부모·맞벌이 등의 취약계층 가정에서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및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인 학습 지원과 복지·보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시설 등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가.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을 보면(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5.2.), 전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증가('10년 55.6% → '11년 56.6% → '12년 57.6% → '13년 60.2%)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14년 59.3% → '15년 57.2%)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Ⅲ-4-9>). 학교급별로 나누어 2015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면, 2014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0.7%p('14년 60.9% → '15년 60.2%), 중학교는 4.5%p('14년 45.3% → '15년 40.8%), 고등학교는 2.9%p('14년 70.1% → '15년 67.2%)가 감소하여, 중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통계청, 2016)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생이 80.7%, 중학생은 69.4%, 고등학생이 50.2%로, 2014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0.4%p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은 0.2%p, 고등학생은 0.7%p 증가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중·고등학생은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에 더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교육부, 2015c), 초등학교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27.3%)보다는 특기·적성과 관련된 프로그램(72.7%)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특기·적성 프로그램(중: 38.9%, 고: 123%)보다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중: 61.1%, 고: 87.7%)의 비중이 매우 높아 교급이 올라갈수록 방과후학교에서도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9 방과후학교[1] 참여 실태(2010-2015년) (단위 : %,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2)		계	
	참여율3)	비용4)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0	45.0	1.3	50.0	0.7	79.0	2.3	55.6	1.4
2011	50.4	1.6	48.3	0.6	74.7	2.2	56.6	1.5
2012	52.6	1.5	49.4	0.4	73.0	1.8	57.6	1.3
2013	58.2	2.0	50.5	0.4	72.3	2.0	60.2	1.5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5.2.). 2016 청소년 통계. p.18.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3501에서 2016년 7월 15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일반고등학교, 3)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표 Ⅲ-4-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2015년)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62,723	53,756	138,600	255,079	294,396	323,888	367,025	355,158	338,891
	비율(%)	27.3	61.1	87.7	53.6	54.7	56.8	60.9	66.9	68.5
특기	수(개)	167,015	34,161	19,435	220,611	243,712	246,433	235,605	175,492	156,074
적성	비율(%)	72.7	38.9	12.3	46.4	45.3	43.2	39.1	33.1	31.5
계	수(개)	229,738	87,917	158,035	475,690	538,108	570,321	602,630	530,650	494,965

* 출처: 교육부(2015c).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64/ko/board/view.do?bbsId=317&boardSeq=61909&mode=view에서 2016년 7월 15일 인출.

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된 이래로(여성가족부, 2015c), 2015년까지 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2004년 895개소에서 2015년에는 4,102개소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6f). 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하는 아동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23,34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9,661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급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이 42,267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40,113명), 중학생(19,566명), 고등학생(4,4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3,133명)과 탈학생(164명)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표 Ⅲ-4-11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4-2015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센터 개소 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연인원 (명)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초등	저학년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고학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기타		–	22	99	317	196	–	–	–	–	–	–	–

* 출처: 보건복지부(2016f).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p. iii, p. viii.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info/NEW_USR_main.asp??=CENTERINFO/DATA/STAT_GUIDE/view&bbs_no=216&pag 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6년 10월 12일 인출.

* 주: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의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여성가족부, 2015c)은 2005년 2,350명(연인원 225,600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490명(연인원 2,200,000명)이 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적으로 46개소가 운영되다가, 이후 2006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50%를 지원하는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8년까지 18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다소 축소되었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200개소로 운영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복권기금)으로 전환되면서 1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생 중심의 방과후아카데미 24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표 Ⅲ-4-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2015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소	46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지원인원(명)	2,350	4,200	6,300	7,980	7,560	6,645	8,200	8,200	8,200	8,043	9,490
연인원(명)	225,600	1,260,000	1,890,600	2,165,760	2,064,825	1,727,700	2,148,400	2,148,400	2,148,400	1,962,492	2,200,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145.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161.

라.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4-3], [그림 Ⅲ-4-4], <표 Ⅲ-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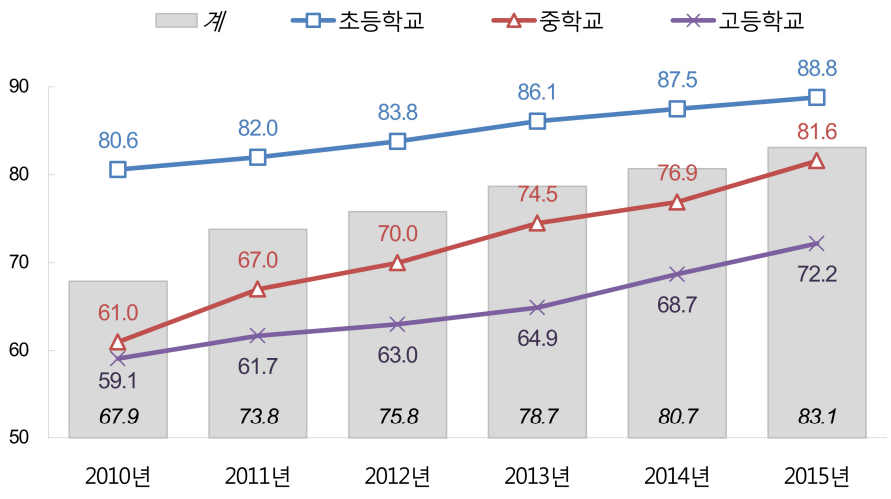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5c).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3.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 단위: %

【그림 Ⅲ-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먼저 방과후학교 전체 만족도는 2010년 67.9%에서 지속적인 증가하여 2015년에는 83.1%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c). 교급별로 나누어보면,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2010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80%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0년에는 중학생이 61.0%, 고등학생이

59.1%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가 2015년에는 각각 81.6%, 72.2%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별 이용 만족도를 보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0년 82.8%에서 2014년에는 85.8%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다(김미숙·김정주·황진구·하태정, 2014).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보호, 학습, 문화, 친구 등의 대인관계, 아동참여인권 등)에 대한 만족도를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9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호 관련 프로그램 89.4%, 친구 등 대인관계 관련 프로그램 84.8%, 아동참여 및 인권 관련 프로그램 84.0%, 학습 관련 프로그램 80.2%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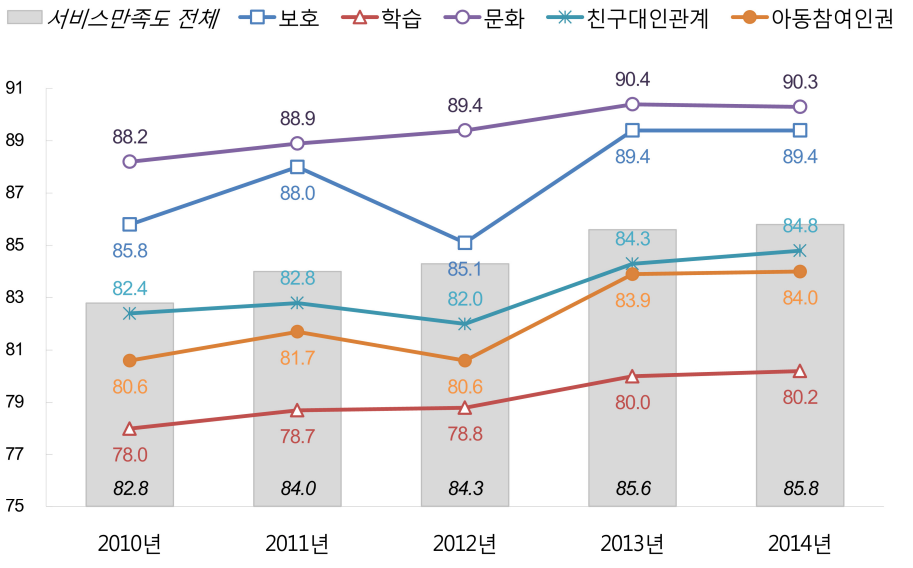

* 출처: 김미숙·김정주·황진구·하태정(201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p.264. / 단위(%)

【그림 Ⅲ-4-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마지막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 83.4%에서 2015년 84.4%로 나타났다(양계민·김승경·조영희, 2010; 양계민·김승경, 2011; 양계민, 2012; 2013; 2014; 김영지·김정주·정은주, 2015). 만족도 영역을 프로그램, 지도자(PM, SM), 교과목강사, 주중체험강사, 시설환경, 급식 등으로 나누어 2015년을 위주로 한 결과를 보면,

주중체험강사 만족도가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자와 교과목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85.6%로 동일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환경 만족(85.2%), 프로그램 만족(84.4%) 순이었으며,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76.8%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급식에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4-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2010-2015년) (단위 : %)

연도 / 만족도 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만족도	83.4	83.5	83.8	83.9	84.2	84.4
프로그램 만족도	84.2	84.1	84.4	84.3	84.4	84.4
지도자(PM, SM) 만족도	84.0	83.9	84.0	85.5	85.2	85.6
교과목강사 만족도	83.2	83.3	82.8	85.0	85.2	85.6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86.4	86.7	87.6	88.2	88.0	88.4
시설환경 만족도	82.0	82.3	83.6	85.1	84.2	85.2
급식 만족도	80.4	81.1	80.0	74.9	77.8	76.8

* 출처: 양계민·김승경·조영희(2010), 양계민·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김정주·정은주(2015)의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입양기피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국내법에서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1조에서는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적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하도록 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제',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게 한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의 동의 필요, 양친 자격 강화 등의 입양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고, 해당 부처에서는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비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이행법률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등을 추진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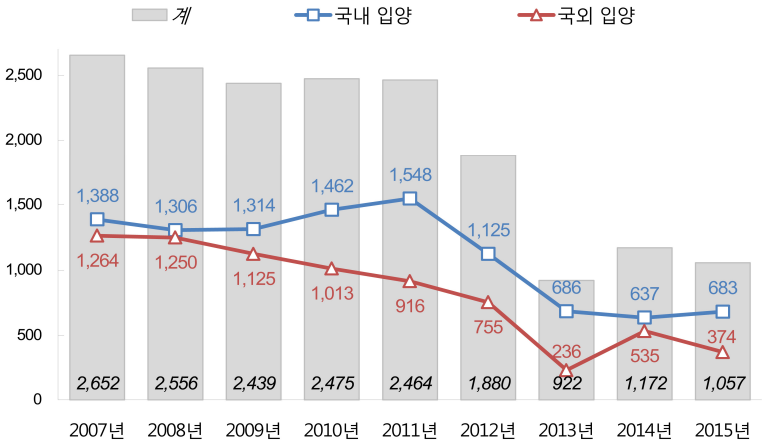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6.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p.10.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 04&MENU_ID=0403&page=1&CONT_SEQ=331453에서 2016년 8월 26일 인출./ 단위: 명

【그림 Ⅲ-4-4】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07년 이후로 2011년까지 국내외 입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는데,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 시행된 2012년에는 전체 국내외 입양 아동 수가 1,880명으로 나타나 전년도('11년 2,464명)에 비해 23% 정도 대폭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6.5.4.). 이러한 감소 추이는 2013년에도 이어져 전체 입양 아동 수가 922명이었으나 2014년은 1,172명, 2015년에는 1,057명으로 2013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국내 입양 비율이 51.1%에서 이후에 50-60%를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는 74.4%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4.4%로 줄어들다가 2015년에는 다시 64.6%로 증가하였다. 국외 입양은 국내 입양이 2011년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으나, 특히 2013년도에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국내외 예비 입양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어 입양을 보류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표 Ⅲ-4-14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2006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245,600	227,983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국내	79,088 (32.2)	68,939 (30.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국외	166,512 (67.8)	159,044 (69.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 출처: 보건복지부(2016.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p.10.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 04&MENU_ID=0403&page=1&CONT_SEQ=331453에서 2016년 8월 26일 인출.

표 Ⅲ-4-15 입양에 대한 견해(2012년, 2014년) (단위: %)

구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2년	전체	23.6	18.9	32.5	25.0
	남	23.1	18.1	33.1	25.8
	여	24.1	19.6	32.0	24.3
2014년	전체	21.6	15.6	32.6	30.2
	남	21.0	14.9	32.8	31.2
	여	22.2	16.3	32.8	29.1

* 출처: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6.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15.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3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주: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인구임.

앞서 살펴 본 국내외 입양 추이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국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내입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입양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 통계청(2012.12.20.; 2014.11.27.)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았다. 입양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자녀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건이 된다면 입양하고 싶다'는 응답이 2012년 18.9%에서 2014년 15.6%로 감소하였고, '자녀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은 2012년 23.6%에서 2014년 21.6%로 감소하였다. 또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2012년 32.5%에서 2014년 32.6%,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012년 25.0%에서 2014년 30.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의식이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4-16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8-2014년) (단위: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8년	전체	62.1	20.1	5.8	8.0	3.0	1.0
2010년	전체	57.9	22.7	5.6	7.5	4.6	1.7
2012년	전체	56.8	21.3	5.7	7.5	4.6	1.7
2014년	전체	57.2	19.3	6.3	9.0	6.3	2.0
	남	58.9	18.9	6.2	9.1	5.6	1.3
	여	55.4	19.7	6.5	8.9	6.9	2.6

* 출처: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6.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15.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3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가 21.3%였고,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는 9.0%,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와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라는 의견이 각각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 입양에 대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적인 가정환경의 하나로서 입양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와 방식을 활용하여 입양과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입양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입양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국내·외 입양 후에는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입양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후조치 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국내·외 입양인은 동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이나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국내·외 입양인이 가족 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양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정보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중앙입양원 홈페이지. 2016.10.20. 인출).

표 Ⅲ-4-17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구분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국내입양 사후관리	○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인) ○ (입양특례법 제25조)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관리 제공(입양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국외입양 사후관리	○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인) ○ 국적취득보고(입양기관) ○ (입양특례법 제25조)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관리 제공(입양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 실시(입양기관)

* 출처: 보건복지부(2016e).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p.19-22.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CONT_SEQ=330339&page=1에서 2016년 7월 29일 인출.

또한 입양특례법 제25조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입양기관에서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에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개설 및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입양가정 내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내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국내입양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입양부모로서의 역할 확립, 입양아동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아동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 등을 돕기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입양인

을 위한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 포함)을 위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e).

(2) 대안양육 비율

①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전체 요보호아동은 2008년 9,284명에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5년에는 총 4,503명의 아동이 발생하였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6.8.22. 인출). 요보호아동은 주로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학대, 아동의 비행과 가출, 미혼모, 기아, 미아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유형에 따른 요보호아동을 현황을 보면, 2015년 총 4,503명 중에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보호를 받게 된 아동은 2,866명으로, 전체 요보호대상아동의 63.4%를 차지하여 가족 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학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모로 인한 보호아동은 930명, 비행과 가출은 360명, 기아는 321명, 미아로 인해 보호받는 아동은 26명이었다.

또한 보호유형별로 나누어보면, 2015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682명, 아동복지법 제3조의 6항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적합한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1,582명, 입양(민법상의 사인간 입양 아동 수는 미포함)은 239명이었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6.8.22. 인출). 보호유형에 대해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시설보호는 2008년(4,964명)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은 2007년에 3,378명으로 시설보호 아동 수(3,245명)보다 다소 많았으나 2008년부터는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중 시설보호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가정다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아동이 보호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 유형의 경우, 1996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정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면서, 2000년부터는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년소녀가정은 폐지될 예정이므로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e). 이에 2006년

이후로 소년소녀가정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0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4-18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06-2015년)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빈곤·실직·학대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비행·가출	802	748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미혼모	3,022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기아	230	305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미아	55	37	151	35	210	81	50	21	13	26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표 Ⅲ-4-19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2006-2015년)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시설보호[1)]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가정위탁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입양[2)]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소년소녀가정	308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와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이 보호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고자 가정(친부모 보호양육,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가정 위탁) 대리양육,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되거나 이러한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동법 제15조제4항에 의해 보호에 적합한 시설보호로 이어진다(보건복지부, 2016e).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2003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총 17개소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센터들을 지원하면서 가정위탁제도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교육, 가정위탁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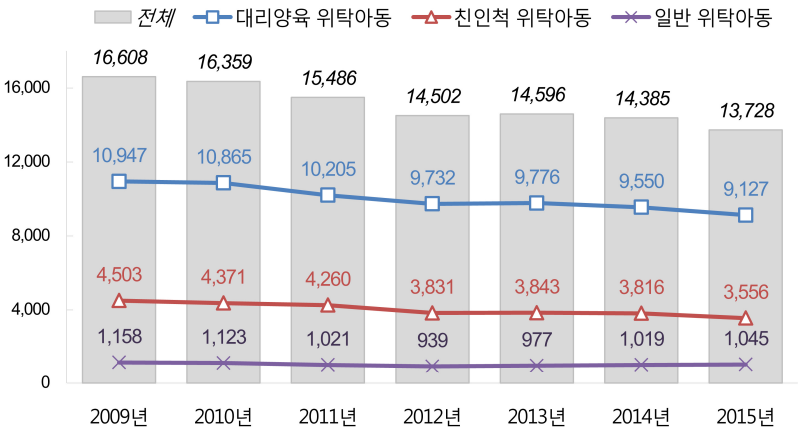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tat.moh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bbsSeq=1&nttSeq=21849&nttClsCd=01&searchKey=&searchWord=&n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6d).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5.12.31.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3595&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그림 Ⅲ-4-5】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단위: 명)

보호대상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양육환경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가정위탁은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은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인척에 의해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되는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이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인 가정위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다(보건복지부, 2016e).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총 13,728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리양육 위탁 아동 수는 9,127명(66.5%), 친·인척 위탁 아동 수가 3,556명(25.9%)이었으며, 일반 위탁 아동 수는 1,045명(7.6%)로 나타나 대리양육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 수는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인 위탁가정의 아동의 수는 2009년 1,158명에서 2012년 939명으로 줄어들다가 이후 2013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안지선, 2014; 84)를 말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경찰청의 18세 미만 실종아동 통계와 청소년 생애 가출 경험률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여성가족부, 2014c)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1명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9년 11.6% → '10년 13.7% →'11년 10.2% → '12년 12.2% →'14년 11.0%).

표 III-4-20 가출인 발생 현황(2009-2013년) (단위 : 명)

연도	가출인(전체)			가출청소년(14-18세 미만)[1]			18세 이상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년	56,324	23,489	32,768	13,210	4,906	8,237	43,114	18,589	24,531
2010년	60,393	18,937	41,370	16,386	5,882	10,418	44,007	18,937	25,070
2011년	65,050	28,442	36,608	16,678	6,259	10,419	48,372	22,183	26,189
2012년	66,457	29,686	36,771	16,457	6,496	9,961	50,000	23,190	26,810
2013년	69,022	32,379	36,639	11,279	4,719	6,560	57,743	27,660	30,079

* 출처: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p.22.
* 원자료: 경찰청(2014). 가출인 발생 현황. 경찰청 요청자료.
* 주: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13.6.4. 개정, 2014.7.29. 시행)를 기준으로 연령 구분함. 단, 기존 통계(경찰백서)에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에 의거 14~19세로 집계하였음.

또한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라 확인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14-18세 미만의 가출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4-20>), 2009년 13,210명에서 2011년에는 16,67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6,457명, 2013년에는 11,279명으로 감소하였고, 실종아동법 개정(2012.2.5.)으로 실종아동 범위가 확대(14세 미만 → 18세 미만)되어 가출인으로 접수되었던 자를 실동아동으로 재접수하여 산출된 경찰통계연보(경찰청, 2015)의 실종아동 수도 2011년 28.099명에서 2012년

27,295명, 2013년 23,089명, 2014년 21,591명으로 확인되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경찰청, 2015).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는 가출이나 실종 등의 신고에 의해 접수된 현황만 파악할 수 있고, 신고 접수되지 않은 현황은 알 수 없어 실제 우리나라에 가출청소년이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수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 의해 청소년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가출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상담, 자립 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청소년 쉼터는 이용기간에 따라 24시간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쉼터(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기쉼터(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쉼터(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로 나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c). 2015년 기준, 일시쉼터는 26개소, 단기쉼터는 52개소, 중장기쉼터는 41개소로, 총 119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08년에 76개소에서 2015년에는 119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 쉼터가 확대되면서 예산과 이용인원도 증가하였는데, 예산은 2008년 4,639백만 원에서 2014년 8,710백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용인원도 2008년 235,209명에서 2014년에는 584,510명으로 확대되었다(<표 Ⅲ-4-21>).

표 Ⅲ-4-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5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쉼터 수 (개소 수)	일시쉼터	9	10	10	10	13	21	22	26
	단기쉼터	42	47	49	48	49	50	50	52
	중장기쉼터	25	24	24	25	30	32	37	41
	총계	76	81	83	83	92	103	109	119
예산(백만 원)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
이용인원(연인원)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84,510	–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p.154-155의 표를 재구성함.

②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표 Ⅲ-4-22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4	96.6	100.0(11,101)	–
성별	남자		4.7	95.3	100.0(5,780)	62.2801***
	여자		2.0	98.0	100.0(5,3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	97.7	100.0(3,139)	18.378***
	중학교		3.8	96.2	100.0(3,741)	
	고등학교	전체	4.0	96.0	100.0(4,221)	
		일반계고	3.6	96.4	100.0(3,391)	
		특성화계고	5.3	94.7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3.5	96.5	100.0(4,458)	0.265
	중소도시		3.4	96.6	100.0(5,284)	
	읍면지역		3.2	96.8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	96.8	100.0(9,961)	20.532***
	한부모가정		4.8	95.2	100.0(819)	
	조손가정		5.9	94.1	100.0(106)	
	기타		7.8	92.2	100.0(215)	
학업 성적	상		2.0	98.0	100.0(3,575)	71.306***
	중		3.1	96.9	100.0(4,716)	
	하		5.8	94.2	100.0(2,766)	
경제적 수준	상		3.1	96.9	100.0(5,750)	33.018***
	중		3.1	96.9	100.0(3,961)	
	하		6.1	93.9	100.0(1,34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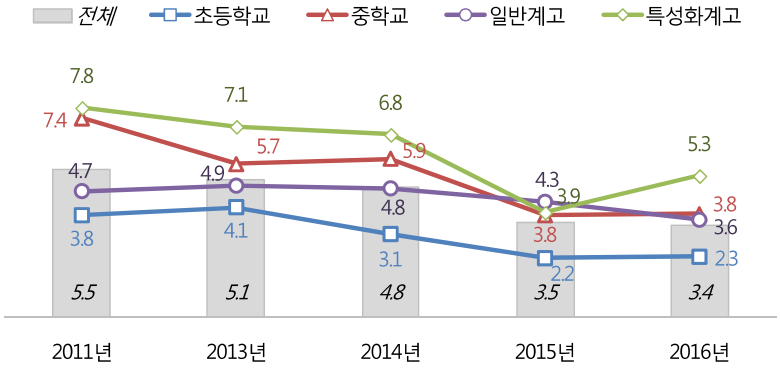

【그림 Ⅲ-4-6】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5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남학생(4.7%)의 가출 경험 비율이 여학생(2.0%)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Ⅲ-4-22>).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출 경험은 고등학생(4.0%), 중학생(3.8%), 초등학생(2.3%)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특성화계고 학생의 가출 경험(5.3%)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족 유형에 따라 나누어보면, 부모님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3.2%)보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학생(7.8%)의 가출 경험이 2배 이상 많았으며, 학업성적이 낮고(하: 5.8% → 중: 3.1% → 상: 2.0%),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하: 6.1% → 상: 3.1%, 중: 3.1%) 최근 1년 동안 가출해 본 경험이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여성가족부, 2014c)의 가출 생애 경험률('09년 11.6% → '10년 13.7% →'11년 10.2% → '12년 12.2% →'14년 11.0%)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는 초·중·고등학생 및 위기청소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본 연구의 표본집단과 구성이 다르고, 표본크기에서의 차이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살펴본 결과([그림 Ⅲ-4-9]), 전체적으로는 가출 경험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1년 5.5% → '13년 5.1% → '14년 4.8% → '15년 3.5% → '16년 3.4%). 연도별 추이를 학교급에 따라 나누어보면, 초등학생은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에는 가출 경험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1년 3.8% → '13년 4.1%),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4년 3.1% → '15년 2.2% → '16년 2.3%). 중학생의 가출 경험은 2011년도에는 7.4%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5.7%에서 5.9%으로, 2015년과 2016년도에는 모두 3.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에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경향이었다('11년 4.7% → '13년 4.9% → '14년 4.8% → '15년 4.3% → '16년 3.6%). 특성화계고 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전체 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소폭으로 감소('11년 7.8% → '13년 7.1% → '14년 6.8%)하고, 2015년도에도 3.9%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16년도에는 5.3%로 다시 상승하였다.

가출을 경험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출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 부모님과의 문제(60.7%)를 가장 많이 꼽았다(<표 Ⅲ-4-23>).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12.8%), 학업 부담 때문에(12.4%), 기타(10.6%), 학교 문제 때문에(2.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0.8%)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 모두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응답했으며(초등학생: 62.8%, 중학생: 64.9%, 고등학생 전체: 56.2%, 일반계 고등학생: 55.6%, 특성화계 고등학생: 58.1%), 이러한 응답 비율은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 시기에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부모님과의 문제 다음으로, 학업 부담(17.3%), 기타(13.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3.4%),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2.1%), 학교 문제(1.4%) 순으로 가출 이유를 꼽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12.3%), 기타(11.0%), 학업 부담(10.7%), 학교 문제(1.1%) 순으로 가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에 이어 학업 부담(14.9%),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13.1%), 기타(9.7%), 학교 문제(6.3%),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학업 부담(3.6%)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30.6%)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집단과의 동조와 어울림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4-23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2.4	60.7	2.7	0.8	12.8	10.6	100.0(377)	-
성별	남자		14.7	57.9	1.9	1.0	12.6	11.8	100.0(271)	-
	여자		6.7	67.8	4.7	0.0	13.3	7.4	100.0(1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3	62.8	1.4	3.4	2.1	13.1	100.0(68)	-
	중학교		10.7	64.9	1.1	0.0	12.3	11.0	100.0(144)	
	고등학교	전체	11.9	56.2	4.7	0.3	17.7	9.1	100.0(165)	
		일반계고	14.9	55.6	6.3	0.4	13.1	9.7	100.0(121)	
		특성화계고	3.6	58.1	0.0	0.0	30.6	7.6	100.0(44)	
지역 규모	대도시		10.4	58.3	6.5	0.0	10.4	14.3	100.0(157)	-
	중소도시		15.5	62.7	0.0	1.1	14.2	6.6	100.0(177)	
	읍면지역		7.4	61.0	0.0	2.1	16.1	13.3	100.0(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0	60.4	3.0	0.2	13.0	10.3	100.0(315)	-
	한부모가정		2.9	70.6	0.0	3.6	13.5	9.5	100.0(39)	
	조손가정		11.4	33.0	9.7	0.0	24.3	21.6	100.0(6)	
	기타		24.2	53.0	0.0	5.5	3.8	13.5	100.0(17)	
학업 성적	상		12.2	69.6	0.0	0.0	7.3	10.9	100.0(70)	-
	중		13.5	55.4	4.3	1.3	13.9	11.5	100.0(146)	
	하		10.7	62.2	2.4	0.6	14.4	9.6	100.0(159)	
경제적 수준	상		14.2	59.5	2.2	1.0	13.3	9.9	100.0(174)	-
	중		14.8	55.0	2.7	0.9	15.2	11.5	100.0(120)	
	하		3.5	73.0	3.9	0.0	8.5	11.0	100.0(81)	

지역규모에 따른 가출 이유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서 부모님과의 문제로 가출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중소도시: 62.7% → 읍면지역: 61.0% → 대도시: 58.3%), 학업 부담에 따른 가출 이유도 중소도시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중소도시: 15.5% → 대도시: 10.4% → 읍면지역: 7.4%), 친구와 함께 하고자 가출한다는 비율은 읍면지역(16.1%), 중소도시(14.2%), 대도시(10.4%) 순이었다.

가출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연도별 경향(2011-2016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가출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 부담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Ⅲ-4-10]). 학업 부담과 관련된 이유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의 동조를 위한 가출 경험은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4-7】 가출을 한 주된 이유(5개년 추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표 Ⅲ-4-24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 수련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전체(N)
전체			89.6	4.8	2.9	0.8	1.9	100.0(274)
성별	남자		89.3	5.7	4.1	0.9	0.0	100.0(196)
	여자		90.2	2.6	0.0	0.7	6.5	100.0(78)
학교 유형	중학교		93.6	3.2	1.8	1.4	0.0	100.0(127)
	고등학교	전체	86.1	6.2	3.9	0.4	3.5	100.0(147)
		일반계고	85.6	5.8	5.4	0.0	3.3	100.0(107)
		특성화계고	87.3	7.4	0.0	1.3	4.0	100.0(40)
지역 규모	대도시		85.1	8.6	3.8	0.4	2.1	100.0(116)
	중소도시		92.0	2.5	2.9	1.4	1.2	100.0(129)
	읍면지역		96.3	0.0	0.0	0.0	3.7	100.0(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7	3.6	3.5	1.0	2.2	100.0(230)
	한부모가정		89.7	10.3	0.0	0.0	0.0	100.0(29)
	조손가정		100.0	0.0	0.0	0.0	0.0	100.0(6)
	기타		79.0	21.0	0.0	0.0	0.0	100.0(10)
학업 성적	상		84.0	5.4	2.2	4.9	3.5	100.0(46)
	중		91.1	6.3	0.0	0.0	2.6	100.0(93)
	하		90.3	3.6	5.3	0.0	0.8	100.0(134)
경제적 수준	상		90.9	4.2	2.1	1.6	1.2	100.0(111)
	중		91.6	2.6	3.0	0.0	2.8	100.0(96)
	하		84.0	9.2	4.3	0.8	1.7	100.0(66)

가출을 해 본적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 10.4% 정도의 학생들만 가출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쉼터(4.8%), 청소년 상담기관(2.9%), 청소년 전화 1388(1.9%), 청소년수련관(센터)(0.8%) 순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했다(<표 Ⅲ-4-24>).

이와 관련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전화 1388의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출 후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경향이 우세하다([그림 Ⅲ-4-11]). 이는 아직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출 후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가출 관련 기관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출 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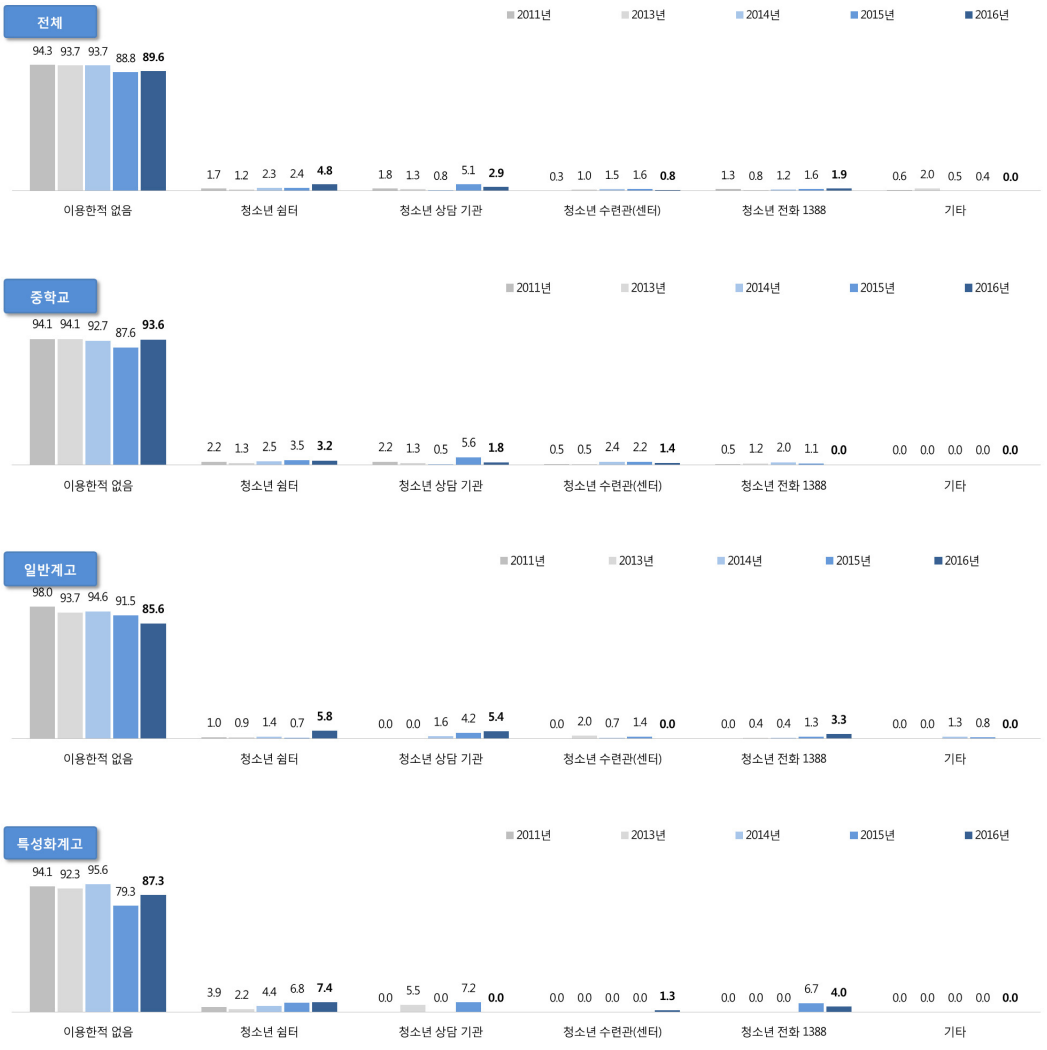

【그림 Ⅲ-4-8】 가출 시 이용 기관 및 서비스(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표 Ⅲ-4-25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51(0.83)	13.9	28.0	50.9	7.2	100.0(29)	–
성별	남자		2.76(0.63)	0.0	34.1	56.1	9.8	100.0(21)	12.606**
	여자		1.85(1.00)	52.0	11.3	36.7	0.0	100.0(8)	
학교 유형	중학교		2.72(0.48)	0.0	28.3	71.7	0.0	100.0(8)	3.470
	고등학교	전체	2.43(0.94)	19.4	27.9	42.7	10.1	100.0(20)	
		일반계고	2.32(0.75)	15.4	37.1	47.5	0.0	100.0(15)	
		특성화계고	2.78(1.42)	31.4	0.0	27.9	40.6	100.0(5)	
지역 규모	대도시		2.50(0.65)	7.4	35.4	57.1	0.0	100.0(17)	11.347
	중소도시		2.71(1.01)	15.5	18.4	45.9	20.1	100.0(10)	
	읍면지역		1.00(0.00)	100.0	0.0	0.0	0.0	100.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5(0.78)	16.8	21.4	61.8	0.0	100.0(24)	37.609***
	기타		4.00(0.00)	0.0	0.0	0.0	100.0	100.0(2)	
학업 성적	상		2.85(1.14)	21.6	0.0	50.4	28.0	100.0(7)	9.409
	중		2.33(0.78)	15.5	35.8	48.6	0.0	100.0(8)	
	하		2.44(0.67)	8.4	38.9	52.7	0.0	100.0(13)	
경제적 수준	상		2.32(0.72)	12.7	42.5	44.8	0.0	100.0(10)	8.700
	중		2.60(0.85)	19.8	0.0	80.2	0.0	100.0(8)	
	하		2.63(0.96)	10.4	35.5	34.4	19.7	100.0(10)	

**p<.01, ***p<.001

가출 후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 58.1.%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표 Ⅲ-4-25>). 여학생(36.7%)보다는 남학생(65.9%)의 만족도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르면 양부모가정(61.8%)보다 기타 가정(100%) 유형으로 분류된 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가출 후 관련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3개년 추이(2014-2016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2014년 56.1%에서 2015년 48.1%로 하락했으나, 2016년도에는 58.1%로 다시 상승하였다([그림 Ⅲ-4-12]). 중학생과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연도별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생은 전체적인 추이와 비슷하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감소하였다가('14년 55.9% → '15년 26.3%) 2016년도에는 47.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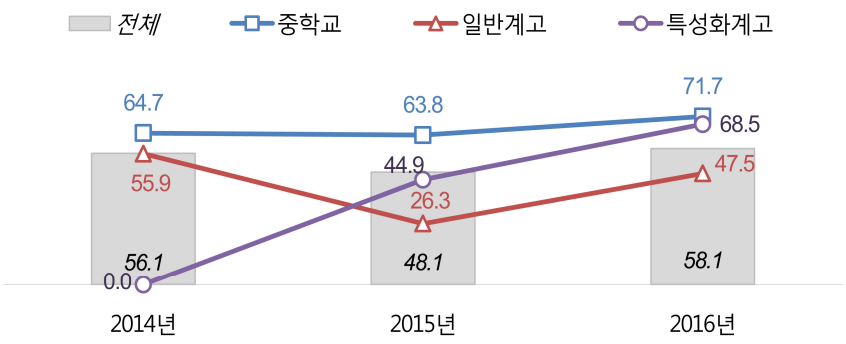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4-9】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3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제외)은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정무성, 정익중, 강흥구, 김동주, 김수삼, 이정선 외 , 2013).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공지에 따르면, 2013년에 이어 2016년에는 자체평가는 5월에, 현장평가는 6-7월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수정되었는데,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표 Ⅲ-4-26>와 같다.

2013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총 69개(시설 및 환경(7개), 재정 및 조직 운영(11개), 인적자원 관리(15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21개), 아동의 권리(8개), 지역사회 관계(7개))로 구성되었으나, 2016년에 시행된 평가에서는 일부 지표들이 수정 및 삭제, 통합, 신규 추가 등의 과정(수정 11개, 신규 16개, 삭제 14개, 통합 3개, 통합수정 3개, 이동 1개)을 거쳐 총 64개의 지표(시설 및 환경(10개), 재정 및 조직 운영(8개), 인적자원 관리(11개), 프로그램 및 서비스(23개), 아동의 권리(7개), 지역사회 관계(5개))에 의해 평가된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2015).

표 III-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2013년, 2016년 비교)

평가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2016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시설구조 및 외관,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상담실 및 사무실,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위상상태의 적절성	– 수정: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 신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구조(거실), 생활공간의 적절성, 식품보관 위생상태,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 삭제: 상담실 및 사무실,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위상상태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보조금대비 사업비·후원금 비율, 법인이사회, 비품관리,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입·퇴소관련 기록, 관찰일지,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신규: 회계의 투명성 – 삭제: 관찰일지,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C. 인적자원 관리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률,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교육 활동비,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직원·신입직원교육, 직원복지, 프로그램 기획회의, 직원의 이(퇴)직률, 직무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고충처리	– 수정: 직원복지 – 통합: 직원교육, 신입직원교육 → 직원교육 – 삭제: 직원의 이(퇴)직률, 직무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고충처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초기적응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자립지원(취업지도) 및 퇴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욕구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아동·가족·연고자 상담, 사례관리, 학습·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 실시, 학습·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 수정: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초기적응 프로그램,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 관리의 적절성,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및 퇴소지원 프로그램, 사례관리 – 통합: 서비스 욕구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치료 프로그램(D20, D21) → 치료 프로그램 – 통합수정: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학습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실시,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신규: 식사문화,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영유아 장난감,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 삭제: 성교육 프로그램
E. 아동의 권리	아동의 비밀보장, 아동의 고충처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자치활동 보장, 체벌금지, 음식제공	– 수정: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 이동통합: 음식제공(→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F. 지역사회 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리, 실습교육, 지역사회 연계,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자원봉사자의 활용, 홍보	– 수정: 외부자원개발,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통합수정: 실습교육,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연계 – 삭제: 자원봉사자의 활용, 홍보

*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p.11-14. 발췌·정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field=searchTC&query=%EC%95%84%EB%8F%99&po_item_cd=&po_no=2982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6개 평가영역에 따른 배점을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배점은 35점('13년)에서 40점('16년)으로 5점이 상향되었으며, 지역사회 관계는 10점('13년)에서 5점('16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사회 관계 지표에서는 중복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도 축소하였으나, 2013년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평가지표는 21개에서 수정 및 통합, 신규 추가 등(수정(5개), 신규(7개), 삭제(1개), 통합(2개), 통합수정(2개))의 개편으로 2016년에는 23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배점도 높임으로써,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27 아동복지시설 평가영역별 배점(2013년, 2016년 비교)

평가영역	배점(%)	
	2013년	2016년
A. 시설 및 환경	10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5
C. 인적자원관리	20	2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40
E. 아동의 권리	10	10
F. 지역사회관계	10	5
총계	100	100

*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9. 발췌·정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field=searchTC&query=%EC%95%84%EB%8F%99&po_item_cd=&po_no=2982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②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 보호 및 양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나 복권기금(기획재정부) 등에서 편성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과 관련된 예산은 2012년 7,600백만 원에서 2013년 15,261백만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가, 2014년에서 2016년에는 7,630백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보호, 양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의 사업 예산은 2012년 6,913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0,780백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과 연관된 사업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요보호아동이 18세가 되어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자립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2년 960백만 원에서 2014년에 1,024백만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21백만 원에서 2016년 1,000백만 원으로 삭감되었다. '가정위탁지원' 사업 예산도 2012년 1,521백만 원에서 2013년 1,369백만 원으로 축소된 것에 이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232백만 원의 예산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경우, 센터 개소 수를 확충함에 따라 예산도 2012년 78,700백만 원에서 2016년 108,500백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표 Ⅲ-4-28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16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600	15,261	7,630	7,630	7,63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913	7,259	7,407	8,623	10,780
요보호아동자립지원	960	1,014	1,024	1,021	1,000
가정위탁지원	1,521	1,369	1,232	1,232	1,232
지역아동센터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35, p.96.
보건복지부(2013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9, p.114, p.116.
보건복지부(2014b).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40.
보건복지부(2015d).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p.43-4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p.86.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5).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p.66, p.68.

* 주: 아동시설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 3개 사업은 2014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함.

③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16] 및 사후조치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3년 이후 평가는 2016년인 올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주로 살펴보았다. 2013년도에 아동복지시설 27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표 Ⅲ-4-29>, 평균 점수는 90.0점이었고(최소 43.0점, 최대 98.7점), 90점 이상의 점수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76개소

16)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평가결과내용은 2014년, 2015년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할 수밖에 없으나 제시 방식을 그래프로 변경하고 보다 다각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64.0%), 80점 이상 90점미만의 점수인 B등급을 받은 기관이 82개소, 전체 275개소 중에 258개소(93.8%)가 B등급 이상을 받아 대부분 기관의 운영수준이 높이 평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4c).

평가영역별로 점수를 보면[그림 Ⅲ-4-11], 아동의 비밀보장이나 고충처리, 인권보장 등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 영역이 9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의 시설 및 안전, 식품 위생 등의 시설 및 환경 영역(95.0점)이었으며,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평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92.0점), 재정 및 조직운영(88.2점), 인적자원관리(85.1점), 지역사회 관계(85.0점) 순이었다.

표 Ⅲ-4-29 아동복지시설 최종 평가결과 현황 (단위 : 개소, 점, %)

시설유형	시설수	평점				등급(개소,(%))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80점 미만)	D등급 (60-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아동복지시설	275	90.0	7.8	43.0	98.7	176 (64.0)	82 (29.8)	11 (4.0)	1 (0.4)	5 (1.8)

* 출처: 정무성, 정익중, 강흥구, 김동주, 김수삼, 이정선 외(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p.27. 표에서 일부 발췌함.



* 출처: 정무성, 정익중, 강흥구, 김동주, 김수삼, 이정선 외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p.29. 그래프 재구성.

【그림 Ⅲ-4-10】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정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를 받은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c). 또한 상위 우수시설과 종전 평가와 비교하여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학계, 협회, 우수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통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

등(보건복지부, 2014c)의 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및 내실화를 독려하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및 양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 가지 중분류 지표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기 위해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관계의 질을 살펴보았다. 2011년과 2014년에 만9-24세의 청소년이 주중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여성가족부, 2012a; 2014b)에 따르면, 아버지와의 주중에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은 2011년 23.9%에서 2014년 31.8%로 상승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도 2011년 45.2%에서 2014년 53.1%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거나 30분미만으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만9-12세('11년 56.3% → '14년 51.4%)에 비해 만13-24세('11년 79.4% → '14년 63.2%)의 청소년이 부모님과 더 적게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대화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대화를 많이 나누며, 13세 이상의 청소년기에는 부모님과 대화를 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더불어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1회 이상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나누는 대화주제는 주로 학교생활(50.8%)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책, TV, 영화 등(39.8%), 청소년 자신의 고민(33.8%), 정치와 사회적인 내용(15.2%)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4b),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는 주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의 대화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비율은 2011년 42.8%에서 2014 35.2%로 감소하여(여성가족부, 2012a; 2014b),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수준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 설치 수는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04년 26,903개소 → '13년 43,770개소)였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14년 43,742개소 → '15년 42,517개소)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의 경우,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약 4만 3천여 명이 감소한 1,452,813명이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도 꾸준히 감소('09년 9.1명 → '15년 4.5명)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아동 보육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올해 정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허용됨에 따라 교사는 연령대마다 1-3명의 아이를 더 돌보게 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16b), 이는 교사 대비 돌봄 아동 수가 증가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돌봄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제 보육 현장에서의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학교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는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5.2.).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소 수가 2004년 895개소에서 2015년에는 4,102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하는 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15년 109,66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에서 2015년에는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방과후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가정 및 양육환경이 제공된다. 먼저, 대안양육의 하나인 입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입양현황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6.5.4.), 2011년 2,464명에서 2013년 9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1,17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3년에 시행되면서 입양을 신청하는 양친부모의 자격이 강화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 절차가 복잡해진 점이 국내외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출산이 어렵거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입양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2012년 42.5%에서 2014년에 37.2%로 감소한 것을 볼 때(통계청, 2012.12.20.; 2014.11.27.),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가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483명에서 2015년 4,50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아동수도 감소('11년 15,486명 → '15년 13,728명)하였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또한 가정위탁을 수행하는 보호자 및 위탁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13,210명에서 2013년 11,279명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의 최근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와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가출경험율이 점차 감소('11년 5.5% → '16년 3.4%)하는 경향을 비교해 볼 때, 전체 가출청소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출의 주된 원인은 부모님과의 문제(60.7%),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함(12.8%), 학업부담(12.4%), 기타(10.6%), 학교문제(2.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가장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원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는 중장기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상담 및 자립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2008년 76개소에서 확대 설치되어 2015년에는 119개소(일시쉼터 26개소, 단기쉼터 52개소, 중장기쉼터 41개소)가 운영되어(여성가족부, 2015c)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출을 해본적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 10.4% 정도의 학생들만 가출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었으며(청소년 쉼터: 4.8%, 청소년 상담기관: 2.9%, 청소년 전화 1388: 1.9%, 청소년수련관(센터): 0.8%), 이들 중 58.1%가 해당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출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활용한 홍보가 요구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이후 2016년에 진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평가는 대부분 2013년도의 평가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들이 수정 및 추가 또는 삭제된 총 64개 지표로 평가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2015).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3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에 의하면, 평균 점수는 90.0점이었고(최소 43.0점, 최대 98.7점), 90점 이상의 점수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76개소(64.0%), 80점 이상 90점미만의 점수인 B등급을 받은 기관이 82개소로, 전체 275개소 중에 258개소(93.8%)가 B등급 이상을 받아 운영수준이 높이 평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4c). 이러한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통보하여 시설 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되며, 상위 평가를 받은 곳과 종전 평가대비 개선이 큰 시설은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 평가 시설에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 등(보건복지부, 2014c)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양육시설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 관리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양육시설의 예산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전체 보호·양육시설 예산은 2011년 81,759백만 원에서 2016년 129,142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88,067명이며 이는 2014년 보다 789명이 증가한 수치이다(교육부, 2015b). 전체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중 29.6%인 26,094명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학 중이며, 70.4%에 해당하는 61,973명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46,351명으로 2014년보다 548명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5,622명으로 2014년보다 522명 감소하였다.

표 Ⅲ-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2014	25,827(29.6)	45,803	15,648	61,451(70.4)	87,278(100.0)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 출처: 교육부(2015b).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

②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특수학교의 수는 167개교로 2014년에 비해 1개 학교가 늘어났으며, 특수학급의 수는 9,868개 학급으로 2014년에 비해 251개 학급이 증가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는 88,067명으로 2014년에 비해 789명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학생수는 장애영아 742명, 유치원 4,774명, 초등학교 33,591명, 중학교 21,108명, 고등학교 23,422명, 전공과 4,460명으로 중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18,339명으로 2014년에 비해 417명이 증가하였다.

표 Ⅲ-5-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 교, 학급, 명)

연도	특수학교수	특수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2014(A)	166	9,617	680	4,219	33,184	22,159	22,973	4,063	87,278	17,922
2015(B)	167	9,868	742	4,744	33,591	21,108	23,422	4,460	88,067	18,339
B − A	1	251	62	525	407	−1,051	449	397	789	417

* 출처: 교육부(2015b).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385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57.5%(1,372명)로 2014년 상급학교 진학률 54.8%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7.8%(185명)로 2014년 취업률 11.8%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이나 취업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34.7%(828명)로 2014년 무직률 33.4%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면 진학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취업률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 2009년 19.3%에서 2015년 7.8%로 대폭 감소한 상황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직률의 경우 2015년 1.3%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2015년에 발간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졸업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특수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전공과) 8,979명 중 37.4%인 3,358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으며, 30.4%인 1,710명은 취업하였고, 43.6%인 3,911명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진학자수) (%, (명))	취업률(취업자수) (%, (명))	무직률(무직자수) (%, (명))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2014	2,615	54.8(1,433)	11.8(308)	33.4(874)
2015	2,385	57.5(1,372)	7.8(185)	34.7(828)
2015[17]	8,979	37.4(3,358)	19.0(1,710)	43.6(3,911)

* 출처: 교육부(2015b).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82-85.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그 이후 얼마나 생존할 것인지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17)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 전공과 졸업자 취업현황을 모두 포함한 경우

말하며, 출생시 평균여명은 평균수명이라고도 한다. 즉,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으로 출생시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각년도). 2015년까지의 정부공식통계를 토대로 기대여명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조사된 한국의 평균수명은 82.06세로 2006년 78.78세에 비해 3.28세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매년 평균 0.36년씩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조사된 한국의 기대수명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8.98세, 여자의 경우 86.17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의 기대수명보다 7.19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과 여자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6.68세로 성별에 따른 기대 수명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4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2005	75.14	81.89	78.63
2006	75.74	82.36	79.18
2007	76.13	82.73	79.56
2008	76.54	83.29	80.08
2009	76.99	83.77	80.55
2010	77.20	84.07	80.79
2011	77.65	84.45	81.20
2012	77.95	84.65	81.44
2013	78.51	85.06	81.94
2014	79.00	85.50	82.4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각년도).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2758에서 2016년 12월 7일 인출.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②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란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것으로,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만큼 보건 수준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각년도). 2015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기대여명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 사망률은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을 합한 비율로 나타내는데 2015년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1.5%,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1.2%로 나타났으며, 이 둘을 합한 영아사망률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10			2011			2012			2013			2014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사망률	2.1	1.5	1.8	2.0	1.5	1.7	1.9	1.5	1.7	1.8	1.6	1.7	1.8	1.6	1.7
신생아후기사망률	1.6	1.2	1.4	1.6	1.2	1.3	1.1	1.1	1.2	1.3	1.2	1.3	1.4	1.2	1.3
영아사망률	3.7	2.7	3.2	3.4	2.7	3.0	3.1	2.7	2.9	3.1	2.9	3.0	3.2	2.8	3.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각 년도).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 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21.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aSeq=356345&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6년 12월 7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 (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최근 통계자료인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세로 310.2명이었으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0세-14세로 8.7명이었다. 사망률은 출생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15세-19세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인 질병 이외의 사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이 많아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0세 사망률과 15세-19세 사망률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표 Ⅲ-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사망자수)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508	345.5	1,435	318.9	1,405	306.8	1,305	294.6	1,305	310.2
1-4세	386	20.9	389	20.9	377	20.2	342	18.3	289	15.4
5-9세	277	10.8	239	10.0	268	11.4	253	10.8	204	8.8
10-14세	417	12.7	402	12.6	325	10.7	272	9.5	239	8.7
15-19세	1,034	29.4	1,003	28.3	905	25.8	812	23.6	870	25.9
20-24세	1,411	45.1	1,318	41.7	1,255	38.6	1,217	36.3	1,131	32.9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3&vw_ cd=MT_OTITLE&list_id=MT_CTITLE_CB&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③ 사고 사망률

사고 사망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0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2014년에 비해 사고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세-29세의 사고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0세, 1-9세, 그리고 10-19세의 경우 작은 폭이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표 Ⅲ-5-7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0세	18.6	16.9	16.8	13.8	12.4
1-9세	5.5	4.8	5.4	5.0	4.0
10-19세	12.7	12.7	11.0	10.1	11.3
20-29세	39.0	36.8	31.6	28.7	27.1

* 출처: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6 /2/index.board?bmode=read&aSeq=356345&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6년 12월 7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표 Ⅲ-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 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7	0.5	0.2	–	–
	1-9세	2.8	0.7	0.4	0.2	0.1	–
	10-19세	4.8	0.3	0.9	0.1	0.0	5.2
	20-29세	9.0	0.7	0.8	0.3	0.1	24.4
2011	0세	1.3	0.9	–	–	–	–
	1-9세	2.1	0.7	0.7	0.2	–	–
	10-19세	4.7	0.2	0.7	0.2	–	5.5
	20-29세	7.9	0.7	0.9	0.1	0.1	24.3
2012	0세	1.3	1.3	0.4	–	–	–
	1-9세	2.0	0.6	0.7	0.3	0.0	–
	10-19세	3.8	0.3	0.8	0.2	–	5.1
	20-29세	7.7	0.6	0.8	0.3	0.2	19.5
2013	0세	0.5	1.1	0.2	0.2	–	–
	1-9세	2.1	0.5	0.7	0.3	0.0	–
	10-19세	3.3	0.4	0.7	0.1	0.0	4.9
	20-29세	7.2	0.6	0.5	0.1	0.2	18.0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4	0세	1.7	1.4	1.0	–	0.0	–
	1–9세	1.2	0.6	0.4	0.1	–	0.0
	10–19세	4.8	0.2	0.6	0.2	–	4.5
	20–29세	6.0	0.5	0.5	0.2	0.1	17.8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 e=read&aSeq=308559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6 /2/index.board?bmode=read&aSeq=356345&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6년 12월 7일 인출.

* 주 :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연령대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사고사망의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세-19세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사의 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20세-29세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0세 이상 29세까지 연령의 자살률은 2014년을 제외한다면,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살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소폭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가 2012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청소년 범죄피해 건수는 90,568건으로 2013년의 범죄피해건수보다 20건 감소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56,796건으로 2013년(55.518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33,772건으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전체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2013	55,518	2,785,807	20.0	35,070	2,496,525	14.0	90,588	5,282,332	17.1
2014	56,796	–	–	33,772	–	–	90,568	–	–

* 출처: 통계청(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주: 1) 피해율: 인구 1천 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0세

② 안전에 대한 인식률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 29.0%, '그런 편이다' 61.4%로 학교 급식에 대한 안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90.4%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안전도와 관련하여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 급식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3.21점으로 동일하였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3.13점으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7(0.65)	2.0	7.6	61.4	29.0	100.0(10,975)	–
성별	남자		3.17(0.68)	2.8	8.1	58.8	30.4	100.0(5,710)	60.628***
	여자		3.18(0.60)	1.2	7.0	64.3	27.5	100.0(5,26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3(0.61)	0.8	4.1	46.0	49.1	100.0(3,135)	1170.867***
	중학교		3.20(0.59)	1.4	5.4	65.0	28.2	100.0(3,702)	
	고등학교	전체	2.95(0.64)	3.5	12.1	69.9	14.5	100.0(4,137)	
		일반계고	2.97(0.65)	3.6	11.8	68.4	16.2	100.0(3,328)	
		특성화계고	2.89(0.56)	3.0	13.3	76.0	7.8	100.0(810)	
지역 규모	대도시		3.21(0.65)	1.7	7.3	59.0	31.9	100.0(4,413)	49.152***
	중소도시		3.13(0.65)	2.4	8.0	63.5	26.1	100.0(5,225)	
	읍면지역		3.21(0.62)	1.5	6.5	61.1	30.9	100.0(1,3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8(0.64)	2.0	7.2	61.4	29.4	100.0(9,855)	35.511***
	한부모가정		3.08(0.63)	1.8	10.8	64.8	22.6	100.0(803)	
	조손가정		3.20(0.72)	2.1	11.1	51.5	35.4	100.0(106)	
	기타		3.18(0.67)	1.5	10.6	56.8	31.1	100.0(210)	
학업 성적	상		3.26(0.64)	1.5	6.3	56.5	35.7	100.0(3,556)	212.297***
	중		3.19(0.63)	1.5	7.3	62.1	29.0	100.0(4,658)	
	하		3.04(0.66)	3.5	9.5	66.7	20.3	100.0(2,719)	
경제적 수준	상		3.24(0.65)	1.8	6.7	57.2	34.3	100.0(5,689)	176.809***
	중		3.12(0.63)	2.1	8.0	65.2	24.7	100.0(3,913)	
	하		3.04(0.63)	2.8	9.9	67.8	19.5	100.0(1,32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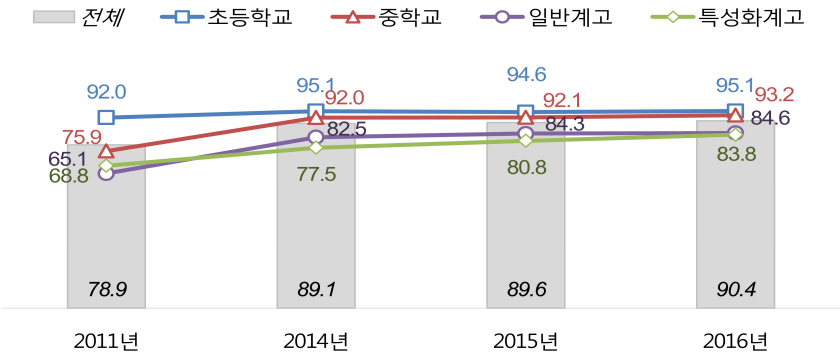

【그림 Ⅲ-5-1】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연도별 추이)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관한 인식률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학교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78.9%에서 2014년 89.1%, 2015년 89.6%, 2016년 90.4%로 매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학교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였던데 비해서, 2016년에는 84.6%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6(0.81)	7.3	26.2	49.8	16.7	100.0(11,082)	-
성별	남자		2.89(0.82)	7.0	19.1	51.7	22.2	100.0(5,758)	455.084***
	여자		2.62(0.78)	7.7	33.9	47.6	10.8	100.0(5,3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1(0.82)	5.1	17.4	48.5	28.9	100.0(3,156)	600.765***
	중학교		2.72(0.79)	6.9	27.9	51.1	14.1	100.0(3,727)	
	고등학교	전체	2.60(0.79)	9.3	31.4	49.5	9.9	100.0(4,199)	
		일반계고	2.60(0.78)	9.3	30.7	50.5	9.5	100.0(3,374)	
		특성화계고	2.59(0.81)	9.3	34.2	45.2	11.4	100.0(826)	
지역 규모	대도시		2.81(0.81)	6.8	23.7	51.5	17.9	100.0(4,448)	37.434***
	중소도시		2.71(0.82)	7.8	28.2	48.5	15.4	100.0(5,271)	
	읍면지역		2.78(0.82)	6.8	26.6	48.8	17.9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8(0.81)	7.0	25.5	50.5	17.0	100.0(9,946)	64.826***
	한부모가정		2.59(0.81)	8.9	35.3	43.8	12.0	100.0(816)	
	조손가정		2.73(0.89)	9.9	27.0	43.3	19.8	100.0(107)	
	기타		2.66(0.93)	13.3	25.1	43.4	18.2	100.0(214)	
학업 성적	상		2.88(0.81)	5.5	22.8	49.6	22.1	100.0(3,574)	207.480***
	중		2.76(0.79)	6.8	26.0	51.7	15.5	100.0(4,708)	
	하		2.60(0.83)	10.3	31.1	46.8	11.7	100.0(2,758)	
경제적 수준	상		2.87(0.82)	6.5	21.4	50.3	21.8	100.0(5,742)	433.868***
	중		2.70(0.77)	6.5	29.2	51.6	12.7	100.0(3,954)	
	하		2.43(0.80)	13.0	38.2	42.0	6.7	100.0(1,337)	

***$p<.001$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66.5%로 부정적 응답보다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 결과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56.8%였으며, 2014년 61.3%, 2015년 64.5%, 2016년 6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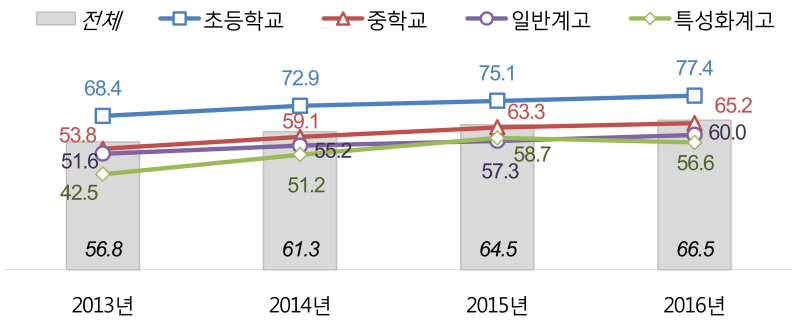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 4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61.5%로 긍정적 응답비율이 부정적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교통사고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조사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52.9%였으나 2014년에는 56.4%, 2015년에는 59.9%, 2016년에는 61.5%로 매년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응답을 제외한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3년 조사 결과 50% 미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2014년 조사 이후 5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표 Ⅲ-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7(0.81)	8.0	30.5	48.1	13.4	100.0(11,070)	–
성별	남자		2.75(0.84)	8.4	25.5	48.5	17.6	100.0(5,751)	260.712***
	여자		2.58(0.76)	7.5	36.0	47.6	8.9	100.0(5,3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6(0.84)	6.6	23.4	47.6	22.4	100.0(3,149)	360.728***
	중학교		2.63(0.77)	7.5	32.9	48.8	10.7	100.0(3,725)	
	고등학교	전체	2.57(0.78)	9.4	33.7	47.8	9.1	100.0(4,196)	
		일반계고	2.56(0.78)	9.6	33.3	48.4	8.7	100.0(3,370)	
		특성화계고	2.58(0.79)	8.6	35.5	45.2	10.7	100.0(826)	
지역 규모	대도시		2.69(0.81)	7.9	29.2	48.7	14.2	100.0(4,444)	15.243*
	중소도시		2.64(0.80)	8.0	31.8	47.8	12.4	100.0(5,265)	
	읍면지역		2.69(0.82)	8.0	29.9	47.1	15.0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8(0.80)	7.7	30.4	48.4	13.6	100.0(9,934)	28.413***
	한부모가정		2.58(0.80)	9.5	33.4	46.6	10.5	100.0(816)	
	조손가정		2.61(0.87)	12.7	26.5	48.1	12.7	100.0(107)	
	기타		2.59(0.92)	13.6	29.9	40.4	16.1	100.0(213)	
학업 성적	상		2.76(0.82)	6.7	28.2	47.5	17.6	100.0(3,570)	129.785***
	중		2.67(0.79)	7.5	30.3	49.8	12.4	100.0(4,699)	
	하		2.55(0.81)	10.4	34.0	45.8	9.8	100.0(2,758)	
경제적 수준	상		2.75(0.82)	7.3	27.2	48.3	17.2	100.0(5,738)	234.278***
	중		2.63(0.76)	7.4	32.9	49.6	10.2	100.0(3,949)	
	하		2.44(0.80)	12.5	38.0	42.7	6.9	100.0(1,335)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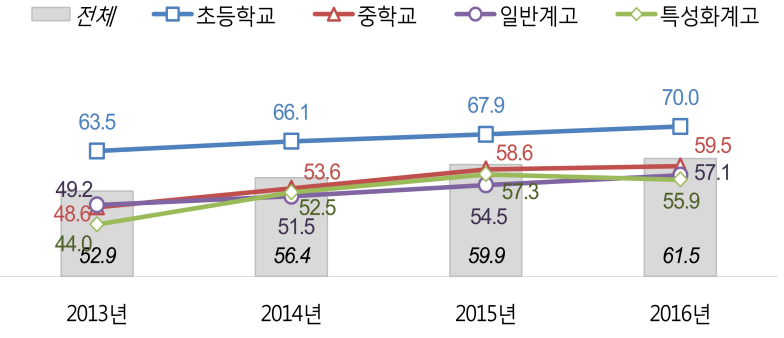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 63.4%, '매우 그렇다' 16.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80.0%로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보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거주지역의 음식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인근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70)	4.4	15.7	63.4	16.6	100.0(11,067)	-
성별	남자		2.97(0.74)	5.1	13.9	60.0	20.9	100.0(5,751)	198.864***
	여자		2.87(0.65)	3.5	17.5	67.1	11.9	100.0(5,3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3(0.77)	4.6	14.7	54.0	26.7	100.0(3,147)	358.639***
	중학교		2.90(0.69)	4.3	16.2	64.9	14.5	100.0(3,724)	
	고등학교	전체	2.87(0.65)	4.2	15.9	69.1	10.8	100.0(4,196)	
		일반계고	2.87(0.64)	4.1	15.5	69.9	10.6	100.0(3,370)	
		특성화계고	2.85(0.67)	4.5	17.5	66.3	11.7	100.0(826)	
지역 규모	대도시		2.95(0.70)	4.0	14.7	63.3	18.0	100.0(4,442)	32.455***
	중소도시		2.91(0.69)	4.3	16.0	64.7	15.1	100.0(5,264)	
	읍면지역		2.89(0.76)	5.7	17.6	58.8	17.9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3(0.70)	4.2	15.5	63.4	16.9	100.0(9,932)	32.563***
	한부모가정		2.86(0.69)	5.0	16.6	65.7	12.8	100.0(816)	
	조손가정		2.79(0.79)	9.1	16.3	60.9	13.6	100.0(106)	
	기타		2.78(0.82)	8.2	21.6	53.7	16.5	100.0(213)	
학업 성적	상		3.00(0.70)	3.6	13.8	61.2	21.4	100.0(3,570)	121.930***
	중		2.91(0.69)	4.2	15.7	64.6	15.5	100.0(4,699)	
	하		2.83(0.70)	5.7	17.6	64.6	12.1	100.0(2,755)	
경제적 수준	상		2.99(0.72)	4.1	13.7	60.8	21.4	100.0(5,736)	240.584***
	중		2.88(0.66)	4.0	16.6	67.2	12.2	100.0(3,949)	
	하		2.75(0.70)	6.6	20.5	64.0	8.9	100.0(1,335)	

***$p<.001$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변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2014년에는 72.0%, 2015년에는 77.0%, 2016년에는 8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 응답비율은 학교급(초, 중, 고)이나 학교의 특성(일반계고, 특성화계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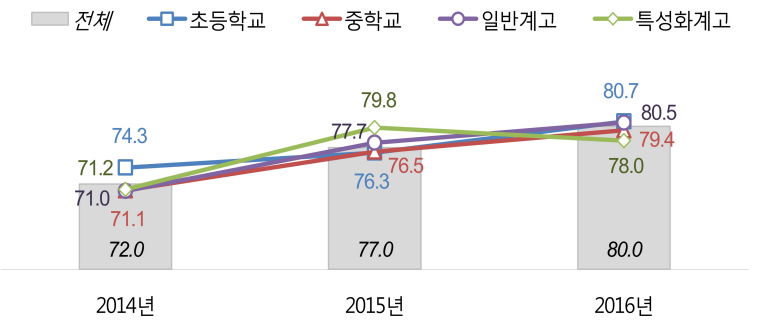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 현황

표 Ⅲ-5-14 2015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5,978	3,204	2,344	167	11,693
보건교사배치	4,133 (69.1)	1,625 (50.7)	1,563 (66.7)	145 (86.8)	7,466 (63.9)

* 출처: 교육부(2016d).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6.1.). p.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itemCode=02&menuId=0&language=en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2015년 전체 학교수는 11,693개교이며 총 7,466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은 63.9%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6.8%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69.1%, 고등학교 66.7%, 중학교 50.7%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 보건교사 배치율은 65.4%였지만 2015년 63.9%로 보건교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학교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건교사 배치율	65.4	65.5	64.9	65.4	63.9

* 출처: 교육부(2016d).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6.1.). p.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 ?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itemCode=02&menuId=0&language=en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②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의 건강관련 시설의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시설 수는 66,926개소이며, 이 중 의원이 전체 시설의 45.9%인 30,689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며, 치과의원 23.8%, 한의원 19.6% 등의 순으로 건강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시설의 경우 그 유형과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Ⅲ-5-16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단위 : 개(%))

연도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10	253 (0.4)	1,294 (2.2)	1,912 (3.2)	312 (0.5)	849 (1.4)	1,154 (1.9)	27,334 (46.0)	3 (0.0)	1 (0.0)	143 (0.2)	188 (0.3)	14,074 (23.7)	159 (0.3)	11,804 (19.8)	59,480 (100.0)
2011	253 (0.4)	1,305 (2.1)	1,908 (3.1)	319 (0.5)	975 (1.6)	1,245 (2.0)	27,909 (45.2)	3 (0.0)	1 (0.0)	144 (0.2)	199 (0.3)	15,002 (24.3)	178 (0.3)	12,305 (19.9)	61,746 (100.0)
2012	254 (0.4)	1,315 (2.1)	1,895 (3.0)	323 (0.5)	1,087 (1.7)	1,327 (2.1)	28,762 (45.8)	3 (0.0)	1 (0.0)	156 (0.2)	202 (0.3)	14,800 (23.6)	199 (0.3)	12,440 (19.8)	62,764 (100.0)
2013	253 (0.3)	1,323 (2.0)	1,900 (3.0)	324 (0.5)	1,228 (1.9)	1,331 (2.1)	28,816 (44.9)	3 (0.0)	1 (0.0)	160 (0.2)	200 (0.3)	15,579 (24.3)	203 (0.3)	12,816 (20.0)	64,137 (100.0)
2014	254 (0.3)	1,339 (2.0)	1,904 (2.8)	321 (0.4)	1,304 (1.9)	1,436 (2.1)	30,689 (45.9)	3 (0.0)	2 (0.0)	170 (0.3)	202 (0.3)	15,933 (23.8)	234 (0.3)	13,135 (19.6)	66,92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pp.189-191.

③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을 확인하게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지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다. 소아 비만 유병률과 관련된 국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소아청소년을 2세에서 18세로 보고 2세-5세,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각 연령대 별로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비만 유병률만 조사하고, 정상과 과체중의 분율은 통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정상, 과체중, 비만 등의 비율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2014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11.5%로 2013년의 10%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6세-11세의 비만율은 2013년 6.1%에서 2014년 5.9%로 감소하였지만, 12세-18세의 비만율은 2013년 12.7%에서 2014년 1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7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연도	연령	정상1) 분율(표준오차)	과체중2) 분율(표준오차)	비만3) 분율(표준오차)	전체(N)
2011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2012	전체(2-18세)	82.7(1.3)	7.8(0.8)	9.6(1.0)	1,530
	2-5세	87.5(2.3)	10.7(2.2)	1.9(1.0)	349
	6-11세	82.7(1.9)	10.3(1.6)	7.1(1.3)	557
	12-18세	80.8(1.9)	5.1(1.0)	14.1(1.7)	624
2013	전체(6-18세)	-	-	10.0(0.9)	1,291
	6-11세	-	-	6.1(1.0)	633
	12-18세	-	-	12.7(1.4)	658
2014	전체(6-18세)	80.9(1.3)	7.6(0.8)	11.5(1.1)	1015
	6-11세	83.5(1.7)	10.6(1.5)	5.9(1.1)	516
	12-18세	79.0(1.8)	5.5(1.0)	15.5(1.7)	499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50, p.244

* 주: 1) 정상: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2014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3.1%였으며, 남자의 경우 3.8%, 여자의 경우 2.4%로 남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12세-18세의 경우 전체 천식 유병률은 3.3%였으며, 남자의 경우 3.5%, 여자의 경우 3.0%로 남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하' 5.1%, '하' 2.9%, '중상' 2.3%, '상' 1.9% 등의 순으로 천식 유병률이 나타나 저소득층 가정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18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유병률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2012	천식유병률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2013	천식유병률	1-11세	7.8(1.3)	581	3.8(0.9)	526	5.9(0.9)	1,107
		12-18세	4.4(1.2)	331	5.8(1.7)	315	5.0(1.0)	646
	소득수준	하	6.5(1.9)	228	4.3(1.6)	209	5.4(1.3)	437
		중하	7.9(2.1)	224	5.5(1.5)	206	6.7(1.4)	430
		중상	5.1(1.5)	243	6.5(2.5)	211	5.8(1.5)	454
		상	5.6(1.9)	210	2.3(1.1	210	4.0(1.2)	420
2014	천식유병률1)	1-11세	3.8(1.0)	511	2.4(1.0)	457	3.1(0.7)	968
		12-18세	3.5(1.3)	261	3.0(1.1)	230	3.3(0.8)	491
	소득수준2)	하	1.9(0.9)	185	4.1(1.8)	168	2.9(1.0)	353
		중하	5.2(1.6)	196	5.0(2.4)	171	5.1(1.5)	367
		중상	3.5(1.9)	198	1.0(0.7)	173	2.3(1.0)	371
		상	3.3(1.4)	187	0.3(0.3)	173	1.9(0.7)	36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3.
* 주: 1) 천식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본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3%에서 2014년 3.1%로 감소한 반면, 12세-18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 3.3%로 변화가 없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세-11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9%에서 2014년 3.8%로 감소하였으며, 12세-18세 천식 유병률은 3.9%에서 3.5%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 1세-11세 천식 유병률은 7.6%에서 2.4%로 감소한 반면, 12세-18세 천식 유병율은 2.7%에서 3.0%로 증가하였다.

표 Ⅲ-5-19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2013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4(0.6)	581	2.1(0.8)	526	1.7(0.5)	1,107
		12-18세	0.7(0.5)	330	1.9(0.8)	315	1.3(0.5)	645
	아토피피부염	1-11세	19.1(1.8)	581	18.8(2.1)	526	19.0(1.5)	1,107
		12-18세	10.0(1.9)	331	19.2(2.5)	315	14.4(1.5)	646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2(0.5)	581	0.0(-)	526	0.6(0.3)	1,107
		12-18세	2.7(1.0)	330	2.2(0.9)	315	2.5(0.7)	645
	요로감염	1-11세	5.3(1.1)	581	4.9(1.1)	526	5.1(0.8)	1,107
		12-18세	1.5(0.5)	331	1.5(0.7)	315	1.5(0.4)	646
	폐렴	1-11세	17.7(2.1)	581	17.7(1.8)	526	17.7(1.6)	1,107
		12-18세	7.9(1.8)	330	6.9(1.8)	315	7.4(1.3)	645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4	선천성심장질환1)	1-11세	0.2(0.2)	512	0.9(0.5)	457	0.6(0.2)	969
		12-18세	0.4(0.4)	261	1.8(1.1)	230	1.1(0.6)	491
	아토피피부염2)	1-11세	15.7(2.0)	511	11.1(1.7)	457	13.5(1.3)	968
		12-18세	10.8(2.1)	260	15.6(2.7)	230	13.1(1.7)	490
	주의력결핍장애3)	1-11세	1.9(0.6)	512	0.0(-)	457	1.0(0.3)	969
		12-18세	2.2(1.0)	261	1.4(1.0)	230	1.8(0.7)	491
	요로감염4)	1-11세	2.8(0.7)	511	2.5(0.8)	456	2.7(5.0)	967
		12-18세	1.5(0.8)	261	1.1(0.7)	230	1.3(0.6)	491
	폐렴5)	1-11세	14.6(1.7)	512	12.3(1.6)	457	13.5(1.2)	969
		12-18세	4.6(1.2)	261	7.5(1.9)	230	6.0(1.1)	491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9.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율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율
4) 요로감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율
5) 폐렴 유병률: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율
6)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변동계수 50% 이상

2014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의 각 질환별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세-11세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의 유병률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 12세-18세의 경우 역시 아토피 피부염 13.1%, 폐렴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질환별 유병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천성심장질환과 아토피 피부염은 1세-11세의 경우와 12세-18세의 경우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 감소하였다. 주의력결핍장애의 경우 1세-11세는 0.6%에서 1.0%의 범위 안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12세-18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 감소하였다. 요로감염의 경우 1세-11세는 2.0%에서 5.1%의 범위 안에서 유병률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12세-18세 역시 0.9%에서 1.5% 범위 안에서 유병률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폐렴은 1세-11세의 경우와 12세-18세의 경우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 감소하였다.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던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2012년까지 국민건강 통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 국민건강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14년부터 다시 국민건강 통계에 포함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보면 47.8%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45.2% 보다는 증가한 수치지만, 2012년의 49.7%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어릴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4.7%였으며 이는 2013년 5.0%보다 0.3%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중상'인 경우 5.9%, '하'인 경우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I-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73.9	57.4	31.7	16.3	45.2	39.3	46.9	49.7	46.1
	(표준오차)	(2.2)	(2.6)	(3.1)	(2.5)	(1.9)	(3.3)	(3.2)	(3.5)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74.0	56.6	36.0	24.2	47.3	42.4	49.6	49.6	50.1
	(표준오차)	(2.7)	(2.9)	(3.8)	(2.7)	(2.0)	(3.9)	(3.6)	(3.8)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78.6	59.7	38.3	23.5	49.7	48.0	50.5	51.1	48.4
	(표준오차)	(2.9)	(2.7)	(4.0)	(3.0)	(1.9)	(3.5)	(3.8)	(3.6)	(3.7)
2013	N	–	–	–	–	–	–	–	–	–
	분율	–	–	–	–	–	–	–	–	–
	(표준오차)									
2014	N	457	501	221	262	1,441	347	364	366	356
	분율	79.2	55.2	31.4	20.1	47.8	51.4	49.8	45.2	44.9
	(표준오차)	(2.0)	(3.2)	(3.7)	(2.7)	(2.0)	(4.1)	(3.4)	(3.4)	(3.3)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121.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표 Ⅲ-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2.7	5.8	10.1	11.1	7.4	9.1	7.0	5.7	7.2
	(표준오차)	(0.6)	(1.0)	(1.8)	(2.1)	(0.8)	(1.9)	(1.4)	(1.1)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6.1	4.8	7.3	10.6	7.2	9.4	6.6	4.8	7.9
	(표준오차)	(1.5)	(1.2)	(1.7)	(2.0)	(0.9)	(2.4)	(1.6)	(1.3)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5.2	4.8	8.7	12.5	7.8	7.6	9.9	8.1	5.6
	(표준오차)	(2.0)*	(1.1)	(2.0)	(2.0)	(0.9)	(1.6)	(2.3)	(1.8)	(1.6)*
2013	N	485	622	292	353	1,752	437	429	454	420
	분율	0.8	3.4	3.6	11.2	5.0	7.7	4.7	4.9	2.3
	(표준오차)	(0.4)	(0.9)	(1.1)	(1.9)	(0.7)	(1.7)	(1.2)*	(1.4)	(0.7)
2014	N	462	507	222	267	1,458	354	367	369	360
	분율	1.0	2.8	7.9	8.3	4.7	5.2	4.7	5.9	2.4
	(표준오차)	(0.6)	(0.9)	(1.8)	(1.9)	(0.7)	(1.7)	(1.3)	(1.5)	(0.9)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324.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최근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11.8%로 2013년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13.4%보다 1.6% 포인트 감소하였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5세-18세 21.3%, 6세-11세 9.2% 등의 순이었으며,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15.2%, '상'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5.3%에서 2014년 11.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14.5	21.0	26.2	38.6	25.3	33.2	25.3	20.6	19.4
	(표준오차)	(1.7)	(2.4)	(2.8)	(3.5)	(1.5)	(2.9)	(3.2)	(2.2)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15.2	12.4	16.1	31.9	19.3	22.7	19.1	17.5	16.2
	(표준오차)	(2.0)	(1.8)	(2.4)	(2.6)	(1.1)	(2.1)	(2.6)	(2.3)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10.6	12.6	18.2	30.4	18.2	21.9	18.2	13.7	18.4
	(표준오차)	(1.8)	(1.8)	(2.6)	(2.9)	(1.3)	(2.5)	(2.4)	(2.7)	(3.2)
2013	N	485	622	289	349	1,745	436	430	451	416
	분율	8.6	8.3	13.9	23.1	13.4	19.4	13.7	10.9	9.2
	(표준오차)	(1.8)	(1.5)	(2.2)	(2.8)	(1.1)	(26)	(2.0)	(1.8)	(1.8)
2014	N	462	507	224	265	1,458	353	367	371	359
	분율	7.3	9.2	8.5	21.3	11.8	15.2	12.3	5.7	13.2
	(표준오차)	(1.4)	(1.8)	(2.1)	(2.9)	(1.1)	(2.3)	(1.9)	(1.5)	(2.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3.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은 최근 2년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은2013년까지는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4년부터 국민건강통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2주간의 약국 이용률은 25.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세-5세 39.6%, 6세-11세 2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27.1%, '상'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국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 약국 이용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43.1	23.3	20.3	14.6	24.8	24.1	26.8	22.0	26.3
	(표준오차)	(2.8)	(2.0)	(2.7)	(2.2)	(1.5)	(2.5)	(2.8)	(2.2)	(2.6)
2011	N	537	631	308	349	1,825	433	459	459	457
	분율	42.3	23.5	18.6	25.0	27.1	25.0	26.6	25.8	31.9
	(표준오차)	(3.6)	(1.9)	(2.8)	(2.9)	(1.5)	(2.6)	(2.9)	(2.9)	(2.5)
2012	N	447	554	315	295	1,611	390	399	407	402
	분율	48.3	22.6	15.9	20.4	26.6	24.3	28.3	27.2	27.1
	(표준오차)	(3.8)	(2.7)	(2.5)	(2.9)	(1.4)	(2.9)	(2.8)	(2.9)	(3.0)
2013	N	485	622	293	353	1,753	438	430	453	420
	분율	39.6	22.8	17.7	22.1	25.8	27.1	25.3	24.9	26.4
	(표준오차)	(2.8)	(1.9)	(2.4)	(2.6)	(1.2)	(2.5)	(2.4)	(2.5)	(2.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p.27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p.25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p.3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337.
* 주: 1) 2주간 약국이용률: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흡연율은 7.8%로 나타나 2014년 흡연율 9.2%보다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3.3%,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7%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의 흡연율이 0.9%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14.0%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9년에는 12.8%에서 2010년에는 12.1%, 2011년에는 12.1%, 2012년에는 11.4%, 2013년에는 9.7%, 2014년에는 9.2%, 2015년에는 7.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5-24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음주율은 16.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의 평균 음주율 16.4%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중학생의 경우 7.4%, 고등학생의 경우 24.9%로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중학생의 3배 이상에 달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의 음주율 4.6%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음주율은 29.5%로 나타나 금연율과 마찬가지로 음주율 역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음주율과 2015년의 음주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음주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학년 보다는 저학년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표 Ⅲ-5-25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8-99.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표 Ⅲ-5-26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학생	0.9	0.8	0.6	0.5	0.6	-
여학생	0.5	0.5	0.6	0.4	0.3	-
전 체	0.7	0.7	0.6	0.5	0.5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56-35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평생 약물 경험률은 11차 온라인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기에 2015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이다. 따라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평생약물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로 2013년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6%, 여학생의 경우 0.3%로 남학생의 약물 경험률이 여학생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평생 약물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2012년, 남학생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④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59.6%로 2014년 57.5%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중학생 65.7%, 고등학생이 54.2%로 중학생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의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67.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학교 3학년 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45.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Ⅲ-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78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34.6%로 2014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33.1%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42.8%로 고등학생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27.3%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45.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9.7%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2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1)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건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60.6%,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83.5%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두 항목 응답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84.6%, 여자의 경우 82.4%로 남자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92.5%, 중학교 85.8%, 고등학교74.7%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1.3	15.2	60.6	22.9	100.0(11,108)	-
성별	남자		1.5	14.0	57.9	26.7	100.0(5,779)	104.591***
	여자		1.1	16.5	63.6	18.8	100.0(5,3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0.8	6.7	58.7	33.8	100.0(3,156)	658.039***
	중학교		1.0	13.3	62.8	23.0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2.0	23.3	60.0	14.7	100.0(4,219)	
		일반계고	2.0	23.2	59.7	15.0	100.0(3,389)	
		특성화계고	1.7	23.5	61.4	13.4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4	13.4	60.0	25.3	100.0(4,464)	42.906***
	중소도시		1.1	16.8	60.9	21.2	100.0(5,280)	
	읍면지역		1.9	15.0	61.3	21.8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	14.6	60.9	23.3	100.0(9,966)	67.059***
	한부모가정		2.4	21.9	60.6	15.1	100.0(819)	
	조손가정		1.3	17.8	52.1	28.7	100.0(108)	
	기타		1.0	17.0	52.2	29.8	100.0(214)	
학업 성적	상		0.9	11.8	58.1	29.1	100.0(3,583)	278.058***
	중		1.1	13.4	63.9	21.7	100.0(4,717)	
	하		2.2	22.4	58.4	16.9	100.0(2,763)	
경제적 수준	상		0.9	11.4	59.1	28.6	100.0(5,753)	453.005***
	중		1.3	16.3	63.8	18.6	100.0(3,967)	
	하		3.1	28.2	57.6	11.1	100.0(1,337)	

***$p<.001$

지역규모에 따른 긍정적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85.3%, 읍면지역 83.1%, 중소도시 8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 84.2%, 한부모가정 75.7%, 조손가정 80.8%, 기타 82.0% 로 나타나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다른 가족 유형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업성적에 따라 비교해 보면 '상' 87.2%, '중' 85.6%, '하' 7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상' 87.7%, '중' 82.4%, '하' 6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 정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사 결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3.5%로 2015년의 조사결과 85.7%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5년의 80.3%에서 2016년에는 7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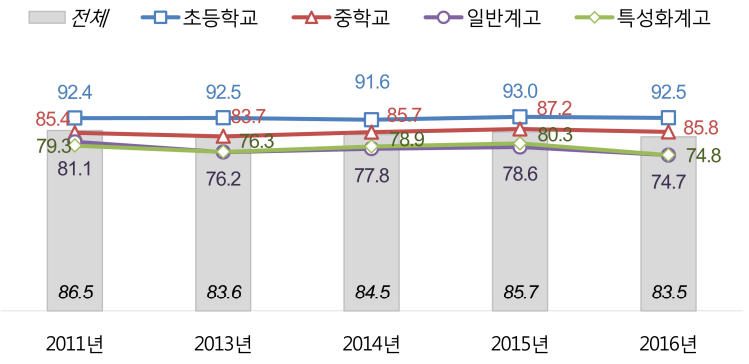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5】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도별 추이

(2) 신체적 건강

① 운동실천율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이 3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일주일에 1-2회' 27.5%, '전혀 하지 않는다' 22.5%, '한 달에 1-2회 정도' 1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은 14.4%로 여자 청소년(31.2%)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8.3%, 중학교 22.0%, 고등학교 33.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2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족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27.2%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운동실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 역시 낮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5	19.4	27.5	30.6	100.0(11,114)	–
성별	남자		14.4	15.8	29.0	40.8	100.0(5,784)	849.000***
	여자		31.2	23.4	25.9	19.5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	14.0	31.7	45.9	100.0(3,160)	1005.097***
	중학교		22.0	21.1	28.0	28.9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33.5	22.0	24.0	20.5	100.0(4,219)	
		일반계고	34.8	22.1	23.5	19.6	100.0(3,389)	
		특성화계고	28.5	21.5	25.8	24.3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21.7	19.0	27.8	31.5	100.0(4,463)	17.837**
	중소도시		23.7	20.1	26.9	29.3	100.0(5,288)	
	읍면지역		20.1	18.5	28.8	32.5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3	19.5	27.5	30.7	100.0(9,972)	22.014**
	한부모가정		27.2	19.7	25.6	27.5	100.0(820)	
	조손가정		20.8	16.9	30.9	31.4	100.0(108)	
	기타		14.8	17.9	32.0	35.2	100.0(214)	
학업 성적	상		19.7	18.6	28.3	33.4	100.0(3,584)	69.221***
	중		21.8	20.0	28.5	29.8	100.0(4,721)	
	하		27.3	19.7	24.8	28.2	100.0(2,765)	
경제적 수준	상		17.6	18.9	29.5	33.9	100.0(5,757)	208.896***
	중		26.7	20.2	25.3	27.8	100.0(3,968)	
	하		31.3	19.5	25.2	24.0	100.0(1,338)	

**$p<.01$, ***$p<.001$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중심으로 운동실천율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즉, 2016년 조사 결과를 보면 77.5%로 2015년 78.9%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이는 학교급별로 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실천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중학교, 일반계고 및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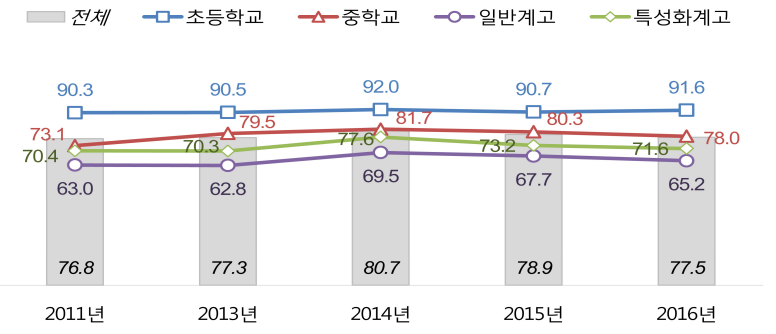

* 주: '전혀 하지 않는다'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5-6】 운동실천율 : 연도별 변화추이

② 아침식사 결식률

등교전 아침식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는 53.6%, '보통 먹는 편이다'는 17.2%로 나타나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먹는 학생의 비율은 70.8%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는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과 관련하여 조사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남자 3.08점, 여자 2.99점으로 여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남학생보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초등학교 3.33점, 중학교 3.04점, 고등학교 2.82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라서 결식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2.71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고, 양부모가정의 경우 3.07점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 역시 낮을수록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먹는 편이다'와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두 개의 항목의 응답 비율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아침식사 결식률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응답비율이 70.7%로 2015년 73.0%보다 2.3% 감소했으며, 2011년의 응답 78.7% 보다는 8% 감소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의 경우 그 감소폭이 적은 반면 특성화계고의 경우 감소폭이 커서 특성화계고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5-31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는 편이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전체(N)	χ^2
전체			3.04(1.20)	20.5	8.7	17.2	53.6	100.0(10,979)	–
성별	남자		3.08(1.18)	19.4	8.3	17.2	55.1	100.0(5,703)	15.616**
	여자		2.99(1.22)	21.8	9.2	17.2	51.9	100.0(5,27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3(1.03)	11.6	7.4	17.0	64.1	100.0(3,105)	346.060***
	중학교		3.04(1.19)	19.9	9.7	17.4	53.1	100.0(3,700)	
	고등학교	전체	2.82(1.28)	27.8	8.8	17.2	46.2	100.0(4,175)	
		일반계고	2.96(1.23)	23.5	7.8	17.8	50.9	100.0(3,363)	
		특성화계고	2.22(1.27)	45.6	13.1	14.7	26.6	100.0(812)	
지역 규모	대도시		3.02(1.20)	20.7	9.3	17.3	52.8	100.0(4,405)	6.086
	중소도시		3.05(1.20)	20.3	8.1	17.4	54.2	100.0(5,230)	
	읍면지역		3.02(1.21)	21.0	9.1	16.3	53.6	100.0(1,3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7(1.19)	19.6	8.5	17.0	54.9	100.0(9,853)	84.631***
	한부모가정		2.71(1.28)	30.2	9.9	18.6	41.3	100.0(811)	
	조손가정		2.93(1.25)	24.1	8.3	17.8	49.8	100.0(106)	
	기타		2.82(1.20)	23.2	13.3	21.9	41.6	100.0(210)	
학업 성적	상		3.31(1.08)	13.7	6.4	15.7	64.3	100.0(3,556)	414.674***
	중		3.03(1.19)	19.7	9.8	18.0	52.5	100.0(4,652)	
	하		2.70(1.29)	30.9	9.7	17.8	41.6	100.0(2,727)	
경제적 수준	상		3.17(1.15)	17.0	7.8	16.7	58.4	100.0(5,691)	181.910***
	중		2.96(1.22)	22.1	9.6	18.5	49.8	100.0(3,912)	
	하		2.73(1.30)	30.7	9.8	15.4	44.1	100.0(1,326)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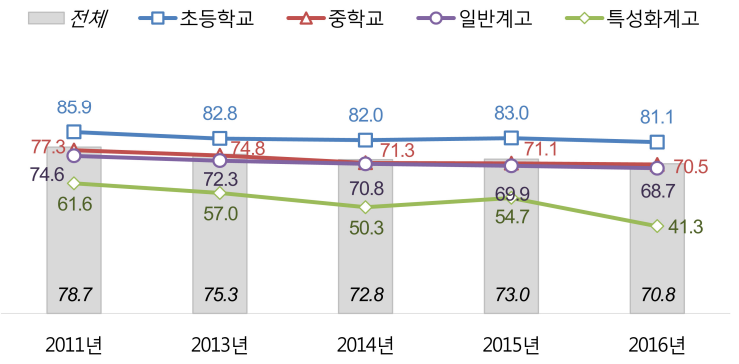

* 주: '보통 먹는 편이다'와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의 합계 / 단위(%)

【그림 Ⅲ-5-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연도별 추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36.8%,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22.2%, 그리고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19.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성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유형별, 가족유형별, 경제적 수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등 2개의 항목에 있어서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입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입맛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연도별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입맛이 없어서' 항목의 경우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와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와 일반계고 및 특성화계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Ⅲ-5-3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일찍 등교	식사 준비 안됨	입맛이 없음	가정 형편 어려움	가족 아침 식사 안함	다이어트	기타	전체(N)	χ^2
전체			22.2	19.6	5.4	36.8	0.1	8.1	1.0	6.8	100.0(3,188)	-
성별	남자		21.5	19.4	5.6	38.7	0.2	7.6	0.6	6.5	100.0(1,565)	-
	여자		22.9	19.8	5.2	35.0	0.0	8.6	1.4	7.0	100.0(1,6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7	15.1	4.9	45.4	0.0	10.6	1.0	6.4	100.0(587)	-
	중학교		21.6	15.6	5.9	41.1	0.1	7.6	1.4	6.6	100.0(1,086)	
	고등학교	전체	24.8	24.2	5.2	30.4	0.1	7.5	0.6	7.1	100.0(1,515)	
		일반계고	26.6	24.4	4.6	30.8	0.2	7.6	0.4	5.5	100.0(1,039)	
		특성화계고	21.0	23.9	6.7	29.5	0.0	7.5	1.1	10.4	100.0(475)	
지역 규모	대도시		21.2	18.8	5.3	37.9	0.1	9.0	1.0	6.5	100.0(1,313)	-
	중소도시		23.2	19.9	5.7	35.0	0.1	7.7	0.9	7.4	100.0(1,474)	
	읍면지역		22.0	20.8	4.4	39.6	0.0	6.9	1.0	5.3	100.0(4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1	19.5	5.1	38.1	0.0	7.7	0.9	6.7	100.0(2,759)	-
	한부모가정		22.7	20.8	7.4	25.4	0.6	13.1	1.8	8.1	100.0(319)	
	조손가정		14.7	20.5	10.1	41.7	0.0	11.0	0.0	2.1	100.0(34)	
	기타		29.1	16.7	8.0	37.1	0.0	2.4	0.0	6.8	100.0(77)	
학업 성적	상		24.4	18.0	4.5	37.5	0.0	7.8	1.3	6.6	100.0(707)	-
	중		21.7	20.9	4.9	37.9	0.0	7.7	0.8	6.2	100.0(1,361)	
	하		21.5	19.2	6.8	34.7	0.3	9.0	1.0	7.6	100.0(1,103)	
경제적 수준	상		21.4	18.6	6.2	39.3	0.0	6.9	1.6	5.9	100.0(1,402)	-
	중		22.7	20.1	3.9	37.3	0.1	8.3	0.5	7.1	100.0(1,237)	
	하		23.4	21.2	7.2	28.5	0.3	10.8	0.4	8.2	100.0(533)	



【그림 Ⅲ-5-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③ 수면시간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조사한 결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전체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시간 24분, 여자의 경우 7시간 6분으로 남자의 수면시간이 더 많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8시간 37분, 중학교 7시간 23분, 특성화계고 6시간 45분, 일반계고 5시간 58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7시간 10분, 중소도시 7시간 17분, 읍면지역 7시간 26분으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경우 평균 7시간 46분으로 가장 수면시간이 많은 반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7시간 6분으로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3 (평균)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6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전체			7.9	17.3	14.1	23.9	21.9	14.8	7시 15분	100.0(11,132)
성별	남자		5.7	15.3	13.4	25.5	24.1	15.9	7시 24분	100.0(5,793)
	여자		10.3	19.5	14.9	22.2	19.4	13.7	7시 6분	100.0(5,339)
학교 유형	초등학교		0.3	1.4	2.9	13.8	38.4	43.2	8시 37분	100.0(3,170)
	중학교		2.5	9.5	16.0	37.5	27.6	6.9	7시 23분	100.0(3,741)
	고등학교	전체	18.4	36.2	21.0	19.5	4.4	0.6	6시 7분	100.0(4,221)
		일반계고	20.7	40.1	21.2	15.3	2.3	0.4	5시 58분	100.0(3,391)
		특성화계고	9.0	20.4	19.8	36.5	12.8	1.5	6시 45분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8.5	18.5	15.1	23.6	20.9	13.4	7시 10분	100.0(4,473)
	중소도시		7.8	17.2	13.3	24.0	22.5	15.2	7시 17분	100.0(5,295)
	읍면지역		6.3	14.1	14.1	24.8	22.4	18.3	7시 26분	100.0(1,3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0	17.2	14.2	23.9	21.9	14.8	7시 15분	100.0(9,988)
	한부모가정		8.2	19.8	15.8	25.3	19.4	11.5	7시 6분	100.0(821)
	조손가정		2.4	13.9	8.7	23.0	26.2	25.8	7시 46분	100.0(108)
	기타		5.1	17.0	7.8	21.3	25.4	23.4	7시 37분	100.0(216)
학업 성적	상		6.3	15.1	12.0	22.6	25.0	19.0	7시 29분	100.0(3,587)
	중		7.6	16.7	13.5	23.6	22.2	16.4	7시 19분	100.0(4,731)
	하		10.5	21.3	18.1	26.1	17.2	6.8	6시 52분	100.0(2,769)
경제적 수준	상		6.7	14.9	12.4	22.9	24.5	18.5	7시 27분	100.0(5,768)
	중		8.3	18.8	15.0	25.2	20.5	12.2	7시 8분	100.0(3,973)
	하		12.0	23.1	19.0	24.2	14.5	7.2	6시 46분	100.0(1,340)

수면시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는 7.9시간, 2013에는 7.1시간, 2014년에는 7.3시간, 2015년에는 7.3시간, 2016년에는 7.3시간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9.1시간이었으나 2013년에는 8.3시간, 2014년에는 8.3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8.4시간, 2016년에는 8.6시간으로 나타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7.8시간, 2013년에 7.2시간, 2014년에 7.2시간, 2015년에 7.2시간, 2016년에 7.4시간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6.3시간, 2013년에는 5.5시간, 2014년에는 5.4시간, 2015년에는 6.1시간, 2016년에는 6.0시간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6.7시간이었던 것이 2013년과 2014년에 6.2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6.4시간, 2016년에는 6.8시간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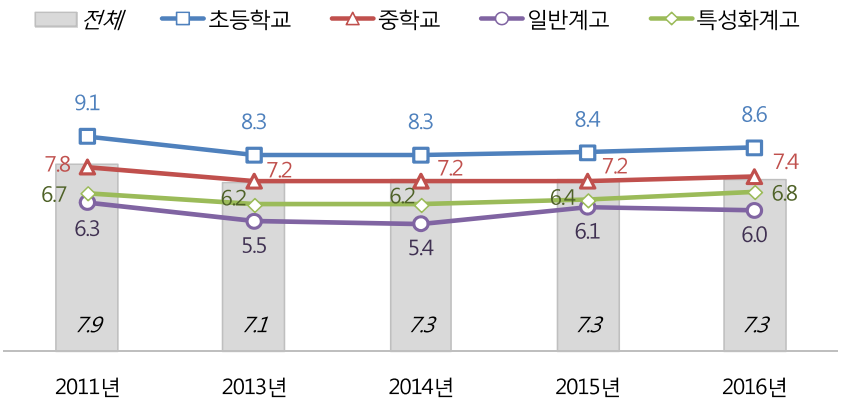

【그림 Ⅲ-5-9】 수면시간: 연도별 추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4.1%의 응답자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수면부족 여부와 관련하여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9.3%, 여자의 경우 59.4%로 여자들이 더욱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3.6%, 중학교 50.8%, 고등학교 72.3%로 학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내에서도 특성화계고는 67.3%, 일반계고는 73.5%

로 일반계고에서 수면부족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48.1%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1.4%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학업성적과 관련하여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하위층일수록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34 수면 부족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4.1	45.9	100.0(11,075)	–
성별	남자		49.3	50.7	100.0(5,765)	113.521***
	여자		59.4	40.6	100.0(5,31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6	66.4	100.0(3,140)	1108.830***
	중학교		50.8	49.2	100.0(3,722)	
	고등학교	전체	72.3	27.7	100.0(4,213)	
		일반계고	73.5	26.5	100.0(3,383)	
		특성화계고	67.3	32.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54.4	45.6	100.0(4,450)	0.837
	중소도시		54.2	45.8	100.0(5,268)	
	읍면지역		53.0	47.0	100.0(1,3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3.7	46.3	100.0(9,940)	20.451***
	한부모가정		61.4	38.6	100.0(818)	
	조손가정		48.1	51.9	100.0(105)	
	기타		51.0	49.0	100.0(211)	
학업 성적	상		47.9	52.1	100.0(3,569)	174.897***
	중		52.8	47.2	100.0(4,706)	
	하		64.4	35.6	100.0(2,756)	
경제적 수준	상		49.8	50.2	100.0(5,732)	164.092***
	중		55.4	44.6	100.0(3,960)	
	하		69.0	31.0	100.0(1,334)	

***$p<.001$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에는 52.8%로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55.8%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에는 50.1%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54.1%로 나타나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감의 흐름은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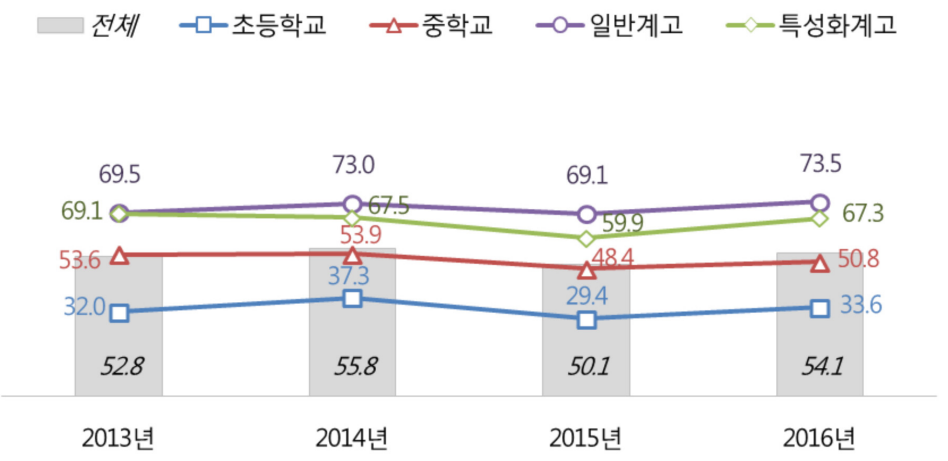

【그림 Ⅲ-5-10】 수면 부족여부 : 연도별 추이

수면이 부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이유는, 채팅/문자메시지가 5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가 50.8%, '가정학습'이 50.7%, '학원/과외'가 49.5%, '게임'이 36.0%, '야간자율학습'이 22.9%, '성인사이트에서 성인물 이용'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47.9%), '채팅/문자메시지'(44.5%), '가정학습'(44.4%)의 순으로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가 5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학습'(56.3%),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3.3%), '학원/과외'(51.9%)가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초등학생은 '가정학습'(59.6%), '학원/과외'(53.9%),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3.5%), '게임'(48.8%)이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였으며, 중학생은 '채팅/문자메시지'(61.6%),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6.2%), '학원/과외'(54.3%)가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는 '가정학습'(55.6%), '학원/과외'(51.0%), '채팅/문자메시지'(48.9%), '야간자율학습'(48.4%)을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특성화계고는 '채팅/문자메시지'(72.9%),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65.7%), '게임'(49.7%)을 주된 이유로 응답했다.

지역규모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가정학습'(54.2%)과 '학원/과외'(52.6%)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49.3%), '채팅/문자메

시지'(48.6%)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54.8%)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1.7%)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학습'(49.9%), '학원/과외'(49.6%)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1.9%), '채팅/문자메시지'(51.0%), '가정학습'(41.9%), '게임'(40.1%), '학원/과외'(39.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들은 '가정학습'(51.8%), '학원/과외'(51.2%), '채팅/문자메시지'(51.4%),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49.9%)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61.7%), '채팅/문자메시지'(58.7%)가 가장 많았으며,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게임'(58.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원/과외'(49.1%), '채팅/문자메시지'(43.3%), '가정학습'(42.1%),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42.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의 경우 '가정학습'(63.5%)과 '학원/과외'(57.6%)가 가장 주된 이유인 반면, 중위권은 '가정학습'(52.1%), '채팅/문자메시지'(51.7%),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1.4%), '학원/과외'(50.2%)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권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61.1%)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5.4%)기 주요 수면부족 이유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의 경우 '학원/과외'(56.6%)와 '가정학습'(54.2%)가 주된 이유인 반면, 중위층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54.1%),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2.4%)이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하위층의 경우에도 '채팅/문자메시지'(56.3%)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55.1%)이 주요 수면부족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Ⅲ-5-35 수면부족 이유(1+2+3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22.9	49.5	50.7	36.0	51.9	3.3	50.8	17.7	100.0(5,884)
성별	남자		23.1	46.9	44.4	50.1	44.5	5.7	47.9	18.8	100.0(2,773)
	여자		22.8	51.9	56.3	23.5	58.4	1.2	53.3	16.7	100.0(3,110)
학교 유형	초등학교		–	53.9	59.6	48.8	30.7	5.5	53.5	23.8	100.0(1,042)
	중학교		5.6	54.3	46.2	42.2	61.6	2.5	56.2	15.7	100.0(1,848)
	고등학교	전체	41.5	45.1	50.4	27.7	53.3	3.0	46.4	16.8	100.0(2,994)
		일반계고	48.4	51.0	55.6	22.9	48.9	2.7	42.2	13.7	100.0(2,455)
		특성화계고	10.3	18.0	26.3	49.7	72.9	4.5	65.7	30.8	100.0(538)
지역 규모	대도시		23.2	52.6	54.2	34.6	48.6	3.6	49.3	15.7	100.0(2,377)
	중소도시		20.8	49.6	49.9	36.2	54.8	3.1	51.7	18.6	100.0(2,800)
	읍면지역		30.1	39.2	41.9	40.1	51.0	3.2	51.9	20.7	100.0(70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5	51.2	51.8	34.9	51.4	3.3	49.9	17.3	100.0(5,229)
	한부모가정		19.9	33.0	40.4	41.4	58.7	3.2	61.7	22.8	100.0(500)
	조손가정		12.9	49.1	42.1	58.9	43.3	4.4	42.0	20.9	100.0(50)
	기타		14.1	45.4	49.3	53.2	46.4	5.5	48.4	10.2	100.0(104)
학업 성적	상		22.5	57.6	63.5	31.5	42.4	2.8	45.6	17.6	100.0(1,682)
	중		22.9	50.2	52.1	35.7	51.7	3.5	51.4	15.7	100.0(2,447)
	하		23.5	40.6	36.2	40.7	61.1	3.6	55.4	20.7	100.0(1,731)
경제적 수준	상		21.1	56.6	54.2	33.5	48.5	3.5	48.6	16.3	100.0(2,796)
	중		24.5	46.2	48.2	36.3	54.1	2.8	52.4	18.5	100.0(2,155)
	하		24.9	35.5	45.2	43.3	56.3	4.2	55.1	20.2	100.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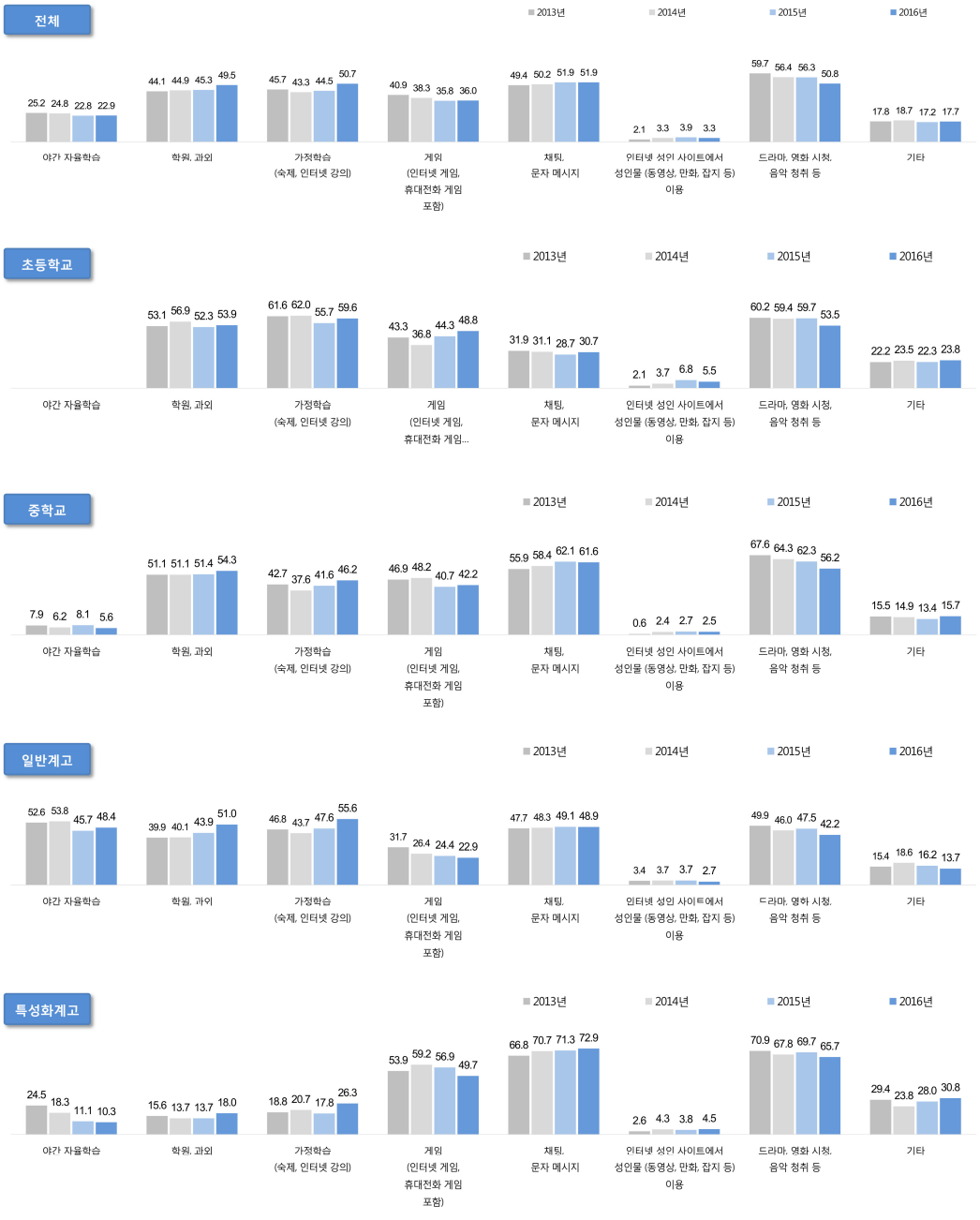

【그림 Ⅲ-5-11】 수면 부족이유(1+2+3순위): 연도별 추이

수면부족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팅/문자메시지가 2013년 이후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은 2013년 이후 소폭 이긴 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채팅/문자메시지'와 '드라마/영화시청/음악시청'은 '학원/과외', '가정학습', '게임' 등과 함께 청소년 수면부족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채팅/문자메시지', '게임', '가정학습', '학원/과외'와 더불어 '야간 자율학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에 대한 응답률 역시 2013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와 '채팅/문자메시지', '게임'이 가장 주된 수면부족의 이유였으며, 이들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비만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추이를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의 전체 비만율은 15.6%로 2014년 15.0%보다 0.6% 증가하였으며 2011년 비만율 14.3% 보다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경도비만, 중증도 비만, 고도비만 등 비만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비만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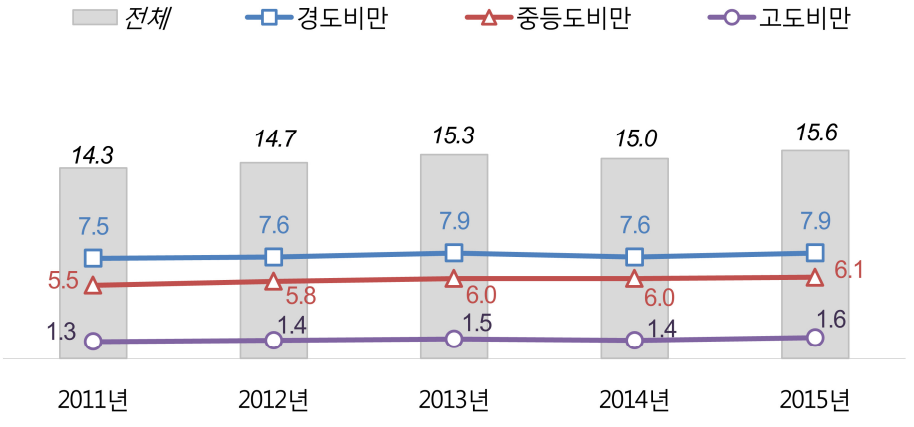

【그림 Ⅲ-5-12】 비만율 추이(2011년~2015년)/ 단위(%)

2015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학교급별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비만율이 16.0%, 여학생의 비만율이 12.0%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비만율은 15.9%, 여학생의 비만율은 13.4%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비만율은 19.5%였으며, 여학생의 비만율은 1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의 비만율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경도 비만율에서 여학생의 비만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도와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36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단위 : %)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11			85.7	7.5	5.5	1.3	14.3
2012			85.3	7.6	5.8	1.4	14.7
2013			84.7	7.9	6.0	1.5	15.3
2014			85.0	7.6	6.0	1.4	15.0
2015	전체		84.4	7.9	6.1	1.6	15.6
	초등학생	남학생	84.0	8.3	6.4	1.3	16.0
		여학생	88.0	7.0	4.2	0.8	12.0
	중학생	남학생	84.1	7.8	6.6	1.5	15.9
		여학생	86.6	7.2	4.8	1.4	13.4
	고등학생	남학생	80.5	8.3	8.2	3.0	19.5
		여학생	82.1	8.8	6.9	2.2	17.9

* 출처: 교육부(2016b). 2015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 012/ko/board/view.do?bbsId=348&encodeYn=&pageSize=10&currentPage=0&boardSeq=63156&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주: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 이상~ 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2)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3)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3) 정신적 건강

①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등 긍정적인 두 개 항목의 응답률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산정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정도를 비교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8.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73.6%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27.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과 관련해서는 78.1%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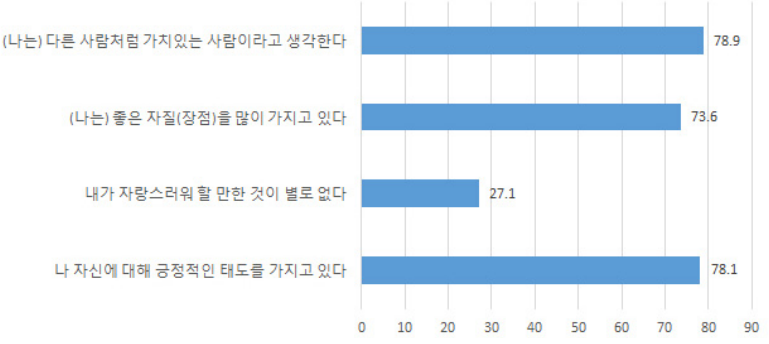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Ⅲ-5-13】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자아존중감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세부변인에 따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문항인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남자는 3.04점, 여자는 3.00점으로 남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97점, 중학교 3.09점, 일반계고 3.03점, 특성화계고 2.87점으로 중학교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3.05점, 중소도시 3.00점, 읍면지역 2.99점으로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3.03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2.72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7 자아존중감_1)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84)	6.6	14.5	49.2	29.7	100.0(11,098)	–
성별	남자		3.04(0.86)	7.6	12.9	47.9	31.6	100.0(5,775)	54.043***
	여자		3.00(0.81)	5.6	16.2	50.5	27.6	100.0(5,3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7(1.04)	15.4	9.8	37.4	37.4	100.0(3,150)	870.942***
	중학교		3.09(0.77)	3.9	13.4	52.5	30.1	100.0(3,735)	
	고등학교	전체	3.00(0.72)	2.5	18.9	55.0	23.6	100.0(4,213)	
		일반계고	3.03(0.71)	2.1	17.8	55.3	24.8	100.0(3,385)	
		특성화계고	2.87(0.75)	4.0	23.6	53.8	18.6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3.05(0.86)	7.2	13.5	47.0	32.4	100.0(4,465)	38.792***
	중소도시		3.00(0.82)	6.0	15.3	51.0	27.7	100.0(5,272)	
	읍면지역		2.99(0.86)	7.5	14.4	49.4	28.6	100.0(1,3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84)	6.5	14.1	49.3	30.2	100.0(9,960)	63.507***
	한부모가정		2.96(0.81)	5.3	18.7	50.2	25.8	100.0(818)	
	조손가정		2.72(1.02)	17.3	17.1	42.0	23.6	100.0(106)	
	기타		2.81(0.99)	15.0	15.2	43.6	26.3	100.0(214)	
학업 성적	상		3.20(0.85)	6.7	7.9	43.8	41.6	100.0(3,581)	570.243***
	중		2.99(0.83)	6.9	14.4	51.7	27.0	100.0(4,713)	
	하		2.84(0.80)	6.1	23.1	51.9	19.0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3.11(0.86)	7.4	10.2	46.2	36.2	100.0(5,751)	458.552***
	중		2.95(0.80)	6.2	16.2	53.8	23.8	100.0(3,959)	
	하		2.82(0.79)	4.8	27.7	48.4	19.1	100.0(1,338)	

***$p<.001$

두 번째 문항인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남자는 2.98점, 여자는 2.89점으로 남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3.06점, 중학교 2.93점, 고등학교 2.85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일반계고가 2.88점, 특성화계고 2.76점으로 특성화계고가 일반계고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2.97점, 중소도시 2.91점, 읍면지역 2.93점으로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2.95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2.81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질(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8 자아존중감_2)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80)	4.3	22.0	49.3	24.3	100.0(11,079)	-
성별	남자		2.98(0.80)	4.6	19.4	49.7	26.3	100.0(5,765)	58.947***
	여자		2.89(0.79)	4.1	24.9	48.9	22.2	100.0(5,31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6(0.86)	6.5	14.5	45.7	33.4	100.0(3,144)	357.732***
	중학교		2.93(0.77)	3.9	22.3	51.1	22.7	100.0(3,723)	
	고등학교	전체	2.85(0.75)	3.1	27.5	50.4	19.0	100.0(4,212)	
		일반계고	2.88(0.75)	2.8	26.8	50.5	19.9	100.0(3,385)	
		특성화계고	2.76(0.76)	4.6	30.2	49.9	15.3	100.0(826)	
지역 규모	대도시		2.97(0.81)	4.5	20.2	48.7	26.6	100.0(4,453)	31.623***
	중소도시		2.91(0.79)	4.1	23.7	49.6	22.6	100.0(5,266)	
	읍면지역		2.93(0.79)	4.5	21.9	50.0	23.6	100.0(1,3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0.79)	4.2	21.7	49.4	24.7	100.0(9,940)	46.359***
	한부모가정		2.81(0.79)	5.0	27.7	48.9	18.4	100.0(819)	
	조손가정		2.88(0.92)	11.6	14.7	48.4	25.4	100.0(107)	
	기타		2.93(0.87)	6.6	21.5	43.8	28.1	100.0(213)	
학업 성적	상		3.17(0.77)	3.1	13.1	47.8	36.1	100.0(3,572)	770.469***
	중		2.92(0.76)	3.7	21.5	53.5	21.3	100.0(4,708)	
	하		2.65(0.81)	7.1	34.6	44.3	14.0	100.0(2,753)	
경제적 수준	상		3.08(0.78)	3.8	15.4	50.2	30.6	100.0(5,739)	510.273***
	중		2.83(0.78)	4.5	26.8	49.9	18.7	100.0(3,950)	
	하		2.65(0.79)	6.1	36.3	44.3	13.3	100.0(1,339)	

***$p<.001$

세 번째 문항이자 부정문항으로 구성된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문항에 대해 남자는 1.96점, 여자는 2.07점으로 여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1.70점, 중학교 2.04점, 고등학교 2.22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일반계고가 2.20점, 특성화계고가 2.30점으로 특성화계가 일반계고보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1.97점, 중소도시 2.05점, 읍면지역 1.98점으로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2.17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기타가정 청소년들은 1.85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문항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9 자아존중감_3)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1(0.82)	30.2	41.8	24.9	3.2	100.0(11,093)	-
성별	남자		1.96(0.83)	32.8	41.8	21.9	3.5	100.0(5,776)	76.553***
	여자		2.07(0.82)	27.2	41.7	28.2	2.9	100.0(5,3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0(0.79)	48.1	36.3	13.0	2.6	100.0(3,151)	854.868***
	중학교		2.04(0.81)	27.8	43.2	25.9	3.1	100.0(3,728)	
	고등학교	전체	2.22(0.79)	18.8	44.5	32.9	3.8	100.0(4,214)	
		일반계고	2.20(0.79)	19.6	44.8	31.9	3.6	100.0(3,384)	
		특성화계고	2.30(0.78)	15.5	43.2	37.0	4.2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97(0.83)	32.5	41.3	22.8	3.5	100.0(4,460)	38.107***
	중소도시		2.05(0.82)	27.8	42.2	27.0	3.0	100.0(5,274)	
	읍면지역		1.98(0.82)	31.5	41.7	23.8	3.0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0(0.82)	30.5	41.9	24.5	3.1	100.0(9,954)	53.173***
	한부모가정		2.17(0.83)	23.3	40.4	32.1	4.2	100.0(819)	
	조손가정		2.02(0.96)	36.6	31.9	24.0	7.5	100.0(107)	
	기타		1.85(0.76)	36.0	44.2	18.4	1.4	100.0(213)	
학업 성적	상		1.75(0.77)	43.0	40.6	14.4	2.0	100.0(3,578)	899.347***
	중		2.01(0.79)	28.3	44.7	24.9	2.1	100.0(4,715)	
	하		2.36(0.83)	16.5	38.0	38.8	6.7	100.0(2,755)	
경제적 수준	상		1.85(0.79)	37.9	42.2	17.4	2.5	100.0(5,748)	671.601***
	중		2.12(0.80)	24.0	42.7	30.5	2.8	100.0(3,958)	
	하		2.40(0.83)	14.9	36.9	41.0	7.2	100.0(1,337)	

***$p<.001$

네 번째 문항인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의 경우 남자는 3.10점, 여자는 2.99점으로 남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3.12점, 중학교 3.08점, 고등학교 2.95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특성화계고가 2.92점, 일반계고가 2.96점으로 일반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계고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3.07점, 중소도시 3.02점, 읍면지역 3.04점으로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3.06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2.90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0 자아존중감_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4(0.77)	3.4	17.6	50.3	28.7	100.0(11,097)	-
성별	남자		3.10(0.79)	3.9	15.1	48.5	32.5	100.0(5,774)	123.500***
	여자		2.99(0.75)	2.8	20.4	52.3	24.5	100.0(5,3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2(0.84)	5.7	12.8	45.0	36.5	100.0(3,148)	330.350***
	중학교		3.08(0.74)	2.5	16.0	52.3	29.1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95(0.74)	2.4	22.7	52.5	22.4	100.0(4,215)	
		일반계고	2.96(0.74)	2.3	22.8	52.1	22.9	100.0(3,385)	
		특성화계고	2.92(0.73)	2.8	22.4	54.4	20.4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3.07(0.78)	3.6	16.3	49.8	30.3	100.0(4,462)	17.993**
	중소도시		3.02(0.77)	3.1	18.8	50.6	27.4	100.0(5,273)	
	읍면지역		3.04(0.77)	3.7	17.2	51.0	28.2	100.0(1,3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6(0.77)	3.2	17.0	50.7	29.1	100.0(9,958)	59.926***
	한부모가정		2.90(0.80)	4.1	25.6	46.9	23.4	100.0(818)	
	조손가정		2.98(0.92)	9.6	13.8	45.4	31.1	100.0(107)	
	기타		2.97(0.81)	4.9	19.5	49.4	26.2	100.0(213)	
학업 성적	상		3.20(0.75)	2.9	11.4	48.2	37.4	100.0(3,579)	398.728***
	중		3.04(0.75)	3.1	16.9	53.0	26.9	100.0(4,714)	
	하		2.85(0.79)	4.5	26.6	48.7	20.3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3.16(0.76)	3.3	12.6	49.2	35.0	100.0(5,747)	421.877***
	중		2.97(0.76)	3.4	20.4	52.6	23.7	100.0(3,961)	
	하		2.78(0.77)	4.0	30.8	48.5	16.7	100.0(1,338)	

**$p<.01$, ***$p<.001$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4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alpha값이 .79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자아존중감을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3.00점, 표준편차는 .64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남학생의 점수는 3.04점, 여학생의 점수는 2.95점으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비교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3.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01점, 일반계고 2.92점, 특성화계고 2.81점 순으로 나타나 학교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족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3.01점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점수(2.8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라 비교하면 상위권의 경우 3.21점으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위권 2.99점, 하위권 2.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역시 상위층이 3.13점으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위층 2.91점, 하위층 2.71점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Ⅲ-5-41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91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Ⅲ-5-42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자아존중감		
		Mean	SD	t/F(Scheffé)
전체		3.00	.64	-
성별	남	3.04	.63	6.952***
	여	2.95	.63	
학교유형	초등학교	3.11	.64	79.312*** (ab, ac, ad, bc, bd, cd)
	중학교	3.01	.62	
	일반계고	2.92	.62	
	특성화계고	2.81	.6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01	.63	12.777*** (ef)
	한부모가정	2.87	.64	
	조손가정	2.89	.76	
	기타	2.96	.64	
학업성적	상	3.21	.60	4442.061*** (ij, ik, jk)
	중	2.99	.60	
	하	2.75	.64	
경제적 수준	상	3.13	.61	308.373*** (lm, ln, mn)
	중	2.91	.61	
	하	2.71	.64	

**p<.01, ***p<.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계고, d=특성화계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② 우울증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등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긍정적으로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의 합을 분석 하였다.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 응답 비율은 32.7%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28.0%,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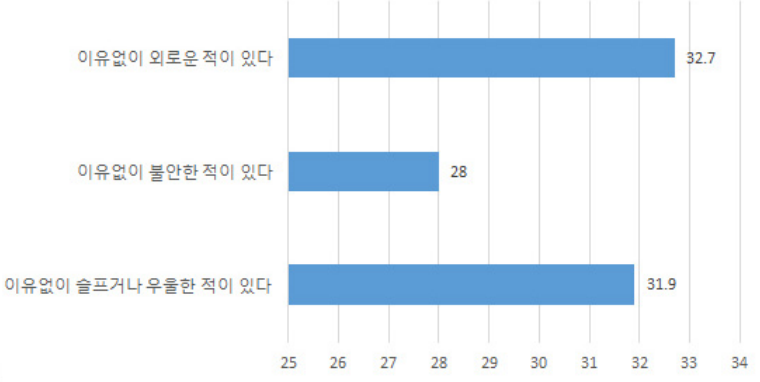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Ⅲ-5-14】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우울증과 관련된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세부변인에 따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의 경우 남자는 1.82점, 여자는 2.19점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57점, 중학교 2.02점, 고등학교 2.29점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도 일반계고가 2.30점, 특성화계고가 2.26점으로 일반계고가 특성화계고보다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 1.96점, 중소도시 2.04점, 읍면지역 1.96점으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2.20점으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

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의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32.8%로 2015년의 34.7%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의 추이는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Ⅲ-5-43 우울증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0.95)	39.4	27.8	26.5	6.2	100.0(11,108)	–
성별	남자		1.82(0.91)	47.6	27.8	19.9	4.7	100.0(5,779)	449.243***
	여자		2.19(0.96)	30.6	27.8	33.7	7.9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7(0.84)	62.4	21.3	13.1	3.2	100.0(3,161)	1191.411***
	중학교		2.02(0.93)	36.5	31.0	26.5	6.0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29(0.94)	24.8	29.9	36.7	8.7	100.0(4,214)	
		일반계고	2.30(0.94)	24.1	30.9	35.9	9.1	100.0(3,384)	
		특성화계고	2.26(0.94)	27.6	25.7	40.0	6.7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96(0.96)	41.8	26.8	25.4	6.1	100.0(4,467)	27.502***
	중소도시		2.04(0.95)	36.9	28.8	27.9	6.3	100.0(5,279)	
	읍면지역		1.96(0.95)	41.4	27.4	25.1	6.1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8(0.95)	40.0	27.8	26.1	6.1	100.0(9,966)	66.081***
	한부모가정		2.20(0.95)	29.6	28.0	34.7	7.7	100.0(820)	
	조손가정		1.89(1.03)	48.1	26.7	13.9	11.3	100.0(108)	
	기타		1.82(0.91)	47.5	27.7	20.5	4.4	100.0(214)	
학업 성적	상		1.85(0.93)	46.5	26.9	21.2	5.4	100.0(3,584)	300.484***
	중		1.96(0.93)	40.2	29.0	25.8	5.0	100.0(4,719)	
	하		2.25(0.98)	28.8	27.0	34.8	9.4	100.0(2,761)	
경제적 수준	상		1.85(0.93)	46.7	26.6	21.5	5.2	100.0(5,759)	487.417***
	중		2.05(0.93)	35.5	29.2	29.7	5.6	100.0(3,961)	
	하		2.45(0.95)	19.6	28.5	39.2	12.8	100.0(1,33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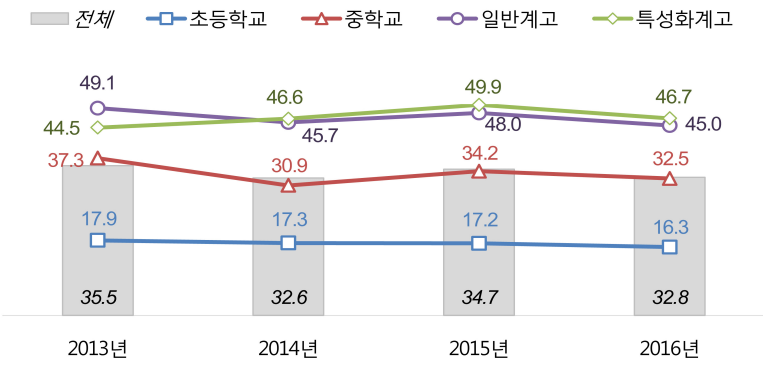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5】 자신에 대한 생각_1) 외로운 적 있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의 경우 남자는 1.74점, 여자는 2.05점으로 여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1.51점, 중학교 1.92점, 고등학교 2.15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특성화계고가 2.04점, 일반계고가 2.18점으로 나타나 일반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계 학생들보다 이유 없이 불안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1.84점, 중소도시 1.94점, 읍면지역 1.83점으로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2.08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1.72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에서 낮은 수준(하)일수록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4 우울증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9(0.94)	44.5	27.6	22.5	5.5	100.0(11,113)	–
성별	남자		1.74(0.89)	51.8	25.8	18.4	3.9	100.0(5,781)	298.350***
	여자		2.05(0.96)	36.5	29.5	26.8	7.2	100.0(5,3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1(0.81)	66.5	19.3	11.3	2.9	100.0(3,165)	1026.405***
	중학교		1.92(0.93)	42.1	29.6	22.7	5.6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15(0.94)	30.1	32.0	30.6	7.3	100.0(4,215)	
		일반계고	2.18(0.94)	29.0	32.0	31.3	7.8	100.0(3,385)	
		특성화계고	2.04(0.92)	34.6	32.2	27.9	5.3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84(0.93)	46.7	27.6	20.4	5.3	100.0(4,468)	40.258***
	중소도시		1.94(0.94)	41.8	27.8	24.7	5.7	100.0(5,281)	
	읍면지역		1.83(0.93)	47.5	26.8	20.5	5.2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8(0.93)	45.0	27.6	22.1	5.3	100.0(9,972)	49.844***
	한부모가정		2.08(0.95)	34.9	29.6	28.5	7.0	100.0(820)	
	조손가정		1.72(0.96)	57.4	19.0	17.4	6.2	100.0(107)	
	기타		1.79(0.94)	51.6	24.0	18.7	5.7	100.0(214)	
학업 성적	상		1.77(0.92)	52.0	24.5	18.5	5.0	100.0(3,585)	243.561***
	중		1.86(0.91)	45.1	28.3	22.0	4.5	100.0(4,724)	
	하		2.10(0.96)	33.6	30.1	28.6	7.7	100.0(2,761)	
경제적 수준	상		1.76(0.90)	51.0	26.1	18.4	4.5	100.0(5,761)	422.853***
	중		1.93(0.93)	42.0	28.2	24.7	5.1	100.0(3,964)	
	하		2.33(0.96)	23.6	31.4	34.0	11.1	100.0(1,338)	

***$p<.00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28.9%였으나 2014년에는 27.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28.2%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28.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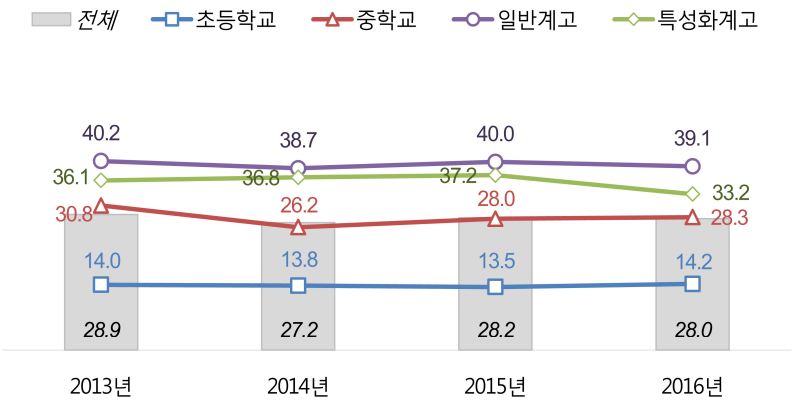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6】 자신에 대한 생각_2) 불안한 적 있다(연도별 추이)

세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경우 남자는 1.73점, 여자는 2.20점으로 여자의 경우 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1.52점, 중학교 1.97점, 고등학교 2.27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일반계고가 2.29점, 특성화계고 2.17점으로 일반계고가 특성화계고보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의 경우 1.92점, 중소도시 2.00점, 읍면지역 1.91점으로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2.14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기타가정 청소년들은 1.76점으로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에서 낮은 수준(하)일수록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9.3%에서 2014년에는 67.2%, 2015년에는 66.8%, 2016년에는 65.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6년에 43.8%로 나타났으며, 2015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5 우울증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6(0.96)	42.6	25.5	25.7	6.2	100.0(11,093)	–
성별	남자		1.73(0.89)	52.1	26.5	17.3	4.1	100.0(5,767)	685.355***
	여자		2.20(0.99)	32.2	24.4	34.9	8.5	100.0(5,3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2(0.82)	66.2	18.9	11.7	3.2	100.0(3,154)	1258.556***
	중학교		1.97(0.94)	40.1	28.5	25.6	5.7	100.0(3,724)	
	고등학교	전체	2.27(0.96)	27.0	27.8	36.4	8.8	100.0(4,214)	
		일반계고	2.29(0.96)	26.3	27.7	36.2	9.8	100.0(3,384)	
		특성화계고	2.17(0.91)	29.8	28.3	37.0	4.9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1.92(0.95)	44.0	25.9	24.5	5.6	100.0(4,460)	23.075***
	중소도시		2.00(0.98)	40.8	25.3	27.1	6.9	100.0(5,270)	
	읍면지역		1.91(0.95)	44.9	24.9	24.5	5.6	100.0(1,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0.96)	43.0	25.6	25.4	6.0	100.0(9,953)	53.524***
	한부모가정		2.14(0.97)	33.6	26.0	33.0	7.4	100.0(819)	
	조손가정		1.92(1.05)	49.2	19.6	21.5	9.7	100.0(107)	
	기타		1.76(0.96)	54.4	21.0	18.5	6.1	100.0(214)	
학업 성적	상		1.84(0.94)	48.7	24.4	21.4	5.4	100.0(3,582)	204.887***
	중		1.92(0.94)	43.2	26.5	25.0	5.3	100.0(4,713)	
	하		2.17(0.99)	33.5	25.2	32.7	8.6	100.0(2,753)	
경제적 수준	상		1.82(0.94)	49.8	24.1	21.0	5.1	100.0(5,750)	446.854***
	중		2.01(0.95)	38.9	26.9	28.4	5.8	100.0(3,955)	
	하		2.40(0.96)	22.3	27.2	38.7	11.7	100.0(1,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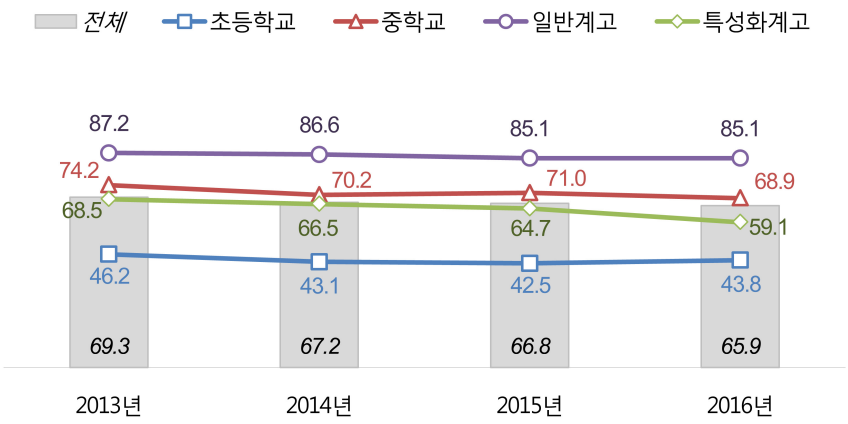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1) 학업문제(연도별 추이)

우울증 측정을 위한 3개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값이 .891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우울증 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95점, 표준편차는 .86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남학생은 1.77점, 여학생은 2.14점으로 여학생의 우울 정도가 남학생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비교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우울 점수가 1.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1.97점, 특성화계고 2.16점, 일반계고 2.26점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한부모가정의 우울 점수가 2.14점으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은 우울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라 비교하면 하위권인 경우 2.17점으로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위권 1.91점, 상위권 1.82점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역시 하위층인 경우 2.39점으로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위층 2.00점, 상위층 1.81점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46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우울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89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표 Ⅲ-5-47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우울증		
		Mean	SD	t/F(Scheffé)
전체		1.95	.86	–
성별	남	1.77	.81	-23.634***
	여	2.14	.88	
학교유형	초등학교	1.53	.73	459.314*** (ab, ac, ad, bc, bd)
	중학교	1.97	.84	
	일반계고	2.26	.85	
	특성화계고	2.16	.8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94	.86	8.444*** (ef, fg, fh)
	한부모가정	2.14	.86	
	조손가정	1.84	.93	
	기타	1.79	.83	
학업성적	상	1.82	.85	141.433*** (ij, ik, jk)
	중	1.91	.84	
	하	2.17	.87	
경제적수준	상	1.81	.84	269.106*** (lm, ln, mn)
	중	2.00	.85	
	하	2.39	.84	

***p<.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계고, d=특성화계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③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15년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1.4%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3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모든 학년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8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2013	35.7	40.3	41.2	40.3	44.7	46.1
2014	32.3	32.7	35.1	36.5	39.9	44.5
2015	30.3	32.5	31.9	36.0	38.7	41.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 2_Y067&vw_cd=MT_OTITLE&list_id=117_11758_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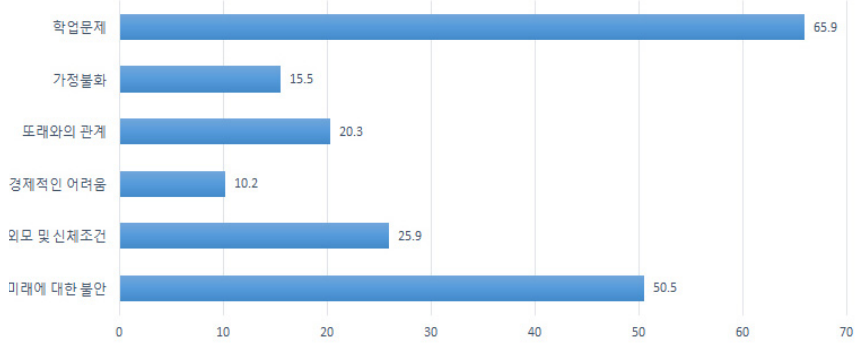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 (단위 : %)

【그림 Ⅲ-5-18】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의 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6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 50.6%, 외모 및 신체조건 25.8%, 또래와의 관계 20.3%, 가정불화 15.5%, 경제적 어려움 1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49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학교유형별)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문제	전체	2.76(0.96)	13.6	20.5	42.7	23.2	100.0(11,094)	-
	초등학교	2.29(0.98)	26.2	30.1	32.6	11.2	100.0(3,157)	1259.983***
	중학교	2.81(0.90)	10.4	20.8	46.4	22.5	100.0(3,729)	
	일반계고	3.17(0.80)	5.0	10.0	47.7	37.4	100.0(3,380)	
	특성화계고	2.58(0.92)	15.6	25.3	44.2	14.9	100.0(828)	
가정 불화	전체	1.64(0.81)	54.3	30.2	12.7	2.8	100.0(10,971)	-
	초등학교	1.61(0.84)	58.7	24.9	12.8	3.6	100.0(3,144)	118.814***
	중학교	1.59(0.77)	56.6	30.2	10.9	2.3	100.0(3,657)	
	일반계고	1.69(0.80)	49.4	34.7	13.2	2.7	100.0(3,349)	
	특성화계고	1.76(0.82)	46.7	32.8	18.5	1.9	100.0(820)	
또래와의 관계	전체	1.79(0.86)	45.4	34.3	16.3	4.0	100.0(11,080)	-
	초등학교	1.67(0.88)	55.2	27.1	12.9	4.9	100.0(3,153)	230.436***
	중학교	1.80(0.85)	44.6	34.8	16.7	3.9	100.0(3,725)	
	일반계고	1.87(0.83)	38.4	39.8	18.5	3.3	100.0(3,377)	
	특성화계고	1.87(0.86)	40.1	37.3	18.3	4.3	100.0(825)	
경제적인 어려움	전체	1.52(0.72)	60.2	29.6	8.8	1.4	100.0(11,072)	-
	초등학교	1.31(0.61)	75.8	18.4	4.6	1.1	100.0(3,145)	704.725***
	중학교	1.46(0.65)	61.9	30.7	6.6	0.8	100.0(3,724)	
	일반계고	1.67(0.76)	49.0	37.0	12.1	1.9	100.0(3,377)	
	특성화계고	1.90(0.85)	38.4	36.7	21.4	3.4	100.0(826)	
외모 및 신체 조건	전체	1.91(0.88)	38.9	35.3	21.5	4.3	100.0(11,066)	-
	초등학교	1.59(0.81)	58.8	26.7	11.6	2.9	100.0(3,149)	843.814***
	중학교	1.95(0.87)	35.9	37.1	22.6	4.4	100.0(3,721)	
	일반계고	2.12(0.85)	26.2	40.9	27.9	5.0	100.0(3,372)	
	특성화계고	2.15(0.90)	27.6	36.6	28.9	6.9	100.0(824)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전체	2.40(1.05)	27.2	22.3	34.3	16.3	100.0(11,076)	-
	초등학교	1.60(0.87)	60.7	22.8	12.0	4.5	100.0(3,149)	3352.189***
	중학교	2.44(0.97)	20.8	28.2	37.3	13.8	100.0(3,725)	
	일반계고	2.98(0.85)	7.1	16.3	48.4	28.2	100.0(3,373)	
	특성화계고	2.84(0.90)	10.6	18.4	47.8	23.2	100.0(828)	

***p<.001.

제시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정도 평균점수를 학교급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 점수는 일반계고가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81점, 특성화계고 2.58점, 초등학교 2.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와 관련한 스트레스 점수는 특성화계고가 1.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계고 1.69점, 초등학교 1.61점, 중학교 1.59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점수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모두 1.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1.80점, 초등학교 1.67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의 경우 특성화계고 1.90점, 일반계고 1.67점, 중학교 1.46점, 초등학교 1.31점으로 조사되었다. 외모 및 신체 조건과 관련한 스트레스 점수는 특성화계고 2.15점, 일반계고 2.12점, 중학교 1.95점, 초등학교 1.59점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일반계고 2.98점, 특성화계고 2.84점, 중학교 2.44점, 초등학교 1.60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학교급이 높은 경우 더욱 강하게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6년의 조사결과 학업문제를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분율은 65.9%로 2015년의 조사결과 66.8%보다 0.9% 감소하였으며, 2013년 69.3% 보다는 3.4%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6년 다시 1.2% 정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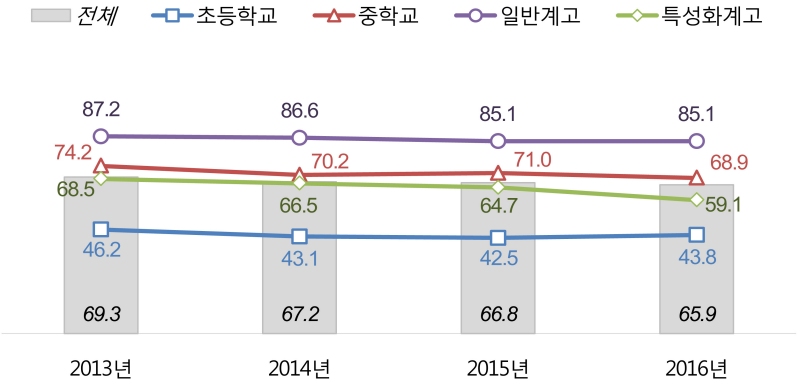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9】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각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배경 변인에 따라 비교해 보면, 우선 학업문제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의 의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특성화계고,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정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 문제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계고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의 경우도 중학교와 초등학교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이나 기타가정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불화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학생들이 중학교과 초등학교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이나 기타가정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의 학생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이나 기타가정에 비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및 신체 조건과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중학교가 초등학교 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외모 및 신체조건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서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조손가정이나 기타 가정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5-50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 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별	남	2.65	.99	1.62	.80	1.62	.79	1.49	.72	1.73	.82	2.29	1.04
	여	2.87	.91	1.66	.81	1.97	.89	1.54	.72	2.11	.89	2.51	1.05
	t	−12.084***		−2.278*		−21.490***		−3.595***		−22.804***		−10.87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9	.98	1.61	.84	1.67	.88	1.31	.61	1.59	.80	1.60	.87
	중학교	2.81	.90	1.59	.77	1.80	.85	1.46	.65	1.95	.87	2.44	.97
	일반계고	3.17	.80	1.69	.80	1.87	.83	1.67	.76	2.12	.85	2.98	.85
	특성화계고	2.58	.92	1.76	.82	1.87	.86	1.90	.85	2.15	.90	2.84	.90
	F(Scheff)	547.998*** (ab, ac, ad, bc, bd, cd)		16.544*** (ac, ad, bc, bd, cd)		30.993*** (ab, ac, ad, bc)		239.058*** (ab, ac, ad, bc, bd, cd)		243.770*** (ab, ac, ad, bc, bd)		1347.462*** (ab, ac, ad, bc, bd)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6	.96	1.61	.79	1.78	.85	1.48	.69	1.91	.88	2.39	1.05
	한부모가정	2.83	.96	1.93	.90	1.96	.90	1.90	.87	2.05	.89	2.57	1.09
	조손가정	2.62	1.04	1.82	.84	1.79	.88	1.83	.95	1.88	.87	2.15	1.06
	기타	2.51	1.00	1.74	.95	1.73	.90	1.60	.83	1.76	.85	2.09	1.06
	F(Scheff)	7.054*** (eh, fh)		42.632*** (ef, fh)		11.623*** (ef, fh)		95.994*** (ef, eg, fh)		9.207*** (ef, fh)		15.848*** (ef, eh, fg, fh)	
학업 성적	상	2.60	1.00	1.56	.79	1.71	.82	1.38	.64	1.78	.83	2.18	1.06
	중	2.77	.93	1.63	.79	1.78	.85	1.49	.69	1.89	.86	2.37	1.04
	하	2.93	.93	1.76	.86	1.92	.90	1.73	.81	2.14	.93	2.72	.99
	F(Scheff)	95.336*** (ij, ik, jk)		49.707*** (ij, ik, jk)		47.111*** (ij, ik, jk)		203.873*** (ij, ik, jk)		137.294*** (ij, ik, jk)		219.353*** (ij, ik, jk)	
경제적 수준	상	2.67	.99	1.51	.75	1.69	.83	1.27	.52	1.77	.84	2.22	1.05
	중	2.79	.93	1.67	.79	1.83	.86	1.57	.67	1.97	.87	2.48	1.02
	하	3.00	.86	2.10	.92	2.11	.89	2.39	.84	2.38	.89	2.92	.95
	F(Scheff)	71.334*** (lm, ln, mn)		308.982*** (lm, ln, mn)		141.193*** (lm, ln, mn)		1788.377*** (lm, ln, mn)		288.091*** (lm, ln, mn)		275.224*** (lm, ln, mn)	

***p<.001, *p<.05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계고, d=특성화계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및 우울감 점수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제시된 6가지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집단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집단 보다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제시된 6가지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집단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집단 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존감 및 우울감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5-51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증 차이

스트레스유형과 여부		자아존중감			우울감		
		Mean	SD	t	Mean	SD	t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1)	3.10	.59	12.649***	1.66	.72	-27.862***
	그렇다2)	2.91	.61		2.17	.86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2.85	.57	5.821***	2.18	.79	-7.010***
	그렇다	2.74	.62		2.36	.90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2.90	.56	9.371***	2.12	.78	-17.412***
	그렇다	2.75	.64		2.51	.87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2.81	.56	5.985***	2.25	.77	-9.237***
	그렇다	2.69	.62		2.51	.83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2.93	.55	14.812***	2.05	.77	-21.948***
	그렇다	2.71	.61		2.48	.82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04	.55	15.018***	1.80	.72	-28.326***
	그렇다	2.84	.60		2.32	.84	

***$p<.001$

* 주: 1)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④ 행복도

아동·청소년들의 현재 행복정도를 조사한 결과 '행복한 편이다' 58.7%, '매우 행복하다' 25.0%,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14.5%, '전혀 행복하지 않다' 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행복정도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전체평균은 3.0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3.10점, 여자 청소년은 3.04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3.34점, 중학교 3.08점, 고등학교 2.86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행복도는 낮아졌다. 지역규모에 따라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3.11점, 대도시, 3.09점, 중소도시 3.04점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이 2.90점으로 가장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과 경제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2 현재 행복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07(0.68)	1.7	14.5	58.7	25.0	100.0(11,023)	–
성별	남자		3.10(0.70)	2.1	13.7	56.5	27.8	100.0(5,736)	60.404***
	여자		3.04(0.65)	1.4	15.4	61.2	22.0	100.0(5,28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4(0.68)	1.4	7.6	46.8	44.2	100.0(3,092)	1099.862***
	중학교		3.08(0.63)	1.4	12.2	63.2	23.2	100.0(3,725)	
	고등학교	전체	2.86(0.65)	2.3	21.6	63.5	12.5	100.0(4,206)	
		일반계고	2.86(0.65)	2.5	21.6	63.7	12.3	100.0(3,378)	
		특성화계고	2.88(0.64)	1.9	21.6	62.9	13.6	100.0(827)	
지역 규모	대도시		3.09(0.67)	1.5	13.9	58.8	25.8	100.0(4,426)	19.310**
	중소도시		3.04(0.69)	2.1	15.2	59.0	23.7	100.0(5,249)	
	읍면지역		3.11(0.67)	1.2	13.8	57.4	27.6	100.0(1,3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8(0.67)	1.7	13.7	59.1	25.5	100.0(9,896)	86.263***
	한부모가정		2.90(0.68)	1.5	24.0	57.4	17.1	100.0(811)	
	조손가정		3.11(0.73)	3.0	12.9	54.5	29.7	100.0(106)	
	기타		3.08(0.77)	3.1	16.3	49.8	30.7	100.0(209)	
학업 성적	상		3.19(0.67)	1.1	11.0	55.3	32.6	100.0(3,551)	342.420***
	중		3.08(0.66)	1.6	12.9	61.0	24.5	100.0(4,680)	
	하		2.89(0.69)	2.8	21.8	59.1	16.3	100.0(2,748)	
경제적 수준	상		3.20(0.65)	1.2	9.8	57.0	32.0	100.0(5,706)	683.603***
	중		3.01(0.66)	2.0	15.5	62.4	20.1	100.0(3,932)	
	하		2.71(0.68)	3.2	31.9	55.2	9.7	100.0(1,335)	

***p<.001.

행복정도 조사결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를 합한 긍정응답 비율을 통해 최근 4년간 행복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81.1%에서 84.3% 범위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결과 83.8%로 2015년 84.3%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3년 조사결과 81.1%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일반계고, 그리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행복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2013년 80.3%에서 2016년 86.5%로 6.2% 정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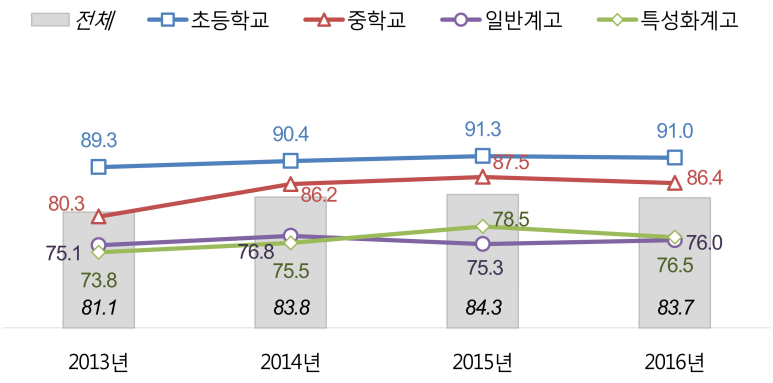

* 주:'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를 합친 비율/ 단위:%

【그림 Ⅲ-5-20】 현재 행복 정도 : 연도별 추이

현재의 행복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업부담 때문에' 30.9%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22.2%,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학업부담 때문에'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남학생의 경우 32.0%로 여학생의 응답 29.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계고의 경우 37.8%로 다른 학교급 및 특성화계고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성화계고의 경우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업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4%에 그쳐 일반계고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 규모가 클수록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기타가정의 경우 '학업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34.9%인 반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14.4%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수준일수록 학업부담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Ⅲ-5-53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30.9	8.6	8.9	2.8	4.9	22.2	13.5	8.2	100.0(1,775)	–
성별	남자		32.0	8.5	7.6	4.1	4.5	20.6	14.0	8.8	100.0(893)	19.324**
	여자		29.7	8.8	10.3	1.5	5.4	23.8	12.9	7.6	100.0(88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7	11.6	16.5	4.2	4.8	6.5	13.0	12.7	100.0(274)	120.729***
	중학교		30.1	12.4	10.0	1.6	5.8	17.7	12.5	10.0	100.0(499)	
	고등학교	전체	31.3	6.0	6.3	3.1	4.5	28.7	14.1	6.0	100.0(1,001)	
		일반계고	37.8	4.7	6.6	2.3	3.9	26.3	13.1	5.3	100.0(809)	
		특성화계고	4.0	11.1	5.2	6.4	7.2	38.7	18.3	9.1	100.0(193)	
지역 규모	대도시		32.7	9.7	8.8	2.3	4.6	21.2	12.4	8.5	100.0(676)	19.979
	중소도시		30.0	8.1	8.1	3.1	4.7	23.3	13.7	8.9	100.0(899)	
	읍면지역		28.8	7.4	13.3	3.5	7.3	20.4	15.8	3.5	100.0(2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1	7.9	8.7	1.9	5.0	21.8	13.2	8.4	100.0(1,513)	–
	한부모가정		14.4	14.0	10.6	9.0	2.6	29.1	14.0	6.4	100.0(206)	
	조손가정		20.7	13.3	4.6	18.8	0.0	4.8	24.5	13.4	100.0(17)	
	기타		34.9	7.6	11.4	0.0	15.7	9.2	17.1	4.1	100.0(39)	
학업 성적	상		36.1	8.6	10.3	2.5	2.9	17.6	12.6	9.3	100.0(427)	52.355***
	중		33.4	7.2	7.0	2.3	3.9	21.7	16.4	8.1	100.0(671)	
	하		24.9	10.2	9.8	3.6	7.3	25.8	10.9	7.6	100.0(671)	
경제적 수준	상		35.5	6.9	9.1	0.9	4.6	19.2	16.1	7.8	100.0(623)	122.254***
	중		31.7	8.4	9.5	0.5	5.1	22.6	13.9	8.4	100.0(681)	
	하		23.2	11.4	7.8	9.0	5.3	25.7	9.0	8.5	100.0(464)	

**$p<.01$, ***$p<.001$

⑤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지표는 2015년에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김영지외, 2015: 336). 이 척도를 사용하여 국제 비교한 유니세프에서는 주관적 삶의 복지 수준(subjective well-being)의 중요 요소는 삶의 만족도라고 정의하고 있다(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0). 이 조사를 위해 2015년 지표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0점~10점)를 사용하였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9세~17세)의 평균은 6.10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미숙, 전진아 외, 2013).[18] 2016년도 인권실태조사결과 10점 만점에서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만 9세부터 조사되지만, 인권실태연구는 만 10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조사되었고, 또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2016년에 조사된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54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10점 평균	SD	전체(N)
전체		6.85	2.07	11,009
성별	남자	6.97	2.11	5,728
	여자	6.72	2.02	5,281
학교유형	초등학교	7.52	1.99	3,110
	중학교	6.89	2.02	3,717
	일반계고	6.38	2.01	3,358
	특성화계고	6.05	2.02	824
지역규모	대도시	6.94	2.08	4,423
	중소도시	6.77	2.07	5,230
	읍면지역	6.88	2.04	1,35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6.91	2.05	9,892
	한부모가정	6.13	2.21	804
	조손가정	6.45	2.25	108
	기타	6.96	2.01	206
학업성적	상	7.52	1.90	3,560
	중	6.84	1.97	4,678
	하	6.00	2.13	2,729
경제적수준	상	7.50	1.86	5,712
	중	6.40	1.97	3,930
	하	5.33	2.10	1,320

삶의 만족도조사를 위해 0점에서 10점의 범위를 갖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표준편차는 2.0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6.97점으로 여자(6.72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7.52점으로 중학교(6.89점), 일반계고(6.38점), 특성화계고(6.05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6.94점, 읍면지역 6.88점, 중소도시 6.7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6.91점으로 조손가정(6.45점)이나 한부모가정(6.13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18) 영문표현으로 0점은 'worst possible life', 10점은 'best possible life'로서 국가마다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전진아 외, 2013)에서 "현재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개념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55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단위 : %(명))

구분		11세	13세	15세
2016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전체	80	73	70
	남자	82	78	74
	여자	78	67	67
WHO의 HBSC* (2009/2010 HBSC data)	전체	88	85	83
	남자	88	85	83
	여자	88	83	79

* 주: 출처는 아래의 2013년의 유니세프 보고서(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1)이며, 해당 보고서 역시 HBSC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한 것임.

* 출처: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p.11.

* 원자료: Currie C, Zanotti C, Morgan A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WHO의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조사의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기 위해 10점 척도 중 6점 이상에 응답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 하였다. WHO 유럽사무소에서 매 4년마다 학령기 연령대의 아동·청소년(11세, 13세, 15세)의 건강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HBSC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10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 지표를 산정하고 있다. 비교를 위해 인권실태조사 대상 중 11세(2005년 출생), 13세(2003년 출생), 15세(2001년 출생) 데이터를 따로 선택하여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11세, 13세, 14세 모두에서 HBSC 조사에 포함된 30개 국가[19]의 평균적인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 연도의 조사결과가 아니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들은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가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룩셈부르크, 프랑스,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미국, 독일, 캐나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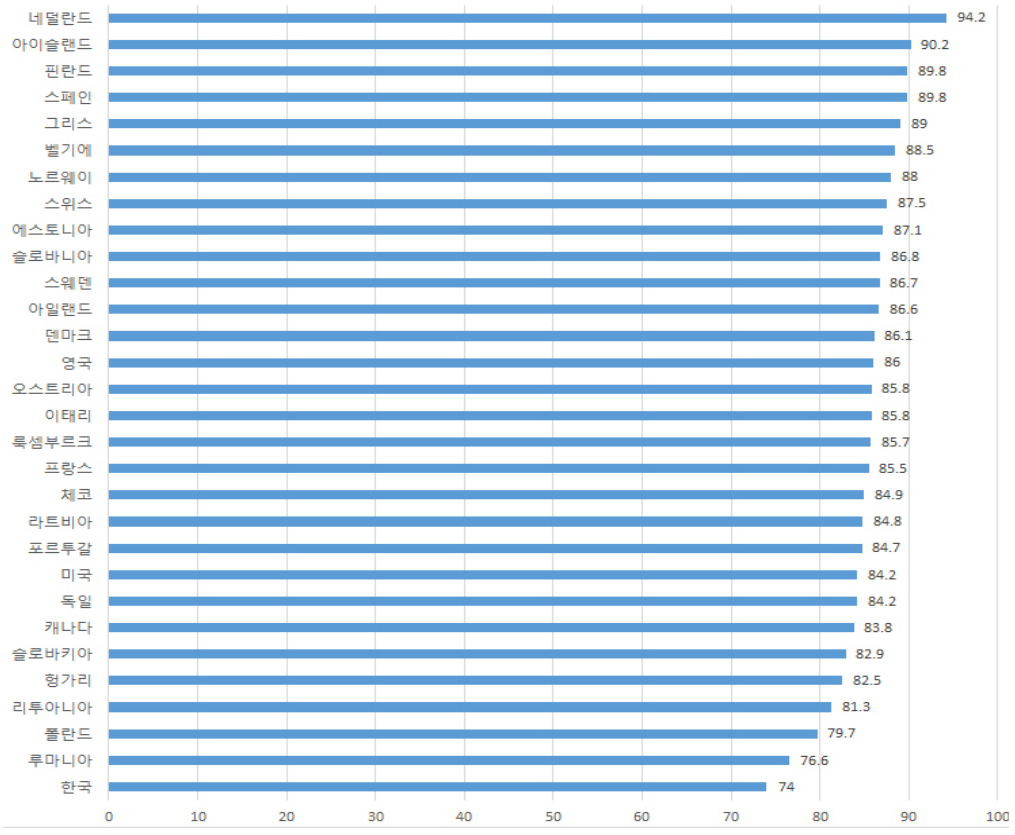

* 주: 본 그래프의 출처는 유니세프의 보고서(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1)이며, 여기에 본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추가하여 재작성하였음. (단위: %)

【그림 Ⅲ-5-21】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유니세프에서는 HBSC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조사 대상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나라별로 비교하고 있다. 제시된 데이터는 10점 기준에서 중간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을 의미하는데(Bradshaw, et al., 2013),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94.2%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루마니아 역시 76.6%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의 2016년 조사결과(74%)보다 높았다. 다만 HBSC 조사 분석 데이터의 경우 2009/2010년 취합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6년 한국의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이 외국 아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⑥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3응답자의 71.4%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생각한다' 25.5%, '자주 생각한다' 3.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 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전체적으로 2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35.7%로 남자 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6.7%, 특성화계고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29.9%로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32.3%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71.4	25.5	3.1	100.0(7,925)	-
성별	남자		77.9	19.9	2.3	100.0(4,133)	179.719***
	여자		64.3	31.6	4.1	100.0(3,793)	
학교유형	중학교		73.2	24.4	2.3	100.0(3,717)	20.446***
	고등학교	전체	69.7	26.4	3.8	100.0(4,209)	
		일반계고	68.2	27.8	4.0	100.0(3,381)	
		특성화계고	76.1	20.9	3.1	100.0(828)	
지역규모	대도시		72.6	24.9	2.5	100.0(3,113)	12.255*
	중소도시		70.1	26.4	3.5	100.0(3,876)	
	읍면지역		72.6	23.6	3.7	100.0(93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1.7	25.4	2.9	100.0(7,086)	39.334***
	한부모가정		67.7	26.9	5.4	100.0(666)	
	조손가정		73.1	13.6	13.3	100.0(57)	
	기타		72.2	26.2	1.6	100.0(117)	
학업성적	상		74.8	22.2	3.0	100.0(2,125)	70.105***
	중		73.8	23.7	2.5	100.0(3,287)	
	하		65.3	30.7	4.0	100.0(2,478)	
경제적수준	상		74.8	22.0	3.2	100.0(3,660)	142.766***
	중		72.3	25.9	1.9	100.0(3,028)	
	하		58.7	35.3	6.0	100.0(1,199)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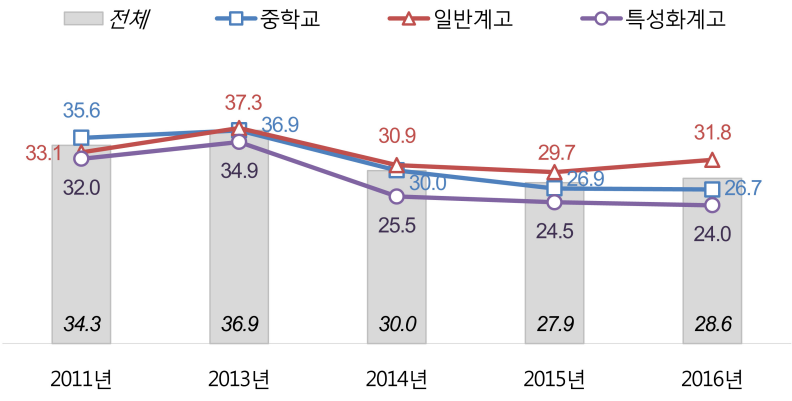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연도별 추이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 에 대한 응답을 합한 비율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험 정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결과는 28.6%로 2015년의 조사결과 27.9%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1년 조사결과인 34.3%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학교 유형별로 보면 중학교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계고의 경우 그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 성적' 40.7%, '기타' 27.3%, '가족간의 갈등' 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성별로 비교해 보면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이 여자(41.3%)와 남자(39.8%)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이 남자(23.6%)와 여자(21.0%)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의 경우 '학교성적'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50.0%로 다른 학교 유형의 응답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28.7%로 다른 학교 유형의 응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응답경향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조손가정(44.5%)과 양부모가정(42.4%)의 경우 '학교성적'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족유형의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27.7%로 다른 가정 유형의 응답률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학업성적별로 비교해 보면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각 42.9%, 41.2%로 상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7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성적	가족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전체(N)	χ^2
전체			40.7	22.1	8.3	1.7	27.3	100.0(2,242)	-
성별	남자		39.8	23.6	5.8	2.6	28.1	100.0(901)	21.910***
	여자		41.3	21.0	9.9	1.0	26.7	100.0(1,341)	
학교 유형	중학교		34.6	28.7	10.9	1.3	24.5	100.0(986)	73.030***
	고등학교	전체	45.5	16.9	6.2	1.9	29.5	100.0(1,256)	
		일반계고	50.0	15.4	5.5	1.4	27.7	100.0(1,061)	
		특성화계고	21.1	24.7	9.9	5.0	39.3	100.0(194)	
지역 규모	대도시		39.6	22.1	7.6	1.2	29.4	100.0(842)	15.493
	중소도시		43.0	21.2	8.8	1.7	25.3	100.0(1,146)	
	읍면지역		34.0	25.7	7.8	3.2	29.3	100.0(2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4	21.2	8.4	1.4	26.7	100.0(1,986)	-
	한부모가정		27.5	27.7	7.5	4.4	32.9	100.0(208)	
	조손가정		44.5	8.8	5.0	8.1	33.6	100.0(15)	
	기타		17.3	46.9	7.8	0.0	28.0	100.0(32)	
학업 성적	상		36.4	23.8	8.8	0.9	30.0	100.0(531)	18.478*
	중		42.9	18.3	9.1	2.0	27.6	100.0(849)	
	하		41.2	24.4	7.0	1.8	25.6	100.0(850)	
경제적 수준	상		45.2	18.5	8.1	0.8	27.3	100.0(908)	67.024***
	중		41.9	21.1	9.1	1.1	26.9	100.0(832)	
	하		30.5	29.8	7.1	4.4	28.3	100.0(490)	

*$p<.05$, ***$p<.001$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조사 결과 '학교 성적'이라는 항목의 응답은 40.7%로 2015년의 조사 결과인 43.6%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1년의 조사결과인 35.1%보다는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은 2016년 조사결과 22.1%로 2015년의 조사결과인 23.9%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의 조사결과(22.1%)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에 대한 응답은 2016년 조사결과 8.3%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죽고 싶은 이유와 관련하여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비율은 34.6%로 2015년의 조사결과 40.0%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조사결

과인 34.2%에 비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6년 조사 결과 28.7%로 2011년 조사 결과인 22.4%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라는 응답 비율의 경우 2011년 조사 결과 19.6%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10.9%로 조사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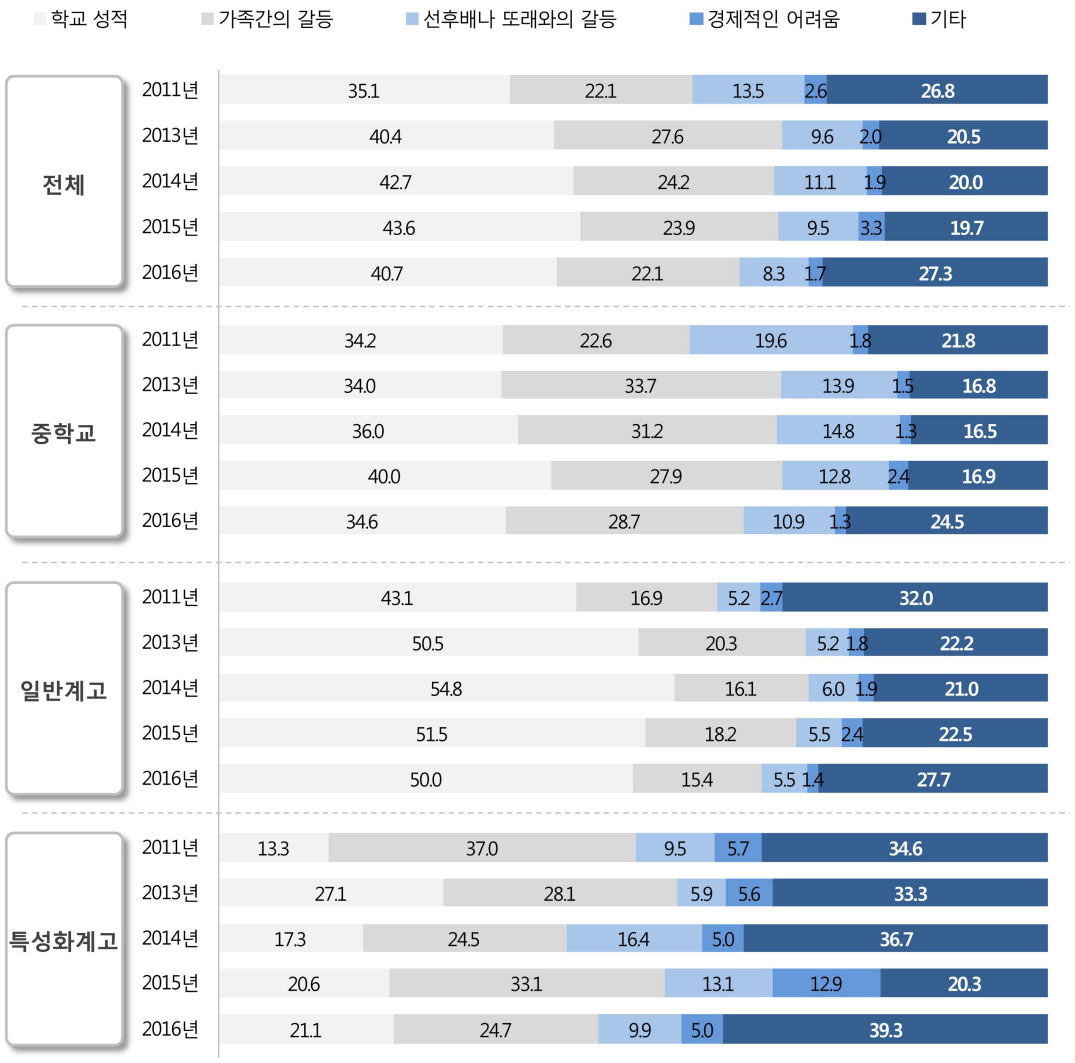

【그림 Ⅲ-5-2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연도별 추이

일반계고의 경우 '학교성적'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2016년 조사에서는 50.0%로 2015년 조사결과인 51.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조사결과인 43.1%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2016년 조사 결과 15.4%로 2015년 조사결과인 18.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조사결과(1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에 대한 응답은 2016년 조사결과 5.5%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 '학교성적'이라는 항목에 대한 2016년 응답률은 21.1%로 2015년 조사결과인 20.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의 응답결과인 13.3%와 비교해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항목의 응답결과는 보면 2016년 24.7%로 2015년의 조사결과인 33.1%에 비해 응답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 조사 결과인 37.0%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 간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조사한 6가지 모든 유형에 있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8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스트레스 유형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1)		t
	Mean	SD	Mean	SD	
학업문제	2.78	.89	3.34	.75	−28.176***
가정불화	1.51	.70	2.02	.88	−24.209***
또래와의 관계	1.68	.76	2.21	.91	−24.238***
경제적인 어려움	1.49	.68	1.85	.81	−18.453***
외모 및 신체조건	1.90	.82	2.40	.90	−22.696***
미래에 대한 불안	2.56	.93	3.10	.88	−24.308***

***$p<.001$.

* 주: 1) 가끔 생각한다+자주 생각한다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등 4개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360), 자아존중감과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81).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현재 행복

정도와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84). 우울감의 경우 현재 행복 정도와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451),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와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7). 또한 현재 행복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r=-.344).

표 Ⅲ-5-59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현재 행복 정도
우울감	-.360**	-	-
현재 행복 정도	.484**	-.451**	-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281**	.407**	-.344**

**$p<.01$

⑦ 고민거리 대화 상대

표 Ⅲ-5-60 고민을 나눌 지인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 상담 센터	기타	전체(N)	χ^2
전체		8.7	5.9	34.6	5.5	1.2	0.9	41.4	0.5	0.3	0.9	100.0(11,011)	-
성별	남자	9.5	8.8	34.4	4.4	1.6	1.2	38.5	0.4	0.3	0.9	100.0(5,722)	266.105***
	여자	7.8	2.7	34.9	6.7	0.8	0.6	44.6	0.6	0.4	0.9	100.0(5,28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0	7.4	48.5	5.5	1.1	0.8	25.4	0.6	0.3	1.4	100.0(3,136)	-
	중학교	9.0	5.3	31.1	5.4	1.3	0.9	45.3	0.6	0.4	0.7	100.0(3,697)	
	일반계고	8.1	5.1	28.8	5.4	1.2	0.8	49.2	0.2	0.3	0.8	100.0(3,353)	
	특성화계고	9.2	6.1	21.7	6.1	1.1	1.7	53.4	0.3	0.0	0.4	100.0(826)	
지역 규모	대도시	9.3	6.4	35.9	5.4	0.9	0.9	39.2	0.5	0.4	1.0	100.0(4,424)	38.139**
	중소도시	8.3	5.6	33.5	5.7	1.3	0.8	43.2	0.5	0.2	0.8	100.0(5,237)	
	읍면지역	8.6	5.3	34.6	5.1	1.7	1.5	41.7	0.5	0.2	0.8	100.0(1,3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	5.6	35.6	5.3	1.2	0.9	41.5	0.5	0.3	0.8	100.0(9,886)	-
	한부모가정	11.3	8.6	24.6	8.5	1.3	1.3	41.6	0.8	0.2	1.8	100.0(809)	
	조손가정	19.0	10.8	29.1	3.6	2.5	1.6	30.4	0.0	0.0	3.1	100.0(106)	
	기타	7.6	7.5	32.0	5.7	0.9	0.8	42.6	0.7	0.2	1.9	100.0(209)	
학업 성적	상	7.9	6.1	44.2	4.9	1.0	0.6	33.9	0.3	0.3	0.9	100.0(3,546)	345.976***
	중	8.1	6.2	33.8	6.3	1.2	0.9	41.8	0.6	0.2	0.9	100.0(4,692)	
	하	11.1	5.0	23.8	4.9	1.3	1.5	50.4	0.6	0.4	1.0	100.0(2,728)	
경제적 수준	상	6.7	6.7	39.2	4.9	1.3	0.9	38.6	0.5	0.3	1.0	100.0(5,702)	244.082***
	중	9.7	5.4	31.7	6.0	0.9	0.8	44.0	0.4	0.3	0.9	100.0(3,931)	
	하	15.0	3.6	24.0	6.8	1.4	1.5	45.9	0.4	0.6	0.6	100.0(1,32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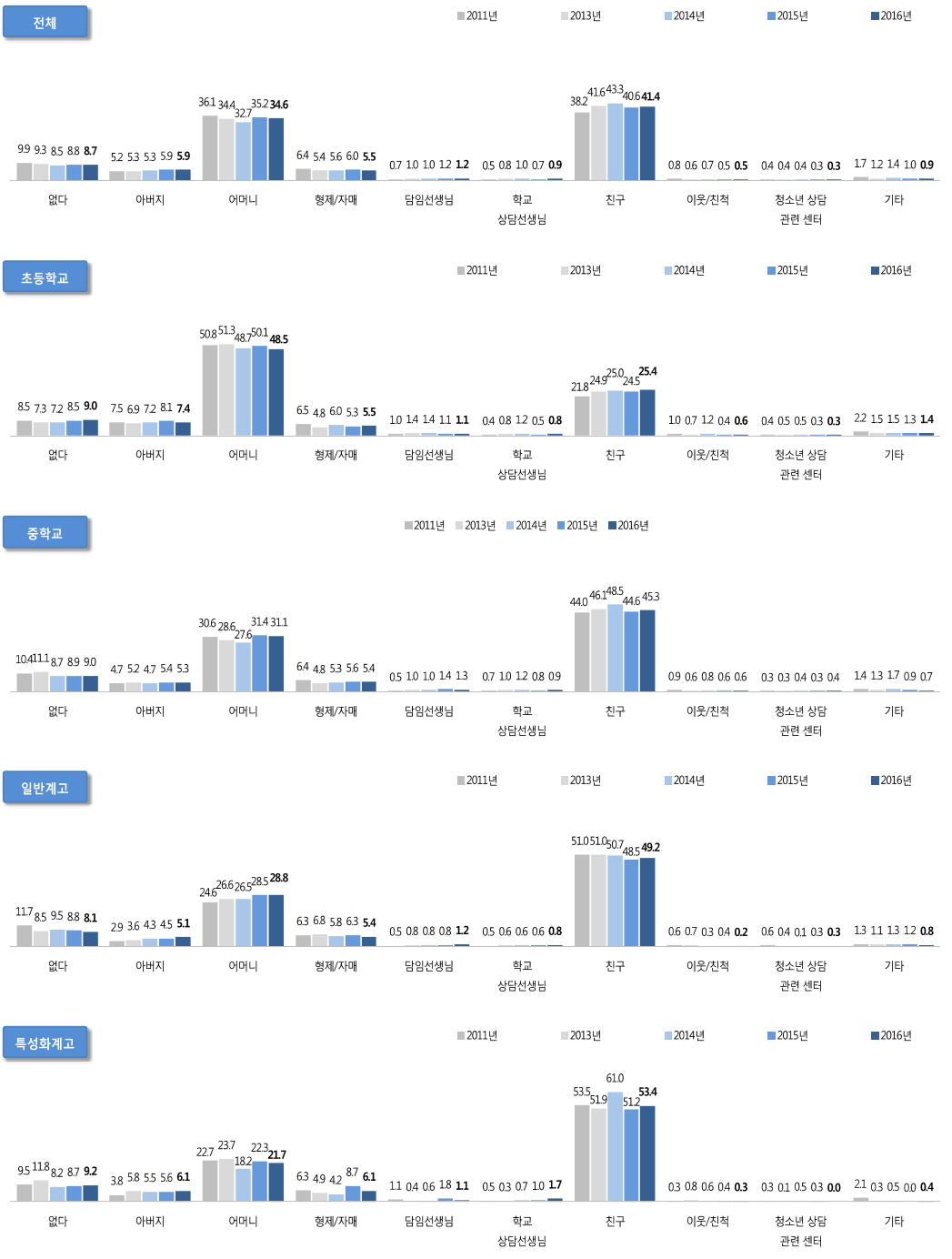

【그림 Ⅲ-5-24】 고민을 나눌 지인: 연도별 추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친구'라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 34.6%, '없다' 8.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의 응답이 44.6%로 남자가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 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의 응답이 25.4%로 다른 학교유형에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어머니'라는 항목의 응답은 48.5%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친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양부모가정의 경우 '어머니'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35.6%로 다른 유형의 응답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조손가정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30.4%로 다른 가족 유형의 '친구'에 대한 응답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성적이 낮을수록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낮고,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친구'라는 응답의 경우 2016년 조사결과 41.4%로 2015년의 조사결과인 40.6%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1년의 조사결과인 38.2%보다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라는 항목의 경우 응답률이 2016년 조사결과 34.6%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조사결과인 35.2%보다는 다소 감소한 양상이었으며 2011년 조사결과인 36.1%보다도 감소한 수치였다. 학교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어머니'라는 응답의 경우 2016년 48.5%로 2015년 조사결과인 50.1%보다 낮아진 수치이며 2011년 조사결과인 50.8%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라는 항목의 응답에 있어서는 2016년 조사결과 25.4%가 응답하여 2015년 조사결과인 24.5%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1년 조사결과인 21.8%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조사결과 45.3%로 2015년 조사결과인 44.6%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조사결과인 44.0%보다도 증가한 수치이다. '어머니'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조사결과 31.1%로 2015년 조사결과인 31.4%와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1년 조사결과인 30.6%와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계고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2016년 조사결과 49.2%로 2015년 조사결과인 48.5%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1년 조사결과인 51.0%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어머니'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조사결과 28.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28.5%, 2011년 24.6%에 비해 응답비율이

증가한 것이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 '친구'라는 항목의 응답률은 2016년 조사결과 53.4%로 2015년 조사결과인 51.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1년 조사결과인 53.5%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16년 조사 결과 21.7%로 2015년 조사결과인 22.3%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1년 조사결과인 22.7%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① 아동·청소년 빈곤율

표 Ⅲ-5-61 아동빈곤율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중위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3	6.7	5.6	6.6	11.1	10.4	10.3
	2004	7.0	5.5	6.6	12.4	11.0	11.3
	2005	8.3	5.9	7.9	13.0	11.7	11.9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2013	5.3	3.6	4.7	9.1	8.5	8.4
	2014	4.7	3.3	4.0	8.4	7.9	7.5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2013	5.3	3.6	4.7	8.4	7.8	7.9
	2014	4.7	3.3	4.0	7.7	7.0	7.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빈곤통계연보. p.73, p.77. 표 재구성.
*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아동·청소년 빈곤율[20]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임완섭, 이주미, 2014). 아동 빈곤율은 1인가구 포함여부나 소득유형 구분과 상관없이 모두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를 제외한 절대아동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4.7%,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3.3%,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4.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인가구를 포함한 경우의 절대아동 빈곤율(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를 제외한 경우의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8.4%,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9%,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5%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인가구를 포함한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7%,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0%,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0%로 각각 1인가구를 제외했을 때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들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OECD에서 발간한 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의 빈곤율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빈곤율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OECD자료는 2010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6년 현재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동 빈곤율을 국제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0년에 조사된 OECD의 자료를 토대로 아동 빈곤율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빈곤율은 9.4%로 OECD 평균 빈곤율은 13.3%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1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이나 스위스의 아동 빈곤율인 9.8%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349).

그리고 OECD의 가장 최근자료인 2012년 자료에도 한국과 일본, 칠레의 데이터가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변화의 추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3.3%로 빈곤율의 변화가 없으며, 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 핀란드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한국과 같은 수치를 보인 슬로베니아의 경우 9.4%에서 8.7%로 다소 감소한 반면, 헝가리의 경우 9.4%에서 1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절대적 빈곤개념에서의 빈곤율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OECD기준을 따라 가구 중위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족의 아동비율을 의미한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63, 재인용).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영국의 경우는 9.8%에서 10.4%로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지 외, 2015: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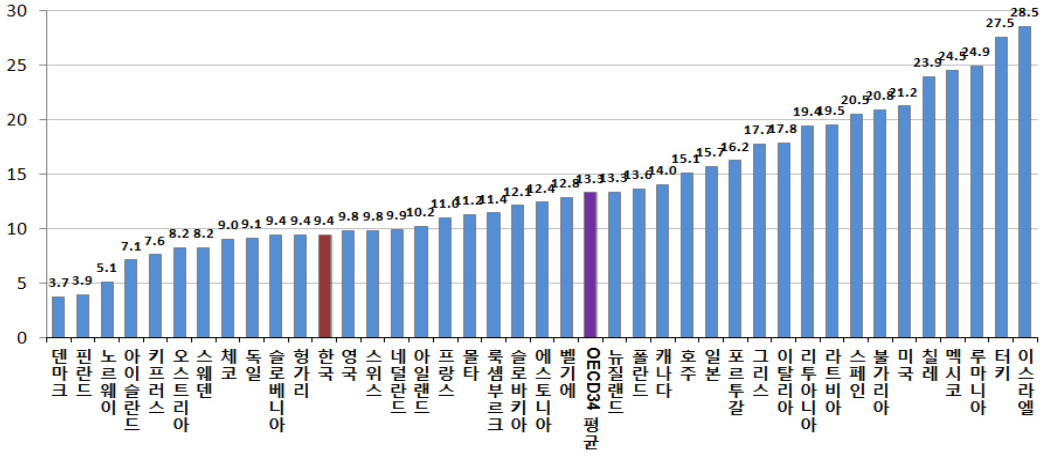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총괄보고서. p.464. 재인용.

【그림 Ⅲ-5-25】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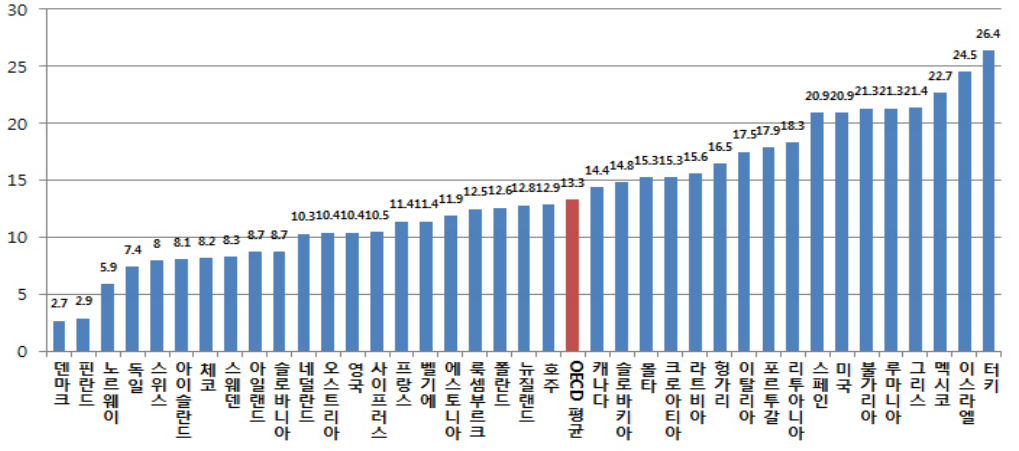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October, 31, 2014, from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Jan 2014.pdf 한국, 일본, 칠레는 데이터가 없음.

【그림 Ⅲ-5-26】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2)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2015년도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에서는 2009년도와 2011년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자료를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도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이후의 데이터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와 동일하게 2009년도와 2011년도의 OECD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의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자료 기초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2011년도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0.9%로 2009년도의 0.8%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인 2.2%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350).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복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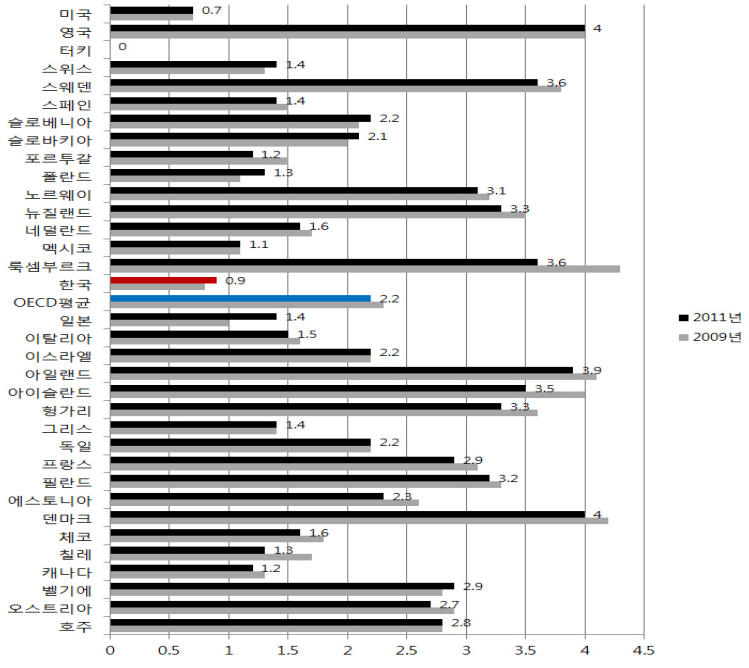

* 출처: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그림 Ⅲ-5-27】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9, 2011)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0세에서 24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524,209명으로 나타나 2014년도 315,603명에 비해 208,606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9세의 비율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0세-14세 26.2%, 20-24세 14.0%, 5세-9세 14.0%, 0세-4세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9세, 10세-14세, 15세-19세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가폭이 큰 연령대로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대임을 고려해 보면, 학령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I-5-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1,258,582
2014	명	315,603	20,428	34,928	71,185	125,294	63,768	1,237,386
	%	100.0	6.5	11.1	22.6	39.7	20.2	-
2015	명	524,209	24,242	73,176	137,462	216,066	73,263	1,554,484
	%	100.0	4.6	14.0	26.2	41.2	14.0	-

*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34. 발췌·정리.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4년도 91,327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족 구조와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는 18,705천 가구였다. 이중 한부모 가구는 1,783천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30천 가구, 한부모 가족은 131천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구 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 9.4%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며 2008년의 9.0%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3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가구(A)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18,206	18,457	18,705
한부모가구	1,509	1,551	1,594	1,639	1,677	1,714	1,749	1,783
저소득 한부모가족	150	171	185	189	218	222	225	230
한부모가족(B)*	82	94	108	115	131	140	142	131
비율(B/A)	9.0	9.1	9.2	9.3	9.3	9.4	9.4	69.5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1578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를 말함.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자가족은 2014년 기준 171,260세대 455,318명으로 2013년 166,152세대 446,428명에 비해 세대수와 세대원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자가족은 2014년 기준 49,152세대 129,845명으로 2013년의 48,670세대 129,266명에 비해 세대수와 세대원수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5,060세대 10,461세대원으로 2013년의 통계결과인 5,416세대 11,213세대원에 비해 세대수와 세대원 수 모두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4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2012	명	217,547	578,663	163,171	438,365	46,839	124,611	1,782	3,696	208	422	5,547	11,569
	%	100.0	100.0	75.0	75.8	21.5	21.5	0.8	0.6	0.1	0.1	2.6	2.0
2013	명	222,593	591,818	166,152	446,428	48,670	129,266	2,123	4,432	232	479	5,416	11,213
	%	100.0	100.0	74.6	75.4	21.9	21.8	1.0	0.75	0.1	0.08	2.4	1.9
2014	명	225,472	595,624	171,260	455,318	49,152	129,845	–	–	–	–	5,060	10,461
	%	100.0	100.0	76.0	76.4	21.8	21.8	–	–	–	–	2.2	1.8

* 출처: 여성가족부(2013c). 청소년백서. p.126.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329.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미혼모가족이 청소년모자가족으로, 미혼부가족이 청소년부자가족으로 바뀜.)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91.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p.307.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309.
여성가족부(2015d).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주: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국가보훈법대상

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현황수준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5c). 2015년을 기준으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은 142개 교육지원청으로 2014년에 비해 2개의 교육청이 감소하였으며, 1,823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에 비해서는 5개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186,303명으로 2014년에 비해 7만 여명이 감소하였으며, 사업 지원금은 2015년 1,28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8억원 가량 감소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의 규모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상 지역	30지역 (기존15, 신규15)	60지역 (기존30, 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14개 교육지원청	143개 교육지원청	148개 교육지원청	144개 교육지원청	142개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모든 市	모든 市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학교수[1] (초·중·고)	163교 (초99, 중61,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538교 (초304, 중230, 고4)	534교 (초296, 중234, 고3)	1,356교 (초670, 중681, 고5)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828교 (초 903, 중 880, 고 65)	1,823교 (초 890, 중 861, 고 70)
학생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153,175명 (16,719명)	326,826명[2]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1,086,434명 (71,853명)	1,302,250명 (72,881명)	1,247,836명 (65,291명)	1,256,387명 (60,056명)	1,186,303명 (54,357명)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642억 원 (374억 원) (268억 원)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1,404억원 (1,297억원) (107억원)	1,286억원 (1,232억원) (54억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323.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수 포함.

나.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5d).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d). 2016년 현재의 드림스타트 설치현황과 이용아동수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226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6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실시 규모와 예산을 통해 매년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아동의 수는 125,562명으로 전년에 비해 18,435명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80,102가구가 참여하여 전년도에 비해 13,551가구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6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실시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사업예산(억 원)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아동 수(명)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
가구 수(가구)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169.
보건복지부(2015d). '2015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5e). 2015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9.
보건복지부(2016). 내부자료.

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표 Ⅲ-5-67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174.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취업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비용 등에 필요한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의 아동,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며, 후원자나 보호자가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월 3만원 내에서 같은 금액을 통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2015d).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입자 수는 56,479명이며, 월 평균 적립액은 36,601원으로 가입자와 월평균 적립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현재 누적 적립금의 전체 규모는 1,868억 원으로 이 중 아동의 적립금은 1,061억 원이며, 정부 지원 적립금은 80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홀로 방치될 수 있는 맞벌이가정의 아동이나 한부모가정의 아동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과 보호,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4,05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41개소가 늘어난 것이며, 지원예산은 1,4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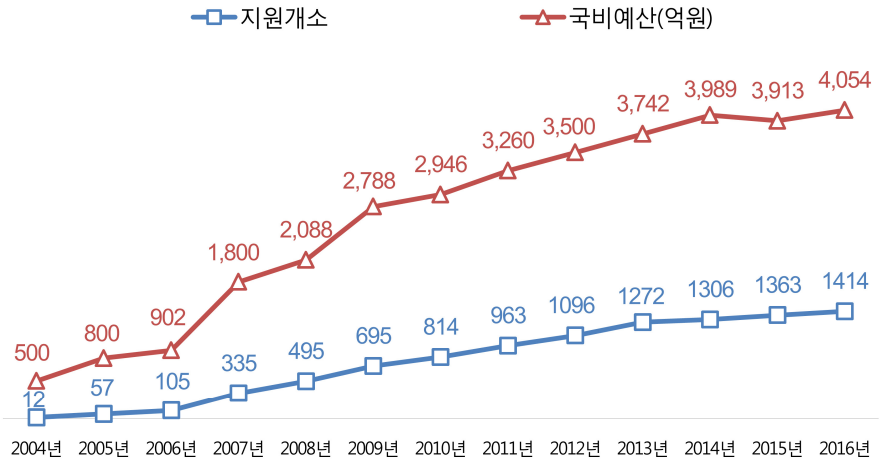

【그림 Ⅲ-5-28】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6) 소결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에서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나누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이 조사되었으며, 생존 및 발달에서는 사망률,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 조사되었다. 보건서비스에서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이 조사되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조사되었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이 조사되었다.

첫째,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수,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조사하였다. 우선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보면 2015년 현재 88,067명이었으며, 이중 70.4%(61,973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29.6%(26,094명)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특수학교는 167개교이며, 특수학급은 9,868개이며, 이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의 수도 2015년 현재 18,339명이며,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의 진학률과 취업률, 무직률을 살펴본 결과 진학률은 2015년 현재 57.5%이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은 2015년 현재 7.8%이며,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무직률도 2015년 현재 34.7%이며,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청소년들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이후 진학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업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직률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35%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감소폭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였다. 우선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0세의 기대여명과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사망률 등 3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0세의 기대여명은 2014년 현재 82.40세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사망률은 2014년 현재 1,000명당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의 34개국 평균치인 4.1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아에 대한 보건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0~24세)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사고사망률을 보더라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망사고율의 감소폭이 매우 작고, 특히 20-29세가 27.1명, 0세가 12.4명, 10-19세가 11.3명으로 나타나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세 이상 29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살과 운수사고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은 범죄 피해율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 등 2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90,5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남자 청소년의 피해건수가 여자 청소년의 피해건수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거주지역의 음식물 안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0.4%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급식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식의 안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66.5%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6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의 80.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을 조사하였다. 우선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등 3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전체 학교수 중 63.9%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수학교 86.8%, 초등학교 69.1%, 고등학교 66.7%, 중학교 50.7%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1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우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6세-18세의 비만율은 11.5%이며, 2013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18세의 비만율은 15.5%로 더욱 높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관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질병에 대한 보건서비스 측면에서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율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7.8%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미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은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등 4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7.8%, 16.7%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예방교육 과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83.5%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운동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수면시간과 수면부족이유, 비만율 등 4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자신이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은 30.6%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과 관련하여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5%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등교전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8%,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22.2%, '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19.6%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5분이었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적으며, 특히 일반계고가 평균 5시간 58분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면시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2014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54.1%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면부족의 이유로는 '채팅/문자메시지'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0.8%), '가정학습'(50.7%), '학원과외'(49.5%), '게임'(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경도 비만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만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중등도와 고도비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비만율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삶의 만족도 수준,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 고민거리 대화상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0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일반계고가, 일반계고보다는 특성화계고가,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에서, 그리고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95점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특성화계고가, 특성화계고보다는 일반계고가, 그리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이 30.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모든 학년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도 5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모든 유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3.7%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행복도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도 점수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낮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28.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친구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3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낮고,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원수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에서는 아동·청소년빈곤율,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등 2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도와 2011년도의 OECD 데이터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아동·청소년과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아동 현황과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0세에서 2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는 524,209명이며,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19세의 비율이 4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현재 9.5%이며, 2008년 이후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사업은 최근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학생 취학률

교육받을 권리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 중 하나는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다음 <표 Ⅲ-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각급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3세부터 21세까지의 취학에 적합한 연령에 있는 재적 학생수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 기준에 따른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통계값이다.

표 Ⅲ-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10~2016)[21]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	40.2	40.9	44.9	47.4	47.3	49.4	50.7
초등학교	99.2	99.1	98.6	97.2	96.4	98.5	98.1
중학교	97.0	96.7	96.1	96.2	97.7	96.3	94.9
고등학교	91.5	91.9	92.6	93.6	93.7	93.5	94.1
전체 고등교육기관	70.1	71.0	68.4	69.0	68.2	68.1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d). 2015 간추린 교육통계. p.13.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기본통계(8월 30일 발표). p.21.

위의 표와 [그림 Ⅲ-6-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년부터 최근인 2016년(2016.8월 기준)까지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체로 초·중·고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유치원에서만 지속적인 취학률 상승을 보이고 있어 2010년 40.2%였던 것이 2016년에는 50.7%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98.1%이고, 중학교 94.9%, 고등학교 94.1%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취학률은 초·중·고 학교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을 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351)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잘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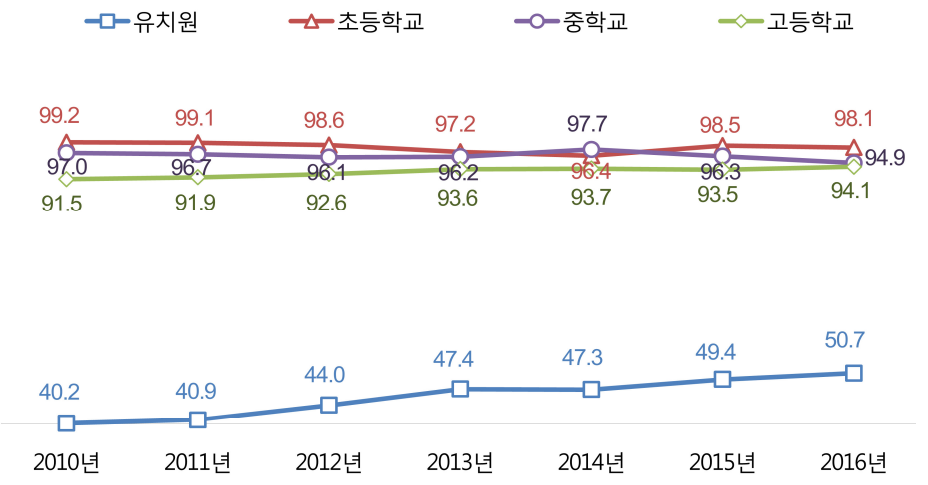

【그림 Ⅲ-6-1】 유·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연도별 추이(2010~2016) (단위 : %)

② 학생 진학률

학교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교육 받을 권리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진학률은 당해연도에 졸업하는 학생들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당해연도 졸업자로 나눈 수에 100을 곱하여 산출된다. 다음 <표 Ⅲ-6-2>에는 2000년도의 교육단계별 진학률과 2011년~2015년 사이의 연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과정으로의 진학은 2010년 이후 계속 99.9%이었다가 2015년 마침내 처음 100%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으로의 진학률은 6년 간 계속 변함 없이 99.7%에 달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 75.4%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에는 70.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별 편차가 심해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78.9%인 반면, 특성화고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36.1%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0~2015)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100.0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7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75.4	72.5	71.3	70.7	70.9	70.8
	일반고	–	(75.8)	(76.6)	(77.7)	78.7	78.9
	특수목적고	–	(67.4)	(64.2)	(60.0)	59.6	58.4
	특성화고	–	(61.0)	(50.0)	(41.7)	37.9	36.1
	자율고	–	(69.3)	(72.6)	(74.7)	75.7	75.8
	일반계고	81.5	75.2	76.2	77.5	–	–
	전문계고	71.1	63.7	54.4	46.8	–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d). 2015 간추린 교육통계. p.12.
* 주: 1) ( )는 참고 수치로 2015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특성화계 고교 진학자는 2010년 이전 대학 합격자 기준,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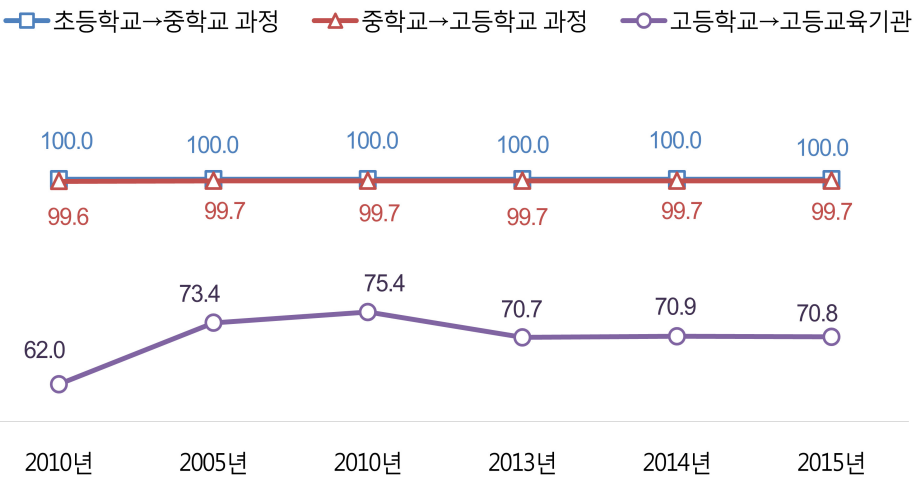

【그림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단위 : %)

③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교육의 기회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 중 하나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지출 정도를 통해서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적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도 학생 1인당 지출되는 공교육비를 산출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나라에서 사용한 총교육비 중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산한 액수를 학생수로 나눈 값을 다시 구매력지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로 보통 미국달러(USD)로

환산된다.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각 나라마다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한 환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의 일정한 금액을 해당 PPP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로 환전하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은 것을 의미한다.

표 Ⅲ-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2000, 2007~2012)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구 분		초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	한국	3,155	4,069	6,118
(2003)	OECD 평균	4,381	5,957	9,571
2007	한국	5,437	7,860	8,920
(2010)	OECD 평균	6,741	8,267	12,907
2008	한국	5,420	7,931	9,081
(2011)	OECD 평균	7,153	8,972	13,717
2009	한국	6,658	9,399	9,513
(2012)	OECD 평균	7,719	9,312	13,728
2010	한국	6,601	8,060	9,972
(2013)	OECD 평균	7,974	9,014	13,528
2011	한국	6,976	8,199	9,927
(2014)	OECD 평균	8,296	9,280	13,958
2012	한국	7,395	8,355	9,866
(2015)	OECD 평균	8,247	9,518	15,028
2013	한국	7,957	8,592	9,323
(2016)	OECD 평균	8,477	9,811	15,77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OECD 교육지표 2015. p.24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49.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5.
* 주: 1)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
  2) 한국의 PPP 환율은 2011년 $ 1당 854.59원, 2012년 $ 1당 860.25원, 2013년 $ 1당 871.41원

<표 Ⅲ-6-3>은 한국과 국제기구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를 2000년과 2007년~2013년 간 추이를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 의하여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으로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초등교육 과정의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2000년에 한국이 3,155 PPP $로 OECD는 4,381 PPP $의 약 72%에 미쳤는데 2013년에는 한국이 7,957 PPP $로 OECD 8,477 PPP $의 약 94% 가까이 해당되어 초등학교 과정에 많은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의 맥락으로 2013년 기준 한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OECD의 약 88%에 해당되어 OECD 평균의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과정에서는 OECD의 약 59%정도에 해당되어 교육과정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국제적인 수준에 아직 멀리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World Bank의 2015년 구매력지수(PPP)에 따른 한국의 1인당 GDP는 34,549 US $로 세계 30위이며, 미국이 9위, 독일이 14위, 핀란드가 23위, 일본이 26위이다(위키백과, 2016.10.14. 인출[22]).

④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세부지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밀한 학급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개개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말하자면 교육적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먼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총 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표 Ⅲ-6-4>와 [그림 Ⅲ-6-3]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간의 7년 동안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 받을 권리가 개개인 학생들에게는 더 좋아지고 있는 추이라 할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유치원의 경우 2010년 14.8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 1016년에는 13.3명이 되어 약 10%정도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가 가장 작게 감소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18.7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 1016년에는 14.6명이 되어 약 22%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2010년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폭이 2016년 대비 약 27% 감소의 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약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부터 학교유형이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로 나뉘게 되었는데 지난 6년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비율은 일반고가 약 13%, 특성화고가 12%를 보이고 있다.

22)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에서 2016년 10월 14일 인출.

표 Ⅲ-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10~2016)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		14.8	14.6	14.5	14.3	13.4	13.4	13.3
초등학교		18.7	17.3	16.3	15.3	14.9	14.9	14.6
중학교		18.2	17.3	16.7	16.0	15.2	14.3	13.3
고등학교	전체	15.5	14.8	14.4	14.2	13.7	13.2	12.9
	일반고	–	15.8	15.4	15.2	14.6	14.1	13.7
	특수목적고	–	11.0	10.3	10.0	9.7	9.3	9.1
	특성화고	–	12.5	12.1	12.0	11.6	11.4	11.0
	자율고	–	15.2	14.6	14.3	13.9	13.7	13.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2016. 08. 30. 기준). p.19.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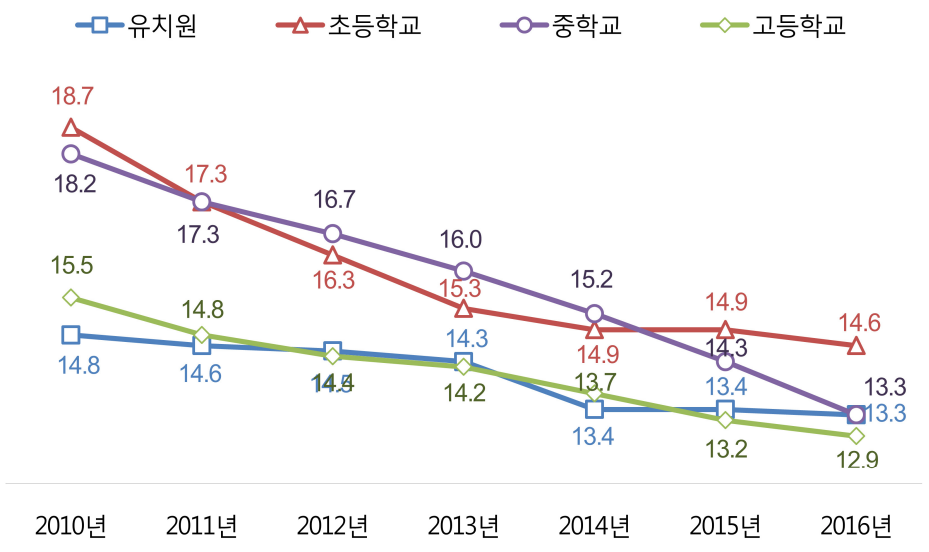

【그림 Ⅲ-6-3】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2010~2016) (단위 : %)

한편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 수를 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다음 <표 Ⅲ-6-4>와 [그림 Ⅲ-6-3]에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가 잘 나타나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가 지난 7년 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2010년 학급당 학생 수가 26.6명 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에는 22.4명으로 1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율은 중학교에서는 2010년 26.6명 이었던 것이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에는 27.4명으로 18.9%,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 학급당 학생 수가 33.7명 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9.3명으로 1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1970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62.1명에 달하던 것이 2016년에 22.4명으로 감소되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18) 무려 63.9%나 감소된 것을 보면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6-5 학급당 학생 수(2010~2016)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		21.0	20.9	21.6	21.5	19.7	20.0	19.7
초등학교		26.6	25.2	24.3	23.2	22.8	22.6	22.4
중학교		33.8	33.0	32.4	31.7	30.5	28.9	27.4
고등학교	전체	33.7	33.1	32.5	31.9	30.9	30.3	29.3
	일반고	–	34.7	34.2	33.6	32.4	31.3	30.6
	특수목적고	–	28.4	26.7	25.8	25.0	24.4	24.0
	특성화고	–	28.5	28.0	27.6	26.9	26.4	25.7
	자율고	–	33.5	32.3	31.5	30.7	30.3	30.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2016. 08. 30. 기준).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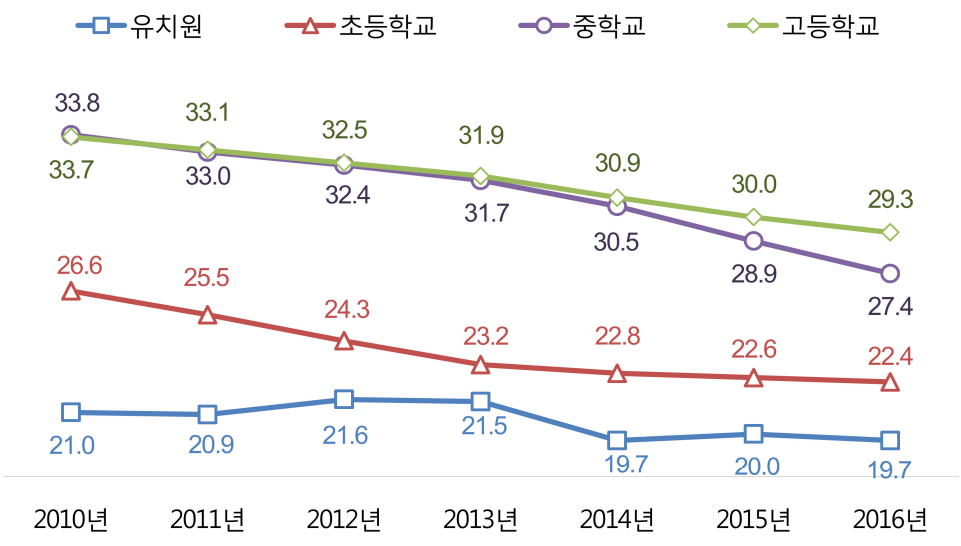

【그림 Ⅲ-6-4】 학급당 학생 수 추이(2010~2016) (단위 : %)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이들의 발달권과 보호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부적응율' 지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소분류 지표는 다시 학업중단률,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세부지표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교부적응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6-6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0~2015)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0.6	0.6	0.6	0.6	0.5	0.5
중학교	1.0	0.9	0.9	0.8	0.7	0.6
고등학교	2.0	1.9	1.8	1.6	1.4	1.3
계 (학업중단자)	1.1 (76,589)	1.1 (74,365)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기본통계(08. 30. 기준). p.23.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학업중단자는 사망자에 미포함

위의 <표 Ⅲ-6-6>은 최근 한국에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학업중단에 관한 2010년~2015년 동안의 연도별 상황과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을 한 총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수치이다. 위 표에서 보면 한국에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 간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고 학업중단자 수가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초·중·고의 학업중단자를 모두 합해 총 76,589명이었고 전체 초·중·고 학생의 1.1%가 해당되었다. 이후 2011년에도 같은 비율로 74,365명의 학업중단자가 생겼고, 이후 2015년 학업중단자는 현재 총 47,07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9,519명이 줄어 38.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의 수가 6년 간 38.5% 감소되었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수치이고 실제로 2015년에 전체 초·중·고 학교의 학업중단율은 0.8%로 2010년의 1.1%에 비해 27.3%가 감소한

것이다. 다음 [그림 Ⅲ-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고등학교인데 2010년 2.0%에서 2015년도에는 1.3%로 낮아져 감소율이 35%로 다른 학교급의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전체 학업중단율의 평균 수치를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그 간 교육부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학교컨설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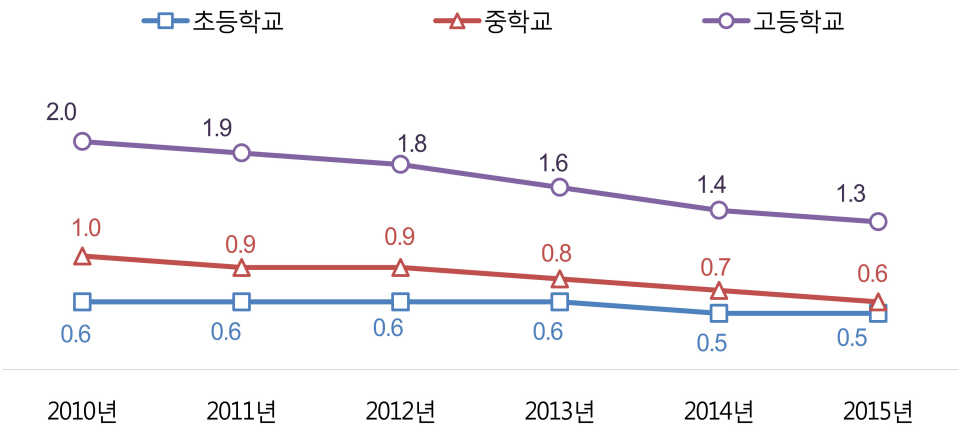

【그림 Ⅲ-6-5】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0~2015) (단위 : %)

②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소분류 지표인 학교부적응률의 세부지표인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학업중단 실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조사한 다음 <표 Ⅲ-6-7>의 자퇴 충동여부와 <표 Ⅲ-6-9>의 자퇴충동 이유에 대한 실태를 통해 학업중단에 대한 이유와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Ⅲ-6-7>에서는 2016년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자퇴 충동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전체 총 11,112명의 응답학생 중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은 전체의 25.1%로 4명 중 1명이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다. 이중 여성이 27.6%로 남성 22.8%보다 자퇴 충동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유형별로 자퇴 충동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5.5%, 중학교가 20.1%, 고등학교가 36.7%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자퇴 충동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학에 대한 부담과 부모와 교사 등과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비교적 대학입학 시험까지

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보이는 초등학생도 20명 중 3명 이상이 학교를 자퇴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되는 실태이다. 대도시 학생(22.8%)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생보다 자퇴 충동여부가 적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퇴 충동이 큰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의 자퇴 충동은 17.1%인 반면 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39.3%에 해당되고 있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업을 중단하려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교 자퇴 충동은 20.9%인 반면 하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40.1%의 자퇴 충동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위화감을 인한 불만과 낮은 자존감은 자퇴 충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7 자퇴 충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5.1	74.9	100.0(11,112)	–
성별	남자		22.8	77.2	100.0(5,781)	33.472***
	여자		27.6	72.4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5	84.5	100.0(3,170)	507.499***
	중학교		20.1	79.9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36.7	63.3	100.0(4,212)	
		일반계고	37.3	62.7	100.0(3,383)	
		특성화계고	34.3	65.7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2.8	77.2	100.0(4,465)	21.464***
	중소도시		26.7	73.3	100.0(5,285)	
	읍면지역		26.5	73.5	100.0(1,362)	
학업 성적	상		17.7	82.3	100.0(3,580)	419.960***
	중		22.4	77.6	100.0(4,725)	
	하		39.3	60.7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20.9	79.1	100.0(5,758)	217.844***
	중		26.1	73.9	100.0(3,964)	
	하		40.1	59.9	100.0(1,339)	

***p<.001

<표 Ⅲ-6-8>에서는 위에서 알아본 자퇴 충동 여부 실태를 2012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자퇴 충동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고등학교에서는 2012년 32.5%의 자퇴 충동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이다가 2016년에는 다시 최고 비율인 36.7%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016년도 실태에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특이한 사항으로는 위의 <표 Ⅲ-6-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자퇴 충동여부가 37.3%로 특성화계고 학생의 34.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17.7%)과 하위인 학생(39.3%)을 비교했을 때 하위인 학생이 배 이상 자퇴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율배반적인 실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현재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에 성적이 상위인 학생과 특성화계고로 진학하지 못한 성적인 하위인 학생 간의 차이가 양극화라 할 정도로 커 이러한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한 위화감과 무기력감을 가져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할 수 있다.

표 Ⅲ-6-8 자퇴 충동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24.3	23.2	22.8	22.6	15.5
중학교			32.4	31.7	30.5	28.9	20.1
고등학교	전체		32.5	31.9	30.9	30.3	36.7
	일반계	일반고	34.2	33.6	32.4	31.3	–
		특수목적고	26.7	25.8	25.0	24.4	–
		자율고	32.3	31.5	30.7	30.3	–
	일반계고		31.1	30.3	29.4	28.7	37.3
	특성화계고[23]		28.0	27.6	26.9	26.4	34.3

다음으로 <표 Ⅲ-6-9>에서는 위에서 알아본 자퇴 충동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1순위로 선택된 내용의 분포도이다. 전체를 보면 '공부하기가 싫어서'가 24.4%로 4명 중 1명 가까이 자퇴충동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6.6%로 세 번째로 많은 자퇴 충동 이유인데 이 둘은 모두 학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합하면 41%에 달한다. 즉, 5명 중 2명이 자퇴를 한다면 학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자퇴 충동 이유로는 16.9%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이다. 이는 응답학생이 매우 학교생활과 학업 모두에 무기력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실태이다. 이러한 학생이 전체 2,711명의 응답학생 중 약 458명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교육적 상황이다. 성별로 보면 자퇴 충동에 있어서 여성(19.3%)이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고, 반면에 공부하기가 싫어서라는 이유는

23) 2016년 이전의 조사에서는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분류하였던 것을 2016년에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표에서는 2015년까지 특성화고로 지칭되었던 학교유형을 2016년 특성화계고와 같은 의미와 내용으로 지칭하고 일반계고는 대학진학보다는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각주 10번 참조).

남성(28.7%)이 여성(2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에서는 남녀가 비슷했다.

표 Ⅲ-6-9 자퇴 충동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4.4	16.6	6.4	0.9	24.4	7.1	10.6	16.9	12.6	100.0(2,711)
성별	남자		3.9	13.7	7.2	1.0	28.7	6.2	10.5	16.7	12.1	100.0(1,281)
	여자		4.9	19.3	5.7	0.8	20.5	7.8	10.7	17.0	13.1	100.0(1,4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4	10.1	9.9	0.6	25.4	5.2	4.2	13.2	17.9	100.0(482)
	중학교		3.5	9.9	6.1	0.6	29.3	7.3	10.3	22.9	10.2	100.0(724)
	고등학교	전체	2.0	22.0	5.5	1.1	21.7	7.5	12.8	15.2	12.1	100.0(1,505)
		일반계고	1.3	24.9	3.8	1.2	22.5	7.8	12.1	14.8	11.6	100.0(1,231)
		특성화계고	5.4	8.8	13.2	0.6	18.2	6.4	16.4	17.0	14.0	100.0(274)
지역 규모	대도시		5.3	15.7	6.1	0.9	21.8	7.2	12.1	17.8	13.2	100.0(994)
	중소도시		3.8	17.6	6.2	0.7	25.5	7.6	10.2	15.6	12.8	100.0(1,362)
	읍면지역		4.6	15.3	8.3	1.6	27.6	4.7	8.3	19.1	10.4	100.0(356)
학업 성적	상		4.9	7.3	7.6	0.7	24.3	7.6	10.8	18.1	18.6	100.0(625)
	중		5.2	15.4	6.8	0.5	22.9	8.3	10.7	17.9	12.3	100.0(1,035)
	하		3.5	23.4	5.4	1.4	26.0	5.5	10.3	15.3	9.3	100.0(1,039)
경제적 수준	상		4.5	14.6	7.7	0.6	26.5	7.4	9.9	16.6	12.2	100.0(1,171)
	중		4.4	17.9	5.5	0.1	24.2	7.0	12.0	16.3	12.6	100.0(1,012)
	하		4.5	18.7	5.6	3.1	19.7	6.7	9.4	18.8	13.5	100.0(513)

위의 표에서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공부가 하기 싫다는 이유를 자퇴 충동의 첫 번째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초등학교 25.4%, 중학교 29.3%, 고등학교가 21.7%로 나타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초·중·고 모든 학교 유형에서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24.9%로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8.8%보다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18.1%)이 하위에 속하는 학생(15.3%)보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사실이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심한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퇴 충동의 이유로 1순위로 뽑힌 내용들인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다음으로 선정된 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0.6%,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못해서'가 7.1%,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가 6.4%, '괴롭힘을 당해서'가 4.4%,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가장 낮은 0.9% 그리고 기타가 12%로 조사되었다. 괴롭힘 같은 학교폭력이 자퇴 충동 원인의 1순위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2,711명의 응답자 중 112명이나 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자퇴 충동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의외로 제일 낮은 것 또한 예상치 못한 응답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많이 자퇴의 충동을 가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며, 괴롭힘과 같은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자퇴 충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퇴를 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에는 지금까지 학교 안팎의 많은 노력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욱 각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6]에는 위의 표에서 나타난 실태에 대한 2014년~2016년 사이의 3년간 추이가 그려져 있다. 2016년에 자퇴 충동 이유의 가장 많이 1순위로 선택된 '공부하기가 싫어서' 24.4%는 전년도인 2015년의 45.6%에 비하면 거의 반이나 줄어든 것인데 이는 그림의 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15년도에 묻지 않았던 이유인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16.9%)'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10.6%)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자퇴 충동의 원인으로 '공부가 하기 싫어서'와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에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들이 발달심리학적으로 가장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시기이며, 대학입학 시험이 서서히 압박을 가해와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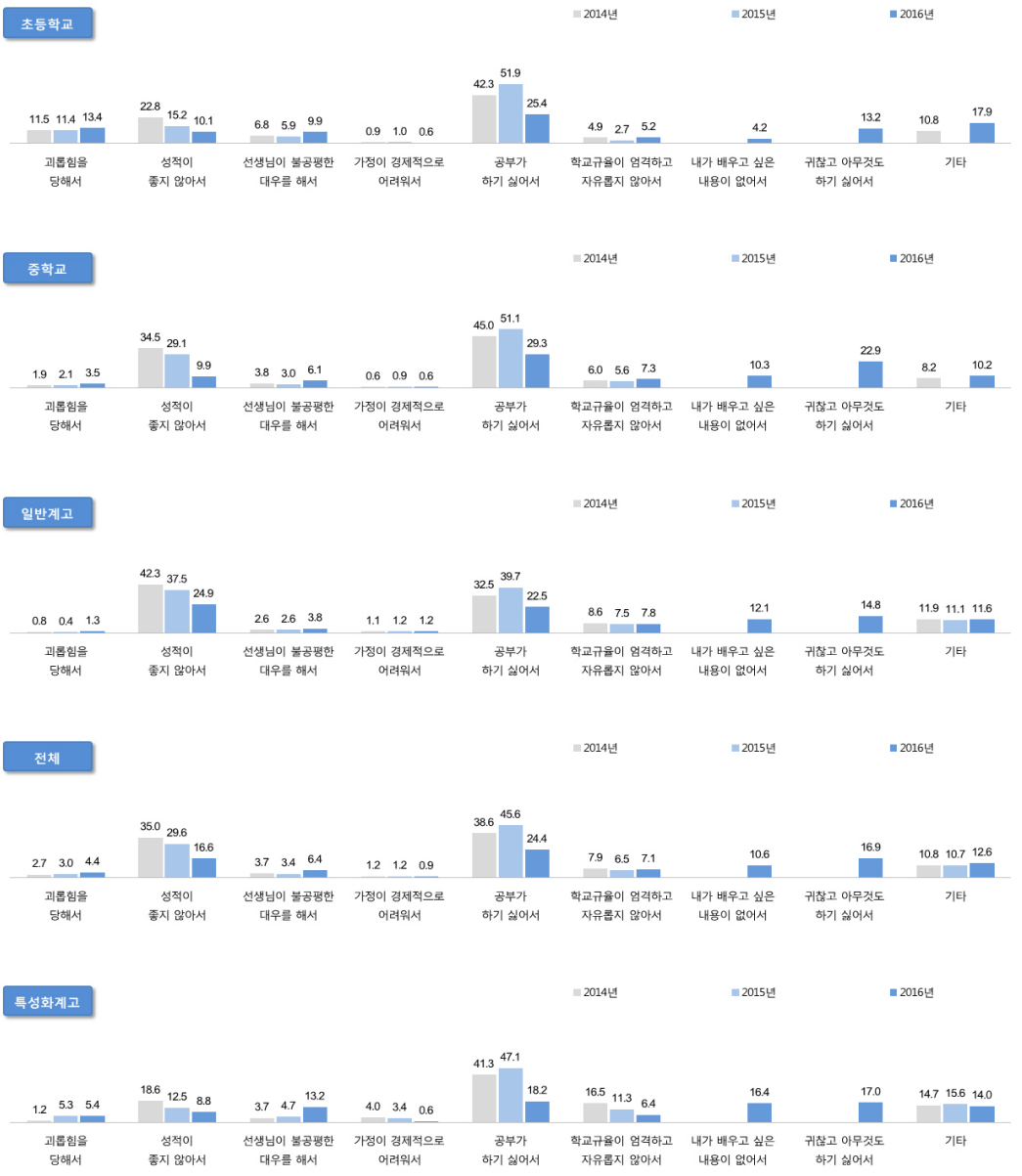

* 주: 보기 문항 중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는 2016년에 추가

【그림 Ⅲ-6-6】 자퇴충동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 (단위 : %)

③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표 Ⅲ-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5(0.60)	1.4	7.2	66.3	25.1	100.0(11,073)	-
성별	남자		3.13(0.62)	2.0	7.6	65.7	24.7	100.0(5,753)	34.403***
	여자		3.17(0.57)	0.8	6.8	66.9	25.5	100.0(5,3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9(0.67)	1.9	8.9	57.6	31.7	100.0(3,140)	167.211***
	중학교		3.16(0.57)	1.2	6.0	68.2	24.6	100.0(3,732)	
	고등학교	전체	3.11(0.56)	1.2	7.1	71.1	20.6	100.0(4,201)	
		일반계고	3.14(0.56)	1.2	6.1	70.7	22.0	100.0(3,380)	
		특성화계고	3.01(0.56)	1.4	10.8	72.9	14.9	100.0(821)	
지역 규모	대도시		3.21(0.60)	1.3	6.0	63.5	29.3	100.0(4,444)	95.851***
	중소도시		3.13(0.58)	1.3	7.7	68.4	22.7	100.0(5,270)	
	읍면지역		3.06(0.63)	2.4	9.6	67.4	20.6	100.0(1,359)	
학업 성적	상		3.26(0.60)	1.2	4.9	60.8	33.1	100.0(3,578)	241.544***
	중		3.13(0.59)	1.3	7.5	67.8	23.4	100.0(4,700)	
	하		3.04(0.59)	1.9	9.8	70.6	17.7	100.0(2,750)	
경제적 수준	상		3.23(0.59)	1.0	5.4	63.2	30.4	100.0(5,731)	307.291***
	중		3.10(0.58)	1.6	7.3	70.0	21.0	100.0(3,956)	
	하		2.95(0.62)	2.4	14.6	68.2	14.8	100.0(1,337)	

***$p<.001$

학업중단율과 자퇴 충동 여부 정도의 세부지표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표 Ⅲ-6-10>은 학생들이 학교의 문화와 학교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을 알아보는 내용들 중 학교에서 친구들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응답자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2%로 부정적인 답변이 8.6%에 달하고 있으며 '그런 편이다' 66.3%, '매우 그렇다' 25.1%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은 91.6%로 대체로 고무적인 실태라 할 수 있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학교 유형을 보았을 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90% 안팎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다만 고등학교를 보았을 때에 일반계고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7.3%인 반면,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는 12.2%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보았을 때에도 대도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7.3%인데

반해 읍·면지역에서의 부정적인 응답은 12.0%에 달해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동일하게 나타나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의 대상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응답학생들이 모든 유형의 응답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생각이 가장 높아 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Ⅲ-6-7]의 연도별 추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향이 비록 작지만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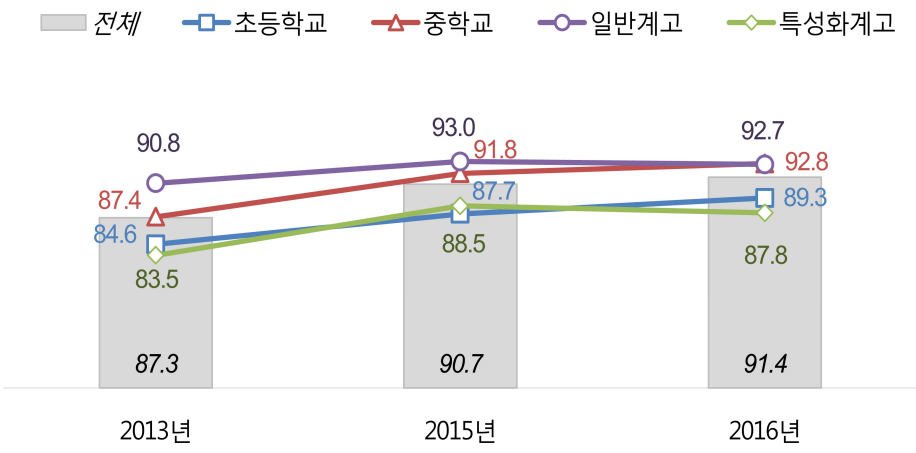

【그림 Ⅲ-6-7】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1)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6-11>은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중 '선생님은 학생들 을 공정하게 대한다.'에 관한 응답의 실태조사 결과이다. 앞에서 자퇴 충동 이유를 묻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선생님이 불공편한 대우를 해서'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학생의 6.4%에 달했다. 다음 표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0%에 달해 응답학생 5명 중 1명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남자(18.8%)와 여자(21.3%)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교 유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8.3%인데 반해, 중학교에서는 18.1%, 고등학교에서는 30.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보다는 읍면지역의 부정적 응답이 조금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생님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학생은 17.7%인데 비해 하위인 학생은 29.1%에 달해 학교선생님의 가난한 학생에 대한 공정성과 배려가 부족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Ⅲ-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2)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5(0.79)	4.4	15.6	50.9	29.1	100.0(11,069)	–
성별	남자		3.06(0.80)	4.9	13.9	50.9	30.3	100.0(5,752)	35.906***
	여자		3.03(0.78)	3.8	17.5	50.9	27.8	100.0(5,31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4(0.70)	2.0	6.3	37.7	53.9	100.0(3,138)	1599.641***
	중학교		3.03(0.73)	3.6	14.5	57.1	24.7	100.0(3,730)	
	고등학교	전체	2.77(0.78)	6.8	23.6	55.2	14.4	100.0(4,201)	
		일반계고	2.79(0.77)	6.5	23.3	55.2	14.9	100.0(3,380)	
		특성화계고	2.71(0.78)	8.2	24.8	54.9	12.1	100.0(821)	
지역 규모	대도시		3.11(0.77)	3.6	14.1	49.7	32.6	100.0(4,444)	67.063***
	중소도시		3.01(0.78)	4.5	16.8	52.1	26.6	100.0(5,265)	
	읍면지역		2.98(0.83)	6.5	16.2	50.2	27.1	100.0(1,360)	
학업 성적	상		3.19(0.78)	3.4	13.0	45.3	38.3	100.0(3,578)	352.084***
	중		3.06(0.76)	3.9	14.6	53.1	28.3	100.0(4,696)	
	하		2.84(0.80)	6.6	20.8	54.2	18.4	100.0(2,751)	
경제적 수준	상		3.13(0.80)	4.1	13.6	47.1	35.1	100.0(5,730)	276.753***
	중		3.00(0.76)	4.2	16.1	55.1	24.7	100.0(3,955)	
	하		2.81(0.78)	6.3	22.8	54.3	16.5	100.0(1,334)	

***$p<.001$

[그림 Ⅲ-6-8]은 위의 표에서 보여준 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대한 2013년, 2015년, 2016년 3개년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Ⅲ-6-8]에서는 선생님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공정성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오히려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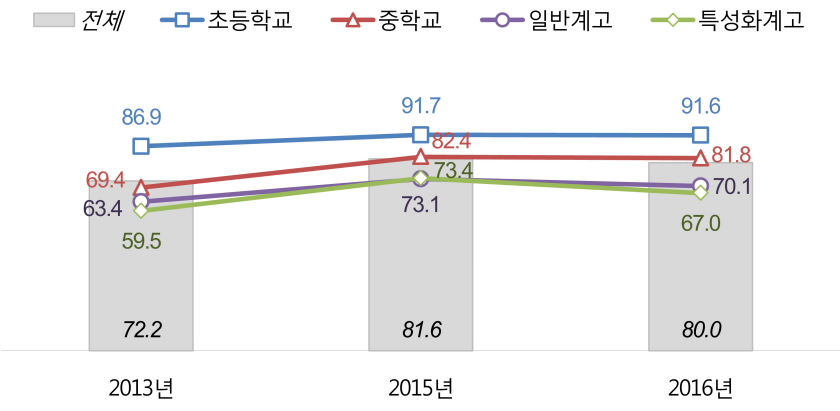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8】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2)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연도별 추이

다음 <표 Ⅲ-6-12>는 학생들의 학교 문화와 학교생활 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학교가 교육받을 권리를 잘 보장해주고 있는 가를 알아보려는 지표들 중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11,064명 중77%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이 4.8%,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8.2%가 해당되었다. 남녀의 부정적 응답 비율은 각각 22.7%와 23.3%로 거의 비슷했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13.9%, 중학교가 19%, 고등학교가 33.5%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앞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고등학교에서의 부정적 응답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1,333명의 학생 중에서 38.2%에 해당되는 509명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등교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도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교 등교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16.0%로 적었으나, 하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부정적 응답은 35%에 달해 학교 등교에 대하여 배가 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12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7(0.79)	4.8	18.2	51.7	25.3	100.0(11,064)	–
성별	남자		2.98(0.81)	5.5	17.2	51.3	26.0	100.0(5,751)	22.423***
	여자		2.97(0.77)	4.0	19.3	52.1	24.6	100.0(5,31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4(0.76)	3.1	10.8	45.3	40.8	100.0(3,137)	907.054***
	중학교		3.03(0.73)	3.2	15.8	55.7	25.4	100.0(3,729)	
	고등학교	전체	2.73(0.79)	7.5	26.0	52.9	13.6	100.0(4,198)	
		일반계고	2.76(0.78)	6.8	25.1	53.7	14.3	100.0(3,378)	
		특성화계고	2.61(0.81)	10.2	29.3	49.7	10.7	100.0(820)	
지역 규모	대도시		3.04(0.78)	4.2	16.1	51.5	28.2	100.0(4,438)	55.194***
	중소도시		2.94(0.79)	4.9	19.5	52.3	23.2	100.0(5,267)	
	읍면지역		2.91(0.83)	6.4	20.1	49.6	23.9	100.0(1,360)	
학업 성적	상		3.15(0.77)	3.5	12.5	49.1	34.8	100.0(3,574)	546.389***
	중		2.99(0.75)	3.5	17.8	54.3	24.3	100.0(4,698)	
	하		2.71(0.82)	8.7	26.3	50.4	14.5	100.0(2,748)	
경제적 수준	상		3.10(0.77)	3.6	14.5	50.0	31.9	100.0(5,727)	466.008***
	중		2.90(0.77)	5.3	19.4	55.1	20.2	100.0(3,955)	
	하		2.64(0.80)	8.4	30.8	48.8	11.9	100.0(1,333)	

***$p<.001$

[그림 Ⅲ-6-9]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응답의 2013년, 2015년, 2016년 3년 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즉, 고등학교 전체에서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2015년보다 2016년이 다소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초·중·고 학생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에게서 2013년에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0.2%였다가 2016년에는 81.1%로 10%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초등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4.7%, 일반계 고등학생이 -0.8%, 특성화계 고등학생이 -7.8%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이 가장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은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한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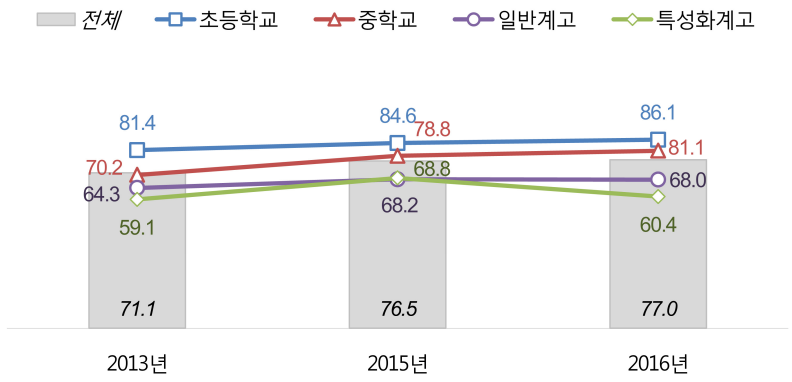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3)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연도별 추이

(3) 대안교육 참여율

① 대안학교 수와 종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의 중분류 지표인 '교육에의 권리'의 소분류 지표들 중 하나는 대안교육 참여율이다. 대안교육 참여율 지표는 말 그대로 기존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선택된 의미 있는 지표이다. 소분류 지표인 대안교육 참여율에 속하고 있는 세부지표들은 대안학교 수와 종류, 대안학교 학생 비율의 두 지표이다.

한국의 대안학교 수와 종류에 관한 실태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학교성적을 인정해 주는 대안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적 성격을 가진 학교들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대안학교 수와 종류에 관한 실태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학업중단학생 숫자는 2010년에 76,589명에 달했고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학생의 자연 감소로 인해 지난 해 2015년에는 44,070명으로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금까지 6년 간 누적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수는 378,686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실패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통계치이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이 상황을 위하여 대안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6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도의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이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1차 계획이라면 2016년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은 2차 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도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은 이미 2014년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된 학교 내 대안교실, 86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15개 사립 대안학교의 안전시설 점검 등의 교육여건 개선, 1,800명의 대안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대안교육 국제포럼 개최 등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연장과 확대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016년에는 다음 <표 Ⅲ-6-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교씩 대안학교를 공모하여 시·도 교육청이 설립한 후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표 Ⅲ-6-13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5개 권역 (단위 :시·도))

권 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 출처: 교육부(2016e). 교육부 보도자료(06. 22), p.3.

현재 대안학교는 <표 Ⅲ-6-14>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립과 사립 총 25개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공립 대안학교는 6개교인데 다문화학교 2개교, Wee스쿨 3개교[24]를 제외하면 '꿈키움학교' 만이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6년도의 학업중단예방 계획은 대안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는 공적 지원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6년도 교육부의 이 계획은 이미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표 Ⅲ-6-14 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2016년 6월 기준) (단위 : 명)

시·도	학교명	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현원(정원)	비고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147(150)	
서울	여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77(89)	탈북
서울	지구촌학교	사립	초	통학형(그룹홈)	69(90)	
서울	서울다솜학교	공립	고	통학형	109(120)	다문화

24) Wee스쿨은 학생의 위탁교육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학과 입학이 제한되고 있다.

시·도	학교명	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현원(정원)	비고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44(45)	
인천	인천해밀학교	공립	중·고 통합	통학형	43(90)	Wee스쿨
인천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72(225)	다문화
광주	월광기독학교	사립	초	통학형	214(216)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54(120)	
경기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 (120)	
경기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기숙형	30(39)	
경기	쉐마기독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175(270)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사립	초·중 통합	기숙형	35(90)	
경기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기숙형	17(60)	Wee스쿨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 통합	통학형	312(360)	
경기	하늘꿈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그룹홈)	42(57)	탈북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	고	기숙형	142(57)	
충북	음성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376(600)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기숙형	6(60)	Wee스쿨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385(480)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	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406(600)	
경북	산자연중학교	사립	중	기숙·통학 혼합형	37(90)	
경북	나무와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26(72)	
경남	경남꿈키움학교	공립	중	기숙형	99(135)	학교 부적응
경남	어울림학교(지리산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50(90)	
계					2,950 (4,325)	

* 출처: 교육부(2016e). 교육부 보도자료(06. 22), p. 6 교육부(2016).

현재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있는 대안학교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미)인가 대안학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위의 <표 Ⅲ-6-14>에서 제시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이다. 이 대안학교 유형은 정규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화된 분야를 교육하는 학교들과 비슷한 시설을 갖춘 학교를 2005년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에 대안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2007년에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였다. 위의 25개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들은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설립된 학교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대안교육의 수요와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2009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필수 교육과정을 50%로 축소하고 교사와 교지 임대 허용 등 설립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였다. 최근 2016년 8월에는 2009년 개정한 규정이 엄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육장 기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학교헌장 등의 불필요한 구비 서류도 완화하는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역시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안학교 수를 늘려 이들을 수용하려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 Ⅲ-6-14>에서 제시된 각종학교 대안학교는 200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설립된 TLBU글로벌학교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25개에 달하고 있다.

<표 Ⅲ-6-15>에서 볼 수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1988년 미인가로 운영 되고 있던 6개 대안학교들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2015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5개교, 중학교는 2014년까지 12개교이다가 2015년도 경남 남해군에 사립 남해상주중학교가 새롭게 설립되어 12개교에서 13개교로 늘어났다.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25개교인데 이중 4개교만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6c;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2014: 493-495). 한편, 위탁형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는 최근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대안학교들이 있으며, 교육부 관할에 있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확한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데 2006년 55개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처음 선정된 이후부터 2014년 기준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대략 237개가량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교육부, 2014c).

표 Ⅲ-6-15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지역	학 교 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고등학교과정	학생 수 소계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	59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	164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	251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51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	49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	49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	47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	78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	120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	132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	115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	74
중학교 : 13교(공립3, 사립10)						
부산	지구촌고	사립	'02	연제구	72	72
대구	달구벌고	사립	'03	동구	121	121
인천	산마을고	사립	'00	강화군	62	62
광주	동명고	사립	'99	광산구	216	216

지역	학 교 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고등학교과정	학생 수 소계
경기	두레자연고	사립	'99	화성시	117	117
	경기대명고	공립	'02	수원시	110	110
	이우고	사립	'03	성남시	242	242
	한겨레고	사립	'06	안성시	103	
강원	전인고	사립	'05	춘천시	83	83
	팔렬고	사립	'06	홍천군	55	55
	현천고	공립	'15	횡성군	45	45
충남	한마음고	사립	'03	천안시	120	120
	공동체비전고	사립	'03	서천군	110	110
충북	양업고	사립	'98	청원군	72	72
전북	세인고	사립	'99	완주군	182	182
	푸른꿈고	사립	'99	무주군	114	114
	지평선고	사립	'09	김제시	110	110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98	영광군	102	102
	한빛고	사립	'98	담양군	218	
	한울고	공립	'12	곡성군	119	119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98	경주시	124	124
경남	간디고	사립	'98	산청군	116	116
	원경고	사립	'98	합천군	97	97
	지리산고	사립	'04	산청군	47	47
	태봉고	공립	'10	창원시	142	142
고등학교 : 25교(공립4, 사립21)			계		2,950	3,516

* 출처: 교육부(2016c).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p.173.

② 대안학교 학생 비율

대안학교 학생 비율의 세부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국가의 공교육에 의해서 잘 보장되고 있는 가와 공교육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를 간접적으로 가름해 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심각한 실태를 살펴보았지만 한국은 매년 5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누적적으로 나오고 있는 나라이다. 다시 말하면 공교육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대안학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 상황이다. 2016년 한국의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6,635,784명으로 전년 대비 184,143명(2.7%) 감소하였다. 초·중·고 학생 수만은 5,882,790명으로 전년 대비 206,037명(3.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6a: 6). 대안학교 학생의 수는 2014년 교육부 통계 이후 집계된 것이 없는데,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초·중·고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는 약 14,935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약 0.22%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학업중단과 자연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대안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하여야 할 시기인 것을 예측하면 대안학교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6-16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 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출처: 교육부(2014a). 교육부 보도자료(11.10).
* 주: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이미 앞의 <표 Ⅲ-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각종학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950명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2,798명으로 나타났고(교육부, 2016.8),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위의 <표 Ⅲ-6-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1,138명으로 비록 연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생 수를 합하여 대략 3,9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는 최근 조사자료 부재로 2009년 자료에 의존하여 언급하면, 먼저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대안학교에 재학생은 1,283명으로 조사되었고,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2014년 기준 237개인데 위의 <표 Ⅲ-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 점검 차 조사된 170개의 학교에 6,762명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14a : 9) 이제까지 위에서 제시된 4개 유형의 대안학교 총 학생 수는 2015년 기준 대략 14,931명에 달하고 조사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 67개 학생 수를 170개 학교의 6,762명을 기준으로 대략 2,665명으로 잡았을 때에 총 17,596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수를 2016년 기준 전체 초·중·고 총 학생 수 5,882,790명으로 나누면 대안학교 학생 비율은 전체의 약 0.3%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①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교육에 관한 중분류 지표 중 하나인 '교육의 목표'에 속하는 지표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2개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뚜렷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묻는 지표이다.

먼저 <표 Ⅲ-6-17>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응답 학생수 11,107명 중 19.6%는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학교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5명 중 1명 가까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교 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부정적 응답이 초등학교에서는 7.8%로 낮은 편인데 반해, 중학교에는 18.1%, 고등학교에서는 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3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2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7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73)	4.2	17.4	58.8	19.6	100.0(11,107)	-
성별	남자		2.96(0.75)	5.0	15.6	57.9	21.5	100.0(5,776)	63.700***
	여자		2.91(0.70)	3.4	19.3	59.8	17.5	100.0(5,3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8(0.65)	1.7	6.1	54.8	37.4	100.0(3,157)	1468.200***
	중학교		2.95(0.67)	3.4	14.7	65.0	16.9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2.67(0.73)	6.9	28.1	56.3	8.7	100.0(4,214)	
		일반계고	2.69(0.73)	6.6	27.2	56.9	9.3	100.0(3,384)	
		특성화계고	2.58(0.73)	8.2	32.0	53.8	6.1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3.01(0.73)	3.6	15.3	57.9	23.3	100.0(4,464)	87.113***
	중소도시		2.88(0.73)	4.6	19.3	59.5	16.6	100.0(5,282)	
	읍면지역		2.92(0.74)	4.9	16.8	59.3	19.0	100.0(1,36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10(0.72)	3.3	11.7	56.4	28.5	100.0(3,581)	519.256***
	중	2.95(0.69)	3.1	17.1	61.7	18.1	100.0(4,715)	
	하	2.71(0.75)	7.3	25.0	57.1	10.6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3.05(0.73)	3.6	13.4	57.5	25.4	100.0(5,754)	446.317***
	중	2.88(0.69)	3.6	20.0	61.7	14.7	100.0(3,965)	
	하	2.65(0.77)	8.9	26.6	55.5	9.0	100.0(1,337)	

**p<.01, ***p<.001

[그림 Ⅲ-6-10]은 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학생들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는 지난 2013년~2016년 간 학교에 대한 긍정적 생각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이 기간 동안 응답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 생각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자신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2016년에는 92.2%의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성화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2013년에는 2명 중 1명도 안되게 긍정적인 응답을 하지 않아 긍정적 응답이 45.5%였으나 2016년에는 59.5%로 3명 중 2명은 학교가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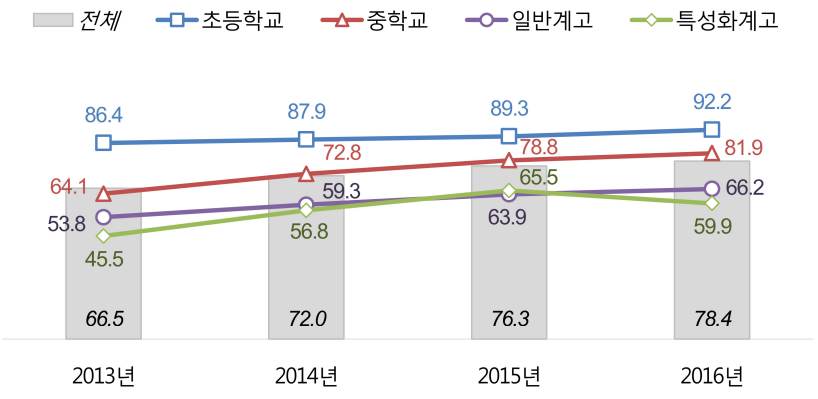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0】 학교에 대한 생각_1)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연도별 추이)

다음으로 <표 Ⅲ-6-18>에서는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려는 교육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물은 응답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23.7%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교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은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긍정적 응답이 90.9%로 10명 중 9명이 긍정적인 응답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중학생의 22.5%는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35.8%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3명 중 1명 이상은 학교의 인성교육이 부재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는 지역 규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이 인성교육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에 속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정적 응답은 19.3%인데 반해, 학업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의 33.3%는 부정적 응답을 하여 3명 중 1명은 학교의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19.8%였으나, 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학생들의 응답은 35.7%로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18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76)	4.5	19.2	55.5	20.7	100.0(11,098)	-
성별	남자		2.93(0.79)	5.5	18.5	53.3	22.7	100.0(5,774)	63.468***
	여자		2.92(0.72)	3.5	20.1	58.0	18.5	100.0(5,3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0(0.68)	1.7	7.4	50.2	40.7	100.0(3,152)	1479.365***
	중학교		2.90(0.71)	3.9	18.6	60.9	16.6	100.0(3,734)	
	고등학교	전체	2.66(0.74)	7.1	28.7	54.8	9.4	100.0(4,212)	
		일반계고	2.67(0.75)	6.9	28.8	54.4	9.9	100.0(3,382)	
		특성화계고	2.63(0.74)	8.1	28.0	56.4	7.4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2.98(0.76)	4.1	17.3	54.9	23.7	100.0(4,460)	66.703***
	중소도시		2.87(0.76)	4.8	21.5	55.6	18.1	100.0(5,277)	
	읍면지역		2.95(0.76)	4.8	17.0	57.0	21.2	100.0(1,361)	
학업 성적	상		3.06(0.77)	3.6	15.7	51.9	28.9	100.0(3,582)	409.735***
	중		2.95(0.73)	3.8	17.9	58.0	20.3	100.0(4,710)	
	하		2.71(0.75)	7.0	26.3	55.7	10.9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3.03(0.76)	4.0	15.8	53.8	26.4	100.0(5,754)	356.963***
	중		2.87(0.72)	4.0	21.6	58.2	16.2	100.0(3,957)	
	하		2.66(0.76)	8.3	27.4	54.6	9.7	100.0(1,337)	

***$p<.001$

다음 [그림 Ⅲ-6-11]은 2013년~2016년의 4년 간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 및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성화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계 고등학생만이 2015년까지는 계속 긍정적 생각이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2016년에는 전년의 66.7%에서 64.3%로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2014년 이후부터는 특성화계 고등학생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학교의 인성교육 효과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더 가질 수뿐이 없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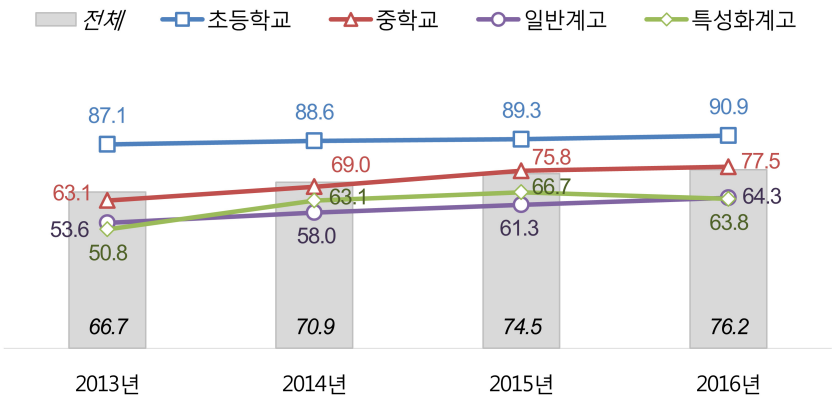

그림 433

【그림 Ⅲ-6-11】 학교에 대한 생각_2)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연도별 추이)

표 Ⅲ-6-19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72)	3.8	13.4	60.0	22.8	100.0(11,087)	-
성별	남자		3.00(0.75)	4.9	13.4	58.1	23.6	100.0(5,768)	45.103***
	여자		3.03(0.68)	2.7	13.3	62.1	21.9	100.0(5,3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9(0.68)	1.8	7.1	51.3	39.8	100.0(3,144)	899.360***
	중학교		3.00(0.68)	3.4	13.1	63.8	19.8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83(0.72)	5.7	18.3	63.2	12.8	100.0(4,210)	
		일반계고	2.85(0.72)	5.6	18.1	62.3	14.1	100.0(3,380)	
		특성화계고	2.75(0.68)	6.5	19.4	66.6	7.4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3.08(0.72)	3.5	12.0	57.7	26.8	100.0(4,456)	79.037***
	중소도시		2.97(0.71)	4.0	14.7	61.6	19.6	100.0(5,272)	
	읍면지역		3.00(0.72)	4.3	12.7	61.2	21.7	100.0(1,360)	
학업 성적	상		3.15(0.74)	3.4	10.8	53.0	32.8	100.0(3,576)	438.111***
	중		3.03(0.68)	3.2	12.2	63.5	21.1	100.0(4,707)	
	하		2.83(0.71)	5.6	18.6	63.1	12.7	100.0(2,760)	
경제적 수준	상		3.12(0.72)	3.2	11.0	56.9	28.9	100.0(5,751)	387.351***
	중		2.97(0.68)	3.6	13.9	64.7	17.8	100.0(3,954)	
	하		2.75(0.75)	7.4	21.8	59.5	11.3	100.0(1,333)	

***$p<.001$

<표 Ⅲ-6-19>는 응답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 중에서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82.8%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응답에 있어서 남자(18.3%)가 여자(16.0%)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91.1%가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응답 중학생 3,733명 중 16.5%는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22%가 역시 부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별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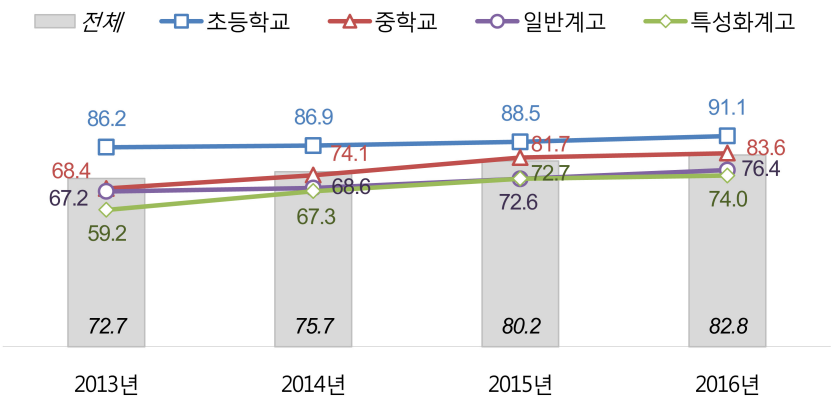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2】 학교에 대한 생각_3)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2]는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변화 추이를 그려내고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대체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의 폭은 완만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6-20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5(0.75)	4.5	12.2	56.7	26.5	100.0(11,085)	–
성별	남자		3.06(0.78)	5.5	10.8	55.6	28.1	100.0(5,768)	60.763***
	여자		3.04(0.72)	3.4	13.8	58.0	24.8	100.0(5,3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1(0.67)	1.7	5.2	43.8	49.3	100.0(3,145)	1446.726***
	중학교		3.04(0.69)	3.5	11.4	62.8	22.3	100.0(3,733)	
	고등학교	전체	2.80(0.76)	7.5	18.2	61.0	13.3	100.0(4,208)	
		일반계고	2.77(0.78)	8.4	19.7	58.8	13.1	100.0(3,378)	
		특성화계고	2.94(0.64)	3.9	12.0	69.9	14.2	100.0(830)	
지역 규모	대도시		3.11(0.76)	4.4	10.6	54.6	30.4	100.0(4,456)	85.327***
	중소도시		3.00(0.75)	4.6	14.1	58.0	23.2	100.0(5,268)	
	읍면지역		3.08(0.73)	4.5	9.8	59.0	26.7	100.0(1,361)	
학업 성적	상		3.18(0.78)	4.2	10.2	49.1	36.5	100.0(3,575)	375.359***
	중		3.06(0.71)	3.4	12.1	59.5	25.0	100.0(4,710)	
	하		2.88(0.75)	6.8	15.0	61.9	16.4	100.0(2,75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3.13(0.77)	4.3	11.2	51.8	32.8	100.0(5,748)	265.918***
	중	3.00(0.71)	4.0	13.0	61.7	21.3	100.0(3,956)	
	하	2.88(0.75)	7.1	14.1	62.9	15.8	100.0(1,333)	

*p<.05, ***p<.001

<표 Ⅲ-6-20>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이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16.7%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교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6.9%가 부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중학생은 14.9%가 부정적 응답을 보였고, 고등학생은 25.7%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앞에서 서술한 학교에 대한 다른 생각들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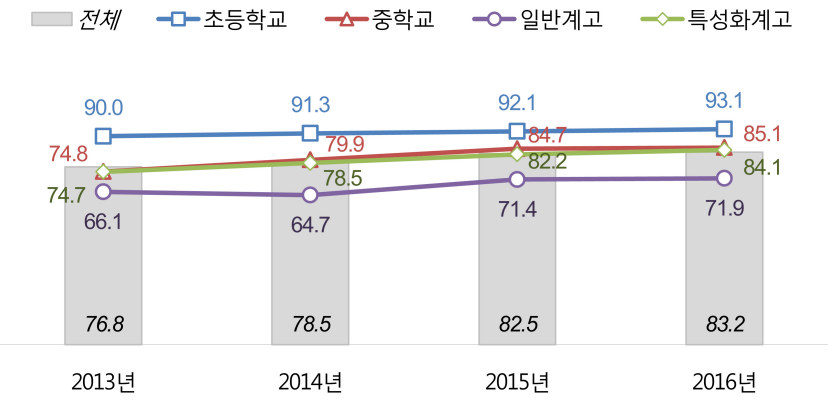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3】 학교에 대한 생각_4)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6-13]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2013년~2016년 기간 동안의 추이가 제시되고 있다.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대체로 지속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은 중학교 학생의 응답과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의 결과가 제일 높았고,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오히려 긍정적 응답이 감소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위의 그림은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 준비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① 혁신학교 운영 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아동의 인성과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아동의 교육권을 교육의 목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교육은 고착된 학벌사회 속에서 서열화된 대학의 상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무한경쟁의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선언적으로 명문화된 교육의 목표와는 달리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는 상위의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교육목표이고, 교육관계자들인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현실적인 교육목표일 것이다. 앞에서 서술된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부정적인 조사결과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교육목표에서 비롯된 결과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세부지표들인 '혁신학교 운영수'와 '혁신학교 운영 현황'은 이러한 한국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된 지표이다.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법 조항을 근거로 전국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학교형태 중 하나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형령 제105조에는 "(...)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혁신학교의 뿌리는 지나친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제대로 교육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학교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뜻을 가진 교사들과 학부모의 작은 모임들로부터 출발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내 학교의 혁신적 움직임을 제도화하고자 2009년 자발성,

지역성, 역동성, 공공성을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해서 혁신학교라는 배를 처음으로 띠우게 된 것이다. 자발성은 교사와 학부모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고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하고, 지역성은 각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학교운영을 고려한 교육이념이다. 역동성은 학생 간에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기존의 수월성 교육을 타파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교육한다는 교육이념이며,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가지는 교육이념이다(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 303~304). 이러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혁신학교는 앞에서 고찰한 세부지표들 중 하나인 대안학교와 그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학교와 대안학교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혁신학교는 제도권 안에서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반면, 대안학교는 제도권 밖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기존의 공교육과 차별화된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성천 외, 2015: 47~49) 혁신학교와 대안학교의 두 형태의 자율적 학교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대안학교는 지나치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넘어서거나, 설립자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결과가 사유화되고 결국은 사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기존교육의 답습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혁신학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므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성과 불연속성 등의 제한점을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기존교육과는 차별화되어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혁신학교가 안정된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표 Ⅲ-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가 1,003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의 801개(김성천 회, 2015: 290)에 비해 1년 사이에 20.1%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6-21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수(2016년 기준) (단위 : 개교)

시·도 교육청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제주	세종	경남	합계
혁신 학교 수 (2016년 기준)	초	27	214	26	84	60	99	11	12	23	14	6	5	13	594
	중	19	140	15	32	21	40	6	7	11	5	1	2	6	305
	고	9	49	4	11	3	9	2	1	6	1	1	–	2	98
	특수학교	–	–	3	–	–	–	1	–	–	–	–	–		4
	초·중 통합	–	–	–	–	–	–	–	–	–	–	2	–		2
	계	55	403	48	127	84	148	20	20	40	20	10	7	21	1,003

* 출처: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2016).

② 혁신학교 운영 현황

혁신학교는 <표 Ⅲ-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학교운영의 본 취지가 자율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이기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라는 명칭보다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은 행복더하기학교, 전북은 전남은 무지개학교, 부산은 다행복학교, 경남은 행복학교, 인천은 행복배움학교, 충남은 행복나눔학교, 충북은 행복씨앗학교, 제주는 다혼디배움학교 등의 차별화된 명칭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먼저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의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학교구성원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비율이 낮으면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교육청에서 지역의 개 학교들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고자 해도 교사와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다음 [그림 Ⅲ-6-14]에서는 혁신학교를 최초로 출발시킨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혁신학교 지정절차를 잘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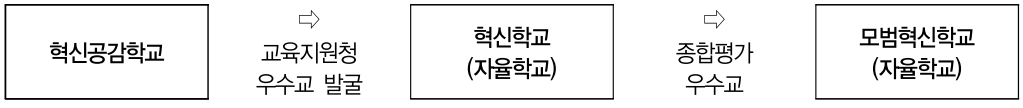

* 출처: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 215

【그림 Ⅲ-6-14】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절차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기존의 한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먼저 혁신학교로 공식적으로 지정받기 이전의 준비하는 유예과정으로서 '혁신공감학교'[25]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교 교사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혁신공감학교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들에서는 우수한 혁신공감학교들을 발굴하여 혁신학교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들로부터 발굴되어 추천된 혁신공감학교들 중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5)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칭하는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전의 예비 혁신학교의 명칭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지정일로부터 4년 간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4년 차에 종합평가를 받아 우수교는 다시 '모범혁신학교'로 선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신학교 신청 시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각각 50%가 넘는 조건이어서 경기도보다는 혁신학교 지정 조건이 다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김성천 외, 2015: 215) 이렇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타 교육청에서도 보통 4년 후 교육청에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혁신학교로 재지정을 받게 되면 2년 간 연장하여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상례이다. 혁신학교로 운영되던 학교가 재지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신 원래의 일반 학교로 전환된다. 따라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신규혁신학교와 재지정 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혁신학교의 교과과정은 공교육 제도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그러나 자율성을 100%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 시수를 20% 증감하는 한계 안에서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율적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혁신학교의 운영이 기존의 일반학교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와 기존의 학교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표 Ⅲ-6-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사이에 심한 경쟁을 야기하려는 결과중심의 평가 방식이 아니다. 혁신학교에서의 평가는 결과보다는 교육의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도 교육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다시 대상학생에게 피드백하여 잘 소화되지 못한 교육적 내용을 다시 교육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의 평가이다.

표 Ⅲ-6-22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교과과정 평가 비교

구분	일반학교	혁신학교
평가 목적	서열화	피드백(feeback)
평가 단위	개 인	개인과 모둠
평가 방식	지필고사 위주	상시평가, 수행평가
관심 영역	결 과	과 정

* 출처: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 107

혁신학교는 분명 기존의 일반학교에 비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하여 이러한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수가 적은 것은 향후 해결되어야 과제이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①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표 중 이에 관한 활동기반 시설 수의 세부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다음 <표 Ⅲ-6-23>에는 한국의 문화기반시설의 2010년~2015년까지의 연도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6-23>에는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들 중에서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에 관한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답보 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화시설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시설의 수도 등록박물관의 826개소보다 많은 978개소이고, 전년도에 비해 48개관이 증가되어 다른 문화시설 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이다.

표 Ⅲ-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2015	2,595	978	826	219	229	228	114
2014	2,519	930	809	202	232	229	116
2013	2,266	865	754	198	221	229	116
2012	2,182	828	740	171	214	229	–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9, 18

<표 Ⅲ-6-24>에는 전국의 지역별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현황이 상세하게 잘 제시되어 있다. 수도권을 문화시설 기반이 전체의 36.4%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인구도 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인구대비로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 다음 [그림 Ⅲ-6-1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적으로 문화시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경기가 492개소(1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 356개소(13.7%), 강원 206개소(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6-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도별	총 계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지역1	서울	356	146	120	37	19	25	8
	부산	87	36	19	6	11	14	1
	대구	72	33	16	4	11	8	–
	인천	97	46	30	4	8	8	1
	광주	56	21	10	9	7	5	4
	대전	56	24	16	5	3	5	3
	울산	39	17	9	–	4	5	4
	세종	12	4	6	–	1	1	–
	경기	492	228	139	49	34	31	11
	강원	206	53	96	11	18	18	10
	충북	126	42	45	8	12	11	8
	충남	154	58	46	9	18	16	7
	전북	149	56	40	13	15	14	11
	전남	181	64	46	25	19	22	5
	경북	196	64	65	11	26	23	7
	경남	190	65	60	9	20	20	16
	제주	126	21	63	19	3	2	18
	총계	2,595	978	826	219	229	228	114
지역2	수도권	945(36.4%)	420	289	90	61	64	20
	지방	1,650(63.6%)	558	537	129	168	164	94
	계	2,595(100%)	978	826	219	229	228	11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9, 18
* 서울의 문화기반 시설 수 356개에는 유일하게 국립도서관 1개소가 포함되었음.

[그림 Ⅲ-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지역별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202개소, 다음으로 강원이 133개소, 전남 9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36.4% ,지방에 64.6%로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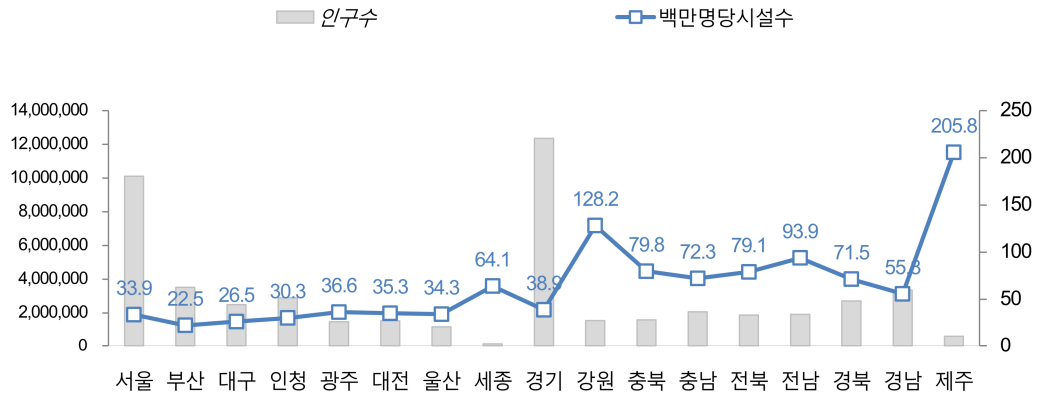

【그림 Ⅲ-6-15】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단위: 명, 개소)

②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수

표 Ⅲ-6-2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 공	513	184	227	47	21	18	9
민 간	274	3	6	134	21	110	0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47.

청소년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위의 <표 Ⅲ-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의 6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87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이 513개소이고 민간은 274개소가 해당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중 가장 많이 설치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233개소이며, 다음으로 자연권에 있는 숙박형 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이 188개로 많았다. 주로 도심지에 생활권 근린시설로서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187개소에 달했고, 다음으로 주로 여행자의 편의 숙박시설로서 이용되는 유스호스텔은 128개소로 집계되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스스로넷),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등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시설을 의미한다. 이 이외에도 규모가 큰 국립 공공시설로서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

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음 <표 Ⅲ-26 >에서는 전국의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특별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787개 수련시설 중에서 경기도가 총 15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도 83개, 경남이 70개, 경북이 68개, 서울이 62개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활권 비숙박형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1개로 뒤를 이었으며, 자연권 숙박형 수련시설로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원 46개와 함께 야영장, 유스호스텔, 생활권 비숙박형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에서는 전국에서 청소년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가장 시설수가 많았다.

표 Ⅲ-6-26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3	128	9
서울	62	33	16	3	0	4	6
부산	26	8	11	4	2	1	0
대구	15	5	6	2	0	1	1
인천	26	8	4	5	5	4	0
광주	12	5	6	1	0	0	0
대전	12	3	6	2	0	1	0
울산	9	1	7	1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54	31	49	46	7	21	0
강원	83	16	28	16	5	17	1
충북	46	8	10	19	1	8	0
충남	49	11	9	14	2	13	0
전북	56	11	18	15	3	8	1
전남	51	11	15	11	7	7	0
경북	68	16	13	16	5	18	0
경남	70	17	14	28	3	8	0
제주	47	3	20	5	2	17	0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48.

청소년수련시설과는 달리 다른 정부부처와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표 Ⅲ-6-27 >에는 이러한 청소년 이용시설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11,097명 중 21.6%는 공공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은 1년에 1~2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33.0%에 해당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82.4%)이 남성(74.8%)보다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 정도가 낮아졌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마찬가지로 이용도가 떨어졌다.

표 Ⅲ-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21.6	33.0	31.8	13.6	100.0(11,097)	-
성별	남자		25.2	32.0	30.4	12.4	100.0(5,764)	98.015***
	여자		17.6	34.1	33.4	14.9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8	27.5	34.8	23.0	100.0(3,160)	448.562***
	중학교		22.5	36.4	31.6	9.4	100.0(3,726)	
	고등학교	전체	25.8	34.1	29.8	10.2	100.0(4,211)	
		일반계고	22.6	33.1	32.4	11.9	100.0(3,385)	
		특성화계고	39.2	38.2	19.2	3.5	100.0(82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5	33.2	32.4	13.9	100.0(9,956)	85.917***
	한부모가정		32.6	32.1	26.2	9.1	100.0(820)	
	조손가정		25.8	28.3	29.9	15.9	100.0(107)	
	기타		28.9	28.4	27.1	15.6	100.0(213)	
학업 성적	상		16.6	31.0	34.2	18.2	100.0(3,575)	295.034***
	중		20.4	32.9	33.3	13.4	100.0(4,717)	
	하		29.8	35.8	26.3	8.1	100.0(2,762)	
경제적 수준	상		18.9	32.5	33.1	15.5	100.0(5,752)	98.618***
	중		22.9	34.0	30.7	12.4	100.0(3,958)	
	하		28.5	32.4	29.8	9.3	100.0(1,338)	

***$p<0.001$

다음 <표 Ⅲ-6-28 >은 2016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응답학생 들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 정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청소년시설을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6.7%에 달했다. 이는 2명 중 1명 이상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인데 2명 중 1명 이상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놀 권리, 문화향수의 권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에서 성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초등학생(55.8%)과 중학생(52.3%)보다 고등학생(61.4%)이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응답학생들이 양부모나 한부모 자녀들보다 수련시

설의 이용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련시설의 이용 경험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Ⅲ-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56.7	34.9	5.4	3.0	100.0(11,074)	-
성별	남자		58.3	32.8	5.7	3.1	100.0(5,759)	23.067***
	여자		55.0	37.1	5.1	2.8	100.0(5,3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5.8	31.9	7.4	4.9	100.0(3,136)	172.646***
	중학교		52.3	39.0	5.9	2.8	100.0(3,727)	
	고등학교	전체	61.4	33.4	3.6	1.7	100.0(4,211)	
		일반계고	60.5	33.7	3.9	2.0	100.0(3,383)	
		특성화계고	65.2	32.1	2.3	0.4	100.0(8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6.4	35.0	5.5	3.1	100.0(9,934)	13.159
	한부모가정		58.8	34.8	4.6	1.8	100.0(820)	
	조손가정		61.6	25.6	9.7	3.1	100.0(108)	
	기타		60.6	31.5	4.7	3.1	100.0(212)	
학업 성적	상		52.0	37.4	6.8	3.8	100.0(3,579)	74.245***
	중		57.7	34.5	5.0	2.8	100.0(4,697)	
	하		61.4	32.1	4.2	2.3	100.0(2,756)	
경제적 수준	상		54.3	36.3	6.2	3.2	100.0(5,732)	42.352***
	중		58.6	34.4	4.4	2.6	100.0(3,959)	
	하		61.8	30.4	4.9	2.8	100.0(1,335)	

***$p<.001$

다음 <표 Ⅲ-6-29>에는 응답학생들의 2016년도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체 학생 11,087명 중 31.8%는 체육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자(27.1%)보다는 여자(37.0%)가 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47.9%는 체육시설을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2명 중 1명 가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정적 경향은 한부모가정 자녀(41.3%)가 양부모가정(31.1%) 자녀나 조손가정 자녀(32.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청소년시설 이용에서와 같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 4명 중 1명이 체육시설의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성적이 하위인 학생의 41.4%는 체육시설의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학업성적과 비슷한 정도의 응답이 나왔는데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학생(25.9%)과 하위인 학생(46.7%)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31.8	32.0	20.8	15.3	100.0(11,087)	-
성별	남자		27.1	27.1	24.3	21.5	100.0(5,767)	549.879***
	여자		37.0	37.4	17.0	8.6	100.0(5,3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4	30.1	28.2	26.3	100.0(3,148)	1240.798***
	중학교		27.5	35.9	21.8	14.8	100.0(3,724)	
	고등학교	전체	47.9	30.1	14.5	7.5	100.0(4,215)	
		일반계고	47.3	30.2	15.2	7.3	100.0(3,386)	
		특성화계고	50.6	29.9	11.3	8.3	100.0(82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1	32.2	21.3	15.4	100.0(9,945)	58.641***
	한부모가정		41.3	32.2	15.2	11.3	100.0(820)	
	조손가정		32.2	28.0	16.7	23.2	100.0(108)	
	기타		31.2	26.2	23.0	19.7	100.0(214)	
학업 성적	상		25.0	30.9	24.7	19.4	100.0(3,574)	263.879***
	중		31.4	33.7	19.8	15.1	100.0(4,709)	
	하		41.4	30.6	17.6	10.4	100.0(2,761)	
경제적 수준	상		25.9	31.8	23.9	18.4	100.0(5,743)	321.187***
	중		35.4	33.5	18.6	12.5	100.0(3,959)	
	하		46.7	28.5	14.3	10.5	100.0(1,336)	

***$p<.001$

다음 <표 Ⅲ-6-30>은 전체 응답학생 11,080명이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 학생들의 30.9%는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24.8%)이 남학생(36.6%)보다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화예술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다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여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말해서 대학교 입학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학업에 부담을 가져 청소년 시설의 이용 경험이 낮아진다는 것이 공통된 실태조사 결과이다.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여부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의 81.1%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중학생은 68.9%, 고등학생은 60.2%로 이용 경험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제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등학생이 문화예술 공간 이용이 가장 저조한 이유가 반드시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경험이 더 많게 나타난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학업의 부담보다는 학업성적이 낮고, 경제적 수준도 낮은 학생들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많이 낮아 청소년 시설의 이용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무기력한 심리적, 정신적 상태라는 것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표 Ⅲ-6-3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4) 문화 예술 공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30.9	49.5	17.6	2.0	100.0(11,080)	-
성별	남자		36.6	46.1	15.4	1.9	100.0(5,756)	188.212***
	여자		24.8	53.2	20.0	2.0	100.0(5,3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8.9	49.8	27.9	3.4	100.0(3,146)	601.704***
	중학교		31.1	51.6	15.4	1.9	100.0(3,723)	
	고등학교	전체	39.8	47.4	11.9	0.9	100.0(4,211)	
		일반계고	37.6	49.2	12.4	0.8	100.0(3,383)	
		특성화계고	48.7	40.3	9.8	1.2	100.0(8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9	50.3	17.8	2.0	100.0(9,940)	51.558***
	한부모가정		39.8	43.6	15.1	1.5	100.0(820)	
	조손가정		42.6	39.1	17.7	0.6	100.0(108)	
	기타		38.2	39.6	20.5	1.7	100.0(212)	
학업 성적	상		24.0	50.9	22.4	2.7	100.0(3,572)	300.134***
	중		29.8	51.0	17.3	1.8	100.0(4,706)	
	하		42.0	44.9	11.8	1.3	100.0(2,759)	
경제적 수준	상		25.5	50.2	21.9	2.5	100.0(5,744)	301.158***
	중		34.8	50.3	13.8	1.1	100.0(3,954)	
	하		43.1	44.2	10.5	2.2	100.0(1,333)	

***$p<.001$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다음 <표 Ⅲ-6-31>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위탁하여 3~9세 아동 1,549명과 10~19세 청소년 2,742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즐겨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선택하게 한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조사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에 과잉의존하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 중 한 문항으로서 여가활동이 이들의 인터넷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맥락에서 물어본 조사결과이다.[26]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휴식활동으로 39.8%로 나타났다. 휴식활동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의미인데 주어진 여가시간을 다양한 활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여가활동 시간에 매우 수동적인 대처라 할 수 있어 안타깝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38.5%), 스포츠 관련활동(26.1%), 사회 및 기타활동(25.2%), 취미오락활동(22.0%), 문화예술 관련 활동(18.0%)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각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와 초·중·고 학교 간의 학교유형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31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단위 : %)

구 분		휴식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대상별	유아·아동 (3~9세)	33.0	48.2	22.7	12.2	13.9	11.7	6.3	22.3
	청소년 (10~19세)	39.8	38.5	22.0	17.8	17.0	17.8	7.3	25.2
성별	남성	41.2	38.3	23.5	9.2	18.8	15.3	6.4	26.1
	여성	44.4	36.7	23.8	8.1	15.0	17.6	6.5	26.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9.2	40.9	21.1	9.7	18.1	14.9	6.9	24.4
	중학교	37.6	38.9	24.0	8.2	17.1	17.7	6.8	24.8
	고등학교	40.6	37.9	22.0	8.9	15.4	19.7	7.7	25.7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p. 132

②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표 Ⅲ-6- 32>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단체 가입 여부를 물은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1,111명 중 83.6%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명 중 1명 가까이만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단체에 가입은 했으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7.7%이고, 가입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 학생은 8.6%에 그쳤다. 남녀 별로 보았를 때에 여자(9.9%)가 남자(7.5%)보다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초등학생에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17.4%로 중학교의 5.3%와 고등학교의 5.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 학생들보다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가입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이 조사는 매년 수행되는 조사로 2015년에는 9월 24일~10월30일 사이에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수행되었다.

표 Ⅲ-6-32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 X	가입 O, 활동 X	가입 O, 활동 O	전체(N)	χ^2
전체			83.6	7.7	8.6	100.0(11,111)	–
성별	남자		85.3	7.2	7.5	100.0(5,780)	25.120***
	여자		81.9	8.3	9.9	100.0(5,3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74.9	7.7	17.4	100.0(3,153)	439.324***
	중학교		88.0	6.7	5.3	100.0(3,739)	
	고등학교	전체	86.3	8.7	5.1	100.0(4,218)	
		일반계고	85.1	9.4	5.5	100.0(3,390)	
		특성화계고	91.2	5.5	3.3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83.4	6.9	9.8	100.0(4,467)	52.155***
	중소도시		85.1	7.5	7.4	100.0(5,282)	
	읍면지역		78.7	11.3	10.0	100.0(1,362)	
학업 성적	상		80.6	7.4	11.9	100.0(3,581)	99.949***
	중		83.9	7.7	8.4	100.0(4,720)	
	하		87.1	8.1	4.8	100.0(2,767)	
경제적 수준	상		82.0	7.7	10.2	100.0(5,756)	41.041***
	중		85.2	7.6	7.2	100.0(3,968)	
	하		86.1	7.9	6.1	100.0(1,33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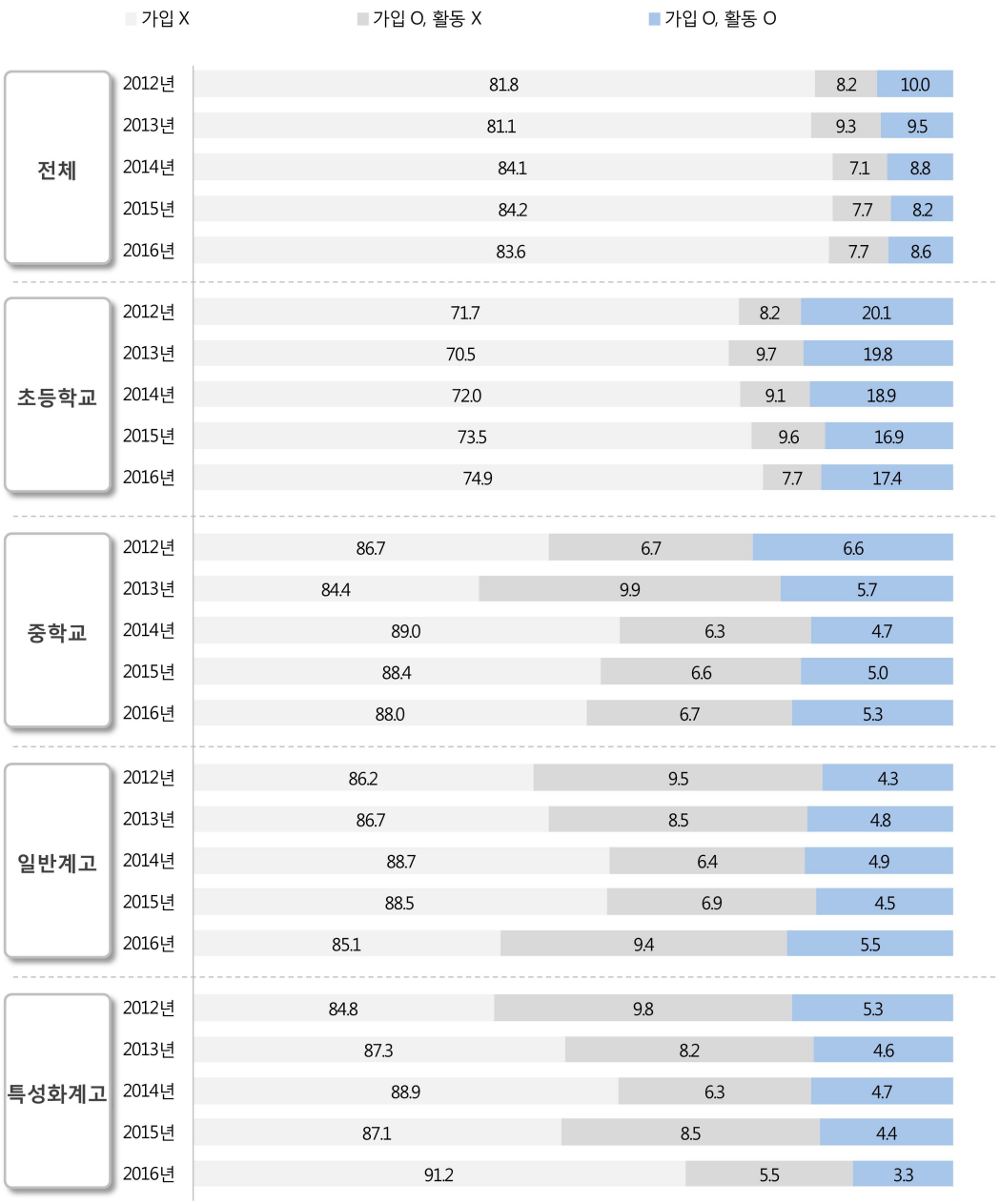

【그림 Ⅲ-6-16】 최근 1년간 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6]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부에 대한 2012년~2016년 사이의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2010년 10%였는데 점차 낮아져 2014년 이후에는 8%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서만 같은 기간 동안 4.3%에서 5.5%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부정적인 추이는 특성화계 고등학생들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91.2%가 넘어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③ 동아리활동 참가율

<표 Ⅲ-6-33>은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단체의 가입과 활동은 회원제 활동이라면,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은 자발적으로 학생 자신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은 활동을 선택해서 하는 활동이라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체 11,087명의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 여부를 물었을 때에 73.6%가 동아리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0명 중 7명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로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문화예술 향수의 권리 신장에 긍정적인 실태라 할 수 있다. 남녀의 성별 차이는 작았으며, 초등학교(76.0%)와 중학교(75.4)보다는 고등학교(70.2%)에서의 동아리활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70.3%)와 읍면지역(70.7%) 학생보다는 대도시 학생(78.4%)이 동아리활동이 보다 활발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학생들은 모든 일에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하여 매사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의 수치도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Ⅲ-6-33 동아리 활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73.6	26.4	100.0(11,087)	-
성별	남자		72.5	27.5	100.0(5,766)	7.799**
	여자		74.8	25.2	100.0(5,3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76.0	24.0	100.0(3,131)	40.382***
	중학교		75.4	24.6	100.0(3,739)	
	고등학교	전체	70.2	29.8	100.0(4,217)	
		일반계고	70.6	29.4	100.0(3,388)	
		특성화계고	68.6	31.4	100.0(829)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78.4	21.6	100.0(4,454)	89.457***
	중소도시	70.3	29.7	100.0(5,277)	
	읍면지역	70.7	29.3	100.0(1,356)	
학업 성적	상	77.1	22.9	100.0(3,574)	84.146***
	중	74.7	25.3	100.0(4,705)	
	하	67.2	32.8	100.0(2,765)	
경제적 수준	상	76.1	23.9	100.0(5,740)	39.179***
	중	70.6	29.4	100.0(3,962)	
	하	71.6	28.4	100.0(1,336)	

**p<.01, ***p<.001

[그림 Ⅲ-6-17]에서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 관한 2012년~2016 기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2년에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53.2% 정도였던 것이 2013년 이후 70%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유형별로 동아리활동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동아리활동 추이는 2016년에 와서는 2012년에 비하여 거의 20% 정도 상승한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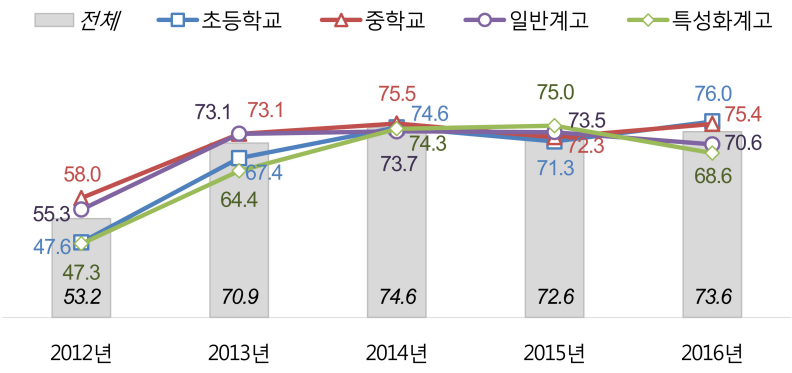

【그림 Ⅲ-6-17】 동아리 활동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 %)

④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다음 <표 Ⅲ-6-34>는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 향수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 가를 직접 묻는 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11,111명 중에서 23.6%로 응답하였고, 1~2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0.7%에 달했다. 이 둘을 합치면

54.3%로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평일에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장 활발하게 여가활동을 즐겨야 할 연령대인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무엇이 이들의 여가활동 시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인가 성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응답 결과이다.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도 적었으나, 대학입학 시험에 부담을 가진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 다고 응답한 학생이 67.7%에 달했다. 고등학생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생(75.9%)과 특성화계 고등학생(33.8%)의 평일 여가 시간의 차이가 배 이상 되어 일반계 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더 입시 공부에 몰입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수치라 읽을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응답결과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았는데 평일 여가 시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2명 중 1명 이상은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정도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평일에 여가를 즐길 문화와 환경 등 여러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6-34 평일 여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23.6	30.7	18.7	11.7	6.1	9.2	100.0(11,111)	–
성별	남자		22.3	30.3	19.7	11.4	5.8	10.5	100.0(5,780)	38.734***
	여자		25.0	31.1	17.7	12.0	6.3	7.8	100.0(5,3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8	26.5	20.6	14.6	8.6	11.8	100.0(3,156)	676.372***
	중학교		16.1	31.5	21.7	13.2	6.6	10.8	100.0(3,736)	
	고등학교	전체	34.6	33.1	14.7	8.2	3.6	5.8	100.0(4,219)	
		일반계고	39.8	36.1	13.4	5.3	1.8	3.5	100.0(3,390)	
		특성화계고	13.2	20.6	19.8	19.8	11.3	15.3	100.0(82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8	31.2	18.6	11.7	6.0	8.7	100.0(9,972)	55.106***
	한부모가정		20.5	25.1	20.6	12.0	7.6	14.2	100.0(819)	
	조손가정		23.3	27.4	14.6	10.8	10.5	13.4	100.0(108)	
	기타		26.8	31.7	18.9	9.6	2.6	10.4	100.0(213)	
학업 성적	상		24.7	32.6	18.0	11.7	6.0	7.0	100.0(3,584)	84.509***
	중		22.4	31.4	19.5	11.9	6.0	8.9	100.0(4,719)	
	하		24.3	26.8	18.4	11.4	6.3	12.7	100.0(2,765)	
경제적 수준	상		23.1	32.0	19.5	11.8	5.6	8.0	100.0(5,758)	43.460***
	중		23.9	29.5	18.0	11.8	6.8	10.0	100.0(3,967)	
	하		24.9	28.1	17.7	11.0	6.1	12.1	100.0(1,339)	

***$p<.001$

[그림 Ⅲ-6-18]은 청소년이 평일 여가 시간이 3시간 이상 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2년에 24.5%였던 것이 2014년 30.8%로 상승한 이후 2015년 29.5%, 2016년 27%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12.7%)에 비해 2016년(10.6%)에 와서 평일 여가 시간이 3시간 이상 되고 있다는 응답이 감소한 학교 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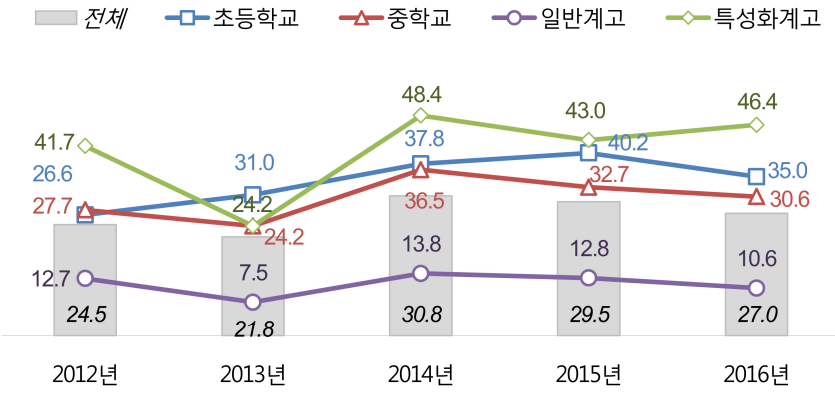

* 주: '3~4 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8】 평일 여가 시간(3시간 이상): 연도별 추이

⑤ 하루 평균 학습시간

<표 Ⅲ-6-35>는 위에서 살펴본 평일 여가 시간에 대한 조사와는 그 의미와 내용이 반대되는 조사결과로 청소년이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인가에 관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조사결과는 전체 11,103명 중 49.4%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45.2%)보다는 여학생(53.8%)이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성별 차이가 드러났고, 학교 유형별로는 대학입학에 매진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61.8%로 방과 후에도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방과 후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이 넘는 학생이 가장 적은 학교 유형은 특성화계 고등학교로 49.4%만이 방과 후 3시간 넘게 공부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규모에서도 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 학생(53.8%)이 읍면지역 학생(40.5%)보다 더 많이 방과 후 3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와 경향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학생과 하위인 학생 간에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5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5.1	15.7	19.9	19.5	13.7	9.7	6.5	100.0(11,103)	–
성별	남자		17.6	16.9	20.4	18.7	12.4	8.2	5.9	100.0(5,771)	116.131***
	여자		12.4	14.4	19.3	20.3	15.1	11.3	7.1	100.0(5,33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1	18.9	23.5	19.1	12.9	8.8	6.7	100.0(3,155)	273.700***
	중학교		15.8	15.7	21.1	21.7	13.2	8.2	4.3	100.0(3,731)	
	고등학교	전체	18.1	13.2	16.0	17.9	14.7	11.8	8.3	100.0(4,218)	
		일반계고	10.2	10.9	17.1	20.1	17.5	14.3	9.9	100.0(3,388)	
		특성화계고	50.5	22.7	11.5	8.5	3.6	1.5	1.5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12.8	13.8	19.6	20.0	14.7	11.3	7.8	100.0(4,459)	117.983***
	중소도시		16.2	16.1	19.8	19.6	13.7	8.9	5.6	100.0(5,282)	
	읍면지역		18.1	20.3	21.0	17.3	10.5	7.4	5.3	100.0(1,362)	
학업 성적	상		6.7	12.3	18.8	22.0	16.7	13.6	9.9	100.0(3,583)	943.852***
	중		12.8	16.9	21.9	20.5	13.4	8.8	5.8	100.0(4,713)	
	하		29.8	18.0	17.9	14.5	10.2	6.3	3.3	100.0(2,763)	
경제적 수준	상		11.0	14.2	19.7	20.2	16.1	11.2	7.6	100.0(5,754)	340.516***
	중		17.1	17.2	20.7	19.3	11.9	8.6	5.3	100.0(3,963)	
	하		26.8	17.8	18.3	16.7	8.5	6.6	5.2	100.0(1,337)	

***$p<.001$

[그림 Ⅲ-6-19]는 학교 유형별로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에 대하여 2013년~2016년 동안의 4년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4년 간의 전체적 추이는 방과 후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하는 학생들이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율이 2013년에 초등학교 28.9%, 중학교 33.3%, 일반계고 40.0%, 특성화계고 13.3% 였던 것이, 2016년에는 각각 47.5%, 47.4%, 61.8%, 15.1%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에 방과 후 3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학생이 28.9%로 중학생의 33.3%보다 낮았는데, 2016년에는 47.5%로 중학생의 47.4%보다 높아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업시간이 중학생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가장 학업 부담이 낮고, 여가 및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해야 할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학업시간이 많아 이들의 발달권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실태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학습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학교폭력, 자살 등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경향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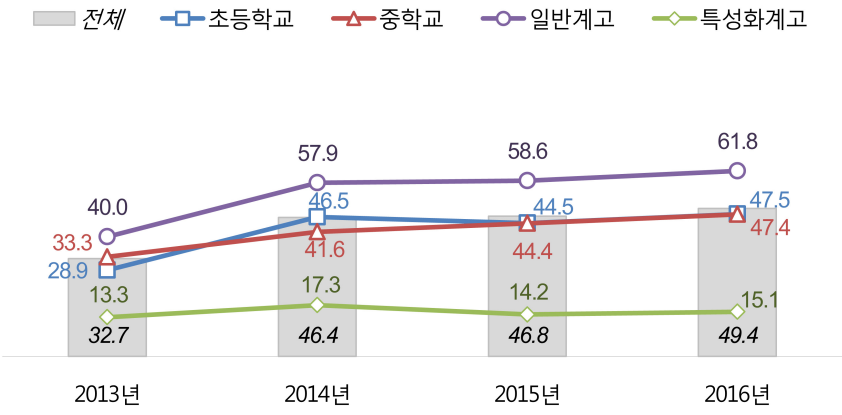

* 주: '3~4 미만', '4~5미만', '5~6 미만',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9】 정규 수업시간 제외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연도별 추이

(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①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자라나는 성장기에는 교육을 통한 장차 사회에 진입하여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성장기에는 균형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 얻게 되는 인지적 발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들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감성적, 사회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소분류 지표인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발달 과업이 수행됨으로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정된 지표이다. 여가시설 이용만족도의 세부지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과정에서 여가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마련된 지표이다. <표 Ⅲ-6-36 >에는 전체 9,795명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를 물은 결과가 나타나 있다. 대체로 응답학생의 90.4%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시설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에 있어서 남학생(9.1%)이 여학생(8.4%)보다 다소 높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부정적 응답 경향이 많아서 초등학교 4.7%, 중학교 10.2%, 고등학교 13.0%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응답학생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36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07(0.56)	1.4	8.2	72.5	17.9	100.0(9,795)	-
성별	남자		3.06(0.59)	2.0	8.9	70.6	18.6	100.0(4,997)	33.454***
	여자		3.08(0.53)	0.9	7.5	74.5	17.1	100.0(4,7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8(0.58)	0.9	3.8	62.0	33.3	100.0(2,867)	745.507***
	중학교		3.02(0.54)	1.6	8.6	75.8	14.0	100.0(3,305)	
	고등학교	전체	2.94(0.52)	1.7	11.3	77.8	9.2	100.0(3,623)	
		일반계고	2.95(0.52)	1.4	11.7	77.2	9.6	100.0(2,988)	
		특성화계고	2.92(0.53)	2.9	9.5	80.5	7.1	100.0(635)	
지역 규모	대도시		3.10(0.56)	1.4	7.0	71.5	20.2	100.0(3,956)	41.265***
	중소도시		3.03(0.56)	1.6	9.3	73.5	15.7	100.0(4,649)	
	읍면지역		3.08(0.56)	1.2	8.2	72.0	18.6	100.0(1,191)	
학업 성적	상		3.15(0.56)	0.9	6.3	69.2	23.6	100.0(3,268)	183.434***
	중		3.06(0.55)	1.4	8.0	73.6	17.0	100.0(4,195)	
	하		2.95(0.56)	2.4	11.2	75.0	11.4	100.0(2,297)	
경제적 수준	상		3.11(0.57)	1.4	7.1	70.4	21.1	100.0(5,175)	126.979***
	중		3.04(0.53)	1.4	8.0	75.8	14.8	100.0(3,439)	
	하		2.96(0.58)	1.7	13.9	71.6	12.8	100.0(1,142)	

**$p<.01$, ***$p<.001$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세부지표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얼마나 지지해 주고 있는 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표 Ⅲ-6-37>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지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학생 11,081명 중 30.3%는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가정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가정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남학생(33.7%)이 여학생(2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 학생(37.9%)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초등학생(15.6%)이나 고등학생(34.5%)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으로부터의 지지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지지정도의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응답학생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에 있는 학생의 청소년 단체활동의 가정의 지지도는 77.9%인 반면, 학업성적이 하위에 있는 학생의 지지도는 57.8% 정도에 그쳤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상위에 있는 학생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도는 74.5%인 반면, 하위에 있는 학생의 지지도는 59.3%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37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2.79(0.93)	12.6	17.7	47.5	22.2	100.0(11,081)	-
성별	남자		2.73(0.96)	15.0	18.7	45.0	21.3	100.0(5,765)	80.668***
	여자		2.87(0.88)	10.0	16.6	50.2	23.2	100.0(5,3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4(0.88)	6.8	8.8	37.5	46.8	100.0(3,137)	1631.235***
	중학교		2.61(0.89)	14.4	23.5	49.2	12.9	100.0(3,729)	
	고등학교	전체	2.62(0.88)	15.3	19.2	53.4	12.1	100.0(4,215)	
		일반계고	2.68(0.87)	13.6	17.7	55.6	13.1	100.0(3,386)	
		특성화계고	2.38(0.92)	22.2	25.4	44.6	7.9	100.0(829)	
지역 규모	대도시		2.85(0.93)	11.6	16.7	47.0	24.7	100.0(4,462)	41.947***
	중소도시		2.74(0.92)	13.3	18.8	48.2	19.7	100.0(5,266)	
	읍면지역		2.81(0.94)	13.0	16.7	46.6	23.7	100.0(1,353)	
학업 성적	상		3.00(0.88)	8.3	13.9	47.5	30.4	100.0(3,577)	470.834***
	중		2.81(0.92)	12.0	17.5	48.4	22.1	100.0(4,706)	
	하		2.50(0.93)	19.3	22.9	46.1	11.7	100.0(2,755)	
경제적 수준	상		2.92(0.91)	10.2	15.3	46.8	27.7	100.0(5,739)	290.525***
	중		2.70(0.92)	14.1	19.6	48.7	17.6	100.0(3,960)	
	하		2.53(0.93)	18.6	22.1	47.1	12.2	100.0(1,334)	

***$p<.001$

[그림 Ⅲ-6-20]은 2013년~2016년까지 4년 간 각 학교 유형 별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3년에 비하여 대체로 각 학교 유형 모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매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해 2015년 가정으로부터 54/6%를 받았으나 2016년에는 52.5%의 더 낮은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유일하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대학입학 시험 준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생들이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20% 이상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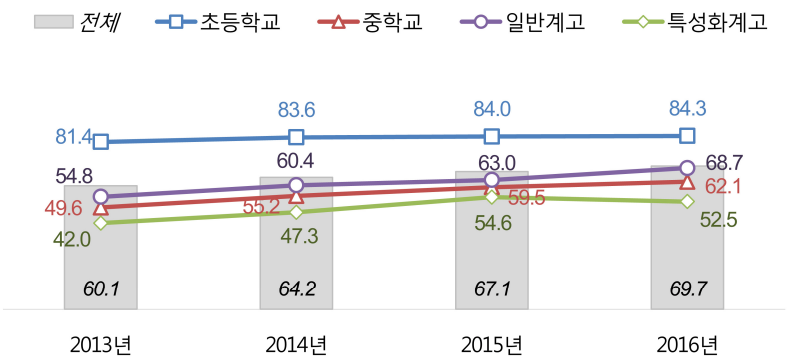

*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0】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연도별 추이

<표 Ⅲ-6-38>은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수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청소년 11,064명 중 22%는 학교가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해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은 남학생(24.5%)이 여학생(19.2%)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가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하는 수준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 위에서 살펴본 가정에서의 지지수준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89.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74.7%, 고등학교가 72.5%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청소년 단체활동 지지수준이 74.3%로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65.2%보다 높았다. 지역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 학생보다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학교의 지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지지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도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위 학생일수록 상위학생 보다 낮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상위에 있는 학생의 84%는 학교가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성적이 하위인 학생의 68.4%만이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학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위인 학생들의 81.5%가 학교가 자신들의 단체활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경제적 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72%만이 학교로부터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2.93(0.85)	8.9	13.1	53.8	24.2	100.0(11,064)	–
성별	남자		2.89(0.89)	10.7	13.8	51.7	23.8	100.0(5,748)	60.251***
	여자		2.99(0.80)	6.9	12.3	56.0	24.7	100.0(5,3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0(0.78)	4.6	5.9	44.3	45.2	100.0(3,127)	1137.631***
	중학교		2.82(0.82)	9.4	15.9	58.0	16.7	100.0(3,728)	
	고등학교	전체	2.76(0.85)	11.5	16.0	57.1	15.3	100.0(4,209)	
		일반계고	2.80(0.83)	10.2	15.5	58.1	16.2	100.0(3,381)	
		특성화계고	2.61(0.90)	16.6	18.1	53.2	12.0	100.0(828)	
지역 규모	대도시		3.01(0.83)	7.4	11.8	52.7	28.1	100.0(4,451)	84.662***
	중소도시		2.87(0.85)	9.8	14.4	55.0	20.8	100.0(5,258)	
	읍면지역		2.93(0.87)	9.8	12.4	52.8	25.0	100.0(1,355)	
학업 성적	상		3.10(0.82)	6.5	9.5	51.4	32.5	100.0(3,565)	400.091***
	중		2.95(0.82)	7.9	12.9	55.5	23.8	100.0(4,704)	
	하		2.69(0.88)	13.5	18.1	54.1	14.3	100.0(2,753)	
경제적 수준	상		3.03(0.83)	7.3	11.2	52.3	29.2	100.0(5,726)	200.587***
	중		2.85(0.86)	10.3	14.6	55.0	20.1	100.0(3,958)	
	하		2.76(0.85)	11.2	16.8	56.4	15.6	100.0(1,332)	

***$p<.001$

[그림 Ⅲ-6-21]에서는 학교가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는 수준이 2013년~2016년 4년 간 연도별 추이로 나타나 있다. 위의 [그림 Ⅲ-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수준과 학교에서의 지지수준의 변화 추이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추이는 2013년 이후 청소년 단체활동이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으로부터의 지지와는 달리 특성화계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2015년 보다 2016년의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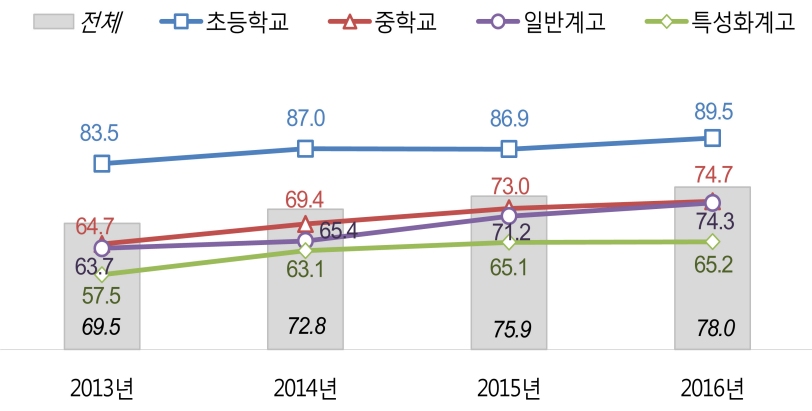

*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1】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연도별 추이

4) 소결

2016년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인권 지표들 중에서 대분류 지표의 하나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다시 크게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2개 중분류 지표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제31조'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이들을 두 개의 주제로 축약하면 교육받을 권리와 여가활동의 권리이다. 이 두 개의 주제는 다시 여러 개의 관련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내용으로 조사된 주요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한국은 현재 취학률, 진학률,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 등 교육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제적 비교에서도 매우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업중단이다. 한 때 한 해에 7만 명이 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수년 간 지속되어 현재 누적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업중단의 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조사결과 연도별 학업중단율의 추이는 다행스럽게도 2010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제일 큰데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그 간 교육부가 학업중단숙려제도를 도입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2014년 이후부터 특성화계 고보다 일반계고 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 시험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특성화계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이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실태이다. 한편,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지표로 선정된 혁신학교는 기존의 일반학교 교과과정과 비교해 분명히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교육목표를 실천하려는 학교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 권고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학교가 혁신학교화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상급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수가 적은 문제는 교육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청소년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지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 동향이 역시 학업 부담으로 인한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부족으로 대부분 관련 지표들의 조사결과가 드러났다. 청소년 시설의 이용 여부만 보아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학의 학업 부담으로 청소년 시설 이용비율이 낮은 것이 조사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경험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은 학업의 부담에 앞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무기력한데다 문화예술 향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조사결과의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청소년 2명 중 1명이, 일반계 고등학생 4명 중 3명이 평일에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으로 인해 평일에 전혀 여가를 즐길 교육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조사에서 평일에 방과 후 3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47.5%로 중학생의 47.4%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이다. 가장 학업 부담이 낮고, 여가 및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야 할 초등학생들이 과도하게 학업에 내몰려 이들의 발달권을 저해하고 있는 현 한국의 상황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부정적인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나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학교폭력, 자살 등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삶을 더욱 부정적 상태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①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1994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자는 총 15,250명이며, 심사 종료된 8,001명 중 인정 576명, 인도적 체류허가 910명, 불인정 6,515명, 철회 1,80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7.2%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아 내전 등 분쟁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도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3. 7. 1.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의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84%, 9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16.5: 89-9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15,250명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의견이 4,162명(27%)으로 가장 많고, 종교 3,422명(22.4%),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285명(8.5%), 인종 804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신청자 5,711명을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의견이 1,397명(24.5%), 종교 1,311명(22.0%),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721명(12.6%) 순이었다(법무부, 2016.5: 92).

특히 난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외, 2015:419-420).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난민현황은 연령별 난민신청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까지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Ⅲ-7-1>과 같다. 2015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15,250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654명(4.3%)이며, 2015년 당해연도 신청자 5,711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15명(5.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 인원수는 2011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 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와 동일한 패턴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수도 2013년에 69명, 2014년 129명, 2015년 31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숫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인정자가 약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난민인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민인정자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105명 중 18세 미만이 40명(38.1%)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576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118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20.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5년말 현재까지 총 91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한해동안 19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5년말 현재까지 총 910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은 12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194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52명(26.8%)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대비 2015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 숫자와 비율, 철회숫자와 비율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숫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숫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2013년에는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로 허가받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5명이었으며, 난민신청을 한 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총 69명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이다. 따라서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63.8%는 불인정 또는 철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론을 해볼 경우 2014년에는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12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로 허가받은 사람은 57명(44.2%)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55.8%는 아직까지 불인정되었거나 혹은 철회한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에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15명 중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로 허가받은 사람은 92명(29.2%)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70.8%는 아직까지 불인정되었거나 혹은 철회한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18세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 난민으로 불인정되거나 철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2013년에는 63.8%, 2014년에는 50.8%, 2015년에는 70.8%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민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에 있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연 령 (세)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129	4.5	2,896	13	13.8	94	44	8.2	539	–	–	1,745	–	–	363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6.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88-9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② 탈북 난민 아동 수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19세 이하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총 4,691명이다. 그리고 탈북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Ⅲ-7-3>과 같이 2012년 이전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6세~20세까지를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제시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0~9세, 10~19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변화추세를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탈북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Ⅲ-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21	1,555	2,374	2,015	1,266	476	323	8,630
여	617	1,898	5,938	6,562	3,673	1,117	915	20,720
합계	1,238	3,453	8,312	8,577	4,939	1,593	1,238	29,350

*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2016년 9월 22일 인출.

표 Ⅲ-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입국자수)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1,502	1,514	1,397	1,275
6-20세 (입국자수)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253	219 (0~19세)	169 (0~19세)	132 (0~19세)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34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2016년 9월 21일 인출.
* 원자료: 통일부 웹 사이트 www.unikorea.go.kr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표 Ⅲ-7-4>와 같다.

<표 Ⅲ-7-4>에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가 99.0%로 나타난 반면,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규모별, 학업성적별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에서 차별받은 경험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차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법 제4조에 기초하여 3년마다 조사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Ⅲ-7-5>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은 7.5%, 교사로부터의 심한 차별 4.4%, 이웃으로부터의 심한 차별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경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친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9.0	0.6	0.2	0.1	0.1	100.0(11,071)	-
성별	남자		98.6	0.8	0.4	0.2	0.1	100.0(5,748)	-
	여자		99.5	0.4	0.1	0.1	0.0	100.0(5,3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3	0.1	0.2	0.0	100.0(3,163)	-
	중학교		98.4	1.1	0.4	0.1	0.1	100.0(3,720)	
	고등학교	전체	99.3	0.4	0.2	0.0	0.0	100.0(4,187)	
		일반계고	99.4	0.2	0.3	0.0	0.1	100.0(3,363)	
		특성화계고	98.9	0.8	0.1	0.1	0.0	100.0(824)	
지역 규모	대도시		98.9	0.7	0.3	0.1	0.0	100.0(4,441)	-
	중소도시		99.0	0.6	0.2	0.1	0.1	100.0(5,269)	
	읍면지역		99.5	0.3	0.1	0.1	0.0	100.0(1,3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1	0.6	0.2	0.1	0.1	100.0(9,938)	-
	한부모가정		98.0	0.9	0.9	0.2	0.0	100.0(815)	
	조손가정		97.2	1.9	0.9	0.0	0.0	100.0(108)	
	기타		99.1	0.9	0.0	0.0	0.0	100.0(211)	
학업 성적	상		99.2	0.5	0.1	0.1	0.1	100.0(3,573)	-
	중		99.0	0.6	0.4	0.1	0.0	100.0(4,704)	
	하		98.8	0.8	0.2	0.1	0.1	100.0(2,750)	
경제적 수준	상		99.2	0.5	0.1	0.1	0.1	100.0(5,743)	-
	중		98.9	0.6	0.4	0.1	0.0	100.0(3,946)	
	하		98.5	1.0	0.2	0.2	0.1	100.0(1,332)	

표 Ⅲ-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친구	11.1(631)	10.9(619)	68.2(3,856)	9.7(551)	100.0(5,657)
교사(교수)	57.6(3,104)	26.3(1,419)	11.6(625)	4.4(239)	100.0(5,387)
친척	71.3(3,740)	19.9(1,044)	8.0(421)	0.8(43)	100.0(5,248)
이웃	54.6(3,087)	22.6(1,277)	19.7(1,115)	3.1(177)	100.0(5,657)
모르는 사람	51.7(2,922)	16.0(905)	24.8(1,405)	7.5(426)	100.0(5,657)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464-469에서 수정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99,186명이며, 2015년 대비 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한국출생(79,134명)이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자녀(12,634명), 중도입국(7,4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초등학교로 73,972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13,8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한국 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50,191	11,054	6,688	166	68,099	59,970	11,475	7,589	100	79,134
중도 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3,965	1,389	723	184	6,261	4,577	1,624	1,075	142	7,418
외국인 자녀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6,006	1,384	735	51	8,176	9,425	1,981	1,152	76	12,634
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60,162	13,827	8,146	401	82,536	73,972	15,080	9,816	318	99,186
비율	70.7	20.3	9.0	100	71.2	18.5	10.3	100	72.9	16.8	9.9	0.4	100	74.6	15.2	9.9	0.3	100

* 출처: 교육부(2013.10.2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교육부(2015.8.). 교육부 기본통계. p.9.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9월 인출. 교육부(2016.8.). 교육부 기본통계. p.3.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6년 9월 인출.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

표 Ⅲ-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 명)

연도 /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819,927	6,635,784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21%	1.49%

* 출처: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6888/ko/board/view.do ?bbsId=339&boardSeq=58722&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는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Ⅲ-7-8>와 같다. 2015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는 61,828명(75.0%)이며,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녀는 7,892명(9.5%)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는 12,75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15.5%로 낮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Ⅲ-7-8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성별	여성	31.9	12.9	14.0	100.0
	남성	32.7	9.7	16.9	100.0
연령	9~10세	46.8	0.0	0.4	100.0
	12~14세	33.3	0.0	0.5	100.0
	15~17세	24.8	0.0	3.9	100.0
	18세 이상	7.3	68.4	51.0	100.0
전 체		75.0(61,828)	9.5(7,892)	15.5(12,756)	100.0(82,476)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420-421에서 수정.

2015년 기준, 탈북학생의 학교 유형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총 2,717명 중 2,475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에는 242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은 1,224명이며, 중학교에는 824명이, 고등학교에는 427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9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5.4)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수	636	588	378	446	212	215	242	2,717
	1,224		824		427			
	2,475							

* 출처: 교육부(2016a).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8.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 oard/view.do?bbsId= 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2315&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그리고 연도별로 탈북학생의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의 수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지원에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Ⅲ-7-10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5.4)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10.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2,475

* 출처: 교육부(2016a).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8.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 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2315&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표 Ⅲ-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2.3.~ 20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율(%)	0.8	1.1	2.1	1.0
2013.3.~ 20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율(%)	0.9	1.2	2.1	1.0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4.3.~ 2015.2.	재학생 수	48,297	12,525	6,984	67,806
	학업중단자 수	435	146	107	688
	학업중단율(%)	0.9	1.2	1.5	1.0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65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5d).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5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 주: 1) 재학생수는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2)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1.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생수는 2012년의 경우 46,954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55,780명으로 전년대비 8,826명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67,806명으로 전년대비 12,026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학업중단자 수도 2012년에는 46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572명으로, 2014년에는 66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비율은 1.0%로 동일한 중도탈락률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율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각각 0.9%와 1.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2년과 2013년에 모두 2.1%였으나 2014년에는 1.5%로 0.6% 낮아졌다. 한편 여성가족부(2016a)의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과 비교했을 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가능성은 일반 학생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0.2%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보다 낮지만, 중학교는 2.9%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7.3%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1.5%)보다 4.9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1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5. 3)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14년도	'13. 4. 재학생 수(명)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명)	7	15	29	51
	중도탈락률(%)	0.6	3.1	7.5	2.5
'15년도	'14. 4. 재학생 수(명)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명)	2	20	27	49
	중도탈락률(%)	0.2	2.9	7.3	2.2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 /selectDataForm.do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2013년도 자료는 교육부 요청자료(2014.7.22.)를 토대로 재구성
교육부(2016a).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9.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 /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2315&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연도별 재학생 총수)×100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를 들 수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란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집중 제공하고,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지원을 목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다문화 예비학교의 참가율의 증가와 감소에 의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428). 교육부의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과 2015년 다문화예비학교 운영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에 26개, 2013년에 50개, 2014년에 80개가 운영되었으며, 2015년에는 총 100개가 운영되었다(교육부, 2016.3). 그리고 2016년에는 총 110개의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예비학교는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예체능 등 통합교육 가능 교과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형태는 학교에서 특별학급을 운영(직영형)하거나,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학력인정 대안학교(위탁형) 또는 다문화교육센터(센터형)에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세부 지표에는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가 있다(김영지 외, 2015: 429). 2015년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사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전일제와 여름·겨울학교, 방과후학교, 주말·야간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레인보우스쿨의 참가인원수는 2015년 현재 1,178명에 이르며 2014년보다 265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참가하는 전일제 유형에는 2015년도에 721명이 참가하였으며, 2013년보다 1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전체 수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7-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전일제	521	512	600	721
여름학교	286	190	246	278
방과후학교	14	–	–	–
주말·야간학교	18	65	50	65
겨울학교	–	70	17	114
계	839	837	913	1,178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86-8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24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38에서 재구성

②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실시된 심리정서 상담건수에는 온라인 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심리검사 실시 건수가 포함되었는데 가장 많은 상담은 온라인 상담

(2,696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내방상담(1,665건), 찾아가는 상담(578건), 집단상담(523건)의 순이었다. 심리정서 상담건수 증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7-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온라인상담	2,195	2,311	1,930	2,696
내방상담	340	500	1,473	1,665
찾아가는 상담	97	218	340	578
집단상담	–	248	37(기타, 심리검사 등)	523(기타, 심리검사 등)
계	2,632	3,277	3,780	5,462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99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44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55

③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인성육성지원을 위한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대학생 지식 멘토링'이란, 학업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대학생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의 대학생 멘토링 활동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27] 그러나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멘토링 결연을 맺은 대학의 명단과 숫자만 파악이 가능하였다. 멘토링 활동기간이 매년 4월에서 그 다음해 1월까지이므로 현재 2015년 멘토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김영지, 김희진 외, 2015: 430).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각각 7,122명과 5,115명의 다문화가정, 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6>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참가율에 관한 내용으로 2014년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Ⅳ-총괄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7) 한국장학재단(2014.7.31.). 인재육성사업 소개.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표 Ⅲ-7-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단위 : 명)

배움지기(멘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다문화가정 학생	4,626	4,561	6,652	4,851
탈북 학생	107	223	470	264
합계	4,733	4,784	7,122	5,115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 총괄보고서. p.540.
* 원자료: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2016.9.21.)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표 Ⅲ-7-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단위: 명(%))

기간 / 연도	7호(의료)	8호(1개월)	9호(단기)	10호(장기)	계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2013	105(3.7)	1,317(45.9)	938(32.7)	507(17.7)	2,867(100)	5.17
2014	93(3.7)	930(36.7)	842(33.2)	666(26.3)	2,531(100)	7.30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29.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은 2013년에 총 2,867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531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수용기간은 2008년 6.9개월에서 2012년에는 4.6개월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에는 5.17개월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7.30개월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수도 2008년에

서 2011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2년에 100명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507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는 666명으로 다시 증가한 상황이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보호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2014년까지 8호 처분이었다.

②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은 2013년 152명이던 것이 2014년 114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죄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절도와 강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4년의 경우에도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도(28.1%)와 강간(25.4%)에 관한 범죄이다. 그 다음으로는 강도 등(9.6%), 폭력·상해(8.8%), 살인(4.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2014년까지의 주요 범죄유형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절도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반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중 25%~3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69(100)	146(100)	114(100)	170(100)	152(100)	114(100)
절도	62(36.7)	45(30.8)	26(22.8)	42(24.7)	43(28.3)	32(28.1)
사기·횡령	3(1.8)	3(2.1)	0(0.0)	2(1.2)	1(0.7)	1(0.9)
폭력·상해	8(4.7)	1(0.7)	5(4.4)	17(10.0)	17(11.2)	10(8.8)
강간 등	44(26.0)	32(21.9)	33(28.9)	54(31.7)	46(30.2)	29(25.4)
강도 등	32(18.9)	33(22.6)	18(15.8)	24(14.1)	16(10.5)	11(9.6)
살인	6(3.6)	11(7.5)	10(8.8)	11(6.5)	7(4.6)	5(4.4)
과실범	2(1.2)	3(2.1)	1(0.9)	2(1.2)	–	2(1.8)
기타	12(7.1)	18(12.3)	21(18.4)	18(10.6)	22(14.5)	24(21.0)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35.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①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2013년 4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 변호사 제도 및 그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도입된 국선변호사제도를 말한다(법무연수원, 2015: 212). 이 제도는 아동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적정한 피해 회복, 2차 피해 방지,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형사·민사 절차에서 13세 미만 성폭력피해 아동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백미순, 김정혜, 정유석, 최영지, 2013: 1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형사절차상 독자적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5: 212). <표Ⅲ-7-18>에 제시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총 14,31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에서 국선보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13,363건으로 지정률은 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의 국선변호사 지정률과 비교해 봤을 때 2013년의 국선변호사 지정률은 91.7%이기 때문에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원스톱센터신청(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이 7,14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찰신청이 6,334명, 검사지정 604명, 상담소 신청(2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별 접수건수를 2013년도와 비교해보면, 경찰신청, 원스톱센터 신청, 상담소 신청, 검사지정 등 모든 기관에서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Ⅲ-7-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2012	2,556	2,401	155	–	–	–	238	233	5	280	274	3,074	2,908
2013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	453	448	8,812	8,084
201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14,310	13,363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p.213.

* 주 : 1) 법무부 인권국 아동여성인권과 자료
2) 2012년 원스톱센터 신청 관련 건수는 경찰신청 건수에 포함됨
3) '12.3.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4) '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5) '14.9.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②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비행소년에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제1단계는 신입자 교육으로 10일 이내에 생활안내와 처우심사(교육기간 및 학교지정 등)가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기본교육(1~23개월)으로 비행소년 각자의 처분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과교육(일반 중고교,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 정비, 자동화 용접, 건축환경설비, 건설기계운전,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사진영상, 측량, 텔레마케팅, 한식조리, 골프매니지먼트, 매직엔터테인먼트), 인성교육(집단지도, 집단상담, 사회봉사활동, 체험활동), 의료·재활교육(의학적 치료, 심리치료, 특수교육), 특별활동(자치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는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으로서10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진로지도, 사회적응지도,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진다(법무연수원, 2015).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는 [그림 Ⅲ-7-1]과 같다.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p.628.

【그림 Ⅲ-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이 처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된 청소년은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에게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5:398).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은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에는 청원이 903건, 행정심판이 458건, 행정소송이 79건, 고소·고발이 614건이 있었다. 행정심판은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청원역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7-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내용 / 연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2013년	1,071	458	74	647
2014년	903	458	79	614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p.398.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형법에 의해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은 10세로 하향되었다. 전체 보호관찰인원 중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다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013년 105,495명에서 2014년 121,51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소년보호관찰인원은 2013년 45,040명에서 2014년 34,362명으로 10,6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20>).

표 Ⅲ-7-20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495	45,040	42.6
2014	121,517	34,362	28.3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 439.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처벌보다는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과 같은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그러한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대한 속죄유식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단,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c: 441). 2014년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7,742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81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926명이었다.

표 Ⅲ-7-2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42.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의 범죄 내용에 따라서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도 12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5c: 442). 2014년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5,526명으로 전년대비 2,338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2014년의 경우 5,340명이었며, 협력기관(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집행한 인원은 186명이었다.

표 III-7-2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42.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적인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고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 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청소년을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78년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15c: 410) 2014년에는 3,473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 기소유예된 청소년의 수는 1,075명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소년범죄자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의 비율도 2012년 이후 감소하였다.

표 Ⅲ-7-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2013	91,633	4,548	5.0
2014	77,594	3,473	4.5

* 출처: 대검찰청(2015a), 검찰연감. p.686.
대검찰청(2015b). 범죄분석. p.664.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대상자를 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구별된다.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대상을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여성가족부, 2015c: 412-413). 2014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324,748명이었으며, 이중 5,112명(1.6%)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가 선도위탁을 실시하였다.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전체 기소유예자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실시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의 수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1.4)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1.6)	4,360	2,638	255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413.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383.
대검찰청(2015a). 검찰연감. p.687.
* 원자료: 대검찰청(2013b).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2014a). 검찰연감. 2007~2014.

3) 경제적 착취

(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①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4일이었으며, 2013년 대비 0.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168.5시간이었으며, 2013년 대비 6.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19세 이하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3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여자가 182.8시간으로 남자 173.8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5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 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2013	전 체	20.9	186.2	20.5	169.2	20.7	175.3
	19세 이하	19.9	174.4	19.6	159.5	19.7	165.6
	20-24세	21.0	187.6	20.6	170.1	20.8	176.3
2014	전 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19세 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 출처: 여성가족부(2013c). 2013 청소년백서. p.334.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342.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370.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②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월평균 1,429,000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1,748,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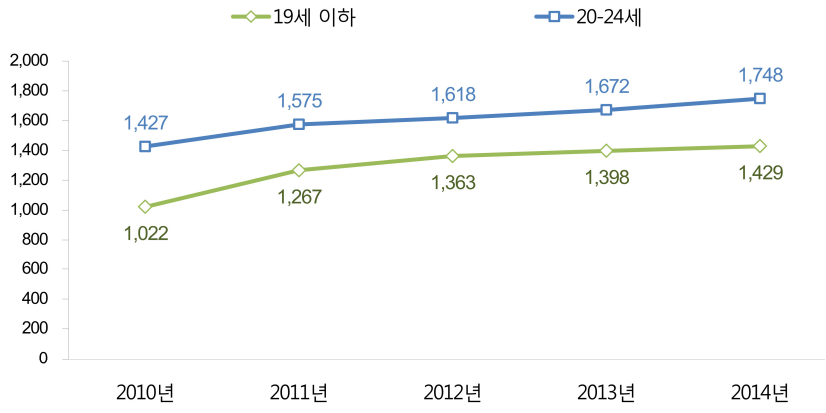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ⅩⅣ. 발췌.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림 Ⅲ-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단위: 천원(월급여 총액))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증가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평균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의 경우 29세 이하 청소년은 시간당 평균 10,583원을 받았으며, 전체평균인 14,587원과는 4,004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14년의 경우 29세 이하 청소년은 시간당 평균 11,134원을 받았으며, 전체평균인 15,978원과는 4,844원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26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체	15,001	15,684	17,480	11,019(73.5)	11,253(71.7)	11,452(65.5)	14,075	14,587	15,978
19세 이하	8,358	11,068	12,452	6,612(79.1)	8,609(74.2)	8,660(77.3)	7,006	10,583	11,134
20~29세	11,142			8,854(79.5)			10,455		
30~39세	14,903	15,759	17,457	13,049(87.6)	13,183(83.7)	13,521(77.5)	14,659	15,392	16,892
40~49세	16,866	17,703	20,059	12,632(74.9)	13,058(73.8)	13,519(67.4)	16,088	16,803	18,860
50~59세	16,445	16,964	18,910	12,143(73.8)	12,308(73.8)	12,464(65.9)	15,332	15,624	17,094
60세 이상	13,100	13,360	14,038	9,777(74.6)	9,777(74.7)	10,190(72.6)	11,518	11,685	12,099

* 출처: 고용노동부(201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8.
고용노동부(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5.
* 주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은 2014년에 23.9%로 OECD 평균인 29.8%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와 비교했을 때 21.0%에서 23.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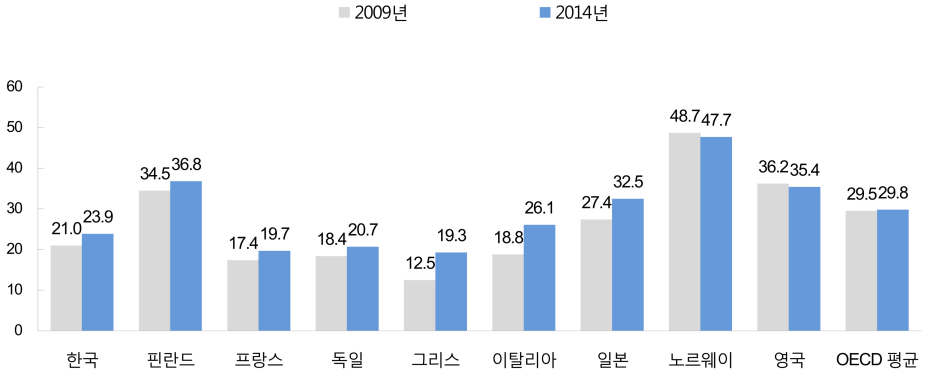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 VII
* 원자료: OECD(2015).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Ⅲ-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9/2014)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하여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답변결과는 다음의 <표Ⅲ-7-27>과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청소년이 15.1%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1.8%로 남자청소년보다 낮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계고 14.4%, 중학교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14.0%, 대도시 11.3%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22.9%, 양부모가정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위권 12.3%, 상위권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1.4%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층 13.6%, 상위층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2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13.5	86.5	100.0(7,874)	-
성별	남자		15.1	84.9	100.0(4,082)	18.621***
	여자		11.8	88.2	100.0(3,792)	
학교유형	중학교		5.1	94.9	100.0(3,699)	426.972***
	고등학교	전체	21.0	79.0	100.0(4,175)	
		일반계고	14.4	85.6	100.0(3,358)	
		특성화계고	48.1	51.9	100.0(817)	
지역규모	대도시		11.3	88.7	100.0(3,098)	36.646***
	중소도시		14.0	86.0	100.0(3,846)	
	읍면지역		18.9	81.1	100.0(93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2.5	87.5	100.0(7,038)	69.566***
	한부모가정		22.9	77.1	100.0(664)	
	조손가정		29.5	70.5	100.0(57)	
	기타		15.0	85.0	100.0(115)	
학업성적	상		8.4	91.6	100.0(2,112)	127.456***
	중		12.3	87.7	100.0(3,263)	
	하		19.5	80.5	100.0(2,463)	
경제적 수준	상		10.8	89.2	100.0(3,641)	86.979***
	중		13.6	86.4	100.0(3,004)	
	하		21.4	78.6	100.0(1,190)	

***$p<.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13.3%, 2014년 13.5%, 2015년 12.2%, 2016년 1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최근 4년간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볼때에도 중학생의 경우 2013년 6.5%, 2014년 6.7%, 2015년 4.3%, 2016년 5.1%로 나타나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도 2013년 15.2%, 2014년 15.1%, 2015년 13.7%, 2016년 14.4%로 나타나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41.1%, 2014년 42.2%, 2015년 45.0%, 2016년 48.1%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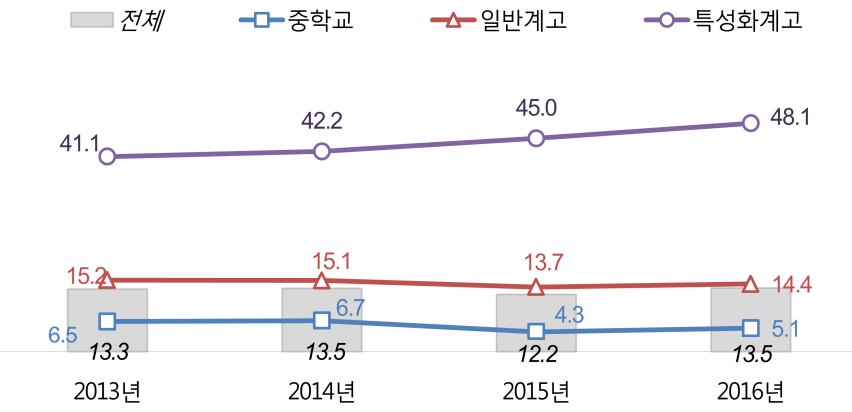

【그림 Ⅲ-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금을 1-2번 정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여자 청소년이 14.2%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은 12.8%로 여자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3번 이상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가 1.8%로 여자 청소년 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2회 정도 경험한 학생들의 응답은 중학교가 1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 12.9%, 일반계고 11.7%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1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13.4%, 읍면지역 11.3%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13.6%, 한부모가정 11.9%의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17.8%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위권 11.5%, 상위권 9.3%의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층이 1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위층 13.8%, 상위층 13.0%의 순이었다. 하지만 3회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2%) 이,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3.5%)이,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2.2%)이,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층(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5.0	13.4	1.6	100.0(1,063)	-
성별	남자		85.4	12.8	1.8	100.0(617)	0.685
	여자		84.5	14.2	1.3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79.6	19.0	1.4	100.0(186)	5.792
	고등학교	전체	86.1	12.2	1.6	100.0(877)	
		일반계고	87.0	11.7	1.4	100.0(483)	
		특성화계고	85.1	12.9	2.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84.6	13.4	2.0	100.0(349)	2.451
	중소도시		84.8	14.1	1.2	100.0(538)	
	읍면지역		86.5	11.3	2.2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1	13.6	1.3	100.0(877)	-
	한부모가정		84.6	11.9	3.5	100.0(152)	
	조손가정		68.2	31.8	0.0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88.8	9.3	1.9	100.0(177)	13.794**
	중		81.5	17.8	0.8	100.0(399)	
	하		86.3	11.5	2.2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85.4	13.0	1.7	100.0(392)	4.263
	중		85.4	13.8	0.8	100.0(409)	
	하		83.4	13.9	2.8	100.0(255)	

**$p<.0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2011년 17.3%에서 2013년 15.1%, 2014년 17.5%, 2015년 17.1%, 2016년 15.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추이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변화추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6년에 전체적 변화추이와 상반된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임금피해 경험비율은 2015년 대비 각각 4.5%, 2.2% 감소한데 비해,

중학교의 임금피해 경험비율은 2015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임금과 관련된 피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겠지만, 특히 중학생의 피해 경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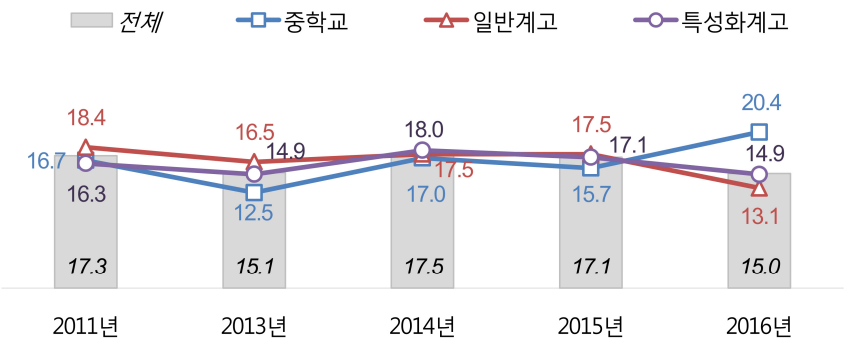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도 1-2번(12.3%)이 3번 이상(3.3%) 보다 많았다. 1-2번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11.8%)보다 여자 청소년(13.0%)이 더 많았고, 3번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3.6%)이 여자 청소년(2.9%)보다 더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1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 15.7%, 일반계고 15.1%이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8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16.0%, 읍면지역 13.4%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15.2%, 조손가정 9.3%의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2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위권 16.4%, 하위권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하위층 18.1%, 중위층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4.4	12.3	3.3	100.0(1,062)	-
성별	남자		84.6	11.8	3.6	100.0(616)	0.630
	여자		84.1	13.0	2.9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3.5	12.9	3.6	100.0(185)	0.269
	고등학교	전체	84.6	12.2	3.2	100.0(877)	
		일반계고	84.9	12.5	2.6	100.0(483)	
		특성화계고	84.3	11.7	4.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84.0	13.0	3.0	100.0(348)	4.557
	중소도시		83.9	11.8	4.2	100.0(538)	
	읍면지역		86.6	12.2	1.1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8	11.8	3.4	100.0(876)	-
	한부모가정		80.6	16.7	2.7	100.0(152)	
	조손가정		90.7	4.6	4.7	100.0(17)	
	기타		92.7	7.3	0.0	100.0(17)	
학업 성적	상		83.6	15.8	0.6	100.0(177)	34.127***
	중		79.8	17.6	2.6	100.0(397)	
	하		88.5	6.6	4.9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78.8	16.9	4.3	100.0(392)	21.976***
	중		90.6	7.1	2.3	100.0(407)	
	하		82.9	13.6	3.5	100.0(255)	

***$p<.001$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근무 및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과 관련한 지난 6년간의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2011년 17.3%에서 2013년 14.8%, 2014년 18.5%, 2015년 13.8%, 2016년 15.6%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추이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변화추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적 변화추이와 다시 차이가 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1년 17.7%에서 2013년 15.9%, 2014년 22.1%, 2015년 13.0%, 2016년 15.1%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도 2011년 9.5%에서 2013년 13.7%, 2014년 22.1%, 2015년 16.4%, 2016년 15.7%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9.5%에서 2013년 13.7%, 2014년 13.5%, 2015년 10.5%, 2016년 16.5%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과 다소 어긋나는 패턴이 발견된다. 특히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시간 초과근무나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특히 중학생의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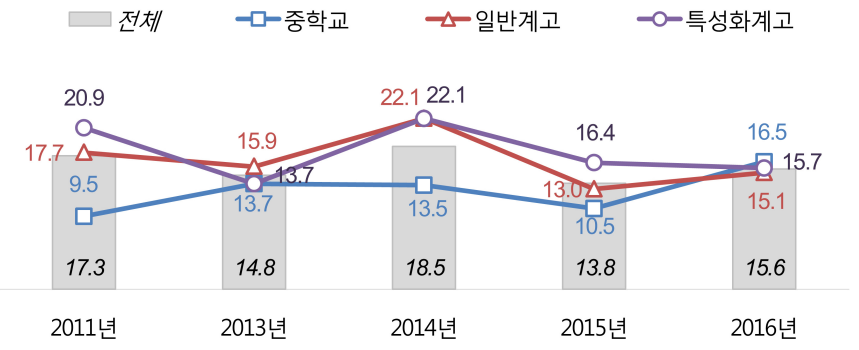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69.7%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72.0%)이 여자 청소년(66.6%)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중학생이 7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71.2%, 특성화계고 6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71.7%, 대도시 6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8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70.2%, 한부모가정 6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위권이 70.3%, 중위권 6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위층이 69.1%, 하위층 6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학생이,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사각지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Ⅲ-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69.7	23.5	6.7	100.0(1,063)	-
성별	남자		72.0	20.6	7.4	100.0(617)	7.467*
	여자		66.6	27.5	5.8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78.8	14.7	6.5	100.0(186)	10.562**
	고등학교	전체	67.8	25.4	6.8	100.0(877)	
		일반계고	71.2	21.5	7.3	100.0(483)	
		특성화계고	63.6	30.2	6.2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61.6	28.7	9.8	100.0(349)	22.174***
	중소도시		71.7	22.5	5.9	100.0(538)	
	읍면지역		80.0	16.5	3.5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0.2	23.1	6.7	100.0(877)	-
	한부모가정		68.0	23.8	8.2	100.0(152)	
	조손가정		83.0	17.0	0.0	100.0(17)	
	기타		50.4	46.9	2.7	100.0(17)	
학업 성적	상		71.5	22.5	6.1	100.0(177)	2.357
	중		68.3	23.5	8.2	100.0(399)	
	하		70.3	23.8	5.9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71.0	21.7	7.3	100.0(392)	2.497
	중		69.1	25.2	5.7	100.0(409)	
	하		68.7	23.5	7.8	100.0(255)	

*p<.05, **p<.01, ***p<.001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한번이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과 관련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16.7%이던 것이 2013년 21.6%, 2014년 22.9%, 2015년 28.6%, 2016년 3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교급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 2011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비율이 8.9%였으나 2013년에는 19.5%, 2014년에는 18.3%, 2015년에는 8.7%, 2016년에는 21.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경험 비율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향후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16.2%이었으나, 2013년 21.1%, 2014년 24.6%, 2015년 29.2%, 2016년 28.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21.9%, 2013년 24.3%, 2014년 24.2%이었으나 2015년에는 37.4%, 그리고 2016년에는 36.4%로 2011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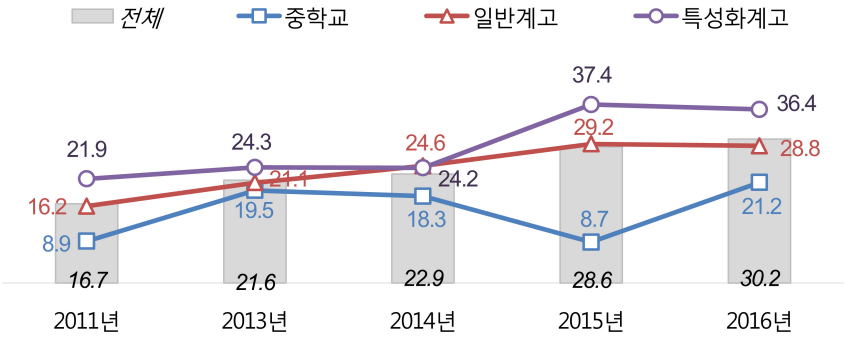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7.0%로 여자 청소년(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1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계고가 5.0%, 일반계고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4.9%, 읍면지역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5.1%, 조손가정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이 5.3%, 하위권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이 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위층 5.0%, 하위층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부당해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회 이상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조손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4.0	4.8	1.2	100.0(1,063)	-
성별	남자		93.0	4.9	2.1	100.0(617)	-
	여자		95.4	4.6	0.0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8.0	9.6	2.5	100.0(186)	-
	고등학교	전체	95.3	3.7	1.0	100.0(877)	
		일반계고	95.5	2.8	1.8	100.0(483)	
		특성화계고	95.0	5.0	0.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91.6	6.1	2.3	100.0(349)	7.116
	중소도시		95.1	4.2	0.7	100.0(538)	
	읍면지역		95.4	4.0	0.6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7	5.2	1.1	100.0(877)	-
	한부모가정		94.9	3.1	1.9	100.0(152)	
	조손가정		95.3	0.0	4.7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94.7	4.7	0.6	100.0(177)	8.088
	중		91.8	7.0	1.3	100.0(399)	
	하		95.5	3.0	1.5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91.3	5.9	2.8	100.0(392)	14.825**
	중		95.0	4.6	0.3	100.0(409)	
	하		96.3	3.4	0.3	100.0(255)	

**$p<.0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경험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6.0%이던 것이 2013년에는 9.3%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6.2%이었으나, 2013년 9.1%, 2014년 7.2%, 2015년 6.6%, 2016년 4.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4.7%, 2013년 6.6%, 2014년 4.6%, 2015년 6.0%, 2016년 5.0%로 나타나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8.9%, 2013년에는 12.7%, 2014년에는 10.8%,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12.0%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험률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중학생의 부당해고 경험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다는 점은 청소년의 부당해고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층인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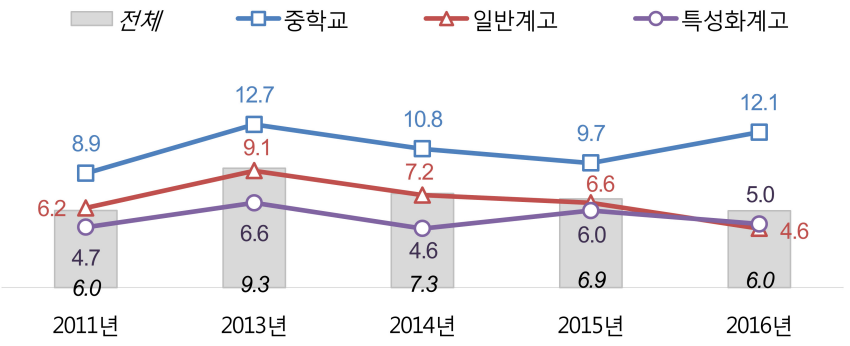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한 해고(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직업 환경에서의 불결함과 위험 경험과 관련하여 한번이라도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9.8%로 남자 청소년(9.2%)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1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9.0%, 특성화계고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10.3%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은 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조손가장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9.8%, 한부모가정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1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위권 7.7%, 상위권 4.0%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이 1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위층이 8.7%, 중위층 8.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에서,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이 아르바이트 직업환경에 관한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회 이상 경험한

비율의 경우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이 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Ⅲ-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0.5	7.6	1.9	100.0(1,063)	-
성별	남자		90.8	7.1	2.1	100.0(617)	0.876
	여자		90.2	8.3	1.5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5.7	11.4	2.9	100.0(186)	5.651
	고등학교	전체	91.6	6.8	1.6	100.0(877)	
		일반계고	91.0	7.4	1.6	100.0(483)	
		특성화계고	92.2	6.1	1.7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89.7	8.1	2.3	100.0(349)	-
	중소도시		89.7	8.2	2.2	100.0(538)	
	읍면지역		95.1	4.9	0.0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2	8.0	1.8	100.0(877)	-
	한부모가정		92.8	5.8	1.4	100.0(152)	
	조손가정		78.5	12.2	9.3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96.0	2.9	1.0	100.0(177)	23.657***
	중		85.8	12.4	1.7	100.0(399)	
	하		92.3	5.4	2.3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89.0	8.7	2.3	100.0(392)	1.705
	중		91.4	7.0	1.7	100.0(409)	
	하		91.3	7.1	1.6	100.0(255)	

***$p<.001$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에서 불결함과 위험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11.7%이던 것이 2013년에는 13.6%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13.0%, 2015년 10.3%, 2016년 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9.5%이었으나, 2013년 16.1%, 2014년 13.6%, 2015년 10.8%, 2016년 9.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16.1%, 2013년 9.3%, 2014년 13.5%, 2015년 9.9%, 2016년 7.8%로 나타나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7.1%, 2013년에는 13.4%, 2014년에는 11.2%, 2015년에는 9.9%, 2016년에는 14.3%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작업환경 피해경험 역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의 작업환경 피해경험이 2016년에 급상승하였다는 것은 저연령층인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의 피해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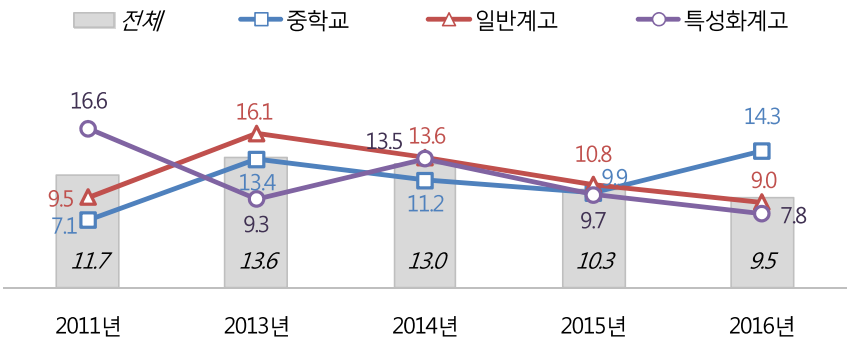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11.5%로 남자 청소년(10.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1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10.2%, 특성화계고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각각 9.4%, 9.2%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이 각각 11.7%, 10.8%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1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 10.0%, 하위권 8.9%의 순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이 1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위층이 10.9%, 중위층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과정에서 폭언과 같은 인격모독을 3회 이상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가족유형별로 조손가정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인격모욕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인격모욕 피해경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손가

정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9.4	9.7	0.9	100.0(1,063)	–
성별	남자		90.0	8.9	1.1	100.0(617)	1.588
	여자		88.5	10.8	0.6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6.6	13.0	0.4	100.0(186)	2.992
	고등학교	전체	90.0	9.0	1.0	100.0(877)	
		일반계고	89.8	9.0	1.2	100.0(483)	
		특성화계고	90.2	9.1	0.7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86.5	12.0	1.5	100.0(349)	5.521
	중소도시		90.8	8.6	0.6	100.0(538)	
	읍면지역		90.6	8.7	0.7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2	10.1	0.7	100.0(877)	–
	한부모가정		88.3	10.0	1.7	100.0(152)	
	조손가정		95.3	0.0	4.7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90.0	8.5	1.5	100.0(177)	6.441
	중		86.9	12.5	0.6	100.0(399)	
	하		91.1	8.0	0.9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88.3	11.2	0.5	100.0(392)	2.511
	중		90.4	8.6	1.1	100.0(409)	
	하		89.1	9.5	1.3	100.0(255)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10.2%이던 것이 2013년에는 14.5%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11.5%, 2015년 11.8%, 2016년 10.6%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과정에서 인격모독과 관련된 상황은 소폭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9.1%이었으나, 2013년 15.3%, 2014년 11.4%, 2015년 12.3%, 2016년 10.2%로 나타나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11.9%, 2013년에는 15.4%, 2014년에는 13.8%, 2015년에는 13.4%, 2016년에는 9.8%로 나타나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10.2%, 2013년에는 14.5%, 2014년에는 11.5%, 2015년에는 11.8%, 2016년에는 10.6%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 2013년

에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5년까지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서의 인격모독 피해경험 역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2016년에 급상승하였다는 것은 저연령층인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인격모독의 피해경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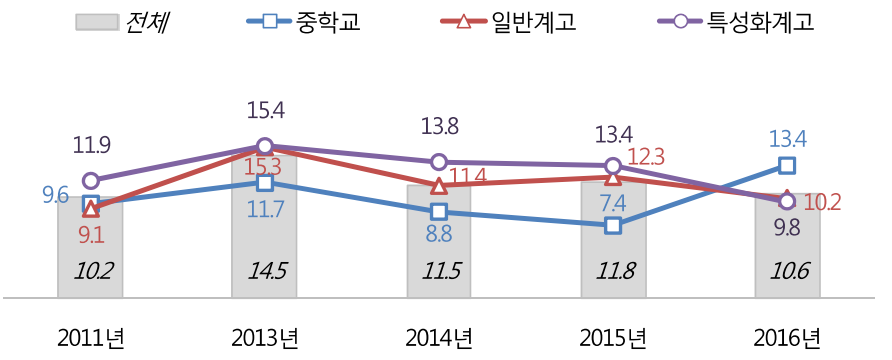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9%로 여자 청소년(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1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 2.1%, 특성화계고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각각 1.9%, 1.2%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3.2%, 양부모가정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 3.9%, 하위권 1.1%의 순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이 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위층이 2.8%, 하위층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과정에서 구타와 폭행을 3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볼 때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학생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구타나 폭행의 경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7.0	2.2	0.9	100.0(1,063)	-
성별	남자		96.1	2.6	1.3	100.0(617)	4.864
	여자		98.2	1.6	0.2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9.2	6.3	4.5	100.0(186)	-
	고등학교	전체	98.6	1.3	0.1	100.0(877)	
		일반계고	97.9	1.9	0.2	100.0(483)	
		특성화계고	99.4	0.6	0.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93.6	4.6	1.9	100.0(349)	-
	중소도시		98.8	0.7	0.5	100.0(538)	
	읍면지역		98.1	1.9	0.0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2.2	0.9	100.0(877)	-
	한부모가정		96.8	2.5	0.7	100.0(152)	
	조손가정		95.3	0.0	4.7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96.1	1.2	2.7	100.0(177)	24.518***
	중		95.0	4.5	0.5	100.0(399)	
	하		98.9	0.6	0.5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95.3	3.3	1.4	100.0(392)	7.753
	중		97.2	2.2	0.5	100.0(409)	
	하		98.9	0.4	0.7	100.0(255)	

***$p<.001$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1.6%이던 것이 2013년에는 6.3%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6.0%, 2015년에는 3.2%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3.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과정에서 구타나 폭행경험은 소폭이긴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1.5%이었으나,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4.1%, 2015년에는 2.2%, 2016년에는 2.1%로 나타나 2013년 이후 2016년까지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1.0%, 2013년에는 4.8%, 2014년에는 5.6%, 2015년에는 3.4%, 2016년에는 3.3%로 나타나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 훨씬 높으며, 증감의 폭도 훨씬 더 크게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에는 3.6%, 2013년에는 8.9%, 2014년에는 10.2%, 2015년에는 6.1%, 2016년에는 1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서의 구타나 폭행경험은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훨씬 크며, 2016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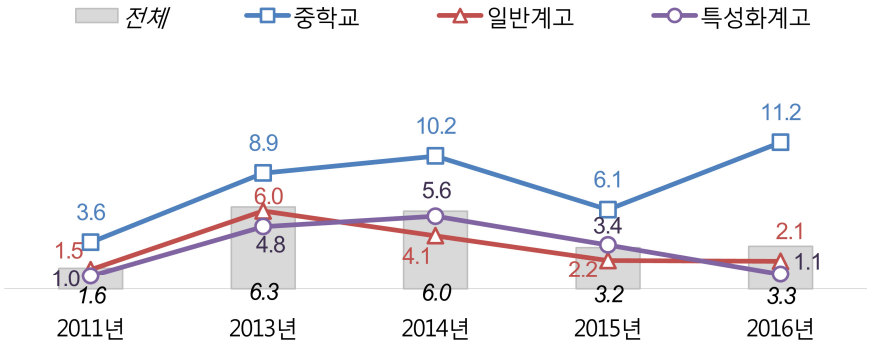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경험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4.3%로 여자 청소년(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고가 2.1%, 특성화계고의 경우 1.1%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이 각각 2.1%, 1.4%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4.6%, 양부모가정 3.1%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이 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위권 4.6%, 하위권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이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위층 2.4%, 하위층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6.6	3.1	0.2	100.0(1,063)	-
성별	남자		95.7	4.1	0.2	100.0(617)	5.108
	여자		97.9	1.8	0.3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88.8	10.4	0.8	100.0(186)	-
	고등학교	전체	98.3	1.6	0.1	100.0(877)	
		일반계고	97.9	1.9	0.2	100.0(483)	
		특성화계고	98.9	1.1	0.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92.9	6.4	0.7	100.0(349)	-
	중소도시		98.6	1.4	0.0	100.0(538)	
	읍면지역		97.9	2.1	0.0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9	2.8	0.3	100.0(877)	-
	한부모가정		95.4	4.6	0.0	100.0(152)	
	조손가정		91.3	8.7	0.0	100.0(17)	
	기타		100.0	0.0	0.0	100.0(17)	
학업 성적	상		94.2	5.2	0.6	100.0(177)	-
	중		95.4	4.3	0.4	100.0(399)	
	하		98.5	1.5	0.0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95.4	4.4	0.3	100.0(392)	-
	중		97.6	2.1	0.4	100.0(409)	
	하		97.4	2.6	0.0	100.0(255)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성적 피해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1.6%이던 것이 2013년에는 6.3%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6.0%, 2015년 3.2%, 2016년 3.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과정에서 성적 피해경험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1.5%이었으나,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4.1%, 2015년에는 2.2%, 2016년에는 2.1%로 나타나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1.0%, 2013년에는 4.8%, 2014년에는 5.6%, 2015년에는 3.4%, 2016년에는 3.4%로 나타나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약간 상이한 변화추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2011년에는 3.6%, 2013년에는 8.9%, 2014년에는 10.2%, 2015년에는 6.1%, 2016년에는 11.2%로 나타나서, 2014년도 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서의 성적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생의 피해경험은 매년 고등학생의 피해경험보다 높았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성적 피해경험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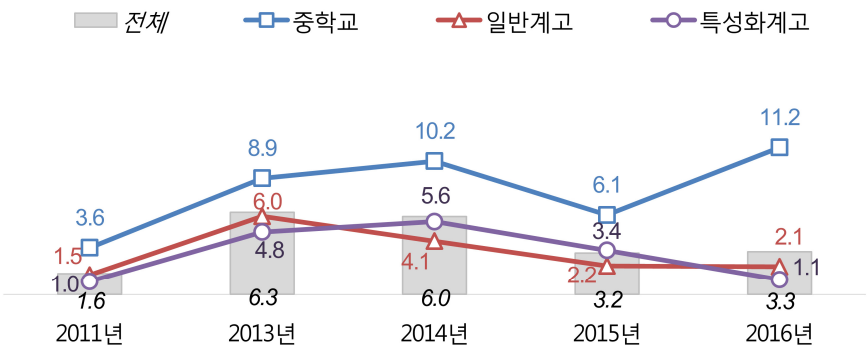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0.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22.4%로 남자 청소년(18.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0.1%, 특성화계고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21.3%, 대도시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20.3%, 한부모가정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 21.0%, 하위권 18.6%의 순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이 2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위층 20.2%, 중위층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 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79.9	13.5	6.7	100.0(1,063)	–
성별	남자		81.5	12.7	5.9	100.0(617)	2.793
	여자		77.6	14.6	7.8	100.0(445)	
학교 유형	중학교		79.9	17.1	3.0	100.0(186)	6.228*
	고등학교	전체	79.9	12.7	7.4	100.0(877)	
		일반계고	79.2	12.2	8.6	100.0(483)	
		특성화계고	80.6	13.4	6.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84.2	10.6	5.1	100.0(349)	10.501*
	중소도시		78.7	15.0	6.4	100.0(538)	
	읍면지역		74.7	14.7	10.6	100.0(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7	14.2	6.1	100.0(877)	–
	한부모가정		80.5	9.4	10.1	100.0(152)	
	조손가정		77.5	12.2	10.3	100.0(17)	
	기타		85.8	14.2	0.0	100.0(17)	
학업 성적	상		79.0	14.3	6.7	100.0(177)	1.531
	중		78.2	14.6	7.2	100.0(399)	
	하		81.4	12.3	6.3	100.0(480)	
경제적 수준	상		76.5	15.7	7.8	100.0(392)	5.293
	중		82.8	11.8	5.3	100.0(409)	
	하		79.8	12.9	7.3	100.0(255)	

*$p<.05$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에 22.0%이던 것이 2013년에는 27.2%, 2014년에는 27.1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25.0%, 2016년에는 20.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1년에는 25.1%이었으나, 2013년에는 29.6%, 2014년에는 26.4%, 2015년에는 27.5%, 2016년에는 20.8%로 나타나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23.6%, 2013년에는 30.0%, 2014년에는 33.5%, 2015년에는 22.6%, 2016년에는 19.4%로 나타나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2011년에는 12.6%, 2013년에는 19.1%, 2014년에는 20.8%, 2015년에는 22.8%, 2016년에는 20.1%로 나타나서, 2015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20%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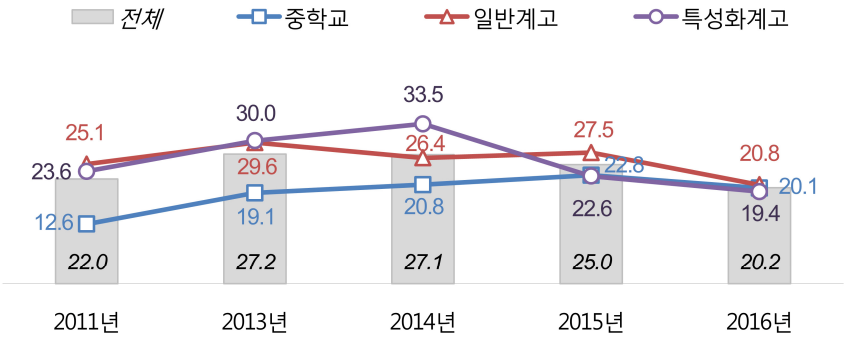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단위: %)

【그림 Ⅲ-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연도별 추이)

(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대상 업소 수

청소년들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5월)"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242-24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결과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는 2014년까지 고용백서를 통해 제공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백서에서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결과에 관한 공식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4년까지의 정부공식통계를 토대로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Ⅲ-7-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3,057개소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법위반 업소는 2,572개소로 전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 중 84.1%가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검실시 기관수 대비 법위반 적발 업소수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78.2%, 2009년에는 85.7%, 2010년에는 84.1%, 2011년에는 87.9%, 2012년에는 91.8%, 2013년에는 84.1%로 나타나 평균 85.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의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7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점검실시	법위반	조치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중
2008	1,318	1,031 (2,567)	1,017 (2,545)	7 (7)	–	–	–
2009	1,621	1,389 (4,704)	1,389 (4,701)	1 (1)	1 (2)	–	–
2010	1,545	1,300 (4,979)	1,298 (4,977)	2 (2)	–	–	–
2011	2,711	2,384 (9,681)	2,381 (9,676)	3 (5)	–	–	–
2012	1,940	1,780 (7,589)	1,776 (7,581)	3 (7)	1 (1)	–	–
2013	3,057	2,572 (8,395)	2,558 (8,374)	12 (19)	2 (2)	–	–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2.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4.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청소년 근로관련법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조건 미명시로 1,787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달 48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99건, 야간·휴일 근로인가 미준수 35건, 근로시간 미준수 1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반사항 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7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연소자인 청소년의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히 요청된다.

표 Ⅲ-7-38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단위 : 건)

연도	최저임금 주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미달
		연소자증명서 비치	야간·휴일 근로 인가	근로시간 준수	취직인허증	
2008	314	469	41	86	6	314
2009	76	496	188	63	3	76
2010	885	432	209	61	2	86
2011	1,605	847	401	217	7	296
2012	1,253	431	262	117	4	206
2013	1,787 (근로조건 미명시)	99	35	15	–	488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3.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5.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결과에 의하면 2010년~2014년에는 연간 1500~6700개에 이르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이 점검대상 이었으나, 2015년 단 438개 업체로 급감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4년까지 실시하던 청소년 집중근로감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2016.07.25.). 이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된 '2013년 ~ 2015년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438개의 점검업체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141개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법령위반 건수는 총 287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미실시된 사례는 5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위반건수 중 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에도 661개의 점검업체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187개로 나타났으며, 위반건수는 총 348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미실시된 사례는 6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위반건수 중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 확립을 위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청소년고용사업장 중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9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 고용 점검사업장(건)	2,711	1,940	3,057	6,72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건)	896	718	758	2,934
미실시 사업장 비율(%)	33.1	37.0	24.8	43.7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 p.544.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경원일보 2015년 9월 13일 보도자료). 경원일보 웹사이트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35216에서 인출.

표 Ⅲ-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단위 : 건)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연소자증명 대장, 인허증 등 서류 미비치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 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계
2013년 여름방학	353	86	131	3	60	20	29	243
2013년 겨울방학	160	39	57	6	22	3	13	101
2014년 여름방학	364	102	101	18	33	14	19	185
2014년 겨울방학	297	85	84	3	29	4	43	163
2015년 여름방학	197	73	68	11	42	3	31	155
2015년 겨울방학	241	68	71	3	32	1	25	132

* 출처: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2016.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이정미 의원 홈페이지 http://justice551.tistory.com/122에서 인출.

4) 성적 착취

(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6년 9월 현재 총 1,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55명, 2010년에는 198명, 2011년에는 334명, 2012년에는 412명,

2013년에는 457명, 2014년에는 737명, 2015년에는 879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37	879	1,194

* 출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요청자료(2016.9.2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78.8%로, 고등학생(67.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더라도 매년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성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간 성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8.9	76.4	61.3	81.3	75.5	72.7	74.8	65.2	43.8
2011	66.1	74.2	58.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68.0	73.7	62.5	75.1	74.6	71.5	67.6	67.8	52.0
2013	71.6	78.1	65.5	80.8	78.8	74.8	70.1	70.1	56.3
2014	71.8	77.6	66.3	82.3	76.9	74.1	71.0	69.5	58.5
2015	73.3	79.8	67.6	84.5	79.7	76.2	71.6	73.5	58.0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32.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와 관련하여 2015년의 경우 성범죄자 수는 총 33,616명이었으며, 이중 신상공개자는 총 4,552명으로 약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수는 2011년 2,167명, 2012년 3,818명, 2013년 12,652명, 2014년 22,582명, 2015년 33,616명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자 역시 2011년 151명, 2012년 1,261명, 2013년 3,786명, 2014년 4,161명,

2015년 4,55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2,167	151	3,818	1,261	12,652	3,786	22,582	4,161	33,616	4,552

* 출처: 여성가족부(2009). 2009 청소년백서. p.262.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백서. p.246.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248.
여성가족부(2013c). 2013 청소년백서. p.256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268.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287.
* 주: 2011년까지의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나 2013년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성인 대상임.
2008년, 2010년, 2011년은 12월 31일 기준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2015년도는 9월 30일 기준임.

표 Ⅲ-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서울특별시	741
부산광역시	297
대구광역시	175
인천광역시	274
광주광역시	136
대전광역시	103
울산광역시	69
경기도	1,024
강원도	159
충청북도	131
충청남도	237
전라북도	184
전라남도	241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301
제주특별자치도	55
세종특별자치시	6
총 계	4,417

* 출처: 성범죄자 알림e(2016.6.23.)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 주: 본 통계자료는 행정동 기준(주민자치센터 관리기준)으로 집계하여 공개한 자료이며, 통계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임.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Ⅲ-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 해 자 연 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1	5.0	28.5	61.4	2.7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381	2,309
		100%	2.7	14.2	29.9	46.4	1.0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9	35
		100%	2.1	11	33.3	51	0.5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401	2,908
		100%	2.3	11.3	29.4	47.2	1.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25	45
		100%	0.3	9.6	40.4	46.8	1.0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405	1,888
		100%	1.9	10.1	30.6	50.0	1.3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109	232
		100%	0.3	4.8	36.3	48.7	3.2	6.7
2013년	전체	31,323	600	2,722	7,329	16,664	350	3,660
		100%	1.9	8.7	23.4	53.2	1.1	11.7
	장애인	3,225	57	247	743	1,894	49	233
		100%	1.8	7.7	23.0	58.7	1.5	7.3
2014년	전체	31,764	591	2,405	7,866	16,244	483	4,175
		100%	1.9	7.6	24.8	51.1	1.5	13.1
	장애인	4,965	16	208	1,196	2,680	31	834
		100%	0.3	4.2	24	54	0.6	16.8
2015년	전체	34,489	552	2,317	8,839	19,949	470	2,362
		100%	1.6	6.7	25.6	57.8	1.4	6.8
	장애인	3,986	18	179	1,158	2,430	49	152
		100%	0.5	4.5	29.1	61.0	1.2	3.8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5.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www.mogef.go. 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3026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표Ⅲ-7-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한해동안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34,489명이었다. 이중 19세미만 청소년은 총 11,708명으로 나타나 전체 성폭력 피해자중 3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세 미만이 552명(1.6%), 7-13세 미만이 2,317명(6.7%), 13-19세미만이 8,839명(25.6%)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도 2015년의 경우 총 1,355명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7세미만이 18명, 7-13세미만이 179명, 13-19세미만 1,15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4.3%의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이 4.5%, 남자 청소년이 4.2%로 나타났다. 학교6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4.4%, 특성화계고 4.1%, 일반계고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이 5.1%로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별로는 하위층이 7.2%로 성적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표 Ⅲ-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3	95.7	100.0(11,010)	-
성별	남자		4.2	95.8	100.0(5,717)	0.739
	여자		4.5	95.5	100.0(5,2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	95.2	100.0(3,125)	2.903
	중학교		4.4	95.6	100.0(3,712)	
	고등학교	전체	4.0	96.0	100.0(4,173)	
		일반계고	3.9	96.1	100.0(3,359)	
		특성화계고	4.1	95.9	100.0(814)	
지역 규모	대도시		4.5	95.5	100.0(4,412)	0.863
	중소도시		4.2	95.8	100.0(5,246)	
	읍면지역		4.5	95.5	100.0(1,3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	95.9	100.0(9,884)	15.164**
	한부모가정		5.4	94.6	100.0(808)	
	조손가정		6.8	93.2	100.0(104)	
	기타		9.1	90.9	100.0(214)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4.0	96.0	100.0(3,552)	5.013
	중	4.1	95.9	100.0(4,669)	
	하	5.1	94.9	100.0(2,747)	
경제적 수준	상	3.9	96.1	100.0(5,705)	30.402***
	중	4.0	96.0	100.0(3,930)	
	하	7.2	92.8	100.0(1,327)	

**p<.01, ***p<.001

연도별 성적인 피해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성적인 피해경험자 비율은 2011년 3.4%, 2013년 3.3%, 2014년 4.0%, 22015년 3.9%, 2016년 4.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는 3.4%, 2013년에는 2.6%, 2014년에는 4.8%, 2015년에는 4.3%, 2016년에는 4.8%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3.0%였으나 2013년에는 3.8%, 2014년에는 3.8%, 2015년에는 3.9%, 2016년에는 4.4%로 증가하였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1년 4.0%였으며, 2013년에는 3.5%로, 2014년에는 3.4%, 2015년에는 3.6%, 2016년에는 3.9%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3.4%였으나 2013년에는 2.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3.8%, 2015년에는 3.9%, 2016년에는 4.1%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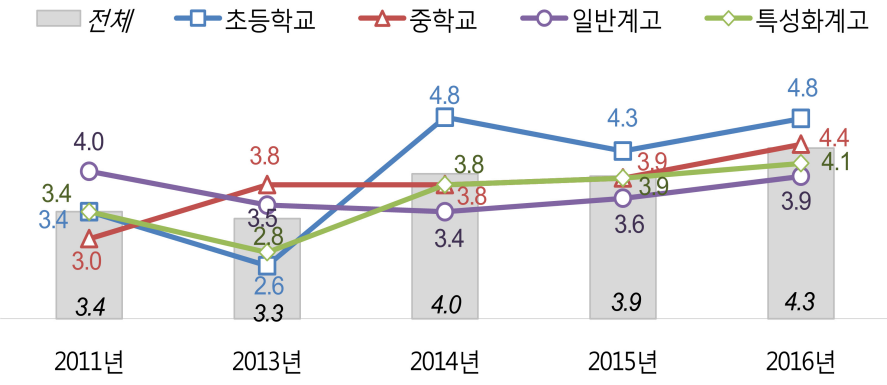

【그림 Ⅲ-7-14】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③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질문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가 34.4%, 부모님 15.6%, 교사 6.2%, 선배 3.2%, 경찰 1.4%, 인터넷 0.9%, 전문상담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제대로 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단위 : %(명))

구분			없다	친구	선배	부모님	형제 자매	교사	전문 상담가	경찰	인터넷	기타	전체(N)	χ^2
전체			34.8	34.4	3.1	15.6	1.9	6.2	0.3	1.4	0.9	1.6	100.0(469)	–
성별	남자		35.8	36.5	4.1	14.3	1.9	3.6	0.0	1.7	0.4	1.6	100.0(234)	–
	여자		33.7	32.2	2.0	16.9	1.9	8.9	0.5	1.1	1.3	1.6	100.0(23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9.4	29.4	1.5	38.6	2.7	5.4	0.0	1.9	0.7	0.6	100.0(148)	–
	중학교		43.2	36.5	3.6	6.4	1.1	6.3	0.0	1.4	0.6	0.9	100.0(160)	
	고등학교	전체	40.5	36.8	3.9	3.7	1.9	7.0	0.8	0.9	1.3	3.2	100.0(162)	
		일반계고	41.9	35.1	4.0	2.8	1.9	6.5	1.0	1.1	1.6	4.1	100.0(129)	
		특성화계고	35.0	43.8	3.8	6.9	1.6	8.9	0.0	0.0	0.0	0.0	100.0(33)	
지역 규모	대도시		37.1	36.5	4.8	12.7	2.4	3.8	0.0	1.5	0.8	0.4	100.0(198)	–
	중소도시		35.4	31.7	1.5	18.3	1.9	8.3	0.0	0.7	1.1	1.0	100.0(214)	
	읍면지역		24.6	36.7	2.7	15.4	0.0	7.0	2.2	3.7	0.0	7.7	100.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6	32.9	2.3	15.5	2.2	6.6	0.3	1.4	0.5	1.7	100.0(401)	–
	한부모가정		28.9	49.5	8.9	2.1	0.0	4.5	0.0	2.1	2.3	1.7	100.0(43)	
	조손가정		17.6	16.0	17.6	48.8	0.0	0.0	0.0	0.0	0.0	0.0	100.0(7)	
	기타		14.2	37.1	0.0	37.8	0.0	5.4	0.0	0.0	5.5	0.0	100.0(18)	
학업 성적	상		43.5	32.5	0.8	16.8	1.0	3.0	0.9	1.0	0.0	0.6	100.0(142)	–
	중		30.6	32.4	4.9	18.9	0.8	6.5	0.0	1.7	1.3	2.7	100.0(192)	
	하		31.8	39.4	2.8	9.7	4.3	8.6	0.0	1.4	1.1	1.1	100.0(135)	
경제적 수준	상		35.3	34.3	3.8	18.7	1.5	2.2	0.6	1.4	0.3	2.0	100.0(220)	–
	중		30.2	35.1	1.4	17.8	3.2	8.5	0.0	2.3	0.6	1.0	100.0(155)	
	하		41.9	34.0	4.0	4.1	0.6	11.2	0.0	0.0	2.6	1.6	100.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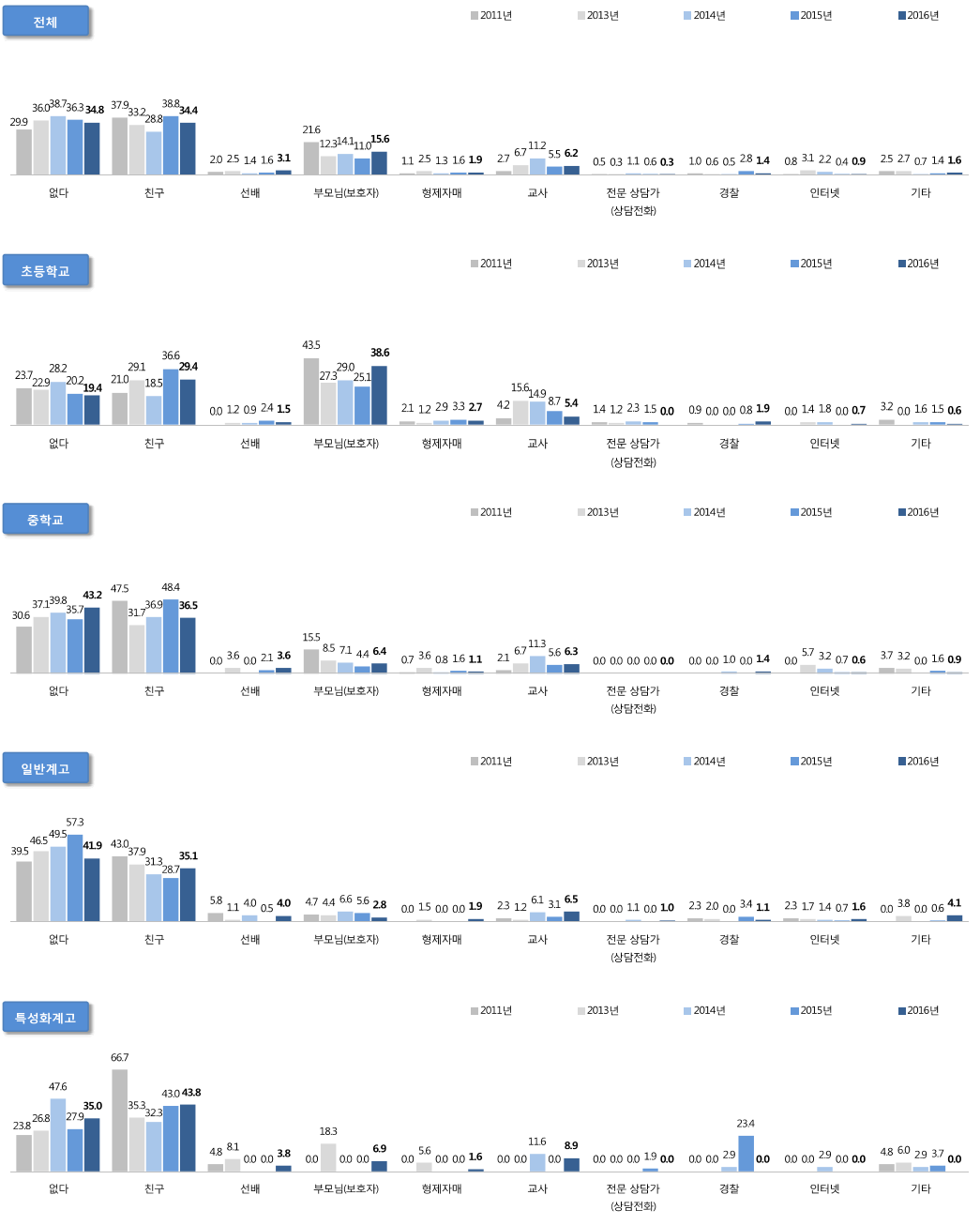

【그림 Ⅲ-7-15】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교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상담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중학교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비율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 기간 동안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경우는 부모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접수현황은 2,587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4,35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과 기소현황도 2014년에는 4,423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76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8	2,587	2,593	951	198	1,095	349
2009	2,699	2,696	920	167	1,197	412
2010	3,722	3,661	1,312	399	1,253	958
2011	3,978	3,922	1,312	399	1,253	958
2012	4,215	4,147	1,482	388	1,220	1,057
2013	4,431	4,443	1,808	153	1,280	1,202
2014	4,352	4,423	1,748	14	1,367	1,294

* 출처: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p.539.
대검찰청(2014). 검찰연감. p.492.
대검찰청(2015a). 검찰연감. p.537.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2013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갖는 심각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	징역 2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출처: 법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 1=&subMenu=4&nwYn=&query=에서 2016년 9월 21일 인출.

(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468). 2015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30개소로 2014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 역시 353명으로 2014년 대비 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79명이며, 이중 상근직 종사자는 150명, 비상근 자원봉사는 2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2014년	29	310	153	193	14
2015년	30	353	179	150	29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여성가족부(2014a).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9.
여성가족부(2015a).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의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총 286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이중 24세 이하는 233명으로 총 81.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미만은 4명(1.4%), 5세-12세 이하는 20명(7.0%), 13세-18세 이하는 132명(46.2%), 19세-24세 이하는 77명(26.9%)이었다.

표 Ⅲ-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09년	전체	312	13	33	125	141
		1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0	3	33	54
		100%	0	3.3	36.7	60.0
2010년	전체	282	10	30	120	122
		1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0	5	29	56
		100%	0	5.6	32.2	62.2
2011년	전체	226	14	15	88	109
		100%	6.2	6.6	38.9	48.2
	장애인	64	–	–	22	42
		100%	–	–	34.4	65.6
2012년	전체	236	10	12	108	106
		1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	1.3	1.3	32.1	65.4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2014년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	–	2.4	39.5	25.1	32.3	0.6
2015년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	1.4	7.0	46.2	26.9	18.5	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	0	2.4	37.6	32.7	27.3	0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②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전체 상담자 1,308명 중 여성이 1,206건으로 92.2%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95건으로 7.3%에 해당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세 이하가 38건(2.85%)이었으며, 8세-13세가 110건(8.5%), 14세-19세가 183건(14%)으로 나타났다.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940건으로 전체 상담인원의 71.9%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중 저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881 (67.4)	165 (12.6)	95 (7.3)	37 (2.8)	28 (2.1)	1,206 (92.2)
남	59 (4.5)	18 (1.4)	15 (1.2)	1 (0.05)	2 (0.15)	95 (7.3)
총계	940 (71.9)	183 (14)	110 (8.5)	38 (2.85)	37 (2.75)	1,308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6.2.2.). 2015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35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5년 10월 현재 287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10	–	28	40	26	33	31	12	32	22	34	29	287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청소년백서. p.284.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5). 내부통계자료.

③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93,012건으로 전년대비 36,05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50,046건(53.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지원이 11,560건(12.4%), 자립지원 9,163(9.9%), 학교문제 지원이 6,444건(6.9%), 수사·법적지원이 2,260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며,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2014년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	45.7	4.3	12.9	6	9	22
2015년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	53.8	2.4	12.4	6.9	9.9	14.6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4.

5) 소결

특별보호조치에서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나누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이 조사되었다. 소년사법아동의 인권실태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이 조사되었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가 조사되었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사되었다. 우선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15,250명이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총 654명(4.3%)이었다. 그리고 2015년 한해동안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5,711명이었으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15명(5.5%)이었다. 특히 시리아 내전 등 분쟁지역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도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105명 중 38.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 난민으로 불인정 되거나 철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2013년에는 63.8%, 2014년에는 50.8%, 2015년에는 70.8%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민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있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탈북 난민 아동의 수도 난민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즉 탈북자 수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경험률은 1.0%로 2015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에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77.9%, 교사로부터 16.0%, 이웃으로부터 22.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2.3%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그 수준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자녀의 수도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18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1.0%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자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1.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중단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문제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도 2008년에 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무려 2.2배 높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 수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살펴보았더니,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인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수용,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다. 우선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우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평균수용기간은 5.17개월에서 7.30개월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대다수가 2014년까지는 1개월 미만인 8호 처분이었으며, 2014년에는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청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평균수용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역시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범죄유형은 절도(28.1%)와 강간(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범죄유형인 절도와 강간은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법률적 부조를 목적으로 실시된 국선변호사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신청, 원스톱센터 신청,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등 모든 기관에서 201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선변호사 제도는 도입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원과 고소·고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처우불복신청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에게 얼마나 신속한 구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2014년에 총 5,526명으로 2013년 대비 2,3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소년범죄자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의 비율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들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징계방침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징계를 교육이나 선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년사법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과 관련해서 전체 기소유예자의 수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실시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재범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수도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 근로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 근로시 청소년의 폭력예방 노력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였다. 우선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4일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임금수준의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으며, 특히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비육과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4년 23.9%로 OECD 평균인 29.8%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과 비교할 때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체 청소년의 13.5%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더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보다는 일반계고가, 그리고 특성화계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5.0%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임금피해 경험률이 2015년 대비 감소한데 비해 중학교의 경우 2015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임금피해 경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거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도 15.6%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무려 69.7%로 나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피해사례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에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부당해고 경험도 6.0%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에서,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회 이상 부당해고 경험의 경우 조손가정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직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경험한 비율도 9.5%로 나타났으며, 폭언과 같은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도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과 같은 인격모독의 경우 중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으며,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중 성적피해경험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피해경험은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20.1%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회 이상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경험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별로는 여성 청소년에게서,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제유형별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근로시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정도와 관련하여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시실태 점검결과와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교육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근로관련법 점검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는 2014년 이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그 이전의 통계결과에 기초하여 유추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014년에 제시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점검과정에서 평균 85.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근로조건 미명시였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연소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고용사업장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율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된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중 19.5%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등 4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 성폭력예방 노력정도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6년 9월 현재 총 1,194명이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의 성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률,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은 2015년에 총 11,708명이었으며, 이는 2015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의 3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3%가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도별 성적피해 경험률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적인 피해경험 상황에서 전문가로부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총 4,35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4,423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수,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인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30개소, 입소정원은 3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로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2007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287명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실적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별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5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지원(12.4%)이나 자립지원(9.9%), 학교문제 지원(6.9%), 수사·법적지원(2.4%)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의료지원이나 자립지원, 학교문제 지원

등은 물론 전년대비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Ⅳ 장

정책제언

1. 논의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 Ⅳ 장
정책제언[28)]

1. 논의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른 결과 산출을 통해 파악한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해당 지표영역별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내년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과제 논의(부록 5. 참조)를 통해 정책과제 도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두 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인권일반'은 인권인프라, 인권에 대한 인지도, 인권교육 등 3개의 지표로, '일반원칙'은 차별경험률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등 2개의 지표로 구성되고 지표의 각 하위에는 2~3개씩의 지표항목이 있어 총 12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의 법·제도 발전사항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2016년도 개정사항을 통해 아동학대, 안전문제, 근로청소년 보호, 사법과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강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 성과를 살펴보았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2012년 3.1%,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9% 등으로 최근 줄어든

28)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유설희 전문연구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김진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집필하였다. 1절과 2절 모두 인권지표체계의 담당 영역별로 집필을 담당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영역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유설희 전문연구원은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을, 이민희 교수는 3영역 폭력 및 학대와 6영역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영역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7영역 특별보호조치 부분을 집필하였다.

것을 볼 수 있다.

인권 인지도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4%, 7.7%, 15.5%로 중요한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인지도는 예년과 같은 수치였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는 가정(94.3%), 지역(90.0%), 학교(88.5%), 사이버공간(79.6%), 우리나라 전체(7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83.8%)와 청소년 자치조직(81.2%) 의의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의견표명권(94.7%), 차별금지(95.9%), 성평등(93.9%)에 대해 90%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인권의식이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70.0%로 2015년 65.3%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경험률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는 72.4%로 전년(70.6%)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일 년에 1회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1.3%), 성차별(21.2%), 연령차별(20.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성차별과 연령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을, 학업성적과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률도 차별한 경험과 같은 순위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25.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신체조건 차별(21.7%), 성차별(21.5%), 연령차별(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률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먼저 참여권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의견표명 및 표현의 자유' 현황을 가정, 학교, 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진로 및 직업결정(91.1%), 상급학교 진학(89.3%), 집안의 중대사(85.8%), 공부시간이나 방법(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영역에서 자녀 존중정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는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 등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학생회 예산·장소·시간 보장(29.5%) 및 학생회 의견존중(34.6%), 자치권 확보(18.2%) 정도 등 학생자치활동이 열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개선을 권고한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의 성적 제한이 아직도 있는(23.8%)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6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수치이다.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는 84.2%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잘 모른다 67.8%)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는 67.9%로 나타났으며 2012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초단위 자치활동인 학급회의를 32.4%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이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32.1%나 되는 점, 동법 제59조의4는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19.7%만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권 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는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절반정도(49.7%)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1%에 불과했다(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11.2%, 알고 있고 참여 경험 있음 2.9%). 인지도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경험(2.9%)은 2013년 2.1%에서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투표연령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만19세 유지 의견이 53.3%로 많았고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의견(24.7%)은 줄어드는 추세이다가 2016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절반 정도(54.2%)가 우리사회에서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참여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응답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37.8%)'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28.8%)'이 가장 많았는데 시간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추세인 반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다. '정보부족(16.5%)'이라는 응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관련 현황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와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살펴보았다. 사회, 정치, 인생 등에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정(87.9%), 학교(78.3%), 사회(63.9%) 순으로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경우는 26.7%로 나타나

73.3%가 대체 활동이 없이 의무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2%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의 활동을 한 경우는 15.4%('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7.3%로 나타났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회 참여로 경고 및 훈계, 상담, 징계처분 등을 받은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사생활의 보호 현황으로 먼저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1회 이상 경험률은 용모검사 51.4%, 복장검사 47.6%, 소지품검사 21.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 학생 공개(11.2%)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징계내용 공개(26.4%)와 개인 시험성적 공개(24.3%) 상황은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매체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10대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며, 6-19세 아동·청소년의 87.9%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률은 99.7%였으며 스마트폰 기능으로는 채팅과 메신저(85.6%), 게임(48.8%), 음성 및 영상통화(41.8%)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12-19세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시간 5분이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연간 독서율은 2015년 기준 94.9%였다.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을 살펴보면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65.5%(중학생 50.3%, 고등학생 77.1%)였으며, 휴대폰(52.6%)과 케이블TV(42.7%)를 통한 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교규칙 공지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83.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자료를 제공받은 경험(21.0%)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6.4%)와 권리 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1%)는 소폭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관련 정보제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54.2%)밖에 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 수준은 열악하다. 아동·청소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문화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고, 성인들은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의 시민적 권리를 찾기 위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폭력 및 학대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는 폭력과 관련된 중분류 지표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학대와 관련된 중분류 지표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중분류 지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는 다시 2개의 소분류 지표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이 선정되었고, 중분류 지표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2개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었다. 폭력과 관련된 소분류 지표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정서적 학대 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의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고, '체벌 경험률' 소분류 지표는 같은 이름과 내용으로 '체벌 경험률'만이 세부지표로 선정되었다. 학대와 관련된 소분류 지표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 유형 및 정도'의 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학대 관련 소분류 지표인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와 같이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위의 지표구성에 따라 조사된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폭력과 학대'관련 결과를 요약해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3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18.7%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래문화 속에서 선배나 친구들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13.4%, 폭행이나 구타가 5.6%, 따돌림 피해경험이 4.7%, 성희롱이나 추행이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도 연도별 추이에서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14%, 성희롱이 2.5%, 사생활 무단 공개 5.0%, 따돌림 1.6%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이에서 이러한 피해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벌 경험률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의 체벌 피해경험이 24.1%, 학교 교사로부터 경험이 16.2%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나 체벌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의 폭력이 학교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고, 전반적으로 체벌도 연도별 추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바람직한 상황이나 폭력은 가정에서부터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먼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9,214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증가율이 73%에 달하고 있다. 신고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하여 70.6%, 신고의무자로부터 29.4%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도 지난 2년간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아동학대에서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5.6%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의 유형에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았다. 학생들에게 직접 부모로부터의 방임 경험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 밤늦게 홀로 집을 본 경험이 65.7%, 아파도 내버려진 경험이 7.4%, 결식에 무관심이 8.7%, 결석에 무관심이 2.2%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11,71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8%가 증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06년부터 10년간 12개가 늘어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1인당 아동학대로 수행한 총 업무량은 년 227일로 실질 연간 근무시간 대비 74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에 있어서는 가정복귀 비율이 2011년 6.8%에서 2015년 10.5%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및 양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 가지 중분류 지표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기 위해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관계의 질을 살펴보면, 만9-24세의 청소년이 주중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여성가족부, 2012; 2014b)에서는 아버지와의 주중에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은 2011년 23.9%에서 2014년 31.8%로, 어머니의 경우에도 2011년 45.2%에서 2014년 53.1%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거나 30분미만으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만9-12세('11년 56.3% → '14년 51.4%)에 비해 만13-24세('11년 79.4% → '14년 63.2%)의 청소년이 부모님과 더 적게 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더불어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1회 이상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나누는 대화주제는 주로 학교생활(50.8%)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책, TV, 영화 등(39.8%), 청소년 자신의 고민(33.8%), 정치와 사회적인 내용(15.2%)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4b),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는 주로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비율은 2011년 42.8%에서 2014 35.2%로 감소하여(여성가족부, 2012; 2014b),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전체 보육시설 설치 수는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04년 26,903개소 → '13년 43,770개소)였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14년 43,742개소 → '15년 42,517개소)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a).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의 경우,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약 4만 3천여 명이 감소한 1,452,813명이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도 2009년 9.1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아동 보육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올해 정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허용됨에 따라 교사는 연령대마다 1-3명의 아이를 더 돌보게 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16), 이는 교사 대비 돌봄 아동 수의 증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돌봄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제 보육 현장에서의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에 학교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는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통계청·여성가족부, 2016.5.2.),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5년에는 4,102개소로 확대되면서 이용 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15년 109,661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는 2005년 46개소에서 2015년에는 24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방과후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가정 및 양육환경이 제공된다. 먼저, 대안양육의 하나인 입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입양현황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6.5.4.), 2011년 2,464명에서 2013년 9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1,17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3년에 시행됨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및 양친부모 자격강화 등의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국내외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출산이 어렵거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입양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2012년 42.5%에서 2014년에 37.2%로 감소하여(통계청, 2012.12.20.; 2014.11.27.),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가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항)"을 말하는데, 요보호아동은 2011년 7,483명에서 2015년 4,50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아동 수도 감소('11년 15,486명 → '15년 13,728명)하였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감소는 바람직하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영지 외, 2015). 또한 가정위탁을 수행하는 보호자 및 위탁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13,210명에서 2013년 11,279명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의 최근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가출경험율이 점차 감소('11년 5.5% → '16년 3.4%)하는 경향을 비교해 볼 때, 전체 가출청소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출의 주된 원인은 부모님과의 문제(60.7%),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함(12.8%), 학업부담(12.4%), 기타(10.6%), 학교문제(2.7%) 순이었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가장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는 중장기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상담 및 자립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2008년 76개소에서 확대 설치되어 2015년에는 119개소(일시쉼터 26개소, 단기쉼터 52개소, 중장기쉼터 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한편, 가출을 해 본적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 10.4% 정도의 학생들만 가출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었으며(청소년 쉼터: 4.8%, 청소년 상담기관: 2.9%, 청소년 전화 1388: 1.9%, 청소년수련관(센터): 0.8%), 이들 중 58.1%가 해당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출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활용한 홍보가 요구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이후 2016년에 진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평가는 대부분 2013년도의 평가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들이 수가 및 추가 또는 삭제된 총 64개 지표로 평가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2015).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3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에 의하면, 평균 점수는 90.0점이었고(최소 43.0점, 최대 98.7점), 90점 이상의 점수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76개소(64.0%), 80점 이상 90점미만의 점수인 B등급을 받은 기관이 82개소로, 전체 275개소 중에 258개소(93.8%)가 B등급 이상을 받아 운영수준이 높이 평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4c). 이러한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통보하여 시설 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되며, 상위 평가를 받은 곳과 종전 평가대비 개선이 큰 시설은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 평가 시설에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 등(보건복지부, 2014c)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양육시설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 관리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양육시설의 예산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전체 보호·양육시설 예산은 2011년 81,759백만 원에서 2016년 129,142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적 보건 및 복지에서는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보면 2015년 현재 88,067명이었으며, 이중 70.4%(61,973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29.6%(26,094명)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와 더불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특수학교는 167개교, 특수학급은 9,868개이며, 이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의 수도 2015년 현재 18,339명이며,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의 진학률과 취업률, 무직률을 살펴본 결과 진학률은 2015년 현재 57.5%이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은 2015년 현재 7.8%이며,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무직률도 2015년 현재 34.7%이며,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청소년들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이후 진학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업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직률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35%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감소폭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망률에서 0세의 기대여명과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사망률 등 3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0세의 기대여명은 2014년 현재 82.40세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영아의 사망률은 2014년 현재 1,000명당 3.0명이었다. OECD의 34개국 평균치인 4.1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낮으므로, 우리나라의 영아에 대한 보건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0~24세)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사고사망률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망사고율의 감소폭이 매우 작고, 특히 20-29세가 27.1명, 0세가 12.4명, 10-19세가 11.3명으로 나타나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

가 주요 사망원인이었으며, 특히 10세 이상 29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이었다. 따라서 자살과 운수사고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률은 범죄 피해율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 등 2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2014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90,5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0.4%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안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66.5%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주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6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의 80.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15년 현재 전체 학교 수 중 63.9%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수학교 86.8%, 초등학교 69.1%, 고등학교 66.7%, 중학교 50.7%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1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우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6세-18세의 비만율은 11.5%이며,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12-18세의 비만율은 15.5%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들 질병에 대한 보건서비스 측면에서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율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7.8%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7.8%, 16.7%로,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예방교육 과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83.5%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자신이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은 30.6%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과 관련하여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5%였으며, 등교전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8%,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22.2%, '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19.6%이었다.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5분이었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적으며, 특히 일반계고가 평균 5시간 58분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면시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2014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54.1%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수면부족의 이유로는 '채팅/문자메시지'가 51.9%,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50.8%), '가정학습'(50.7%), '학원과외'(49.5%), '게임'(36.0%)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경도 비만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만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중등도와 고도비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비만율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0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95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인지율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이 30.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모든 학년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도 5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3.7%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행복도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28.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친구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34.6%)였다.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에서는 아동·청소년빈곤율,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등 2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도와 2011년도의 OECD 데이터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아동·청소년과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 현황과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을 본 결과, 2015년 현재 0세에서 2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는 524,209명이며,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19세의 비율이 4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현재 9.5%이며, 2008년 이후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사업은 최근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었다.

6) 교육·여가 및 문화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는 다시 '교육기회 보장 정도',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의 3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 에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목표 달성률'의 2개 지표들이 소분류 지표로 선정되었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에는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의 3개 소분류 지표들이 속하고 있다. 소분류 지표인 '교육기회 보장 정도'는 '학생 취학률', '학생 진학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4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학교 부적응률' 소분류 지표에는 '학업 중단율', '학업포기 결심 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3개 지표가 선정되었고,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대안교육 참여율'에는 '대안학교 수와 종류', '대안학교 학생 비율'의 2개 세부지표가 있다.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의 동일한 내용의 1개 세부지표가 선정되었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소분류 지표에는 '혁신학교 운영 수'와 '혁신학교 운영 현황'의 2개 혁신학교 관련 세부지표들이 선정되었다.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소분류 지표인 ' 여가, 문화, 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는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수'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소분류 지표 '여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에는 '여가, 문화예술 활도 참여도',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율', '동아리활동 참가율',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5개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다. 또 다른 소분류 지표인 '여가,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는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 학교지지 정도'의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아래에서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 지표에 속하는 세부지표들의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세부지표 학생취학률, 학생진학률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좋은 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는 세계 30위 정도의 수준에 있으며, 교육과정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0년 14.8명에서 2016년에는 14.6명으로 22%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10년 26.6명에서 2016년에는 22.4%로 1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률에서 먼저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76,589명에서 2015년 47,070명으로 줄어들어 명목상으로는 지난 5년 간 38.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누적적으로 현재 30만 명이 넘어서서 사회적 재앙으로도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크게 감소된 것은 학업중단숙려제와 지속적인 학교컨설팅 등의 정부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결심여부와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학업중단의 충동은 25.1%로 4명 중 1명이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이류로는'공부하기가 싫어서' 24.4%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6.6%로 이 둘을 합하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이유가 41%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91.6%로 높은 편이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가에 대한 응답은 20.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5명 중 1명의 학생은 교사를 공정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7%이고, 이러한 긍정적 응답의 추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안학교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교육의 목표에 근접하려는 시도로 보아 세부지표로 채택이 되었으나 그다지 활발한 증가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유지원의 일환으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각종학교로서 공립과 사립 대안학교가 25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25개가 설치되어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2014년 기준으로 약 23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현재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대략 17, 596명 정도이며 이는 전체의 0.3%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8.4%에 해당되었고,'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에는 23.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에도 16.7%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도하면서 공교육 제도 안에서 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려는 혁신학교의 수는 2016년 현재 전국에 1,003개로 전년 대비 2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로서 운영의 의미를 가지며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교육목표에 가장 근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가 요청된다.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강원, 경북 순으로 시설이 많았다.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은 전국에 2015년 기준 총 787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154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의 이용도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56.7%나 되었다.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에 있어서는 휴식활동이 39.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관광활동 38.5%, 스포츠관련활동 26.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에 있어서는 전체의 83.6%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리활동은 73.6%가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무적이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을 조사했을 때에 평일 여가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54.3%나 되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마친 후 평일 공부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1,103명 중 49.4%로 2명 중 1명은 평일 방과 후에

공부시간이 너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한 학생이 전체의 9.6%였고,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는 전체의 30.3%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로부터의 지지는 22%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과 학교의 지지에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서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우선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15,250명이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총 654명(4.3%)이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5,711명이었으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15명(5.5%)이었다. 특히 시리아 내전 등 분쟁지역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도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105명 중 38.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 난민으로 불인정 되거나 철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2013년에는 63.8%, 2014년에는 50.8%, 2015년에는 70.8%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민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있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 수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경험률은 1.0%로 2015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2015년에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77.9%, 교사로부터 16.0%, 이웃으로부터 22.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2.3%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그 수준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자녀의 수도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18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1.0%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자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1.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중단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문제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도 2008년에 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무려 2.2배 높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 수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살펴보니,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인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에서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수용기간은 5.17개월에서 7.30개월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대다수가 2014년까지는 1개월 미만인 8호 처분이었으며, 2014년에는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청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평균수용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역시 2012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주요 범죄유형은 절도(28.1%)와 강간(25.4%)이었다. 특히 주요 범죄유형인 절도와 강간은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법률적 부조를 목적으로 실시된 국선변호사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신청, 원스톱센터 신청,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등 모든 기관에서 201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선변호사 제도는 도입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청원과 고소·고발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우불복신청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에게 얼마나 신속한 구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도 2014년에 총 5,526명으로 2013년 대비 2,338명 감소하였다. 전체 소년범죄자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의 비율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징계방침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징계를 교육이나 선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년사법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과 관련해서 전체 기소유예자의 소는 2010년 이후 감소하였지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실시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범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수도 2012년 이후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4일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5시간이었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금수준의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으며, 특히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4년 23.9%로 OECD 평균인 29.8%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2009년과 비교할 때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체 청소년의 13.5%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더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보다는 일반계고가, 그리고 특성화계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5.0%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 임금피해 경험률이 2015년 대비 감소한데 비해 중학교의 경우 2015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임금피해 경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거나 야속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도 15.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무려 69.7%로 나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피해사례가 매우 심각하였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지만,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에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부당해고 경험도 6.0%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직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경험한 비율도 9.5%로, 폭언과 같은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도 10.6%였다. 특히 폭언과 같은 인격모독의 경우 중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으며,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가족유형별로는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중 성적피해경험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피해경험은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20.1%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회 이상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경험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별로는 여성 청소년에게서,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제유형별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근로시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정도와 관련하여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시실태 점검결과와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교육률을 조사하였는데, 2014년에 제시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점검과정에서 평균 85.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근로조건 미명시였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연소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고용사업장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율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된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중 19.5%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등 4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6년 9월 현재 총 1,194명이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도 매년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의 성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역시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5년에 총 11,708명이었으며, 이는 2015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의 3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매우 시급하다.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3%가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도별 성적피해 경험률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가 34.4%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적인 피해경험 상황에서 전문가로부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총 4,35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4,423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수,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인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30개소, 입소정원은 353명이었다. 이들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81.5%였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로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2007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287명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실적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별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5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지원(12.4%)이나 자립지원(9.9%), 학교문제 지원(6.9%), 수사·법적지원(2.4%)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외 의료지원이나 자립지원, 학교문제 지원 등은 물론 전년대비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2016년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6개년 연구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2017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로서, 그 동안의 정책제안과 함께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권고한 정책과제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가 협약 이행 과제 추진을 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 2회, 현장 전문가 워크숍 1회, 청소년 워크숍 1회, 청소년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회의를 실시하였다. 2016년도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유사한 형태의 정책과제 제안을 시작한 2013년부터 구축된 정책과제 풀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과제이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 정책화되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과제, 협약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제안의견과 협약 이행 권고사항 이행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Ⅳ-2-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Ⅰ.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파악 및 운영방안 모색	법제도 개선	시행	활성화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여론조성 및 의제화 및 시범사업	시범사업 법 제·개정	시행	시행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아동·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관련법 시행 및 홍보	시행	시행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과제2. 신혼부부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매뉴얼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계속	계속	보건복지부 법무부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 기능 및 홍보 강화	쉼터 안내 및 홍보 강화	시설환경 개선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계속	여성가족부
과제2.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예산 확대	관련 연구용역 발주	예산안 개정 및 공청회 개최	시행	시행	보건복지부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관련법 제·개정 및 사회적 기반 조성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시범 운영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확대운영 및 사회적 정착	시행	교육부
과제2.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정책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문	생활밀착형 청소년	시행	보건복지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제 조기발견, 진단체계 구축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혁신학교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1차) 및 공청회 실시	관련법 개정(2차) 및 공청회 실시	시행	시행	교육부
과제2.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조례 제정의 전국 확대	관련 조례 제정	조례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시행	시행	교육부 시·도 교육청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준비과정 확대 운영	관련 연구 용역 발주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시행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과제2.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문제점 분석 및 법·제도 개선	앱(App) 개발·운영	관련 법령위반 시 처벌 마련 및 홍보 강화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제 Ⅰ-1 정부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5년마다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29] 현재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2017년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담고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울 경우 장애요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도 제시해야 한다(UNCRC, 2015).

29) 아동권리협약 제44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UN, 1989).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협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어 정부 내 협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종료되면서 해당 운영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당사자 모니터링(인권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정부 내 모니터링 기구 운영이 종료되면서 담당자 1인이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협약 모니터링 업무를 맡게 되어 실질적으로 협약 관련 상시 점검과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며 보직 순환에 따라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제조약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국이나 전문위원과 같은 인적 자원이 없으므로 1회성 회의 안건 심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는 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과 협약 이행 점검방법과 이행 전략 또한 부재하다는 점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은 그 시점부터 권고사항의 국내적 의미와 이행 전략을 논의하여 5개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4차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 정도 관련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기회는 있었으나, 초기에 일정한 추진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 이행여부와 실적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②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 내 인권모니터링 자원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내 모니터링 기구는 현장의 인권침해사례 조사와 상담 보다는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이슈와 동향, 관련 법·제도·정책 관련 동향, 국제적 이슈 등에 민감성을 가지고 정책적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권리협약이 포괄하는 방대한 이슈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의제를 개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에 대한 이슈를 선도해 나가며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또는 단기적 방안으로 아동복지법상[30] 전문위원 인력 배치방안을 실현시켜야 한다(김영지 외, 2015: 21-22).

부처 내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과 국가보고서 작업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외부 전문 기관에 세부작업에 대한 위탁을 주더라도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며 협약 업무 전담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5년 주기로 운영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권고사항을 받은 해에 5년 간의 중장기 협약이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권고사항과 관련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매년의 추진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 심의와 매년 이행성과 분석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담당 부처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체계 현황 및 모니터링 운영 방안 연구

정부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현황,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현황, 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권모니터링, 민간부문의 인권모니터링,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과 인권선진국의 모니터링 운영 현황 등 국내·외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도록 한다.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 2단계(2018년) : 정부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제도화 노력

기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독립적 권한과 자원을 갖는 인권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인권팀과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니 정부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위원회 기능 중 협약 권고사항별 담당부처 추진전략 수립 및 성과 평가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제4호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등의 법조항 검토를 통해 협약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	• 기초연구 40,000,000원	40
2단계 (2018년)	관련법 개정 및 반영	• 전국 홍보비 60,000,000원	60
		총계	100

과제 II-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과 국가별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받고 있다. 출생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동 유기나 학대, 불법 입양 및 매매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서는 국적과 신분과 관련된 지표항목으로 '출생신고율'을 '영아 유기율'로 산출해 보고자 했으나 현행 출생신고제로는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출생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145-146).

2) 주요 내용

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제형성

2016년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아동·인권단체 13개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출범[31]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토론회(2016. 10. 25) 등으로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늘어나고 있다. 아동 학대와 불법 입양 등의 우려가 있는 현 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도록 한다.

②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상 개정사항, 의료기관의 통보의무에 대한 논의, 출생통보제도와 출생자동등록제의 장단점 검토, 전산망 구축 관련 사항, 미혼모 인권과의 조화 문제 등 이슈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소라미, 2016; 현소혜, 2016; 송효진·박복순·안경희, 2016).

31) 연합뉴스, 13개 아동인권단체 '출생신고 제도 개선'캠페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6/0200000000AKR20160616080900371.HTML?input=1195m 에서 2016년 6월 19일 인출.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2018년) :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이 출생등록제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함으로써 출생통보제도는 도입되는 방향으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송효진, 2016: 127).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생활 보호 강화의 실효성 검토, 미혼모 인권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고, 법률 정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촘촘하게 찾아내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 제 2단계(2018년)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 인권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미비점 등을 찾아내어 아동의 생명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19대 국회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발의안 (2015. 8. 13) 등),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이 추진하는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안)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시범적용 결과,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출생등록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 도입 시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한 법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주체들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2018년)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300,000,000원	300
2단계 (2018년)	관련법 제·개정	• 연구조사 및 공청회 60,000,000원	60
		총계	360

과제 Ⅲ-1 아동·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폭력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폭력은 일상화가 되어버렸다. 성인 간의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해결할 문제이지만 성인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미성숙한 아동 간, 청소년 간의 폭력은 성인들이 개입하여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문제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현황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었고, 국민들의 이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은 많이 의식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관련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폭력과 학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은 감소되지 않았다.

2016년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정서적 학대는 3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는 응답 학생의 18.7%이었다. 2011년~2016년 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인 체벌 경험률은 2011년 39.3%였다가 2016년에는 24.1%로 낮아졌지만 2014년 이후로는 감소의 추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라 2011년 피해 경험률이 38.4%였던 것이 2016년에는 16.2%로 대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은 추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간 폭행이나 구타에 대한 피해경험률도 2013년 이후 미세하게 폭력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폭행이나 구타의 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3년 간 약 73%의 아동학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체학대는 약 111.8%가 증가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과 학대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대상 폭력 및 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가정·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결국 관계자들의 인식과 의식의 문제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관련기관의 평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평가지표가 관련기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매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신설 후 지속적 홍보

폭력 및 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 관련법들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도록 한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들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들을 재검토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관련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와 최종 확정 공시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와 관련된 해당부처들의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한 후 확정하여 공시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 관련법 시행 및 지속적 홍보

해당 관계부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이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를 공시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법률 개정 내용을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전국의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항에는 "교육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평가와 최종적으로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서는 "(...)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뀌어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 평가가 법적 의무인지, 아닌지 유야무야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④항을 신설하여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한다. 법 제9조 ④항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2조(성과 후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매 2년 정기적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징벌조항을 포함한 의무조항으로 완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조항 중의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의 조항과 내용은 삭제하도록 한다.

아동복지법에는 이미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서 세부조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16년 9월 일부 개정해서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에 따라 잘 시행하고 있으나 필요한 보완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관련법 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2단계 (2018년)	관련법 시행 및 지속적 홍보	• 전국 홍보비 80,000,000원	80
		총계	100

과제 Ⅲ-2 신혼부부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날로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전체 아동학대 사례 수가 10,231건 이었는데, 2015년에는 대략 73%가 증가해 17,662건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일은 학대행위자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2015년도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11,715건 중에서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79.8%에 해당되어 학대행위자 5명 중 4명 정도가 부모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부모의 경우 친부가 45.8%였고, 친모는 29.7%, 계모와 계부는 각 2.0%로 나타났다. 즉, 학대행위자의 75.5%가 친부모로 학대행위자 4명 중3명이 친부모라는 사실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113). 쉽게 이해하자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에 친부모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은 결혼관이나 자녀관, 그리고 무엇이 폭력이고 학대인지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무지한 부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조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교육을 통해 주입시키고 이해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 아동학대의 사례 등에 관한 내용과 지식을 신혼부부가 자녀를 기르기 전에 교육을 받아 공유하고 있다면 아동학대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에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현행 대한민국 법령 중에는 일찍이 1968년에 제정된 「혼인신고특례법」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화에 관한 목적의 내용을 더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를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시에만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혼인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② 신혼부부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내용 브로슈어 제작과 보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예방교육의 절차와 교육내용에 관한 매뉴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매뉴얼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법이 정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아동학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법무부와 함께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하여 「혼인신고특례법」 개정을 협의한 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법 개정 조항들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공표한다.

② 제 2단계(2017년~2018년) : 아동학대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내용 브로슈어 제작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다는 전제아래에서 혼인신고 전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줄 예방교육 주요 내용을 요약한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이를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관련 모든 준비를 갖춘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행 「혼인신고특례법」에 혼인신고 전에 예비 신혼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교육 시간을 이수하게 하는 법 개정을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관련법 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2단계 (2017~2018년)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과 보급	• 교육 매뉴얼 및 브로슈어 개발 및 보급 150,000,000원	150
		총 계	170

과제 Ⅳ-1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쉼터 기능 및 홍보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정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의해 청소년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쉼터는 26개소, 단기쉼터는 52개소, 중장기쉼터는 41개소로, 2014년 대비 10개소 증가한 119개소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청소년쉼터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상담, 자립 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c). 그러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 가출을 해 본적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 10.4% 정도의 학생들만 가출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쉼터는 4.8%만이 이용하여 청소년쉼터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가출 후 청소년쉼터나 상담기관, 청소년수련관(센터), 청소년전화 1388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58.1%가 해당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쉼터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출청소년은 사회적인 안전망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나, 그들이 보호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출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이용 만족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쉼터의 물리적인 시설 환경 개선(예: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정집과 같은 안락한

환경 조성)이나 쉼터 이용 규칙을 청소년과 함께 조율하면서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교육, 자립(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가출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이 안전한 보호체계로서 작용하는 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강화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쉼터 이용율은 4.8%에 불과하다('11년 1.7% → '13년 1.2% → '14년 2.3% → '15년 2.4% → '16년 4.8%).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쉼터의 현황과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SNS를 활용하여 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이 유사시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청소년쉼터의 시설 환경 개선

청소년쉼터에 대한 가출청소년의 접근성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의 물리적인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시쉼터의 경우, 이동이 용이한 버스나 샤워가 가능한 캠핑카 형태로 제작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거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쉼터 이용 규칙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율되어야 한다.

③ 가출청소년 욕구에 따른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출의 주된 원인은 부모님과의 문제(60.7%)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가출의 주된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11년 64.5% → '13년 65.7% → '14년 57.4% → '15년 63.5% → '16년 60.7%)이 꼽히고 있으므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학습지원, 진로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더욱 특화시켜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계속) : 청소년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강화

청소년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안내를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② 제 2단계(2017~2018년) : 청소년쉼터의 시설 환경 개선

쉼터의 특성에 따라 쉼터의 시설 환경을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보수해야 한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가출청소년 욕구에 따른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학습지원과 진로상담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쉼터의 특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더욱 특화시켜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7년~계속)	제 2단계(2017~2019년)	제 3단계(2018년~계속)
주요내용	청소년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강화	청소년쉼터의 시설 환경 개선	가출청소년 욕구에 따른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계속)에서는 청소년쉼터 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와 시스템 구축비, 관리비로 25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년~2018년)에서는 쉼터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1,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3단계(2018년 이후)에는 청소년쉼터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기 위해 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계속)	청소년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실시	• 전국 쉼터 어플리케이션(App)개발비 50,000,000원 × 1종 • 시스템 구축비 100,000,000원 × 1건 • 관리비 100,000,000원	250
2단계 (2017년~ 2018년)	시설 환경 개선	• 시설 개·보수 10,000,000 × 100개소	1,000
3단계 (2018년~계속)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 자립서비스 기획 및 제공 500,000,000원	500
		총 계	1,750

과제 Ⅳ-2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예산 확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와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이 보호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고자 가정(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 또는 일반 가정 위탁) 대리양육,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되거나 이러한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동법 제15조제4항에 의해 보호에 적합한 시설보호로 이어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1996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6e).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서, 그룹홈은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함으로써 시설아동의 낙인화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 2016.10.20. 인출.).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54개소에서 2015년 현재 48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총 2,63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6.10.20. 인출).

그러나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에서 2014년 복권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2016년 기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예산 중 운영비는 1개소 당 월 240천원, 인건비는 1인당 연 21,919천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더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아동 돌봄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아동양육시설의 예산과 공동생활가정의 예산을 비교하고, 전국의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 현황 및 실질적인 운영비를 조사함으로써,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예산은 복권기금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예산과 공동생활가정의 예산을 비교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2018년) :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8~2019년) : 개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마련

1단계에서 조사된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예산안을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7년~2018년)	제 2단계(2018~2019년)
주요내용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개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마련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2018년)에서는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 현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8년~2019년)에서는 개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2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2018년)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수조사 실시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8년~ 2019년)	개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개선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총 계	120

과제 V-1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고, 이들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복귀 서비스, 취업준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도록 명시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623).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9-48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분명하게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b: 121).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88,067명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2015년의 경우 61,973명(70.4%)이며, 이 중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15,622명으로 불과 17.7%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82.2%에 달하는 대다수의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내의 특수학급(46,351명, 전체 대비 52.6%)이나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26,094명, 전체 대비 29.6%)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발간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바 있다(김영지·김희진 외, 2015: 517-520). 이 제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보고서에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영역"의 정책과제로 다시 제안하게 되었다.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주요 내용

①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련 사회적 기반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는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합교육을 실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교육지원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교육 지원교사 제도가 제대로 우리사회에 뿌리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교육 지원교사제도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담 교육지원교사 양성제도의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시범적 운영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를 시범운영 없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운영방식을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합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시범적으로 양성하여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의 장점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제도적 완벽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확대 운영 및 사회적 정착

시범적으로 운영 과정을 통해 제도적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를 모든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특수 교사 한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전담교육지원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2020년) :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사회적 기반 조성

특수교사 양성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법령들을 제·개정하고, 전담교육지원교사 양성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후 단계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범운영을 준비한다.

② 제 2단계(2021년~2023년) :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시범적 운영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에서의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각의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기초 자료를 축적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24년~계속) :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확대 운영 및 사회적 정착

제1단계인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및 사회적 기반 조성과 제2단계의 시범사업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보완된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를 모든 일반학교에 확대 적용시키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범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확대 운영단계에서도 제도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궁극적으로는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교육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7~2020년)	제 2단계(2021~2023년)	제 3단계(2024~계속)
주요내용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사회적 기반 조성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시범적 운영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확대운영 및 사회적 정착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 ~ 2020년)에서는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비로 1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2단계의 시범적 운영에 투입될 전담교육지원교사 100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1,00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단계(2021~2023년)에는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40개 학교(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10개 학교, 특성화계 고등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1명의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시범배치 하는데, 학교별로 100백만 원씩을 지원한다. 3단계(2024년~)에서는 추후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후에 예산을 반영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2020년)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사회적 기반 조성	• 기초연구 100,000,000원 • 전담교육지원교사 양성 1,000,000,000원	1,100
2단계 (2021~2023년)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시범적 운영	• 시범학교 운영비 100,000,000×40학교	4,000
3단계 (2024년~)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확대 운영 및 제도 정착	• 향후 예산 반영	–
		총계	5,100

과제 V-2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정책 개발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조치를 적절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자살관련 사회적·가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81).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 경험률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15세-18세 여성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9.3%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b: 127-128). 본 연구에서도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이유없이 슬퍼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2.7%,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0%,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정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들의 사고 사망률을 보면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운수사고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우울증,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사회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관련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조사에 기반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합관리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포착해 내고, 문제와 관련된 원인과 관련 요인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으로 발전시킨다.

②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 조기진단을 위한 협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③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입전략은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착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청소년들의 일생생활과 밀착되도록 변경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살징후가 포착될 경우 구체적인 개입전략이 지체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살개입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2018년) :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 조사 실시 및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단위의 중장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다.

② 제 2단계(2018년–2019년)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생상활 현장에서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하며, 협력망이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망 구축과 운영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청소년의 정신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체계를 구체화시킬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제 3단계(2019년~계속) :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청소년의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개입전략이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착될 수 있도록 변경시킨다. 특히 자살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자살예방프로그램 및 개입전략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7년–2018년)	제 2단계(2018년–2019년)	제 3단계(2019년~)
주요내용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조사 실시 및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2018년)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 조사 실시 및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4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8년~2019년)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500백만 원이, 그리고 3단계(2019년~계속)에서는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00백만 원이 소요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2018년)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조사 실시 및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실태조사 실시 300,000,000원 •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100,000,000원	400
2단계 (2018년-2019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500,000,000원	500
3단계 (2019년-계속)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500,000,000원 • 생활밀착형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전략 구축 및 운영 500,000,000원	1,000
		총계	1,900

과제 Ⅵ-1 혁신학교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혁신학교'는 기존의 공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적 시도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공교육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교육적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때 혁신학교 이전의 대안학교 시도가 시작된 연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육을 거부하고 공교육이라는 제도의 밖으로 나가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도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교육적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학교는 현행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 맞서 대안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학교는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육적 시도를 공교육 안에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시도하는 형태의

학교이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 권고하는 교육의 목표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교육의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가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현재 혁신학교는 2016년 전국의 13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에서 1,003개가 자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2015년의 801개에 비해 20.1%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에 관한 성과분석 보고서들에서 나타난 수업, 평가, 수업 외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행복도, 미래 핵심역량 , 사교육비, 기초학력미달 등 각종 지표들의 전 영역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된 것도 혁신학교가 아동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백병부 외, 2013, 2014: 69~95; 박성자·조무현, 2014)

현행 기존 교육과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제대로 교육과정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일반화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1951년 「연구학교 규정」(문교부령 제17호)이 제정되어 마지막으로 2013년 에 개정된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는 그 동안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현행 운영되는 기존의 학교들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현행 공교육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차 연구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교육재정을 과감하게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공교육의 교육과정으로 확산시켜 일반화하는데 투입하여 새롭게 교육적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혁신학교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

현행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혁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다시 일반학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② 혁신학교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현재 기존 학교들은 혁신학교 이외에 일찍이 1951년에 제정된 1951년「연구학교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개정된 현행「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3년 한도의 연구학교 운영보다는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 개선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연구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거나 연구학교 지정을 줄여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상반기) : 혁신학교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

현행「초·중등교육법」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항에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시적"이라는 용어로 인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④항에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인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초·중등교육법」제61조 ① 항에서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빼도록 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④항을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에 있어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하반기) : 혁신학교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초·중등교육법」제61조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서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과 확산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그간 연구학교를 지원했던 예산을 연구학교 지정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혁신학교(자율학교)에 투입하도록 전환함으로서 안정적으로 혁신학교의 확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⑤항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의 문구 뒤에「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제7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제9조(우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자율학교(혁신학교)에도 동등하게 적용시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를 개정하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2단계 (2017년 하반기)	관련법 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총 계	40

과제 Ⅵ-2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조례 제정의 전국 확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부의 학교라는 제도교육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주로 사회화에 필요한 지식 위주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을 통해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같은 대상을 두고 교육부의 학교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 형성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주로 청소년들의 지식 및 지성을 습득하게 한다. 반면에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인성을 함양하고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조화된 전인적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육성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인권의 4대 영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활동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 활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2015년 기준 전국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등 787개의 청소년수련활동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이 5,418개에 달하며,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1993년 이래로 38,021명이 배출되었다(여성가족부, 2015c). 이렇게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에 관한 인프라를 오랫동안 조성하여 지금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정책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 시험에 묶여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을 정도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2016년에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응답학생들의 56.7%는 1년 중 한 번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청소년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11,111명 중에서 54.3%가 즉,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이 평일에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인프라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교육 제도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의 인프라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7월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7월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듯이 나머지 전국의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유학기제

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제정이 되면 이에 관한 법적 내용과 각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시설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단체들에게 보급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광역 자치단체에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정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7월 선도적으로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조례를 제정할 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광역 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담당 공무원, 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담당 전문가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들이 지역사회 연계·협력 차원에서 함께 모여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조례를 확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시·도교육청의 주도로 광역 자치단체에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내용과 지역사회에의 적용에 대하여 홍보 소책자를 제작하여 일선 학교와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기관, 단체에 보급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사와 수요자인 학생, 지역사회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활동 시설. 기관, 단체 청소년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 할 수 있게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이미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교육부가 독려한다. 근거조항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①항 4호와 6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학생(중학생만 해당한다)의 자유학기 활동상황"이 해당된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조례의 조항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준거하여 타 광역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조례 제정 단계에서는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조례 제정 후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칭펀드 형태로 각 30%, 7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조례 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16개 광역 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16 x 20,000,000원 = 320,000,000원	320
2단계 (2018년)	조례 홍보 소책자 제작 및 보급	• 조례 홍보 소책자 제작 및 보급 비용 16 x 80,000,000원 = 1,280,000,000원	1,280
		총 계	1,600

과제 Ⅷ-1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준비과정 확대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69).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강화를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여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면서 무지개센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다(김경준 외, 2014b: 162-164).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가능성은 일반학생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015년의 경우 7.3%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보다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확대

난민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급 대안학교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일반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혹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병행되고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운영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제도권 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학교는 난민 및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겪게 되는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고충과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고립감

등 학교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설치는 폐교를 활용하여 학교설립을 인가하는 방식과 현재 각 지자체의 시립 혹은 도립으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직업훈련학교 중 운영이 저조한 곳을 다문화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② 이주배경 아동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난민 혹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지역의 예비학교 혹은 초기 준비교실에서 예비교육을 받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지도, 간단한 인사말 및 예절교육 등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전지도를 하는 학교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몇 개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레인보우스쿨 혹은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초기 준비교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입학초기 6개월 동안 멘토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예비학교나 초기 준비교실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1:1 멘토링 혹은 멘토 1인에 멘티학생 2~3인을 연결하여 개별 적응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체험입학 형식으로 입학하여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 습득을 비롯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적응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원적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중간과정으로도 활용한다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 발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범국민적인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비학교와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새롭개 마련된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 예비학교와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기초하여 예비학교와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7년)	제 2단계 (2018년)	제 3단계 (2019년~)
주요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 발주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8년)에는 구체적인 플랜을 설계하고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는 단계로 6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19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와 대안학교를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단계로 매년 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 발주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8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비용 60,000,000원	60
3단계 (2019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 이주배경 공교육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500,000,000원	500
		총계	660

과제 Ⅷ-2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을 엄격히 시행할 것, 그리고 변칙적인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조항을 제공하고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고,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84-485).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청소년 집중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된 통계를 공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2016.7.25.). 즉 프랜차이즈 본사에 위반횟수 및 위반사항 통보도 폐기한 상태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500~6,700개소에 이르던 점검 대상이 2015년에 단 438개업체로 급감하였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주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결과 여전히 청소년고용사업장 위반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근로계층인 청소년들을 집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집중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감시할 프로그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청소년의 근로관련 법령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현행 제도와 관련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소홀해지고 있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이버 수사대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 집중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법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②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방지를 위한 앱(App) 개발·운영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동통신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폰 앱에서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신고되고, 해당 신고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③ 청소년 근로관련 법령위반시 처벌 강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법위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사회적인 논의 및 관련조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간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7년) :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실태조사의 문제점 분석 및 법·제도 개선

청소년 근로관련 법령위반 실태조사의 문제점과 현재의 관련 법 및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방지를 위한 앱(App) 개발·운영

스마트폰 상에서 청소년 근로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곧바로 신고가 가능한 앱(App)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시 처벌 강화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이 한국사회안에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그 피해사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7년)	제 2단계 (2018년)	제 3단계 (2019년~계속)
주요내용	실태조사의 문제점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방지 및 신고를 위한 앱(App) 개발 및 운영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4) 관련법 개정사항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7년)에는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사례 실태조사의 문제점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 2단계(2018년)에는 앱(App) 및 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구축비, 관리비로 총 25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3단계(2019년 이후)에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의 심각성과 법령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7년)	실태 조사의 문제점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 1건	100
2단계 (2018년)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방지 및 신고를 위한 앱(App) 개발·운영	• 어플(App)개발비 50,000,000원 × 1종 • 시스템 구축비 100,000,000원 × 1건 • 관리비 100,000,000원	250
3단계 (2019년~)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처벌강화 마련 및 홍보	•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처벌강화 관련 홍보비 200,000,000원	200
		총계	550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강성권, 김형균, 임호 (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경기도교육청 (2016).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하는 학생인권상담 이렇게.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경찰청 (2015). 2014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경찰청 웹사이트 http://www.police.go. kr/portal /main/contents.do?menuNo=200141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경향신문 (2015.9.27.). 가출 여자청소년은 왜 집을 나섰나… 그리고 거리에서 맞닥뜨린 절망. 경향신문 웹사이트 http://h2.khan.co.kr/201509271205521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고용노동부 (2009). **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2)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a).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16 4. 21.).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 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서울: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2016a).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6b). **아동학대 방지대책(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3.10.2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 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교육부 (2014a). 교육부 보도자료(11.10).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4b).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8). 교육부 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6년 9월 인출.

교육부 (2015a). 2015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5년 3월 기준).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b).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c).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64/ko/board/view.do?bbsId=317&boardSeq=61909&mode=view에서 2016년 7월 15일 인출.

교육부 (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722&mode=view에서 6월 23일 인출.

교육부 (2016.8). 교육부 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6년 9월 인출.

교육부 (2016a).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2315&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교육부 (2016b). 2015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view.do?bbsId=348&encodeYn=&pageSize=10&currentPage=0&boardSeq=63156&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교육부 (2016c).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6d).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6.1.).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6e). 교육부 보도자료(06. 22).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49.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2015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itemCode=02&menuId=0&language=en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방과후학교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웹사이트 https://www.afterschool.go.kr/info/i nfomat ion.do에서 2016년 10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c). OECD **교육지표** 2015.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d). 2015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교육기본통계**(8월 30일 기준).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5.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보도자료. 인권위, 아동인권 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lag=VIEW&SEQ_ID=611740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 www.nabo.go.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 ageNum=1&seq=75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 ageNum=1&seq=2150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a).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b).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 (2014b).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연구보고 14-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숙, 김정주, 황진구, 하태정 (201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책보고서 2014-48). 서울: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호진, 오미애, 정은희 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정 (2013). **경기도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현황 및 정책적 활용방안**(정책보고서 2013-04).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서울: 맘에드림.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김영옥, 김종숙, 배호중 (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경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 (2015). **청소년방과후아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만족도 조사연구**(KYWA-2015-073).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재철, 김기곤, 민현정 (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안)**.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 14-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욱 (2016).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개요.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미발간자료)**, 48-67.

대검찰청 (201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4).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5a).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5b).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한출판문화협회(2011-1015). 출판통계. http://www.kpa21.or.kr 에서 2016년 10월 4일 인출.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자, 조무현 (2014).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전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백미순, 김정혜, 정유석, 최영지 (2013).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병부, 성열관, 하봉운 (2014). **경기도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송승훈, 남미자, 이경아 (2013). **경기도 혁신 고등학교 성과 분석**.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2016.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경기: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5). 2015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제처 (2016.09.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4&nwYn=&query=에서 2016년 9월 21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보건복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20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 NU_ID=03&MENU_ID=0323&CONT_SEQ=293057&page=1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3a).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 NU_ID=03&MENU_ID=0323&CONT_SEQ=295375&page=1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3c).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 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95051에서 2016년 10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a).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 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18320&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b).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 NU_ID=03&MENU_ID=0323&CONT_SEQ=315920&page=1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c).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 NU _ID=04&MENU_ID=0403&CONT_SEQ=298285&page=1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a).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tat. mo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bbsSeq=1&nttSeq=21849&nttClsCd=01&searchKey=&searchWord=&n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b). 2015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0820&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c). '2015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개최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d).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e).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gm/sgm0601vw.jsp?PAR_ME NU_ID=13&MENU_ID=13040201&page=3&CONT_SEQ=296910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453에서 2016년 8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8.3.). 입양인 권익 강화한다더니 뒷방 처박힌'헤이그협약'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 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CONT_SEQ=334082&page=1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a).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2016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 .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0512&page=1에서 2016년 10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c).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 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30321&page=1에서 2016년 10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d).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5.12.31.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 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U_ID=0321&CONT_SEQ=333595&page=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e). 아동분야 사업안내 [1].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 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CONT_SEQ=330339&page=1에서 2016년 7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f).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info/NEW_USR_main.asp??=CENTERINFO/DATA /STAT_GUIDE/view&bbs_no=216&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6년 10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b).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2010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천시 (2016).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서울시 (2015.7.16.). 서울시,「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시행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380 9&act=VIEW&boardId=23809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서울시교육청 (2016). 2016년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주요업무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6). 여성·보육·가족·외국인 주민자료. 서울: 서울특별시
성범죄자 알림e(2016.6.23.)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소라미 (2016).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pp. 33-45).
성태규, 이인희, 고승희, 이수철, 김용현, 박경철 외 (2015).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송효진, 박복순, 안경희 (2016).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2-R4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돌봄연계모형 개발연구**(KYWA-2014-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1-R3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연구보고 10-R2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09). 200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1a).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1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b). 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c).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a). 20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연구보고 2014-53).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c).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a).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3026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5b).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c).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d).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de).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a).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b).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연합뉴스, 13개 아동인권단체 '출생신고 제도 개선'캠페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6/0200000000AKR20160616080900371.HTML?input=1195m 에서 2016년 6월 19일 인출.

위키백과. List of countries by GDP (PPP) per capita. 위키백과 웹사이트 https://en.wi 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에서 2016년 10월 14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map/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childfriend lycities.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유양식, 김정현, 강석, 김경희, 김태연, 나판수 외 (2015). **2015년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윤성승, 허남순 (201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추어 본 국제입양 관련법의 개선방안. **법과 기업연구**, 4(2). 3-44.

윤정혜 (2015, 7월호). 육아휴직제도 활용현황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17.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외 (2016).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연구**. 서울: Save the Children·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2016.0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이정미 의원 웹사이트 http://justice551.tistory.com/122에서 인출

임완섭, 이주미 (2014). **2014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혜주, 임지영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와의 대화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분노표현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 5(1), 17-35.

전경숙 (2013).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이슈분석 1호).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2016).

전라북도교육청.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76320 2016년 10월 21일 인출.

정무성, 정익중, 강흥구, 김동주, 김수삼, 이정선 외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원.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 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04624&page=1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정소희 (2013).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4), 31-55.

정희진 (2015).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행동 변화 추정 :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금주 (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299-320.

중앙입양원. 입양정보공개청구. 중앙입양원 웹사이트 http://www.kadoption.or.kr/cou nsel/counsel_request.jsp에서 2016년 10월 20일 인출.

채경선, 황현주 (201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효학연구**, 20, 159-190.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코이카 홈페이지. 우간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위해 500만 불 지원. 코이카 웹사이트 www.koica.go.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통계청 (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 =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 (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 =read&aSeq=3323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 (201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 .kr/portal/korea/kor_nw/2/13/1/index.board?bmode=read&aSeq=351611에서 2016년 10월 16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3&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CB&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각 년도).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각년도).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각년도).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67&vw_cd=MT_OTITLE&list_id=117_11758_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각년도).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 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SubCont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통계청·여성가족부 (2016.5.2.). 2016 청소년 통계.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 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3501에서 2016년 7월 15일 인출.

통일부 정책지원과 (2016.6.23.).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 =3099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사이트 https://www.cswe.co.kr/bo 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field=searchTC&query=%EC%95%84%EB%8F%99&po_item_cd=&po_no=2982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2.2.). 2015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성폭력 상담소 웹 사이트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 1에서 2016년 2월 2일 인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6).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2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2016.9.2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요청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1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4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2014.7.31.). 인재육성사업 소개.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현소혜 (2016).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문(pp. 79-84).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외 (2015). **아동·청소년의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ODA 홈페이지. 한국 ODA의 이모저모, 한국의 ODA 지원현황, 지원실적. ODA 웹사이트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Lumos Foundation(2013) *Lumos spotlight study: children's rights to survival and development: Ensuring access to treatment for children with hydrocephalus*. Wales: Lumos Foundation.

MPFS(Hg.) (2014). *JIM 2014 Jugend, Information, (Multi-)Media Basisstudie zum Medienumgang 12- bis 19-Jähriger in Deutschland*. Stuttgart: LFK.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October, 31, 2014, from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Jan 2014.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UNICEF (2007). Law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the CRC.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6).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s. 19; 28, para. 2; and 37, inter alia)(CRC/C/GC/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9).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3). The rights of children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CRC/C/GC/14).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부 록

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자료원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연도별 추이 (2011~2016)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논의자료
6.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7.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1.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자료원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td><td rowspan="4">1-1.
인권일반
(제4조, 42조)</td><td rowspan="3">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td><td>1-1-1-1.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 발전</td><td>·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 제·개정 현황 (2016년 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등)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td></tr>
<tr><td>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td><td>·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기구 및 조직 현황 (2016년 예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전담 소위원회 신설 등)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td></tr>
<tr><td>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td><td>·2012-2016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출처: 1) 기획재정부. 2012-2016년 나라살림 예산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3)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td></tr>
<tr><td>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td><td>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td><td>·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문41.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table>
<tr><th>내용</th><th>모른다</th><th>이름만 들어봤다</th><th>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th></tr>
<tr><td>(1) 유엔(UN) 아동권리협약*</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인권조례</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국가인권위원회</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r><td>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td><td>·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문4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사이버공간)</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존중받지 못한다</th><th>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th><th>존중받는 편이다</th><th>매우 존중받는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내가 살고 있는 지역</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우리나라 전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1-1-2-3. 인권의식 및 태도*</td><td>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문44.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1-1-3.
인권교육</td><td>1-1-3-1. 인권교육 경험*</td><td>·인권교육 경험여부
문1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td></tr>
<tr><td>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td><td>·인권교육 실시 기관/장소
문17-1.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td><td>·인권교육 도움 정도
문17-2.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td></tr>
<tr><td>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td><td>1-2-1.
차별 경험률</td><td>1-2-1-1.
차별해 본 경험*</td><td>·차별의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5.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한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1-2. 차별받은 경험*	**·차별 받은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6.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시행현황** - 출처: 성북구청(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등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2.
시민적 권리와 자유</td><td rowspan="2">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td><td>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td><td>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td><td>·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문18.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td><td>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td><td>·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문30.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h>잘 모르겠다</th></tr>
<tr><td>(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r><td>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td><td>·학급회의 운영 여부
문32.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3"></td><td>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td><td>·학급회의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문3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td></tr>
<tr><td>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td><td>·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문31.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td></tr>
<tr><td>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td><td>·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3">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td><td rowspan="2">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td><td>·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p.90.</td></tr>
<tr><td>·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5)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5)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pp.87-89.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5)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5).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2회)</td></tr>
<tr><td>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td><td>·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
문35.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문3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문3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3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td><td>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td><td>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td><td>·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문4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2-2-2.
종교자유 보장정도</td><td>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td><td>·학교의 종교재단 학교 여부
문34.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종교행사 시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문3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td></tr>
<tr><td>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td><td>·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보장수준
문4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td><td>2-3-1.
결사·집회 경험률</td><td>2-3-1-1. 결사·집회 경험률*</td><td>·결사·집회 경험률
문36.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없다</th><th>거의 없다</th><th>가끔 있다</th><th>자주 있다</th></tr>
<tr><td>(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td><td>·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문36-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 rowspan="2">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td><td>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td><td>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td><td>·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td><td>·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td><td>·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 rowspan="2">2-5.
정보접근권
(제17조)</td><td rowspan="2">2-5-1.
매체 접근율</td><td>2-5-1-1.
매체 이용률</td><td>·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출처: 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2012). 2011-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3-2015). 2013-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SNS 이용률
– 출처: 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2012). 2011-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3-2015). 2013-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1-2014). 2011-201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1-2014). 2011-201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학생-성인 독서율(1년간 1권 이상 독서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3, 2015). 각년도 국민독서실태 조사</td></tr>
<tr><td>2-5-1-2. 유해매체 이용률</td><td>·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2, 2014), 각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2, 2014), 각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td><td>·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1-2015). 출판통계</td></tr>
<tr><td rowspan="2">2-5-2.
정보제공 정도</td><td>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td><td>·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td><td>·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문42.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r>
<tr><td>(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
<tr><td>(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
<tr><td>(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
</table></td></tr>
</table>

3)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3.
폭력 및 학대</td><td rowspan="3">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td><td rowspan="3">3-1-1.
청소년폭력 경험률</td><td>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 등)</td><td>·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및 정도
문2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td><td>2)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
으로부터</td><td>4)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원선생님
으로부터</td><td>6)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3-1-1-2. 폭력피해 경험*</td><td>·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문22.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7) 강제적인 심부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td><td>·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문23.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3-1-2. 체벌 경험률</td><td>3-1-2-1.
체벌 경험률*</td><td>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
문2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1)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3)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원선생님으로부터</td><td>5)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td><td rowspan="2">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td><td>3-2-1-1. 아동학대 신고건수</td><td>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신고 건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td></tr>
<tr><td>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td><td>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성별, 연령별 구분(2014년, 2015년)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3"></td><td>3-2-1-3.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td><td>·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재학대사례 :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3-2-1-4. 방임유형 및 정도*</td><td>·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td><td>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td><td>·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td><td>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td><td>·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6), 2013-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6), 2011-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수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방과후학교 참여실태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6.5.2.). 2016 청소년 통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출처: 교육부(2015).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 출처: 1)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연도별 만족도 – 출처: 1) 교육부(2015).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2) 김미숙·김정주·황진구·하태정(201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3)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김정주·정은주(2015)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2016.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6.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입양에 대한 견해**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4–2–1–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 출처: 보건복지부(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1]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및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6).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5.12.31. 현재)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인 발생 현황** – 출처: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원자료: 경찰청(2014). 가출인 발생 현황(경찰청 요청자료)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문2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가출한 이유** 문20-1. (위 문항 20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 문20-2. (위 문항 20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문20-3. (위 문항 20번의 ②번 ~ ⑥번에 응답한 경우)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아동복지시설 평가영역별 배점 –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보호양육시설 예산** – 출처: 1) 보건복지부(20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보건복지부(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보건복지부(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 보건복지부(2015).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5)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6)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5).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영역별 평가점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결과)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 (지원)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출처: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출처: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출처: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0세의 기대여명**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05-2014). 생명표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연도별 영아사망률**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0-2014). 영아사망추이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출처: 통계청(2010-2014). 사망원인통계
			5-2-1-3. 사고 사망률	**·사고 사망률** – 출처: 통계청(2010-2014). 사망원인통계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출처: 통계청(2010-2014). 사망원인통계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출처: 통계청(2003-2014).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문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49.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6"></td><td rowspan="6">5-3.
보건서비스
(제24조)</td><td rowspan="5">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td><td>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td><td>·보건교사 배치현황
– 출처: 교육부(2016).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출처: 교육부(2016).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td></tr>
<tr><td>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td><td>·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td></tr>
<tr><td>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td><td>·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소아청소년 질환별(선청성심장질환, 아토피피부염, 폐렴 등) 유병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td></tr>
<tr><td></td><td></td></tr>
<tr><td>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td><td>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td><td>·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2. 음주율	**·현재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평생 약물 경험률(부탄가스, 본드같은 각성제 마약, 기침 및 신경안정제 오남용 등)** – 출처: 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문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문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문3-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수면시간** 문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수면부족 이유 문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4-2-4. 비만율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및 추이** – 출처: 교육부(2016). '15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 문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문8-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성적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5-4-3-2. 우울증*</td><td>·우울정도
문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table><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td><td></td><td></td><td>5-4-3-3. 스트레스 인지율*</td><td>·스트레스 인지율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스트레스 인지율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스트레스 인지율
문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가정 불화</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또래와의 관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경제적인 어려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외모·신체조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td><td></td><td></td><td>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td><td>·현재 행복 정도
문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td><td>·행복하지 않은 이유
문1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5-4-3-5.
삶의 수준*</td><td>문12. 다음은 삶의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d colspan="3">낮은 삶의 수준</td><td colspan="2">〈-</td><td>중간</td><td colspan="2">-〉</td><td colspan="3">높은 삶의 수준</td></tr>
<tr><td>⓪</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d>⑧</td><td>⑨</td><td>⑩</td></tr>
</table>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 출처: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and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td></tr>
<tr><td>5-4-3-6. 자아존중감*</td><td>·자아존중감
문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문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② 아버지 ⑦ 친구 ③ 어머니 ⑧ 이웃/친척 ④ 형제/자매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⑤ 담임선생님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5-1.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아동빈곤율**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빈곤통계연보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2012년)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9, 2011) – 출처: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한부모가구 비율**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 –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간추린 교육통계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기본통계(8월 30일 발표)
			6-1-1-2. 학생 진학률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간추린 교육통계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OECD 교육지표 2015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 3.1. 기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 3.1. 기준)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2016. 08. 30. 기준)
				·학급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2016. 08. 30. 기준)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2016. 08. 30. 기준)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자퇴 충동여부** 문1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자퇴 충동의 이유 문1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3"></td><td rowspan="2"></td><td></td><td>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td><td>문1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6-1-3.
대안교육
참여율</td><td rowspan="2">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td><td>·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5개 권역
– 출처: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6.22.)</td></tr>
<tr><td>·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6.2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td></tr>
<tr><td></td><td>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td><td>·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 출처: 교육부(2014). 교육부 보도자료(11.10.)</td></tr>
<tr><td>6-2.
교육의 목표
(제29조)</td><td>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td><td>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td><td>·학교에 대한 생각
문1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3"></td><td rowspan="3">6-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td><td>6-2-2-1. 혁신학교 운영수</td><td>·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수
– 출처: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td></tr>
<tr><td rowspan="2">6-2-2-2. 혁신학교 운영 현황</td><td>·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절차
– 출처: 김성천·서용선·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td></tr>
<tr><td>·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교과과정 평가 비교
– 출처: 김성천·서용선·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td></tr>
<tr><td rowspan="3">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td><td rowspan="2">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td><td>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td><td>·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td></tr>
<tr><td>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td><td>·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문24.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r>
<tr><td>(1) 공공도서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6-3-2.
여가·문화·예술</td><td>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td><td>·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활동 참여도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5). 2015년 인터넷과 의존 실태조사</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활동 참여율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청소년단체 가입 여부** 문2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동아리 활동여부** 문27.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평일 여가시간**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 문1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6-3-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td><td>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td><td>·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 이용 만족도
문24-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td></tr>
<tr><td></td><td></td><td></td><td>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td><td>·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수준
문28.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지지하지 않는다</th><th>지지하지
않는 편이다</th><th>지지하는
편이다</th><th>매우
지지한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able>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 5, 36, 37(b–d), 38–40)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7.
특별보호 조치</td><td rowspan="4">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td><td rowspan="3">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td><td>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td><td>·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출처: 1) 법무부(201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td></tr>
<tr><td>7-1-1-2.
탈북 난민 아동수</td><td>·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 백서
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td></tr>
<tr><td>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td><td>·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문46.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한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3회 이상</th></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무시한 경험 및 차별/무시당한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td></tr>
<tr><td>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td><td>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td><td>·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출처: 1) 교육부(2013.10.2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2) 교육부(2015.8.). 교육부 기본통계
3) 교육부(2016.8.). 교육부 기본통계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출처: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탈북학생 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출처: 1)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자료 2)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7-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3)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샐태연구 Ⅳ: 총괄보고서 – 원자료: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2014.7.29.)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수용률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4). 교정본부 통계자료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소년원의 배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출처: 1)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3)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 원자료: 대검찰청(2013).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2014). 검찰연감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2">수준</td><td></td><td>3)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td></tr>
<tr><td>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td><td>·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출처: 고용노동부(2013.6., 2014,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td></tr>
<tr><td>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td><td>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td><td>·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_OECD평균 및 국가간 비교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OECD(2015). OECD Statistics</td></tr>
<tr><td></td><td>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td><td>·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문4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율
문4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h>내용</th><th>없다</th><th>1-2번</th><th>3번 이상</th></tr>
<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9)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간 당 5,580원, 2016년 기준 시간 당 6,0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출처: 고용노동부(2009-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출처: 고용노동부(2009-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Ⅳ: 총괄보고서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업소 및 위반 내역 건수 – 출처: 이미정 의원 보도자료(2016.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기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출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요청자료(2016.9.21.)
				·연간 성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여성가족부(2009-2012, 2013c, 2014b, 2015c). 2009-2015 청소년백서
				·자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문4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문4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⑥ 선생님 ② 친구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③ 선배 ⑧ 경찰 ④ 부모님(보호자) ⑨ 인터넷 ⑤ 형제·자매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출처: 1)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4). 검찰연감 3)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 여성가족부(20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3) 여성가족부(2015).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출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16.2.2.).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5). 내부통계자료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1) 승인통계 활용지표[32)]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20005) (미래창조과학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가구 (전국 25,000가구 (약 65,000명)	1년 (2003)	면접조사 (조사원→전담조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매년 10월)) (시도)	2-5-1-1. 매체 이용률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329002)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모바일인터넷 확산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 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및 기초자료 제공	개인 (만 12세이상 59세이하 모바일인터넷이용자 2,500명)	1 년 (2006)	면접조사 (조사원 → 포커스컴퍼니 → 한국인터넷진흥원(작성))	조사기준년도 11월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전국)	5-1-1. 매체 이용률
국민독서실태조사 (113018)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민의 독서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표준적인 독서지표를 작성하여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정부,언론계,교육계,도서관계,출판산업계,독서계 등 사회 각계에서 기본 통계로 활용하고자 함	개인 (○ 전국의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 ○ 학생 3,000명(전국 초중고 각 1,000명 (초등학생 4~6학년)) ○ 총 5,000명)	2 년 (2001)	면접조사 (응답자→조사전문기관→한국출판연구소→문화체육관광부)	익년 3월 (언론(보도자료)+간행물) (전국)	2-5-1-1. 매체 이용률
청소년매체이용	일반통계	-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국 중학교 이상 19세미만	2 년	면접조사	익년 3월	2-5-1-1.

32) 통계별 설명자료 출처: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및유해환경실태조사 (167001) (여성가족부)	(조사통계) (확률표본)	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일반청소년 15,000명 (일반청소년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16,5726명, 위기청소년은 1,972명(전국 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2006)	(면접원→실사책임자→조사책임자→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연구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간행물, 인터넷 게시) (전국)	매체 이용률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54013)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청소년: 만 9세~24세 총 2,000명 이상(가구 내 대상청소년 전원), 성인: 조사 청소년의 부모(주 양육자) 2,000명)	3년 (2011)	면접조사 (조사대상→위탁기관(통계청)→여성가족부)	조사실시 익년 1월 (간행물) (전국)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조사 (10101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개인 (1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1년 (1977)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조사기준년도 11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요보호아동현황보고 (117034)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	– (1994)	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5–3–1–2. 지역사회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생명표 (101035) (통계청)	일반통계 (가공통계) (해당없음)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 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타 (작성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	1 년 (1994)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언론(보도자료) +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사망원인통계 (101054) (통계청)	지정통계 (가공통계) (해당없음)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	1 년 (1999)	-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에서 신고된 사망신고서로 작성)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범죄분석통계 (135001) (검찰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개인	1 년 (1976)	보고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 →검찰청)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간행물) (전국)	5-2-2-1. 범죄 피해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국민건강영양	지정통계	- 국민의 건강행태, 건강 및 영양수준에 대한 통계	가구	1 년	면접조사	조사대상연도	5-3-1-3.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조사 (117002)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확률표본)	생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정책 목표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제6기, 2013~2015) 전국 11,000여 가구 내 가구원/3년 간 576개 조사구, 조사구당 20가구/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 3,840개 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1973)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익년 12월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전국)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17058)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우리나라 청소년(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의 현황 파악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개인 (17개 시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400개교, 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전체 유효목표 인원수=60,000명(800개교*3학급*약25명))	1년 (2005)	인터넷조사 (표본학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 조사수행협조 : 교육부, 교육청)	조사기준년도 12월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시도)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3-3. 스트레스 인지율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교육기본통계 (334001) (한국교육개발원)	지정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유초중등 교육통계〉 : 학교, 교원, 학급, 학생, 사무직원 등 〈고등교육통계〉 : 학교, 교원, 학급, 학생, 사무직원 등	1년 (1963)	보고 (○유초중등교육기관 : 각급학교,지역교육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 각급학교→한국교육개발원")	작성기준년도 8월 (언론(보도자료)) (시도)	6-1-1-1. 학생 취학률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1. 학업중단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참가율
전국다문화가족	일반통계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가구	3년	면접조사	조사년도 익년3월	7-1-1-3. 이주배경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실태조사 (117079) (여성가족부)	(조사통계) (확률표본)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배우자 및 9~24세 자녀) (26,098가구(유효 16,000가구))	(2009)	(조사대상→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부록 3.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1) 초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402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31

Gallup 2016-163-006

2016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학 년 / 반	( )학년 ( )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조사 완료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담당 연구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유설희 전문연구원 (044)415-2152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문의처 : 김태연 선임연구원 (02)3702-2155
박현수 선임연구원 (02)3702-2647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있다면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인가요?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 ][ ] 시 [ ][ ] 분

문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으로 가십시오**

문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3.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나요?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 **「문3-1」로 가세요**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 **「문3-1」로 가세요**
③ 보통 먹는 편이다 → **「문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문4」로 가세요**

문3-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1/12

문6.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문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 · 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8.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0.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0-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11」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2/12

문10-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1. 다음은 삶의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낮은 삶의 수준	◀----------			중간			----------▶		높은 삶의 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2.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하나요?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문13-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4」로 가십시오**

문1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4.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3/12

문15.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문16.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 **「문16-1」로 가세요**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17」로 가세요**

문16-1. (문16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6-2. (문16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7.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4/12

문18.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19-1」로 가십시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20」으로 가십시오**

문1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다툼 때문에
③ 학교 문제(살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20.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깔보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깔보거나 욕하는 말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깔보거나 욕하는 말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 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6) 깔보거나 욕하는 말	①	②	③	④	⑤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5/12

문2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 · 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문22.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깔보거나 욕하는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비밀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은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여가 · 문화시설공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 시설을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문23-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아동·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6/12

문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5. **최근 1년 동안** 어린이 단체(예: 컵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26.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문27.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편이다	도와주는 편이다	잘 도와준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28.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급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29.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모임을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7/12

문30.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나요?

① 운영되고 있다 → 「문30-1」로 가십시오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31」로 가십시오

문30-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1.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2.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어린이를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33.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나라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합니다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34. 다음은 어린이에게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나의 권리에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8/12

문35.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린이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36.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9/12

문3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 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38.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39.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① 있다 ⟶ **「문39-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40」으로 가세요**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10/12

문3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40.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4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11/12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 년 [ ][ ] 월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②
(2) 어머니	⓪	①	②

배경문항 6.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opyright(c) 2016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초등학생용) :: 12/12

2) 중·고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402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32

Gallup 2016-163-006 **2016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1. 일반 2. 자율 3. 특성화 4. 특수목적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학 년 / 반	( )학년 ( )반	
반 유 형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 전 체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반 내 학생 수 — 조사 완료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담당 연구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유설희 전문연구원 (044)415-2152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문의처 : 김태연 선임연구원 (02)3702-2155
박현수 선임연구원 (02)3702-2647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A. 학생은 <u>최근 1년간</u>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있다면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u>굵은 글씨에 밑줄</u>이 되어있는 항목은 <u>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u>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 ][ ] 시 [ ][ ] 분

문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으로 가십시오**

문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 **「문3-1」로 가십시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 **「문4」로 가십시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문3-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문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 · 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9」로 가십시오**

② 가끔 생각한다 → **「문8-1」로 가십시오**

③ 자주 생각한다 → **「문8-1」로 가십시오**

문8-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성적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1-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문12」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

문1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2. 다음은 삶의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낮은 삶의 수준 ◀----------				중간			----------▶			높은 삶의 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문1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5」로 가십시오**

문1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문1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문1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 「문17-1」로 가십시오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18」로 가십시오

문17-1.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7-2.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8.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20-1」로 가십시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문20-1.(위 문항 20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20-2. (위 문항 20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② 청소년 쉼터 ┐
③ 청소년 상담 기관 ┼→ **「문20-3」로 가십시오**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
⑤ 청소년 전화 1388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20-3. (위 문항 20번의 ②번 ~ ⑥번에 응답한 경우)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2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 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6)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문22.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 · 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문23.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24.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문24-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27.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28.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 · 길이 ·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문31.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문32.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 **「문32-1」로 가십시오**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33」로 가십시오**

문3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34.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문34-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5」로 가십시오**

문3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5.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문36.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36-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3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3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4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41.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42.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 · 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4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문44.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45.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4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7-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48」로 가십시오**

문4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간 당 5,580원, 2016년 기준 시간 당 6,0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문4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48-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49」로 가십시오**

문4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49.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②
(2) 어머니	⓪	①	②

배경문항 6.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7.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연도별 추이(2011~2016)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1-2016년):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발전	법제처(법령검색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확인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기구·조직 관련 변화사항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3.1	3.2	3.2	2.9	–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13.1	15.2	14.4	14.4
				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16.5	13.0	9.7	7.7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17.6	17.3	17.1	15.5
				평균	–	–	15.7	15.2	13.7	12.5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90.1	92.9	94.5	94.3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80.1	84.1	88.5	88.5
				지역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81.1	86.3	89.1	90.0
				대한민국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67.6	70.8	74.2	76.2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	76.2	79.3	79.6
				평균	–	–	79.7	82.1	85.1	85.7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31.7	30.2	32.2	29.6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80.1	83.3	82.8	83.8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항목없음	항목없음	65.5	76.9	80.1	81.2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생각하는지 여부(%)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90.8	93.4	94.0	94.7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92.6	95.0	95.5	95.9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91.7	93.5	93.9	93.9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85.7	89.9	90.3	90.3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54.4	64.4	65.3	70.0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학교 정규 교과시간에 인권교육 받은 경험(%)	항목없음	항목없음	59.6	59.7	62.8	65.3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항목없음	항목없음	37.5	35.6	36.5	39.7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받은 경험(%)	항목없음	항목없음	19.0	17.3	15.6	16.0
				기타의 장소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항목없음	항목없음	5.2	4.6	4.3	2.8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71.1	71.8	70.6	72.4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지난 1년간 성별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6.9	21.5	21.2
				지난 1년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8.4	20.9	22.2
				지난 1년간 연령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7.8	20.8	20.1
				지난 1년간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4.5	3.5	3.5
				지난 1년간 지역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6.2	3.9	4.3
				지난 1년간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5.1	20.3	21.3
				지난 1년간 종교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3.9	3.0	3.5
				지난 1년간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8	2.5	2.6
				지난 1년간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7.4	7.1	8.0
				지난 1년간 다문화가정에 따른 차별 가해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2.6	2.2	2.2
				평균	–	–	–	13.6	10.6	10.9
			1-2-1-2. 차별받은 경험*	지난 1년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38.9	항목없음	31.1	24.3	19.5	21.5
				지난 1년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43.5	항목없음	35.0	30.5	24.1	25.8
				지난 1년간 연령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37.9	항목없음	33.7	25.5	21.0	21.4
				지난 1년간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5.3	항목없음	4.2	3.8	2.8	2.4
				지난 1년간 지역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6.2	항목없음	5.7	5.4	3.7	4.0
				지난 1년간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34.4	항목없음	26.7	23.3	19.6	21.7
				지난 1년간 종교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3.9	항목없음	3.1	3.5	2.6	3.0
				지난 1년간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1.4	항목없음	0.8	2.2	1.1	1.1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난 1년간 장애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3.3	항목없음	항목없음	1.8	1.3	1.0
				지난 1년간 다문화가정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 여부(%)	6.8	항목없음	항목없음	1.6	1.0	10.0
				평균	18.2	항목없음	17.5	12.2	9.7	11.2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여부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다'와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5영역에서 '존중 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고 응답한 값의 전체 합산의 평균
-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7가지 인권 상황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1-1-3-1. 인권교육 경험: '교육받은 적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
-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학교 정규 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의 장소에서 인권교육 경험 여부
-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값의 합산

- 1-2-1-1. 차별해 본 경험: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 10가지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항목별)의 전체값 중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의 평균
- 1-2-1-2. 차별받은 경험: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 10가지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항목별)의 전체값 중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의 평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1-2016년):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	항목없음	77.4	80.1	82.8	84.9	85.8
				상급학교 진학 시 의견 존중해 주시는지(%)	항목없음	79.1	84.7	87.2	89.0	89.3
				장래희망 결정 시 의견 존중해 주시는지(%)	항목없음	83.1	87.8	89.1	90.6	91.1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의견 존중해 주시는지(%)	항목없음	–	79.6	81.8	84.1	84.7
				평균	–	79.9	83.1	85.2	87.2	87.7
		2-1-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a)(%)	항목없음	22.1	14.5	20.4	18.8	18.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지(%)	항목없음	28.0	30.0	30.8	25.7	23.8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의 보장(b)(%)	항목없음	28.5	20.8	30.7	28.3	29.5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주는지(c)(%)	항목없음	–	–	34.4	33.5	34.6
				평균(a+b+c 평균)	항목없음	25.3	17.7	28.5	26.9	27.4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56.1	61.6	67.6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84.2	82.6	84.2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정도(%)	항목없음	16.1	18.1	19.6	18.8	19.7
			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학교 규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항목없음	47.2	54.6	61.5	66.0	67.9
		2-1-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87.8	91.0	96.5	90.3	–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현황(개)	175	186	189	189	189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개)	286	305	305	305	305	–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	항목없음	17.2	9.3	10.6	12.6	14.1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경험 여부(%)	항목없음	4.1	2.1	1.8	2.4	2.9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응답률(%)	항목없음	33.0	26.5	25.7	24.3	24.7
				만 19세(현재)를 유지해야 한다 응답률(%)	항목없음	45.3	53.0	53.0	52.4	53.3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응답률(%)	항목없음	6.2	6.7	6.6	7.9	6.0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수준 인식(%)		항목없음	비교불가	51.6	58.7	58.1	54.2
				참여 장애 이유	시간부족(%)	항목없음	비교불가	31.5	32.0	35.2	37.8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항목없음	비교불가	13.3	15.2	15.8	16.5
					부모님(보호자)의 반대(%)	항목없음	비교불가	3.6	2.5	2.2	2.0
					학교의 반대(%)	항목없음	비교불가	1.6	2.2	1.5	1.7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항목없음	비교불가	35.7	34.2	31.3	28.8
					참여할만한 기회나 방법의 부재(%)	항목없음	비교불가	14.3	13.8	14.0	13.1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86.6	87.3	87.9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75.3	78.1	38.3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60.9	62.9	63.9
				평균					74.3	76.1	63.4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지 여부(%)		항목없음	비교불가	비교불가	28.6	46.1	26.7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74.2	75.2	76.2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 여부(%)		항목없음	19.6	20.1	16.3	17.0	15.4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 여부(%)		항목없음	10.8	8.1	7.2	6.7	7.3
				평균			15.2	14.1	11.8	11.9	11.4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활동을 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여부(%)		항목없음	항목없음	항목없음	3.5	3.3	3.8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용모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8.9	항목없음	56.1	57.9	50.7	51.4
				복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2.2	항목없음	52.5	53.4	43.6	47.6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28.7	항목없음	17.0	23.2	17.8	21.2
				평균		53.3		41.9	44.8	37.4	40.1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 공개 여부(%)		항목없음	30.1	18.1	16.5	13.1	11.2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 공개 여부(%)		항목없음	47.1	31.5	30.2	26.3	26.4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개인의 시험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 여부(%)		항목없음	40.5	29.1	28.1	23.5	24.3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시간)		13.2	14.1	14.1	14.4	14.5	
				SNS 이용 현황	블로그(%)	비교불가	비교불가	20.4	19.8	20.1	
					커뮤니티(%)	비교불가	비교불가	항목없음	25.0	32.1	32.1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프로필 기반 서비스(%)	비교불가	비교불가	93.7	94.2	87.9	87.9
					마이크로블로그(%)	비교불가	비교불가	23.7	15.4	9.9	9.9
				스마트폰 이용 현황	음성·영상통화(%)	26.5	29.3	45.2	41.8	문항삭제	–
					문자메시지(SMS, MMS)(%)	38.2	36.7	36.1	31.5	문항삭제	–
					채팅, 메신저(%)	항목없음	항목없음	86.8	85.6	문항삭제	–
					게임(%)	항목없음	항목없음	46.7	48.8	문항삭제	–
					음악감상(%)	항목없음	항목없음	35.9	34	문항삭제	–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시간.분)		2h7m	2h6m	2h36m	2h51m	문항삭제	–
				독서율(%)		83.8	2년주기	96.0	2년주기	94.9	–
			2-5-1-2. 유해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경험률	성인용 영상물(%)	비교불가	비교불가	2년주기	65.5	2년주기	–
					성인용 간행물(%)	41.1	40.0	2년주기	34.1	2년주기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	14.8	26.9	2년주기	42.7	2년주기	–
					컴퓨터 성인물(%)	37.3	45.5	2년주기	26.0	2년주기	–
					휴대폰 성인물(%)	12.3	20.5	2년주기	52.6	2년주기	–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부수(%)		34.42	30.5	28.74	27.79	19.80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 공지 여부(%)		항목없음	75.0	79.7	80.8	83.0	83.8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 제공 여부(%)		항목없음	22.1	23.6	24.2	22.4	21.0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청소년 인권 정보 제공 여부(%)		항목없음	9.3	13.3	17.1	15.1	16.4
				권리침해시 상담·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항목없음	34.5	34.7	27.8	25.5	26.1
				평균		항목없음	22.0	23.9	23.0	21.0	21.2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4항목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의 4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2-1-2-2. 학급회의 운영여부: '운영되고 있다' 응답값
-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
-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값
- 2-1-2-5.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정도: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
-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경험: 인지도 -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응답값의 합산 / 활동경험 -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응답값
- 2-1-3-3.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 보다 높여야 한다.' 에 각각 응답한 값
-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참여 장애 이유 '시간부족',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부모님(보호자)의 반대', '학교의 반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의 부재'6개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응답값
-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가정, 학교, 사회, 3영역에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값의 합산

-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2-3-1-1. 결사·집회 경험률: 전체 응답값 중 '전혀 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값의 합산
-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선도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에 응답한 값의 합산
- 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3개 영역의 전체값 중'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의 평균
-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2-5-1-1. 매체 이용률: 매체 이용률: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SNS 이용 현황 – 블로그, 커뮤니티,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블로그에 회원가입하여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스마트폰 이용 현황 – 음성·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채팅·메신저, 게임, 음악감상 중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독서율 - 지난 1년 동안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 2-5-1-2. 유해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을 각각 이용해본 경험 여부
-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부수
-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값의 합산
-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3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3) 폭력 및 학대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2011-2016년): 폭력 및 학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 등)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여부(%)		38.4	조사 미실시	34.1	30.4	29.8	30.4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여부(%)		30.0	조사 미실시	27.3	22.0	18.4	18.8
				선후배, 친구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여부(%)		21.0	조사 미실시	16.6	14.7	14.3	13.4
				평균		29.80	-	26.00	22.37	20.83	20.87
			3-1-1-2. 폭력피해 경험*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피해 경험	폭행이나 구타 당한 경험 여부(%)	6.7	조사 미실시	7.2	5.8	5.4	5.5
					따돌림 당한 경험 여부(%)	6.8	조사 미실시	6.4	5.2	5.3	4.7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여부(%)	6.6	조사 미실시	3.4	2.2	1.8	1.9
					협박을 당한 경험 여부(%)	4.2	조사 미실시	3.0	2.5	2.3	2.5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 여부(%)	3.3	조사 미실시	3.5	2.7	3.3	2.9
					강제적인 심부름 경험 여부(%)	-	-	-	2.2	1.6	1.5
				평균		4.60	-	3.92	3.43	3.28	3.17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 여부(%)		36.4	조사 미실시	22.2	17.6	15.8	14.1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 여부(%)		-	조사 미실시	2.4	1.7	1.7	1.6
				사이버 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진		4.9	조사	4.4	5.5	5.0	4.9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험 여부(%)		미실시				
				평균	13.77	–	9.67	8.27	7.50	6.87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연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 여부(%)	39.3	조사 미실시	30.6	25.7	24.7	24.1
				연 1회 이상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 여부(%)	38.4	조사 미실시	29.7	23.7	18.5	16.2
				평균	38.85	–	30.15	24.70	21.60	20.15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10,146	10,943	13,076	17,782	–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중복학대 미분류)	신체학대 사례(%)	26.9	28.8	30.9	36.9	–	
				정서학대 사례(%)	36.3	30.9	37.6	40.0	–	
				성학대 사례(%)	4.0	4.5	3.7	2.9	–	
				방임 사례(%)	31.9	28.7	27.8	20.3	–	
			3-2-1-3.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중복학대 발생률(%)	43.3	47.1	43.0	48.0	–	
				재학대 발생률(%)	자료없음	자료없음	14.4	10.2	–	
			3-2-1-4. 방임유형 및 정도*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보는 경험 여부(%)	49.3	조사 미실시	58.2	67.4	66.4	65.6
				연 1회 이상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경험 여부(%)	5.5	조사 미실시	8.2	16.9	15.4	14.5
				연 1회 이상 질병발생시 부모에게 방치된 경험 여부(%)	8.9	조사 미실시	7.7	8.1	7.4	7.5
				연 1회 이상 결식시 부모가 무관심한 경험 여부(%)	12.1	조사 미실시	13.7	9.3	9.0	8.7
				연 1회 이상 학교 결석시 부모가 무관심한 경험 여부(%)	2.0	조사 미실시	2.0	2.0	1.7	2.1
				평균(%)	15.56	–	17.96	20.74	19.98	19.68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건)	6,058	6,403	6,796	10,027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개소)	44	46	50	51	–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건)		36.8	46.4	58.3	66.5	–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건)		393,623	309,362	434,331	488,401	–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원가정보호(%)	65.3	63.7	64.4	66.5	–	
					분리보호(%)	26.2	30.3	28.6	26.0	–	
					사망(%)	0.2	0.2	0.3	0.2	–	
					타기관의뢰(%)	1.5	0	0	–	–	
					가정복귀(%)	6.8	5.9	6.7	7.3	–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최근 1년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선후배, 친구로부터 연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의 여부
- 3-1-1-2. 폭력피해 경험: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연 1회 이상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갈취, 협박, 성적 희롱이나 추행, 강제적인 심부름을 당한 경험의 여부(평균: 6항목 합산값의 평균)
-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 따돌림을 당한 경험,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진 경험의 여부(평균: 3항복 합산값의 평균)
- 3-1-2-1. 체벌 경험률: 연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 여부(평균: 2항목 합산값의 평균)
-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 3-2-1-3.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 3-2-1-4. 방임유형 및 정도: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보는 경험,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경험, 질병발생시 부모에게 방치된 경험, 결식시 부모가 무관심한 경험, 학교 결석시 부모가 무관심한 경험 여부(평균: 5항목 합산값의 평균)
-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해당 연도 최초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건수+전년도 미종결 사례)/전체 상담원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2011~2016년)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 주중 1시간 이상 대화시간 비율(%)	34.55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42.45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	자료비교 불가	자료비교 불가	자료비교 불가	자료비교 불가	자료비교 불가	자료비교 불가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	42.8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35.2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개소)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명)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명)	7.5	5.2	4.9	4.8	4.5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방과후학교 참여실태(%)	56.6	57.6	60.2	59.3	57.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개)	530,650	602,630	570,321	538,108	475,690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개소)	3,985	4,036	4,061	4,059	보고서 미발행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명)	104,982	108,357	109,066	108,9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개소 수(개소) 및 연인원(명)	200	200	200	200	200	–
					2,148,400	2,148,400	2,148,400	1,962,492	2,200,000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80.43	81.3	83.13	83.57	보고서 미발행	–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명)_전체	2,464	1,880	922	1,172	1,057	–
				– 국내입양	1,548	1,125	686	637	683	
				– 국외입양	916	755	236	535	374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입양에 대한 견해(%)	2년주기 조사	42.5	2년주기 조사	37.2	2년주기 조사	2년주기 조사
			4-2-1-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수치자료 없음	수치자료 없음	수치자료 없음	수치자료 없음	수치자료 없음	수치자료 없음
		4-2-2.	4-2-2-1.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명)_전체	7,483	6,926	6,020	4,994	4,503	–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안양육 비율		– 시설보호	3,752	3,748	3,257	2,900	2,682	
				– 가정위탁	2,350	2,289	2,265	1,688	1,582	
				– 입양	1,253	772	478	393	239	
				– 소년소녀가정	128	117	20	13	0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명)_전체	15,486	14,502	14,596	14,385	13,728	–
				– 대리양육 위탁아동	10,205	9,732	9,776	9,550	9,127	
				– 친인척 위탁아동	4,260	3,831	3,843	3,816	3,556	
				– 일반 위탁아동	1,021	939	977	1,019	1,045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인 발생 현황(명)	10,419	9,961	6,65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개소)	83	92	103	109	119	–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최근 1년 간 가출경험(%)	5.5	조사 미실시	5.1	4.8	3.5	3.4
				가출한 주된 이유(%)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율(%)	10.8	조사 미실시	6.3	6.3	11.1	10.4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별 배점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보호·양육시설 예산(백만 원)	81,759	95,694	115,403	115,193	122,006	129,142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점/100점)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90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3년주기 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청소년 전체값(9-24세) 중, 아버지, 어머니별 1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값의 합산의 평균
-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청소년 전체값(9-24세) 중, '거의없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산
-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개소),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명), 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명)
-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초중고 전체 방과후학교 참여실태 참여율(%), 초중고 전체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합계(개),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개소) 및 이용 아동 수(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개소 수(개소) 및 지원 연인원(명), 방과후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의 평균(%)
- 4-2-1-1.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국내 입양+국외 입양 현황 합산(명)
-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입양에 대한 견해 중, 긍정적 응답(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결과의 합산(%)
- 4-2-2-1.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수(명)
-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대리양육 위탁아동, 친인척 위탁아동, 일반 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아동 수(명)
-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 청소년(14-18세 미만) 남녀 합산(명),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합산(개소)
-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최근 1년 간 가출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청소년 비율(%)
-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청소년쉼터+청소년 상담기관+청소년수련관+청소년전화1388+기타 이용률 합산(%)
-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지원시설+가정위탁지원+지역아동센터 예산 합산(백만 원)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11-2016년):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 (지원)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특수학교 재학생 비율(%)	29.9	29.3	29.5	29.6	29.6	자료없음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일반학교 재학생 비율(%)	70.1	70.7	70.5	70.4	70.4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수(명)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자료없음
				특수학교수(개교)	155	156	162	166	167	
				특수학급수(학급)	8,415	8,927	9,343	9,617	9,868	
				특수교사수(명)	15,934	16,727	17,466	17,922	18,339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특수학교 졸업생 진학률(%)	29.9	29.5	43.5	54.8	57.5	자료없음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	14.7	15.8	13.5	11.8	7.8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0세의 기대여명(전체)(%)	81.20	81.44	81.94	82.40	82.06	자료없음
				0세의 기대여명(남자)(%)	77.65	77.95	78.51	79.00	78.98	
				0세의 기대여명(여자)(%)	84.45	84.65	85.06	85.50	86.17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사망률(전체)(%)	3.0	2.9	3.0	3.0	2.7	자료없음
				영아사망률(남자)(%)	3.4	3.1	3.1	3.2	2.9	
				영아사망률(여자)(%)	2.7	2.7	2.9	2.8	2.5	
				연령별 사망률(0세)(%)	318.9	306.8	294.6	310.2	자료없음	자료없음
				연령별 사망률(1-4세)(%)	20.9	20.2	18.3	15.4		
				연령별 사망률(5-9세)(%)	10.0	11.4	10.8	8.8		
				연령별 사망률(10-14세)(%)	12.6	10.7	9.5	8.7		
				연령별 사망률(15-19세)(%)	28.3	25.8	23.6	25.9		
				연령별 사망률(20-24세)(%)	41.7	38.6	36.3	32.9		
			5-2-1-3. 사고 사망률	연령별 사고사망률(0세)(%)	16.9	16.8	13.8	12.4	14.0	자료없음
				연령별 사고사망률(1-9세)(%)	4.8	5.4	5.0	4.0	3.8	
				연령별 사고사망률(10-19세)(%)	12.7	11.0	10.1	11.3	9.1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령별 사고사망률(20-29세)(%)	36.8	31.6	28.7	27.1	26.1	
				청소년 자살 사망률(10-19세)(%)	5.5	5.1	4.9	4.5	4.2	자료없음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전체)(%)	11.0	19.0	17.1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남자)(%)	12.8	23.1	20.0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여자)(%)	8.9	14.4	14.0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률(%)	78.9	조사미실시	문항삭제	89.1	89.6	90.4
				주거지역 안전에 대한 인식률(범죄)(%)	63.7	조사미실시	56.8	61.3	64.5	66.5
				주거지역 안전에 대한 인식률(교통사고)(%)	55.7	조사미실시	52.9	56.4	59.9	61.5
				주거지역 안전에 대한 인식률(음식물)(%)	자료없음	조사미실시	자료없음	72.0	77.0	80.0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보건교사 배치율(%)	65.4	65.5	64.9	65.4	63.9	자료없음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지역사회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	61,746	62,764	64,137	66,926	자료없음	자료없음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2-18세)(%)	9.7	9.6	10.0	11.5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1-11세)(%)	8.3	5.0	5.9	3.1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12-18세)(%)	3.3	3.5	5.0	3.3	자료없음	자료없음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1~18세)(%)	45.2	47.3	49.7	47.8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1~18세)(%)	7.2	7.8	5.0	4.7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1~18세)(%)	19.3	18.2	13.4	11.8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 이용률(1~18세)(%)	27.1	26.6	25.8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청소년 흡연율(중·고등학교 전체)(%)	12.1	11.4	9.7	9.1	7.8	
				청소년 흡연율(중)(%)	8.1	7.2	5.5	4.7	3.3	자료없음
				청소년 흡연율(고)(%)	16.1	15.4	13.8	13.5	11.7	
			5-3-3-2. 음주율	청소년 음주율(중·고등학교 전체)(%)	20.6	19.4	16.3	16.4	16.7	
				청소년 음주율(중)(%)	12.0	10.3	8.3	8.3	7.4	자료없음
				청소년 음주율(고)(%)	29.0	28.2	23.8	24.6	24.9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평생약물 경험률(%)	0.7	0.6	0.5	0.5	자료없음	자료없음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중·고등학교 전체)(%)	54.1	61.4	61.9	57.7	59.6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중)(%)	62.6	68.3	68.7	63.5	65.7	자료없음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고)(%)	45.7	54.8	55.4	51.9	54.2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중·고등학교 전체)(%)	35.2	34.3	38.0	34.4	34.6	자료없음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중)(%)	46.0	44.3	49.2	42.0	4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고)(%)	24.5	24.6	27.2	24.8	27.3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86.5	조사 미실시	83.6	84.5	85.7	83.5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여부(%)	76.8	조사 미실시	77.3	80.7	78.9	77.5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등교전 아침식사 결식률(%)	21.3	조사 미실시	24.7	27.2	27.0	29.2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평균 수면시간(전체)(시간, 분)	7h53m	조사 미실시	7h 6m	7h 8m	7h17m	7h15m
				평균 수면시간(초등학교)(시간, 분)	9h11m		8h19m	8h29m	8h39m	8h37m
				평균 수면시간(중학교)(시간, 분)	7h84m		7h12m	7h20m	7h23m	7h23m
				평균 수면시간(일반계고)(시간, 분)	6h29m		5h27m	5h46m	6h 5m	5h58m
				평균 수면시간(특성화계고)(시간, 분)	6h73m		6h11m	6h24m	6h40m	6h45m
			5-4-2-4. 비만율	비만율(%)	14.3	14.7	15.3	15.0	15.6	–
		5-4-3. 정신적 건강	5-4-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점/4점)	자료없음	자료없음	2.91	2.71	2.99	3.00
			5-4-3-2. 우울감*	우울증(점/4점)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	1.94	1.96	1.95
			5-4-3-3.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중·고등학교 전체)(%)	42.0	41.8	41.4	36.8	35.1	–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78.1	조사 미실시	69.3	67.2	66.8	65.9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 행복 정도(%)	74.6	조사 미실시	81.1	83.8	84.3	83.7
			5-4-3-5. 삶의 수준(2015추가문항)*	삶의 만족도(점/10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75	6.85
			5-4-3-6.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	최근 1년간 죽고싶다는 생각여부(%)	34.3	조사 미실시	36.9	30.0	27.9	28.6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싶다고 생각한 비율(%)	35.1	조사 미실시	40.4	42.7	43.6	40.7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고민 나눌 대상자가 없는 청소년의 비율(%)	9.9	조사 미실시	9.3	8.5	8.8	8.7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절대아동 빈곤율(%, 1인 가구 제외)	7.1	6.1	5.3	4.7	자료없음	자료없음
				상대아동 빈곤율(%, 1인 가구 제외)	11.1	10.5	9.1	8.4	자료없음	자료없음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예산 비율(OECD 국가 비교)	0.9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5-5-2.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24세 미만)	407,415	364,650	337,810	315,603	524,209	자료없음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한부모가구 비율(%)	9.3	9.3	9.4	9.4	9.5	자료없음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수(개)	1,356	1,801	1,833	1,828	1,8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수(천명)	1,086	1,302	1,247	1,256	1,186	자료없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액(억원)	1,566	1,663	1,493	1,404	1,286	
				드림스타트 사업예산(억원)	372	462	576	632	658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수(명)	44,451	65,724	95,133	107,127	125,562	자료없음
				드림스타트 이용 가구수(가구)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수(명)	41,703	46,703	51,670	56,4799	자료없음	자료없음
				지역아동센터 수(개소)	3,260	3,500	3,742	3,989	3,913	4,054
				지역아동센터대상 국비지원 예산(억원)	963	1,096	1,272	1,306	1,363	1,414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 전체학생수 *100,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 전체학생수 * 100
-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특수학교 수,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수
-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대비 진학자 수 * 100,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 * 100
-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수(출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 해당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5-2-1-3. 사고사망률: 해당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사고=운수사고+추락사고+익사사고+화재사고+중독사고+자살+타살), 10-19세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 5-2-2-1. 범죄 피해율: 청소년(만13~20세)의 인구 1천명당 범죄피해건수 추계인구
-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학교급식이 안전하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주거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주거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5-3-1-1. 보건교사 배치현황: (보건교사 배치학교수 / 전체 학교수) * 100
- 5-3-1-3.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최근 1년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최근 1년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
- 5-3-3-1. 흡연율: 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5-3-3-2. 음주율: 최근 30일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평생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최근 12개월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12개월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5-4-1-1. 주관적 건강평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신체적 건강 수준이 건강한 편 혹은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
- 5-4-2-1. 운동 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한 달에 1회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

-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등교전 아침식사와 관련하여 “보통 하지 않는 편”과 “거의 하지 않는 편”에 응답한 비율
-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하루평균 수면시간
- 5-4-2-4. 비만율: 경도비만율 +중등도 비만율+고도비만률
- 5-4-3-1.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4개 문항의 평균값(4점 만점)
- 5-4-3-2. 우울감: 우울증 3개문항의 평균값(4점 만점)
- 5-4-3-3. 스트레스 인지율: 중1~고3 학생들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전체 청소년들 중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
-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전체 청소년들 중 “행복한 편”과 “매우 행복”에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5-4-3-5.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척도(10점 만점)의 평균
- 5-4-3-6.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가끔 혹은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청소년의 비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청소년 중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
- 5-4-3-7. 고민거리 대화상대: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정부발표 최저 생계비 미만 비율(시장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족의 아동 비율
-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만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수,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의 비율
-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수/학생수/지원액(교부금+대응투자),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 예산/이용 아동수/이용 가구수,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한 가입자 수, 지역아동센터의 수/국비지원 총예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2011-2016년):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각급 학교 취학률(%)	유치원	40.9	44.9	47.4	47.3	49.4	
					초등학교	99.1	98.6	97.2	96.4	98.5	
					중학교	96.7	96.1	96.2	97.7	96.3	
					고등학교	91.9	92.6	93.6	93.7	93.5	
					전체 고등교육기관	71.0	68.4	69.0	68.2	68.1	
			6-1-1-2. 학생 진학률	교육단계 연도별 진학률(%) 추이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100.0	100.0	100.0	100.0	100.0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등교육기관	72.5	71.3	70.7	70.9	70.8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1인당 연간 공교육비(PPP[33])	초등교육 과정	6,976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중등교육 과정	8,199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고등교육 과정	9,927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고등학교	14.8	14.4	14.2	13.7	13.2	
					고등교육기관	45.5	43.9	42.8	41.6	40.0	
				학급당 학생 수(명)	초등학교 과정	26.3	25.2	24.0	미발표	미발표	
					중학교 과정	34.0	33.4	32.8	미발표	미발표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초등학교	0.6	0.6	0.6	0.5	미발표	
					중학교	0.9	0.9	0.8	0.7	미발표	
					고등학교	1.9	1.8	1.6	1.4	미발표	
					전체 고등교육기관	6.4	6.7	6.6	6.6	미발표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자퇴 충동여부(%)	초등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4.4	14.5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학교	자료없음	15.7	16.9	25.2	22.6	
					일반고/특목고/자율고	자료없음	28.3	29.0	41.5	39.9	
					특성화고	자료없음	29.0	30.3	34.9	29.3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2015 재삽입/2013년도 신규문항)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의 존중과 배려 정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87.3	조사미실시	90.7	91.4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학생 존중 여부(%)		자료없음	자료없음	81.0	조사미실시	89.1	88.4
				학교생활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정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71.1	조사미실시	76.5	77.0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 수와 종류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개수)		33	34	35	36	38	
				각종학교 특성화 대안학교(개수)		9	14	19	24	24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대안교육특성화학교 학생수(명)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485	자료없음	
				각종학교 특성화 대안학교(명)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667	자료없음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학교가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66.5	72.0	76.3	78.4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66.7	70.9	74.5	76.2
		6-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혁신학교 운영수	초·중·고 혁신학교 수 (개교)	초등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46	자료없음	
					중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11	자료없음	
					고등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8	자료없음	
					특수학교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	자료없음	
			6-2-2-2. 혁신학교 운영 현황	경기도 혁신공감학교 선정 현황 및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간의 비교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전국 문화기반시설(개소)		2,072	2,182	2,266	2,375	2,519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개소)		738	753	781	787	자료없음	
				청소년의 시설 이용 여부 비율(%)	공공도서관	자료없음	자료없음	76.7	78.8	76.5	78.4
					청소년시설	자료없음	자료없음	37.7	41.7	40.7	43.3
					문화예술 공간	자료없음	자료없음	67.6	68.1	66.0	69.1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	–	–	–	12.4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참여율(%)		자료없음	10.0	9.5	8.8	8.2	8.6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동아리활동 참여율(%)		조사 미실시	53.2	70.9	74.6	72.6	73.6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평일 여가시간(3~4시간) 비율 (%)		자료없음	10.9	8.5	13.7	12.4	11.7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정규 수업시간 제외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비율(%)		자료없음	29.3	32.7	46.4	46.8	49.4
		6-3-3.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 비율(%)		자료없음	자료없음	85.4	87.7	89.3	90.4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청소년단체활동의 가정 지지수준 비율(%)	자료없음	자료없음	60.1	64.2	67.1	69.7
				청소년단체활동의 학교 지지수준 비율(%)	자료없음	자료없음	69.5	72.8	75.9	78.0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6-1-1-1. 학생 취학률: (취학 적령 재적 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 6-1-1-2. 학생 진학률: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 6-1-1-3.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인건비, 물건비) +자본비]/학생 수} x (1/구매력지수)
- 6-1-1-4.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교원 수, 학급 당 학생 수 = 학교의 총 학생 수/학교의 총 학급 수
- 6-1-2-1. 학업중단율: 초, 중,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100,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제적률) = (제적 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100
-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자퇴 충동여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가와 학교를 즐거워하고 있는 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33) PPP(Purs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지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위로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의 환산된 환률

- 6-1-3-1. 대안학교 수와 종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수 및 각종학교 특성화학교 수
-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전국 대안학교 재학생 수/전국 초·중·고 총 학생 수
-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건강, 인성,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잘 교육하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
- 6-2-1-2. 혁신학교 운영 수: 전국의 교급 별 혁신학교 수
-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전국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미술관, 지방문화원 수
- 6-3-1-2.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전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수 및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문화예술 공간
- 6-3-2-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청소년들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참여율
- 6-3-2-2.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율: 최근 1년간 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응답률
-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최근 1년간 취미나 문화·동아리활동 여부에 대한 응답률
-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평일 하루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에 대한 응답률
- 6-3-2-5. 하루 평균 학습시간: 평일 하루 학습시간(3시간 이상)에 대한 응답률
- 6-3-3-1.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 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 정도의 응답률
-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 및 학교의 지지 여부에 대한 응답률

7) 특별보호조치

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부록표 4-7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2011-2016년): 특별보호조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아동·청소년 난민 신청자수(명, 18세 미만)	29	38	69	129	315	315
				-인정	7	14	23	13	40	40
				-인도적 체류	4	7	2	44	52	52
				-불인정	8	9	1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철회	3	3	1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탈북 청소년 입국자 수(명)	501	253	219	169	169	132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6.8	자료없음	자료없음	1.6	1.0	1.0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다문화가정 학생 수(전체, 명)	자료없음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다문화가정 학생 수(한국출생, 명)	자료없음	40,040	45,814	57,498	68,099	79,134
				다문화가정 학생 수(중도입국, 명)	자료없음	4,288	4,922	5,602	6,261	7,418
				다문화가정 학생 수(외국인 자녀, 명)	자료없음	2,626	5,044	4,706	8,176	12,634
				다문화 학생 비율(%)	0.55	0.70	0.86	1.07	1.21	1.49
				재학생 중 탈북자 수(명)	1,681	1,992	2,022	2,466	2,717	자료없음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항목없음	1.0	1.0	1.0	자료없음	자료없음
				탈북청소년 중도 탈락률(%)	4.7	3.3	3.5	2.5	2.2	자료없음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 수(명)	자료없음	839	837	913	1,178	자료없음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건수)	자료없음	2,632	3,277	3,780	5,462	자료없음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자 수(명)	자료없음	4,733	4,784	7,122	5,115	자료없음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 수(명)	2,559	3,211	2,867	2,531	자료없음	자료없음
				-7호(의료)	69	103	105	93		
				-8호(1개월)	1,329	1,660	1,317	930		
				-9호(단기)	644	792	938	842		
				-10호(장기)	517	656	507	666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명)	114	170	152	114	자료없음	자료없음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경찰신청 승인 건수(건)	자료없음	자료없음	3,127	3,959	자료없음	자료없음
				원스톱센터신청 승인 건수(건)	자료없음	자료없음	4,418	6,578	자료없음	자료없음
				상담소 신청 승인 건수(건)	자료없음	자료없음	91	222	자료없음	자료없음
				검사지정 승인 건수(건)	자료없음	자료없음	448	604	자료없음	자료없음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소년원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체계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청원 건수	1,313	1,094	1,071	903	[redacted]	[redacted]
				행정심판 건수	235	253	458	458		
				행정소송 건수	75	49	74	79		
				고소/고발 건수	646	681	647	614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전체보호관찰자수(명)	121,188	108,495	105,495	121,517		
				소년보호관찰인원(명)	46,336	47,621	45,040	34,362	[redacted]	[redacted]
				소년보호관찰 비율(%)	38.2	43.9	42.6	28.3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명)	8,346	8,175	8,857	7,742	자료없음	자료없음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집행인원(명)	10,135	10,612	7,864	5,526	자료없음	자료없음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1.5	5.4	5.0	4.5	자료없음	자료없음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자수(명)	4,950	4,976	4,495	5,112	자료없음	자료없음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9세 이하)	172.6	170.5	165.6	185.6	자료없음	자료없음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20-24세)	187.9	181.6	176.3	188.9	자료없음	자료없음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19세 이하, 천원)	1,267	1,363	1,398	1,429	자료없음	자료없음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20-24세, 천원)	1,575	1,618	1,672	1,748	자료없음	자료없음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원)	5,942	7,006	10,583	11,134	자료없음	자료없음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항목없음	항목없음	24.9	23.9	자료없음	자료없음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률(%)	13.7	조사 미실시	13.3	13.5	12.2	13.5
				아르바이트중 부당처우 피해경험률(%)	17.2	조사 미실시	15.1	17.5	17.1	15.0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르바이트중 시간초과근무 경험률(%)	17.3	조사 미실시	14.8	18.5	13.8	15.6
				아르바이트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률(%)	83.3	조사 미실시	78.4	77.1	71.4	69.8
				아르바이트중 부당해고 경험률(%)	6.0	조사 미실시	9.3	7.3	6.9	6.0
				아르바이트중 작업환경 불결 경험률(%)	11.7	조사 미실시	13.6	13	10.3	9.5
				아르바이트중 폭력 등 인격모독 경험률(%)	10.2	조사 미실시	14.5	11.5	11.8	10.6
				아르바이트중 구타/폭행 경험률(%)	1.6	조사 미실시	6.3	6.0	3.2	3.3
				아르바이트중 성적피해 경험률(%)	1.6	조사 미실시	6.3	6.0	3.2	3.3
				아르바이트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경험률(%)	22.0	조사 미실시	27.2	27.1	25.0	20.2
		7-3-3.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노력 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 적발건수(건)	2,384	1,780	2,57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율(%)	33.1	37.01	24.8	43.7	-	-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명)	334	412	457	737	879	1,194
				연간 성교육 경험률(중/고)(%)	66.15	68.10	71.80	71.95	73.3	자료없음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신상공개 성범죄자수(명)	1,261	자료없음	3,786	4,161	4,552	자료없음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19세 미만)(명)	14,513	13,024	10,651	10,862	11,708	-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률(%)	3.4	조사 미실시	3.3	4.0	3.9	4.3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가 없는 청소년의 비율(%)	29.9	조사 미실시	36.0	38.7	36.3	34.8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측정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대상 성폭력사범 처분자수	3,922	4,147	4,443	4,423	자료없음	자료없음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수치화 불가능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현황(명)	117	130	177	221	233	자료없음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수(명)	333	355	278	355	287	자료없음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피해자대상 재활서비스 수혜자 수(명)	21,274	28,581	42,678	56,960	93,012	자료없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② 지표결과 산출식

-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아동·청소년 난민 신청자 총수/난민인정자 수/인도적 체류자 수/불인정자수/철회자수
- 7-1-1-2. 탈북 난민 아동 수: 탈북청소년의 연도별 입국자 현황
-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일년에 1회 이상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총 수(전체, 한국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별),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 학생수의 비율,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 수
-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의 비율, 탈북청소년의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중도탈락생 수의 비율

-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클에 참가한 수(전일제, 여름학교, 방과후학교, 주말/야간학교, 교육학교)
-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 건수 + 내방상담 건수+ 찾아가는 상담 건수+ 집단상담 건수
-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다문화가장 학생과 탈북학생 중 멘토링 활동에 참가한 학생 수
-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수/7호,8호,9호,10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수
-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절도, 사기/횡령, 폭력/상해, 강간, 강도, 살인, 과실범, 기타 등으로 인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수
- 7-2-2-1.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 경찰신청, 원수톱센터신청, 상담소신청, 검사지정별 승인 건수
-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건수: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청원건수, 행정심판 건서, 행정소송 건수, 고소/고발건수
-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전체보호관찰자수,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 전체보호관찰자수 대비 소년보호관찰인원의 비율, 소년대상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 청소년대상의 수강명령 집행자수
-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소년범죄자수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수의 비율
-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의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수
-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 7-3-1-2.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청소년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평균 임금
-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비율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전체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아르바이트 시간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작업환경 불결, 폭력 등 인격모독, 구타/폭행, 성적피해, 최조임금 이하의 임금 경험률
-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건수
-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전체 청소년고용 점검사업장 대비 성희롱/성폭력 교육 비실시 사업장의 비율
-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한 해동안 양성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의 수, 전체 중고등학생 수 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자 수의 비율
-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자의 수
-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수
- 7-4-2-2.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설문대상자 중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피해시 도움제공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분자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으로 접수된 사전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사람의 수
- 7-4-4-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24세 이하 청소년의 수
-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인원수
-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혜한 청소년의

부록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논의자료[34)]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먼저, 협약의 일반이행조치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8월「입양특례법」의 전부 개정 및 2012년 2월「민법」개정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그 의견을 들어야하는 법 조항이 2013년 7월「가사소송법」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입양특례법」,「민법」개정으로 인하여 입양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절차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조회 단계에 있을 뿐 아직 철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입양의 절차와 조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5월「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 비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입양허가제와 관련한 유보조항 철회는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입양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헤이그협약 비준절차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된 아동이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상소권은 우리나라「헌법」과「군사원법」에서 비상계엄 하에서는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단된 상황에 있는 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 개정사항이며, 단순히 법률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비상계엄에 따른 상소권 제한 예외조항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의견이다. 정부는 협약이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한

34) 이 자료는 9월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에서 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자료이다. 1영역(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이호균 고문(아동행복포럼)과 김형욱 전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이, 2영역(시민적 권리와 자유)과 6영역(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김형욱 전 학생인권옹호관이, 3영역(폭력 및 학대)은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영역(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은 전경숙 교수(평택대학교)가, 5영역(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은 김미숙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영역(특별보호조치)은 이승현 교수와 전경숙 교수가 집필하였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한국정부에 80여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5년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진전상황을 국가보고서로 정리하여 유엔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016년에 이러한 점검 작업이 보건복지부와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부처별 협약 이행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정부의 협약 이행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부록 5.의 영역별 공통 참고자료는 2016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협약 이행실적을 취합한 미간행자료라 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2012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고, 가정내 아동학대와 방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행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법들을 개정해 왔다(법제처 홈페이지, 2016.10.21. 인출). 현행법령의 개정은 너무 잦을 정도로 이루어졌으나 법 개정 이후 정책으로 채택되고 제도와 예산이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등 법령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영향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학교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순회교육을 통하여 위탁교육 후 원적학교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의 도입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요청을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강요에 의한 입양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만 허용하고 있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지 않은 청소년 임신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성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고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경준 외, 2014).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MB정부에서 활동이 중단되었던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정비되어서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는 상근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년 1-3회 정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학생자살방지 종합대책, 아동권리헌장 등은 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심의되는 등 정부의 정책

아젠더나 특정 이슈에 따라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 정책을 포괄적으로 상시 평가, 조정 및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기구를 수립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으나(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제3기 인권NAP(2017년-2021년)에 대한 권고안을 2016년 7월말에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매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2015년 5월 5개 영역, 15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년-2019년)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및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이행 중에 있으며 제6차 기본계획(2018년-2022년)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모두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평가결과는 차년도 계획에 환류되어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권NAP는 국가 전체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므로 아동·청소년 분야는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만 포함하고 있다. 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동정책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0세-18세 미만 아동 대상의 정책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각 법에서 규정하는 연령 구분이 다르고, 연령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정책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한 연령의 구분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고(김경준 외, 2014), 국가행동계획 역시 중복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업무가 2015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기초현황 조사'가 실시되었고, '아동학대' 및 '가정 밖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권현장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5월 정부에 대해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유엔아동권

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아동권리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여 향후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심의를 특화하게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011년 131개 시군구에서 2016년 219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였으며,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3,260개소에서 2015년도 3,913개로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2015년말 11만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았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6년 드림스타트 사업은 668억원, 지역아동센터는 1,4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2013년 3월부터 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5세 어린이 대상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찾아가서 1:1로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의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아동양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 아이돌봄사업 등 보육·가족·여성에 할당된 예산은 2011년도 25,109억원에서 2016년도 57,654억원으로 약130%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교실,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등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011년 357,856억원에서 2016년 430,588억원으로 20%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10. 21. 인출; 기획재정부, 2011).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예산은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이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 정도에 걸맞도록 협약을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예산 내에서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야 하며, 향후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예산의 적정한 배정여부, 아동예산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상 2019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아동영향평가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최종년도에 수행될 것이라서 그 이전에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수립된 정책이행에 적합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등으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적 배경 등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은 가능하며, 교육부에 의한 교육통계 및 학교폭력 실태가 별도로 조사되고 있다. 빈곤아동 실태조사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일반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과 함께 조사되었고, 그 결과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생활, 의식, 태도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백서로 정리되어 매년 발간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하여 매년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협약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는 통계청 승인통계자료로서 공개되고 있다. 여러 각도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들이 정책수립에 환류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 2011년 초·중등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교과서상의 반인권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면서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정하고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은 관련업무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청 또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인식증진과 보급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권리교육 및 홍보용 책자 또는 리플렛의 발간, 아동권리헌장 홍보물 제작 및 보급, E-learning용 홍보영상 제작 및 보급 등 부처별로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14.4%에 불과하고 이름만 들어본 경우는 46.4%,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39.2%였다. 인권교육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30%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교육경험 장소는 학교 정규교과 시간은 65.3%,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9.7, 학교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6.0%로 답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70%의 학생들이 학교 내 정규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 정부기관이 많은 인권교육가를 양성하고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이 모든 교육현장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강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 의하면 2015년도 우리나라 ODA/GNI(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목표가 0.25%이었으나 실적은 0.14%로서 목표

에 훨씬 미달하였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이 0.2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OECD는 0.7%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총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평균 1.2%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로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의 범지구적인 지속적인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ment Goals) 달성에 동참하고자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2년 6개월간 우간다 여성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십대 임신예방 및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우간다 정부와 체결하였다(코이카 홈페이지, 2016. 10. 21. 인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12,624억원의 기금을 해외원조사업에 지출하였고(국세청 홈페이지, 2016.10.21. 인출), 이 기금수준은 2014년도 KOICA를 통한 정부의 무상원조기금 약 9,720억원(883.7백만불x1,100원)을 훨씬 능가하였다(ODA 홈페이지, 2016. 10. 21. 인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특히 2014년 9월 117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업과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2016년 7월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세미나 또는 현지 노무관리 설명회에서 아동노동 관련 법령 및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및 협약 체결 시 아동노동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NAP'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사업 현장 및 해외현장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원칙과 관련된 현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인 차별사유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교육, 아동과 청소년 관련 복지, 활동, 소년사법 등 관계 법률에서는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예방과 구제조치 등을 위한 법률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및 제도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있었으나,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사유를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성도덕의 타락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차별해소와 지원을 위한 정책은 관련 법률과 정부부처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에는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부당징계나 학습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3년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해당 항목 응답자의 25.9%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호진, 오미애, 정은희 외 , 2013, p267). 2015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7.9%의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김희진 외, 2015: 340).

2012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별도의 정책과제로 하였다.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소년범의 특성에 따른 적정하고 균형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정책개발,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운동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동의 의견을 권리로서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교에서는 징계과정에서 해당학생의 진술권, 학칙 제·개정에서 학생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입양 허가 재판 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부에 대한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되면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아동이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5년 마다 실시되고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 부처별 정책 및 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협약이행 일반원칙이 온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와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아동의 참여기회는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공간, 시간,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아동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보호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합법 체류 외국인, 난민인정 및 난민신청자의 출생자녀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무국적자가 낳은 아동은 국적국에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사실을 기록할 길이 차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육, 기초보건, 복지 등 아동기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국적부여와 연동될 필요는 없으므로 동법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또한 현재 아동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두고 있어 즉시 신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출생등록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여 불법 입양하거나, 학대나 방임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과 별개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로 병원이나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기반으로 한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황관표, 현소혜, 정선영, 2015).

종립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이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지만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25.8%, 매우 그렇다 20.3%)에 응답한 비율은 46.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3%)에 응답한 비율은 53.9%에 달한다(김영지 외, 2015 : 177).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행사 등의 참여에 관한 학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히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52%, 매우 그렇다 26.1%)에 응답한 비율은 78.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에 응답한 비율은 21.9%로 파악되었다(김영지 외, 2015 : 173).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학칙(생활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교사·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을 벗어난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 하지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는 학칙(생활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다.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시민권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칙(생활규정)에 침해조항을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동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민주시민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있어 학교에서의 학생자치와 참여권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독립 공간과 시간확보, 학급자치 활성화, 예산 등에 있어서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폭력 및 학대

정부는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내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장은 지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체벌 이외에 학생의 훈육 및 훈계방법에 대하여는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훈육과 훈계의 허용이 체벌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그러나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에서는 단위학교 학칙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훈육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재량에 따른 정서적 체벌 허용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정과 관련기관에서의 체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였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근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출동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교육 지원과 아동학대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피해아동 취학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도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개정을 통해서도 가정 및 보육시설의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 등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16년'아동학대 방지대책'및'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산하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교육부는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2013년), 학부모역량개발 자녀교육서 6종(2013년)과 학부모 교육자료 가이드북 6종(2014년)을 개발·보급하였다.

정부는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가 아동학대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 어린이주간 등 아동행사기간을 이용하여 전국단위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8일을'보라데이'로 지정하고

체벌 및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발행 및 가정폭력예방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연중 1주간을'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3조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4조). 이에 따라 SNS,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학대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EBS 평등채널e를 통해 아동학대를 포함한 폭력 예방 영상을 방영하고,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2016년 상반기 총749회 폭력예방 동영상을 송출한 바 있다. 정부는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학교교칙 위반학생에 대한 교사별 처벌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등을 도입하였다.

학생체벌사례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체벌사례가 폭행인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학대로 이어지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체벌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체벌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대중적인 캠페인 및 공익광고 송출, 학생체벌신고제도 마련 등을 통해 체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조의2).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보도 금지(제10조 제3항)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집행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제35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학대행위

자, 피해아동 등에 대한 출판물이나 방송 금지(제35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는 확대되었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관과 의무불이행 기관에 제재조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신규 사업도 확대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50개소에서 2015년 55개소로 늘어났고, 2016년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014년 36개소에서 2015년 46개소로 확충되었고, 2016년 말까지 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지원 인력은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이 100%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기관의 증설에 비해 인력의 확대 및 처우개선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경찰단독 아동학대 사례 1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현장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필요시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보호, 격리보호(친인척 조호, 연고자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가정복귀로 분류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친권상실, 임시조치 등 각종 부수처분의 적극청구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선정 확대, 조사·공판과정에서의 피해아동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대구지검 및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여성·아동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영장청구, 형사처분, 피해자지원 등 전과정 책임수사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대응전담검사 책임수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조치 및 처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서 상담 및 지속관찰, 고소·고발, 입원치료, 타기관 의뢰 등을 하고 있다.「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아동학대자의 사법처리 비율이 급증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내사 종결 되거나 수사진행중인 경찰수사 사례는 줄어든 반면에, 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사례가 4분기에 집중되면서 검찰에서 수사진행중, 불기소, 아동보호송치, 형사기소 되는 사례는 급증되었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포괄적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시행중에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학대 등의 및 방임과 관련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 영역별 포괄적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 학교 내 체벌과 학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성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을, 가정내 학대와 체벌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014년에 아동학대 종합대책으로서'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후 정부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아동복지법」을 제·개정하여 사법적 개입을 강화하고, 국가정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대책 마련 등의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대응체계 개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적 노력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대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으로는 제69차 UN총회 3위원회 아동 괴롭힘 및 폭력방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앞으로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 및 NGO의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할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영유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에 의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이는 2012년부터 이전에 저소득계층에서만 실시되었던 것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 것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영유아의 연령

및 부모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 및 남성의 육아휴직과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는 상당부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만, 사실상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의 어려움은 감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아동 최선의 이익과 기본권 보장 및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부모교육 및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과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 외에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 가족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현금지원에 집중되어 한부모가정 유형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따른 자녀양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관련 비용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출결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협약 제20조에 의해 가정 내 아동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시설 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어 대안양육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쉼터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정해체나 빈곤 문제를 경험하고, 보호대상 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안양육체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자립지원정착금 등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게 될 경우라도 아동의 원만한 친가정 복귀를 위해 대안돌봄시설에서 아동과 원가족 간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고, 아동의 친가정 지원과 친권에 대해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친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요구된다.

입양아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2011년 8월 4일 기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한 후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 입양숙려제의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입양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12년 8월에 중앙입양원을 설치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권고(56호)에 따라,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일 때 해당아동의 입양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입양아동은 0~3세 영유아가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보다 세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적 심사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아동의 실질적 참여보장, 잔혹한 훈육방식 지양,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행, 장애아동 및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적정 조치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아동권리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아동복지법 제55조)과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아동복지법 제57조) 등의 관련 법을 정비함으로써, 2013년부터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항목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장의 노력 정도를 포함시키는 등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배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며, 제12조 1항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요보호아동 발생 후 보호절차 과정이 즉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다. 법에 의거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였고, 이를 무상교육으로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년 ~ '17년)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계획에 의거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였다. 특수학교수는 15개교가 증가하였고('11년 115개교 → '16년 170개교), 특수학급수는 1,650개가 늘었다('11년 8,415개 → '16년 10,065개).

아울러 특수교사의 증원과 특수교육 예산의 증액을 하였다. 특수교사는 최근 6년간('11년~'16년) 2,828명이 증원되었다.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과정이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도 지난 6년간 증원되었다(2,324명). 특수교육 총예산은 2011년 2조원에서 2015년 2.2조원으로 5년간 2천억원이 증액되었다. 더욱이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강화되어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11년 ~ '16년 평균)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통합되어 교육받는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범국민 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드라마 제작 및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 장애이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가 확충되어야 한다.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우구 등 다양한 교제 및 교구가 필요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도우미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주 및 다문화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상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 국민의 97.2%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 2.8%는 의료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 없거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의료접근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료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국적 아동·청소년에게 시군구청장 재량으로 건강 이상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및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제정, 매3년마다 학생정서행도특성검사 실시, 관계부처 합동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2015년),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130개소) 등이다. 이러한 아동정신건강 증진 인프라를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조기발견, 자살시도자 집중 관리, 자살학생 사후관리 및 환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도 자살관련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살이 발생한 학교에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에 대한 위기개입, 교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전문가 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면에서도 확충을 하였는데, 국립정신병원의 기능개편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였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치료 후 학교 복귀전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재활 및 치료기관을 확대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해서 국내 최초의 전문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하였다(2012년).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근본적 요인이 되는 학업스트레스, 과중한 학습시간, 놀권리 학보 등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개선이 미진하여 아동·청소년 자살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놀권리 확보 등의 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건강검진, 무료예방접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위해서는 전액 무료로 영유아 장애예방 발달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의거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2016년 시작). 현재 만12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16종의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성건강을 증진시키며, 난임을 완화하는데 있다.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민행복 카드(구 고운맘카드)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는 50-70만원, 청소년의 경우는 120만원을 임신 및 출산비용으로 지원받는다. 한편, 취약계층(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에게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을 줄이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학생의 체력강화를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7560+ 운동(1주 7일간 5번 60분 이상 운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도입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실내외 체육시설이 미비하여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교과목을 폐지하여 학교에서의 신체활동도 감소하고 있어, 성장후 대사성질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력도 저하되고 비만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건강증진모델학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신생아, 소아응급환자 등을 위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여 2016년 현재 총 5개의 아동전문병원이 설치되었다. 청소년의 생식보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학교에서 성 인권 교육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령에 맞는 체계적인 성 인권교육을 위해서 유아용, 초등 저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교재 총 4종을 개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설치하여 저영양·고열량,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규제 등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집중 시청 시간대의 식품광고 규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권장 등을 하였다. 아울러 학교내 매점, 학교내 밴딩머신 등에서 관련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향후에는 광고금지 대상식품(고카페인 함유 가공유류 등 포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여 부적절한 체중감소를 시도하거나 폭식증 등 식행동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소년들에게 체중조절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식이교육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 시급히 요구된다.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등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고자 초·중등학교에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청소년 흡연율은 낮아졌으나, 성경험율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불건강행태의 시작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건강행태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정책분야 총 예산은 '14년 기준 49조 1,377억원으로 GDP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교육 예산을 제외한 총 아동예산은 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이다. 이는 OECD 및 노인(2.1%), 장애인(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동복지예산은 과도하게 보육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최소한의 복지만을 제공하는 등 불균형하고 예산이 매우 적은 상태이다. 아울러 법률에 아동청소년 복지재원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적 조항을 구비해야 한다.

(6) 교육·여가 및 문화

경쟁적 교육환경은 협약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교육의 목표 달성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업경쟁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고 있다. 한국 아동의 학습시간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며, 여가나 수면시간 부족은 불균형적인 발달과 행복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을 중학교에 개방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에 있다. 또한 정부는 2019년까지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학교 내 교육활동 및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여 대학진학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도입·확대 및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체계를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년 12월에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수립되어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입법조치 미비는 사교육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교 수업 및 학생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예체능 및 교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성취 향상, 특기 적성 개발 등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통합문화 이용권」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저소득가정에 대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2010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설립되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과 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2014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여가활동에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이 가장 많은 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정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성북구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 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경쟁적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배움 중심의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경쟁적 교육체제의 극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문화 및 여가에의 참여권리 보장 등은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교육과 아동지원 등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칭)국가교육위원회'의 창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특별보호조치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제3조에 합치되도록 아동성폭력 예방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및 2013년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등 아동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정부는'해바라기ONE-STOP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아동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굿네이버스 지부 40개소와 협업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아동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101회). 정부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피해 청소년의 상담교육 및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을 담당하는'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복지법」 상 5대 의무안전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제31조),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28조).

정부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297조의2)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제7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제11조 내지 제14조). 그밖에도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벌금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추가하고(제42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와 우편고지서 수령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서 내'성폭력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성폭력 전담검사 T/F'를 구성하여 성폭력사건 수사업무에 적용할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청에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2015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성구매 재범자에 대한 존스쿨(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성매매 사건처리 기준 준수를 통해 성매매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관련된 DNA를 채취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범죄욕구를 억제하고 있다.

일부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2011년 성범죄자 치료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2013년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순환형 상담치료 프로그램,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 동안 치료감호하고 있다. 이외 5개 지역(서울남부, 포항, 청주, 광주, 밀양)에 고위험 성폭력 사범 치료를 위해 상담심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심리치료센터'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외국인지원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제2조와 제3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범죄 수사 및 기소체계 개편, 성범죄자 처벌 및 교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의 마련을 통해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정부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89조). 인신매매의 결과적가중범을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92조 제2항).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제296조의2). 정부는 2012년에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을 알선·대여·양도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아동청소년 성매수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아동청소년대상

알선영업행위(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재정립,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강화,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분내용 규정, 해외성매매사건 처리·여권발급제한 등 기준 마련,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당사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UN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동의안은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하여 2015년 12월 5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외 성매매의 경우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에 그치고 있고, 해외성매매 범죄자가 단속되어 구속되는 사례는 5% 미만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시스템이 완비와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법원·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 소년부 확대 설치가 이어지면서 2011년 부산, 2012년 대전·대구·광주, 2016년 인천가정법원이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6개의 가정법원이 있다. 2018년 울산가정법원, 2019년 수원가정법원도 설립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피의자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소년법 제17조의2), 아동피의자가 수사시 심리적 안정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의거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가족참관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소년원송치처분은 항고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소년법」에서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5조 제3항).

정부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년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소년을 같은 분리수용하고 있고, 소년수형자에 대한 전문적 수용처우와 구분수용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를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년수용시설의 과밀수용문제를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소년원의 집단생활실을 소규모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을 150명 이하로

조정하고, 10-15명씩 한방에서 집단 거주하는 생활실 구조를 4인실 이하로 조성하도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수용자의 급식수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법무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소년원생 급식비를 2,0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가족연계 활성화를 위해 퇴원을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가족사랑캠프'를 운영하고, 소년수용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도 있다. 소년원 퇴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원 담임교사가 소년원 출원 후에도 6-12개월 동안 방문상담, SNS 상담,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후서비스인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인 '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수용자가 교정시설을 벗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를 통해 재비행 예방 및 소년수용자의 자립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에 대하여 신입자교육 및 담임·주무과장 면담 및 수시교육을 통해 청원, 진정, 원장면담, 여론조사 등 자신의 배치 및 처우와 관련하여 항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 제4조). 수용자는 처우에 대한 불복내용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정부는 구금대안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을 금지하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건의 특칙에 따라 정부는 구금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사회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대안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사법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문 소년법원 설치와 시설개선에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재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집행을 위한 소년전문법원 설치노력과 시설개선을 위해 투자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한 정부는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지정한 법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법률조력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생활관(약2주)을 제공하는 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치료비 등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범죄피해 조기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및 간병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33% 상향하였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대상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 확대로 범죄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시설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책이 단기적인 지원인 경우가 많아 범죄피해아동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목격아동에 대한 법적·의료적 지원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12년 2월에「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난민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을 받을 시,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및 교육이 보장되며, 부모가 난민 신청 중일 때는 생계비 지원 및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7월에 시·도교육청에 난민인정자의 입학·편입학 가능과 난민인정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난민신청 중에 태어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난민신청 중 아동의 생계 및 주거지원은 지원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난민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난민아동에게 국적 부여를 할 수 없더라도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부모의 출신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출생등록과 더불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75호)과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과정 시 최대 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76호)는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난민아동의 구금배제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에 대한 상세규칙이나 지침 마련도 요구된다.

2010년 7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 국어교육과 대한민국 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을 보장하였다. 2013년 8월에「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으로 해체되더라도 그 자녀는 동법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민배경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유치원, 대안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보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69호)에 따라 정부는 이주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서는 2012년 범정부차원의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318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는 권고(80호)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하라는 권고(81호)에 의해 2016년 2월에는 일경험 수련생(인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고용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피해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증원과 상담시간 확대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부록 6.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영역	번호	정책과제명	필요성 및 중요도	
			M	SD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	아동·청소년기본법 또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4.29	0.61
	1-2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기구의 재정비	4.36	0.50
	1-3	정부의 정책 모니터링 기구 설치	4.21	1.05
	1-4	아동권리에 기반한 예산산출 방안 연구	4.07	0.83
	1-5	통합적,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 실시	4.21	0.80
	1-6	사법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 조항의 준용 방안 연구	3.86	0.86
	1-7	아동·청소년인권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38	0.65
	1-8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4.29	0.73
	1-9	「인권교육법」 제정 및 (가칭)「국가인권교육원」 설립	3.71	0.99
	1-10	지방자치단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지원	3.50	1.16
	1-11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 차별금지 조항 신설	3.93	1.07
	1-12	부처별 「아동영향평가」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확산	3.71	1.07
	1-1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참여권 보장을 위항 법률 개정	4.21	0.58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아동권리에 기반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전면모니터링 실시 및 위법한 규정 개정	4.23	0.60
	2-2	실질적인 학생자치 및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원	4.57	0.51
	2-3	학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제시스템 마련	4.08	0.76
	2-4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강화	3.71	0.91
	2-5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제13조[35]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국내법적 근거 마련	4.14	0.66
	2-6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 학생회 운영에 충분한 예산 확보	4.50	0.76
	2-7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칙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 – 학칙 개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4.50	0.52
	2-8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 차별 금지	4.86	0.36
	2-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제14조[36]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국내법적 근거 마련	4.23	0.73
	2-10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 강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금지규정을 명문화	4.64	0.50
	2-11	「아동복지법」 제15조[37]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보호대상아동의 종교적 배경이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마련	4.00	0.68
	2-12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제15조[38]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국내법적 근거 마련	3.86	0.86
	2-13	교내 집회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규정	3.21	1.12
	2-14	질서유지인 연령을 예외 없이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39] 재검토	3.43	1.02
	2-15	사생활의 보호를 아동권리협약 제16조[40]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국내법적 근거 마련	3.86	0.95

영역	번호	정책과제명	필요성 및 중요도	
			M	SD
	2-16	소지품 검사, 사적 기록의 열람, 전자기기의 사용 규제 등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학칙에 규정	3.93	1.00
	2-17	학교 내 행정정보의 학생 일반에 대한 공개에 관한 기준 마련 – 시험 성적, 교육비 납부 여부, 징계 내역 등	4.36	0.74
	2-18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이용 아동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4.29	0.61
	2-19	빅데이터 통합·활용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4.57	0.51
	2-20	학대,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방안 마련	4.86	0.36
	2-21	대중매체의 정보접근권 보장의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07	0.83
3. 폭력 및 학대	3-1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법에 체벌금지 조항 명확화	4.36	0.84
	3-2	아동보호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	4.43	0.65
	3-3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4.54	0.66
	3-4	아동학대행위자 교정치료 시스템 마련	4.43	0.65
	3-5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율 제고방안 마련	4.08	0.76
	3-6	피학대아동을 위한 치료기관 증설	4.36	0.74
	3-7	신혼부부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4.14	0.95
	3-8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4.43	0.65
	3-9	생활 속 부모교육 일반화	4.14	0.77
	3-10	학교교과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강화	4.14	1.17
	3-11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및 보호대책 강화	4.43	0.65
	3-12	정서적 학대 치유 대책 마련	4.36	0.63
	3-13	사이버 학대 대책 마련	4.29	0.61
	3-14	아동보호전문기관수 확대	4.21	0.70
	3-1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양성 및 처우 개선	4.50	0.65
	3-16	방임에 대한 지표 개선	4.00	0.96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운영 확대	4.07	0.73
	4-2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4.43	0.65
	4-3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책임 의무화를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3.86	1.10
	4-4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 확대	4.29	0.73
	4-5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 마련	4.43	0.51
	4-6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상향 조정	4.14	0.95
	4-7	농촌지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4.00	1.18
	4-8	가출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3.93	1.27
	4-9	지역사회 내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함께 마련	4.38	0.77
	4-10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유형의 쉼터로 쉼터 체제 정비 필요	4.43	0.65
	4-11	청소년쉼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	4.43	0.76
	4-12	청소년쉼터의 기능강화	4.50	0.65
	4-1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화	3.71	0.91
	4-14	민간 어린이집 자율운영 확대	3.00	0.88
	4-15	직장어린이집, 시간 연장 프로그램 등 확대 실시	4.00	0.88
	4-16	직장에서의 인권교육, 부모교육 실시 의무화	3.79	1.19
	4-17	가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3.71	1.14

영역	번호	정책과제명	필요성 및 중요도	
			M	SD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1	성(性)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성(性) 인권교육 실시	4.50	0.76
	5-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3.64	1.08
	5-3	장애아동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4.21	0.80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실내·외 창의적 놀이 체험 공간 확보 및 지원인프라 구축	4.29	0.83
	6-2	다양한 배움과 성장이 가가능한 공립형 대안교육 기관 확대 설치	4.50	0.76
	6-3	학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3.57	0.94
	6-4	청소년 주말 상설문화제 운영	4.21	0.80
7. 특별 보호 조치	7-1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일원화	3.69	1.03
	7-2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과밀화현상 해소	3.93	0.83
	7-3	해외아동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4.43	0.76
	7-4	가출청소년 중장기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형 쉼터 운영	4.36	0.74
	7-5	이주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확대	4.14	0.86
	7-6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4.00	0.88
	7-7	후기청소년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연계사업 확대	4.43	0.65

3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3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37) 「아동복지법」 제15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자유제안

- ○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부여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증진 사업
- ○ 정부의 정책 모니터링 기구 설치
- ○ 통합적,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 실시
-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비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 ○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생들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 ○ 시설위탁아동에 대한 비밀 보호 원칙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4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일반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제 14조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 강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금지 규정을 명문화
- ○ 빅데이터 통합·활용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 아동-청소년 참정권의 보장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사 교육의무화
- ○ 사이버학대 대책 마련
- ○ 아동복지시설 아동 책임감교육 제도 마련
- ○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책임 의무화를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 직장에서의 인권교육, 부모교육 실시 의무화
- ○ 청소년 문화활동 홍보 진흥
- ○ 다양한 교육
- ○ 청소년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 ○ 가출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교육, 안전)
- ○ 소년사법아동 중 결손가정자녀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체계마련

부록 7.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Ⅰ.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의 견[41]	전문가의견	
					이행정도[42] (0~5점)	중요도[43] (1~5점)
8-9 (유보조항)	1	입양관련 유보조항 철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3.41	4.41
	2	아동 상소권 보장 관련 유보조항 철회	국방부 인권담당관	–	1.53	3.5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0 – 11 (입법)	3	협약이행 법규 제정 및 사법판결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2.53	4.4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4	청소년 미혼모 지원법률 마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41	4.7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 – 13 (조정)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	2.29	4.5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6	아동권리 관련 부처간 연계강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	2.53	4.5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14 – 15 (국가 행동 계획)	7	아동 관련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2.88	4.71
				○		
			법무부 인권정책과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16 – 17 (독립 모니터링)	8	독립적인 아동 인권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	2.75	4.56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기준과	–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		
	9	국가위원회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	3.29	4.24
18 – 19 (자원 할당)	10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재원 검토 및 확대	교육부 예산담당관	–	0.88	4.47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		
	11	지역간 아동격차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관점의 재원 평가	교육부 예산담당관	–	0.88	4.4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2	국가예산 수립시 아동영향 평가 실시	교육부 예산담당관	–	1.31	4.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청소년정책과	–		
	13	재원배정의 효과 측정이 가능한	교육부 예산담당관	–	0.82	4.18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의 견[41]	전문가의견	
					이행정도[42] (0~5점)	중요도[43] (1~5점)
		결과기반예산 설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4	예산수립과정의 아동 참여	교육부 예산담당관	–	1.47	4.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5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전략적 예산 수립 및 보장	교육부 예산담당관	–	1.76	4.4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		
	16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 고려	교육부 예산담당관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0 – 21 (자료 수집)	17	협약 관련 종합적 자료수집 체계 구축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	2.65	4.4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22 – 23 (보급, 인식 제고, 교육 연수)	18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확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2.65	4.94
	19	아동 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청년취업지원과	–	2.65	4.8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20	협약 홍보 강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71	4.18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		
24 – 25 (국제 협력)	21	공적개발원조의 국제적 목표 달성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	1.71	3.88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		
	22	국제협력 협약시 아동권리의 우선적 고려	외교부 개발협력국	○	1.59	3.82
	22-1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ASEAN) 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	법무부 인권정책과	–	1.00	3.33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인권사회과	–		
26 – 27 (아동 권리와 재계)	23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법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1.82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24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 수입 금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0.60	3.8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25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시 아동권리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	1.82	3.88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의 견[41]	전문가의견	
					이행정도[42] (0~5점)	중요도[43] (1~5점)
		존중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26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1.47	3.8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		

41) 부처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각 정부부처 의견(◉: 이행완료, ○: 추진중, –: 의견없음 또는 소관부처 아님)

42) 이행정도: 관련 부처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현황 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종합 판단하여 부여한 점수(부처의견이 없는 경우 전문가 판단으로 작성)
- 권고사항 1개당 1건으로 종합 평가함(관련 부처는 여러 개일 수 있음)
- 점수기준: 5점 – 이행완료, 4점 – 2/3 이상 추진 중, 3점 – 3/1 이상 추진 중, 2점 – 3/1 미만 추진 중, 1점 – 초기 검토단계, 0점 – 미이행

43) 중요도: 적극적 이행노력이 필요한 중요과제 (1점 중요도 낮음 ↔ 5점 매우 중요)

II.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28 – 29 (비차별)	27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인권정책과	○	2.00	4.75
			법무부 인권정책과	○		
	28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2.44	4.9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9	미혼모 지원 확대(청소년 미혼모 포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50	4.71
30 – 31 (생명, 생존 및 발달)	30	아동의 자살관련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 및 서비스 제공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2.33	4.7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32 – 33 (아동 이익 최우선)	31	정책 수행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 적용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38	4.75
			대검찰청 형사2과	–		
34 – 35 (아동 견해 존중)	32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 개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2.13	4.5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33	학교 및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81	4.7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년과, 보안과	○		
	34	아동참여권에 대한 성인 대상 교육정보 제공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19	4.25
			법무부 소년과, 인권조사과 법무연수원 기획과	○		
	35	아동 참여 영향 평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2.25	4.31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36	아동의 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 고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Ⅲ.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36 - 37 (출생 신고)	37	출생등록제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국인정책과	○	2.38	4.5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38 - 39 (사상 양심 종교 자유)	38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2.19	4.38
	39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메뉴 선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2.46	4.08
40 - 41 (평화 결사 집회 자유)	40	아동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	1.88	4.44

Ⅳ.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42 – 43 (체벌)	41	체벌 전면금지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3.28	4.41
			법무부 소년과	○		
	42	아동학대 폐해 캠페인 실시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3.17	4.06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43	긍정적·비폭력적 형태의 훈육 장려 및 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	1.71	3.82
44 – 46 (학대, 방임, 폭력)	44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3.56	4.2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45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학대피해자 대상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배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61	4.59
	46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고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47	유엔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우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47~49. 유엔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아동에 대한 폭력 철폐」 노력에 대해서 종합적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94	4.1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48	유엔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노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49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외교부 인권사회과	○		

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47 - 48 (가정 환경 상실 아동)	50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3.00	4.25
	51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보장 및 학대피해자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	1.75	4.1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52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2.80	4.40
	53	유엔의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2009년 유엔총회 결의안)을 충분히 고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49 - 50 (입양)	54	헤이그협약 기준으로 중앙입양원의 임무권한 규정 및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3.56	4.25
	55	해외입양인을 위한 언어지원을 통해 입양 후 서비스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3.44	3.81
	56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3.31	4.25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57	청소년 미혼모 자녀 입양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3.63	4.1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58	모든 입양(해외입양 포함)이 명확한 임무권한과 사법적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를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3.94	4.25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59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고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3.06	3.94
			외교부 조약과	-		

Ⅵ.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51 – 52 (장애 아동)	60	일반논평 9호('장애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장애아동 대상 적절한 지원 제공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3.07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61	장애아동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교육연수 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3.64	4.21
	62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효과적 이행과 예산 및 인력 지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3.38	4.38
	63	장애아동 통합교육 시행 촉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3.20	4.40
53 – 54 (건강 및 보건 서비스)	64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과와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 중소병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3.00	4.60
55 – 56 (정신 건강)	65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 및 자살예방 시스템 개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2.14	4.2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57 – 59 (청소년 보건)	66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 위험요인 인식제고 교육·홍보 확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3.29	3.86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67	아동건강 유해식품 판매 규제 조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안전과	◉	3.60	4.07
	68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2.80	4.27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60 – 61 (사회 보장, 생활 수준)	69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지원과	◉	2.53	4.3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31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62 – 63 (직업 훈련 및 생활 지도 포함 교육)	70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한 교육 및 시험제도 평가	교육부 학교정책과, 대입제도과, 학원정책팀	◉	1.87	4.73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71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대입제도과	◉	1.75	4.83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72	아동의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2.27	4.73
	73	교육평등 실현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방과후학교지원과, 학교정책과, 학생복지정책과	–	1.53	3.93
	74	사이버 공간 및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방지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다문화교육지원팀	○	2.20	4.5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Ⅷ.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64 – 67 (망명 신청 및 난민 아동)	75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 및 망명희망자 지원	법무부 난민과	○	2.94	4.31
	76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 배제 및 본국 송환 과정 시 인권침해 개선	법무부 이민조사과	○	2.19	4.00
68 – 69 (이주 상황 아동)	77	이주아동(불법체류 자녀 포함)의 교육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	3.07	4.07
	7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인권정책과	–	1.56	3.94
70 – 71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	79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모색 및 해결안 제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1.40	3.8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80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근로조건 보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56	4.3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81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법 조항 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25	4.2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82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38	4.2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83	아동의 근무환경 내 발생하는 폭력과 성추행 문제 예방 및 개선 제도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3.19	4.27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84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75	4.06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72 – 73 (성적 착취)	85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	3.25	4.50
			법무부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86	아동 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 법적 강화 및 아동학대의 효과적 기소방안 마련	법무부 형사기획과	○	2.94	4.8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보호환경과	○		
	87	형사사법 제도 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과	–	3.47	4.40
			법무부 형사기획과, 형사법제과	○		
	88	성범죄자의 교화 노력 지속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	2.87	4.60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		
	89	남아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1.60	4.06
	90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 지원활동 서비스 마련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정책과	◉	3.13	3.81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부처 의견	전문가의견	
					이행정도 (0~5점)	중요도 (1~5점)
74 – 75 (인신매매)	9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 범죄자 처벌 조치 및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의정서 비준 고려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	3.29	4.07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76 – 77 (OPSC)	92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와 합치되도록 필요조치 마련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	3.56	4.1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93	성매매 및 음란물 관련 범죄에 한국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역외 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시행	법무부 형사법제과	◉	3.20	3.8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78 – 79 (OPAC)	94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 법적으로 금지	국방부 인력정책과	–	3.63	3.94
	95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내용상 일치하도록 보장	국방부 인력정책과	◉	3.85	3.92
	96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 시행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4.00	3.86
80 – 81 (소년사법 운영)	97	전국에 소년전문법원 설립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2.63	4.31
	98	형법위반 혐의 아동 대상 법률 및 기타지원 제공	법무부 소년과, 형사기획과	○	3.31	4.44
	99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사법 서비스 제공	법무부 분류심사과, 사회복귀과, 소년과	○	3.00	4.73
	100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 결정에 대해 주기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법무부 소년과, 분류심사과	○	2.94	4.44
	101	소년사범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보호관찰 등 대안 장려	법무부 형사기획과	○	3.33	4.27
	102	소년사법 관련 국제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 요청	법무부 소년과	○	2.47	3.93
82 – 83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103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3.25	4.00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인권구조과	○		

Abstract

This is the last year study of the project planned to be conducted for 6 years (2011~2016) with a purpos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writing a national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for establishing policies o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by accumulating time-series dat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and changes i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 Korea.

As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it is under obligation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it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status of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with which i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about 10,000 students from four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o third grades in high schools, and its results are published every year(National Statistics No. 402001). The government als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comprehensively,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material from other fields as complementary data.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of 2016 consists of 148 indicators in seven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12)', 'Civil Rights and Freedom(24)', 'Violence and Abuse(11)',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16)',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32)',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21)',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32)' based on the categories in the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mong the 148 indicators, 60 indicators are evaluated through surveys on children and the youth, and 88 indicators are evaluated through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other statistical material.

This year not only marks the completion of the 6 year study on the youth's and the children's human rights, but it is also the year for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arried out prior to the submission of Korea's national report to the UN by June, 2017.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youth's and the children's human right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carry out policy review for establishing the action plans. In addition, we organized statistical charts for the past 6 years, and created annual development charts which shows the changes in survey questions and major indicator results, in order to enhance practical usage of the survey.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the basic report' sh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ren's and the youth's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ir human rights. Moreover, it suggested a total of 12 measures to implement policy tasks aimed to promote the youth's and the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seven categorie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and opinions gathered from experts and children, as well as relevant policies to carry out the Convention's recommendations. 'The data analysis report' selected human right related issues and conducted a through analysis with an aim to disperse human right data across the society and improve their academic use, and examined how school environment affects the youth's awareness of human rights. 'The statistics' include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Starting from the year 2017, We aim to focus on closely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and conduct a third phas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human rights for the youth and the children, building upon the productive outcomes from the past 6 years of study on this issue.

Key Words : Children'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헌·하형석·신인철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헌·하형석·신인철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김희주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종·신현옥·최홍일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종·최홍일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I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Ⅰ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Ⅱ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헌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헌

수 탁 과 제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헌·장근영·김지경·하형석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헌·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김 형 욱 (前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 중 섭 (전북연구원·연구위원)

이 호 균 (아동행복포럼·고문)

전 경 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 연구자문 및 전문가의견조사 참여 ◈

Joan Yoo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곽 다 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구 정 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교수)

김 경 진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김 광 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남 훈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김 도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본부장)

김 동 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참여단·참여위원)

김 성 혁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김 소 연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김 수 정 (법률사무소 '지향'·변호사)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윤 환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김 은 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소장)
김 인 숙 (유엔아동권리협약 NPO연대·사무국장)
김 재 훈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인권지킴이)
김 주 영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김 지 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교수)
김 진 현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교감)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나 은 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류 은 숙 (인권연구소 '창'·연구활동가)
밀　　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박 광 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팀장)
박 찬 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변 창 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담당관)
박 영 미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박　　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참여단·참여위원)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상임활동가)
백 상 훈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서 여 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팀·팀장)
신 승 우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 정 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윤 경 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윤 상 석 (前 무지개청소년센터·부소장)

윤 명 화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이 명 숙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교수)
이 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 은 정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이 일 광 (서울시청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권리팀·주무관)
이 일 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사무관)
이 혜 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사무총장)
이 희 길 (통계청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사무관)
임 동 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사무관)
임 동 혁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사무국장)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 세 영 (청소년정책모니터단·위원)
조 금 주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교수)
조 하 나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최 윤 경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최 인 석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위원)
한 유 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팀장)
현 소 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홍 관 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황 혜 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팀·팀장)

연구보고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인 쇄 2016년 12월 24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18-9 94330
979-11-5654-099-1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4330
9 791156 541189
ISBN 979-11-5654-118-9
ISBN 979-11-5654-099-1 (세트)